서울교육사 1

광복 이전의 서울교육

일러두기

- 이 책은 서울역사총서 제14권 《서울교육사》이다.
- 이 책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교육의 변화과정을 삼국~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개항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로 시기를 나누어 서술하였다. 광복 이후는 1980년의 '7·30 교육개혁'과 1995년의 '5·31 교육개혁'을 기준으로 3개의 작은 시기로 구분하였다. 광복 이전은 제1권에 수록하였고, 1945~1979년은 제2권에, 1980~1994년은 제3권에, 1995년 이후는 제4권에 수록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법률명, 책 제목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서울시로 약칭하였다.
- 초등학교는 명칭이 개정된 199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국민학교로, 그 이후는 초등학교로, 시기가 겹치는 경우에는 국민(초등)학교로 표기하였다.
- 각 장 처음의 연표는 해당 장에서 다루는 내용에서 선별하였다.
- 원고는 역사와 교육사 연구자들이 집필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감수하였으며, 서울역사편찬원의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쳐 내용에 충실을 기하였다.
- 원고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각주를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사진·도표·그림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수록하여 원고 내용을 보강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현행 한글맞춤법과 국사편찬위원회 표기 원칙을 따랐다.
- 고유명사·전문용어 및 잘못 이해되기 쉬운 용어는 한자나 원어原語를 병기하였다.
-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만 단위 이상은 한글을 섞어 표기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 인용된 책과 문헌은 겹화살괄호(《 》)로, 논문(글)·법률·문서·작품 등은 홑화살괄호(〈 〉)로 표기하였다.
- 집필자 이름은 각 권 마지막에 집필 순서별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제4권 말미에 첨부한 〈서울교육사 연표〉는 《서울교육사 1981~1995》(서울시교육청, 1996)의 연표, 《서울6백년사 연표》(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2006), 필자가 제공한 연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기관 관련 연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의 사전들도 참고하였다.

서울역사총서 14

서울교육사 1

광복 이전의 서울교육



서울역사편찬원

발간사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육백년사》, 《서울2천년사》 등의 방대한 발간사업을 통해 서울의 역사를 통시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997년부터는 서울의 역사를 분야별로 정리한 서울역사총서 시리즈를 꾸준히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제1권인 《서울행정사》를 시작으로 건축·교통·상공업·인구·재정·항일독립운동·공연예술·재해·사회복지·체육·도시계획·의료 등의 주제를 정리하여 발간하였고, 이번에 제14권으로 《서울교육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큰 특징은 문화를 습득해 생활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화 습득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교육'이란 용어는 학교 중심의 제도교육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실 '교육'이란 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의의 교육 개념'은 인류의 역사 그 자체와 등치되기 때문에, 교육사는 제도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한 '협의의 교육 개념'에 입각해 서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서울 사람들이 시대적 제약 속에서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왔고, 더 많은 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활동을 펼쳐왔는지를 《서울교육사》 안에 담고자 했습니다.

서울 교육사의 시원은 오늘날 서울지역에 세워진 백제입니다. 다만 백제가 교육을 실시했다는 역사 기록이 남아 있지만 기록 자체가 영성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 접어들면 과거 제도가 도입되고, 국자감·동서학당·향교와 사학 12도 등 국가와 민간의 교육기관들이 세워지면서 유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한양은 조선 초에 수도가 되면서 전국 교육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성균관과 사부학당이 세워지고, 학생 선발과 교육 관련 규정도 갖춰졌습니다. 특히 한글 창제는 한문을 익히기 어려웠던 일반 백성들의 문해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성용 교육 교재도 발간되었고, 제한적이

지만 가정에서의 한글 교육과 언해본 교훈서를 통한 여성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대한제국은 서양식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여 독립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제 강점 이후 서울지역에 각급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고 학생, 교사 수도 대폭 늘어났지만,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교육정책이나 황국신민화 교육에서 보듯이 일제강점기 교육정책에는 식민지적 색채가 짙게 반영돼 있었습니다. 1949년 〈교육법〉 제정으로 현대 한국교육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1991년 교육자치제 부활 이전의 서울교육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치제 부활 이후 더 직접적으로는 2008년 주민직선으로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면서부터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더 강력하게 또는 차별화된 서울교육만의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사고 확대를 통한 수월성 교육 강화 정책, 혁신학교 지정과 무상급식 추진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평생교육국을 신설하고 혁신형 서울어린이집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해 '서울런' 사업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사 형식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제1권에서는 고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변화상을 서술하였고, 제2·3·4권은 각각 광복~1979년, 1980~1994년, 1995년 이후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광복 이후의 경우 1980년의 7·30 교육개혁과 1995년의 5·31 교육개혁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책이 서울 교육사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책 발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필·감수 선생님과 연구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 10.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제 2 권

광복 이후 서울교육의 추진

제1장 교육체제 재편과 교육기관의 확대
제2장 서울 교육시설의 파괴와 서울 교육의 복구
제3장 서울시 교육자치제 실시와 중단
제4장 국가교육과정 채택과 재편
제5장 초등교육 의무화와 의무교육시설 확충
제6장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와 고교평준화 정책 시행
제7장 국가 주도의 대학 개편과 대학 문화
제8장 실업교육 강화와 근로자의 교육기회 확대
제9장 광복 이후 교육 담당 기구와 관련 법규의 변화

제 3 권

서울 교육개혁과 교육기회의 확대

제1장 7·30 교육개혁의 배경과 내용
제2장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활동
제3장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의 변화
제4장 대학 민주화운동과 대학의 변화
제5장 직업교육과 특수교육의 강화
제6장 사회교육의 확장과 평생교육의 태동
제7장 방송통신을 통한 교육기회의 확대

제 4 권

교육자치시대 서울교육의 변화

제1장 5·31 교육개혁의 발표와 내용
제2장 교육자치제 부활과 직선 교육감들의 교육정책
제3장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제4장 공교육 불신 풍조와 대안학교·혁신학교 등장
제5장 대학 구조개혁과 학생의 변화
제6장 서울 평생교육 체계 마련과 민간과의 협력 추진
제7장 원격 교육의 보편화와 서울런 개설
제8장 사교육의 성행과 맞춤형 입시학원의 확산
제9장 서울 교육계의 주요 사건, 논쟁과 시민들의 반응
제10장 서울 학교 풍경의 변화
제11장 서울교육이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차 례

총설 010

제1절 서울교육의 개념과 범주 012
1. 서울교육의 개념 016
2. 서울교육의 범주 018

제2절 서울교육의 시대별 특징 020
1. 전근대 서울교육의 특징 021
2. 근대 서울교육의 특징 025
3. 현대 서울교육의 특징 029

제1장 고대 사회의 교육 036

제1절 삼국시대 교육기관과 교육내용 038
1. 삼국시대 교육의 국가별 양상 038
2. 백제 태학의 설립과 교육내용 041

제2절 통일신라 국학의 교육내용과 발전 양상 049
1. 국학의 설립과 교육내용 049
2. 도당유학생의 증가와 독서삼품과의 실시 054

제2장 고려시대의 교육 058

제1절 과거제 도입과 유학 연구 심화 060
1. 과거제 도입과 과거 실시 060
2. 신유학 도입과 유학 연구 심화 068

제2절 교육기관 설립과 지방 교육 071
1. 중앙 교육기관 071
2. 향교 설립과 남경의 지방 교육 080

제3장 조선시대 한양의 교육 086

제1절 조선시대 한양의 학교제도 088
1. 유학 088
2. 무학 109
3. 잡학 116

제2절 조선시대 한양의 과거제도 124
1. 생원·진사시 124
2. 문과 126
3. 무과 128
4. 잡과 129
5. 한양의 과장 133

제3절 한글 보급과 여성교육 139
1. 한글 창제와 교육적 활용 139
2. 여성교육 145

제4장 개항기 한양의 근대교육 162

제1절 근대교육 법규의 제정과 담당 기구 164
1. 개항기 교육 법규의 제·개정과 담당 기구의 등장 164
2. 일제강점기 교육 법규의 제·개정과 교육 담당 기구의 변화 175

제2절 근대교육 도입과 근대학교의 등장 187
1. 개항 이후 신교육의 시작과 근대적 학교 설립 187
2. 갑오개혁과 근대적 신학제 실시 197
3. 광무개혁기 교육개혁과 신식학교의 신설 211
4. 여성교육의 시작과 전개 218

제3절 통감부의 교육 침투와 교육구국운동 전개 226
1. 통감부 주도의 학제 개편 226
2. 사립학교의 폭발적 증가와 교육자치 추구 233
3. 통감부의 사립학교 통제와 교육의 부침 250

제5장 일제강점기 경성의 교육 258

제1절 1910년대 교육 차별 정책과 사립학교 통제 260
1. 제1차 〈조선교육령〉 반포와 내용 260
2.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별적 교육 실시 266
3. 경성부 내 학교와 사립학교 통제 274

제2절 1920~1930년대 대학 설립과 식민지 교육체제의 형성 319
1. 제2차 〈조선교육령〉 반포와 식민지 교육체제의 형성 319
2.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전개와 경성제국대학 설립 및 운영 330
3. 보통학교 설립 및 운영 358
4. 중·고등교육기관의 확대와 운영 375
5. 상경 유학과 해외 유학의 증대 397
6. 학생들의 생활과 학교 풍경 413

제3절 전시체제기 황국신민화 교육 423
1. 제3·4차 〈조선교육령〉 개정과 황국신민화 교육 423
2. 황국신민화 교육과 근로동원, 군사훈련과 학병동원 428

찾아보기 448



총설

제1절 서울교육의 개념과 범주

제2절 서울교육의 시대별 특징

제 1 절 서울교육의 개념과 범주

서울의 교육사 그리고 한국교육이라는 맥락 안에서 서울의 교육사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기 전에 먼저 서울교육이라는 실체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정보 몇 가지를 확인해 보자.

2024년 현재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는 6,183교, 초등학생은 249만 5,005명인데 그중 서울에 소재한 초등학교는 609교, 초등학생은 36만 3,157명으로,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비중은 전국의 9.8%, 초등학생 비중은 14.6%다([표 1] 참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제가 시행되는 중학교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중학교는 3,272교, 중학생은 133만 2,850명인데 그중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는 390교, 중학생은 19만 5,738명으로, 서울 소재 중학교의 비중은 전국의 11.9%, 중학생 비중은 14.7%다.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 수로 볼 때, 서울은 전국의 14% 남짓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전체 인구수와 비교해 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총인구는 5,121만 7,221명인데, 그중 서울 인구는 933만 1,828명으로[1] 그 비중은 18.2%다. 서울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비중이 이 인구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마도 저출

1 국가통계포털(kosis.kr)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표 1] 전국 및 서울의 학교, 학생, 교원 개황(2024)

(단위: 개, 명)

	전국			서울			서울의 비중		
	학교	학생	교원	학교	학생	교원	학교	학생	교원
유치원	8,294	498,604	55,404	754	61,128	6,425	9.1	12.3	11.6
초등학교	6,183	2,495,005	196,598	609	363,157	27,546	9.8	14.6	14.0
중학교	3,272	1,332,850	114,780	390	195,738	16,691	11.9	14.7	14.5
고등학교	2,380	1,304,325	129,436	318	207,311	20,184	13.4	15.9	15.6
일반고	1,642	1,010,078	92,514	212	151,905	13,841	12.9	15.0	15.0
특목고	160	59,535	7,927	21	11,800	1,247	13.1	19.8	15.7
특성화고	487	171,378	23,396	68	26,303	3,856	14.0	15.3	16.5
자율고	91	63,334	5,599	17	17,303	1,240	18.7	27.3	22.1
특수학교	195	29,974	11,271	32	4,510	1,688	16.4	15.0	15.0
고등기술학교	6	379	60	2	14	4	33.3	3.7	6.7
각종학교	81	9,911	1,687	16	3,210	466	19.8	32.4	27.6

출처: 전국은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서울은 (data.se.go.kr).

산 경향으로 인해 저연령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단계로 넘어가면 흥미로운 현상이 확인된다. 같은 해의 고등학교 수치를 보면 전국에 고등학교는 2,380교, 고등학생은 130만 4,325명인데 그중 서울의 고등학교는 318교, 고등학생은 20만 7,311명으로 서울의 고등학교 비중은 전국의 13.4%, 고등학생 비중은 15.9%다.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전국에서 서울교육이 점하는 비중이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중에서도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의 학생 수를 보면 전국의 특목고 학생 5만 9,535명 중 서울의 특목고 학생은 1만 1,800명으로 그 비중은 전국의 19.8% 그리고 자율화고등학교(이하, '자율화고')의 학생 수를 보면 전국 6만 3,334명 중 서울의 자율화고 학생은 1만 7,303명으로 그 비중은 전국의 무려 27.3%에 달한다.

[표 2] 총인구 및 각급 학교 학생 수 전국 및 서울 비교(1965~2020)

	초등학교			중학교		
	전국	서울	서울 비율	전국	서울	서울 비율
1965	4,941,345	564,779	11.4	751,341	127,844	17.0
1970	5,749,301	770,167	13.4	1,318,808	265,437	20.1
1975	5,599,074	908,474	16.2	2,026,823	385,450	19.0
1980	5,658,002	1,168,724	20.7	2,471,997	469,410	19.0
1985	4,856,752	1,090,330	22.4	2,782,173	645,367	23.2
1990	4,868,520	1,141,839	23.5	2,275,751	558,327	24.5
1995	3,905,163	831,282	21.3	2,481,848	566,645	22.8
2000	4,019,991	759,443	18.9	1,860,539	375,605	20.2
2005	4,022,801	711,136	17.7	2,010,704	379,188	18.9
2010	3,299,094	566,149	17.2	1,974,798	345,413	17.5
2015	2,714,610	450,675	16.6	1,585,951	263,466	16.6
2020	2,693,716	409,536	15.2	1,315,846	207,081	15.7

출처: 학생자료-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인구자료-국가통계포털(kosis.kr).
비고: 1. 인구자료 중 1965년 것은 1966년 자료임.
2. 인구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숫자임.

1974년부터 형성된 고교평준화 체제를 기본적인 틀로 유지하면서도 1995년 이후 새롭게 부상한 특목고나 자율화고 등이 대학입학 성적에서 평준화의 적용 대상인 일반고를 현저히 능가하며 이른바 명문 고등학교로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 위와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는 데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학력 선발 등을 통해 학생을 충원하는 특목고나 자율화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서울이 사회적, 문화적으로서만이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중심'의 위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할 것이다. 물론 교육의 중심으로서의 서울이라는 이미지는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거기에는 이른바 명문 대학들의 서울 집중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교육 기관의 서울 집중이라는 요인들도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말이다.

이상에서 본 것은 2024년 최근의 현상이지만 교육 통계로 본 서울의 위상은 처

(단위: %, 명)

			인구		
전국	서울	서울 비율	전국	서울	서울 비율
426,531	123,167	28.9	29,159,640	3,793,280	13.0
590,382	169,432	28.7	31,435,252	5,525,262	17.6
1,123,017	282,126	25.1	34,678,972	6,879,464	19.8
1,696,792	370,653	21.8	37,406,815	8,350,616	22.3
2,152,802	478,433	22.2	40,419,652	9,625,755	23.8
2,283,806	570,516	25.0	43,390,374	10,603,250	24.4
2,157,880	533,421	24.7	44,553,710	10,217,177	22.9
2,071,468	453,068	21.9	45,985,289	9,853,972	21.4
1,762,896	353,023	20.0	47,041,434	9,762,546	20.8
1,962,356	362,466	18.5	47,990,761	9,631,482	20.1
1,788,266	308,306	17.2	51,069,375	9,904,312	19.4
1,337,312	224,316	16.8	51,829,136	9,586,195	18.5

음부터 고정적이었다기보다는 시기에 따라 변화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이 인구수에서 점하는 비중과 비교할 때 그것보다 더 높은 비중을 보이는 학교 단계는 1975년 이전에는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였다. 같은 해에 서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점하는 비중은 19.8%였고 그해 서울의 초등학생 비중은 16.2%, 중학생 비중은 19.0%였던 반면에 고등학생 비중은 25.1%에 달했다. 1970년의 경우는 서울 인구의 비중은 17.6%였고 서울의 초등학생 비중은 13.4%였으나 중학생 비중은 20.1%, 고등학생 비중은 28.7%에 달했다. 그 5년 전인 1965년의 수치를 보면, 서울 인구의 비중은 13.0%였는데 초등학생의 비중은 11.4%, 중학생의 비중은 17.0%, 고등학생의 비중은 28.9%였던 것이다([표 2] 참조).

1969년부터 이른바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가 시행되고 1974년부터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던 중등교육 체제상의 중대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상의 수치를

해석해 보자. 그것은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 성적에서의 차이가 학교 간의 서열화에 뚜렷이 반영되던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서열이 높은 이른바 명문 학교들이 서울에 집중하면서[2] 그 학교 단계의 학생 수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역학이 작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학이 작동할수록 서울의 교육적 '중심'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울교육의 역사를 밝히는 일은 한국교육의 역사를 규명하는 작업의 일부인 동시에, 그것은 한국교육 중에서도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의 내용과 특질을 드러내는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라는 옛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제도나 기구, 문화가 우선적으로 서울에서 생겨나고 서울에 집중되는 경향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교육의 역사를 밝히는 작업은 비단 한국교육의 역사를 보다 심도 깊게 파악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는 우리 사회 전체의 역사를 포착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1. 서울교육의 개념

서울교육의 역사를 밝히기 전에 그 개념의 의미를 미리 정의해 두는 것이 오해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서울교육의 전반을 이루는 개념인 '서울' 개념의 의미부터 확인해 보자.

먼저 사전적으로 정의되는 '서울' 개념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다음은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서울' 항목의 내용이다.

2 예컨대 1963년 서울대학교 입학자 1,461명 중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의 입학자는 모두 1,014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경향신문》 1963년 2월 13일). 이는 명문 대학의 입학 성적에서 지역별 격차가 매우 심하고 특히 서울과 그 밖의 지역 간의 격차가 매우 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1]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곳. 경궐京闕, 경도京都 경락京洛, 경사京師, 경성京城, 경읍京邑, 경조京兆, 도부都府, 도성都城, 도읍, 도하都下, 수도首都, 수부首府. ↔ 시골.

서울[2] 한국의 수도. 북위 37°-25'-47', 동경 126°-45'-127°-11'. 북쪽에는 삼각산三角山, 서북에는 인왕산仁旺山·무악산毋嶽山, 동북에는 낙타산駱駝山·수락산水落山, 남쪽에는 관악산冠岳山이 각각 솟아 있고, 한강漢江이 그 안을 돌아 서남으로 흘러 황해로 들어감.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문화·상공업의 중심지. 백제의 시조始祖 온조왕溫祚王이 서울 부근에 나라를 세웠다가, 즉위 14년(B.C. 5)에 남한산南漢山으로 옮긴 뒤에 '북한성北漢城'이라 하였고,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 26년(371)에 다시 이곳에 도읍하였다가, 개로왕蓋鹵王 31년(475)에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에게 패하여 고구려의 남평양南平壤이 됨. 그 후 신라 진흥왕(眞興王) 14년(553)에 신라의 신주新州, 18년(557)에 북한산주北漢山州, 29년(568)에 남천주南川州, 진평왕眞平王 26년(604)에 다시 북한산주,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한주漢州의 한양군漢陽郡, 고려 태조 23년(940)에 양주揚州), 문종文宗 21년(1097)에 남경南京, 충렬왕忠烈王 34년(1308)에 한양부漢陽府, 조선 태조 3년(1394)에 한성부漢城府로 조선 왕조 500년의 도읍이 된 후, 융희隆熙 4년(1910)에 경성부京城府, 1945년 해방 후에 서울이라 고침. 창덕궁昌德宮·경복궁景福宮·덕수궁德壽宮을 비롯하여 명승과 고적이 많음. 서울특별시. [605.78km², 1,054만 3,993명(1996)][3]

서울[1]은 일반명사고 서울[2]는 고유명사다. 영어로 표기하면 전자는 'capital'로 표기되지만 후자는 'Seoul'로 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서울교육사》에서 '서울'의 의미는 주로 후자 즉 고유명사로서의 그것을 의미한다. 다만 언제나 그것으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때로는 전자의 의미로도 활용될 것이다. 예컨대 고려 시대의 서울교육은 고유명사 '서울'의 당시 명칭이던 '남경南京'에서 전개된 교육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그와 함께 당시의 수도인 개경開京에서 전개된 교육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3 이희승, 《국어대사전》, 수정판, 민중서림, 2014, 1986쪽.

2. 서울교육의 범주

다음으로 '서울교육'이라는 범주가 포괄하는 대상을 '서울교육'의 후반을 이루는 '교육' 개념과 관련하여 정의해보자. 교육은 예컨대 '인간 행동의 의도적, 계획적인 변화'를 위한 모든 영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혹은 '특정 사회에서 성인 세대가 후 세대에게 의도적으로 지식, 가치, 행동양식 등을 전수하는 과정'으로서의 '사회화' 등과 같은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폭넓은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학교'라고 하는 형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위, 특히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교육 체제하에서 전개되는 영위로 특정하여 정의된다. 따라서 이 책에서의 '교육'은 공교육 체제 안에 포섭되어 있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즉 학교교육을 주로 의미한다. 다만 초·중·고등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영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면에서 교육 개념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하여 유아교육 및 대안학교 교육, 평생교육 등의 대상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공교육의 범위 밖에 존재하기는 하나 사교육 등도 필요한 경우 다룰 것이다.

'서울교육'의 역사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교육 관련 중앙행정기구인 교육부(예전의 문교부 혹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같은 지방 교육행정기구에 의해 이루어진 각종 법제 및 정책, 학교기관 등의 변천사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으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때로는 학교 현장의 안과 밖에서 실제로 형성된 교육 관련 문화, 예컨대 학습도구나 교실 환경, 학생들의 제복이나 급식, 과외나 입시학원과 같은 사교육의 실태 등도 다루게 될 것이다.

공시적으로 볼 때 '서울교육'의 범주는 이상과 같지만, 통시적으로 포착할 때 그것은 1945년 광복 이후에 오늘날까지 '서울'로 불리게 된 지역의 교육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울교육'의 범주 안에는 일반명사로서의 그것, 즉 과거제가 실시되고 그와 연계되어 국가에 의해 교육기관이 설치, 운영된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근대 이전 국가에서 전개된 교육 및 관련 학교 제도의 역사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외연을 확장한다. 또한 19세기 말 개항 이후에 국가에 의해 근대교육이 모색되고 민간 부문에서 광범한 교육운동이 전개되던 개항기에 서울에서 전개된

교육 그리고 통감부의 지배를 거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제강점기의 서울에서의 교육도 다루게 된다.

제2절 서울교육의 시대별 특징

여기서는 통시적으로 서울교육을 크게 세 시대로 시기 구분하여 각 시대별 특징을 간단히 약술한다. 그 시대란 '전근대', '근대', '현대' 등 세 시대다. 엄밀한 논리적, 이론적 근거에 입각한 구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시대의 명칭을 준용하여 취한 시기 구분이다. 여기서 전근대 시대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를 거쳐 918년부터 1392년까지의 고려시대, 1392년 조선의 건국에서부터 1876년 강화도조약을 분기점으로 하는 개항기까지의 시대를 가리킨다. 근대는 조선이 개항하여 세계와 본격적으로 접촉하며 근대 문명과 교섭하기 시작한 1876년부터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가 종식되는 1945년 광복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현대는 1945년 광복에서부터 3년간의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오늘날에 이르는 시기다. 전근대 및 근대의 교육은 제1권에서 다루며, 2권부터 4권까지는 현대의 교육을 다룬다.

각 시기별 서울교육 및 그것이 우리 사회의 교육 전체 안에서 지니는 위상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1권부터 4권까지의 본론 서술에 맡기도록 하고, 여기서는 '전근대' '근대' '현대' 서울교육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약술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1. 전근대 서울교육의 특징

서울의 의미를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의 그것으로 포착할 때, 서울교육 안에는 우리 땅에서 과거에 성립했던 나라들의 수도에서 전개된 교육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수도에서의 교육 중에서도 역사 기록을 통해 존재가 분명히 확인되는 학교 제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교육적인 제도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기서 다루어야 할 본격적인 최초의 것은 고려시대의 중앙 교육기관 및 과거제도다.

918년에 개국한 고려 왕조는 체제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인재 등용 제도로 과거제를 958년(광종 9)에 도입했다. 통일신라시대에도 이른바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와 같은 제도를 통해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는 방식이 없지 않았고, 또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과거제라는 인재 등용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라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 실시되고 그것이 교육의 발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은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고려의 과거제는 제술업製述業, 명경업明經業, 의업醫業, 복업卜業 등 네 분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중 경학經學과 관련되는 제술업과 명경업이 가장 중시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음서蔭敍를 통한 관리 충원이 지배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급제한 이들이 우대되었으며 이는 문장과 경학을 공부해 과거에 급제하고 관리가 되는 것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에 기여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11세기 후반부터 중국의 송宋 왕조와의 교류를 통해 고려로 도입된 신유학新儒學의 사상적, 학문적 영향력이 가세하게 된다. 이 흐름은 13세기 후반부터 남송南宋과 원元의 성리학 수용을 통해 더욱 강해진다. 예컨대 14세기 안향安珦에 의한 주자학의 수용과 그 확산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과거제 그중에서도 경학을 중심으로 하는 제술업과 명경업의 중시는 경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한 교육적 영위와 제도의 발전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 기록으로 추적할 수 있는 고려 초의 학교들이 몇몇 확인되기는 하나, 가장 뚜렷한 교육사적 의의를 지닌 것은 992년(성종 11) 12월의 국자감國子監 창설이다.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국자감의 교육은 이후 과거제와 밀접히 결부되어 갔다.

국자감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과거제 운용은 무신 집권기나 몽고 침입의 상황에서도 면면히 지속되었고, 14세기부터는 국자감을 성균감成均監 또 성균관成均館으로 개칭하면서 성리학 중심으로 국학을 계속 발전시켰다. 그런데 고려 후기에는 이러한 조정에 의한 국학國學 외에도 저명한 문신들에 의한 사학私學 역시 상당히 활성화되었다. 최충崔沖이 이른바 구재九齋를 세워 길러낸 많은 제자들이 문헌공도文憲公徒로 불리며 고려의 학문을 발전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편 수도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학교를 세워 학문을 진흥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고려 중기 이후 향교鄕校의 설립과 운영이 그 예다.

이상과 같은 고려시대의 교육은 이어지는 조선시대의 교육 발전에 역사적인 선구로서의 의미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392년에 건국한 조선은 그 수도를 1394년에 한양漢陽으로 정했다. 1399년에 수도는 일시 개경으로 환도했으나 다시 1405년에 한양으로 다시 복원되었다. 한성부漢城府로 개칭된 한양은 일국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다. 즉 한성부에는 고려시대의 그것을 계승한 국학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비롯해 사학四學 등의 관학 그리고 유학 교육만이 아니라 무학武學과 잡학雜學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제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

성균관은 고려시대인 1362년에 처음으로 사용된 국학의 명칭인데 조선시대로 접어든 이후에도 이는 변함 없이 계승되었다. 성균관의 유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200명이었고, 원칙적으로 소과小科인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 그리고 그들로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학의 생도나 공신의 자제 중 일부를 시험을 통해 선발해 충원했다. 성균관의 수학 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대과大科에 합격하면 그것이 졸업을 의미했다. 성균관 유생들의 교육과 생활에서 준수되어야 할 수칙으로 학령學令이 제정, 운영되었는데 그것은 사학이나 향교 등의 다른 관학에도 준용되었다는 점에서 성균관은 조선시대 교육에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교육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 학령은 1582년에 〈학교모범學校模範〉으로 더욱 정교화되었다. 성균관은 단지 유생들의 교육

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과시課試'라는 시험을 유생들에 대한 권학 제도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이후 과거시험과 연계되어 간다. 과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에게 부여되는 은사가 문과 응시에 활용되는 등, 성균관의 과시 자체가 인재 선발 제도로도 활용되기도 한 것이다.

한편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아래 단계의 교육기관으로 한성부에는 네 곳에 이른바 사부학당四部學堂이 관학으로 설립되었다. 이 사부학당은 고려 말 개경에 설치되었던 오부학당이 한성부로 옮겨오면서 사부로 전환된 것으로 중부, 동부, 서부, 남부학당이 그것이다. 사학에서도 유생들은 과시 제도를 통해 시험을 치르고 우수한 유생은 과거 시험에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유학 관련 교육기관 외에도 과거제의 또 다른 영역인 무과 및 잡과와 관련된 교육기관이 한성부에 설치, 운영되었다. 무과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 훈련관訓鍊觀(이후의 훈련원訓鍊院)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상의 무학武學이었다. 그와 함께 현직 관리의 교육과정으로서 1406년에 설치된 십학十學 중의 '무학武學' 그리고 1422년에 도입된 '무경습독관武經習讀官' 제도가 있었다. 무과 출신자나 병조 및 훈련관의 관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를 통해 이루어졌다. 훈련원에서의 무학 교육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학을 별개의 독자적 교육기관으로 설치하자는 무학별설론武學別設論이 한때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실화되지 못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다시 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훈련원과 같은 무학이 지방에도 설치되게 되었다.

한편 유학이나 무학 외에도 여러 전문분야의 기술관을 양성하는 잡학 교육체제가 조선시대에 갖추어져 있었다. 잡학은 보통 그것이 다루는 전문 영역을 직접 관장하는 행정관서에서 운영했다. 예컨대 조선 전기에는 역학譯學은 사역원司譯院에서, 의학醫學은 전의감典醫監과 혜민서惠民署에서, 음양학陰陽學은 관상감觀象監에서, 산학算學은 호조戶曹에서, 율학律學은 형조刑曹에서, 화학畫學은 도화서圖畫署에서, 도학道學은 소격서昭格署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이들 잡학의 생도 수는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 현격히 늘어나는데 이는 각 분야가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인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잡학 교육기관은 한성부에만 존재한 것은 아니었

다. 역학, 의학, 율학의 경우는 지방에도 설치되어 있었으며, 지방의 잡학 생도 중 총명하고 민첩한 자를 차출하여 한성부의 잡학으로 보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었다.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관리의 선발 임용 제도인 과거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했다. 달리 말하여 학교를 통한 양사養士와 과거를 통한 취사取士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운영된 것이다. 요컨대 유학, 무학, 잡학 계통의 학교를 통해 인재를 기르고 그들을 문과, 무과, 잡과의 과거를 통해 선발하여 등용하는 체제가 구비돼 있었던 것이다. 과거제의 기본적인 틀을 약술해 보면, '소과' 또는 '사마시司馬試'로 불리는 생원·진사시와 '대과'로서의 문과로 구성되는 계열, 무과 계열, 잡과 계열 등으로 삼분되어 있었다.

생원·진사시는 각기 초시와 복시 등 두 단계로 구성되었는데 초시는 지역별로, 복시는 초시 합격자들을 한성부에 모아 치르는 시험이었다. 주로 사서오경 및 《소학》《가례》 등의 경서에 대한 이해와 문장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대과는 초시-회시-전시 등 세 단계로 구성되었는데, 초시는 다시 성균관에서 치르는 관시館試, 한성부에서 치르는 한성시漢城試, 지방에서 치르는 향시鄕試로 구분되었고 모두 초장-중장-종장의 삼 단계로 시험이 치러졌다. 지역별 초시에서 선발된 240인이 한성부에서 회시를 치르고, 그들 중 최종적으로 선발된 33인이 일종의 순위 시험인 전시를 치러 3인의 갑과, 7인의 을과, 23인의 병과로 순위가 매겨지는 틀이었다. 그런데 초시 합격자 240인 중 관시가 50인, 한성시가 40인, 경기 향시가 20인으로 되어 있어 모두 110인이 사실상 한성부에서 선발되었기 때문에 문과 초시 합격자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달했다.

무과의 경우는 문과와 달리 소과는 없고 대과만으로 이루어졌다. 무과는 초시, 회시, 전시의 세 단계로 치러졌는데 초시는 서울과 경기의 경우 훈련원에서 그리고 다른 곳은 지역별로 치러 총 190인을 선발했다. 훈련원시의 선발인원 70인은 전체 초시 선발인원 190인의 약 3분의 1 정도였다. 한성부에서 치러지는 무과 회시에서는 최종적으로 28인이 선발되었으며, 마지막 단계 전시에서는 그 28인을 대상으로 하여 순위를 매겨 3인의 갑과, 5인의 을과, 20인의 병과로 가려지고 각 과별로 벼슬이

주어졌다.

전문적인 기술관을 선발·등용하는 잡과에는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 등 네 종류가 있었다. 잡학에 훨씬 많은 종류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관리 등용 제도로서의 잡과는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 잡과는 초시와 복시 두 단계로 나뉘며 그것은 실무 부서의 책임하에서 운영되었다. 문과나 무과와는 달리 전시가 없다는 점 그리고 지방에서 치르는 초시가 없고 모두 한성부에서만 초시와 복시를 모두 치른다는 점이 달랐다.

한편 조선시대의 학교를 통한 교육은 거의 대부분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예외적으로 의녀醫女 교육이 혜민서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장악원掌樂院을 통해 기녀妓女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의 교육은 주로 가정에서의 한글 교육 및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나 《내훈內訓》 《여사서女四書》 등 언해본이 있는 여성 교훈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2. 근대 서울교육의 특징

중국, 일본 등과의 교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회와의 접촉을 피했던 조선 왕조는 19세기 말에 동아시아로 접근해 오는 제국주의 세력들과의 조우를 끝내 피할 수 없었다. 그 만남은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어 1866년의 병인양요와 제너럴셔먼호 사건, 1871년의 신미양요 등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지만, 여전히 조정은 쇄국 방침을 견지했다. 그러는 동안 동일하게 근대 이전 유교 문명권에 속해 있었으면서도, 막번제幕藩制라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유지해 오던 인근 나라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국가로 탈바꿈했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조선을 향한 외교적, 군사적 공세를 시작했다. 그런 흐름 속에서 1876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서 마침내 외국을 향해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성리학 위주의 전통적인 교육체제를 500년가량 유지해 온 우리 사회는 유학적인 세계관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제국주의적인 침탈과 국제 경쟁 상태에 대한 대

응을 불가피하게 요구받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전통교육과는 다른 근대교육을 향한 다양한 시도도 출현한다. 최초의 개항장 중 하나였던 원산에서 1883년에 개명적인 지방 관리에 의해 창설된 '원산학사'의 등장, 1885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해 창시된 '배재학당'과 그 이듬해 스크랜턴에 의해 창시된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이화학당', 같은 해 조선 조정에 의해 만들어진 '육영공원' 등이 그 선구적인 사례들이다.

다만 이상과 같이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진 근대교육의 시도가 전면적으로 사회개혁의 추동력으로 작동하려면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교육개혁이 병행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필요성은 민간 부문에서의 근대학교의 창설보다 조금 뒤늦게 1894년의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근대적인 교육 법제가 제정되는 방식으로 발현되었다. 같은 해의 〈홍범 14조〉 발표, 이듬해의 〈교육에 관한 조칙〉 발포와 학부의 창설, 〈소학교령〉을 비롯한 근대적인 교육 법제의 공포 등이 그 제도적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에 의한 근대적 교육개혁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발발한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등으로 인해 순조롭게 전개되기 어려웠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 침략을 본격화해 통감부에 의한 지배를 강화한 1905년 이후, 일본 제국주의는 교육 영역에서는 1906년의 〈보통학교령〉 발포를 통해 조선에서의 기존의 근대적 교육기관을 보통학교 중심의 식민지적 교육체제하에 재편성하려 했다. 그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들은 1907년 이후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4,000~5,00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사립학교를 설립해 일제의 교육적인 침략에 대응하는 한편 근대교육을 통한 국권 회복을 시도했으며, 일제는 이에 대해 사립학교에 대한 견제와 억압, 철폐 정책 등으로 대응했다.

1910년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강제 병합된 이후, 사립학교 중심의 근대교육을 위한 한국인의 주체적 노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조선에 식민지 교육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된다. 1910년대의 제1차 〈조선교육령〉 하에서의 교육체제는 이른바 '간이·실용'을 표방하면서 교육 연한 및 교육내용에서 일본인 대상의 교육보다 저급한 것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한국인들은 보통학교 중심의 식민지 교육기관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오히려

1910년대에는 전통적 교육기관인 서당에 대한 취학자들이 급격히 증대되기까지 했다.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하여 폭발한 강압적인 식민 통치에 대한 한국인들의 저항은 일제의 통치방침에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그것은 교육 부문에서는 1922년의 제2차 〈조선교육령〉 발포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한국인과 일본인의 교육상의 차별은 초등교육에서의 보통학교와 소학교의 구별, 중등교육에서의 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와 중학교·고등여학교의 구별 등에서 보이듯이 여전했다. 그렇지만 교육 연한에서는 조선 내의 일본인 거류민 대상 교육기관이나 일본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게 만드는 이른바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가 적용되었다. 이는 보통학교 등 식민 교육기관에 대한 한국인의 취학 행위에 큰 변환을 초래하여 1920년대 이후 이른바 '향학열' 또는 '교육열'이 급격히 발흥하게 된다.

1910년대까지 보통학교에 비해 우위를 점했던 서당은 1920년대 이후 취학 규모상으로 서서히 위축되어 가는 한편, 보통학교 취학자는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 전반의 '삼면일교제三面一校制'와 후반의 '일면일교제一面一校制', 1930년대 전반의 '제2차 조선인 초등교육 보급확충계획' 등 일련의 보통학교 보급 정책을 추진했다. 이들 정책은 한편으로는 보통학교 설립 비용의 거의 절반가량을 한국인들의 기부금 조성으로 전가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보통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식민주의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통해 보통학교의 취학률을 비약적으로 고조시키는 효과를 빚었다.

그런데 1920년대 이후의 이러한 보통학교 팽창과 취학자의 증대는 그에 상응하는 중등학교의 팽창을 수반하지 않았다. 일제는 식민 통치 기간 내내 중등 및 고등교육 기회를 한국인에게는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교육 기회에서의 민족차별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1920년대 이후 중등 이상의 학교에서의 입학 경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렬해졌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이 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존재했던 중등교육기관으로 6년제 보통학교 졸업생이 진학하는 5년제 고등보통학교(및 4년제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제 또는 5년제의 실업

학교, 2년제의 실업보습학교 등이 있었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학제로 운영된 실업학교와 사범학교의 입학자 선정은 수험을 통한 학력 평가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민족별 정원제를 암묵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교육 기회에서의 민족 차별을 온존시켰다.

한편 고등교육을 보면, 1924년에 최초의 입학생을 받아들인 예과로부터 시작된 경성제국대학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대학이었다. 그 밖에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등 고등교육 단계의 사립 전문학교가 존재했고 또 공업이나 농업, 의학 부문에서 관립전문학교 등이 일부 존재했다. 경성제국대학 및 관립전문학교는 한국인 일본인 공학 체제를 유지했으나 민족별 입학 정원제를 암묵적으로 유지하여 고등교육 기회에서의 민족 차별은 중등 이상으로 격심했다.

한편 보통학교의 훈도訓導를 양성하기 위한 사범학교가 1920년대부터 경성사범학교를 필두로 하여 관립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1920~1930년대 내내 경성, 평양, 대구 등 3개의 사범학교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1930년대 후반에 보통학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각지의 주요 도시에 사범학교가 점차 증설되기 시작했다. 모든 사범학교는 한국인 대상 보통학교와 일본인 대상 소학교의 교원을 길러내기 위해 한국인과 일본인 공학 체제로 운영되었고 역시 입학정원에서 암묵적인 민족별 정원제가 유지되었다.

일제강점기에 '경성'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게 된 서울에는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하여 각급 교육기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사회적인 위신이 높았던 것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전문학교 단계에서도 보성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등 대표적인 사립 전문학교들이 경성에 포진해 있었고 법학전문, 의학전문, 공업전문, 상업전문 등 관립전문학교들도 일제강점기에는 상당수가 경성에 설립되어 있었다.

한편 중등교육 단계에서도 광복 이후 경기중고교, 경복중고교, 경기여중고 등으로 불리게 되는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경성제이고등보통학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등이 경성에 소재하고 있었다. 이들 중등학교는 일제강점기 내내 최고의 입

학경쟁률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졸업생들의 제국대학 또는 전문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에서도 발군의 성적을 보였다. 그것은 사범학교 단계에서도 확인되는데, 1922년에 설립된 경성사범학교는 다른 여타 사범학교보다 한 단계 높은 급의 사범학교로 간주되어 그 졸업생들에게는 승급 등에서 특전이 부여되었으며, 급기야 1943년에는 사범학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문학교급으로 승격했다.

1931년의 만주사변, 1937년의 중일전쟁 등으로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침략전쟁을 위한 총동원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법제상의 민족 차별을 은폐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한국인 교육기관과 일본인 교육기관의 명칭을 통일함으로써 보통학교는 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개칭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으나 여전히 학교 운영은 민족 별학 체제를 유지했다. 오히려 3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보통학교에서의 조선어 교과교육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는 개악이 일어났다.

이런 경향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더욱 강화되어 일본에서의 〈국민학교령〉 및 조선에서의 〈국민학교규정〉 발포로 인해 소학교는 다시 국민학교로 개칭되었으며, 그 교육과정에서의 황민화 교육 및 천황제 이념의 주입, 군국주의적 훈련 등의 성격이 한층 강화되었다. 국민학교에서의 이른바 '국어 상용' 및 조선어 교과의 폐지가 그 뚜렷한 예다. 전쟁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자체가 강제적인 근로동원으로 변질되고 급기야 전시체제하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 연한이 절대적으로 단축되는 등의 왜곡으로까지 치달은 끝에 일본 제국주의는 1945년 8월 15일 패전을 선언하며 항복하게 된다.

3. 현대 서울교육의 특징

광복 이후 현재까지 약 80년간 이어진 서울교육의 흐름을 이하에서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제1기는 광복에서부터 1968년 이전까지의 시기다. 광복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남북한으로 분단되고, 미군정이 관할하는 남한 지역에 위치했던 경성은 1946년 8월 15일, 공식적으로 '서울특별시'가 되었다. 미군정 하에서 '한국교육위원회' 및 '조선교육심의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한국인은 일시 중단되었던 학교 교육을 복원하고 한글로 된 새로운 교과서를 보급하며, 일본인 교육자들을 한국인으로 대치하는 한편, 억눌렸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급 학교를 확충하는 등의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하에서 1949년 말에 〈교육법〉 체제가 형성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최초로 의무교육이 법제화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체제가 정비되고 의무교육 정책이 실현되려는 바로 그 시점에서 남북한의 전쟁이 발발했다. 6·25 전쟁으로 인해 한국 사회 전체가 인적, 물적으로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교육도 예외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부산에서의 전시연합대학 및 폐허가 된 국민학교 교정에서의 '노천교실' 등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인의 교육은 지속되었다.

전쟁 중이던 1951년에는 〈교육법〉을 개정하여 오늘날과 같은 6·3·3·4 학제가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의무교육 기관인 국민학교와 그에 뒤이은 3년간의 중학교에서의 교육은 공통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일반 교육으로 통일하고, 그 이후의 후기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고등학교에서는 공통 교육과정을 가르칠 뿐 아니라 학생 진로에 따라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교육과 취업을 위한 실업교육도 나누어 실시하는 매우 평등한 성격의 학제였다.

전쟁이 종식된 후 이승만 정부는 당시 국민들의 숙원이었던 초등교육의 의무교육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54년부터 1959년까지 6년 동안 국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국민학교의 완전 취학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을 집행하였다.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교육열이 뒷받침되어야만 했다. 한편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의무교육 단계 이상의 학교 교육, 즉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대학의 팽창은 주로 사립학교의 증설에 의존하여 실현해 나가는 방침을 통해 교육 팽창을 실현했다.

1960년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여 일어난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시대

가 시작된다. 이 시기는 교원노조 결성 운동으로 대표되는 교육 민주화 운동의 전개가 보여주듯이 학교 교육이 독재 권력의 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표출되었으며, 각급 학교에서 학생운동이 빈발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 정부는 안정적으로 교육 및 사회개혁을 이루지 못한 채로 1년여 만에 1961년 5월 군사정변에 직면하며 종식된다.

5·16 군사정변 이후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초기에는 고등교육 억제책 및 교육자치제의 전면적 후퇴 등 보수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승만 정부에 뒤이어 초등교육의 의무교육제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도 병행했다. 의무교육제는 이승만 정부 시대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6·25 전쟁 후에 태어난 다수의 신생아들, 즉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새로운 세대가 거대한 파도처럼 국민학교로 몰려들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들 대규모의 학령아동 집단을 수용하여 적어도 초등교육 6년간의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특단의 정책을 세워야만 했다. 그것이 박정희 정부 전기에 실시된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계획〉의 두 차례에 걸친 계획과 집행이었다. 즉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병행하는 제1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계획(1962~1966)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병행하여 제2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계획(1967~1971)이 그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교육 팽창 정책은 초등교육의 의무교육화 수준으로 그칠 수 없었다. 초기에는 중등교육 단계 이상의 교육 기회를 억제하는 기본적 방침으로 대응했지만, 국민학교의 의무교육제 확충은 필연적으로 초등교육 이수자들 중에서 더 높은 단계의 교육, 즉 중등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진학 희망자의 격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중학교 입시경쟁의 격화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했으며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박정희 정부는 요구받았다. 또 한편으로는 박정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구한 경제개발정책과 근대화 노선은 그에 상응하는 국민 및 인력 양성의 방향으로 학교 교육을 재편할 필요성을 고조시키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박정희 정부는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 및 〈국민교육헌장〉 선포와 같은 교육사적인 전환기의 의미를 지닌 정책에 착수하게 된다.

제2기는 1968년부터 1995년까지의 시기다. 정치적으로 보면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에 걸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유지되던 시기다. 교육사에서 보면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969년부터 시작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 1974년부터의 고교평준화 체제, 1981년부터의 대학 정원 증대 등 일련의 교육 기회 확대 정책을 통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소수의 엘리트 중심의 교육기관에서 대중화 심지어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 정도로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국민교육헌장〉 선포로 대표되는 국가주의적 교육정책이 유지되었다는 것 등이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와 고교평준화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무시험 배정이라는 입시제도 개혁 정책의 양상을 띠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중학교 이어서 고등학교 진학에서 학력 평가라는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진학자를 급증시켰다는 점에서 1970년대 중등교육의 급격한 팽창에 기여했다. 중등교육 팽창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제다. 중학교 교육의 의무교육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계획되기 시작했으며, 1982년부터의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2~1986)에서는 핵심적인 교육정책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흐름은 1985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이어져 중학교 의무교육화에 관한 법제가 만들어졌다.

한편 고등교육의 팽창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1980년 7월 30일에 발표된 이른바 '7·30 교육개혁' 조치였다. 이 개혁의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대학입시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며,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외를 포함한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 정원을 확대하여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학 정원을 일거에 30%가량 증대시킴으로서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상과 같은 교육 팽창 과정과 병행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적 통제가 강화되었다. 1968년 12월의 〈국민교육헌장〉 발포를 계기로 하여 각급 학교에서의 국민교육이 강화되고, 교육행정, 교육과정 및 학교 규율 등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는 현격히 강화되었다. 국어와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고교 이상에서의

군사훈련 실시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주의적 교육정책의 기조는 전두환 정부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기에도 기본적으로 지속되었다.

평등주의적이면서도 국가주의적인 한국교육의 특질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한 정치 민주화 그리고 1989년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계기로 한 교육 민주화의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1990년대 중반의 전면적인 교육개혁에 이르게 된다.

제3기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와 민주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점차 진행되어 가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강화다.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작용한 것은 1995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구상되고 집행된 이른바 '5·31 교육개혁'이었다.

정부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라는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신교육체제 수립'이라는 타이틀의 표현이 말해주듯 이전까지의 교육체제를 근본적, 총체적으로 개혁한다는 구상을 담은 것이었다.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은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 도입,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 교사 평가제 도입, 교육자치제 실현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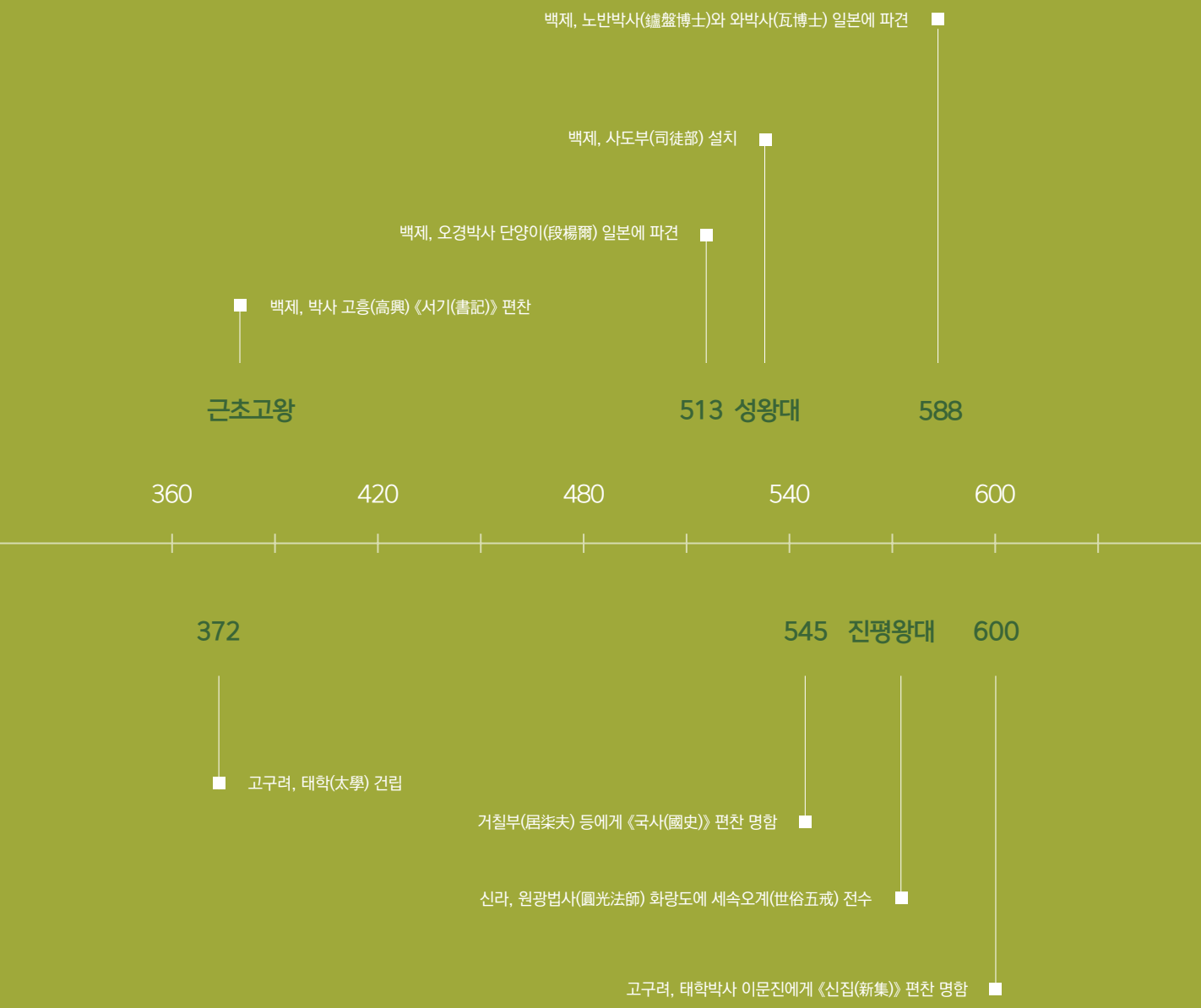
5·31 교육개혁의 산물로, 〈교육법〉 대신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회교육법〉(1999년 8월 31일,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으로 구성된 새로운 교육 법제가 제도화되었다. 또한 1968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한국교육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상징해 온 〈국민교육헌장〉이 1994년에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교육 기회의 배분과 관련해서도 교육개혁은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교육다양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별개로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 특목고가 제도화되었고, 이런 흐름은 이후 자율화고, 자사고의 제도화로 이어짐으로써 1970년대 중반부터 유지되어 온 고교평준화 체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상에서 요약해 살펴본 광복 이후 한국교육의 흐름 속에 서울교육을 자리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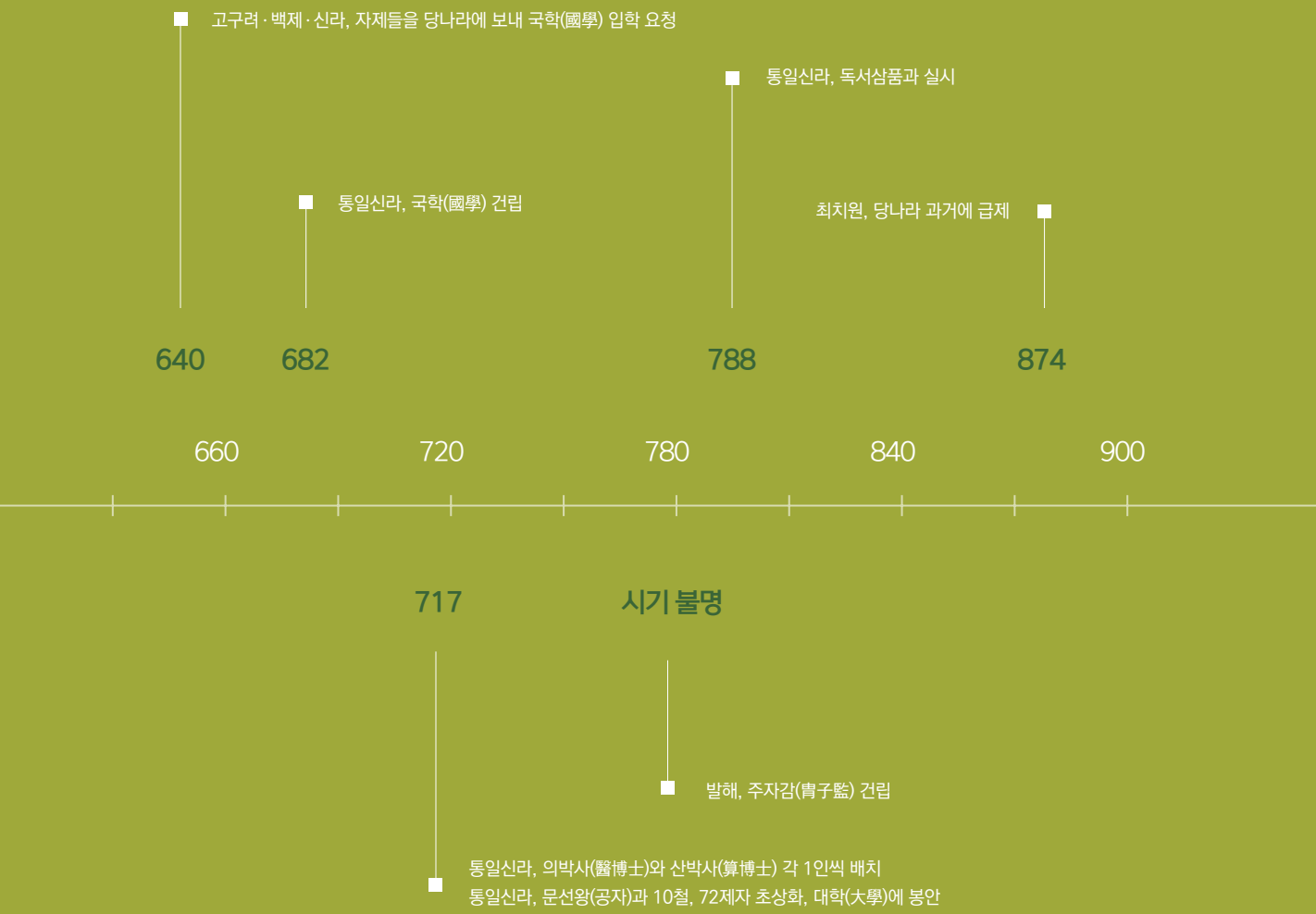
하여 볼 경우, 그 특질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 제1기에 서울교육은 요컨대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하는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이 모여 있는 서울에 대학입학 성적이 가장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이른바 명문 중등교육기관 역시 집중됨으로써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재를 흡인하는 중심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을 중심이자 정점으로 하는 일극 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제2기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와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중등학교의 서열화가 크게 해체되는 한편, 교육자치제 역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 위축됨으로써 학교 교육에서도 지역의 차이가 사라지는 균질화가 진행되었고 그만큼 서울교육의 특질이 성립할 여지도 약화되었다. 그런데 제3기에 교육의 지방화, 민주화가 진행되고 교육자치제가 활성화되는 한편으로 고교평준화 체제에 변화가 생기면서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서울교육의 특질이 형성될 여지가 현격히 신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서울교육의 미래는 교육자치제 하에서의 서울시민들의 교육적 선택과 교육감의 지향성 여하에 따라 유동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장 고대 사회의 교육


백제, 노반박사(鑪盤博士)와 와박사(瓦博士) 일본에 파견
백제, 사도부(司徒部) 설치
백제, 오경박사 단양이(段楊爾) 일본에 파견
백제, 박사 고흥(高興) 《서기(書記)》 편찬
근초고왕
513 성왕대
588
360
420
480
540
600
372
545 진평왕대
600
고구려, 태학(太學) 건립
거칠부(居柒夫) 등에게 《국사(國史)》 편찬 명함
신라, 원광법사(圓光法師) 화랑도에 세속오계(世俗五戒) 전수
고구려, 태학박사 이문진에게 《신집(新集)》 편찬 명함

제1절 삼국시대 교육기관과 교육내용

제2절 통일신라 국학의 교육내용과 발전 양상



제 1 절

삼국시대 교육기관과 교육내용

1. 삼국시대 교육의 국가별 양상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교화가 중요하고 교화는 학교로써 근본을 삼았다.[1] 고대 위정자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교육의 보급이었으므로 교학을 급선무로 여겼던 것이다. 한국의 고대 국가들 역시 국가 발전기에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백성을 교화하고자 하였다.

한국 고대 교육제도와 관련해 그동안 연구 성과가 꾸준히 축적되었는데, 삼국 가운데 교육제도를 먼저 갖춘 나라는 고구려로 확인되고 있다. 고구려 지역에서는 기와, 전돌, 석각, 묵서명, 청동기 명문 등 많은 문자 자료가 발견됨으로써, 한자 문화가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수림왕 2년인 372년에는 태학太學을 두어[2]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태학은 중앙의 교육기관으로 관료 군인과 귀족 자제들을 교육시켰다.[3]

1 《禮記》, 學記, "發慮憲 求善良 足以諛聞 不足以動衆 就賢體遠 未足以化民 君子如欲化民成俗 其必由學乎"

2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소수림왕, "2년 여름 6월 …… 태학을 세워 자제를 교육하였다."

3 정구복, 〈유학과 역사학〉, 《한국사》 8, 국사편찬위원회, 1981, 114쪽.

또한 관학의 설립과 함께 경당扃堂을 설치하였다.[4] 경당은 문헌에서 실체가 확인되는 한국 고대 교육기관으로 지방에 설립된 것이다.[5] 학생들이 미혼이었다는 것은 연령이 대체로 청소년으로, 고구려 경당은 신라의 화랑제도와 같이 미성년 교육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6]

경당에는 미천한 집안 출신까지 재학하고 있어 평민을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당에서 강독한 책이 오경, 《사기》《한서》《후한서》《삼국지》《진춘추》《옥편》《자통》《자림》《문선》[7] 등인 것으로 볼 때, 경당은 평민을 위한 초보적인 교육기관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태학과 달리 경당을 지방 촌락에 소재한 교육기관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경당을 왕도는 물론 대성大城 규모의 지방 주요 도시에 소재한 교육기관으로 파악하기도 한다.[8]

태학과 달리 경당이 언제부터 설립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어 분명하지 않다. 다만 태학이 설립된 372년 이후인 5세기 평양 천도(427년) 이후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록이 없어 태학이나 경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변화 발전상을 찾기는 어렵다. 한편 600년(영양왕 11)에는 왕이 태학박사 이문진에게 명하여, 국초의 《유기留記》라는 책 100권을 정리하여 《신집新集》 5권을 만들게 하였다. 고구려는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교육제도를 체계화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서를 편찬하였다.[9]

신라의 경우도 국가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관등제를 마련하는 등 6세기 무렵부

4 《구당서》 199 상, 열전149 상, 고려조, "사람들이 배우기를 좋아하여 구석진 마을과 미천한 집안까지도 서로 힘써 배우므로 길거리마다 큼지막한 집을 지어 扃堂이라 부르며,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을 이곳에 보내어 글을 외고 활쏘기를 익히게 하였다." 《신당서》 220, 열전145, 동이 고려조에도 같은 내용이 전하는데, 《신당서》에서는 扃堂을 局堂으로 표기하고 있다.

5 노용필, 〈고대의 교육과 인재 양성〉, 《한국사 시민강좌》 18, 일조각, 1996, 5쪽에서는 경당을 지방 평민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세운 공립 교육기관이라고 하였다.

6 이기백, 〈고구려의 경당 - 한국 고대국가에 있어서의 未成年集會의 一 遺制〉, 《역사학보》 35·36, 1967.

7 《구당서》 199 상, 열전149 상, 고려조, "경당에서 강독한 책으로 오경, 《사기》《한서》, 범엽의 《후한서》《삼국지》, 손성의 《진춘추》《옥편》《자통》《자림》이 있었고, 또 《문선》을 중요하게 여겼다."

8 이정빈, 〈고구려 경당의 설립과 의의〉, 《한국고대사연구》 67, 201, 348쪽.

9 정구복, 〈전통적 역사의식과 역사서술〉, 《한국학입문》, 대한민국학술원, 1983, 83쪽.

터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갔다.[10] 그러나 통일 이전 신라에서 고구려의 태학과 같은 관학이 운영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국학 설립 이전 교육기관의 성격을 지니는 것을 화랑도라고 이해하고 있다.[11] 안정복도 "신라의 용인지술用人之術에는 화랑을 쓰는 방법이 있고, 학교의 제도는 없었다."라고 하였다.[12] 화랑제를 인재를 발굴하고 조정에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13] 한편 원광의 "세속오계"를 통해 교육의 단서를 유추할 수 있다.[14] 세속오계는 화랑도 교육의 덕목으로 이해되고 있다.[15] 이는 신라 청년들에 대한 교육이 중국의 문물을 습득한 승려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승려들이 불교 교리뿐 아니라 유학의 덕목도 지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16]

진흥왕은 재위 6년인 545년에 《국사》를 편찬하였다. 또한 영토를 순수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이러한 국가체제 정비를 통해 진흥왕대에는 화랑도뿐 아니라 궁중 내에 양나라의 국학에 버금가는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을 가능성도 추정하고 있다.[17]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서도 유학을 학습한 내용이 전한다.[18] '충' 관념을 바탕

10 하일식,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2006.

11 이기동, 《신라 骨品制 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이기동, 〈花郎像의 변천에 관한 覺書〉, 《신라문화》 5, 1988; 高明士도 화랑도를 文武合一의 교육적 성격을 띤 것으로 이해하였다(高明史 지음, 吳富尹 옮김, 《한국교육사연구》, 대명출판사, 1995, 63쪽).

12 《동사강목》 4 하, 신문왕 2년 6월조.

13 이병도, 〈삼국시대의 유학〉, 《한국유학사》, 이세아문화사, 1987, 38~39쪽; 이기동, 〈신라 화랑도 연구의 현 단계〉, 《이기백 선생 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 1994; 이기동, 《신라사회사연구》, 일조각, 1997, 239쪽; 박남수, 〈신라 中古期 화랑도의 교육과 出仕〉, 《역사교육》 108, 2008, 102~113쪽.

14 《삼국사기》 권45, 열전5, 貴山, "세속오계는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이다."

15 《삼국유사》 권4, 의해5, 원광서학에서 원광은 589년(진평왕 11)에 중국 진나라로 유학을 갔는데, 승려가 되기 이전에 이미 "노장학과 유학을 두루 섭렵하였고 제자서와 역사서를 연구하였다.'라고 하였다.

16 한영화, 〈신라의 國學 교육과 관인 선발〉, 《신라사학보》 45, 2019, 339쪽.

17 노중국, 〈신라와 고구려·백제의 인재 양성과 선발〉,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 논문집》 19, 1988, 46~47쪽; 김복순, 〈신라 불교계의 인재 양성과 선발〉,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 논문집》 19, 1988; 김복순, 《한국 고대 불교사 연구》, 민족사, 2002, 305~306쪽.

18 〈임신서기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忠道를 지키고 허물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일 이 서약을 어기면 하늘에 큰 죄를 지는 것이라고 맹세한다. 만일 나라가 편안하지 않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우면 '충도'를 행할 것을 맹세한다. 곧 詩經·尙書·禮記·春秋傳을 차례로 3년 동안 습득하기로 맹세하였다." 임신년이라는 작

으로 지행합일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경》《상서》《예기》《춘추전》의 구체적인 학습 내용과 3년이라는 학습 기간을 명시하여 당시의 교육상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러한 신라의 유학교육 발전은 통일신라 시기 국학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상으로 고구려와 통일 이전 신라의 교육기관과 교육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서울교육사》 고대 편과 관련해서 가장 관련이 깊은 나라는 한강에 터전을 잡은 백제와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일 것이다. 따라서 《서울교육사》의 고대 편에서는 백제와 통일신라를 중심으로 교육기관과 교육내용에 대해 천착해 보고자 한다.

2. 백제 태학의 설립과 교육내용

1) 박사의 출현과 태학의 설립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지금의 서울인 한강 유역에서 나라를 세우고 국가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특히 국가에 필요한 관료를 양성하고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교육에 힘썼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사서에는 교육기관의 명칭이나 관련 기록이 명확히 찾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백제 교육사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19] 한성시기 교육기관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나 내용을 확증하기는 어렵다.

교육과 관련된 단서는 근초고왕대의 박사 고흥高興 기록과 무령왕과 성왕대에 왜국에 박사를 파견했다는 기록이다. 이를 통해 박사라고 칭하는 학자들이 있어 역

성 연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한국고대사회연구소 엮음, 《역주 한국고대 금석문》 II, 1992, 175~176쪽).

19 高明士, 〈백제 학교교육의 발전〉, 《백제연구》 별책, 1982; 高明士, 앞의 책, 1995; 노중국, 앞의 글, 1998; 양기석, 〈백제 박사제도의 운용과 변천〉, 《백제문화》 49, 2013; 김용흥, 〈고대중국의 博士官에 관한 연구〉, 《역사교육논집》 13·14, 1990; 이강범, 〈西漢의 經書 정리와 박사 제도〉, 《중국어문학논집》 7, 1995; 福井重雅, 〈秦漢時代における博士制度の展開: 五經博士の設置をめぐる疑義再論〉, 《東洋史研究》 54(1), 1995; 郭齊家 지음, 이경자 옮김, 《중국의 고대학교》, 도서출판 원미사, 2004; 福井重雅, 《漢代儒教の史的研究》, 汲古書院, 2005 등.

사서를 편찬하거나[20] 왜국에 파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관學官의 사서 찬술은 중국에서도 한나라 이래로 그러한 제도가 있어왔다.[21]

문제는 사료에 보이는 박사가 국왕의 자문관이었는지 아니면 교육에 종사하는 제도상의 학관이었는지 하는 것이다.[22] 한나라 무제 때에 진나라의 '자문관적 박사'의 성격을 탈피하여 태학에 박사를 둔 것이 교육기관에 박사를 둔 기원이 되었다. 경제 때에는 동중서가 박사가 되어 제자들에게 강의하다가, 무제 초에 동중서가 현량賢良 대책으로 정식으로 태학의 설립을 건의하였다. 이것이 중국 최초의 태학이라는 관학 교육의 모습이다.[23]

근초고왕 시기에는 박사 고흥뿐 아니라 박사 아직기와 왕인도 보인다. 이들의 파견 주체가 근초고왕인 점과 이들이 왜국에 파견되어 유학을 가르친 것을 보면, 근초고왕대에 활동한 여러 명의 박사는 국왕의 단순한 자문관이라기보다는 교육제도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근래 중국에서 백제 유민에 대한 묘지가 속속 발견되면서, 백제 교육기관의 명칭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소개되었다. 바로 〈진법자陳法子 묘지墓誌〉이다.[24] 묘지에서 "증조부 진춘陳春이 태학정太學正으로 은솔恩率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25]

20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근초고왕 30년(375년) 조에 "古記에 이르기를 백제는 개국 이래 문자 記事가 없었으나, 이때에 이르러 博士 高興을 얻고서 비로소 書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흥은 다른 서적에는 보이지 않는다.

21 郭齊家 지음, 이경자 옮김, 앞의 책, 2004, 94~95쪽.

22 김용흥, 앞의 글, 1990, 881~906쪽; 郭齊家 지음, 이경자 옮김, 앞의 책, 2004, 102쪽에서는 "중국 고대 박사제도는 전국 시기 제나라와 노나라에서 기원하였다.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한 후 전국 시기의 박사제도를 계승하여 중앙에서 6개국의 박사를 소집하였는데, 모두 70여 명이나 되었다. 진대의 박사는 일종의 자문관으로, 그 직무는 '정사를 논하고 자문을 구하며 고전을 장악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

23 拜根興, 〈入唐百濟移民陳法子墓誌涉及地名及關聯問題考釋〉, 《大明宮研究》 8, 2013, 270~271쪽.

24 2012년 중국 섬서성 서안시 大唐西市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던 〈陳法子 墓誌〉에 대한 도록이 소장처에서 발간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진법자 묘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胡戟·榮新江 主編, 《大唐西市博物館藏墓誌》, 北京大學出版社, 2012; 拜根興, 앞의 글, 2013; 김영관, 〈백제 遺民 陳法子 墓誌銘 연구〉, 《백제문화》 50, 2014 참조.

25 〈진법자 묘지〉, "君의 이름은 法子이다. 자는 士平으로 웅진 西部人이다. …… 증조 할아버지는 春이니, 본방인 백제의 太學正으로 恩率이다. 할아버지는 德止로 麻連大郡將이며 達率이다. 아버지는 微之이며 馬徒郡 參司軍으로 德率이다. ……"

'태학'이라는 학교 명칭과 '태학정'이라는 관직이 확인됨에 따라, 백제의 관학 기관이 태학이었고, 태학정이 태학의 장관일 것이라는 점에 견해가 모아지고 있다.[26]

진법자의 출생연도인 615년을[27] 기준으로 하면, 진춘이 태학정으로 백제 16관등 가운데 3품인 은솔과 같은 고위 관등에 오른 것은 40대 전후로 추정되므로 그 시기는 대략 565~595년이 될 것이다. 즉 위덕왕대(554~598년)로 보인다.[28]

그러나 백제에서 언제 태학이 만들어졌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교육기관의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근초고왕대[29]와 무령왕대[30]로 의견이 대별되고 있다. 근초고왕대라는 입장은 동진東晋의 태학이나 고구려의 태학을 모델로 유학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적 교육기관이 설치된 것으로 본 것이다.[31] 그러나 근초고왕대에 설치된 박사가 중국의 오경박사나 고구려의 태학박사처럼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학문과 교육을 담당하는 학관으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웅진시기 오경박사에 주목하여 무령왕대에 태학이 설립되었다고 보기도 한다.[32]

중국에서도 관학의 출현은 중앙집권화의 확립과 관료체제의 성립, 유교를 통치원리로 하는 군왕의 문교사업에 대한 진흥이 배경이 되었다.[33] 관리의 양성을 목표로 한 태학의 설립은 관료체제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갔음을 의미한다.[34]

26 胡戟·榮新江 주편, 앞의 책, 2012; 拜根興, 앞의 글, 2013; 김영관, 앞의 글, 2014; 김영심, 〈遺民墓誌로 본 고구려, 백제의 官制〉, 《한국고대사연구》 75, 2014; 정동준, 〈〈陳法子 墓誌銘〉의 검토와 백제 관제〉, 《한국고대사연구》 74, 2014; 박현숙, 〈백제 태학의 설립과 정비 과정〉, 《역사교육》 132, 2014; 배재훈, 〈백제의 태학〉, 《한국고대사탐구》 19, 2015 등.

27 〈진법자 묘지〉를 보면, 진법자는 615년 백제 西部에서 출생하여 680년 중국 낙양에서 7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28 김영관, 앞의 글, 2014와 정동준, 앞의 글, 2014 참조.

29 이병도, 〈자료 한국유학사 초고〉, 서울대학교 국사연구실, 1959, 27쪽; 高明士, 앞의 글, 1982, 8쪽; 이기백,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1986, 197쪽; 노중국, 앞의 글, 1998; 김영심, 앞의 글, 2007, 112~113쪽; 김영심, 앞의 글, 2014, 198쪽 등.

30 양기석, 앞의 글, 2013, 137쪽; 김영관, 앞의 글, 2014, 118쪽; 정동준, 앞의 글, 2014, 190~191쪽.

31 高明士, 앞의 글, 1982, 82쪽; 이병도, 앞의 책, 1959, 27쪽; 이기백, 앞의 책, 1986, 197쪽; 김영심, 앞의 글, 2014, 198쪽.

32 양기석, 앞의 글, 2013, 134~135쪽; 김영관, 앞의 글, 2014, 118쪽; 정동준, 앞의 글, 2014, 191쪽.

33 高明士, 앞의 글, 1982, 80쪽; 高明士, 앞의 책, 1995.

34 임기환, 〈4~7세기 고구려 관등제의 전개와 운영〉, 《한국 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 아카넷, 2000, 200쪽.

따라서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백제 영역을 크게 확장하고 지방통치 조직을 마련하는 등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정비한 근초고왕대에는[35] 관학을 설립할 환경이 숙성되었다. 고구려가 372년에 태학을 설립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근초고왕대에 왕족이나 귀족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존재 가능성은 충분하다.[36]

또한 한군현漢郡縣의 영향도 그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백제는 한군현과 활발히 교류하였고 한군현계 지식인이 백제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37] 한군현 출신 관인들은 경서와 역사에 능통하고 행정실무에도 밝았으며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 백제의 체제 정비나 대외관계 업무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였다.[38] 이미 중국의 교육제도를 경험한 한군현 출신 관인들의 역할과 백제 근초고왕대 동진과의 교류를 생각한다면, 웅진기인 무령왕 시기보다는 근초고왕대에 태학이 설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성시기 백제의 태학에서는 교수관인 박사를 두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을 것이다.

2) 오경박사와 태학의 정비

근초고왕대에 설립된 태학은 6세기경인 무령왕대(501~523년)에 이르러 정비,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무령왕과 성왕 시기에 오경박사와[39] 관련된 기록들이

35 노중국, 《백제 정치사 연구》, 일조각, 1988, 253~268쪽; 박현숙, 〈한성 백제의 중앙집권화 정도에 대한 연구의 평가〉, 《백제의 왕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총서 4), 한성백제박물관, 2014.

36 근초고왕 시기에 고구려 침입 때 백제 장군인 막고해가 도가의 말을 인용한 것을 볼 때, 노자 사상 등이 백제 상류계층에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백제지역에서 출토되는 여러 문자 자료나 왜에 보낸 칠지도 명문, 개로왕대에 북위에 보낸 문서 등을 통해서 당시의 유학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37 오영찬, 《낙랑군연구》, 사계절, 2006, 193~211쪽.

38 윤수희, 〈백제의 인적교류-5세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111~122쪽; 정동준, 〈백제의 중앙관제에 미친 중국 왕조의 영향에 대하여-중앙관사의 구성을 중심으로-〉, 《사림》 44, 2013, 109~113쪽.

39 김유철, 〈양 천감초 개혁정치에 나타난 관료체제의 신경향〉, 《위진수당사연구》 1, 1994, 141~148쪽; 양기석, 앞의 글, 2013, 137쪽, "중국 한대의 오경박사는 동진 말기부터 오경박사의 구분이 없어지고 태학박사로 통칭되었으며, 劉宋과 南齊 시기에서 오경박사 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조교가 경전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유학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양 무제가 유학자들을 대거 등용하고 국학을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박사 2인만을 설치하였으나, 505년 정월에 五館에 오경박사를 두어 이를 관장하게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오경五經은《역경》《서경》《시경》《춘추》《예기》로, 오경박사는 한 가지 경서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경학박사이다.[40]

무령왕은 513년 6월에 오경박사 단양이段楊爾를 왜국에 파견하였다. 오경박사들은 일정 기간 왜국에 체류하면서 유학과 불교 등 선진문물을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41] 무령왕대에 오경박사가 문헌에 많이 보이는 것은 양나라 무제의 오경박사 부흥책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42] 그러나 오경박사가 소속되었던 백제의 교육기관은 양나라와 같은 '국학'이 아닌 '태학'이었다. 〈진법자 묘지〉에 보이는 진춘이 태학정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6세기 중·후반인 위덕왕대이므로,[43] 근초고왕대 설립된 태학이 웅진, 사비시기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고 생각된다.

백제 사비시기에는 행정부서 22부 가운데 외관인 10부에 의례와 교육을 담당하는 사도부司徒部가 있었다. 태학은 사도부 소속기관으로 유학교육과 관료의 선발 및 양성을 담당하였다.[44] 태학정은 태학의 최고 책임자로 보이지만,[45] 태학의 설립 시점부터 태학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성왕대에 양나라의 예학 전문가 육후陸詡를 통해《주례》의 이념을 받아들여 중앙 관제와 제사 체계를 정비할 즈음에[46] 태학을 사도부의 속사로 하고 태학

하였다."

40 이강범, 앞의 글, 1995, 176쪽.

41 《일본서기》 권17, 繼體天皇 7년(513)조 여름 6월조와 계체천황 10년(516)조 및《일본서기》 권19, 欽明天皇 15년(554) 2월조 참조.

42 양기석, 앞의 글, 2013, 137쪽에서는 오경박사가 소속된 교육기관을 梁과 같은 國學으로 보고, 무령왕대에 백제의 교육기관인 국학이 처음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았다.

43 김영관, 앞의 글, 2014와 정동준, 앞의 글, 2014 참조.

44 노중국, 앞의 글, 1998, 44쪽과 양기석, 앞의 글, 2013, 142쪽.

45 김영관, 앞의 글, 2014; 정동준, 앞의 글, 2014.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天智天皇 시대(661~671년)에 소위 大學寮가 창립되었다. 대학료에 대해서는 久木幸南,《日本古代學校の研究》, 玉川大學出版部, 1990; 高明士, 앞의 글, 1982, 80쪽; 高明士, 앞의 글, 1997, 20~23쪽; 桑田訓也, 〈일본 고대 교육제도의 특징〉,《신라 국학 수용과 전개》(제7회 신라학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3, 301~319쪽 등 참조. 한편 백제에서 태학정은 관직명에 '正'이 사용된 최초의 사례로, 고대 일본의 司의 장관인 '정'(정6위 상 또는 정6위 하)도 백제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박현숙, 〈백제 태학의 설립과 정비 과정〉,《역사교육》132, 2014 참조).

46 이기동,《백제사연구》, 일조각, 1996, 177쪽; 조경철, 〈백제 聖王代 儒佛政治理念-陸詡와 謙益을 중심으로-〉,《한국사상사학》15, 2000, 13~14쪽.

정을 최고 책임자로 하는 태학의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47] 즉, 백제의 국가 체제가 정비되고 유학 수준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이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관학 교육의 내용과 체제가 정비·발전된 것이다.

3) 태학의 교육내용

관학 교육의 주요한 목표는 관리의 양성이었으며, 교육기관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신분제를 바탕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인재 선발을 주로 천거제薦擧制나 궁술[弓箭] 등의 무술 실력으로 하다가[48] 관학과 같은 교육기관과 결합하게 되었다.[49]

백제의 태학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유교 경전과 서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50] 고대 중국의 교육사를 참고해 보면, '육예六藝'와[51] '육경六經'이 중요한 교육내용이었다. '육예' 가운데 '예'는 예의와 예법을 말하고, '악'은 노래와 춤, 악기를 결합한 종합 예술로서 '악'은 제사와 각종 경축 활동 및 전쟁에서 사용되었다.[52]

그리고 육예 가운데 '사射'와 '어御'는 정서 도야와 관련된 것이었다. '사'는 활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어'는 말을 타는 등의 기술훈련으로서 오늘날의 군사훈련 및 체육훈련에 해당된다. 삼국이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재를 등용할 때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무예였다. 무예의 연마를 통한 인재 등용의 장으로는 전렵畋獵·열병閱兵·습사習射 등이 있었는데,[53] 삼국 가운데 열병이 가장 빈번한 나라가 백제였

47 정동준, 앞의 글, 2014, 192쪽; 김영심, 앞의 글, 2014, 199쪽.

48 노중국, 앞의 글, 1998, 74~78쪽.

49 이동휘, 〈新羅 選官制度 槪述〉, 《지역과 역사》 13, 2003, 69~84쪽.

50 남풍현, 〈고대 한국에 있어서 漢籍·佛典의 전래와 수용에 대하여〉, 《서지학보》 31, 2007, 5~34쪽; 김영심, 〈관리의 선발과 양성〉, 《백제의 정치제도와 군사》(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8),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112~113쪽.

51 '육예'의 명칭은 《주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주시대의 주요한 교육내용이었다.

52 김성혜, 〈백제 국가의례의 종류와 음악〉, 《한국음악사학보》 46, 2011, 5~51쪽.

53 이기백, 앞의 글, 1967; 이기백, 《한국고대 정치사회사 연구》, 일조각, 1996; 이정빈, 앞의 글, 2012, "《구당서》와 《신당서》 고구려전을 보면, 고구려 경당에서 유교 경전과 활쏘기를 익혔다."라고 하였다.

다.[54] 백제를 비롯한 삼국에서도 '사'와 '어' 교육이 중시되었다.[55]

또한 육예 가운데 '書(서)'와 '數(수)'는 기본 지식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56] '서'는 글쓰기 및 글자 익히기 교육을 말하며, '수'는 셈하기를 말한다.[57] 태학에서는 유학의 경전을 중심으로 교육하였을 것이다. 또한 육예와 관련된 '예'와 '악', '사'와 '어', '서'와 '수'도 연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서》《예》《악》《역》《춘추》를 '육경'이라고 하는데,[58] 그 가운데 《악경樂經》이[59] 빠지면서 '오경'이 되었다.[60] 백제에서도 오경박사가 태학에서 각각 하나의 경經을 전문적으로 교육하였을 것이다. 또한 유교 경전과 함께 《사기》《한서》《후한서》 등의 역사서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41년(성왕 19)에는 양나라에 모시박사를 요청하였다. 또 강례박사를 요청해 육후陸詡가 백제에 왔다. 모시박사는 《시경》을 전공한 전문가이며, 강례박사는 《예기》를 강독하는 전문가이다. 성왕이 모시박사와 강례박사를 초빙한 시기도 양나라 무제 때이다.[61] 백제에서 오경의 대표 경전인 《시경》과 《예기》 전문가를 초빙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유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태학을 중심으로 유학 교육

54 《주서》 권49, 열전41, 異域 上 百濟傳과 《수서》 권81, 열전46, 東夷 百濟傳을 보면, 백제에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노중국, 앞의 글, 1998, 83~84쪽에서도 "백제의 경우 매월 朔望에 習射를 실시하였으며, 왕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활쏘기를 습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렵이나 열병·습사는 군사훈련이 주목적이었으나, 훈련과정에서 무예가 뛰어난 자들을 관료로 선발하기도 하였다."라고 하였다.

55 이경자, 〈중국 고대의 六藝 교육〉, 《윤리교육연구》 22, 2010, 166쪽.

56 이경자, 앞의 글, 2010, 172쪽에 보면, "《예기》 〈내칙〉에서는 '서'와 '수'는 기초지식교육으로 西周 시기에 소학 과정에서 익혔고, '射'와 '馭'는 열다섯 살, '禮'는 스무 살에 배우기 시작한다."라고 하여 육예를 배우는 순서를 적고 있다.

57 郭齊家 지음, 이경자 옮김, 앞의 책, 2004, 45~47쪽.

58 何懷宏, 〈중국의 유학 전통과 태학(국자감)〉, 《대동문화연구》 34, 1999, 61~62쪽, "한나라 때 6권의 책이 '經'으로 존칭되면서 육경이 경전으로 공식화되었다."

59 이경자, 앞의 글, 2010, 163~166쪽에서 "《악경》은 오경에서 제외되었지만, 고대의 제왕은 '음악'을 통해 후손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마음을 감화시켰으며, 백성을 순화시키고자 하였다."라고 하였다.

60 福井重雅, 앞의 글, 1995; 福井重雅, 앞의 책, 2005; 이경자, 앞의 글, 2010, 158쪽.

61 노용필, 〈고대의 교육과 인재양성〉, 《한국사 시민강좌》 18, 1996, 7쪽; 소현숙, 〈梁 武帝의 불교 정책〉, 《한국고대사탐구》 2, 2009.

이 심화되고 전문화되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백제에서는 태학 교육 이외에, 일찍부터 행정과 외교 등 중국과의 교류나 서예와 같은 취미생활 및 교양을 위해서도 유학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62] 6·7세기 이전부터 유교 경전이 백제 사회에 광범위하게 유입되었으며, 백제인들의 유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삼국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국가에 필요한 관리를 양성하고 백성을 교화하며 국가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62 《주서》 백제전에 "풍속에 騎射를 중시하고, 아울러 古書와 史書를 소중히 여겼다. 그들 가운데 특별한 자는 문장을 잘 짓고 풀이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구당서》 백제전에도 "그들의 서적으로 오경과 子部와 역사서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한편 인천 계양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에 《논어》 공야장편이 기록되어 있었다.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발견된 6~8세기경의 목간에서도 《논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6번지 유적에서 《논어》 목간 총 17점이 출토되었는데(김성식·한지아, 〈부여 쌍북리 56번지 사비한옥마을 조성부지 유적 출토 목간〉, 《목간과 문자》 21, 2018, 342~346쪽), 구결 방식의 흔적이 보인다(권인한, 〈부여 쌍북리 논어목간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목간과 문자》 23, 2019, 202쪽).

제2절

통일신라 국학의 교육내용과 발전 양상

1. 국학의 설립과 교육내용

삼국통일 이전 신라의 교육은 승려와 화랑도를 매개로 확산되었다. 충효 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덕목이 강조되었고, 군사훈련을 병행하여 당시 신라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7세기 중반에 치열했던 삼국 간의 전쟁이 종식되고 당과의 항쟁이 마무리되면서, 통일된 신라는 이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체제를 구축해야 했다.

새로운 통치체제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화였다. 이에 신문왕은 일원적인 관료체제 수립을 위해 녹읍 혁파와 녹봉 지급을 단행하는 한편 지방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이 과정과 궤를 같이하여 682년(신문왕 2)에 국학을 설립하였다.[63]

국학의 설립은 통치체제 정비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단행되었으므로, 그 교육내용은 유교적 교화가 중심이 되었다. 통일신라시기에는 국학 이외에 지방에도 학교가 있었겠지만,[64]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중앙의 관학인 국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63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2년.

64 高明士, 앞의 책, 1995, 56~57쪽에서는 747년에 지방 관학으로서의 州學이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1) 국학의 설립

국학의 설립은 관학을 통한 교육의 집중화와 일원화이자 그 교육내용이 규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65] 국학은 통일신라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이전까지의 화랑도를 대체하여 관료를 양성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국학이 설치된 초창기의[66] 실상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국학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국학의 설립 시기와 입학 자격 그리고 관인 선발과 관련된 독서삼품과의 성격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먼저 국학의 설립 시기는 682년(신문왕 2)에 설치되었다는 견해와[67] 651년(진덕왕 5)에 설치되어 682년(신문왕 2)에 완비되었다는 견해로 나뉜다.[68] 전자는 《삼국사기》 본기와 직관지의 "신문왕 2년에 설치되었다."라는 기록에 근거한다. 후자는 《삼국사기》 직관지의 "국학 관원 중 대사大舍 2명을 진덕왕 5년에 두었다."라는[69] 기록과 682년에 세워진 〈문무왕릉비〉에 보이는 '국학소경國學少卿'과 '대사'의 명칭에 기반한다.[70]

682년에 국학이 정식 설립되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국학의 교육내용은 이미 삼국시기에 수용되어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71] 따라서 682년의 국학 설립 기록에도 불구하고, 651년 중간 관리자급 관원을 둔 것은 '설치' 의도의 개연성이 있다. 651년은 국정을 장악한 김춘추가 삼국 간의 쟁패를 앞두고 체제를 공고히 하기

65 한준수, 〈신라 중대 국학의 설치와 운영〉, 《한국고대사탐구》 17, 2014, 54쪽.

66 국학의 설립 시기에 대한 연구사 검토는 정호섭, 〈신라의 국학과 學生祿邑〉, 《사총》 58, 2004와 한준수, 〈신라 국학의 수용〉, 《신라 국학과 인재 양성》, 민속원, 2015 참조.

67 李基白, 〈新羅骨品體制下의 유교적 정치이념〉, 《대동문화연구》 6·7, 1970; 앞의 책, 1986, 228쪽; 高明士 지음, 吳富尹 옮김, 《한국교육사연구》, 대명출판사, 1995, 52쪽; 고경석, 〈신라 관인 선발제도의 변화〉, 《역사와 현실》 23, 1997, 94쪽; 이명식, 《신라 정치변천사 연구》, 형설출판사, 2003, 212쪽; 정호섭, 앞의 글, 2004, 48쪽; 전덕재, 〈신라의 독서삼품과: 한국 과거제도의 前史〉, 《한국사 시민강좌》 46, 2010, 3쪽; 이영호, 〈신라 국학의 성립과 변천〉, 《역사교육논집》 57, 2015, 71쪽; 주보돈, 〈신라의 국학 수용과 그 전개〉, 《신라 국학과 인재 양성》, 민속원, 2015, 29쪽.

68 이기동, 〈신라 중대의 관료제와 골품제〉,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124쪽; 한준수, 앞의 책, 2015, 62~63쪽.

69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 상, "禮部 …… 大舍二人 眞德王五年置"

70 이영호, 〈신라 문무왕릉비의 재검토〉, 《역사교육논집》 8, 1986, 72쪽.

71 이기백, 〈유교 수용의 초기 형태〉, 《한국민족사상사대계》 2, 1973; 이기백,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1986, 194~195쪽.

위해 적극적으로 당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던 시기였다. 특히 당에 체류하던 중 국학에 가서 석전과 강론에 직접 참여하고 돌아와서 실무를 맡을 관리를 임명하였으므로 실제로 국학을 설치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는 힘들었겠지만,[72] 7세기 이후 신라의 교육기관인 국학이 비로소 설치되었다는 것은 고구려나 백제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늦다. 따라서 651년(진덕왕 5)에 김춘추에 의해 준비가 되었고, 682년(신문왕 2)에 정식 설립하여 단계적으로 국학의 체제를 갖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학의 입학과 출학

국학에 대해서는《삼국사기》직관지 국학조에 국학의 입학 자격, 교육내용과 독서삼품과 등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먼저 국학의 입학 자격(관등·연령)과 출학 규정을 보면[73] 입학 연령을 15세~3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학 연한은 9년을 기본으로 하되, 중도에 탈락하거나 연한을 넘길 수도 있음을 단서조항으로 달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학은 관등이 제10관등인 대나마와 제11관등인 나마에 이르면 내보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15~30세라는 연령에 대해서는 국학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 또는 최대 재학 가능 연령으로 해석하고 있다.[74] 화랑도의 활동 연령이 15~18세임을 고려하면,[75] 대체적으로 15세 정도에 국학에 입학하여 9년 이내에 정규과정을 마치고 관리로 임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학에는 9년의 학습 연한이 있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그

72 주보돈, 앞의 책, 2015, 27쪽.

73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 상, "무릇 학생은 관등이 대사 이하로부터 무위로, 15세에서 30세까지인 사람을 모두 채웠다. 연한은 9년인데, 만약 어리석고 미련하여 따르지 못하는 자는 그만두게 하였다. 만약 재주와 도량은 이룰 만한데 아직 미숙한 자는 비록 9년을 넘더라도 재학을 허락하였다. 관등이 대나마와 나마에 이르면 국학에서 내보낸다."

74 이희관, 〈신라 중대의 국학과 국학생-《삼국사기》 38 국학조 학생 관계 규정의 재검토-〉, 《신라문 화제 학술발표회 논문집》 19, 1998, 106~107쪽; 정호섭, 2004, 앞의 글, 51~52쪽.

75 이기동, 앞의 책, 1984, 339~340쪽.

이전이라도 퇴학시킨다는 규정[76] 그리고 추가 재학을 허용하는 규정[77] 등이 있었다.

주지하듯이 신라는 골족과 품족이 구분되는 신분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제1등부터 제17등까지로 관등이 구분되어 있었다. 이 중 진골은 특권 신분층으로 제1등 이벌찬부터 제5등 대아찬까지를 독점하였고, 6두품은 제6등 아찬까지만 오를수 있었고, 5두품은 제10등 대나마까지만 오를 수 있었다.[78] 관인 선발이 국학이나 과거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았고 여전히 화랑도와 추천 방식의 특채가 있었기 때문에, 진골 귀족은 국학 입학을 선호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대나마나 나마 관등을 가지게 될 경우 출학한다는 규정은 출학 시의 관등 상한이 대나마와 나마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9년 재학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나마나 나마가 되면 출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4두품 이하는 9년의 공부를 다해야 하고, 5두품 이상은 입학 시 관위에 따라 9년의 재학 연한이 되지 않아도 출학할 수 있게 된다. 입학할 때 이미 관등을 보유했다는 것은 당나라에서 5품 이상 관리의 자제들에게 문음 혜택을 준 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79]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고려해 본다면, 국학생은 주로 4~6두품이었을 것이다.

3) 국학의 교육내용

국학의 교육내용과 관련해 《삼국사기》 직관지 국학조에서는[80] 주로 주요한 경전을 나열하고, 다시 그것을 셋으로 분류하여 각각을 업業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학의 교과목은 《주역》《상서》《모시》《예기》《춘추좌씨전》《문선》《논어》《효경》 8과목으로,[81] 관학의 교과목은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반

76 한영화, 앞의 글, 2019, 353쪽.

77 박수정, 〈신라 국학의 敎授法과 관리 등용〉, 《역사와 교육》 26, 2018. 103쪽.

78 이기동, 앞의 책, 1984, 131~133쪽.

79 《新唐書》 권45, 지35, 選擧志下 用蔭.

80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 상 國學, "교수법은 《주역》《상서》《모시》《예기》《춘추좌씨전》《문선》으로, 이를 나누어 業으로 삼았다. 박사 또는 조교 1명이, 혹은 《예기》《주역》《논어》《효경》으로 혹은 《춘추좌전》《모시》《논어》《효경》으로 혹은 《상서》《논어》《효경》《문선》으로서 교수하였다."

81 《舊唐書》 권44, 지24, 직관3 國子監. 당나라는 《주역》《상서》《주례》《의례》《예기》《모시》《춘추좌씨전》

영된 것이었다.[82]

국학의 교육내용은《논어》와《효경》이 기본 과목이었고, 세 개의 업業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 이수 기간을 당의 제도를 참고하여 추정해 보면,[83] ①《예기》3년,《주역》2년,《논어》1년,《효경》1년으로 총 7년의 수학, ②《춘추좌씨전》3년,《모시》2년,《논어》1년,《효경》1년으로 총 7년의 수학이다. 반면 ③《상서》1.5년,《논어》1년,《효경》1년으로,《문선》을 제외하면 합이 3.5년인데,《문선》의 학습 연한은 당나라 사례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①과 ②의 교육 기간이 각 7년이므로,《문선》을 포함한 ③의 교육 기간도 유사했을 것이다.

국학의 교과목에서 주목되는 것은《문선》이 특별히 편성된 것이다. 신라의 교과목은 당의 그것에서《주례》와《의례》《공양전》과《곡량전》을 제외하였고, 당이나 일본에는 없는《문선》이 포함되어 있다.[84]《문선》은 고구려에서도 중시하였다. 또한 독서삼품과에서도《문선》은 상품上品을 받기 위한 응시과목으로, 신라에서 상당히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경전 학습은 유학적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라면,《문선》은 문학 역사 철학과 관련된 여러 글을 모아 놓은 것으로 읽기와 쓰기 연습을 위한 문예 교과의 성격이 짙다. 이는 7세기의 격변을 거치면서 당과의 외교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는데, 그 소통을 한문으로 작성한 외교문서로 하였다.[85]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당나라와 달리《문선》이 국학의 교과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직관지 국학조와 신라본기 등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국학 설치 이후에도 교수관의 증원, 학과의 신설과 같은 학제 개편이 여러 번 있었다.[86] 성덕왕대

《공양전》《곡양전》《효경》《논어》로 11과목을 교육하였다. 반면《令義解》권11, 學令11, 凡經에 의하면, 일본은《주역》《상서》《주례》《의례》《예기》《모시》《춘추좌씨전》《효경》《논어》총 9과목이었다.

82 김영하, 앞의 책, 2007, 215~216쪽.

83《신당서》권44, 지34, 選擧志上.

84 노용필,〈신라 국학의 교육내용과《문선》〉,《신라 국학과 인재 양성》, 민속원, 2015.

85 허권수,〈《문선》의 한국 전래와 그 유행에 관한 小考〉,《중국어문학》8, 1984, 108쪽.

86《삼국사기》직관지 국학조에서는 "國學은 禮部에 속하였는데 682년(신문왕 2)에 설치했으나, 景德王이 大學監으로 고쳤고 惠恭王이 본래대로 되돌렸다."라고 하였다.

에는 의박사·산박사를 각각 1명을 두었고,[87] 경덕왕대에는 국학의 여러 업에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88]

성덕왕과 경덕왕대의 산학과 설치와 교육과정 개편은 유학교육과 산학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통문박사로의 개칭은 문서행정 관련 사무가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산학교육의 측면에서는 전정제丁田制 시행 및 당시 조부·창부의 규모 확대에서 짐작되는 수학 관련 사무의 증가가 주목된다.[89] 이와 같이 성덕왕(702~737년), 경덕왕(742~765년), 혜공왕(765~780년)대는 정치 상황에 따라, 국학의 명칭이나 관원 수 및 교과목 개편 등을 통해 국학의 변화를 모색하였다.[90]

2. 도당유학생의 증가와 독서삼품과의 실시

《삼국사기》 직관지 국학조에는 독서삼품과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 있다.[91] 독서삼품과는 관료 선발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 원성왕 4년 기록을 보면,[92] 독서삼품과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활쏘기로 인재를 선발

87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8, 성덕왕 16년 2월.

88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8, 경덕왕 6년 정월. 산학박사와 조교 1명을 뽑아 《綴經》《三開》《九章》《六章》 등을 가르쳤다.

89 윤준혁, 〈신라 국학생의 구성과 학생녹읍〉, 《신라사학보》 60, 2024, 307쪽.

90 《삼국사기》 직관지 국학조에서는 "卿은 1명으로 경덕왕이 司業으로 고쳤으나, 혜공왕이 다시 경으로 칭하였다. 관등[位]은 다른 卿과 동일하다. 박사는 약간 명으로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조교도 약간 명으로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다. 大舍는 2명으로 진덕왕 5년에 두었다. 경덕왕이 主簿로 고쳤으나, 혜공왕이 다시 대사로 칭하였다. 관등이 舍知에서 奈麻까지인 자를 임명하였다. 史는 2명이었는데, 혜공왕 원년(765)에 2명을 더하였다."라고 하였다.

91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 상, "모든 학생은 글을 읽고 이로써 3등급으로 벼슬길에 나갔는데[讀書以三品出身], 《춘추좌씨전》 또는 《예기》 또는 《문선》을 읽고 능히 그 뜻에 통달하고 겸하여 《논어》와 《효경》에도 밝은 자를 上으로 삼고, 《곡례》《논어》《효경》을 읽은 자를 中으로 삼고, 《곡례》와 《효경》을 읽은 자는 下로 삼았다. 만약 오경과 三史, 諸子百家書를 능히 모두 통달한 자는 특별히 발탁하여 임용하였다[超擢用之]."

92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원성왕 4년, "봄에 처음으로 讀書三品을 정함으로써 出身하게 하였다. 《춘추좌씨전》이나 《예기》《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며 《논어》와 《효경》에 모두 밝은 자를 上品으로, 《곡례》와 《논어》《효경》을 읽은 자를 中品으로, 《곡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下品으로 삼았다. 혹 오경·삼

하였다는 것이다. 활쏘기는 육예의 하나로 육덕·육행과 함께 중국의 고대 교육에서도 중요한 교육과정이었다.[93]

독서삼품과의 실시는 활쏘기 등 추천을 통해 입사하던 방식에서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관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독서삼품과가 당나라와 같은 과거제도적[94]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독서삼품과의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먼저 국학의 졸업시험으로 보는 견해이다.[95] 직관지의 사료가 국학 항목의 중간에 들어 있다는 점과 시험 과목이 대체로 국학의 교육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국학생을 위한 시험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번째 견해는 독서삼품과의 대상이 국학생만은 아니라는 것이다.[96] 독서삼품과의 시험 과목과 국학 교과목을 비교해 보면, 기본 과목인 《논어》와 《효경》은 포함되어 있지만, 국학의 교과목 중 《주역》《모시》《상서》는 빠져있다. 또한 《춘추좌씨전》은 있지만, 《예기》는 〈곡례〉 편만 포함되었다.

특히 독서삼품과의 초탁超擢 규정을 보면, "오경, 삼사, 제자백가서를 모두 '통通'해야 한다." '오경'은 국학의 교육내용이지만, '삼사'는 중국의 역사서이고 특히 '제자백가서'는 국학의 교과목이 아닌 다양한 사상서이다. 유학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와 사상을 포함한 한학漢學 전반에 걸친 수준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학의 교육내용과는 이질적인 면이 있다.

독서삼품과의 초탁 규정과 관련하여, 도당유학생을 지방관으로 발탁한 사례들이 보인다. 도당유학생이 본격적으로 등용되기 시작한 것은 원성왕 때이다. 원성왕

사·제자백가의 글을 널리 통달한 자는 등급을 뛰어넘어 발탁하여 임용하였다. 예전에는 다만 弓術로써 만 사람을 선발하였으니, 이때에 이르러 이를 고쳤다."

93 이경자, 앞의 글, 2010, 166쪽.

94 《구당서》 권44, 지24, 직관3 국자감, "중국 당대에는 과거제도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학생들도 이에 적용되었고, 이들은 관학에서 시험을 치루어 합격한 자에 한하여 尙書禮部로 올려졌고, 여기서 다시 시험을 치루고 관리로 임용되었다."

95 이기백, 〈통일신라기 유교사상의 성격〉, 《한국고대사론》 증보판, 일조각, 1995, 120쪽; 노용필, 앞의 글, 1996, 13쪽; 고경석, 〈신라 관인 선발제도의 변화〉, 《역사와현실》 23, 1997, 100쪽.

96 高明士 지음, 吳富尹 옮김, 앞의 책, 1995, 174쪽; 이영호, 〈신라 국학의 성립과 변천〉, 《역사교육논집》 57, 2015, 89쪽; 이희관, 앞의 글, 1988, 109쪽.

은 내물왕계로서, 중대 무열계와의 경쟁을 통해 왕권을 장악하여 점차 자신의 직계를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재판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조정에서 무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갔다.[97] 789년(원성왕 5)에 당나라 학생이었던 자옥을 지방관으로 임명하였다.[98] 또한 800년(애장왕 즉위년)에도 당에서 우찬성대부의 관직을 받은 양열이 귀국하자 그를 발탁하여 지방관으로 제수하였다.[99]

독서삼품과의 규정은 결과적으로 국학을 나오지 않은 당 유학생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다. 837년에 550명 정원의 당 국자감에 216명의 신라 도당유학생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100] 독서삼품과의 실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에서 빈공과에 급제하고 품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능력이 검증된 것으로 간주하여 독서삼품과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통일신라 하대에는 관인 선발이 국학과 독서삼품과로, 즉 국내파와 유학파가 서로 다른 임용 방식으로 관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원성왕대의 독서삼품과 실시에 이어 799년(소성왕 원년)에는 청주菁州 거노현居老縣(지금의 거제도)에 학생녹읍을 설정하였다. 학생녹읍의 설정은 원성왕대에 계속되는 재해와 구휼 조치로 인해 국가재정이 궁핍해지자, 국학의 재정적 독립을 추구한 것으로 일종의 국학 진흥책으로 이해된다.[101]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국학과 독서삼품과의 정비를 통해 관인 양성과 선발 제도

97 이기백, 앞의 책, 1995; 김창겸,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 경인문화사, 2003; 이문기,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15 참조.

98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5년 9월, "자옥을 양근현 小守에 임명하니, 집사부의 史 모초가 논박하여 "자옥은 文籍으로써 出身하지 않았으니 지방관[分憂之職]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였다. 시중이 의논하여 말하길, "비록 문적으로써 출신하지 않았더라도 일찍이 당나라에 들어가 학생이 되었으니, 또한 임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따랐다."

99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애장왕 원년 8월, "入唐宿衛學生이었던 양열에게 두잉현 小守를 제수하였다. 일찍이 당나라 덕종이 난을 피하여 봉천에 갔는데, 양열이 호종하여 공이 있었으므로, 右贊善大夫를 제수하고 그를 신라로 돌려보냈다. 그런 까닭에 왕이 발탁하여 그를 등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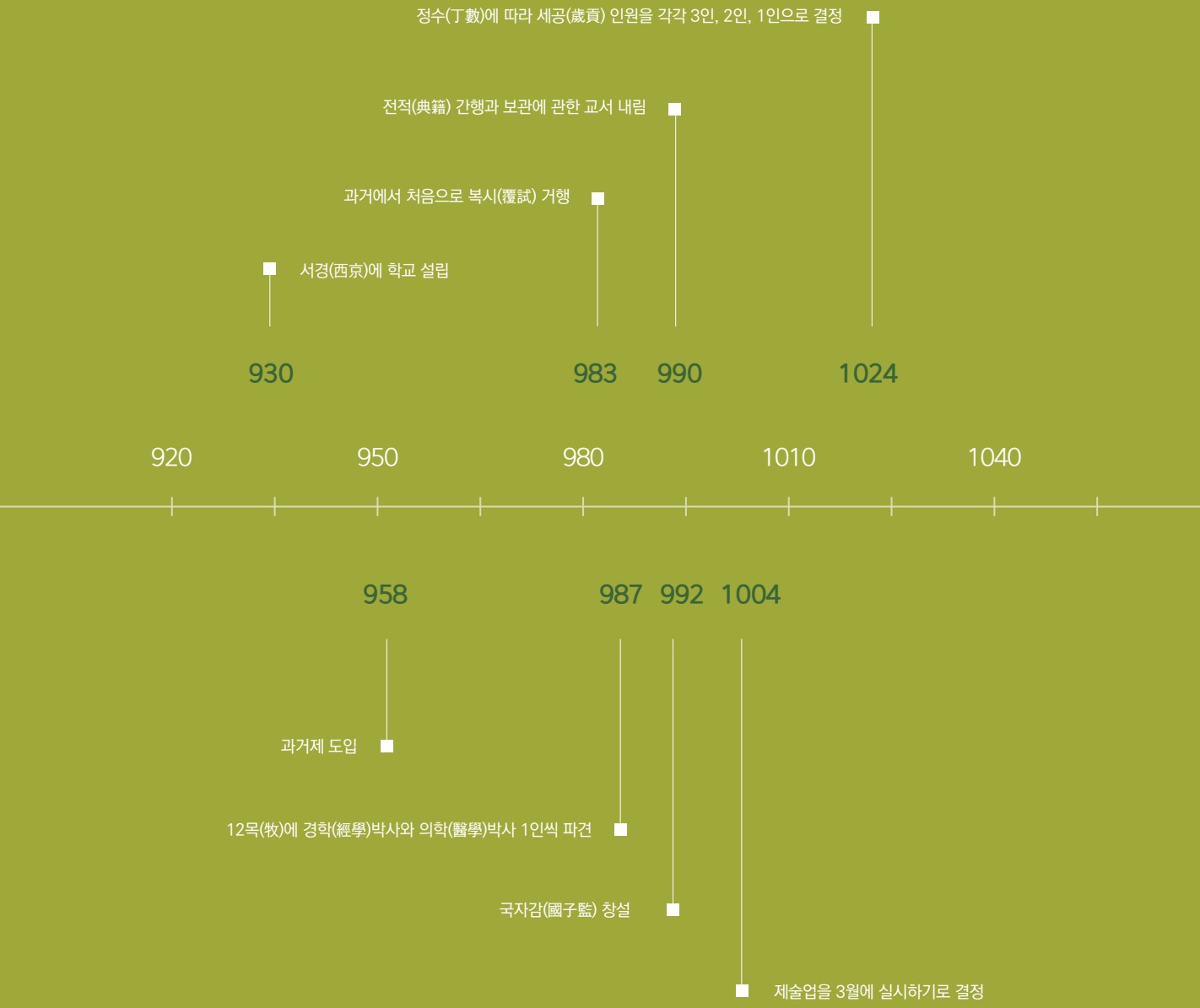
100 이제혁·박현숙, 〈신라 하대 唐 국자감의 신라 유학생 증가 배경과 유학의 경제적 여건〉, 《역사교육》 146, 2018; 강나리, 〈신라 下代 渡唐留學의 성행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90, 2018. "당나라는 안사의 난 이후 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국자감 건물을 수리하고 교육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821년에는 외국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한 빈공과를 실시하였다."

101 윤준혁, 앞의 글, 2024, 307쪽.

를 갖추며 국가체제를 안정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하였지만, 당의 제도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통일신라는 신라의 교육적 전통과 정치 상황에 따라 교육제도를 변화, 발전시켰다. 또한 통일신라의 도당유학생 가운데 일부는 고려 건국의 기초를 다지는 데 이바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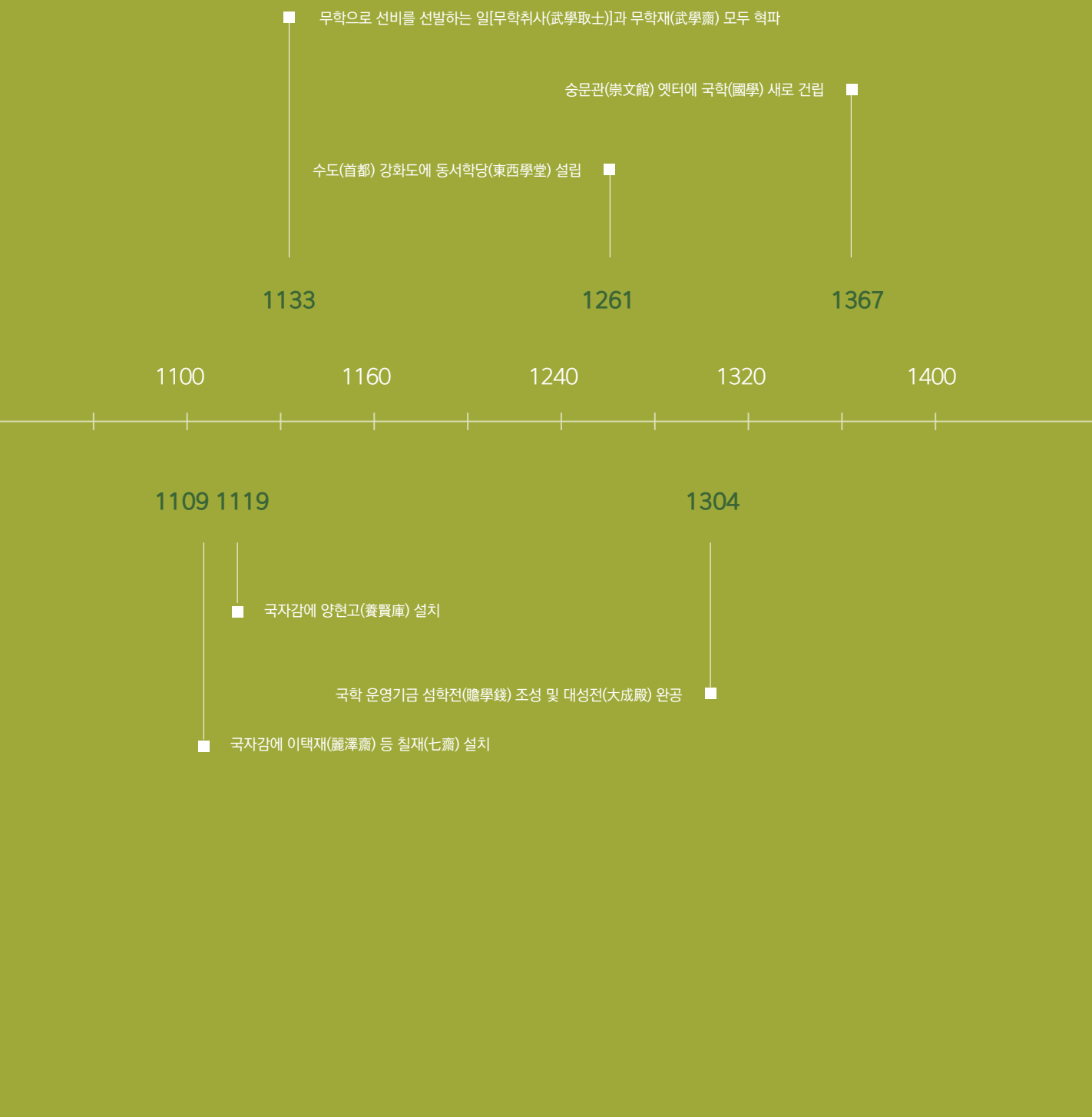
제2장

고려시대의 교육


정수(丁數)에 따라 세공(歲貢) 인원을 각각 3인, 2인, 1인으로 결정
전적(典籍) 간행과 보관에 관한 교서 내림
과거에서 처음으로 복시(覆試) 거행
서경(西京)에 학교 설립
930
983
990
1024
920
950
980
1010
1040
958
987
992
1004
과거제 도입
12목(牧)에 경학(經學)박사와 의학(醫學)박사 1인씩 파견
국자감(國子監) 창설
제술업을 3월에 실시하기로 결정

제1절 과거제 도입과 유학 연구 심화

제2절 교육기관 설립과 지방 교육



제 1 절

과거제 도입과 유학 연구 심화

1. 과거제 도입과 과거 실시

1) 국초의 문사 선발과 광종의 과거제 도입

《고려사高麗史》 선거지選擧志 서문은 "삼국三國 이전에는 과거科擧의 법이 없었고, 고려 태조太祖는 먼저 학교學校를 세웠으나 과거로 선비[士]를 취하기에는 겨를이 없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1] 고려가 세워진 918년(태조 1)은 전란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후삼국後三國 시대였기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제도가 시행되기에는 쉽지 않은 때였다. 그러나 제도가 없었어도 유능한 문사文士를 등용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했다. 태조가 개별적으로 최승로崔承老나 박유朴儒 등 문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관직을 내리는 모습들이 사료에 보이는 것이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2]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고려가 후삼국 통일을 이루고 점차 체제를 정비하면서 인재 등용 방식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했다. 958년(광종 9)에 과거제를 시행한 것은 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연스러운 현상

1 《고려사》 권27, 지73 선거1, "三國以前 未有科擧之法 高麗太祖 首建學校 而科擧取士 未遑焉"

2 《고려사》 권92, 열전5 제신 왕유; 권93, 열전6 제신 최승로.

이었다.

이미 8세기 말 이래로 신라에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 제도를 통해 학문적 소양을 갖춘 문사들을 양성하고 시험하여 관원으로 등용하는 방식이 시행되었으므로, 당시인들에게 시험을 통한 관원 선발은 낯선 제도는 아니었다. 또한 중국 대륙에서 수隋·당唐 이래로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최치원崔致遠 등 많은 신라인들이 이에 응시했던 역사적 경험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당에서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온 최언위崔彦撝 같은 사람이 이미 태조대부터 고려 조정에 출사하고 있었던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3] 또한 중국과 외교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도의 학문적 소양과 문장력을 갖춘 문사들이 양성될 필요가 있었던 점, 국왕 광종光宗이 왕권 강화를 추구하며 국초의 공신 세력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키우려 했던 점 등이 함께 작용하여 과거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4]



하동 운암영당의 최치원 초상(국가유산청)

958년의 첫 과거 시험에 대한 기록에서는 네 분야의 선발자를 뽑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시詩·부賦·송頌 및 시무책時務策으로 진사進士를 선발한 제술업製述業을 비

3 《고려사》 권92, 열전5 제신 최언위.

4 고려시대의 과거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 연구》, 일지사, 199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7-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1994; 허흥식,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2005; 박용운, 《고려사 선거지 역주》, 경인문화사, 2012; 김우택, 〈10~12세기 고려 선거제의 운영 원리와 변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롯하여 명경업明經業·의업醫業·복업卜業 분야를 선발하였다.[5] 명경업은 경전의 내용을, 의업은 의학 분야를, 복업은 천문 분야를 다루었다. 또한 승려들을 시험하여 법계法階를 내려주는 승과僧科도 광종대에 설치되었다. 이렇듯 광종대에 시행된 고려의 과거제는 유학적 지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소양을 따로 시험하여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시작되었다.

2) 선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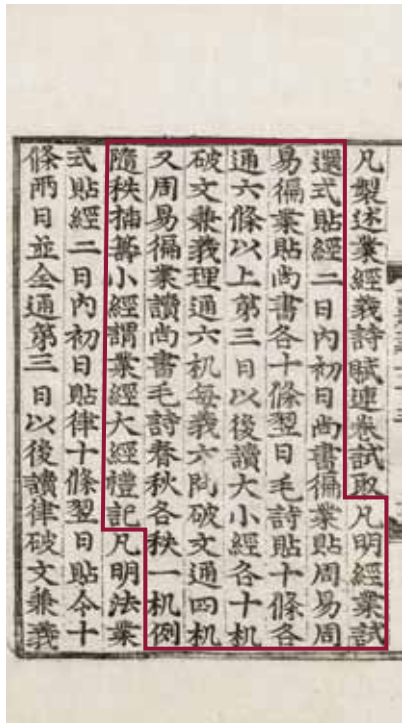
958년에 시행되었던 분야 중 유학적 소양을 시험했던 제술업과 명경업이 이후 고려 사회에서 '양대업兩大業', 즉 '두 개의 큰 업'이라 불리며 가장 존중되었다. 그중에서도 제술업이 당시 가장 선망받는 분야였다. '제술'이라는 단어의 어의상 이 분야는 '글짓기'로 해석될 수 있으며, 훗날 경학經學에 대비되어 낮게 여겨지곤 하는 '사장詞章'과 통한다고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제술업에서 시험한 '글짓기'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시기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제술업에서 시험한 종류는 대체로 시·부·송 등 문예文藝, 책策·시무책 등 시사時事, 경의經義 등 경학을 아울렀다. 경학은 당시 인들이 전통적으로 세상을 인식해온 철학이 담긴 학문이었다. 시사를 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사적 전거를 인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각종 역사서에 담긴 지식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즉 제술업은 문文·사史·철哲에 대한 종합적인 소양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현실 정치에 필요한 식견을 다양한 문체의 글로 제시해야 하는 고난이도 시험이었다.

양대업의 다른 한 분야이자 역시 유학적 소양을 시험한 명경업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것은 위와 같은 제술업의 성격과 그에 따른 위상과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명경업은 이름 그대로 '경전에 밝은 정도'를 시험하였다. 명경업에 대해 남은 기록은 자세하지 않은데, 다행히 1136년(인종 14)에 내려진 판문判文에 이에 대해

5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광종 9년 5월.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당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명경업에서는 5경五經, 즉 《주역周易》 《상서尙書》 《모시毛詩》 《예기禮記》 《춘추春秋》의 내용을 출제하였다. 그런데 제술업과 달리 내용 이해 시험만으로 진행되었다.[6] 모든 시기에 걸쳐 이렇게 운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시험의 난이도가 제술업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험의 위상과 급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그에 따라 달라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凡製述業經義詩賦連卷試取 凡明經業試
選式貼經二日內初日尙書徧業貼周易周
易徧業貼尙書各十條翌日毛詩貼十條各
通六條以上第三日以後讀大小經各十机
破文兼義理通六机每義六問破文通四机
又周易徧業讀尙書毛詩春秋各秩一机例
隨秩抽籌小經謂業經大經禮記 凡明法業
式貼經二日內初日貼律十條翌日貼令十
條兩日並全通第三日以後讀律破文兼義

《고려사》에 수록된 명경업 시험 규정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과거 시험이 시행되었다. 앞서 첫 과거에서 의업과 복업 분야에 대해 선발하였음을 이야기하였다. 이 역시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고 매 과거 시험마다 모든 분야를 선발했는지는 기록이 부족하여 알 수 없다. 기록상 확인되는 명칭으로는 명법업明法業·명산업明算業·명서업明書業·지리업地理業·하론업何論業·주금업呪噤業·삼례업三禮業·삼전업三傳業·정요업政要業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잡업雜業'으로 통칭되기도 하였다.[7] 고려시대의 다른 용례들을 참작할 때, 그 명칭의 '잡'은 '잡스럽다'는 비하의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8] 이들 분야에 대해 전해지는 정보는 더욱 소략하여 전모를 알기 어렵다. 시험 내용이나 명칭으로 보아 법률, 의학, 천문학, 지리학 등 여러 전문 분야에 대한 소양을 시험하여 관원으로 기용했던 제도임을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제술업과 명경업이 '양대업'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보아, 이들 분야에 대한 시험

6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인종 14년 11월.

7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서문.

8 김철웅, 《한국 중세의 길례와 잡사》, 경인문화사, 2007.

은 그보다 위상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선발 방식

958년의 첫 과거 시험은 5월에 시행하였다. 이후 2월이나 3월, 5월에 열다가 1004년(목종 7)에 과거법科擧法을 개정하면서 3월로 정하였다. 급제자 발표는 원래 가을이나 겨울에야 이루어졌지만 이 개정으로 3월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이는 제술업의 경우이고, 명경업 등 그 외의 분야는 전년도 11월에 선발하고 3월에 함께 발표하였다고 한다.[9] 그러나 이후 기록을 보면 이 규정이 엄밀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과거 시험이 시행되는 간격도 일정하지 않았다. 3년에 한 번 치른다는 원칙이 반포된 때도 있었으나,[10] 실제 시행 기록은 대체로 1~2년마다 한 번으로 나타난다.[11]

급제자 수도 유동적이었다. 가장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제술업의 경우에도 무신 집권기에야 대체로 1회에 33인 수준으로 일정해진다. 현재 남은 기록을 살펴보면 제술업은 약 250회 시행되어 6,330인 정도가 급제한 것이 확인된다. 물론 이는 《고려사》 등 현재 전해지는 자료에 해당 내용이 상세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고려 초부터 여러 차례 전란으로 개경의 기록이 소실되었던 영향도 컸던 듯하다. 명경업이나 잡업에 대한 기록은 더욱 드물어 집계에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명경업 급제자로 확인되는 수는 약 460인, 잡업은 80인 정도에 그친다. 기록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극도로 숫자가 적은 것이지, 실제로 그 인원만 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시험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 예비시험 등 별도의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제도가 점차 정비되면서 참여 인원도 늘어났을 것이고, 이에 따라 어느 시점부터는 본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이 필요해졌을 개연성

9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목종 7년 3월. 이 글에 나오는 연월은 모두 음력 기준이다.

10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선종 즉위년.

11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범선장.

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그 시점을 대체로 11세기 초반, 즉 현종顯宗에서 덕종德宗 시기로 추정한다. 1025년(현종 15)에 지역마다 인구수에 따라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수도 개경開京으로 올려보내야 하는 인원을 규정했는데, 이때 광역 지방관인 계수관界首官이 먼저 시험하여 올려보내고, 다시 개경의 국자감國子監에서 이들을 시험하여 합격해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12] 이를 현종의 아들인 덕종 때 국자감시國子監試를 처음 시행했다는 기록과 연결하여,[13] 이 시기에 예비시험-본시험 체계가 설정되었다고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

고려시대 과거의 본시험은 담당 관서의 이름을 따 '예부시禮部試'로 부르곤 한다. 간혹 본시험이 치러진 후에 국왕이 다시 한번 급제자들을 시험하여 최종 발표하는 '복시覆試'가 치러지기도 하였다. 처음 복시가 시행된 것은 983년(성종 2)이었다고 한다.[14] 이후 간헐적으로 실시된 복시는 대개 이미 급제한 사람을 대상으로 치러진 것으로 당락을 다시 논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국왕이 직접 시험을 주관하여 급제자를 명예롭게 하는 한편, 시험의 공정성과 위상을 끌어 올리면서 동시에 국왕의 권한과 위상도 높이는 의미를 지녔던 시험으로 평가된다.

고려시대에 과거 시험을 주관한 책임자는 대개 '지공거知貢擧'라는 직함을 받았다. 과거, 즉 '공거'를 담당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공거는 '좌주座主'라 불리기도 하였다. 지공거는 대개 재상 등 고위 관원이 임명되었다. 고려시대에 좌주와 그해 급제자, 즉 '문생門生'의 관계는 매우 돈독하였다. 고려 후기의 문신 최자崔滋의 문집인 《보한집補閑集》에 문생과 좌주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와 같다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였다.[15] 간혹 국왕이 직접 주관하여 '친시親試'로 부르는 시험이 거행되

12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현종 15년 12월, "判 諸州縣 千丁以上 歲貢三人 五百丁以上二人 以下一人 令界首官試選 製述業則試以五言六韻詩一首 明經則試五經各一机 依例送京 國子監更試 入格者 許赴擧 餘並任還本處學習 如界首官 貢非其人 國子監考覈 科罪"

13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과목2 국자감시, "卽進士試 德宗始置 試以賦及六韻十韻詩 厥後 或稱成均試 或稱南省試"

14 《고려사절요》 권2, 성종 2년 12월, "命取進士 王臨軒覆試 賜姜殷川等三人明經一人及第 覆試自此始 殷川卽邯贊也"

15 《보한집》 권 상, 〈門生之於宗伯執父子禮〉.

거나 앞서 설명한 복시를 치른 것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4) 급제자에 대한 우대와 문풍 형성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은 관직에 임명되었다. 이 역시 사료가 상세히 남아있지 않아 자료가 부족하지만, 제술업 급제자로 확인되는 약 200명을 분석하면 문한직文翰職·학관學官뿐만 아니라 경직京職·외관직外官職을 막론한 일반 관직에도 다양하게 임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권무직權務職 혹은 8~9품 관직을 처음 받았다. 명경업은 더욱 자료가 드물어 단정하기 어려우나, 대개 제술업보다 약간 낮은 관직에서 시작했지만 이후의 사로仕路나 승진에서는 제술업과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보인다. 잡업은 분야 특성상 해당 분야의 관서에 주로 배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반드시 그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일반 관직으로 벼슬 생활을 했던 모습이 나타난다.

고려시대에는 음서蔭敍를 통한 관직 진출이 매우 활발하였다. 어떤 경로를 통해 관원이 되든 뚜렷한 차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크게 우대하였다. 음서 출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특별한 공개 행사들을 통해 사회적 명예를 드높여 주고, 실질적인 혜택도 더 주었다.

국왕이 급제자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직접 만나 공복公服을 하사한다든지,[16] 급제자 발표 때 국왕 명의의 교서敎書를 반포한다든지,[17] 여러 명의 아들이 급제하면 그 어머니에게 나라에서 포상을 내리도록 한다든지 등 여러 조치가 시행되었다.[18] 개경 시내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급제자 퍼레이드를 진행하여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널리 보였고,[19] 고향으로 급제자가 돌아갈 때에는 지방관이 향리들을 이끌고 직접

16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숭장지전 광종 15년, "御天德殿 宴群臣 命新及第金策釋褐 賜公服赴宴"

17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숭장지전 성종 6년 3월, "放牓下敎 始此"

18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숭장지전 숙종 2년 9월, "引見新及第林元通等 賜酒食衣服 是年 賜金富轍母 米四十石 舊制 三子登科 歲給母大倉米三十石 以富轍兄弟四人登科 加賜十石 遂以爲常"

19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숭장지전 원종 7년 5월, "命新及第綴行 令八坊廂父老士庶 笙歌盛服隨從 以寵之"



김홍도가 그린 홍이상의 삼일유가(국립중앙박물관)

맞이하여 급제자의 부모를 모시고 잔치를 열도록 하였다.[20] 현직 관원이 급제하면 승진을 시켜주었고, 오래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 급제하면 특별히 전田과 노비를 내려주기도 하였다.[21] 이러한 특별 우대 조치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응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며, 이를 통해 유학적 소양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적 식견을 지닌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려는 목표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점차 고려 사회에서는 문풍文風이 높아지고 대대로 문사文士로서 과거에 급제하여 '문장화국文章華國'의 꿈을 이루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를 자기 집안의 '가업家業'이라 인식하는 모습들이 당시 사료에서 나타난다.[22] 고려인들은 대대로 문장에 뛰어나 과거에 급제하고 관원이 되어 나라를 빛내는 것을 상당한 자부심으로 삼았다.[23]

2. 신유학 도입과 유학 연구 심화

고려 사회에서 새로운 문풍이 확산되는 데에는 국제 정세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1세기 후반부터 고려는 송宋과 통교를 재개하고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특히 서적을 비롯한 송의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당시 송에서 유행하던 신유학新儒學을 공부하고 현실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24] 문종文宗 시대에 명망 있는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최

20 《고려사》 권68, 지22 예10 신급제진사영친의.

21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숭장지전 문종 30년 12월.

22 〈최함 묘지명〉, "凡四男二女 光世光陟光謙竝家業 取科第 其季亦志于學 將有所樹立"

23 〈박경산 묘지명〉, "公之祖曾皆以文章名世 至文烈公再奉使于中國 華人聳動每一篇出 刻鏤盛傳 至今大宋篇集中往往有文烈公所撰 一何偉哉 公盛德之後 以令聞令望 遍歷館閣之任 又以高文大手 久掌演綸之職 公之嗣又有如謝庭蘭玉者 世皆以朴氏爲文章之家信夫"

24 송대 신유학의 고려 전래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정수아, 〈고려중기 개혁정치와 북송 신법의 수용〉,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문철영, 《고려 유학사상의 새로운 모색》, 경세원, 2005. 신유학은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 논의에 대응하여 유학의 본래적 지향점을 재확인하려는 여러 학문적 경향들을 포괄했다.

충崔沖이 많은 제자를 양성하면서 신유학에서 중시한 9경九經을 주 교재로 사용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후 예종睿宗 시기에 권적權適 등을 송의 태학太學에 입학시켜 배우게 하고, 이들이 돌아오자 경전을 강의하게 하는 등 고려에서는 신유학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예종이 관학官學을 강화하면서 7재七齋를 두고 경학 교육을 강화한 것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안향 영정(국립중앙박물관)

12세기에 무신집권기가 시작되면서 학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다.[25] 그러나 이미 고려 사회에 전파된 신유학은 문사文士들 사이에서 면면히 이어지며 확산되었다. 그리고 13세기 후반부터 고려의 문사들은 남송南宋과 원元의 성리학性理學을 접하면서 이를 공부하고 고려 사회에 전하기 시작하였다.[26] 14세기 초에 국학을 부흥시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에서 많은 경전을 들여온 안향安珦은 주희朱熹를 흠모하여 늘 그 초상화를 곁에 두었다고 한다.[27] 이후 백이정白頤正·권부權溥·우탁禹倬·이제현李齊賢·이곡李穀·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 등 여러 사람들의 오랜 노력으로 성리학은 점차 고려의 문사들에게 퍼질 수 있었다.[28] 이들은 모두 당대의 학자

25 무신집권기 문사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황병성, 《고려 무인정권기 문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8.

26 성리학은 신유학의 한 갈래로, 북송의 정호·정이 형제 및 남송의 주희가 형성한 학문 경향이다.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이치를 연결시켜 논함으로써 이전보다 한층 형이상학적인 차원으로 유학을 이끌었다.

27 《고려사》 권105, 열전18 제신 안향.

28 고려 후기의 성리학 도입과 확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변동명, 《고려 후기 성리학 수용 연구》, 일조각, 1995; 김인호, 《고려 후기 사대부의 경세론 연구》, 혜안, 1999; 고혜령, 《고려 후기 사대부와 성리학 수용》, 일조각, 2001; 홍영의, 《고려말 정치사 연구》, 혜안, 2005; 문철영, 앞의 책, 2005; 도현철, 《고려와 원 간섭 속의 항쟁과 개혁 그리고 그 유산》, 동북아역사재단, 2022.

이자 정치가로서 자신들의 학문을 닦고 이를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려 후기에 과거 시험에서도 경학이 점차 더욱 중시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제2절 교육기관 설립과 지방 교육

1. 중앙 교육기관

1) 국자감 창설과 초기 운영 양상

수도 개경에 언제 처음 교육기관이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 930년(태조 13)에 태조가 서경西京에 학교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날 뿐,[29] 개경에 학교를 창설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대체로 원봉성元鳳省·한림원翰林院·광문원光文院 등의 관서에서 교육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거나, 개경에도 학교가 있었지만 기록이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30] 광종대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원이 된 유방헌柳邦憲이 성종대 이전에 '사문박사四門博士'라는 관직에 올라 있었는데, 이는 학교와 관련된 명칭이라는 점이 주목되기도 하였다. 즉 사료상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국초부터 개경에도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존재했다고 추정하는 견해가 대체로 공감되고 있다.

명시적으로 개경에 관학官學이 설치된 기록은 10세기 후반 성종대부터 등장한

29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태조 13년.

30 고려시대의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신천식, 《고려 교육제도사 연구》, 형설출판사, 1983; 박찬수, 《고려시대 교육제도사 연구》, 2001; 이중효, 〈고려 중기의 국자감 운영과 그 정치적 배경〉,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우택, 앞의 논문, 2021.

다. 성종은 즉위 후 어느 시점에 지방에서 자제들을 개경으로 보내 공부하도록 하였는데,[31] 986년(성종 5) 7월에 다음과 같은 교서를 반포했다.

> 짐이 평소 덕이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래도 간절하게 유학儒學을 숭상하였다.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학풍을 일으켜서 요堯·순舜의 다스림에 이르기를 바라며 학교[庠序]로 기르고 과거[科目]로 뽑았다. 이제 여러 주州에서 올린 학사學士 중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염려되어, 모두 편의에 따라 돌아가거나 계속 머물러 있거나 하기를 허락하였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학생 207명에게는 베 1,400필을 하사하고, 남기를 원하는 학생 53명에게는 또한 복두幞頭 106매와 쌀 265석을 하사한다.[32]

성종이 뜻한 대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모습이 담겨 있지만, 이를 통해 당시 개경에 전국에서 260명의 학생을 모아 교육했던 기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성종은 989년(성종 8) 4월에 앞으로 학교를 크게 잘 마련하여 인재를 양성하여 정치 보좌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33] 990년(성종 9)에는 대규모로 서적을 편찬하여 개경과 서경의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34] 그리고 드디어 992년(성종 11) 12월에는 "좋은 장소를 골라 널리 서재書齋와 학사學舍를 세우고 전장田 을 헤아려 지급하여 학생들의 양식에 충당하도록 하라."라고 교서를 반포하며 국자감國子監을 창설하였다.[35]

31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성종, "詔 令諸州郡縣選子弟 詣京習業"

32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성종 5년 7월,"敎曰 朕素慚薄德 尙切崇儒 欲興周孔之風 冀致唐虞之理 庠序以養之 科目以取之 今諸州所上學士 慮有思鄕之人 皆令從便去留 其歸寧學生二百七人 可賜布一千四百匹 願留者五十三人 亦賜幞頭一百六枚米二百六十五石"

33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8년 4월 임술. "敎曰 予方崇學校 欲理邦家 廓開函丈之筵 廣募搤衣之子 給田庄而肄業 差文學以爲師 年年懸甲乙之科 徵諸俊乂 日日訪丘園之士 待彼英髦 務得博識之儒 使助眇冲之政 懸旌勿怠 側席忘疲 然牛毛之學者雖多 麟角之成人甚少 空係名於國學 罕較藝於春場 宵旰凝懷 寢興軫慮 近覽有司所進擧人名數 唯太學助敎宋承演 羅州牧經學博士全輔仁誘以能諄 合宣父博文之意 誨而不倦 副寡人勸學之心 宜加奬擢之恩 用示殊尤之寵"

34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9년 12월.

35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성종 11년 12월, "敎 有司相得勝地 廣營書齋學舍 量給田·以充學粮 又創國子監" 《고려사》 선거지의 국학 항목에는 국자감 외에 동·서학당과 지방에 설치된 교수관도 함께 다루



고려 개경의 성균관

이후 국자감의 운영상에 대해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은 11세기 초반부터 나타난다. 앞서 1024년(현종 15)에 지역마다 과거 시험 응시를 위해 올려보내야 하는 인원 수를 정하고, 계수관시界首官試를 거쳐 올라온 이들을 다시 국자감에서 시험하도록 정하였으며, 이어 덕종德宗 시기에 '국자감시國子監試'가 창설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제 국자감은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과거시험과 한층 밀접히 결부되어 운영되었던 것이다. 즉 충분한 소양을 갖춘 차세대 관원이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평가하는 총괄적 기관으로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점차 강화되어 1036년(정종 2)에는 3년 동안 국자감에서 수학해야 국자감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36] 1070년(문종 33)에는 삼례업三禮業·하론업何論業·정요업政要業의 국자감시에는 해당 업의 관원과 국자감 인원이 함께 시험

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료에서 '국학(國學)'이라 지칭된 것은 개경에 설치된 국자감으로 보아 큰 무리가 없다. 이 글에서는 가급적 서술에 이용된 사료의 표현에 따라 국자감과 국학을 섞어 쓰겠다.

36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정종 2년 7월.

에 들어가도록 하였다.[37] 이렇듯 국자감은 중앙의 교육과 국가의 과거 운영을 연동하여 운영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2) 예종~인종대의 개편과 경학 교육 강화

국자감은 12세기 초반 예종대에 '7재七齋 설치'로 대표되는 중요한 변화를 맞이한다. 이는 국왕 예종이 강력하게 추진하여 진행된 일이었다. 이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11세기 후반~12세기 초반의 국자감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종~문종대를 거치며 국자감은 과거제와 밀접히 연동되어 운영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이 시기는 고려가 거란과 치렀던 오랜 전쟁을 끝낸 후 내정을 가다듬고 송·거란과 외교적으로 소통하며 다각적인 교류를 시작하던 때였다. 송에서 신유학을 들여오며 문풍이 일어나고, 이에 발맞추어 최충 등 여러 문신들이 사학私學을 세워 후진을 양성하였다.

그런데 이는 국자감 운영에 뜻밖의 변수로 작용했다. 사학은 학생들이 많이 몰리며 학업 열기가 높아지는 반면 국자감의 분위기는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학업을 그만두는 국자감 생도들이 늘어나니 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하며, 또한 생도들의 학업 성취도를 시험하여 오래 재학했어도 성과가 없다면 퇴출시키도록 하라는 문종의 제서制書가 1063년(문종 17)에 내려졌다.[38] 이후 선종宣宗 시기에는 창설된 지 오래된 국자감을 수리하느라 잠시 이전하였는데, 이전한 곳이 매우 비좁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자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학문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에 오히려 국자감은 쇠락하는 모순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1102년(숙종 7)에는 국학의 운영비가 과도하게 많다는 문제 제기가 조정에 나타나기까지 하였다.[39]

37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문종 33년 6월.

38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문종 17년 8월, "制 國子監諸生 近多廢業 責在學官 自今 精加勉勵 至年終 較減否 定去留 儒生在監九年 律生六年 荒昧無成者 並令屛黜"

예종은 국학을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그 수준을 높임으로써 이 상황을 타개하려 하였다. 1107년(예종 2)에는 선종대부터 수리가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였던 국자감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40] 1114년(예종 9)에 예종이 국학에 행차했을 때 뜰에 백관과 생원 700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하니, 그 사이에 공사가 완료되어 큰 터전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41] 이어 1119년(예종 14)에는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하여 국학의 운영을 보조하도록 하였다.[42]

이러한 물적 기반 확충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 바로 7재 설치였다. 1109년(예종 4) 7월에 국학에 설치한 7재는 《주역周易》 전공의 이택재麗澤齋, 《상서尙書》 전공의 대빙재待聘齋, 《모시毛詩》 전공의 경덕재經德齋, 《주례周禮》 전공의 구인재求仁齋, 《대례戴禮》 전공의 복응재服膺齋, 《춘추春秋》 전공의 양정재養正齋 그리고 무학武學을 전공하는 강예재講藝齋로 구성되었다.[43] 7재의 운영 방식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이 기관이 유학 경전에 대한 교육을 심화하기 위한 곳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1119년(예종 14)부터 과거 시험에 경의經義가 출제되었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44] 또한 무학 전공을 국학에 설치했다는 점도 독특하여 주목을 받는다.

다음 국왕인 인종仁宗 시기에는 예종대에 확충된 국학 운영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경학 교육이 강화되고 과거 시험에도 반영

39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숙종 7년 윤6월, "宰相邵台輔等奏 國學養士 糜費不貲 實爲民弊 且中朝之法 難以行於我國 請罷之 不報"《고려사절요》의 사찬에서는 소태보의 건의가 국학을 혁파하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학계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中朝之法'을 송의 제도를 따라 시행된 국학 운영에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한 법이라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 제시한 송대 신유학 도입 관련 연구 및 교육제도 관련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40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예종 2년.

41 《고려사절요》 권8, 예종 9년 8월, "王詣國學 酌獻于先聖先師 命翰林學士朴昇中講說 命百官及生員七百餘人立庭聽講 各進歌誦 王製詩 宣示左右 令和進"

42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예종 14년 7월, "國學始立養賢庫 以養士 自國初 肇立文宣王廟于國子監 建官置師 至宣宗 將欲敎育而未遑 睿宗銳意儒術 詔有司 廣設學舍 置儒學六十人 武學十七人 以近臣 管勾事務 選名儒 爲學官博士 講論經義 以敎導之"

43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예종 4년 7월.

44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예종 14년.

되자, 생도들이 이를 어려워하고 심지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45] 상대적으로 급제하기 쉬운 무학과 명법업 분야로 사람이 몰리고, 경학 분야는 인기가 떨어졌다.[46]

이 시기에 대대적으로 국학 운영에 대한 규정인 학식學式 개편안이 등장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해법 모색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47] 이 학식이 실제 시행된 것인지 구상안인지, 정확히 어느 시점에 고안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 내용을 통해 당시 구현하고자 했던 국학의 지향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학식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① 우선 봉작이 있거나 7품 이상인 관원의 아들들을 관원의 품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국자학생國子學生·태학생太學生·사문학생四門學生으로 편제하고, 8품 이상 관원의 아들과 서인庶人 및 7품 이상 관원의 아들 중 희망자는 국자감 산하의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 및 주현의 학교에 입학시키되, ② 신분이 낮거나 범죄와 관련된 자는 입학을 허용하지 않으며, ③ 각급 학교에 박사博士와 조교助敎를 배치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④ 수업 경전과 해당 경전의 학습 기한을 정하였다. 이때 제시된 주요 경전은《주역》《상서》《주례》《예기》《모시》《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효경孝經》《논어論語》였다. 더하여《국어國語》《설문說文》《자림字林》《삼창三倉》《이아爾雅》도 읽고, 산학算學과 시무책時務策도 익혀야 했다. 당시 조정에서는 경학 교육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문제 해법을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

3) 고려 후기의 교육기관 확충과 성리학 교육

인종의 다음 국왕인 의종毅宗 시대에 무신정변武臣政變이 벌어져 이른바 무신집권기가 100년가량 이어지고, 그 후반부에는 몽골의 침입이 시작되어 긴 전

45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인종 17년 10월.

46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인종 11년 1월; 권73, 지27 선거1 과목1 인종 18년 윤6월.

47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인종.

쟁이 벌어졌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과거제 운용은 면면히 이어졌다. 1271년(원종 12) 고려에 왔던 몽골의 사신단이 국자감시 합격자 명단 게시를 보고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내가 오래전부터 듣기는 했으나 이제야 보게 되었구나. 난리 속에서도 이와 같이 문풍文風이 떨어지지 않으니, 정말로 가상하구나!"라고 감탄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48]

몽골과의 강화가 막 이루어졌지만 아직 전쟁 여파가 끝나지 않았던 1261년(원종 2)에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나타난다. 당시 도읍이었던 강화도에 "동·서학당東·西學堂을 다시 설치하였다."라는 것이다.[49] '동·서학당'이라는 호칭은 이때 처음 보이지만 '다시'라 하였으니 그 이전 어느 시점에 운영되었던 교육 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고, 대체로 기초교육을 실시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환도한 뒤에는 다시 개경에 옮겨 설치하였다.[50]

동·서학당은 이후 원간섭기에도 운영되었던 모습이 보인다. 충렬왕忠烈王이 부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와 귀국할 때 동·서학당의 학생들이 국학생들과 함께 노래를 올렸다고 한다.[51] 그러나 1352년(공민왕 1)에 무너진 동·서학당을 수리하도록 한 것을 보면 여건이 어려웠던 듯하다. 1391년(공양왕 2)에는 개경의 5부部 및 서북면西北面의 부府, 주州에 유학교수관儒學敎授官을 설치하였는데,[52] 정몽주鄭夢周가 도성 안에 5부학당五部學堂을 세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때 동·서학당이 5부학당으로 개편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학을 본격적으로 재정비하는 양상은 충렬왕대 후반부터 나타난다. 1304년(충렬왕 30)에 안향의 건의로 국왕 이하 조정 관원들이 비용을 내어 국학의 운영을 위한 기금인 섬학전贍學錢을 조성하고, 남은 돈으로 중국 대륙의 강남江南에서 경전과 역

48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 12년 5월 경인, "監試放榜 蒙使趙良弼焦天翼等往觀之曰 眞盛事也 吾等聞之久矣 今得見之 其於亂離 不墜文風如此 良可嘉也"

49 《고려사절요》 권18, 원종 2년 3월.

50 《고려사절요》 권18, 원종 13년 6월.

51 《고려사》 권89, 열전2 후비 충렬왕 후비 제국대장공주.

52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공양왕 2년.

사서를 들여와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를 크게 일으켰다. 또 국학의 대성전大成殿을 새로 수리하였다.[53] 이 무렵부터 국학의 명칭은 국자감에서 성균감成均監으로, 다시 성균관成均館으로 바뀌었다. 충선왕은 양현고養賢庫에 은을 하사하고 각지의 유능한 이들을 모아 훈도訓導로 삼았고,[54] 공민왕은 1352년(공민왕 1)에 동·서학당과 함께 국학도 새로 수리하였다. 이어 1367년(공민왕 16)에는 아예 숭문관崇文館 옛터에 국학을 다시 짓도록 하고, 소속 생원生員도 100명으로 늘리며 오경재五經齋와 사서재四書齋를 설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1371년에는 중앙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 문학文學과 무학을 모두 개설하였다.[55] 이렇듯 고려 조정에서는 국학을 통해 교육을 강화하려 시도하였고, 이를 통하여 성리학이 전파되어 새로운 기풍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4) 문신들의 제자 양성 전통과 사학 운영

전근대 시기 교육에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한 교육 기관 이외에 사적으로 이루어진 영역의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 특히 학문적 소양을 갖춘 개인이 제자를 양성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었다. 고려 초기에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 989년(성종 8)에 성종은 교서敎書를 내려 교육을 권장하면서, "모든 문관文官 중 제자가 10명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임기가 차서 다른 자리로 옮길 때에 담당 관원이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어 포상하거나 징계하라."라고 하였다.[56] 이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직 교육기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신들에게 각자 제자를 양성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문종대에 최충이 많은 제자를 기른 것은 이런 전통에서 생긴 일이었다. 《고려사》에는 당시를 이렇게 묘사하였다.

53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충렬왕 30년 5월; 6월.

54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충선왕 즉위년.

55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공민왕 1년; 16년; 20년.

56 《고려사절요》 권2, 성종 8년 4월.



최충을 배향한 노동서원(강원도 홍천군)

현종 이후 전쟁이 겨우 멈추었으나 학문으로 교화할 겨를은 없었다. 최충이 후진들을 모아 부지런히 가르치니, 학도들이 줄지어 모여들어 거리에 차고 넘쳐 마침내 9재九齋로 나누었다. 이르기를 낙성재樂聖齋·대중재大中齋·성명재誠明齋·경업재敬業齋·조도재造道齋·솔성재率性齋·진덕재進德齋·대화재大和齋·대빙재待聘齋라 하였는데, 이를 시중최공도侍中崔公徒라고 일컬었다. 무릇 과거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여기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 이들을 일러 문헌공도文憲公徒라 하였다. 또 유학자로 학도를 세운 사람이 11명이었는데, 홍문공도弘文公徒는 시중侍中 정배걸鄭倍傑로 일명 웅천도熊川徒, 광헌공도匡憲公徒는 참지정사叅知政事 노단盧旦, 남산도南山徒는 국자좨주國子祭酒 김상빈金尙賓, 서원도西園徒는 상서복야尙書僕射 김무체金無滯, 문충공도文忠公徒는 시랑侍郎 은정殷鼎, 양신공도良愼公徒는 평장사平章事 김의진金義珍인데 일설에는 낭중郎中 박명보朴明保라고도 하며, 정경공도貞敬公徒는 평장사 황영黃瑩, 충평공도忠平公徒는 유감柳監, 정헌공도貞憲公徒는 시중 문정文正, 서시랑도徐侍郎徒는 서석徐碩, 구산도龜山徒는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12도라 불렀는데, 최충의 학도가 가장 성하였다.[57]

57 《고려사》 권95, 열전8 제신 최충.

당대의 저명한 문신들이 세운 사학은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헌공도에서는 급제하고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선배를 교도敎導로 삼아 후배들에게 9경經과 3사史를 가르치게 하고 시를 짓는 연습도 하였다.[58]

이러한 사학에 다닌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사학 학생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큰 문벌 가문의 자제는 보이지 않고 중·하급 관원과 향리 자제 혹은 신분에 흠이 있거나 집안 자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만이 확인되었다. 즉 사학에는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다니며 학업을 닦아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59]

12도는 점차 국자감을 중심으로 한 국가 교육체계에 편입되었다. 1139년(인종 17)에는 각 도의 학습 모임 주관을 국자감에서 하도록 하였고, 우수한 교도敎導는 학관學官에 우선적으으로 임용하도록 하였다.[60] 지제고知制誥를 보내 생도들을 시험하기도 하였다.[61] 건물 수리와 재정 보조가 지원되었던 모습도 찾을 수 있다.[62] 1391년(공양왕 3)의 12도를 혁파하라는 지시는 이렇게 이미 12도가 국가 교육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방향으로 변모하였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63]

2. 향교 설립과 남경의 지방 교육

1) 국초의 지방 교육 확산 정책

고려는 수많은 지역 세력들이 쟁투를 벌였던 신라 하대 이래의 오랜

58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사학.

59 김용선, 〈고려시대의 사학과 그 입학생〉, 《고려·사회·사람들》, 일조각, 2018. 이 연구는 기존에 학계에서 사학을 귀족적 성격으로 이해했던 시각에 대해 실증을 통하여 중요한 수정을 하였다.

60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사학 인종 17년 6월.

61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사학 공민왕 6년 7월.

62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 7년 5월; 권74, 지28 선거2 학교 공민왕 1년 2월.

63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사학 공양왕 3년 6월.

혼란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었다. 따라서 초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하나의 국가로 조직화하는 것이었다. 지방에 교육을 전파하고 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은 이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태조는 아직 통일을 이루기도 전인 930년(태조 13)에 서경에 행차하여 학교를 창설하고 서학書學과 의업, 복업을 가르치게 하였다.[64] 수도 이외의 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한 기록은 이것이 최초이다. 이후 국왕이 직접 특정 지역에 행차하여 학교를 설치한 사례는 보이지 않지만, 대신 교육을 담당할 관원을 파견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987년(성종 6)에는 성종이 12목에 경학박사經學博士와 의학박사醫學搏士를 파견하여 향리와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고, 재주 있는 사람은 천거하도록 하였다.[65] 앞서 국자감에 각지 향리의 자제를 모아 가르치려다 한계를 느끼고 대거 귀향시킨 것을 설명하였다. 이번 조치는 그 후속 정책이었다. 지방 자제들을 개경으로 모으는 것이 호응이 적다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교관을 파견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성종은 이후로도 파견된 박사들의 실적을 관리하고 격려하면서 지방 교육을 장려했고,[66] 대규모로 서적을 편찬해 개경과 서경에 보관하게 하였다.[67] 목종穆宗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각지의 교관들에게 성과를 보고하고 인재를 천거하도록 지시하였다.[68]

1018년(현종 9)의 기록에서는 도호부都護府에 문사文師와 의사醫師가 파견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며,[69] 문종대에는 서경·남경·동경과 도호부에 이들이 파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남경은 "유수留守 1인은 3품 이상, 부유수副留守 1인은 4품 이상, 판관判官 1인은 6품 이상, 사록참군사司錄叅軍事와 장서기掌書記는 각각 1인씩으로 모두 7품 이상, 법조法曹 1인은 8품 이상, 문사 1인과 의사 1인은 모두 9품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70] 1024년(현종 15) 이래로 각지에서 과거에 응시할 인원을

64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태조 13년.
65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성종 6년 8월.
66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성종 8년.
67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9년 12월.
68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목종 6년 1월.
69 《고려사》 권72, 지26 여복1 노부 외관아종 현종 9년 1월.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정한 조치는 이러한 지방 교육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2) 고려 중기의 문풍 흥기와 향교 설립

예종대에 경학을 강조하며 국자감이 대대적으로 개편·강화되었던 모습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예종은 지방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 이미 즉위년인 1105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3경과 8목牧의 통판通判 이상 및 지주사知奏事·현령縣令을 맡은 관원은 학사學事를 함께 관할하도록 지시하였다.[71] 지방관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9품인 문사만 교육을 담당하는 것과 업무 위상이 달라졌음을 뜻한다. 1127년(인종 5)에는 각 주에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가 내려졌다.[72] 이 시점 이전에는 별도의 학교 건물이 없이 관청에서 교육을 시행했던 것인지 아니면 더 하위 지방단위까지 새로 학교를 설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방에 국가의 교육시설을 확산시킨다는 국초 이래의 일관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볼 수 있다.

부평富平·강화江華·단양丹陽·교동喬桐·태안泰安 지역 향교에 관한 기록에는 이 향교들이 인종대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종이 국자감에 행차했을 때 김수자金守雌가 지은 글에는 "글 읽는 소리가 서울부터 지방까지 미친다."라는 표현이 보인다.[73] 향교에 대한 기록이 후대에 작성된 것이라든가, 김수자의 글은 단지 문학적 표현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분위기는 분명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1134년(인종 12)에는 《효경》과 《논어》를 민간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74] 조정의 이러한 조치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종대에 고려에 다녀간 송의 사신 서긍徐兢이 지은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담긴 다음의 내용이 이 시기 고려의 사회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70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외직 남경유수관.

71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예종 즉위년.

72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학교 인종 5년.

73 《동문선》 권64, 기 〈幸學記〉.

74 《고려사》 권16, 세가16 인종 12년 3월 임신.



남경에 향교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도성삼군문분계지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위로 조정에 줄 선 관원들은 위의威儀가 넉넉하고 문장도 충분하며, 아래로 여염집[閭閻]과 누추한 거리[陋巷]에도 글을 배우고 경서를 읽는 곳[經館書社]들이 두셋씩 마주 보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백성 자제들은 여럿이 거처하면서 스승을 따라 경서를 익히며, 조금 더 크면 벗을 골라 각자 그 부류에 따라 절과 도관道觀에서 강습을 받았다. 아래로는 평민[卒伍]의 어린아이들까지도 시골 선생[鄕先生]을 찾아가 배웠다.

3) 고려 후기의 향교 복설 노력과 그 영향

무신집권기에 조정의 권력 핵심은 무신들이 차지하였다. 이에 문신들이 위축되고 학문과 교육은 발전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몽골의 침입을 오래 겪으며 많은 시설이 파괴되었고 인적 손실도 매우 컸다. 향교들도 당연히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기에도 향교를 운영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다음 기록은 1220년(고종 8) 백령진白翎鎭에 새로 향교가 설치된 사실을 담고 있다.

경진년 봄에 나아가서 백령진장白翎鎭將이 되었는데, 청렴하고 공평하게 고을을 다스렸다. 그 고을에는 예부터 향교가 없었는데 이군李君이 처음으로 창건하고 아전들의 자제를 모아 글을 가르치니, 몇 해 안 가서 모두 인재를 이루었으며, 공거貢擧에 응시한 자까지 있게 되매, 온 고을이 그를 사모하였으며, 여러 번 글을 올려서 그의 아름다움을 포장하였다.[75]

이곳 외에도 여러 곳에서 향교가 운영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전란의 피해로 폐허가 된 향교도 역시 많았다. 고려 후기에는 이러한 향교들을 다시 세워 교육을 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내가 이 고을에 이르러 연로한 이들에게 들으니, 고을 북쪽에 문선왕동文宣王洞이라 전해지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필시 옛날의 학교 터일 것이지만 없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한다. 나는 마음속

75 《동국이상국집》 후집 권12, 잡저 〈故朝議大夫司宰卿右諫議大夫寶文閣直學士知制誥賜紫金魚袋李君墓誌銘〉.

으로 탄식하고 즉시 고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 땅에 학교를 짓게 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여 "우리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즐거워하며 수고로움을 잊었다. 그래서 관할에 있는 과거 동기생인 벗 통주通州 수령 정랑正郎 진군陳君이 그 일을 감독하였다. 공사가 시작되자 읍의 수령 정랑 박군朴君이 부임해 왔는데, 박군은 또한 글을 하는 선비 상문相門의 아들이다. 실제로 그가 힘을 써서 나의 뜻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어찌 고을 사람들의 행운이 아니겠는가.[76]

고려 후기의 문집에 나타나는 향교를 복설 기록들은 이렇듯 개인과 지역사회의 노력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다. 성리학을 익힌 문신 관원들이 소명의식을 지니고 자신이 처한 곳에서 노력하였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고려 후기의 시대적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조선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76 《근재집》 권1, 기 〈襄陽新學記〉.

제3장

조선시대 한양의 교육



제1절 조선시대 한양의 학교제도

제2절 조선시대 한양의 과거제도

제3절 한글 보급과 여성교육



제 1 절

조선시대 한양의 학교제도

조선시대 한양은 1394년(태조 3)에 국도國都로 정해지고 1399년(정종 1)에 일시 개경으로 환도하였다가 1405년(태종 5)에 다시 옮겨온 뒤로 조선 말까지 국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정도定都 이후 한양은 기존의 한양부漢陽府에서 한성부漢城府로 이름이 바뀌었고, 1910년 일제 강점과 함께 경성부京城府가 될 때까지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증보문헌비고》 〈학교고〉 서문에서 "우리나라에 학교가 있은 지는 오래되었다. 신라·고려 때는 대개 자세히 기술할 수 없으나, 우리 조선조에는 더할 수 없이 성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국도 한양에는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을 비롯하여 유학儒學·무학武學·잡학雜學을 망라한 상당히 체계적인 학교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조선 사회가 필요로 하였던 문·무·기술 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하던 조선시대 한양의 학교들을 유학, 무학, 잡학 분야로 나누어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학

1) 성균관

유교식 대학인 성균관은 국도 한양에 설립된 최고학부였다. '성균관'

이라는 명칭은 1362년(공민왕 11)에 처음 사용된 이후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경국대전주해》 '성균관' 항목에 따르면,[1] 본래 '성균成均'은 오제五帝 때 남쪽에 있던 대학 이름이었다. 《주례》 〈대사악大司樂〉에서 "대사악은 성균成均의 법을 관장한다."라고 하였는데, '균均'은 고르게 하는 것으로, 악사樂師가 그 음을 고르게 하면 대사악이 이를 받아 음악을 완성한다는 뜻이 '성균'에 담겨 있다. 96칸에 이르는 많은 건물들로 구성된 성균관은 문묘文廟와 학당學堂을 두 축으로 하는 전형적인 묘학廟學의 구조를 띠고 있었다. 앞쪽인 남쪽에 있는 문묘의 정전은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이라는 공자의 시호를 따 대성전大成殿이라 하였으며, 대성전 뜰 좌우에는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를 두었다. 그리고 문묘의 뒤쪽인 북쪽에는 좌우의 협실과 중간의 대청으로 이루어진 학당인 명륜당明倫堂이 있고, 학당 뜰에는 좌우로 장랑, 즉 유생들의 숙소인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늘어서 있다. 묘학의 구조에서는 문묘가 윗자리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평지에 건립된 한양의 성균관은 윗자리인 앞쪽에 문묘가 있고 뒤쪽에 학당이 있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형태를 취하였다.

(1) 건치 연혁

성균관은 천도 결정 이후 한양에 도읍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립되었다. 《태학지》의 기사를 중심으로 성균관의 건치 연혁을 살펴보면,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수도 한양의 동북쪽 언덕[동부 숭교방崇敎坊]에 학교 부지를 골라 성균관을 건립하게 하고, 그 일의 책임을 여흥부원군 민제閔霽(1339~1408)에게 맡겼다. 이후 민제는 1397년(태조 6)에 성균관 건립 작업을 시작하여 이듬해인 1398년(태조 7) 가을에 성균관을 낙성하였다. 건립 초기 성균관은 크고 작은 건물이 모두 합쳐 96칸에 이르렀다. 그 뒤 1400년(정종 2)에 성균관의 문묘가 화재로 불에 타 이듬해 봄 정월에 성산군 이직李稷과 중군 동지총제 박자청朴子靑 등이 주관하여 4개월 만에 문묘 재건 공사를 끝냈다. 임진왜란으로 문묘는 다시 소실되었다가 1601년(선조 34)에 중건되었다.

1 정긍식·田中俊光·김영석 역주, 《역주 경국대전주해》, 한국법제연구원, 2009, 123쪽.

문묘 부속 건물의 건치 연혁을 보면, 1472년(성종 3)에 대사성 이극기李克基와 지관사 서거정徐居正, 영의정 신숙주申叔舟 등이 건의하여 문묘의 서무 서쪽에 전사청典祀廳 건립을 추진하여 5개월 만에 완성하였다. 그리고 제관들의 재계齋戒 장소이자 제사에 쓰는 향과 축문을 보관하던 향관청享官廳은 대사성 성현成俔의 건의로 건립을 추진하여 1473년(성종 4)에 완성하였다. 향관청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졌다가 1653년(효종 4)에 대사성 이일상李一相의 건의로 중건하였다.[2]

다음으로 성균관의 학당 부분을 보면, 1398년(태조 7)에 명륜당을 문묘의 북쪽에 건립하고 좌우에 협실을 설치하였다. 좌우 협실의 중앙에 있는 대청은 스승과 제자가 학문을 논하는 장소로 삼았다. 명륜당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불에 탔다가 1606년(선조 39)에 중건하였다. 유생들이 머물던 기숙사인 동·서재는 명륜당과 동시에 건축되었다. 건국 초기에는 동·서재에 200명의 유생을 수용하였는데, 뒤에 경비가 부족하여 75명으로 감축하였다가 영조 때 100명으로 증원하였다.[3]

학당 주변의 주요 건축물을 보면, 먼저 사서오경과 제자백가의 책 등을 보관하던 존경각尊經閣은 1475년(성종 6) 좌의정 한명회韓明澮의 건의로 건립하였다. 그 뒤 1514년(중종 9) 화재로 불에 타 개축하였다. 존경각은 임진왜란 때 다시 소실되었다가 1626년(인조 4)에 중건하였고, 1772년(영조 48)에 개축하였다. 앞뜰을 과거 시험장으로 쓰던 비천당丕闡堂[4]은 1661년(현종 2)에 북학北學을 세우기 위해 도성 안 두 개의 비구니 사찰을 철거하여 마련했던 자재로 1664년(현종 5) 서반수西泮水 위에 건립하였다. 비천당 서남쪽에는 일양재一兩齋[5]와 벽입재闢入齋[6]라는 두 채의 작은 재齋를 건립하였다. 1784년(정조 8)에는 불에 타 미처 중수하지 못하고 있던 벽입재를 임금의 명으로 60년 만에 재건하였다. 정록청正錄廳은 1398년(태조 7)에 낙성하였다가 임진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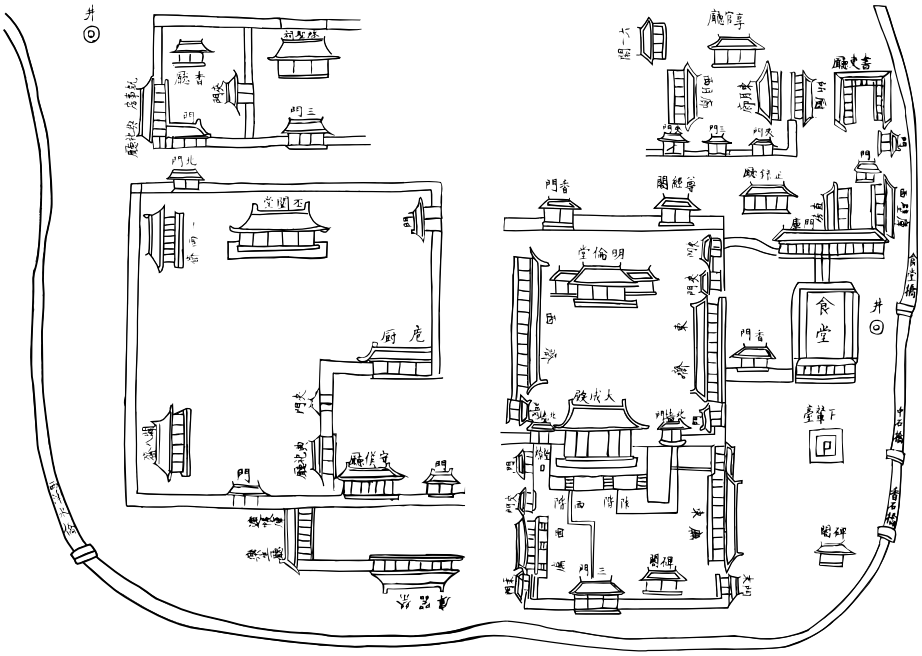
2 이상은 태학지 번역사업회, 《국역 태학지》 상, 성균관, 1994, 39~46쪽 참조.

3 동·서재에 기숙한 정확한 인원은 뒤의 '학제' 부분 설명 참조.

4 비천당의 '비천'은 朱子가 말한, 성상을 도와 커다란 계책을 크게 밝혀 사악함을 억누르고 정의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5 일양재의 '일양'은 불교 사찰을 허물어 유교의 학교를 세우는 것이 일거양득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6 벽입재의 '벽입'은 이단을 물리쳐야 성현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程子의 말에서 취하였다.



성균관의 건물 배치를 알려주는 《태학계첩(太學契帖)》의 〈반궁도(泮宮圖)〉(서울역사박물관)

으로 불타버리고 1626년(인조 4)에 중건하였다. 식당과 양현고養賢庫의 건치 및 중건 연도도 정록청과 같다. 1743년(영조 19)에는 대사례大射禮를 거행하고 그때 사용된 기구들을 소장하기 위해 육일각六一閣[7]을 지었다.[8]

(2) 학제

《경국대전》에 따르면, 성균관의 학관으로는 정2품 지사知事 1인과 종2품 동지사同知事 2인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겸직이었다. 그 다음으로 정3품 대사성大司成 1인을 두어 성균관의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 밖에 종3품 사성司成 2인, 정4품 사예司藝 3인, 정5품 직강直講 4인, 정6품 전적典籍 13인, 정7품 박사博士 3인, 정8품 학정學正 3인, 정9품 학록學錄 3인, 종9품 학유學諭 3인 등을 두어 대사성을

7 육일각의 '육일'은 활쏘기가 禮樂射御書數, 즉 六藝의 하나라는 뜻을 취하였다.

8 태학지 번역사업회, 앞의 글, 47~51쪽.

보좌하며 성균관 유생들의 교육을 맡도록 하였다.

성균관의 유생 정원은 200명이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사정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였다. 성균관에는 원칙적으로 소과(생원시, 진사시)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가 입학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생원·진사로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사학四學, 즉 한성부의 동·서·남·중학의 생도나 공신 자제 가운데서 일정한 시험을 거쳐 선발한 인원으로 결원을 보충하였다.

1746년(영조 22)에 간행된《속대전》의 규정을 보면, 조선 후기에는 성균관의 정원이 원래의 200명에서 74명 감축되어 126명이 되었다. 이 가운데 생원·진사가 106명이고, 학생(기재생寄齋生)이 20명이다. 106명 가운데 6명은 장의掌議 2명과 색장色掌 4명으로, 모두 성균관 유생 자치조직인 재회齋會의 임원들이다. 조선시대의 정원 개념은 지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법전상의 이 숫자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성균관의 식당에서 공궤供饋하는 인원을 가리킨다. 절제節製를 비롯한 중요한 시험을 앞둔 시점에는 공궤 인원의 제한을 해제하였다.

성균관의 수학 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대과大科[문과]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곧 졸업을 의미하였다. 조선 전기의 경우, 대체로 출석 점수인 원점圓點이 300점이 되면 대과 초시의 하나인 관시館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아침·저녁으로 식당에 비치된 유생 명부에 도기到記를 하면 원점 1점이 주어지므로, 성균관에 머물며 대과를 준비하는 유생의 경우 적어도 300일은 거관居館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대체로 원점 30점에서 50점 정도가 관시館試 응시 자격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유생들은 30점 또는 50점이라는 준점準點(기준 원점)에 이를 때까지 성균관에 머물다가 다음 차례 거재居齋 유생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성균관을 떠나게 된다. 물론《반중잡영泮中雜詠》의 저자 윤기尹愭처럼 20년 가까이 성균관을 드나들며 공부하는 유생도 있었다.[9] 하지만 대부분의 유생들은 준점에 이르면 성균관을 떠나는데, 거재의 순서는 생원·진사시

9 윤기 지음, 이민홍 역주,《完譯 泮中雜詠: 朝鮮朝 成均館의 校園과 太學生의 生活像》, 성균관대 출판부, 1999.

입격 순서가 우선이고, 같은 해 입격자의 경우는 나이가 많은 유생이 먼저 거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⑶ 학령과 재회

① 학령

유생들이 성균관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때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학령學令'이 있었다. 학령은 그 제정 시기와 주체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초부터 시행된 성균관 교육에 관한 최고의 규칙이자 법령이다. 학령의 여러 조항은 성균관은 물론 다른 관학, 즉 사학四學과 향교鄕校의 교육에도 준용되었다. 총 13개 조항으로 된 학령의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



《증보문헌비고》에 수록된 학령 규정

10 《증보문헌비고》 권207, 〈학교고〉 1, 학령.

1. 매월 초하루에 모든 유생은 관대를 갖추고 문묘로 가서 성현을 알현하고 사배례四拜禮를 행한다.
2. 매일 학관이 모두 명륜당에 가지런히 앉으면 유생들이 읍례揖禮를 행할 것을 청한다. 북소리가 한 번 울리면 여러 유생들이 차례로 명륜당 뜰에 들어와 읍례를 행한다. 마치면 각자 재齋 앞으로 가서 서로 마주보고 읍례를 행한다. 마치면 재로 간다. 그 다음에는 유생들이 학관 앞으로 가서 일강日講을 행할 것을 청한다. 상재上齋와 하재下齋에서 각 1인씩을 뽑아 읽은 책을 강하되, 통한 자는 세초歲抄에 그 점수를 모두 헤아려 식년式年 과거시험의 강서講書 점수에 합산하고, 통하지 못한 자는 벌로 회초리를 때린다. 북소리가 두 번 울리면 여러 유생이 읽는 책을 들고 각기 스승에게로 가서 먼저 전에 수업한 것 중에서 어렵고 의심나는 부분을 논변한 다음 새로운 내용을 수업授業한다. 많이 배우려 힘쓰지 말고, 반드시 자세하게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책을 대하여 졸거나 가르침을 받는 데 유의하지 않는 자는 벌한다.
3. 유생들의 독서讀書는 먼저 이치를 분명히 하여 만 가지 변화에 통달해야 하며, 헛되이 장구章句를 숭상하거나 문의文義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항상 사서오경과 여러 역사서 같은 책들을 읽고, 노장老莊에 관한 책이나 불경佛經, 잡류, 제자백가의 책과 같은 것들은 끼고 다니지 않아야 한다. 위반하는 자는 벌한다.
4. 매월의 제술製述은, 초순에는 의疑·의義 또는 논論을 짓고, 중순에는 부賦·표表 또는 송頌·명銘·잠箴을 짓고, 종순에는 대책對策 또는 기記를 짓는다. 그 체제는 반드시 간결하고 엄격하며 정밀하고 절실해야 한다. 뜻이 잘 전달되면 될 뿐, 험벽險僻하고 기괴奇恠한 것을 일삼지 말 것이며, 혹여 통용되는 문체를 변경하거나 부박浮薄하고 화려한 것을 선동하는 자는 쫓아낸다. 글씨를 해서체楷書體로 반듯하게 쓰지 않는 자 또한 벌한다.
5. 유생들의 강경講經은, 구두가 자세하고 논의에 막힘이 없으며, 한 책의 강령과 취지를 모두 아우르고 여러 책을 종횡으로 드나들며 융회관통融會貫通하여 매우 극진한 곳에 이른 자를 '대통大通'으로 한다. 비록 매우 극진한 곳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구두가 자세하고 논의에 막힘이 없으며, 한 책의 강령과 취지를 모두 아울러서 융회관통한 자는 '통通'으로 한다. 비록 융회관통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구두가 자세하고 뜻풀이에 막힘이 없으며, 위아래를 연결하여 한 장의 대지를 파악하는 자는 '약통略通'으로 한다. 구두가 자세하고, 뜻풀이가 분명하며, 비록 한 장의 대지는 파악하였으나 논의에 미진함이 있는 자는 '조통粗通'으로 한다. 이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벌한다.

6. 유생들 중에서 성현을 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혹여 고담이론高談異論을 좋아하고 선현을 헐뜯고 조정을 비방하며, 혹여 재물과 뇌물을 상의하고 주색을 얘기하거나, 혹여 시류를 좇고 권세에 빌붙어 이로써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자는 벌한다.
7. 유생들 중에서 오륜을 범하는 죄를 짓거나 혹여 행실이 잘못되어 몸과 이름을 더럽힌 자가 있으면 유생들이 함께 의논하여 북을 울려 성토하되, 심한 자는 담당 관서에 보고하여 종신토록 학교에 몸담지 못하도록 한다.
8. 유생들 중에서 혹 재주를 믿고 스스로 교만하거나 권세를 믿고 스스로 위세를 부리거나, 부유함을 믿고 스스로 자랑하거나, 나이 어린 자가 어른을 능멸하거나, 아랫사람이면서 윗사람을 능멸하거나, 혹 호사스러운 것을 서로 숭상하고 옷차림이 너무 요란하거나, 혹 교언영색으로 남에게 아첨하는 데 힘쓰는 자는 쫓아내되, 힘써 배우고 행실을 고치면 곧 (징계를) 그친다.
9. 유생들이 무리 지어 왔다 갔다 하며 헛되이 국고만 낭비하고 수업도 받지 않고 제술도 하지 않으며 독서도 좋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길을 다닐 때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모두 엄히 금지한다. 위반한 자는 벌한다.
10. 매월 8일과 23일에는 유생들이 의복을 세탁하기 위한 휴가를 청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날에는 반드시 복습에 힘써야지 활쏘기나 장기·바둑, 사냥 구경이나 낚시 등과 같은 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한 자는 벌한다.
11. 유생들이 길을 가다 스승을 마주치면 몸을 내보이고 공수拱手하며 길 왼편에 선다. 스승이 말을 타고 지나갈 때 유생들 중에서 혹여 몸을 감추고 얼굴을 가려 예를 표시하기를 꺼려하는 자는 벌한다.
12. 매일 날이 밝기 전에 북이 한 번 울리면 유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날이 밝아 북이 두 번 울리면 의관을 정제하고 단정히 앉아 글을 읽는다. 북이 세 번 울리면 차례로 식당에 가서 동쪽과 서쪽에 서로 마주 보고 앉는다. 식사가 끝나면 차례로 나간다.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자는 벌한다.
13. 유생들 가운데 품행이 탁월하고 재주가 출중하며 시무에 통달한 자 한두 명을 매년 세초 때마다 여러 유생이 함께 천거를 의논하여 학관에게 알리면 (학관이) 해당 관서에 보고하여 등용하게 한다.

이와 같이 학령은 유생들이 성균관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세세한 규칙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학령은 여러 교육관계 절목節目과 사목事目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되었는데, 1582년(선조 15)에는 이이李珥가 왕명으로 학령을 보완하는 〈학교모범學校模範〉을 만들었다.[11] 〈학교모범〉은 글자 그대로 '학교(교육)의 모범'이다. 유생들의 공부가 도道를 자임하는 도학道學이자 성인聖人이 된 뒤에야 그치는 성학聖學이 되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제1조 입지立志로 시작하는 〈학교모범〉에는 검신檢身, 독서讀書, 신언愼言, 존심存心, 사친事親, 사사事師, 택우擇友, 거가居家, 접인接人, 응거應擧, 수의守義, 상충尙忠, 독경篤敬, 거학居學, 독법讀法에 이르기까지 총 16개 조항에 걸쳐 스승과 제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에게 전하고자 한 이이의 교육에 관한 이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조선 초기의 〈학령〉이 세세한 규칙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것과 달리 〈학교모범〉은 성리학의 교육관에 따라 유생들의 학문과 수양, 생활과 처세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학교모범〉의 부록인 〈학교사목學校事目〉에서는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유학을 공부하는 유생들에게 모두 학교에 취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생원·진사를 제외하고 배움을 지망하는 선비는 모두 성균관의 하재下齋와 사학四學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사학에 처음 들어갈 때에는 유생 10인의 추천을 받은 다음 강講을 시험하여 입학을 허락하고, 입학한 뒤에는 〈학교모범〉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구속이 싫어 학적學籍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③ 재회와 유벌

성균관 유생들은 재회齋會라고 하는 자치 조직을 운영하였다. 재회의 임원으로는 장의掌議 2명와 색장色掌 4명이 있었다. 장의가 주도한 유생들의 자치 활동은 학령을 어긴 유생이나 비행非行이 있는 정부 관리에 대해 부황付黃·삭적削籍 등의 유벌儒

11 〈학교모범〉의 원문과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의 《율곡전서》 권15, 잡저2, 學校模範[壬午製進○事目附] 참조.

罰을 내리는 것에서부터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집단적 의견 표출까지 다양하였다. 유생들의 집단적 의사 표출은 보통 연명으로 유소儒疏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만약 유소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지 못하면 권당捲堂이라는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권당은 식당에 들어가 도기到記하고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일종의 단식 투쟁이면서 동시에 동맹휴업과 같은 성격의 시위 행위이다. 권당보다 더 강력한 집단행동은 공관空館이다. 공관은 말 그대로 유생들이 짐을 싸 성균관을 떠나버리는 것이다. 공관은 유생들로서도 '문묘수직文廟守直'이라는 신성한 임무마저 저버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에 결행되었고, 이 경우 조정에서는 대체로 유생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살펴본 성균관 〈학령〉에는 유생이 학업을 게을리하거나 행실이 바르지 못할 경우의 처벌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13개 조항 가운데 9개 조항(2, 3, 4, 5, 6, 9, 10, 11, 12조)에 '벌한다.'라는 문구가 쓰일 정도로 〈학령〉은 금방禁防 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학령〉에는 처벌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2조에 일강日講에서 통하지 못한 자는 '회초리를 때린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와 제8조에서는 각각 통용 문체를 변경하거나 부박하고 화려한 문체를 선동하는 자와 교언영색으로 남에게 아첨하는 데 힘쓰는 자를 비롯한 행실 불량자를 '쫓아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오륜을 범하는 죄를 짓거나 행실이 잘못된 자는 '북을 울려 성토한다.'라고 하고, 심한 경우에는 담당 관서에 보고하여 '종신토록 학교에 몸담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학령〉에는 퇴교 조치인 출학黜學, 회초리를 때리는 초楚, 북을 울려 과실을 성토하는 명고鳴鼓 등의 처벌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초楚와 출학黜學이 사장師長, 즉 학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처벌인 것과 달리 명고鳴鼓는 유생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이의 〈학교사목〉을 보면 기존의 〈학령〉에 없던 새로운 처벌 원칙과 방식이 대거 등장한다. 예컨대 〈학교사목〉 제7조에서는 "당번이 되어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자는 첫 번째는 대면하여 꾸짖고[面責], 두 번째는 생도들 속에서 쫓아내고[損徒], 세 번째는 출재黜齋하고,[12] 네 번째는 학적學籍을 삭제한다.[13]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와 같은 처벌이 대부분 유생 자치조직인 재회에서 자체

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유생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처벌을 유벌儒罰이라 하는데,[14] 〈학교사목〉에서 유벌은 그 과실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면책-손도(출좌)-출재(출학)-삭적으로 단계화되어 있었다.[15]

(4) 과시 제도

'과시課試'는 조선 전기부터 성균관과 사학, 향교 등에서 권학勸學을 목적으로 시행되던 학교 시험이었는데, 1746년(영조 22) 《속대전》의 편찬과 함께 과거제도의 일부분으로 명문화되었다.[16] 이에 따라 과시는 기본적으로는 학교 시험이지만 과거와 연계되어 운영된 국가시험이기도 하였다. 과시 제도는 조선 후기 교육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의 하나로서,[17] 한편으로는 과거제도상의 특전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학교에 재학 중인 유생들이 학업에 매진하도록 권장하는 기능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상시 학업에 충실한 유생들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단기간의 시험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과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속대전》의 규정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성균관에서 시행한 주요 과시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原註: 출재란 스승에게 고하여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허물을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된 후에는 다시 학교에 오도록 허가하되, 생도들 속에서 쫓겨난 자와 학교에서 쫓겨난 자가 다시 참석할 때에는 반드시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면대하여 꾸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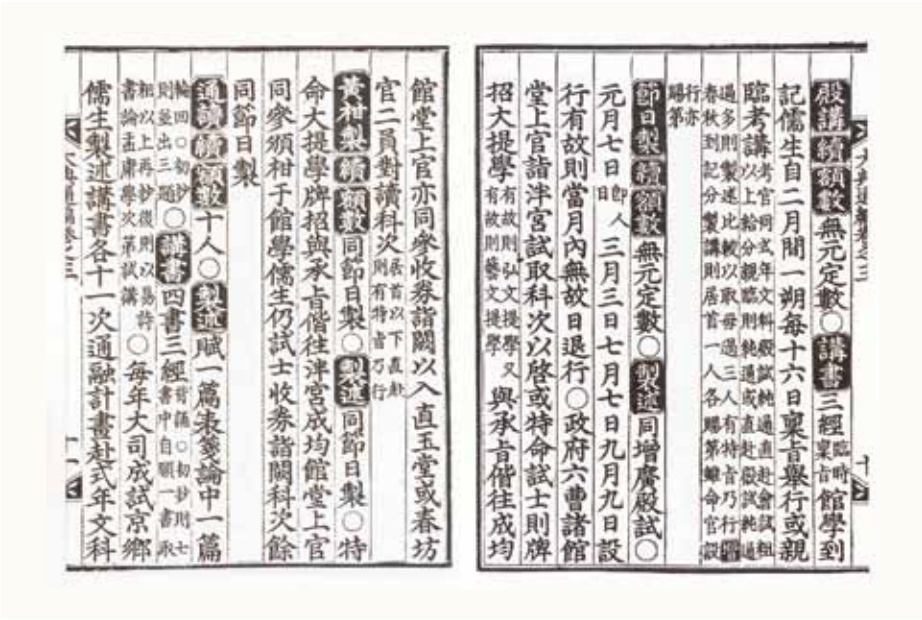
13 原註: 학적이 삭제된 자는 軍役으로 돌린다. 허물을 고쳐서 스스로 새로워졌더라도 반드시 初試에 입격한 뒤에야 다시 들어올 수 있다.

14 박현순, 〈16~17세기 성균관의 儒罰〉, 《역사와 현실》 67, 2008 참조.

15 참고로 《태학지》 권6, 章甫, 유벌 조항에 나오는 태학의 유벌은 墨削(먹으로 이름을 지우거나 깎아내 버리는 것), 鳴鼓永削(북을 치고 성토하면서 영원히 이름을 삭제하는 것), 付黃永削(노란 종이를 붙여 영원히 이름을 삭제하는 것), 永損損徒(영원히 배척하여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 永出齋(영원히 동·서재에서 쫓아내는 것) 등이고, 寄齋生인 下齋生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食損唯永刊(식당의 명부에서 영원히 삭제하여 원점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16 《속대전》, 예전, 諸科.

17 최광만, 〈17세기 과시 제도의 형성 과정〉, 《교육사학연구》 22(2), 2012; 최광만, 〈조선 전기 과시 제도의 신설 과정〉, 《교육사학연구》 23(2), 2013; 최광만, 〈18세기 과시의 유형〉, 《교육사학연구》 24(1), 2015.



《대전통편》의 과시(전강·절일제·황감제·통독) 규정

① 절일제

절일제節日製는 인일人日인 1월 7일에 치르는 인일제와 상사上巳인 3월 3일에 치르는 삼일제, 칠석七夕인 7월 7일에 치르는 칠석제, 중양重陽인 9월 9일에 치르는 구일제가 있었다. 모두 절일節日을 기념하여 치르는 제술 시험이었는데, 의정부와 육조, 여러 관館의 당상관이 성균관에 가서 시험을 보이고 성적을 매겨 보고하도록 하였다. 임금의 특명으로 시사試士할 경우에는 대제학(유고 시에는 홍문관 제학, 그도 유고 시에는 예문관 제학)을 불러 승지와 함께 성균관에 가서 성균관의 당상관도 동참한 가운데 시험을 시행하였다. 답안지를 걷어 대궐로 가져오면 입직한 옥당玉堂이나 춘방春坊의 관원 2인이 대독對讀하여 성적을 매겼다. 거수居首(수석) 이하에게 회시會試나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임금의 지시가 있어야 시행하였다. 제술하는 내용은 식년문과(증광문과) 전시와 동일하였다.

② 황감제

황감제黃柑製는 제주에서 진상한 황감, 즉 귤을 임금이 성균관·사학의 유생들에게 내려주는 날에 치르던 제술 시험이다. 임금이 특명으로 대제학을 불러 승지와 함께 성균관에 가서 성균관의 당상관이 동참한 가운데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에게 귤을 나누어준 다음 시험을 시행하게 하였다. 답안지를 걷어 대궐로 가져와 성적을 매겼으며, 나머지는 절일제와 동일하였다.

③ 전강

전강殿講은 삼경三經에 대한 강서講書 시험으로, 성균관과 사학의 도기유생到記儒生을 대상으로 2월부터 1개월 간격으로 16일마다 임금에게 아뢰고 거행하며, 간혹 임금이 친히 참석하여 고강考講하기도 하였다. 순통純通을 받은 자는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조粗 이상을 받은 자에게는 급분給分, 즉 점수(가산점)를 주었다. 임금이 친히 참석하면 순통을 받은 자에게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도 하였으나, 순통을 받은 자가 너무 많으면 제술製述 성적을 비교하여 뽑되 3인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였다.

④ 통독

통독通讀은 매년 성균관 대사성이 서울과 지방의 유생을 제술과 강서로 각각 11회씩 시험하여 점수를 합계한 뒤 식년 문과의 복시에 응시하게 하는 시험제도로, 액수額數는 10인이었다. 제술은 부賦 1편과 표表·전箋·논論 가운데 1편을 번갈아 시험하였다. 처음 뽑을 때는 세 가지 시제試題를 모두 출제하였다. 강서는 사서삼경을 보지 않고 돌아앉아 암송하게 하였다. 처음 뽑을 때는 칠서七書 가운데 자원하는 한 책을 강독하여 조粗 이상을 받은 자를 선발하고, 재차 뽑은 뒤로는 《주역》《시경》《서경》《논어》《맹자》《중용》《대학》의 순서로 강독 시험을 시행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성균관 과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생에게는 직부전시直赴殿試, 직부회시直赴會試, 급분給分 등 각종 은사恩賜를 부여하였다. 이들 은사는 모두 문과에 응시할 때 활용되는 것으로, 성균관 과시 출신이 급제자 가운데 차지하

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성균관 과시는 사실상 급제자를 배출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성균관 과시 그 자체가 또 다른 인재 선발 제도, 즉 문과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조대부터 영조대까지 문과 급제자 가운데 직부전시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인조~영조대 문과 급제자 중 직부전시자 비율

(단위: 명, %)

왕대	식년시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춘당대시	합계	직부전시	비중
인조~현종	474	255	319	141	58	31	1,278	20	1.6
숙종	562	456	110	155	76	40	1,399	137	9.8
영조	760	377	44	709	78	43	2,011	407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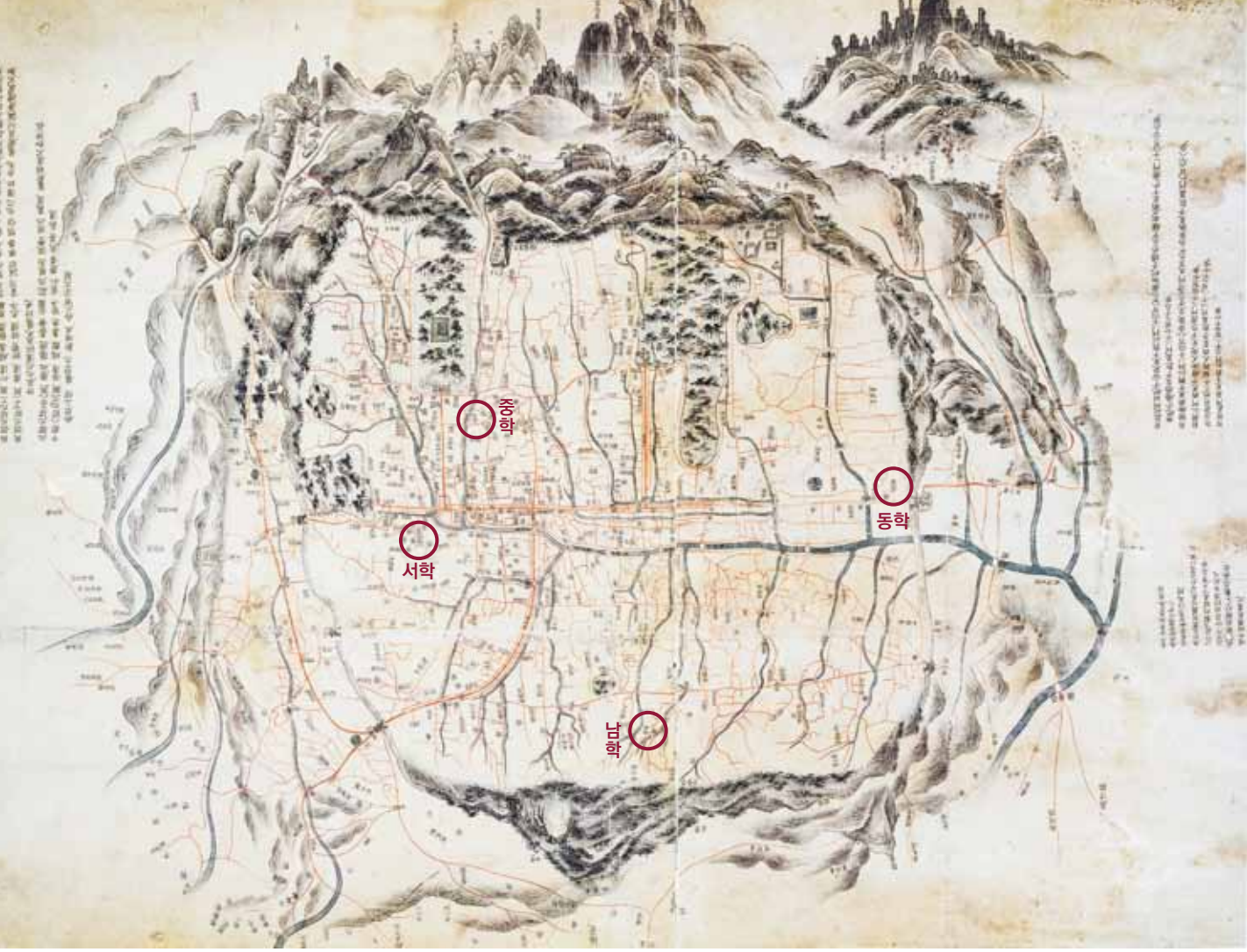
출처: 최광만, 〈영조대 성균관 과시 시행 상황 분석〉, 《교육사학연구》 33(2), 2023, 127쪽의 '〈표7〉 영조대 문과 급제자와 직부전시자 인원' 재작성

[표 1]에 나타나듯이, 숙종대 이후 문과 급제자 중 직부전시자 비율이 이전 왕대에 비해 급격히 높아졌다. 즉 인조~현종대에는 1.6%에 불과하였으나 숙종대에 9.8%로 늘어나고, 영조대에는 20.3%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영조대에는 성균관 과시의 시행이 증가하고, 친림親臨 과시의 비율 또한 높아지면서 직부전시자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부학당

사부학당은 한성부의 사부四部에 설립되었던 네 곳의 학당(중학·동학·남학·서학)으로, 줄여서 사학四學이라 불렀다. 국학인 성균관이 오늘날의 대학에 해당한다면, 사학은 지방의 향교鄕校와 마찬가지로 대학 아래 단계에 있는 중등 수준의 학교였다고 할 수 있다. 사학의 유생들은 시험을 거쳐 성균관에 기재생寄齋生으로 머물며 수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알성시謁聖試나 전강, 황감제, 도기과到記科, 통독 등의 시험[과시]에 함께 응시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서울의 사학 유생들에게 부여되는 상당한 혜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사학은 고려 말 개경의 5부五部에 설치하였던 오부학당이 한양 천도



〈도성도〉에 보이는 사학의 위치

와 함께 옮겨온 것이다. 중학은 북부의 관광방觀光坊(지금의 종로구 중학동)에, 동학은 동부의 창선방彰善坊(동대문 근처)에, 남학은 남부의 성명방誠明坊(중구 남학동)에, 서학은 서부의 여경방餘慶坊(광화문 네거리 근처)에 각각 설립되었다. 1411년(태종 11) 남부학당이 처음 설립되었고, 이후 1419년(세종 1)에서 1424년(세종 6) 사이에 중부학당, 동부학당, 서부학당이 연이어 설립되었다.[18] 1427년(세종 9)에 어석魚腊(어포)을 오부학당에 나누어 주라고 하고, 1661년(현종 2)에 송준길宋浚吉의 요청에 따라 북학 건립을 추진

18 신동훈, 〈조선 초기 四學의 성립과 '開城學堂'〉, 《서울학연구》 65, 2016 참조.

하는 등[19] 조선시대에도 고려 말과 같이 오부학당 체제의 구축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결국 북부학당은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20]

(1) 정원

사학의 정원은 동·서·남·중학 각각 100명씩으로 모두 400명이었다. 사학은 기숙학교였던 성균관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예컨대 1470년(성종 1) 11월 예조에서 마련한 〈경학권려절목經學勸勵節目〉을 보면 분번야독分番夜讀, 즉 사학의 유생들이 번番을 나누어 교대로 야간에 글을 읽도록 규정하고 있다.[21] 사학은 기본적으로 정원 내의 유생 중 일정 수의 유생이 번을 나누어 돌아가면서 머물며 공부하는 분번거학分番居學의 원칙 아래 운영된 학교였던 것이다. 사학 유생들의 분번거학에 대해서는 〈학교사목〉에 다음과 같이 그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 사학四學은 100인을 액수로 정하되 강講을 시험하여 그 액수를 채우고, 다섯 번으로 나누어 매번 20명씩 학교에 머물게 하되 10일을 기한으로 하여 돌린다. 액수에 들지 못한 자 또한 다섯 번으로 나누어 학교에 오되 스스로 식량을 준비하게 하고 공량公糧을 먹여서는 안 된다.

위의 규정대로 하면, 정원이 100명인 사학의 유생들은 각각 20명씩 다섯 번으로 나누어 10일씩 취학하게 된다. 정원 내의 유생들은 거학하는 동안 공량, 즉 국가에서 지급하는 양식을 먹을 수 있으나 정원 외 유생들은 자신의 식량을 지참해야 한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사학 유생의 정원이 동·서·남·중학 각각 100명에서 95명씩이 감축되어 각각 5명이 되었다. 이들 5명은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거재하며 식사를 제공받는 공궤유생供饋儒生의 숫자로, 사학에 등록되어 학적學籍을 둔 유생의 숫자를 의

19 《춘관통고》 권33, 길례, 사학.

20 《輿圖備地》 권1, 京都, 東班府署, 附 革廢府署에서는 "북학은 태종 때 설치하였다가 뒤에 폐지하였다. 현종 2년에 다시 설치하였다가 곧 폐지하였다(北學 太宗朝置 後罷之 顯宗二年復置 尋罷之)."라고 기술하고 있다.

21 《성종실록》 권8, 성종 1년 11월 8일(임오).

미하는 것이 아니다. 거재 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은 유생 공궤에 필요한 재정 부족이 주된 원인이지만, 거재 독서에서 과시課試 중심으로 사학 운영 방식이 변화한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교관

《경국대전》에 따르면, 사학의 관원으로는 종6품의 교수敎授 2명과 정9품의 훈도訓導 2명을 두었는데, 모두 성균관의 전적典籍 이하 학관이 겸직하게 하였다. 이후 《속대전》에서는 각각 교수 1명과 훈도 1명을 감축하였으며, 교수 1명은 시종侍從을 겸차兼差하도록 하였다. 사학의 겸교수兼敎授, 즉 사학에 겸차된 교수들의 명단은 현재 《중학겸교수선생안》《서학선생안》《동학겸교수선생안》 각 2권씩 총 6권이 남아 있다.[22] 이들 겸교수 명단은 1654년(효종 5)부터 시작하여 서학은 1893년(고종 30)까지, 중학과 동학은 1894년(고종 31)까지 기록되어 있다. 기재 인원의 경우, 중학은 모두 679명으로 연평균 부임 인원이 2.8명이며, 서학은 모두 691명으로 연평균 부임 임원이 2.9명이고, 동학은 모두 536명으로 연평균 부임 인원이 2.2명이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동·서·중학에 대체로 1년에 2~3명 정도의 겸교수가 부임하였다. 선생안이 따로 전하지 않는 남학 겸교수의 경우도 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속대전》에서 '시종을 사학에 겸차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겸교수의 본직 소속별 인원 및 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박영미·정상준, 〈四學兼敎授先生案 분석〉, 《교육사학연구》 29(2), 2019. 남학겸교수의 경우 따로 선생안이 전하지는 않지만 《승정원일기》의 인사기록을 통해 대략적인 명단을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표 2] 겸교수 본직 소속별 인원

(단위: 명)

번호	왕대	홍문관	오위	이조	세자시강원	사간원	병조	사헌부	기타	계
1	효종	0	1	4	1	0	0	1	0	7
2	현종	1	0	2	0	1	0	0	0	4
3	숙종	67	7	29	2	9	0	4	10	128
4	경종	5	0	0	1	2	0	0	0	8
5	영조	124	35	13	14	8	2	2	17	215
6	정조	53	38	5	1	4	3	4	5	113
7	순조	18	17	0	3	0	6	0	3	47
8	헌종	9	6	0	0	0	1	0	2	18
9	철종	0	7	0	0	1	1	0	2	11
10	고종	56	60	1	7	3	4	2	19	152
계 (비율, %)		333 (47.4)	171 (24.3)	29 (4.1)	29 (4.1)	28 (4.0)	17 (2.4)	13 (1.8)	58 (8.3)	703

출처: 박영미·정상준, 앞의 글, 47쪽의 '〈표 17〉 겸교수 본직 소속별 인원 및 비율' 재작성.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효종대부터 고종대까지 동·서·중학에 겸차된 교수 703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홍문관 소속 겸교수로, 그 비율이 47.4%에 달했다. 이를 통해 대체로 《속대전》에 규정된 시종 겸차 원칙에 따라 사학 겸교수의 임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⑶ 과시 제도

1546년(명종 1)의 〈경외학교절목京外學校節目〉을 보면,[23] 사학의 유생들은 성균관의 생원·진사, 기재생들과 같은 일수로 사서오경을 읽어 나가야 하였다. 예컨대 《대학》은 한 달, 《중용》은 두 달, 《논어》와 《맹자》는 각 넉 달이며, 《시경》과 《서경》《춘추》는 각 여섯 달, 《주역》과 《예기》는 각 일곱 달을 기한으로 읽어 나가되, 각 책마다 시독始讀과 필독畢讀, 즉 책 읽기를 시작한 날과 끝낸 날을 유생 이름 밑에 기록하도

23 《명종실록》 권3, 명종 1년 6월 16일(신축).

록 하였다.[24] 그리고 매월 초순에는 예조와 성균관 당상이 함께 모여 유생들을 대상으로 강경 시험을 쳐 그 성적을 통·약·조·불로 기록하고 식년마다 사서四書와 일경一經 이상의 점수를 통계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5명은 문과회시에 직부하게 하였다. 또한 매월 초순에 예조 낭청과 성균관 장관, 사학 관원 각각 1명과 윤차관輪次官이 성균관의 기재생(승보생)과 사학 유생을 중학에 모아 사서를 고강하고 그 점수를 통계하여 성적이 우수한 10명을 생원·진사시의 복시에 직부하게 하였다. 이처럼 사학에도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평상시의 학습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유생에게 과거시험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었는데, 조선시대에 법제화된 사학의 과시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월도회

《경국대전》의 장권奬勸 조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학에서는 유월도회六月都會 제도가 운영되었다. 유월도회란 매년 6월에 네 곳의 학당에서 각각 20명씩의 유생을 선발하여 남학南學에 모아놓고, 3품 이하의 문관 3명이 경서를 강론하거나 문장을 제술하게 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10명을 곧바로 생원시나 진사시의 복시에 응시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16세기 이후에는 사학윤차제술四學輪次製述과 사학식년고강四學式年考講이 실시되면서 사학의 유월도회가 점차 사문화되었다.[25] 여기서 사학윤차제술은 4~5인의 윤차輪次 시관試官을 차출하여 매달 한 차례씩 사학을 차례로 돌아가며 시부詩賦로 제술 시험을 치러 연말에 그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 우수자 3인을 뽑아 생원·진사시의 복시에 곧바로 응시하게 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제도였다. 그리고 사학식년고강은 매달의 강경 시험 결과를 모아 두었다가 식년시가 있는 해에 최종적으로 우등자 10명에게 생원·진사시 복시 직부를 허락하는 제도였다. 이처럼 사학윤차제술과 사학식년고강은 사학합제四學合製 성립 이전까지 유월도회를 대

24 이를 書徒 또는 書徒記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영기, 〈조선시대 書徒法과 經典교육〉, 《한국교육사학》 40(2), 2018 참조.

25 여영기, 〈四部學堂 課試制度의 정비와 四學合製의 성립과정〉, 《한국교육사학》 35(1), 2013 참조.

신하여 제술 시험과 강경 시험으로 양분하여 운영된 사부학당 과시 제도의 두 축이었다.[26]

② 승보

승보陞補는 당초 생원·진사로 성균관의 정원 200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결원을 보충하는 것과 관련된 제도였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나이가 15세 이상인 사학 생도 중에서 《소학》과 사서 및 일경一經을 통한 자, 유음적자有蔭嫡子 중에서 《소학》에 통한 자, 그리고 이전에 문과와 생원·진사시에서 향시와 한성시에 입격한 자 가운데서 생원·진사의 결원을 보충하고, 조사朝士 중에서 부학赴學을 원하는 경우에도 들어주는 것이 골자였다.[27] 그런데 선조대에 이르면 이미 승보시는 사학의 유생 중 나이가 어리고 총명한 자를 선발하여 승보陞補라 하고, 반궁泮宮(성균관)의 하재下齋에 입속시켜 제술로 시험 보인 뒤 1년 동안의 종합 점수가 우등인 자를 연말에 예조에 보고하여 초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생원이나 진사시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과시 제도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28] 즉 승보시는 성균관에 승보할 사학 유생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 성균관에 승보하여 하재에 머물며 수학하는 사학 출신 기재생寄齋生을 대상으로 한 시험제도로 성격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하여 승보는 사학합제와 함께 《속대전》에 수록되어 조선 후기 사부학당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속대전》의 관련 규정을 보면,[29] 승보시의 액수額數는 10명이다. 여기에 더해 특별히 개성부에 4명, 제주에 2명의 정원이 배정되었다. 승보시는 부賦 1편과 고시古詩 1편에 대한 제술 시험으로 치러지며, 해마다 대사성이 사학의 유생을 대상으로 모두 10차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후 《대전통편》에서는 12차례로 시험 횟수가

26 여영기, 앞의 글, 2013, 65쪽.
27 《경국대전》, 예전, 생도.
28 여영기, 앞의 글, 2013, 66쪽.
29 《대전통편》, 예전, 제과, 승보.

늘어났다. 세초歲抄(연말)에 점수를 계산하여 식년에 성적 우수자를 생원·진사시의 복시에 곧바로 응시하게 하였다.

③ 사학합제

1650년(인조 14) 예조의 건의에 따라 〈도회시강절목都會試講節目〉이 마련되면서 그동안 사문화되었던 사학의 유월도회가 제술과 고강의 균형을 내세우는 '공도회公都會'로 일시 부활하게 된다. 하지만 '한두 번의 시험으로 생원·진사시 복시 직부를 허락하는 공도회는 그 시행 절차가 너무 소략하여 과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라는 등의 비판을 받으며 다시 혁파되고 완전히 새로운 절차와 방법을 가진 새로운 과시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 제도의 대략을 살펴보면, 여러 갈래의 제술과 고강 시험이 통합되어 사학유차제술과 공도회 제술 입격入格 인원이 합쳐졌으며, 제술과 《소학》 고강의 시취試取 인원을 서울의 네 개 학당에 골고루 배분하였다. 그리고 유월도회와 같은 단기간의 소략한 방식이 아니라 매달 돌아가며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다시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30] 이렇게 하여 탄생한 조선 후기 사학의 대표적인 과시 제도가 바로 사학합제四學合製이다.

《속대전》에 따르면, 사학합제에서는 매년 3개월마다 한 번씩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제술로 시험하여 학당별로 40명씩을 뽑아 모두 160명을 1차로 선발하였다. 또한 각 학당별로 고강[강서]을 실시하여 사서로 10명, 《소학》으로 10명씩을 뽑아 모두 80명을 1차로 선발하였다. 제술 과목은 승보시와 같고, 고강은 사서를 배송背誦, 즉 책을 보지 않고 돌아앉아 암송하게 하고, 동몽童蒙의 경우 《소학》 네 곳을 배송하게 하였다. 이렇게 1차로 제술 160명, 고강 80명을 선발한 다음 성균관 대사성이 다시 합제合製·합강合講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제술 16명과 고강 8명(사서 4명, 《소학》 4명)을 선발하여 생원·진사시의 초시를 면제하고 복시에 바로 응시하게 하였다.

30 여영기, 앞의 글, 2013, 75~76쪽.

2. 무학



훈련원 터 표석

조선은 개국 초부터 '문과 무는 어느 한쪽만 폐할 수 없다[文武不可偏廢].'라는 문무병중文武竝重의 원칙을 표방하였다. 이에 따라 정도전鄭道傳이 작성한 태조의 즉위교서에도 무학武學과 무과武科의 세부 시행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강무지법講武之法이 포함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훈련관訓練觀(뒤에 훈련원訓鍊院으로 개칭)의 주관 아래 무경칠서武經七書[31]와 활쏘기, 말타기를 강습시키고, 통달한 경서의 수와 무예의 정도에 등급을 매겨 입격자 33명에게 문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신패出身牌를 주고 병조에 명단을 보내 임용하게 하였다.[32] 이 강무지법을 주관하는 훈련관은 한성부의 남부 명철방明哲坊에 위치하고 있었는데,[33] 《경국대전》의 병전에서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 훈련, 무경武經(병서兵書) 습독習讀의 일을 맡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이 훈련원이 사실상 조선시대의 무학武學 역할을 수행하였다.

1) 무학 설치와 무경습독관 제도의 시행

건국 초기부터 시작된 무학 진흥책은 조선 전기의 경우 주로 1406년(태종 6)에 하륜河崙의 건의로 설치한 십학[34] 중의 무학武學과 1422년(세종 4)에 도입된 무

31 무경칠서는 일곱 가지의 중요한 兵書로서, 《六韜》《孫子》《吳子》《司馬兵法》《黃石公三略》《尉繚子》《李衛公問對》로 구성되어 있다.

32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정미) 태조 즉위교서.

3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 京都 하, 武職公署.

34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11월 15일(신미). 십학은 儒學, 武學, 吏學, 譯學, 陰陽風水學, 醫學, 字學, 律學, 算學, 樂學으로, 각기 提調官을 두었다.

경습독관武經習讀官 제도[35]를 통해 이루어졌다. 태종대의 십학은 고려 말 1389년(공양왕 1)의 십학[36]과 조선 초 1393년(태조 2)의 육학六學[37]을 이은 일종의 현직 관리 교육 과정이었다.[38] 대상자는 유학儒學의 경우 7품 이하 관원이었으며, 무학을 포함한 나머지 9학은 시산時散 4품 이하로서, 사계절[39]마다 '십학 취재取才'라는 시험을 치러 그 결과를 임용(승진)이나 출척黜陟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무학의 경우, 무과 출신자나 병조·훈련관의 관원이 그 대상이었고, 취재시의 평가 내용은 무경칠서와 《진도陣圖》《장감박의將鑑博議》《태일산太一算》이었다. 무학의 책임자로는 무학제조武學提調[40]를 두었으며, 병조의 주관 아래 서울의 훈련관에서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태종대에 설치된 십학 중의 무학은 훈련관에서 진행하는 무관 임용 후보자나 현직 관원 대상의 관리 교육 및 평가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1422년(세종 4)에 무과 출신자들의 무학 강습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무경습독관 제도 또한 관리 교육의 일환이었다. 병법兵法에 정통한 무관을 양성하기 위해 훈련관의 녹관祿官·겸관兼官으로 무경武經에 능통한 자와 차하관差下官 3품 이하로 무경에 능통한 자 20명을 선발하여 무경칠서를 비롯한 병서 강습에 전념하게 한 뒤 평가를 통해 서용하는 제도였던 것이다.[41]

이후 이 제도는 1425년(세종 7) 병조의 계啓[42]와 1429년(세종 11) 훈련관 제조 이춘생·변처후 등의 상서上書[43]를 통해 운영상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기본적

35 《세종실록》 권18, 세종 4년 윤12월 1일(갑인).

36 《고려사》 권77, 백관 2, 諸司都監各色에 나열된 십학은 禮學, 樂學, 兵學, 律學, 字學, 醫學, 風水陰陽學 등 吏學으로 8개 학(분야, 학교)인데, '풍수음양학 등'이 地理學과 卜學 등을 포함하여 사실상 3개의 학이라 전체를 십학이라 부른 것으로 보인다.

37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10월 27일(기해). 육학은 兵學, 律學, 字學, 譯學, 醫學, 算學이다.

38 이하 십학 중의 무학에 대해서는 김대식, 〈조선 초 十學 제도의 설치와 변천〉, 《아시아교육연구》 12(3), 2011, 1~26쪽 참조.

39 처음에는 사계절의 가운데 달인 仲月이었다가 1414년(태종 14)에 첫째 달인 孟月(1·4·7·10월)로 평가 시기를 바꿨다.

40 당초 1명이었다가 뒤에 3명으로 증원되었다.

41 《세종실록》 권18, 세종 4년 윤12월 1일(갑인).

42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1월 8일(계묘).

43 《세종실록》 권45, 세종 11년 7월 11일(을묘). 주요 내용은 武經뿐만 아니라 騎射와 步射 등의 무예도 함께

으로 무과 출신자들의 병서(무경) 학습을 독려하기 위한 관리 교육 제도라는 점에서 심학 중의 무학 제도와 그 취지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무경습독관 제도는《경국대전》에 다음과 같이 명문화되었다.

> 습독관 30원은 녹관祿官인 권지權知와 함께《병요兵要》, 무경칠서,《자치통감自治通鑑》《장감박의》《진법陣法》《병장설兵將說》을 습독習讀하고, 혹은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히기도 한다. 훈련원의 당상관이 병조·도총부의 당상관 각 1원과 함께 매달 고강考講하여 분수分數(점수)를 주고, 연말에 분수를 통계하여 우등한 사람 3인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 국왕에게 아뢰어 서용한다.[44]

2) 무학별설론의 등장과 좌절

1431년(세종 13) 사직司直 박아생朴芽生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는 무학별설론武學別設論, 즉 무학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상서를 올렸다.[45] 조선 초부터 훈련관(훈련원)이 무학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아생이 무학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 공자는 옛 성인의 뒤를 잇고 장래 학문의 길을 열어 만대에 법을 전해 준 까닭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온 천하 각국에서 문묘文廟를 세워 제향하고 있습니다. 여망呂望은 무후武侯의 재능으로 백성을 도탄에서 건져내 각기 편히 그 업에 종사하며 연수年壽를 누리게 하였고 난세를 다스려 정도正道를 되찾게 하여 그 공로가 혁혁하거니와 또한 비서秘書를 후세에 전했기 때문에 옛날의 성군들이 무묘武廟를 세워 제향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와서 다만 문文의 숭상만을 일삼고 이를 폐지하고 말았으니, 문무文武의 도道를 다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신이 다행하게도 무묘도武廟圖를 얻어 바치오니,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무묘를 훈련관 북쪽에 세우고, 아울러 둑소纛所도 이곳에 옮겨, 무거武擧의 무리로 하여금 제향에 참여하게 하시면 문무의 도가 갖추어질 것입니다.[46]

시험하고, 무학 취재 때의 평가 내용에《將鑑博議》를 포함해 달라는 것이었다.

44 《경국대전》, 兵典, 경관직, 정3품아문, 訓鍊院.

45 조선시대의 무학별설론에 대해서는 박종배, 〈조선시대 무학별설론 연구〉,《한국교육사학》36(4), 2014 참조.

이와 같이 박아생은 공자에 버금가는 여망呂望[47]의 공덕을 열거하며 문묘를 세워 공자를 기리는 것처럼 무묘[48]를 세워 여망을 제사해야 문무의 도道가 온전히 갖추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상서의 말미에서 무묘 건립의 장소로 훈련관을 제시하고, 무거武擧의 무리, 즉 무과 급제자들로 하여금 무묘의 제향에 참여하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공자와 여망은 각각 문과 무를 대표하는 성인聖人이기 때문에 문재文才와 무재武才를 양성하는 두 분야의 최고학부에 이들을 모신 문묘와 무묘를 두어 두 성인을 궁식矜式으로 삼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훈련관에 무묘를 건립하자는 박아생의 상서는 세종과 상정소詳定所 제조 맹사성, 허조, 정초 등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국 기각되었다.[49] 기각의 주된 논리는 "만약 별도로 무묘를 건립하게 되면 이것은 공자는 문文을 전업專業으로 하고, 태공은 무武를 전업으로 한 것으로 만들어 문무일체文武一體의 도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1450년(세종 32)에는 집현전 부교리 양성지梁誠之가 〈비변십책備邊十策〉의 세 번째 '택장수擇將帥' 조항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다시 무학 별설론을 제기하였다.

> 그 (장수를) 양성養成하는 방법도 송나라의 무학고사武學故事와 또한 우리나라의 습독관 제도에 따라 나이 40세 이하의 내금위·별시위·갑사 중에서 기량器量과 지식이 있고 문자를 해득한 자를 자원自願에 따라 훈련관에 입학시키되, 입번入番하여 순작巡綽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무경武經을 습독하게 하고, 그 모든 조건과 격식은 대략 성균관의 예를 모방하며, 학관學官은 무경武經에 정통한 자를 가려 장관長官을 삼아서 가르치게 하소서.[50]

46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3월 17일(신사).

47 여망의 본명은 姜尙 또는 呂尙이고, 문왕과 무왕을 도와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후에 주로 姜太公 또는 太公望, 呂望이라 불렸다.

48 강태공으로 유명한 여망을 모신 사당으로, 여망이 760년(당 숙종 상원 원년)에 武成王으로 추존되면서 그의 사당이 武成王廟로 승격되었다. 이후 文宣王으로 추존된 공자의 사당인 文宣王廟가 文廟로 불리는 것과 대비되어 무성왕묘는 武廟라 불리게 되었다. 무성왕묘는 이후 송·요·금·원 시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1387년(명 태조 홍무 20)에 태조 주원장의 명으로 폐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于賡哲, 〈由武成王廟制變遷看唐代文武分途〉,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2002, 133·134·139쪽 참조.

49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3월 17일(신사).

여기에서 양성지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무학 별설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무학을 별도로 설치하였던 송나라의 무학고사와 유학의 최고학부인 성균관의 예에 의거하여 훈련관을 사실상의 별설 무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별설 무학으로서의 훈련관의 위상에 대한 그의 생각은 몇 년 뒤인 1456년(세조 2) 3월에 올린 또 다른 상소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상소의 내용 중에서 '무성왕묘 설립[武成立廟]'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무성왕묘武成王廟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대개 문무의 도는 천경지위天經地緯와 같으니 어느 한쪽만 폐할 수 없습니다. 당나라 숙종은 태공太公을 높여 무성왕武成王을 삼아 묘廟를 설립하여 향사하기를 문선왕文宣王과 더불어 비등하게 하고 뒤에는 역대의 양장良將 64인을 배향하였습니다. 우리 동방은 선성先聖의 제사가 위로는 국학國學으로부터 아래로는 주·군에 이르렀으되, 무성왕武成王은 사우祠宇가 없고 단지 둑신纛神 4위位만을 제사지내니 어찌 궐전闕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훈련관은 곧 송나라의 무학武學이니, 빌건대 둑소纛所를 훈련관에 병합하고 무성묘武成廟를 세우되 제례祭禮와 배식配食은 대략 문묘文廟의 제도에 따르고, 또 신라의 김유신, 고구려의 을지문덕, 고려의 유금필·강감찬·양규·윤관·조충·김취려·김경손·박서·김방경·안우·김득배·이방실·최영·정지 그리고 본조(조선)의 하경복·최윤덕을 배향하게 하소서.[51]

이처럼 양성지는 문무의 도는 어느 한쪽만 폐할 수 없음을 내세우며 당의 무성왕묘武成王廟와 송의 무학武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가 무성왕 강태공을 주향主享으로 하는 무묘의 제례와 배식 등을 대략 문선왕 공자를 모신 문묘의 제도와 비등하게 운영하자고 제안한 점이다. 무성왕묘에 김유신 등 우리나라의 역대 장수 18인을 배향하자고 한 것도 문묘의 종사從祀 제도를 무묘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한 좋은 예이다. 양성지는 앞의 〈비변십책〉 중에서 이미 훈련관을 성균관의 예에 따라 운영하자고 한 바 있는데, 결국 그는 문무

50 《세종실록》 권127, 세종 32년 1월 15일(신묘).

51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3월 28일(정유).

의 도가 병행하는 것처럼 훈련관·무묘가 성균관·문묘와 비등한 위상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아생과 양성지의 무학별설론에 이어 1518년(중종 13)과 그 이듬해에는 중종과 조광조 등의 무학 별설 주장과 정광필·신용개 등의 별설 반대 주장이 대립하며 상당히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예컨대 중종이 "무학武學을 따로 설치하여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해야 한다."[52] 라고 하고, 조광조가 "당 태종 때도 무학[53]을 두었으니 지금도 하면 됩니다."[54] 라며 찬성하였음에도, 정광필 등 다수의 조정 관원들은 "무학은 서울의 경우 훈련원이 있고 또 문신으로 하여금 나누어 교훈을 받게 하고 있으니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외방에도 다 설치하면 한갓 군역軍役을 도피하는 자의 소굴만 되어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을 것입니다."[55]라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무학별설론은 이때도 실현되지 못하고 다시 좌초하고 말았다.

그런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1595년(선조 28) 7월 "각도의 대도호부에 훈련원과 같은 무학을 설립하여 병사兵士를 양성하고 무업武業을 연마하라."라는 무학 설치령이 내려졌다. 서울의 훈련원과 마찬가지로 각도의 대도호부에 무학이 설립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경상도 일선一善(선산)의 읍지邑誌에 실린 무학당武學堂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만력 경인년(1590)에 고을의 사문 고응척高應陟이 변경에 환란이 있을 것을 알고 감사 김수金睟에게 상서하여 여러 고을에 강무당講武堂을 세워 무사를 양성할 것을 청하였는데, 당시에는 살피지 않다가 임진란이 일어난 이후 그 의견이 드디어 시행되었다. 을사년(1605)에는 드디어 조정에서 여러 고을에 향교의 제도와 같게 무학당을 건립하도록 명하였다[모든 백성이 15세 이상이면 입속하여 말달리고 활쏘는 것

52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8월 14일(을해).

53 조광조가 말한 당나라 태종 때의 무학은 무성왕묘를 가리킨다.

54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8월 15일(병자).

55 《중종실록》 권34, 중종 13년 11월 8일(갑진).



경상도 군위현의 무학당(1872년 지방지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을 익히며 병서를 읽되, 노비와 학전은 대략 향교와 같게 한다고 하였는데, 초창기라 다 갖추지 못하였다]. 강무당은 동부에 있으며, 정청이 2칸이고, 좌우 방이 4칸이며, 횡각과 행랑이 아울러 7칸이고, 군영이 10칸이다.[56]

읍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는 위의 경상도 일선뿐만 아니라 안동, 대구, 경주 등을 비롯하여 전라도 나주, 충청도 충원忠原(충주), 강원도 횡성, 평안도 성천 등 전국 곳곳에 다수의 무학당武學堂이 설립되었다.[57] 조선 후기의 무학(무학당)은 위의 경상도 군위현의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정의 무학 설치령에서 언급한 대도호부나 진관 이외에 군·현 단위에서도 설립되었다.

조선 후기의 무학당에는 무학제독(안동)과 무학교수(대구, 경주), 무제독(상주), 무

56 《일선읍지》, 公署, 武學堂.

57 이하 조선 후기의 무학에 대해서는 박종배, 〈邑誌에 나타난 조선 후기의 무학〉, 《교육사학연구》 26(2), 2016 참조.

학장(성천) 등의 이름으로 무학교수가 배치되었다. 또한 정의鄭顗와 최춘명崔椿命을 제사하는 성천의 무학사武學祠와 같이 무인의 표상이 될 만한 충의忠義의 인물들을 제사하는 무묘武廟 성격의 사당도 있었다. 하지만 1595년(선조 28)의 무학 설치령에 의해 설립된 무학은 애초 별설론자들이 주장하던 무학과 같은 성격의 교육기관이 아니었다. 특히 지방의 무학에는 전대의 유공자를 제사하는 사당, 즉 무학사武學祠가 일부 설립되기도 하였지만 중앙의 무학, 즉 서울의 훈련원에는 성균관의 문묘에 준하는 무묘가 설립되지 않았다.[58] 이 때문에 조금은 아이러니하지만, 임진왜란의 와중에 무학 설치령이 내려지고 실지로 전국의 많은 고을에 무학(무학당)이 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도 이른바 '무학 별설'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측의 대립이 이어졌다. 예컨대 조선 후기의 실학자 가운데 성호 이익李瀷은 무학 별설 찬성론자로서 서울에 무성왕묘武成王廟를 설립하여 옛 명장 및 우리나라의 김유신, 강감찬, 이순신을 배향할 것을 주장한 반면, 반계 유형원柳馨遠은 별설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학과 무묘(무성왕묘)를 별도로 설치하여 무를 전업專業으로 삼게 되면 기존의 학교와 문묘는 문을 전업으로 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주장을 펼쳤다.[59] 이와 같은 반대론에 부딪혀, 무학에 묘학廟學의 제도를 완비하여 무교武教와 문교文教가 병행하는 학교제도를 수립하고자 했던 박아생 이래 무학 별설론자들의 오랜 염원은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

3. 잡학

조선시대의 한양에는 유학·무학 이외에 여러 전문 분야의 기술관을 양성하는 잡학雜學 교육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다. 개국 초인 1393년(태조 2)에 육학六

58 서울의 무묘는 관우를 모신 關帝廟, 제갈량을 모신 武侯廟 등 일종의 무묘라 할 만한 사당들이 서울 곳곳에 세워졌지만 전통적인 무학 교육기관인 훈련원에 무묘를 두어 진정한 무학을 완성하는 것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59 이에 대해서는 박종배, 앞의 글, 2014, 69~72쪽 참조.

學, 즉 병학兵學, 율학律學, 자학字學, 역학譯學, 의학醫學, 산학算學을 설치하여 양가의 자제들이 익히게 하였으며, 1406년(태종 6)에는 예학禮學, 악학樂學, 병학兵學, 율학律學, 자학字學, 의학醫學, 풍수음양학風水陰陽學(천문·지리·음양학), 이학吏學 등 십학十學을 설치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였다. 삼국시대 이래 이어져온 잡학교육의 전통이 조선시대에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시에도 '군자불기君子不器'의 관념 때문에 잡학은 유자儒者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세조 때 김종직金宗直은 "지금 문신들로 하여금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율려律呂·의약醫藥·복서卜筮·시사詩史의 7학學을 나누어 닦게 하는데, 시사야 본래 유자儒者의 일이지만, 그 나머지 잡학이야 어찌 유자들이 마땅히 힘써 배울 학學이겠습니까?"라고 항변했다가 파직당하기도 하였다.[60] 이렇게 일부 상층 지배계급의 편견과 홀대가 있긴 하였지만 잡학은 조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 인재를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 잡학과 담당 관서

조선시대의 잡학은 모두 실무 행정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여러 외국의 말을 통역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역원司譯院에서 역학譯學을 운영하여 통역관을 양성하는 식이다. 고려시대에는 여러 전문 기술 분야의 교육이 일부는 국자감에서 이루어지고 일부는 해당 행정 관서에서 이루어졌다.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의 경우, 초기에는 행정관서에서 운영하다가 문종 연간(1046~1083)에 국자감의 잡학부로 편입되었고, 고려 말인 1389년(공양왕 원년)에 십학이 설치되면서 율학·서학·산학 또한 성균관에서 분리되어 나갔다. 의학醫學·지리학地理學·복학卜學·역학 등은 고려 전기부터 해당 행정관서에서 직접 운영하였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개국 초부터 고려 말의 제도에 따라 모든 잡학을 실무 행정관서에서 직접 운영하였다.

60 《세조실록》 권34, 세조 10년 8월 6일(정해).

조선 전기에는 역학, 의학, 음양학陰陽學, 산학, 율학, 화학畫學, 도학道學 등의 잡학을 각각 사역원, 전의감典醫監과 혜민서惠民署, 관상감觀象監, 호조戶曹, 형조刑曹, 도화서圖畫署, 소격서昭格署 등의 행정관서가 직접 운영하였다. 서울의 북부, 서부, 중부, 남부 여러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조선 전기 잡학의 담당 관서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조선 전기 잡학의 담당 관서

잡학	담당 관서		
	명칭	위치	역할
역학	사역원	서부 積善坊	여러 외국의 말을 통역하는 일
의학	전의감	중부 堅平坊	醫藥을 進供하는 일
	혜민서	남부 大坪坊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醫女를 교습하는 일
음양학	관상감	경복궁내 尙衣院[61] 남쪽, 북부 廣化坊	天文, 地理, 曆數, 占算, 測候, 刻漏 등의 일
산학	호조	漢城府[62] 남쪽	戶口, 貢賦, 田糧, 食貨 등의 政事
율학	형조	司憲府[63] 남쪽 창덕궁 金虎門 밖	武選, 軍務, 儀衛, 郵驛, 兵甲, 器仗, 門戶管鑰 (궁성 수비) 등의 정사
화학	도화서	중부 堅平坊	회화의 일
도학	소격서	북부 鎭長坊	三淸의 星辰에 대한 醮祭를 지내는 일

출처: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 京都 下, 文職公署.

2) 잡학의 생도와 교관

(1) 생도 정원

《경국대전》에 규정된 조선 전기 잡학의 생도 배정 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1 상의원은 경복궁 영추문 내에 위치한 闕內各司의 하나였다.

62 한성부는 경복궁 광화문 남쪽의 中部 澄淸坊 吏曹 남쪽에 위치함.

63 사헌부는 서부 積善坊 中樞府 남쪽에 위치함.

[표 4] 조선 전기의 잡학 생도

종류		배 정 인 원	지방 생도 배정	지방 생도 총원
역학	한학	35명	평양·의주·황주 각 30명	90명
	몽학	10명	없음	
	여진학	20명	의주·창성·만포·이산·벽동·위원 각 5명, 북청 10명	40명
	왜학	15명	제포·부산포 각 10명, 염포 6명	26명
의학		50명(전의감)	부 16명, 대도호부·목 14명, 도호부 12명, 군 10명, 현 8명	3,140명
		30명(혜민서)		
음양학	천문학	20명	없음	
	지리학	15명		
	명과학	10명		
산학		15명	없음	
율학		40명	부 16명, 대도호부·목 14명, 도호부 12명, 군 10명, 현 8명	3,140명
화학		15명	없음	
도학		10명	없음	
합계		285명		6,436명

출처: 《경국대전》, 예전, 生徒.

[표 4]에서와 같이 조선 전기 잡학 생도는 서울에 모두 285명이 배정되었으며, 역학·의학·율학의 경우 지방에도 6,436명의 생도가 배정되었다. 지방의 잡학 생도 가운데 역학 생도 156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전국의 부·목·군·현에 배정된 3,140명씩의 의학·율학 생도였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잡학의 생도 정원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사역원 역학의 경우 전체적으로 생도 정원이 크게 늘어났다. 예컨대 중국어를 전공하는 한학漢學은 35명에서 40명이 추가되어 75명이 되었고, 몽고어를 전공하는 몽학蒙學은 10명에서 25명이 추가되어 35명이 되었으며, 여진학女眞學은 만주어를 전공하는 청학淸學으로 바뀌면서 20명에서 34명이 추가되어 54명이 되었다. 일본어를 전공하는 왜학倭學은 15명에서 25명이 추가되어 40명이 되었다.

전의감의 의학은 생도 정원이 50명에서 6명이 추가되어 56명이 되었고, 혜민서의 의학은 30명에서 32명이 추가되어 62명이 되었다. 혜민서의 의학 생도 정원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관상감의 천문학은 생도 정원이 20명에서 20명이 추가되어 40명이 되었고, 지리학은 15명에서 5명이 감축되어 10명이 되었으며, 명과학은 10명 그대로였다.

호조의 주학籌學[산학]은 생도 정원이 15명에서 46명이 추가되어 6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형조의 율학도 생도 정원이 40명에서 40명이 추가되어 80명이 되었다. 도화서의 화학은 생도 정원이 15명에서 15명이 추가되어 30명이 되었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 들어와 서울의 잡학 생도 정원은 285명에서 54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518년(중종 13)에 일시 혁파되었다가 복구된 뒤 임진왜란 이후 완전히 혁파된 소격서昭格署의 도학 생도가 1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중앙 잡학 생도의 정원은 275명에서 548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그만큼 조선 후기에 들어와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2) 교관

여러 잡학의 교관으로는 먼저 역학의 경우 서울의 사역원에 한학교수漢學敎授 4인(종6품)을 배정하고 그 가운데 2인은 문신이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한학훈도漢學訓導 4인(정9품), 몽학훈도蒙學訓導·왜학훈도倭學訓導·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 각 2인(정9품)을 배정하였다.[64] 그 밖에 역학이 운영되던 지방 접경 지역인 전라도(제주 포함),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 등지에도 교관직이 배치되었다.

의학의 교관으로는 먼저 서울의 전의감에 의학교수醫學敎授 2인(종6품)과 의학훈도醫學訓導 1인(정9품)이 배정되었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와 의학교수 1인이 감축되었다.[65] 그리고 조선 전기에 혜민서에는 의학교수 2인(종6품)을 배정하고 그 가운데 1인은 문관이 겸임하도록 하였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와 1인을 감축하였다. 이와 함께 혜민서에는 의학훈도 1인(정9품)이 배정되었다.[66]

64 《대전통편》, 이전, 경관직, 정3품아문, 사역원.

65 《대전통편》, 이전, 경관직, 정3품아문, 전의감.

66 《대전통편》, 이전, 경관직, 종6품아문, 혜민서.

음양학의 경우, 서울의 관상감에 천문학교수天文學教授·지리학교수地理學教授 각 1인(종6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教授 3인(종6품)을 두었다가 조선 후기에는 3인을 증치하여 한 자리는 그대로 천문학에 속하게 하고, 한 자리는 천문학·지리학·명과학 삼학三學을 돌아가면서 제수하며, 나머지 한 자리는 금루관禁漏官 및 화원畫員을 돌아가면서 제수하게 하였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教授·명과학겸교수命課學兼教授(종6품)를 두었는데, 조선 후기에 각 1인씩 증치하였다가 혁파하였다. 또한 조선 전기에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지리학훈도地理學訓導 각 1인(정9품)과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2인(정9품)을 두었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와 명과학훈도 1인을 감축하였다.[67]

산학의 경우 호조에서 본업인本業人, 즉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교수와 훈도를 차출하였다. 산학의 교관으로는 주학교수籌學教授 1인(종6품)과 주학훈도籌學訓導 1인(정9품)이 배정되었다.[68] 산학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교관 정원에 변화가 없었다. 율학의 경우 호조와 마찬가지로 형조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가운데 교수·훈도를 차출하였다. 율학청의 교관으로는 율학교수律學教授 1인(종6품), 겸교수兼教授 1인(종6품), 율학훈도律學訓導 1인(정9품)을 두었다. 지방 율학의 교관으로는 조선 전기에는 검률檢律 2인(종9품)을 파견하였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 1인을 감축하였다.[69]

조선시대의 잡학 가운데 도화서와 소격서에는 교수·훈도와 같은 교관직이 배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화서의 화학과 소격서의 도학에 배정된 생도들의 교육은 해당 관서의 잡직雜職인 화원畫員(20인)[70]과 도류道流(15인)[71]가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지방 잡학 생도의 상경 교육

앞서 역학, 의학, 율학의 경우 지방에도 생도가 배정되었다고 하였는

67 《대전통편》, 이전, 경관직, 정3품아문, 관상감.
68 《대전통편》, 이전, 경관직, 정2품아문, 호조.
69 《대전통편》, 이전, 경관직, 정2품아문, 형조.
70 《대전통편》, 이전, 잡직, 도화서.
71 《대전통편》, 이전, 잡직, 소격서.

데, 지방의 잡학 생도 가운데 일부는 서울로 올라와 교육을 받았다. 지방의 잡학 생도가 서울로 올라와 시험에 응시하거나 생도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는 역학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예컨대 1481년(성종 12)에 부산포의 왜학 생도 조초산曹招山 등의 상언上言에 따라 예조에서 거주지 고을에서 재주를 성취한 사람을 가려 급장給狀하여 본원本院[사역원]으로 보내게 하여 다른 생도의 예例에 따라 녹명錄名하여 시취試取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은 것이 시초였다. 이때 예조는 지방에서 객인客人[왜인]을 호송하여 올 때 향통사鄕通事와 생도를 번갈아 차출해 보내게 하여 그 가운데 재주를 이룬 사람은 사역원 생도로 이정移定하고 시험을 거쳐 서용敍用하는 제도도 함께 건의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였다.[72]

실록에는 지방의 역학 생도가 서울의 사역원에 올라와 역과나 취재와 같은 시험에 응시하거나 사역원 생도로 소속을 바꾸어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성종 때에 처음 나오지만, 이 제도는 세종대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역원의 예에 따라" 지방의 의학 생도들을 삼의사三醫司(전의감·혜민국·제생원)에 설치된 의생방醫生房에 소속시켜 중앙의 의학 생도들과 함께 약 짓는 일을 익히고 방서方書를 읽게 하여 의술에 통달하도록 한 뒤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조치가 이미 1425년(세종 7)에 취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73] 지방의 의학 생도 일부를 중앙 의학에 모아 교육하는 제도는 15세기 말《대전속록大典續錄》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 지방의 의학 생도 가운데 젊고 총명하며 글을 이해하는 자로 경기의 광주·양주·여주·파주에 각 1인, 충청도의 충주·청주·공주에 각 1인과 홍주에 2인, 전라도의 전주·나주·제주에 각 2인, 경상도의 경주에 3인, 상주·안동·진주에 각 2인, 성주에 1인, 강원도의 강릉·원주에 각 1인, 황해도의 황주에 1인과 해주에 2인, 영안도의 안변에 1인, 평안도의 안주·정주·의주에 각 1인을 5년에 1차례씩 간택하여 올려 보내고 보인保人 2인씩을 준다. 그리고 이들 의생을 전의감과 혜민서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사지의원事知醫員(실무에 밝은 의원)이 나누어 교육하게 하며, 계절마다 끝 달에 예조의 당상 및 두

72 《성종실록》 권127, 성종 12년 3월 23일(정유).

73 《세종실록》 권28, 세종 7년 5월 3일(임신).

> 의사醫司의 제조가 함께 모여서 의생이 읽은 책에 대해 강독 시험을 보이고, 연말에 국왕에게 보고한다. 그중에서 본업에 부지런한 자에 대해서는 본가本家에 복호復戶를 주고, 도망한 자나 본업에 태만한 자는 고역苦役에 충정하며, 연말에 불통不通이 대부분인 자의 경우에는 교육시킨 의원에 대해 죄를 다스린다.[74]

형조에서 운영한 율학의 경우에도 지방 각 고을에 배정된 율학 생도 일부를 상경시켜 교육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예컨대 1434년(세종 16)의 실록 기사를 보면, 형조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어 임금의 재가를 받았다.

> 지방의 대소 각 고을에는 모두 율학 생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는 매우 많아도 도무지 스승에게 수업함이 없으니 한갓 헛시설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각 고을에서 나이가 젊고 총명하고 민첩한 자로 한두 사람을 각각 천거하여 보내서, 본학에 나아가 강습하여 정숙精熟하기를 기다려 모두 시골로 돌아가게 하고, 그중에 학업이 특이하여 본업에 출신出身하기를 자원하는 자와 혹은 이과吏科로 돌아가기를 자원하는 자에게는 들어 줄 것입니다.[75]

이처럼 율학의 경우에도 역학, 의학과 마찬가지로 지방 생도 가운데 나이가 젊고 총명하며 민첩한 자를 선발하여 본학, 즉 서울의 율학에 올려보내 강습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렇게 지방 잡학 생도를 서울의 본원本院·본학本學에서 직접 교육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위의 실록 기사에서 "각 고을에는 모두 율학 생도가 있으나, 그 수는 매우 많아도 도무지 스승에게 수업함이 없으니 한갓 헛시설뿐"이라고 하였듯이,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방 잡학 교육의 부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지방에 생도가 배정된 역학, 의학, 율학 세 분야 모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4 《대전속록》, 예전, 奬勸.

75 《세종실록》 권65, 세종 16년 8월 26일(경오).

제2절

조선시대 한양의 과거제도

《증보문헌비고》〈선거고選擧考〉 서문에서는 "먼저 가르친 뒤에 뽑아서 쓴다(先敎而後擧)."라고 하였다. 학교를 통해 먼저 가르친 후 과거를 통해 뽑아서 쓴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학교라는 양사養士(인재 양성) 제도와 과거라는 취사取士(인재 선발) 제도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크게 유학, 무학, 잡학 세 계통의 학교를 통해 인재를 기르고, 그 인재를 문과, 무과, 잡과라는 세 경로의 과거를 통해 뽑아 쓰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다. 서울에서 치러졌던 과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원·진사시

대과大科인 문과에 대비하여 소과小科 또는 사마시司馬試라 불리는 생원시와 진사시는 각각 초시初試와 복시覆試 2단계로 시험이 치러졌다. 초시는 각 지역별로 치러지고, 복시는 초시 합격자들을 서울에 모아 치러졌다. 대체로 초시는 식년式年 전해 가을에 치러지고, 복시는 식년 봄에 치러졌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소과인 생원시와 진사시는 지역별로 치르는 초시에서 각각 700명을 선발하고, 서울에 모여 치르는 복시에서 최종적으로 각각 100명을 선발하였다. 서울에서 치러

[표 5] 생원·진사시의 선발 인원

(단위: 명)

구분	초시									복시	
	한성시	향시							계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평안	황해	영안		
생원	200	60	90	90	100	45	45	35	35	700	100
진사	200	60	90	90	100	45	45	35	35	700	100

출처: 《경국대전》, 예전, 諸科.
비고: 《속대전》에서는 경기의 60명을 폐지하고, 한성시의 一所와 二所에 나누어 응시하게 함

지는 복시에 합격하면 생원 또는 진사의 칭호를 얻게 되고, 국학인 성균관에 입학하여 수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소과의 시험과목은 생원시의 경우 오경의五經義와 사서의四書疑 2편이었다. 이들은 사서와 오경에 관한 서술형 시험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주제는 오경의의 경우 오경의 뜻풀이[義]에 관한 것이고, 사서의는 사서의 의문점[疑]에 관한 것이다. 진사시에서는 부賦 1편, 고시古詩·명銘·잠箴 가운데 1편을 짓게 하였다. 생원시가 경학經學에 대한 소양을 주로 시험하였다면, 진사시에서는 시부詩賦 중심의 문학적 능력을 시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복시의 시험과목은 초시와 같았다. 다만 복시 응시자들은 성균관의 박사 이하 관원이 예문관·승문원·교서관의 7품 이하 관원 및 사헌부 감찰과 함께 《소학小學》과 《가례家禮》에 대한 독습 여부를 평가하는 학례강學禮講이라는 예비시험을 통과해야만 하였다. 《속대전》에서는 학례강을 사학四學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1557년(명종 12) 〈상정과거규식詳定科擧規式〉을 만든 이후에는 생원·진사시에 처음 응시할 경우 초시 전에 《소학》에 대한 구술시험인 조흘강照訖講이라는 예비시험을 더 치러야 했다. '조흘'이란 '확인을 마쳤다.'라는 뜻으로,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당초 조흘강은 대·소과를 막론하고 처음 응시하는 유생이라면 누구나 치러야 했고, 그 과목은 《대학》과 《중용》이었다. 그러다가 양란(왜란·호란)을 거치면서 소과인 생원·진사시의 초시 전에만 《소학》을 고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조흘강을 통과하면 응시자의 직역, 성명, 연령, 거

주지, 발급 연월일, 서압署押 등을 기재한 조흘첩照訖帖을 발행해 주었고, 이 조흘첩을 소지해야만 과거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76]

2. 문과

생원·진사시가 소과라면 문과는 대과로서 초시-회시-전시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초시는 다시 성균관에서 치르는 관시館試, 서울에서 치르는 한성시漢城試, 각 지방에서 치르는 향시鄕試로 구분되며, 모두 초장-중장-종장의 3단계로 시험이 치러졌다. 지역별로 치르는 초시에서는 총 240명을 선발하고, 초시 합격자들을 모아 서울에서 치르는 회시에서 최종적으로 33명을 선발하였다. 마지막 단계의 시험인 전시는 일종의 순위 시험으로서, 회시 합격자 33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의 순위를 정하였다.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문과 초시 가운데 관시와 한성시 그리고 문과의 복시와 전시가 서울에서 치러졌다. 서울에서 치러지는 복시, 즉 회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라는 '출세의 사다리ladder of success'를 놓고 전개된 치열한 경쟁의 본무대는 바로 서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문과 초시는 제술 시험으로 치러지는데, 초장에서 사서오경에 대한 의의疑義 또는 논論 가운데 2편을 짓고, 중장에서는 부賦·송頌·명銘·잠箴·기記 가운데 1편과 표表·전箋 가운데 1편을 지으며, 종장에서는 책策 1편을 지었다. 제술, 즉 작문 시험의 점수는 상상上上을 9분分으로 하고, 상중上中부터 1분씩 깎아 상하上下, 이상二上, 이중二中, 이하二下, 삼상三上, 삼중三中를 거쳐 맨 아래 삼하三下(또는 하하下下)는 1분으로 하는 식으로 매겨졌다. 표와 전의 점수는 배로 주었다. 그리고 문과에서 지은 제술 답안은 채점의 공정성을 위해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옮겨 적는

76 김경용, 〈조선시대 과거 시행 과정의 탐색-식년시 문과와 생진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5(1), 2015, 8~13쪽.

역서易書를 하였다. [표 6]과 같이, 전체 240명의 초시 합격자 가운데 관시 50명, 한성시 40명, 경기 향시 20명 등 110명이 사실상 서울에서 선발되었기 때문에 문과 초시 선발 인원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8%에 이르렀다.

[표 6] 문과 초시의 선발 인원

(단위: 명)

관시	한성시	향시								계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평안	황해	영안	
50	40	20	25	25	30	15	15	10	10	240

출처: 《경국대전》, 예전, 諸科.
비고: 《속대전》에서는 경기의 20명을 폐지하고, 한성시의 일소一所와 이소二所에 나누어 응시하게 하고, 함경(영안)에 3명을 추가함.

서울에서 치러지는 문과 회시에서는 먼저 《경국대전》과 《가례》에 대한 예비시험인 전례강典禮講을 치른 다음 본시험에 나아가게 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예문관의 봉교奉敎 이하 관원이 성균관·승문원·교서관의 7품 이하 관원 및 사헌부의 감찰과 함께 전례강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속대전》에서는 사관四館(성균관·교서관·승문원·예문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회시의 초장에서는 사서삼경에 대한 강경, 즉 구두 문답 시험을 치렀다. 사서와 삼경 이외에 이경二經(《예기》《춘추》)이나 자子·사史를 강하겠다고 자원하는 경우 허락하되, 경서는 책을 덮고 외워서 강하고, 자·사의 경우 책을 펴놓고 강하게 하였다. 《속대전》에서는 《주역》과 《춘추》의 강경은 점수를 두 배로 주며, 언해諺解는 옛 풀이(관본 《칠서언해七書諺解》)를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강서(강경) 점수는 통은 2분分, 약은 1분, 조는 반분半分, 즉 0.5분이었다. 일곱 명의 시험관이 점수를 매겼는데, 다수가 준 점수를 최종 점수로 주었으며, 수가 서로 같으면 아래 등급을 주었다. 중장과 종장은 초시와 같은 과목으로 제술 시험을 치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문과의 전시에서는 제시된 제목에 대한 대책對策이나 표·전·잠·송·제制·조詔 1편을 짓도록 하였다. 최종 순위가 가려지면 갑과 1등인 장원에게는 종6품의 관직이 주어지고, 나머지 2명에게는 정7품의 관직이 주어졌다. 그리고 을과 7명에게는 정8품의 품계가 주어지고, 병과 23명에게는 정9품의 품계가 주어졌다.

3. 무과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는 문과와 달리 소과가 없고 대과만 있었다. 무과는 초시와 회시, 전시의 3단계로 치러졌다. 초시는 서울·경기의 경우 훈련원에서 치르고, 다른 지방은 각 지역별로 치러 총 190명을 선발하였다. 훈련원시의 선발 인원 70명은 전체 초시 선발 인원 190명의 36.8% 규모이므로, 문과 초시에 비해 무과 초시에서는 서울(경기 포함) 지역의 선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7] 무과 초시의 선발 인원

(단위: 명)

훈련원시	향시							계
	경상	충청	전라	강원	황해	영안	평안	
70	30	25	25	10	10	10	10	190

출처: 《경국대전》, 예전, 제과.

《경국대전》에 따르면, 무과 초시에서는 활쏘기(목전木箭 240보, 철전鐵箭 80보, 편전片箭 130보, 기사騎射,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쏘기), 기창騎槍(말을 타고 달리면서 창 쓰기), 격구擊毬 등의 무예에 대한 실기 시험이 치러졌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시험과목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속대전》에 따르면, 기사가 기추騎芻(짚으로 만든 5개의 허수아비를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로 쏘아 맞히게 함)로 바뀌었고, 격구가 시험과목에서 제외되는 대신에 조총鳥銃(100보, 3발)과 편추鞭芻(짚으로 만든 6개의 허수아비를 쇠도리깨로 치게 함) 등의 과목이 추가되었다.

서울에서 치러지는 무과 회시(복시)에서는 190명의 초시 합격자를 모아 유학의 경서와 무경武經 등에 대한 강경 시험을 치러 최종적으로 28명을 선발하였다. 회시에서는 사서오경 중 1서, 무경칠서 중 1서, 《통감》《병요兵要》《장감박의將鑑博議》《소학》 중 1서를 자원에 따라 강하고, 문과와 마찬가지로 《경국대전》도 강하였다. 복시의 강서講書 과목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 《속대전》에서 증광시 복시의 경우 무경칠서와 사서오경 가운데 1서만 각자 원하는 대로 강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고, 그 뒤

에 다시 무경칠서 가운데 《오자》를 제외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전시는 회시 합격자 28명을 모아 말 위에서 하는 기격구騎擊毬와 지상에서 하는 보격구步擊毬로 순위를 가리는 시험이었다. 최종 순위는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으로 가려지며, 문과의 예에 따라 갑과 1등인 장원에게는 종6품의 관직이 주어지고, 나머지 2명에게는 정7품의 관직이 주어졌다. 그리고 을과 7명에게는 정8품의 품계가 주어지고, 병과 23명에게는 정9품의 품계가 주어졌다.



무과 급제 증명서인 홍패(국립민속박물관)

4. 잡과

전문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에는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 네 종류가 있었다. 잡학의 경우 이보다 많은 종류가 있었으나, 잡과는 역·의·음양·율학 네 분야에 한정하여 실시되었다. 잡과는 초시와 복시 2단계로 나누어 그 분야를 주관하는 실무 관서의 책임 아래 시험이 치러졌다. 문·무과와 달리 전시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이와 함께 지방에서 치러지는 초시인 향시가 없고 초시와 복시 모두 서울에서만 치러진 것도 잡과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경국대전》의 잡과 주관 관서와 선발 인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조선 전기 잡과의 주관 관서와 선발 인원

(단위: 명)

구분	주관 관서		과목	초시	복시
역과	사역원		한학	23	13
			몽학	4	2
			왜학	4	2
			여진학	4	2
	도	황해도	한학	7	
		평안도		15	
의과	전의감		의학	18	9
음양과	관상감		천문학	10	5
			지리학	4	2
			명과학	4	2
율과	형조		율학	18	9
계				111	46

출처: 《경국대전》, 예전, 제과.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역과의 선발 인원이 식년시와 증광시는 조선 전기와 같았으나 대증광시大增廣試[77]의 경우 선발 인원이 추가되었다. 《속대전》에 나타난 대증광시 역과의 추가 선발 인원은 초시에서 한학·몽학·왜학 각각 4명,[78] 복시에서 한학·몽학·왜학·청학淸學 각각 2명이었다. 의과의 경우 추가 선발 인원은 초시에서 4명, 복시에서 2명이고, 음양학의 경우 초시에서 천문학·지리학·명과학 각각 4명, 복시에서 천문학·지리학·명과학 각각 2명이었다. 율과의 경우 초시에서 4명, 복시에서 2명이었다.

조선시대 잡과의 시험과목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7 《속대전》, 예전, 諸科에서는 나라에 큰 경사가 있거나 여러 경사가 겹쳤을 때에는 특별히 증광시를 시행하되, 가장 많은 경사가 겹쳤을 경우에는 大增廣試라 부르고 선발 인원을 다소 추가한다고 규정하였다.

78 《大典會通》을 편찬할 때 '청학도 같다.(淸學同)'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1) 역과

역과 시험은 강서講書와 사자寫字(원어 문자로 베껴 쓰기), 역어譯語의 방식으로 치러졌다. 먼저 《경국대전》을 보면 초시의 경우 한학은 사서는 임문臨文, 즉 책을 보며 강하고 《노걸대老乞大》와 《박통사朴通事》 《직해소학直解小學》은 배강背講, 즉 책을 보지 않고 외워서 강하게 하였다. 《속대전》에서는 강서 과목에 《오륜전비伍倫全備》가 추가되고, 《직해소학》은 제외하였다. 몽학의 경우 《경국대전》에서는 초시에서 《왕가한王可汗》 《수성사감守城事鑑》 《어사잠御史箴》 《고난가둔高難加屯》 《황도대훈皇都大訓》 《노걸대》 《공부자孔夫子》 《첩월진帖月眞》 《토고안吐高安》 《백안파두伯顔波豆》 《대루원기待漏院記》 《정관정요貞觀政要》 《속팔실速八實》 《장기章記》 《하적후라何赤厚羅》 《거리라巨里羅》에 대한 사자寫字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속대전》에서는 《노걸대》 이외의 책에 대한 사자 시험은 폐지하고, 《첩해몽어捷解蒙語》가 새로 추가되었다. 왜학의 경우 《경국대전》에서는 초시에서 《이로파伊路波》 《소식서격消息書格》 《노걸대》 《동자교童子敎》 《잡어雜語》 《본초本草》 《의론議論》 《통신通信》 《구양물어鳩養物語》 《정훈왕래庭訓往來》 《응영기應永記》 《잡필雜筆》 《부사富士》에 대한 사자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속대전》에서는 모두 폐지되고 《첩해몽어》가 새로 추가되었다. 여진학의 경우 《경국대전》에서는 초시에서 《천자千字》 《천병서天兵書》 《소아론小兒論》 《삼세아三歲兒》 《자시위自侍衛》 《팔세아八歲兒》 《거화去化》 《칠세아七歲兒》 《구난仇難》 《십이제국十二諸國》 《귀수貴愁》 《오자吳子》 《손자孫子》 《태공太公》 《상서尙書》에 대한 사자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속대전》에서는 여진학이 청학으로 바뀌면서 《팔세아》와 《소아론》을 제외한 다른 책 모두에 대한 사자 시험을 폐지하고, 《노걸대》와 《삼역총해三譯總解》를 새로 추가하였다. 역과 초시의 역어譯語 시험은 한학, 몽학, 왜학, 여진학 모두 《경국대전》을 책을 보고 번역하는 것으로 치러졌다.

역과 복시의 강서는 초시와 같되, 오경五經 《소미통감少微通鑑》 《송원절요宋元節要》에 대한 강독을 원하는 자는 허락하되, 책을 보면서 강하게 하였다. 사자와 역어 시험은 초시와 같았다.

2) 의과

의과 초시의 경우 《경국대전》에서는 《찬도맥纂圖脈》과 《동인경銅人經》은 암송하고, 《직지방直指方》과 《득효방得效方》 《부인대전婦人大全》 《창진집瘡疹集》 《태산집요胎產集要》 《구급방救急方》 《화제방和劑方》 《본초本草》 《경국대전》은 책을 보면서 강하게 하였다. 《속대전》에서는 《 찬도맥》과 《 동인경》은 암송하고, 《직지방》과 《본초》 《경국대전》은 책을 보면서 강하며, 그 나머지 여러 책에 대한 강서 시험은 폐지하였다. 대신에 《소문素問》과 《의학정전醫學正傳》 《동원십서東垣十書》를 추가하여 책을 보면서 강하게 하였다. 의과 복시의 강서 과목은 초시와 같았다.

3) 음양과

음양과 초시의 경우 《경국대전》에서는 천문학은 《보천가步天歌》를 암송하고 《경국대전》을 책을 보면서 강하게 하였다. 《속대전》에서는 《천문역법天文曆法》을 새로 추가하여 책을 보면서 강독하게 하였다. 그리고 천문학에서는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과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 《교식추보가령交食推步假令》에 대한 주籌(계산) 시험을 치렀다. 지리학의 경우 《경국대전》에서는 《청오경靑烏經》과 《금낭경錦囊經》을 배강하고, 《호순신胡舜申》 《명산론明山論》 《지리문정地理門庭》 《감룡撼龍》 《착맥부捉脈賦》 《의룡疑龍》 《동림조담洞林照膽》 《경국대전》은 책을 보면서 강하게 하였다. 《속대전》에서는 《청오경》과 《금낭경》은 암송하고, 《명산론》 《호순신》 《동림조담》 《경국대전》은 책을 보면서 강하게 하였으며, 《탁옥부琢玉斧》를 새로 추가하여 책을 보면서 강하게 하였다. 명과학은 《원천강袁天綱》을 배강하고 《서자평徐子平》과 《응천가應天歌》 《범위수範圍數》 《극택통서剋擇通書》 《경국대전》은 책을 보면서 강하게 하였다. 《속대전》에서는 《극택통서》는 폐지하고, 《시용통서時用通書》를 새로 추가하여 책을 보면서 강하게 하였다. 복시의 시험과목은 초시와 같았다.

4) 율과

율과의 경우 《경국대전》에서는 초시와 복시 모두 《대명률大明律》을 배강하고, 《당률소의唐律疏議》와 《무원록無寃錄》 《율학해이律學解頤》 《율학변의律學辨疑》

《경국대전》은 책을 보면서 강하게 하였다. 《속대전》에서는 《대명률》을 배강하고, 《무원록》과 《경국대전》은 책을 보면서 강하되, 나머지 서책에 대한 강서 시험은 폐지하였다. 복시의 시험과목은 초시와 같았다.

5. 한양의 과장

조선시대의 과장科場, 즉 과거 시험장은 과거 시행일에 즈음하여 예조에서 사목事目을 작성해 올리고 임금이 윤허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기본적으로 과장은 많은 응시자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뜰이 넓어야 했고, 또한 응시자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담장과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했다.[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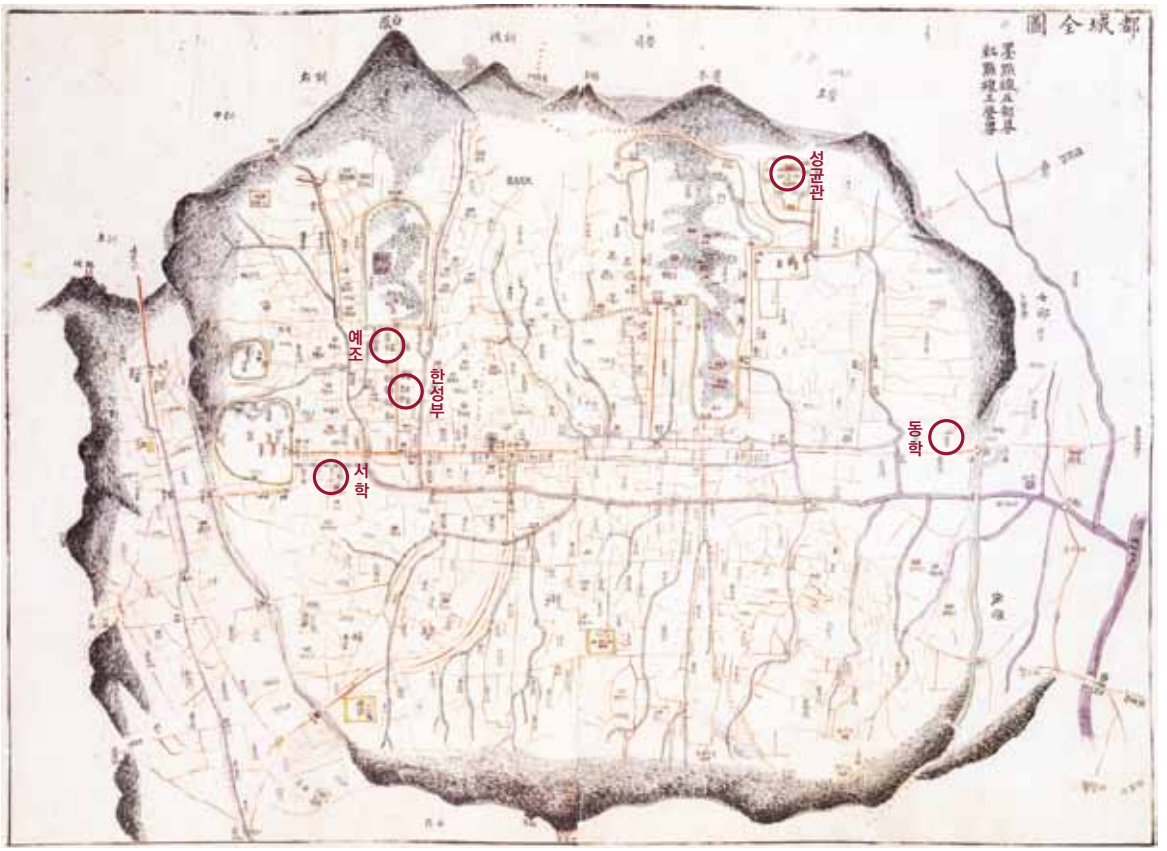
《사마방목》에 수록된 감시監試(생원·진사시) 회시會試 과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울의 과거 시험장은 [표 9]와 같다.

[표 9] 서울의 생원·진사시 회시 과장

시기 \ 시소	성균관	예조	장악원	한성부	동학	기타	합계	주요 시소
15세기	3	2				1	6	
16세기 전반	5	8	10	1			24	성균관, 예조, 장악원
16세기 후반	9		5	7		1	22	성균관, 장악원, 한성부
17세기 전반	11		3	11	11	6	42	성균관, 한성부, 동학
17세기 후반	15			12	16	3	46	성균관, 한성부, 동학
	43	10	18	31	27	11	140	

출처: 박현순, 〈17세기 科擧 관리의 정비〉, 《조선시대사학보》 49, 2009, 150쪽의 '[표 1] 16~17세기 감시 회시 시소'를 약간 수정하여 작성.

79 박현순, 〈17세기 科擧 관리의 정비〉, 《조선시대사학보》 49, 2009, 149쪽.



과거 시험장으로 이용된 서울의 관사(《청구요람》 중 〈도성전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앞서 살펴보았듯이 생원·진사시의 초시 합격자가 각각 700명씩이므로 회시의 과장은 적어도 700명의 과거 응시자를 수용할 수 있는 뜰이 있는 곳이어야 했다. [표 9]에 나타나 있듯이, 16~17세기에 서울에서 시행된 생원·진사시 회시의 과장으로 주로 이용된 곳은 성균관과 예조, 장악원, 한성부, 동학 5곳이었다. 참고로 17세기 문과의 시소로 사용된 곳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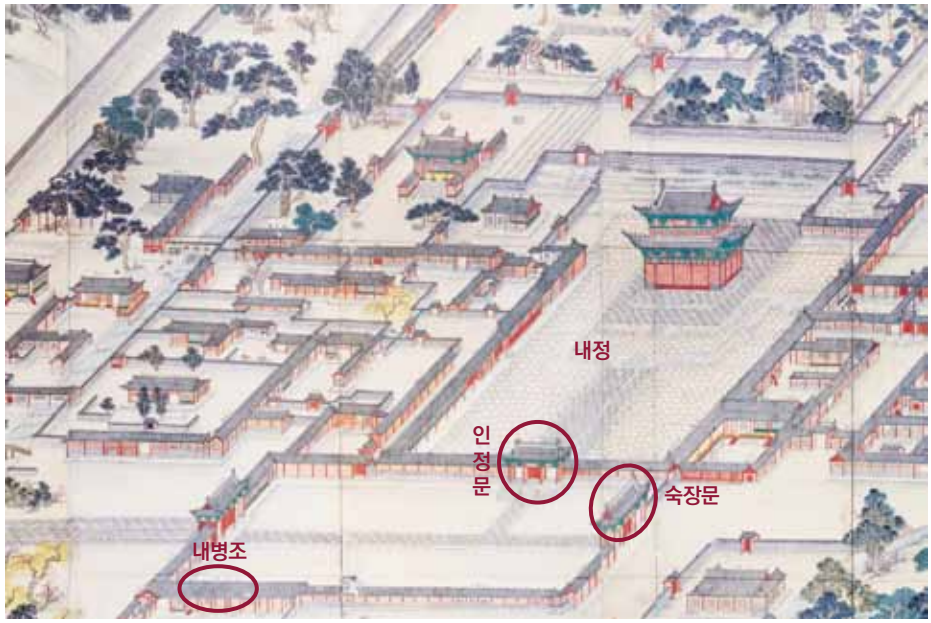
[표 10] 17세기 문과 과장

연도	구분	1소	2소	3소	출전
1652년(효종 3)	초시	한성부	동학		《과거등록》, 임진 7월 30일
1660년(현종 1)	회시	한성부			《과거등록》, 경자 3월 9일
1663년(현종 4)	회시	한성부	성균관		《과거등록》, 계묘 3월 13일
1663년(현종 4)	강경	한성부	성균관		《과거등록》, 계묘 3월 13일
1665년(현종 6)	초시			서학	《과거등록》, 을사 9월 20일
1678년(숙종 4)	회시	성균관 명륜당			《승정원일기》, 숙종 4년 3월 4일
1679년(숙종 5)	초시	성균관 반수당	한성부	서학	《승정원일기》, 숙종 5년 8월 16일
1680년(숙종 6)	강경	서학	성균관		《승정원일기》, 숙종 5년 11월 7일
1681년(숙종 7)	초시	성균관	한성부	동학	《승정원일기》, 숙종 7년 7월 18일
1698년(숙종 24)	초시			서학	《과거등록》, 무인 10월 13일

출처: 박현순, 앞의 글, 151쪽의 '〈표 3〉 17세기 문과 시소'에서 연도 표기 방식만 바꾸어 작성함.

[표 10]을 통해서도 시험의 종류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과거 시험장으로 주로 사용된 곳은 성균관과 한성부, 동학(또는 서학)임을 알 수 있다. 이들 3곳이 서울의 주된 과장으로 이용된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성균관의 경우 1664년(현종 5) 반수당泮水堂, 즉 비천당丕闡堂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주로 명륜당 앞뜰이 시소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중부 징청방澄淸坊의 이조 남쪽에 있던 한성부는 현종대(1659~1674)까지 행정관서 중에서 과장으로 가장 선호되었다. 동학의 경우 남학과 함께 임진왜란 중에 소실되었다가 1610년(광해군 2)에 다시 지어져 과장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숙종대(1674~1720) 동학은 건물이 퇴락하고 뜰이 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문의 계단이 가파르고 좁아 사고의 위험도 높았다. 급기야 1696년(숙종 22) 생원·진사시 초시 때 문으로 들어오던 응시자가 밟혀 죽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80] 이 사건을 계기로 서부 적선방積善坊에 위치하고 있던 예조를 확장하여 과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예조의 삼문 앞쪽에 들어와 있는 민가 10여 호를 구입하여 철거하였다. 당시 입문入門을 관리하는 사관四館과 금란관禁亂官이 이용할 건물을 제외하고 완전히 철거된 것은

80 《승정원일기》 367책, 숙종 22년 9월 6일(기미).



〈동궐도〉에 보이는 창덕궁 인정전과 그 일대(고려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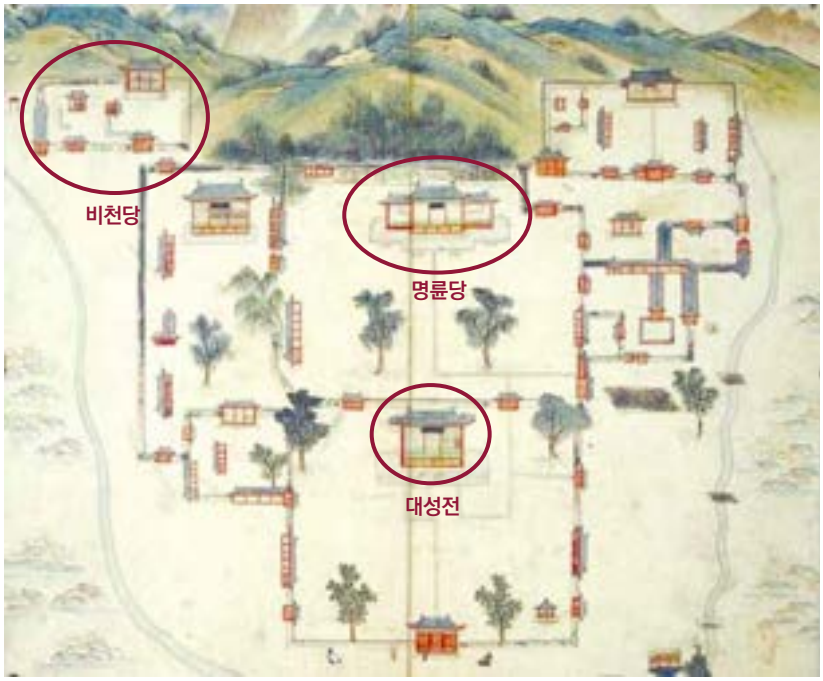
와가 79칸, 초가 45칸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생원·진사시는 예조와 성균관에서 시행하고, 3개의 과장이 필요한 문과 초시는 성균관과 예조, 서학에서 시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81]

한편 정시庭試와 알성시謁聖試는 시험의 특성상 임금의 시어소時御所와 성균관에 과장이 설치되었다. 두 시험은 16세기까지 시행 횟수가 많지 않았으나 17세기에는 시행 횟수의 증가와 더불어 응시자도 점차 늘어났다. 그리하여 숙종 초반에 이르면 대개 1만 명 이상이 응시하여 시험 때마다 과장 설치 문제가 대두되었다.[82]

정시庭試는 17세기까지 주로 창덕궁 인정전에서 시행되었다. 1712년(숙종 38)에 측량한 바에 따르면, 인정전의 내정內庭은 면적이 7만 8,192척으로, 시험 응시자들이 6척 간격으로 벌려 앉는다고 가정하면 2,172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정

81 《승정원일기》 969책, 영조 20년 2월 19일(정묘).

82 이하 정시와 알성시의 과장 문제에 대해서는 박현순, 앞의 글, 2009, 156~159쪽 참조.



《태학계첩》 중 〈반궁도〉(서울역사박물관)

전 내정의 동서쪽 행랑行廊 아래 소정小庭은 동서 각기 6,052척으로 168명씩을 수용할 수 있었다. 내정과 동서 소정을 합쳐 인정전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508명으로, 적어도 인조대(1623~1649)까지는 응시자들을 수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응시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1684년(숙종 10)에는 인정문 밖 숙장문에서 내병조內兵曹 앞까지 과장을 확대해야만 했다. 이후 정시는 인정전 내정과 외정外庭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는데, 내정과 외정을 통할 경우 외정은 시관試官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고 시제試製를 내걸거나 시권試券을 회수할 때 응시자들이 시험장 안을 드나들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1717년(숙종 43)부터는 아예 정시를 시사試士 장소로도 활용하던 춘당대春塘臺에서 시행하고 인정전에서 과차科次를 매기는 것으로 결정하였다.[83] 결국 응시자 수의 증가에 따라 정시는 시어

83 《승정원일기》 502책, 숙종 43년 6월 9일(임진).

소에서 시행한다는 원칙이 폐기되었고, 친림시라는 명분도 퇴색하게 된 것이다.

알성시謁聖試는 문묘의 정전인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선사先聖先師에게 작헌酌獻한 후 시행하는 시험으로, 당초 성균관의 명륜당 뜰에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응시자들이 몰리면서 1686년(숙종 12)에는 명륜당의 서쪽 담장을 허물어 반수당[비천당]과 통틀어 과장을 설치하고 반수당에도 서제書題를 걸게 하였다.[84] 그런데 시험 당일 응시자들이 한꺼번에 시험장에 다투어 입장하다가 8명이 밟혀 죽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춘당대로 자리를 옮겨 알성시를 시행하였다. 이후 알성시는 '알성謁聖'이라는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반수당이라는 비교적 넓은 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성균관에서 계속 시행되었다. 하지만 1733년(영조 9) 명륜당과 반수당을 통해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춘당대로 시험장을 옮긴 이래,[85] 점차 알성시도 춘당대에서 시행하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84 《승정원일기》 314책, 숙종 12년 4월 1일(을유).

85 《승정원일기》 765책, 영조 9년 9월 15일(계사)·17일(을미).

제3절 한글 보급과 여성교육

1. 한글 창제와 교육적 활용

'언문諺文 28자'로도 불린 훈민정음은 한문에 관한 것은 물론 우리말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지만 활용은 무궁한 문자였다.[86] 그리고 정인지鄭麟趾가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한 것처럼, 훈민정음은 누구나 쉽게 익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였다.[87] 이러한 우리의 문자 훈민정음이 창제됨에 따라 고대부터 중국에서 한자를 수입해 문자언어로 활용해 온 이래 존재했던 이중언어 체제의 언문 불일치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으로는 신분과 계층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문자가 한자(한문)와 한글로 나뉜 다이글로시아diglossia 현상이 존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분과 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문자를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언어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1443년(세종 25) 12월에 창제되어 1446년(세종 28) 9월에 반포된 훈민정음은 우리나라의 교육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실지로 훈민정음의 창제와 활

86 《세종실록》 권102, 세종 25년 12월 30일(경술).

87 《세종실록》 권113, 세종 28년 9월 29일(갑오).

용은 가히 혁명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의 여러 방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자 음운 연구

훈민정음 창제는 한자 음운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448년(세종 30) 10월에는 한자음을 훈민정음(한글)을 이용해 우리의 음으로 표기한 《동국정운東國正韻》을 간행하여 여러 도와 성균관, 사부학당에 반사하였다.[88] 1455년(단종 3)에는 중국 발음으로 된 명나라의 《홍무정운洪武正韻》에서 한자음을 한글로 표음表音하고 주석을 붙인 《홍무정운역훈》이 간행되었다.[89] 그리고 1571년(중종 12)에는 최세진崔世珍이 《홍무정훈역훈》의 음계를 보충하고 자해字解가 없는 신숙주의 《사성통고四聲通攷》를 보완하여 《사성통해四聲通解》를 편찬하였다. 이들 운서는 한자음을 표준화하여 한자 학습과 시부詩賦 등의 운문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편찬된 것이지만, 한자음을 한글로 표음함으로써 한글 보급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였다. 영조 때의 음운학자 박성원朴性源은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1747년)라는 음운 연구서에 〈언문초중종 삼성변諺文初中終三聲辨〉이라는 한글 학습용 교재를 따로 싣기도 하였다.[90]



《화동정음통석운고》 중 〈언문 초중종 삼성변〉(국립중앙도서관)

88 《세종실록》 권122, 세종 30년 10월 17일(경오).

89 〈홍무정운역훈 권3~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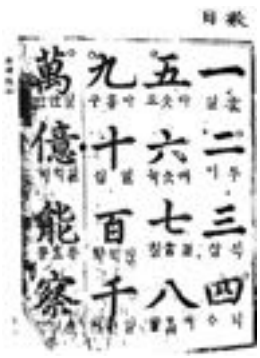
90 강유주·박종배, 〈조선시대의 한글 敎材와 그 특징〉, 《교육사학연구》 30(2), 2020, 18~19쪽.

2) 한자 학습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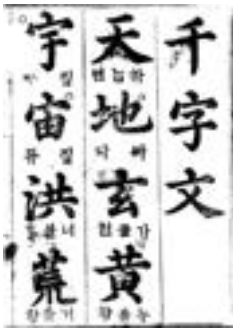
조선시대에는 한글로 한자의 소리(독음)와 뜻(의미)을 적은 한자 학습 교재들이 많이 편찬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훈몽자회》(1527년)와 《신증유합》(1576년), 《석봉 천자문》(1691년)을 들 수 있다.



《훈몽자회(訓蒙字會)》



《신증유합(新增類合)》



《석봉 천자문》(첫 장)



《석봉 천자문》(마지막 장)

조선시대의 우리식 한자 학습 교재

한글이 활용된 한자 학습 교재가 보급됨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한자 식자 계층은 대부분 한글 문해자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한자-한글 이중문해bi-literacy가 보편화하였다. 혹자는 아직도 조선시대에 양반 사대부 계층은 한글을 외면하였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글을 모르는 양반 사대부를 찾아내기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에 가깝다. 1583년(선조 16) 정월에 당시 조선 최고의 명필로 불린 한호韓濩가 쓴 《석봉 천자문》은 말 그대로 석봉 한호가 '봉교奉敎',

즉 임금의 명을 받들어 작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책은 국가에 의해 《천자문》의 훈訓과 음音이 정해져 공포된 일종의 정부 출판물이라 할 수 있는데,[91] 이 책을 통해 한자를 익히게 되면 문자 학습 단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한자-한글 이중문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3) 유교 경서의 언해

한글 창제 이전에는 불가피하게 이두, 향찰, 구결 등 차자표기법借字表記法을 통해 우리말을 표기해 왔는데, 훈민정음이 창제됨으로써 한문으로 된 서적들을 우리말로 직접 번역할 수 있는 언해諺解의 시대가 열렸다. 조선시대의 교육에서 핵심 교재로 쓰였던 유교 경서 가운데 《소학》은 1518년(중종 13)에 김전金 詮·최숙생崔淑生 등이 《번역소학》을 간행하였고, 1587년(선조 20)에 교정청에서 《소학언해》를 다시 간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우리말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사서삼경에 대한 우리말 풀이는 이황李滉의 《사서석의四書釋義》와 《삼경석의三經釋義》, 이이李珥의 《사서언해四書諺解》를 거쳐 교정청 학자들에 의한 《칠서언해七書諺解》의 완성으로 이어졌다.[92] 《사서언해》는 1590년(선조 23), 《삼경언해》는 1610년(광해군 2)에 간행되었는데, 이 판본 《칠서언해》는 이후 서울에서만도 10여 차례 중간되고 지방 간본刊本까지 합하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간행이 이루어져[93] 성균관·향교·서원·서당 등의 교육기관에서 널리 활용됨은 물론 과거시험에서도 강서講書의 표준이 되었다.[94] 이처럼 조선 후기에 학습과 평가의 표준으로 활용된 경서 언해서諺解書는 원문의 음音(한자의 독음)과 토吐(어조사, 구결), 석釋(풀이)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는 이중언어 텍스트bilingual texts였다. 이것을 교재로 삼아 공부하고 시험에 대비하려면 당연히 한글과 한자를 모두 익혀야 했다. 그 결과 양반 사대부 계층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식자층 사

91 후지모토 유키오, 〈한글의 지방 보급: 《천자문》을 중심으로〉, 《국의학자가 이야기하는 한글, 한글 자료》, 국립한글박물관, 2014, 63쪽.

92 박종배, 〈퇴계와 율곡의 경서 釋義 및 諺解의 교육사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31(2), 2021 참조.

93 이영경, 〈七書의 언해와 그 국어사적 의의〉, 《국학연구》 19, 2011 참조.

94 《속대전》, 예전, 제과, 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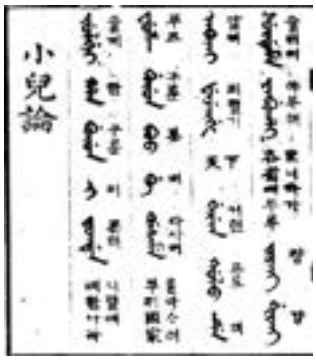
이에서는 한글-한자 이중문해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아 나갔다.[95]

4) 외국어 학습 교재

조선시대의 4대 외국어라 할 수 있는 한어, 여진어(만주어), 몽골어, 일본어 학습 교재의 편찬에도 훈민정음이 널리 활용되었다. 표음문자인 한글을 활용한 외국어 학습 교재들은 기존 교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국어 학습의 효과를 크게 높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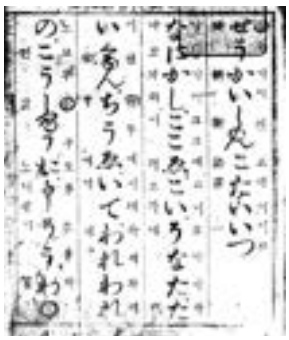
《노걸대언해》(중국어)



《소아론》(여진어)



《첩해몽어》(몽골어)



《첩해신어》(일본어)

조선 후기의 외국어 학습 교재

95 박종배, 앞의 글, 2021, 50쪽.

이처럼 훈민정음의 창제와 활용은 조선시대 교육의 발전에 여러모로 크게 기여하였는데,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교육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문해 인구의 증가이다. 우선 한글의 보급과 함께 계층별 문해 양상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계층에 따라 한자 단일 문해mono-literacy, 한자 사용 비중이 높은 한자·한글 이중문해bi-literacy, 한글 사용 비중이 높은 한글·한자 이중문해, 한글 단일문해 등의 문해 양상이 관찰된다.[96] 이러한 문해 양상은 조선시대의 계층별 교육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장기간의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한 양반 사대부 계층의 경우 한자 사용 비중이 높은 한자·한글 이중문해자일 가능성이 크고, 교육의 기회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하층민이나 여성들의 경우 한글 단일문해자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계층에 따라 문해 양상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선시대에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해 인구가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한자든 한글이든 전체적으로 문자의 보급이 확대되었고, 여기에는 한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둘째는 교육 대상의 확대이다. 한글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전까지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었던 하층민과 부녀자들까지 학습의 주체가 되고 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 문자 학습이 일부 상층 계급의 한자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이전 시기와 달리, 한글 창제 이후에는 노비까지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한글을 활용하여 한자를 익히고 외국어를 공부하였으며, 한글을 활용하여 편찬된 다양한 문헌을 통해 여러 방면의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그동안 소수의 특권·엘리트 계층에게만 독점되다시피 했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일반 백성들까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록 학교교육의 전면적 확대까지는 아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한글의 보급과 함께 교육의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교육의 대중화·보편화를 향한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이하에서 살펴볼 여성교육의 경우가 그 좋은 예에 해당한다.

96 이에 대해서는 박종배, 〈조선 후기의 계층별 문해 인구의 규모와 문해율 추정 방법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교육사학》 46(1), 2024, 30쪽 참조.

2. 여성교육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삶은, 의녀醫女와 기녀妓女 등 몇몇 특수 신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집안의 울타리 안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부덕婦德과 부공婦功, 즉 부녀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나 부녀자들의 일로 여겨지던 길쌈·바느질·음식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여성교육은 철저한 제한과 차별 속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질곡의 시대에도 변화의 싹은 피어나고 있었다. 여기에는 쉽게 배워 널리 쓸 수 있는 문자인 한글의 창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성들은 동네나 집안의 서당에도 출입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일부 부형의 가르침이나 견외견학肩外見學, 즉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것을 통해 문자를 익혔다. 특히 한글은 한자·한문에 비해 빠른 시간에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점차 신분과 계층을 막론하고 많은 여성들이 한글을 익혀 나름의 문자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다.

1) 특수 분야 여성의 교육

조선시대의 전문적인 여성교육은 의녀와 기녀라는 특수 신분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3년마다 지방 여러 고을에서는 젊은 여종 가운데 여기女妓 150명과 연화대蓮花臺 10명, 여의女醫 70명을 선발하여 서울로 올려보내야 했다.[97] 이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혜민서와 장악원에서는 각각 의학·음악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쳤다. 비록 공천公賤, 즉 공노비 신분이지만 이들은 조선시대의 여성들 가운데 드물게 제도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아 전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다.

97 《경국대전》, 예전, 選上.

(1) 혜민서의 의녀 교육

남부 태평방太平坊(지금의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근처)에 위치한 혜민서에 소속되어 의학교육을 받던 여성들은 각 고을에서 정해진 인원을 뽑아 올리는 선상노비選上奴婢 신분이었다. 혜민서의 관청지인 《혜국지惠局志》에 따르면 3남三南(경상도·전라도·충청도)과 강원도, 그리고 4도四都(개성부·강화부·수원부·광주부)의 여러 고을에서 관비들 가운데 나이 어리고 적당한 이로 골라 의녀에 충당하였다.[98] 조선 초 태종 때에는 제생원濟生院에 명하여 창고倉庫나 궁사宮司의 동녀童女 수십 명을 골라 맥경脈經과 침구針灸의 법法을 가르쳐 의녀로 활용하였다.[99] 얼마 뒤인 세종 때에는 외방의 의녀醫女를 뽑아 서울의 제생원에서 교육한 뒤 원래의 고을로 돌려보내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충청도·경상도·전라도의 계수관界首官 관비 중에서 나이 10세 이상 15세 이하의 영리한 동녀童女 각각 2명씩을 선택하여 제생원에 보내 제생원의 의녀와 더불어 교육한 뒤 의술이 성취하기를 기다려 각 고을로 돌려보내게 한 것이다.[100] 이들 외방 의녀에게는 선상여기選上女妓의 예에 따라 봉족, 즉 봉족노비奉足奴婢가 주어졌다.

조선 초부터 시행되던 의녀 제도는 《경국대전》에 여의女醫 70명을 3년마다 여러 고을의 젊은 여종 가운데 선상選上하도록 하고, 이들 여의는 재능이 이루어진 뒤 본읍本邑으로 돌려보내고, 서울 각 관사의 여종도 가려 뽑아서 여의로 정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었다.[101] 그리고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3년을 기한으로 삼지 않고, 원래의 정원에 궐원이 생길 때마다 여러 고을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여의 선상 방법을 고쳤다.[102] 이후 혜민서 의녀의 궐원을 망납望納, 즉 그 친족 등으로 대신 정하는 규정에 폐단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각 도에 의녀의 정원을 분배하여 매번 궐원이 생기면 해당 도의 관찰사가 뽑아 보내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103]

98 이하 의녀 선발에 대해서는 우현정·신은정, 〈18세기 혜민서의 의학교육 연구: 《惠局志》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5(1), 2023, 60~61쪽 참조.

99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3월 16일(병오).

100 《세종실록》 권22, 세종 5년 12월 4일(신해).

101 《경국대전》, 예전, 選上.

102 《대전통편》, 예전, 선상, 女醫選上之法.



혜민서의 연혁 등을 정리한 《혜국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편 혜민서에서는 내의녀內醫女의 결원에 대비하여 선상 의녀 가운데 어리고 총민한 10~15명을 뽑아 장래의녀將來醫女라 부르며 교육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내의녀에 결원이 생기면 제조提調가 의관 2명과 함께 장래의녀를 한명 한명 불러 '그 면모面貌가 풍후豊厚하고 언동言動이 상신詳愼하며 자품資品이 총민聰敏한 자'를 각별히 신중하게 선발하여 보충하게 하였다.[104] 이처럼 장래의녀는 장차 내의녀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므로 선발 단계에서부터 제조가 직접 면접하는 등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105] 선발된 여의에 대해서는 의학醫學의 생도와 마찬가지로 제조가 달마다 고강하여 점수를 많이 받은 여의 3명에게 3개월 동안 산료散料를 지급하며, 불통을 많이 받은 여의는 그 관사의 다모茶母로 정하는 벌을 주었다가 능통한 뒤에야 본업에 복귀하도록 허락하였다.[106] 혜민서 장래의녀 3명이 받는 급료는 매월 미米 8두와 전미田米 1두였다.[107]

《전록통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혜민서의 의녀 교육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젊고 총명하여 학습을 통해 의녀가 될만한 자를 골라 교관(의학교수와 의학훈도)에게 나누어 배정하고 날마다 읽은 책을 기록하는 〈서도기書徒記〉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계절마다 끝 달(3·6·9·12월)에 예조의 관원과 제조가 함께 모여 한 가지 책마다 3곳씩 강독하고 문답하였다가 연말에 점수를 문서로 작성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그중에서 10분分 이상을 얻은 성적이 우수한 의녀에게는 서울과 지방 중에서 자

103 《승정원일기》 1234책, 영조 40년 9월 15일(갑자).
104 《승정원일기》 1690책, 정조 15년 5월 12일(병술).
105 위와 같음.
106 《典錄通考》, 예전 중, 奬勸, 大典, 醫學生徒·女醫
107 《度支志外篇》 권19, 經費司, 料祿部, 科田, 逐朔科祿; 《六典條例》, 戶典, 戶曹, 料祿色, 放料.

원에 따라 봉족 1명을 더 주거나 물품을 하사하고, 3분 이하를 얻은 의녀는 가동家僮을 구속하거나 매질을 하며, 의녀가 학습을 열심히 하였는지 여부를 교관에 대한 전최殿最(고과 평가)에 참고하도록 하였다.[108] 이렇게 하여 성재成才, 즉 의술을 숙달한 의녀가 길러지면 혜민서에서 일하게 하다가 내의원에 자리가 생길 때 의논을 통해 승차陞差시켰다.

⑵ 장악원의 기녀 교육

앞서 《경국대전》에서 3년마다 여러 고을에서 젊은 여종 가운데 여기 150명과 연화대[109] 10명을 선발하여 서울로 올려보내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다. 조선시대에 이들 여악女樂·여기女妓의 교육을 담당하던 기구가 장악원掌樂院이다. 아악雅樂과 속악俗樂의 교열敎閱을 관장하던 기구인 장악원에는 좌방左坊과 우방右坊이 있었고, 이들을 아울러 교방敎坊이라 불렀다. 이 교방이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 음악의 형성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110] 조선시대의 장악원은 성종 때 서부 여경방餘慶坊에 자리를 잡았는데,[111]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장악원 제조 성현成俔의 기문記文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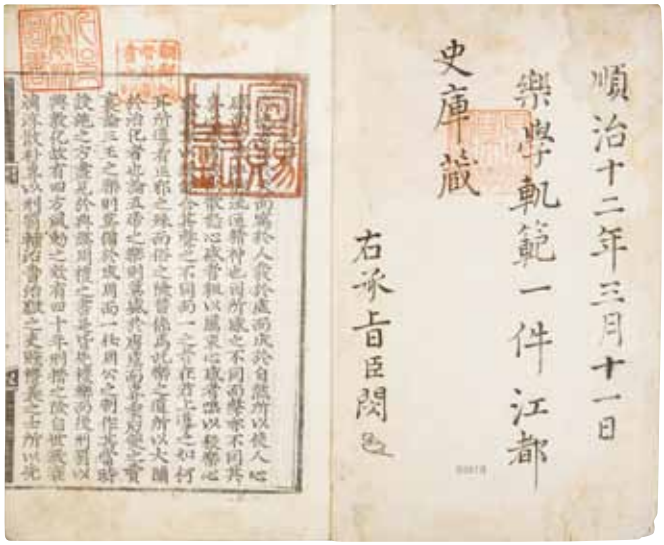
> 사람은 음악을 몰라서는 안 되니, 음악을 모르면 기운이 막히고 답답하여 기운을 펼 수 없는 것이고, 나라는 하루도 음악이 없어서는 안 되니, 음악이 없으면 질서가 없고 비루하여 화평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 세종대왕께서 전대(신라 고려)의 음악이 타락하였음을 개탄하여 옛날 음악을 회복하고자 아악雅樂을 태상시太常寺에 소속시키고, 관습도감慣習都監을 설치하여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가르치게 하고, 맹사성孟思誠과 박연朴堧 등으로 잇달아 제조를 삼아서 음악을 제작하는 일을 위임

108 《전록통고》, 예전, 장권, 續錄, 學習可當醫女.

109 《경국대전주해》, 後集, 禮典, 春官宗伯, 選上 蓮花臺에서는 연화대에 대해 "본래 탁발위에서 유래되었다. 두 여자아이를 쓰는데 옷과 모자를 곱게 하고, 모자에는 쇠방울을 달아 박자에 맞추어 움직이면 소리가 나게 한다. 그 (아이가) 나올 때 두 연꽃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꽃이 터진 후에 보이게 한다. 춤 가운데 우아하고 오묘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110 하경숙, 〈교방 문화의 형성과 문화적 의미〉, 《교방문화연구》 8(4-2), 2024 참조.

111 장악원은 임진왜란 이후 남부 명례방(지금의 서울 중구 명동 부근)에 새로 건립되었다.



음악이론과 제도 및 법식法式을 담고 있는 《악학궤범》(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하였다. …… 세조대왕께서는 그러한 줄을 아셨으므로 이 세 가지 음악을 한 부서에 합치고서 장악서掌樂署라고 이름을 지어, 장악掌樂 1명, 별제別提 1명을 두었으나, 일은 크고 인원은 적어서 그 제도를 맞출 수 없었다. 뒤에 또 장악원掌樂院으로 고치고, 정正 1명을 두고, 그 밑에 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의 관원은 때에 따라 다만 3명을 두었으니, 모두 4명이었다. 제조가 된 이가 한 명만이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에 전념한 이는 중추中樞 정침鄭沈 공이다. 일정한 관서가 없어서 처음에는 태시太寺에 붙어 있다가, 뒤에는 태상시太常寺의 악학樂學에 있었는데, 건물이 비좁고 낮아서 있을 수 없었다. 금상(성종)께서 특명을 내려 태상시 동쪽 수십 보 떨어진 자리에 민가 여러 집을 철거하고, 크게 관부官府를 건축하여 옮겨 갔다. 이리하여 당상관과 낭청들의 일하는 방이 따로 구별이 있고, 아악과 속악의 스승·생도와 영인伶人(악공樂工)·기생妓生 수천 명이 각기 거처할 장소를 가지게 되었고, 또 악기를 보관하는 집을 지어 방을 마련하였으며, 또 동서로 뜰을 넓게 닦아서 신정新正과 동지冬至 때에 백관의 조하朝賀를 받을 때 의식을 연습하는 장소로 삼고, 겸직 관원을 더 두었다.[112]

11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 京都 하, 장악원.

성현의 기문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악원은 성종 대 이전까지는 관습도감, 장악서 등으로 불리며 일정한 청사廳舍가 없이 태상시의 악학 등에 더부살이하는 신세에 처해 있었다. 그러다 1470년(성종 1)에 임금의 특명으로 태상시의 동쪽 편에 관원들의 사무실과 사생師生 수천 명의 거처, 각종 악기를 보관하는 방 등을 갖춘 널찍한 관부官府를 신축하였다. 이후 장악원은 동·서로 넓은 뜰을 갖게 되어 백관이 임금에게 조하朝賀를 올리는 의식을 연습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에서 치러지는 과거시험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2) 여성 교훈서의 보급

조선시대에 의녀·기녀와 같은 특수 신분 여성 이외의 일반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일반 여성의 교육은 주로 집안의 부형에 의해, 장래의 현모양처를 기른다는 제한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 이규경(1788년~?)이 〈여교변증설女敎辨證說〉[113]에서 이덕무李德懋의 《사소절》 〈부의婦儀〉 편을 인용하여, "남자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 집을 망치고, 여자를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을 망친다. 그러므로 미리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죄이다."라고 쓴 것처럼, "잘 가르쳐 시집을 보내야 한다."라는 부형으로서의 책임감 또는 의무감에서 집안의 여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교육의 내용 또한 철저히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여성의 성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규경의 〈여교변증설〉에 인용된, 중국 명나라 하흠賀欽이 여러 딸들을 교육하던 열두 조목條目이 바로 조선시대 여성교육에서 강조되던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 침착하고 자상하고 공순하고 부지런할 것.
2. 제사를 엄숙한 마음으로 받들 것.
3. 시부모를 효성으로 받들 것.

113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治道類, 學校, 女敎辨證說.

4. 남편을 예의로 섬길 것.

5. 동서들을 화목으로 대할 것.

6. 자녀들을 바른 도리로 가르칠 것.

7. 종들을 은혜로써 어루만질 것.

8. 친척을 공경으로 접대할 것.

9. 착한 말을 기쁜 마음으로 들을 것.

10. 간사하고 망령됨을 정성으로써 경계할 것.

11. 길쌈을 부지런히 할 것.

12. 재물을 절약해 쓸 것.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은 목적과 내용을 담은 여성 교훈서敎訓書, 즉 여성교육용 교재들이 중앙정부는 물론 민간의 학자들에 의해 많이 편찬되었다. 이황李滉의 《규중요람閨中要覽》, 송시열宋時烈의 《계녀서戒女書》, 이덕무의 《사소절》 〈부의〉 등이 민간에서 편찬한 대표적인 여성 교훈서들인데, 국가에서도 조선 전기부터 여러 종류의 여성 교훈서들을 간행하였다. 지면 관계상 국가에서 간행한 대표적인 여성교훈서만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삼강행실도》 열녀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434년(세종 16)에 왕명으로 간행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군신·부자·부부의 삼강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들의 행실을 모아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덧붙였다. 《삼강행실도》는 전국에 널리 배포되어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충·효·열의 윤리를 교육하는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한글로 번역되어 보급되었다.

《삼강행실도》는 크게 효자도·충신도·열녀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434년의 초간본에 포함된 110명의 열녀 삽화는 《삼강행실도 언해본》(1490년), 《속삼강행실도》(1514년 초간),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7년), 《오륜행실도》(1797년 초간)에 재차 수록되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700여 명에 달하는



《삼강행실도》 열녀도(1434년)



《삼강행실도》 언해본(1490년)

한국 여인들의 열행과 그에 대한 삽화가 포함되었다. 《삼강행실도》에 수록된 110명의 열녀 가운데 15명이 한국 여성이고 나머지는 중국의 여성이었다.[114] 이처럼 조선 전기부터 제작된 열녀도는 조선 후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제작되었는데, 《삼강행실도》의 열녀도는 정절貞節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여성상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가 제작·보급한 대표적인 여성 교훈서라 할 수 있다.

⑵ 《내훈》

1475년(성종 6)에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가 편찬한 《내훈內訓》은 우리나라 여성이 지은 최초의 여성교육용 교재이다. 상의尙儀 조씨曺氏, 즉 조두대曺豆大의 발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훈》은 중국의 《열녀전列女傳》과 《여교女敎》 《명감明鑑》 《소학

114 〈삼강행실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어제내훈》 언행장1-언해문



《어제내훈》 언행장1-본문(구결)

小學》 등의 책이 권질이 많고 번다하여 처음 배우는 자들이 괴로워하므로 소혜왕후가 직접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절실한 요체만을 취하여 편찬한 책이다.[115] 목차는 언행言行, 효친孝親, 혼례婚禮, 부부夫婦, 모의母儀, 돈목敦睦, 염검廉儉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궁중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편찬되었으나, 나중에는 일반 여성용 교재로 널리 보급되었다. 《내훈》은 목록과 발문을 제외한 모든 한문에 구결口訣, 즉 토를 달고 번역하였으며, 때로는 번역문 안에 주석을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⑶ 《여사서》

《여사서女四書》는 중국 청나라의 왕상王相이 기존에 유행하던 네 가지의 여성 교훈서를 한 데 묶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116]

《여사서》에 들어 있는 네 책은 후한 때 반소班昭가 지은 《여계女誡》, 당나라 때 송약소宋若昭가 지은 《여논어女論語》, 명나라 때 인효문황후가 지은 《내훈內訓》, 청나라 때 왕절부王節婦가 지은 《여범첩록女範捷錄》으로, 각각의 책이 저술된 시기는 한漢·당

115 소혜왕후 지음, 이경하 주해, 《內訓》, 한길사, 2011.

116 이숙인 역주, 〈여사서 해제〉, 《女四書》, 도서출판 여이연, 2003, 348~378쪽.



《여사서언해》-어제 서문



《여사서언해》-여계

唐·명明·청淸으로 최대 1,600여 년의 시간적 거리가 있다. 이 네 책이 《여사서》로 묶이기 전 명나라 신종 황제는 1580년에 《여계》와 《내훈》을 묶어 한 책으로 만들고 거기에 직접 서문을 썼다. 그 뒤 청나라 때 왕상은 신종이 묶어 놓은 두 책에 《여논어》와 《여범첩록》을 뒤에 붙여 《여사서》를 만들고 주석 작업을 했다. 왕상의 주석본은 《여사서집주女四書集註》 본과 《장원각여사서壯元閣女四書》 본으로 여러 차례 간행되어 청나라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이 《여사서》가 조선에 유입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734년(영조 10)에 영조가 이덕수李德壽에게 명하여 《여사서》를 언문으로 번역하게 하였고, 1736년(영조 12)에 영조가 직접 쓴 서문을 단 《여사서》 한글 번역본이 간행되었다. 영조 때 간행된 《여사서》 한글 번역본은 중국의 《여사서》와 달리 한·당의 《여계》와 《여논어》를 상책으로 삼고, 명·청의 《내훈》과 《여범첩록》을 하책으로 삼았다. 각 책이 저술된 시대순으로 편집 체계를 바꾼 것이다. 《여사서》는 1736년에 간행된 초간본과 1907년 전우田愚가 국문으로 번역한 뒤 송병순宋秉珣에게 서문을 부탁하고 박만환朴晩煥의 재정 지원을 받아 1907년에 간행한 중간본이 남아 있다.[117]

3) 조선 후기 여성들의 문자생활

극히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조선시대의 일부 여성들은 양반 사대부 남성 못지않은 높은 교양과 학식을 뽐내기도 하였다. 이능화李能和의 《조선여속고》 제26장 〈조선의 여자교육〉에서는 여자로서 경사經史를 해독하며 시문詩文을 지을 수 있었던 이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허종許琮의 자씨姊氏는 글과 식감識鑑이 있었고, 미암眉庵 유희춘柳希春의 부인은 글을 잘하여 시를 지었고, 율곡 이이의 어머니 사임당師任堂 신씨는 글씨와 그림을 잘하였고, 초당草堂 허엽許曄의 딸 난설헌蘭雪軒은 시를 잘했다. 학곡鶴谷 홍서봉洪瑞鳳의 어머니와 홍상한洪象漢의 부인 어씨魚氏와 그밖에 임당林塘 정유길鄭惟吉의 딸 봉원부부인蓬原府夫人 유씨柳氏, 잠곡潛谷 김육金堉의 딸인 서문리徐文履 부인, 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의 어머니 서씨徐氏, 탄원坦園 윤광연尹光演의 아내 정일당靜一堂 강씨姜氏, 광주廣州 유의柳義[유희柳僖)]의 어머니[118] 등 여러 사람은 다 재주도 타고났으려니와 지벌地閥도 있고, 가정지학家庭之學과 시례지풍詩禮之風을 지니었었다.[119]

대부분의 조선시대 여성들이 신분과 계층을 막론하고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자를 익히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부 여성들은 나름대로 문자교육을 받고 높은 수준의 문자생활을 영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특히 《여사서》를 비롯한 여성 교훈서들을 접할 수 있었던 상당수의 여성들은 한자·한글 이중문해 능력까지 갖추는 경우가 많았다. 경서經書 언해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여훈서에도 한문의 원문에 독음과 구결이 달려 있어 이를 읽는 여성들이 한글뿐 아니라 한문까지도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20] 하지만 양반 사대부 가문이라고 하더라도 여아에 대한 문자교육은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117 〈여사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8 광주 유의의 어머니는 《태교신기》의 저자 사주당 이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119 李能和 지음, 김상억 옮김, 《朝鮮女俗考》, 동문선, 1990, 525쪽.

120 이지영, 〈조선시대 閨訓書와 여성의 문자문화〉, 《여성문학연구》 28, 2012 참조.

경우가 많아 여성들의 한자 문해 능력 습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1) 《사소절》 〈부의〉에 나타난 이덕무의 여성교육관

앞서 이규경의 〈여교변증설〉을 통해 잠시 살펴본 바 있지만,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는 1775년(영조 51)에 문자학습을 비롯한 여성교육의 여러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담은 《사소절》 〈부의〉 편을 지었다. 여기서 이덕무는 먼저 '박식하고 재능 있는 부인'을 칭찬하는 세태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요즘 세상 부인 중에 재주 있는 자가 혹 붕당朋黨의 색목에 대한 이야기와 어느 집안 문벌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이야기와 옛날 벼슬아치들의 승진되고 좌천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일가친척의 남녀들은 시끄럽게 그의 재능을 칭찬하게 되니, 아, 이것은 참으로 집을 어지럽히는 근본이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바깥일에 참견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경書經》에,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고, 《시경詩經》에, "부인이 말이 많은 것은 화란禍亂의 계제로다." 하였다.[121]

박식하고 재능 있는 여성에 대한 그의 이러한 부정적 인식 때문인지 이덕무는 여성교육의 내용은 무식을 면할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고, 이에 따라 시문詩文 창작과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부인은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논어》 《시경》 《소학》 그리고 《여사서》를 대강 읽어서 그 뜻을 통하고, 여러 집안의 성씨, 조상의 계보, 역대의 나라 이름, 성현의 이름자 등을 알아둘 뿐이요, 허랑하게 시사詩詞를 지어 외간에 퍼뜨려서는 안 된다. 주문위周文煒는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남이 나더러 재주가 없다고 칭하게 할지언정, 남이 나더러 덕이 없다고 칭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유명한 집안 부인의 시장詩章 한두 편이 불행하게 유전하면, 반드시 승려僧侶의 시장 뒤에나 창기娼妓의 시장 앞에 나열되니,

121 《청장관전서》 권30, 사소절 7, 婦儀 2, 事物.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122]

이렇게 여성교육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서도 이덕무는 훈민정음을 통한 문자교육은 특별히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단 여기에도 '언문으로 번역한 이야기 책[傳奇]을 탐독하거나, 번역한 가곡을 익혀서는 안 되며, 장황하고 지루하게 말을 늘어놓는 언문 편지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많은 제한 사항을 덧붙였다.

> ○ 훈민정음은, 자음子音·모음母音의 반절反切과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과 치음齒音·설음舌音의 청탁淸濁과 자체字體의 가감加減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비록 부인이라도 또한 그 상생상변相生相變하는 묘리를 밝게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말하고 편지하는 것이 촌스럽고 비루하여 본보기가 될 수 없다.
>
> ○ 언문으로 번역한 이야기책[傳奇]을 탐독하여 가사를 방치하거나 여자가 할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심지어 돈을 주고 빌려보는 등 거기에 취미를 붙여 가산을 파탄하는 자까지 있다. 또는 그 내용이 모두 투기하고 음란한 일이므로, 부인의 방탕함이 혹 그것에 연유하기도 하니, 간교한 무리들이 요염하고 괴이한 일을 늘어놓아 선망하는 마음을 충동시키는 것이 아닌 줄을 어찌 알겠는가?
>
> ○ 언문으로 번역한 가곡은 입에 익혀서는 안 된다. 당나라 사람의 시나 장한가長恨歌 같은 따위는 요염하고 호탕하므로 기녀들이나 욀 것이니, 또한 익혀서는 안 된다.
>
> ○ 무릇 언문 편지를 지을 때는, 말은 반드시 분명하고 간략하게 하고, 글자는 반드시 또박또박 해정하게 써야지, 두서없는 말을 장황하고 지리하게 늘어놓음으로써 남들이 싫증을 내게 해서는 안 된다.[123]

이처럼 이덕무는 몇 가지 금지 사항을 덧붙이면서도 훈민정음의 경우 '이것을

122 위와 같음.

123 위와 같음.

알지 못하면, 말하고 편지하는 것이 촌스럽고 비루하여 본보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며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물론 훈민정음에 대한 학습도 여성들이 언문 편지를 격식에 맞게 쓰는 정도로 그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가 여성들에 대한 한글 학습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 《사소절》 집필 당시(1775년, 영조 51)에 이미 여성들 사이에 한글을 통한 문자생활이 상당히 확산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⑵ 조선 후기 여성들의 문자생활 양상

채제공蔡濟恭의 〈여사서女四書 서문〉에는 당시 여성들의 문자생활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이 담겨 있다. 이 글은 채제공이 요절한 부인 동복 오씨를 기리며 쓴 것인데, 오씨는 오필운吳弼運의 딸로, 1722년에 태어나 1737년(15세)에 채제공과 혼인하고 1751년(29세)에 사망하였다. 이 글에서 채제공은 '가사家事의 책무를 소홀히 한 채 오직 패관소설을 숭상하는' 당시 부녀자들의 습속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규방에서 규범으로 삼을 만한 아녀자의 책만을 송독한' 부인의 덕을 다음과 같이 극구 칭송하였다.

> 오호라, 《여사서》 한 책은 증贈 정경부인 동복 오씨가 손수 쓴 책이다. 부인은 15세에 나에게 시집와서 29세에 서울의 도동桃洞 집에서 세상을 마쳤다. 당시에 나는 부친의 비안比安 임소任所에 근친覲親하러 갔다가 미처 돌아오지 못했는데, 부인이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귀경길에 올랐다. 옛집에 돌아오니 뜰에는 눈이 쌓이고 방은 먼지로 덮인 채 여종 몇이 관 하나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부인은 자녀가 없었으니 어디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었겠는가. 흐느끼며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홀연 궤안几案 사이에 거꾸러진 언문책 한 권을 발견하였다. 바로 부인이 손수 쓴 《여사서》였는데, 미처 필사를 다 마치지 못한 것이었다. 자획이 부드럽고 아름다워 마치 부인을 보는 듯했다. 이에 주워서 부인이 예전에 쓰던 작은 오궤烏几에다 넣어 내가 자는 곳 옆으로 옮겨 두었으니 잃어버릴까 염려했던 것이다.
>
> 가만히 보건대, 근세에 규방에서 다투어 능사로 여기는 것이라고는 오직 패관소설을 숭상하는 일이다. 날마다 달마다 그 종수種數가 늘어나서 천 가지 백 가지에 이른다. 장사치들이 그것을 깨끗하게 베껴 두었다가 누가 빌려 볼 때면 매번 요금을 거두어서 이익으로 삼는다. 부녀자들은 식견이 없어

비녀나 팔찌를 팔기도 하고 혹은 빚을 내어 다투어 서로 빌려 와 그것으로 긴긴 하루를 허비하느라 음식과 길쌈의 책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도처가 다 이러한 지경이지만, 부인만은 홀로 능히 습속에 휩쓸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가사家事가 한가할 때면 간간이 송독誦讀을 하였는데, 오직 규방에서 규범으로 삼을 만한 아녀자의 책만을 송독하였다. 게다가 마음을 써서 종이와 먹을 마련하여 여가를 틈타 글을 쓰기를 마치 일과에 맞추는 것처럼 하였다. 부인이 성현의 격언을 깊이 음미하는 것이 이와 같았으니, 어질지 않다면 능히 이러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나의 가르침이 나의 처妻에까지 미친 것이 아니라, 실로 부인의 습성이 그러했던 것이다. 나의 자손에게 전해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미루어 어진 부인에게 아름다운 자태가 있었음을 알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뒤로 수십 년이 흘러 내가 개성 유수로 부임했을 때 도둑이 서울 집에 들어 나의 일상 용구를 가져가 버렸는데, 작은 오궤도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아, 부인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그려 볼 수 있던 필적을 지금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매번 그것을 생각할 때면 슬픈 마음을 견딜 수 없다. 그 일을 기록해 두었다가 생각이 간절해지면 볼 것이다.[124]

채제공이 "날마다 달마다 그 종수種數가 늘어나서 천 가지 백 가지에 이른다."라고 쓴 것을 보면 당시 조선 여성들 사이에서 패관소설의 인기는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125] 《사소절》 부의편에서 이덕무가 "언문으로 번역한 이야기책[傳奇]을 탐독하여 가사를 방치하거나 여자가 할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였듯이, 채제공 또한 가사를 팽개치고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패관소설에 탐닉하는 당시 부녀자들의 행태를 개탄하고 있다. 채제공은 "도처가 다 이러한 지경이지만, 부인만은 홀로 능히 습속에 휩쓸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라며, 세태를 멀리하고 가사家事의 여가에 언문으로 《여사서》를 필사한 부인 동복 오씨의 덕을 칭송하고 있다. 채제공의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당시(1751년)에 "뜻있는 양반 사대부들이 개탄해 마지않

124 《번암집》 권33, 序, 女四書序.

125 이능화의 《조선여속고》에서는 당시 여자들이 애독하던 소설로 《심청전》《숙향전》《박씨부인전》《옥루몽》《구운몽》《창선감의록》《사씨남정기》《홍길동전》《장화홍련전》《백학선전》《책성의전》《유충렬전》《제마무전》《삼국지》《조웅전》《소대성전》《양풍운전》《흥부전》 등을 열거하였다(이능화, 앞의 책, 531쪽).



윤덕희가 그린 〈책 읽는 여인〉(국립중앙박물관)

을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한글 소설을 탐독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히 그려볼 수 있다. 한글은 이미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일상의 보편적 문자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겸재 조태억趙泰億의 〈언서諺書 서주연의 발문〉을 보면, 여성들 사이에서 이미 17세기부터 번역 소설을 비롯한 한글 소설이 크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태억의 이 글은 모친이 언문으로 필사해 보던 《서주연의西周演義》[126] 전질을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여인에게 빌려주었다가 그 여인이 그 가운데 한 책을 잃어버려 몹시 안타까워하다 3년 뒤 우연히 다시 찾게 된 사연을 적은 글이다. 《겸재집》의 해제에 따르면, 조태억의 모친은 남원 윤씨 윤이명尹以明의 딸로, 조태억이 24세 되던 1698년(숙종 24)에 별세하였다. 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어머니께서 언문諺文으로 《서주연의西周演義》 10여 책을 필사하셨는데 원본 자체가 한 책이 결본이어서 완질을 갖추지 못했다. 어머니께서 그것을 늘 아쉬워하며 지내신 지 오래되었다. 그러다가 옛것을 좋아하는 어떤 집에서 완전한 본을 얻게 되어 다시 써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완질을 갖추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어머니께 그 책을 빌려 보고 싶다고 애걸하였다. 어머니께서는 바로 전질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셨다. 얼마 지난 뒤 그 여인이 문으로 들어와 사죄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빌린 책을 삼가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길에서 한 책을 잃어버

126 《서주연의》는 《封神演義》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중국의 역사소설로, 명나라 때 許仲琳이 지었다고 전해진다. 일설에는 陸西星이 지었다고도 한다. 姜子牙('姜太公'呂望)가 주나라 문왕과 무왕을 보좌하여 상나라의 紂王을 토벌한 역사적 배경을 그리고 있다. 한글로 번역되어 일찍부터 조선 사회에 유통되었는데, 지금도 장서각에는 25권 25책의 한글본이 전해오고 있다.

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잃어버린 부분이 무엇인지를 물으셨는데 공교롭게도 예전에 다시 써서 빠진 데를 보충한 그 책이었다. 완질을 갖추었던 것이 이제 다시 낙질이 된지라 어머니께서는 속으로 몹시 안타까워하셨다. 그로부터 이태가 지난 겨울, 나는 아내를 이끌고 남산 아래 마을에 살게 되었다. 아내는 마침 병석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터라 같은 집에 사는 친척 부인에게 책을 빌렸다. 친척 부인은 책자 한 권을 건네주었는데 아내가 보니 예전에 잃어버렸던, 어머니께서 손수 쓰신 바로 그 책이었다. 내게도 보여주기에 봤더니 틀림없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친척 부인에게 가서 책을 얻게 된 유래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친척 부인의 말은 이러했다. "나는 그 책을 우리 일가인 아무개한테서 얻었고, 아무개는 그 마을 사람인 아무개한테서 샀지요. 그 마을 사람은 길에서 그 책을 주웠답니다." 아내는 전에 그 책을 잃어버린 정황을 빠짐없이 말해주면서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 친척 부인은 신기하게 여기면서 돌려주었다. 낙질이 되었던 것이 또 이렇게 하여 다시 완질을 갖추게 되었다. 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127]

조태억의 발문을 보면, 《서주연의》를 언문으로 필사한 것은 그의 모친 남원 윤씨이다. 그리고 그것을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빌려 간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가운데 한 책을 잃어버렸다. 두 해 뒤에는 병이 든 조태억의 부인이 친척 부인에게서 책 한 권을 빌려본다. 공교롭게도 그 책은 조태억의 모친에게서 책을 빌려 간 같은 마을 여인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책이었다. 사정을 알아보니 그 책은 길에서 주워 그 책을 갖고 있던 같은 마을의 아무개한테 친척 부인의 일가가 산 것이었다. 이렇게 조태억의 〈언서 서주연의 발문〉은 한글 소설을 탐닉하던 당시 여성들의 모습을 흥미롭게 잘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당시에 한글을 통한 여성들의 문자생활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127 《謙齋集》 권42, 跋, 諺書西周演義跋.

제4장

개항기 한양의 근대교육

1881 일본에 파견된 조사시찰단 수행원 유길준 등 일본 유학

1883 최초의 관립 외국어 교육기관
민관 협력으로 서양식 학교인 원산학사 설립

1886 어학 및 시무 인재 양성 위한 육영공원 설치
최초의 사립 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 설립

1880 1883 1886 1889 1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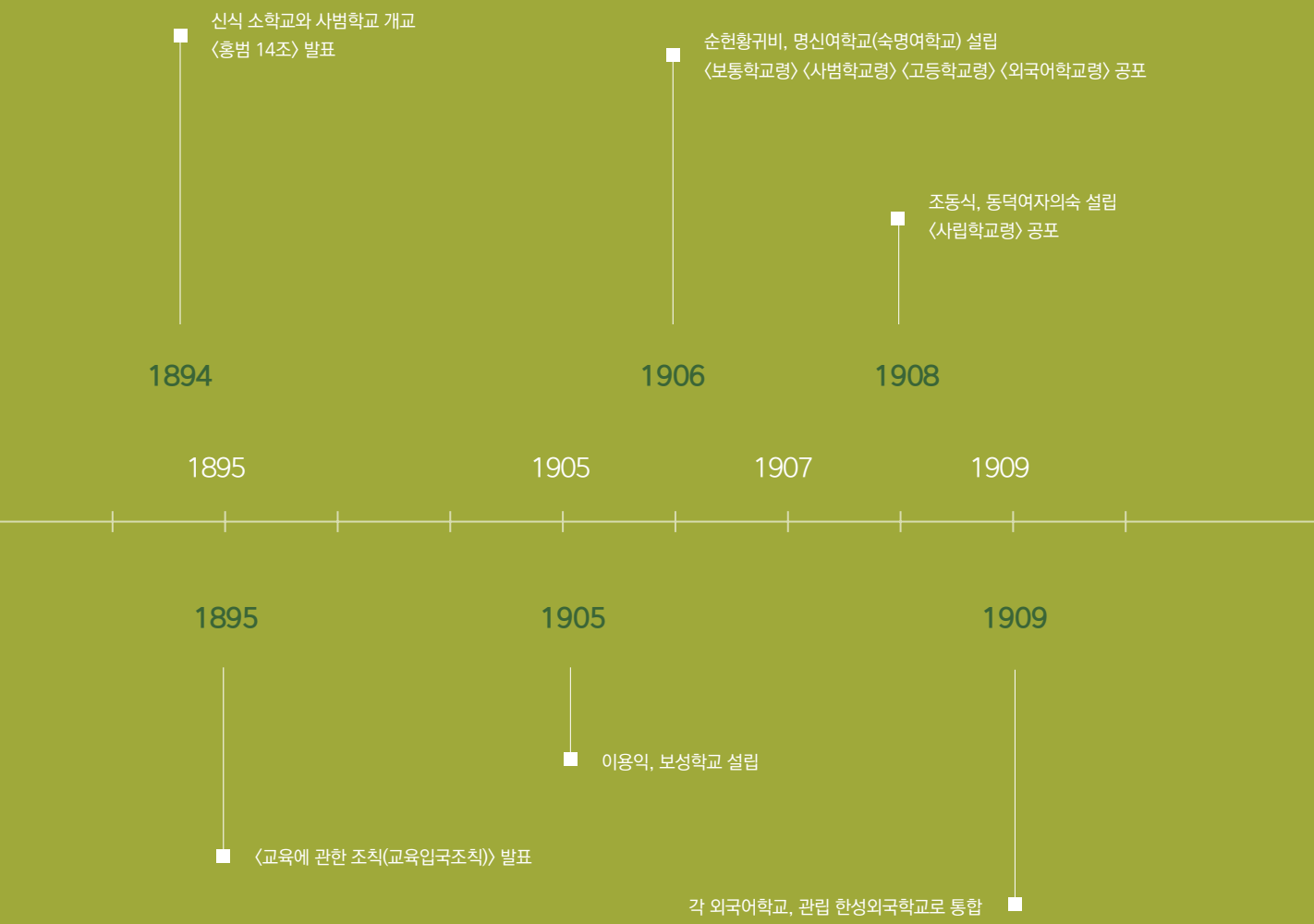
1882 영선사와 함께 파견된 학도의 청나라 유학

1885 미션계 학교 배재학당 설립

제1절 근대교육 법규의 제정과 담당 기구

제2절 근대교육 도입과 근대학교의 등장

제3절 통감부의 교육 침투와 교육구국운동 전개



제 1 절

근대교육 법규의 제정과 담당 기구

1. 개항기 교육 법규의 제·개정과 담당 기구의 등장

1) 근대교육 법규 제정의 필요성

조선은 민본이념民本理念을 내세운 유교국가였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백성을 통치 대상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교화의 대상으로도 인식하였다.[1] 따라서 이들 백성을 통치하고 교화시킬 관리들의 선발과 이들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설치에 관심을 가졌다. 조선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는 1392년 7월 즉위교서에서 문무 과거제의 실시를 통한 관리 선발과 함께 이런 관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의 설치를 강조하였다.[2] 이어서 즉위교서에 입각하여 중앙에는 성균관과 사부학당을, 지방 고을에는 향교를 설치하였다.

또한 《경국대전》을 비롯한 각종 법전에서 각급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의 업무를 규정하였고, 이런 학교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라 할 학령學令, 절목節目, 사목事目을 비롯한 각종 학교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예조는 의례(전례), 외교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을 관장하였고, 여타 여러 아문에서도 이러한 학교들을 직·간접으로

1 이석규 외, 《'민'에서 '민족'으로》, 선인, 2006, 43~63쪽.

2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정미).

지원하였다. 또한 '학교진흥'[興學校]은 고려 시기와 달리 국초부터 고을 사또[守令]의 중요 임무로서 7사七事 가운데 하나였다.[3] 다만 이러한 학교는 주로 선비 즉, 양반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교육하였으므로 일반 평민과 천민은 사실상 배제되었다.



〈권학절목〉(《중종실록》 권78, 중종 29년 11월 9일(신미))

그러나 양난을 거치면서 사회경제 변동이 극심해지고 새로운 부농층이 성장하면서 신분제가 동요하였고 백성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도 신분 상승 욕망만큼 점차 강해졌다. 교육은 지배 신분층에 편입될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향촌 주민을 교화시키기 위해 서당書堂을 지원하거나 통제하는 데 적극 나섰다. 〈향학사목鄕學事目〉과 〈권학절목勸學節目〉은 면 단위까지 면훈장面訓長을 둘 수 있는 근거였다.[4] 다만 양반 위주의 신분제가 여전히 유지되었을 뿐더러 국가가 관장하는 향교 이상의 교육 기회가 일반 민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아 보통교육의 확산과 제도화는 요원하였다. 실학자를 제외한 대다수 양반층이 일반 민인의 관료 진출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보통교육의 제도화 문제는 1876년 개항 이후 서구 및 일본의 침투에 맞서서 학교 진흥 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부각되었으며 근대적 국민교육체제는 이러한 전통 위에서 모색되었다. 신식학교의 설립은 그 도화선이었다. 기본 방향은 동도서기東道西器라는 전제 위에서 전통적 유교 이념을 사회 운영원리로 삼고 서구의

3 이범직, 〈조선전기 유학교육과 향교의 기능〉, 《역사교육》 20, 1976, 16~23쪽.

4 김무진, 〈조선후기 서당의 사회적 성격〉, 《역사와 현실》 16, 1995, 230~237쪽.

실용 지식을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교육에서도 유학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국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각종 실무능력의 배양을 위한 근대교육이 모색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1882년 12월 28일에 발표된 고종의 〈교육에 관한 윤음〉에서 잘 드러났다.[5] 이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국민이 신분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통상을 확대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편 중앙에서도 당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위시하여 서구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게 되고 이들과 빈번한 교섭을 갖게 되자 영어를 할 줄 아는 통역관이 필요하였다.[6] 이에 정부는 1882년 11월경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부속기관으로 서울 재동에 동문학同文學을 설치하여 외국어를 가르치며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정치·이재理財도 가르치도록 하였다.[7] 동문학은 이처럼 서울에 설립되었던 신식학교의 효시인 동시에 근대 최초로 설립된 외국어(영어) 전문학교였다. 다만 국가 차원의 법률적 근거보다는 통리아문의 장정章程에 입각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에 파급력이 미미했다.

이어서 동문학이 역관 양성소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해 양반들의 지원 학생이 줄어들자 왕실이 주도하는 내무부內務府는 1886년 8월 〈육영공원설학절목育英公院設學節目〉을 마련하고[8] 9월 육영공원을 설치하였다.[9] 이듬해인 1887년 3월에는 동문학과 달리 이 공원에 대한 관제官制가 따로 마련되었으므로 관리들이 근무하였다.[10] 이른바 '학교관제시대學校官制時代'가 열린 것이다. 비록 학제라든가 교육기본법이 먼저 제정되지 못했지만 이후 근대학교가 법규에 입각하여 설립될 수 있는 단서를 제공

5 《고종실록》 권19, 고종 19년 12월 28일(경진).

6 백옥경, 〈개화기 번역관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과 그 문제점〉, 《이화사학연구》 50, 2015, 38쪽.

7 이광린,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38, 1968, 70~71쪽; 박성래, 〈한국 근대의 서양어 통역사〉, 《역사문화연구》 16, 2002, 177쪽; 김경미, 《한국 근대교육의 형성》, 혜안, 2009, 67~76쪽; 한용진, 《근대 한국 고등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125~133쪽 참조.

8 《고종실록》 권23, 고종 23년 8월 1일(신유).

9 《育英公院謄錄》(규 3374).

10 《승정원일기》, 고종 24년 3월 6일(갑오).

한 셈이다. 그리하여 육영공원은 능력 중심의 근대 관료체제와 고등교육의 역사적 기반을 제공하였음은 물론이고, 고등교육을 받쳐주는 보통교육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민교육 체제를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정부는 어학교 설치를 통해 급박하게 진행되는 외교 통상에 적극 대처하는 가운데 학교 체제 전반에 대한 구상에 들어갔다. 이는 우리나라 위계적 학제에 기반하면서도 근대 학문을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습득하는 학제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서양 여러 나라의 학제를 대학(고등교육)-중학(중등교육)-소학(초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국민교육의 기초라 할 초등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이 기존에는 없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서구의 소학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등 소학교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1886년 1월 2일 사노비私奴婢 세습을 폐지하는 조치에[11] 이어서 1887년 4월 23일 전교傳敎에서는 예전에 일반 백성의 자식이라도 8세에 소학小學에 들어갔다는 고사를 들어 모든 인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12] 그러나 이때의 소학교육은 서구와 달리 생리生利의 차원보다는 인륜人倫에 기초한 개개인의 궁리窮理와 수양修養을 주된 업으로 삼고 있었다.

이어서 정부는 이러한 소학교를 근간으로 삼아 상위에는 중등교육 단계로서 관학원官學院(읍 단위)을 두고자 하였다.[13] 여기에는 면학面學 유생 중 우등자가 입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 단위와 전국 단위에 각각 고등 교육 단계로서 영학원營學院과 경학원京學院을 두고자 하였다. 이처럼 유학 교육을 중심으로 면학-관학원-영학원·경학원으로 이어지는 학제의 계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셈이다.

11 《고종실록》 권23, 고종 23년 1월 2일(병신).

12 《고종실록》 권23, 고종 23년 4월 19일(임오).

13 《고종실록》 권24, 고종 24년 7월 20일; 《日省錄》, 고종 24년 10월 27일(경술).

2) 근대교육 법령의 제정과 교육 전담 기구의 등장

갑오개혁은 1894년 농민전쟁을 배경으로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계기는 일본의 군사적 침략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군사력에 근간하여 조선 사회를 자국의 침략에 적합하도록 바꾸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교육제도 역시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갑오개혁 초기에 일본은 농민군을 진압하고 청일전쟁을 수행하고 있어 개혁은 조선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조선 교육의 전면적 개편을 구상하고 있었던 문명개화파는 기존의 학제를 대체하는 신학제를 수립하는 동시에 교육내용을 개편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는 전통교육과 신식교육의 이원적 학제를 구상했던 동도서기파의 노선과 다른 방향이어서 교육사상, 제도, 내용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었다.[14]

갑오정권은 초기에는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통하여 권력의 입지를 확보한 뒤 군국기무처라는 회의기구를 만들어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였다. 군국기무처에서는 중앙행정기구를 개편해서 8아문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학무를 담당하는 학무아문學務衙門을 설치하였다.[15] 학무아문은 외교·교육·문화 사업을 담당했던 종래의 예조와 달리 교육행정을 전문적으로 맡았다. 그리고 일본의 문부성 조직을 모방하여 보통학무국과 전문학무국을 신설해서 새로운 학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국가의 기간基幹이 되는 교육업무를 학무국에 일임하였으며 학무국은 신학제를 수립하는 데 몰두하였다. 소학교-중학교-대학교를 기간교육으로 하는 신학제가 그것이다. 학무국의 이러한 직제는 일본 문부성 직제와 동일하였으나 보통학무국과 전문학무국에서 각기 담당하는 학교와 학교를 관할하는 방법은 달랐다. 일본의 보통학무국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관장하고, 지역적으로 전국의 학교를 관할하고 있었다.[16] 그러나 조선에서는 중학교를 전문학무국에서 관장하도

14 구희진, 〈한국 근대개혁기의 교육론과 교육개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83쪽.

15 《고종실록》 권31, 고종 31년 6월 28일(계축).

16 구희진, 앞의 글, 85쪽; 日本 文部科學省, 〈第一編 第二章 第七節 教育行財政〉, 《学制百二十年史》, 株式会社 ぎょうせい, 1992.

록 했는데, 이는 중등교육을 전문 수준으로 구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조선의 보통학무국은 일본과는 달리 각 지역의 학교를 관할하지 않았다. 이것은 지방제도의 개편이 수반되지 않았을뿐더러 국가 주도의 소학교 설립이 전국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정부에서는 구래의 전통대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몇몇 관립학교를 운영하여 새로운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되, 지방의 소학교는 향촌의 유자층이나 민인들이 정부의 신교육 방침에 근거하여 자치적으로 설립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결과 보통학무국에서는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관장하였으며, 전문학무국에서는 중학교, 대학교, 기예학교, 외국어학교, 전문학교를 관장하였다. 이는 장차 설립할 학교들을 염두에 두고 관리 기구를 미리 조직한 것이다.

한편 조선은 일본과는 달리 성균관급상교서원成均館及庠校書院 사무국을 별도로 두되 강학講學 기능을 박탈하고 선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향사享祀 기능만 남겼다. 이는 갑오개혁 이전 정부와 향촌 유자층이 추구했던 이원적 교육체제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또한 군국기무처에서는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의안議案을 의결하였다. 먼저 1894년 7월 13일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재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낼 것을 의정議定하였다.[17] 이러한 의정은 무엇보다 조선의 인재들을 일본 고등교육기관에서 육성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 점은 고등교육 방침이 동도서기론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7월 28일에는 학무아문에서 담당해야 할 가장 시급한 업무로 소학교 교과서를 편찬할 것을 의정했다.[18]

학무아문 대신으로 임용된 박정양朴定陽은 곧바로 8월 2일 고시문을 발표하여 교육의 기본방침을 밝혔다.[19] 국가를 유신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가

17 《고종실록》 권32, 고종 31년 7월 13일(정해); 《議定存案(第一)》(규 17236).

18 《議定存案(第一)》(규 17236).

19 《朴定陽全集》 권4, 〈고시문〉(갑오 8월 초2일 學務大臣時).

장 중요하므로 학무아문에서 소학교를 먼저 설립한 뒤 대학교와 전문학교도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무아문에서는 교육정책의 중점을 소학교 교육에 두고, 학무아문에서 직접 운영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방침은 예비 관리 양성에 초점을 두었던 성균관, 사부학당, 향교 위주의 전통적인 교육정책과는 다른 것이었다.

나아가 정부는 교육기회를 개방하여 신분의 제한 없이 7세 이상의 남자는 소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20] 특히 학무아문에서는 소학교가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자리 잡도록 학사 운영의 표준을 제정하였다. 새로이 설립되는 소학교는 학령제學齡制를 도입하여 7세 이상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수학 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학기제로 운영하여 각 학년은 2학기로 정했다. 이어서 학무아문은 1894년 9월 3일에 교육 확장의 방안을 밝히면서 소학교 설립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정부는 소학교를 설립하는 동시에 소학생을 가르칠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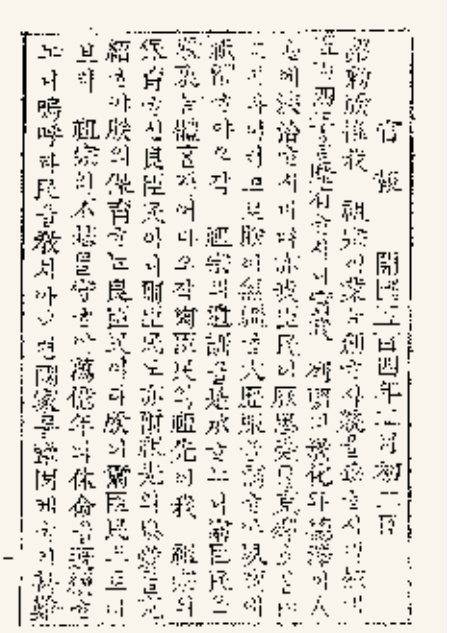
그러나 정부가 교육개혁을 급격하게 추진하였던 까닭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약하였다. 이에 1894년 12월 정치·경제·사회 부문은 물론이고 교육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홍범 14조〉가 발표되었다. 교육에 관한 조항도 〈홍범 14조〉 안에 포함되었는데 '나라 안의 총명한 자제들을 널리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기예를 견습한다.'라는 조항이 그것이다.[22] 이러한 조항은 이전에는 일본이 은밀하게 요구하였던 내용으로, 이제는 그것을 명문明文으로 밝혀 조선의 자주적인 고등교육 개혁을 억제하고 일본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심산을 보여준다.[23]

20 구희진, 앞의 글, 88쪽.

21 사범학교 설립 시기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현재는 1895년 4월 16일 〈한성사범학교관제〉에 입각하여 설립된 '한성사범학교'와 구분하여 사범학교가 1894년 9월에 설립되었다는 주장이 통설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유방란, 《한국 근대교육의 등장과 발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75쪽;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문음사, 1996, 56쪽; 임후남, 〈한국 근대 초등교원의 양성〉, 《한국교원교육연구》 20(1), 2003, 271~272쪽; 우용제·안홍선, 〈근대적 교원양성제도의 변천과 사범대학의 설립〉, 《아시아교육연구》 7(4), 2006, 190~191쪽; 김경미, 《한국 근대교육의 형성》, 혜안, 2009, 121~129쪽; 한용진, 《근대 한국 고등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270~274쪽 참조.

22 칙령 14호 〈誓誥綸音〉, 《관보》, 1895년 2월 2일.

그럼에도 정부는 이듬해인 1895년 2월 2일 일본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전통적인 홍학 방침에 입각하되 종래의 교육방침을 바꾸어 부국강병을 목표로 실용적인 국민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담은 〈교육에 관한 조칙〉을 발표하였다.[24] 여기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충량忠良을 요구하는 일본 메이지천황의 〈교육칙어〉와 달리 국민의 능동적 자율성에 바탕을 둔 교육입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25] 즉 정부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삼되 덕양德養, 체양體養, 지양知養에 입각하여 주체적이고 실용적인 국민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관한 조칙〉(《관보》 개국 504년 2월 2일)

한편 정부는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학무아문을 학부로 고치면서 기존의 보통학무국과 전문학무국을 학무국으로 통합하고 대학교 규정을 없애는 대신에 해외유학생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26] 이는 일본의 간섭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국가교육체제의 수립 과정에서 국내 대학을 설립하지 않은 채 〈홍범 14조〉에 근거하여 고등 인재를 해외 유학을 통해서만 양성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었다. 그리하여 조선 정부는 주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학술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한 채 국가정책을 주도해 가야 할 고등의 인재를 국내에서 양성하지 못하고 해외 유학을 통해 양성해야 했다. 더욱이 조선 정부가 고등교육을 관장하면서 그 방향을 제

23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305쪽.

24 《관보》 개국 504년(1895) 2월 2일.

25 이태진·사사가와 노리가쓰 공편, 〈국민 탄생의 역사-3·1 독립만세운동의 배경〉, 《3·1 독립만세운동과 식민지배체제》, 지식산업사, 2019, 27~29쪽.

26 《고종실록》 권33, 고종 32년 3월 25일(병신).

시해 온 전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방안은 기존의 조선사회 식자층들을 국내에서 재교육하지 못함으로써 개혁의 기반을 확대하고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기초를 마련할 수 없었다. 신학제의 기본 특징이 소학교와 외국어 학교에 치중되어 있음은 일본의 이러한 방침에서 비롯되었다.

이어서 학부는 여러 소학교에 배치할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1895년 3월 29일 〈지방제학교교원양성地方諸學校教員養成을 위하여 한성부에 1개 학교를 설립할 일〉을 의결한 데 이어[27] 4월 16일 기존의 사범학교를 법령으로 규정한 〈한성사범학교관제〉를 반포하였다.[28] 수학 기간은 본과 2년 과정, 속성과 6개월 과정이었지만 연령을 각각 20세, 22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군국기무처 시기에 이미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교원보다는 일반 관리로 배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사범학교가 필요했던 것이다. 법령상 미비했던 사범학교의 설립을 공식화한 셈이다. 나아가 이러한 설립은 훗날 의학교, 광무학교鑛務學校, 농상공학교 등 여러 전문학교 설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교육기본법에 해당되는 규정이 없는 가운데 이른바 '학교관제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다만 한성사범학교에 앞서 설치된 1895년 3월 25일 법관양성소는 사범학교와 달리 6개월 단기 과정만 개설함으로써 연수기관에 가까웠다.[29] 더욱이 법관양성소는 정국의 극심한 변동으로 인해 정규 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갑오개혁 기간 유명무실해진 성균관의 교육 기능을 살리기 위해 1895년 7월(음력) 〈성균관관제成均館官制〉를 제정하여 기존의 유학 교육을 위주로 하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30] 이어서 8월 9일 학부령學部令 제2호 〈성균관 경학과 규칙成均館經學科規則〉을 반포하였다.[31] 이에 수업 목표로 경학·덕행과 함께 문명 진

27 《議奏》 5,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二十, 개국 504년(1895) 3월 29일, 漢城府에 教員養成을 爲한 學校를 設立하는 件〉.

28 《칙령》, 1895년 3월 25일; 〈한성사범학교 官制〉, 《관보》, 1895년 4월 19일.

29 김태웅·장세윤, 《일제강점기 고등교육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2, 50~51쪽.

30 《고종실록》 권33, 고종 32년 7월 2일(경자); 칙령 제126호 〈성균관관제〉, 《관보》, 1895년 7월 4일.

31 《고종실록》 권33, 고종 32년 8월 9일(정축).

보가 제시되었고, 학기제, 42주의 수업일수, 28시간의 수업시수 규정 등도 정해졌다. 20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한성 거주 보증인이 있으면 시험이나 추천을 통해 입학할 수 있었다. 이로써 성균관은 법제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졸업생들이 관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32]

또한 정부는 1895년 7월 〈소학교령小學校令〉을 공포하였다. 학교관제 체제에서 탈피하여 일정한 수준의 학교를 묶어 일관된 법령에 입각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학교 종별 법령과 학교 관제가 병존한 셈이다. 이어서 1895년 11월 6일 학부령 제4호 〈각종 학교 퇴학생도 학비 환입 조규各種學校退學生徒學費還入條規〉를 고시하였다.[33]

아관파천 이후 고종이 친정하면서 구본신참舊本新參의 방향에 따라 교육개혁 방향을 조정하였다. 즉 신학제에 따른 교육내용이 주관적으로는 부국강병을 추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서구의 문명화 논리를 추수하는 가운데 일본인 교사와 교과서 집필자를 필두로 하는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절감하고 우리 문화 전통 속에서 기개와 기풍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갑오개혁이 중단된 이후에 문명적 실용교육이 재고되면서 교육내용과 교수 방법, 학교 운영 등의 전반에 걸친 개혁이 모색되었다.

이에 우선 1896년 9월 학부는 〈보조공립소학교 규칙〉을 고시하여 공립소학교 경비를 보조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34] 그리고 1899년 정부는 다시 한번 부국강병과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 교육의 기본방침을 천명하였다.[35] 이에 따라 정부는 1899년 2월에 의학교醫學校를 설립하여 내외 각종 의술을 가르쳤다. 또 중학교를 설립하여 심상·고등 두 과科를 두고 보통학普通學을 가르쳤다. 이어서 1899년 4월 4일 〈중학교관제〉가 반포되었다.[36] 〈중학교관제〉에 따르면, 중학교는 "실업實業에 나아고자

32 김경용, 〈경장기 조선, 관리등용제도 개혁과 성균관경학과〉, 《교육사학》 31(2), 2009, 13~14쪽 참조.

33 학부령 제4호 〈各種學校 退學生徒 學費 還入 條規〉, 《관보》 206호, 고종 32년 11월 6일.

34 〈보조공립소학교 규칙〉, 《관보》, 1895년 2월 25일.

35 《승정원일기》 3107책, 고종 36년 3월 18일(양력 4월 27일).

36 칙령 제11호 〈중학교관제〉, 《관보》, 1899년 4월 4일.

하는 사람에게 정덕이용후생正德利用厚生하는 중등교육을 보통으로 교수하는 곳으로 정함"을 제1조로 하고, 편제는 심상과尋常科와 고등과高等科로 나누었으며(제2조), 수업연한은 7년으로 정하여 처음 4년을 심상과, 뒤의 3년을 고등과라고 했다(제3조). 그리고 지방에서 중학교를 세울 때는 그 장소를 해당 지방의 향교로 정했다(제13조). 이어서 1900년 9월 학부는 학부령 제12호 〈중학교규칙〉을 공포하였다.[37] 이어서 1900년 10월 관립중학교가 고등소학교 1·2회 졸업생과 17~25세의 입학시험 응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울에 설립되었다.[38] 5월에는 상공학교를 설립하여 예과·본과를 두고 농·상·공업工業을 가르쳤다.[39] 1900년 8월 광무학교를 설립하여 광학실업礦學實業을 가르쳤다. 이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3) 통감부의 교육 법규 개편과 특징

1904년의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 1905년 2월 관립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가 학부 고문격인 학정學政 참여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1905년 4월 한국의 보호국화를 전제하고 〈한국교육개량안〉을 제시하였다.[40] 이 방안은 일본의 대한對韓 정책에 따라 일본의 보호국으로서 한국의 시설을 개량하는 데 적당한 교육 실시, 일본어의 보급, 유교의 보존과 신지식 개발, 학제·교과과정의 간이화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였다.

통감부는 '간이와 실용'을 기본방침으로 삼아 1906년 8월 〈보통학교령〉을 비롯한 각 학교령을 공포하고 보통학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였다.[41] 심상과 3년, 고등과 2~3년 과정으로 이루어졌던 5~6년제의 소학교를 4년제의 보통학교로 개편하였으며, 중학교를 폐지하고 중등 교육기관으로 유일하게 한성고등학교를 설

37 학부령 제12호 〈중학교규칙〉, 《관보》, 1900년 9월 7일.

38 박철희, 〈식민지기 한국 중등교육 연구~1920~30년대 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11~12쪽.

39 김태웅·장세윤, 앞의 글, 58~63쪽.

40 《日本外交文書》 제38권 제1책, 〈事項18 韓國學部顧問傭聘竝學政改革ノ件〉(1905. 4. 17).

41 칙령 제44호 〈보통학교령〉, 《관보》, 1906년 8월 31일.

치하였다.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중등 교육기관 위에 상급학교가 없다는 것, 즉 최종 단계의 교육기관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42]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한국의 실업이 실업학교의 졸업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이토 통감 재임 중 신설된 정규 실업학교는 사립 선린상업학교뿐이었다.

통감부는 보통학교를 일어교육과 실업교육 위주로 하고, 이른바 '모범교육'을 실시한다는 명분 아래 "신학제를 시행할 경우 경험과 소양이 부족한 한국인에게 맡기면 도저히 개선의 결과를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각급학교에 일본인 교원을 초빙하도록 하였다.[43] 1908년 1월 〈보통학교령〉 개정에 의해 일본인 교원은 관립보통학교와 갑종공립보통학교에서 학교 운영의 실무를 맡는 교감 직위를 차지하였다. 중등 이상의 관공립학교에도 외국어학교 외에는 신설된 학감學監 직에 일본인이 배치되어 학교 운영을 좌우하였다.

2. 일제강점기 교육 법규의 제·개정과 교육 담당 기구의 변화

1)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점하자마자 관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대한제국 관서를 강등 조치하였다.[44] 이 가운데 교육부문 담당 부서는 대한제국기 학부의 소속 부서인 학무국學務局이었다. 학무국은 교육·학예를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관서가 아니라 내무부에 소속된 부서에 지나지 않았고 산하 부서 학무과는 학교와 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45] 그러나 학무국은 조직 위계와 달리 식민지 조선의 교

42 이계형,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62쪽.

43 김광규, 《일제강점기 초등교육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1, 66~69쪽.

44 칙령 354호 〈조선총독부관제〉,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9월 30일.

45 조선총독부훈령 제2호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1일.

육과 학예를 총괄하면서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초대 총독 데라우치는 '시세時勢와 민도民度'의 적합 여부를 명분으로 내세워 일본 교육 법규의 조선 적용을 꺼리는 학무 관료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가운데 식민지 조선의 특수한 사정에 적용되는 〈조선교육령〉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제정 추진은 당시 일제의 기존 식민지였던 타이완에서도 교육 기본법규라 할 교육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대단히 이례적인 행태였다. 타이완의 경우 사립학교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현실의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한다는 이른바 '무방침주의'로 일관했다면, 식민지 조선의 경우 외국인 경영의 조선인 교육기관과 서당을 비롯한 이들 사립학교가 관공립학교를 압도하는 현실에서 이들 학교를 통제하고 포섭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46] 그 점에서 일제는 메이지 시기 본국에서의 교육령 제정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면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민족별학체제民族別學體制를 수립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1911년 8월 23일 조선총독부는 칙령 제229호로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식민지 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47] 일제의 통치가 개시된 이래 1년여 만에 제정된 〈조선교육령〉은 "제1조 조선에서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本令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교육령은 있듯이 개별 학교령에 근거하여 학교를 운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하나의 교육령으로 종합한 법규로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학교제도 현실을 규정하는 법제도의 기반이었다.[48] 그러나 "제1조 조선에서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조선교육령〉의 적용 대상은 조선인이며 재조선 일본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물론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에 기초해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本義로 한다."라고 규정

46 오성철, 《근대 동아시아의 학생문화》, 서해문집, 2018, 183~184쪽. 弘谷多喜夫·広川淑子·鈴木朝英, 〈臺灣·朝鮮における第二次教育令による教育體系の成立過程-内地延長主義と民族的教育要求の體制内把握をぐる矛盾-〉, 《教育學研究》 39(1), 1972, 157~158쪽.

47 칙령 제229호 〈조선교육령〉,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9월 1일.

48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과정 연구〉, 《한국교육사학》 29(1), 2007, 1~2쪽.

한 바와 같이 조선인도 〈교육에 관한 칙어〉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제정된 각종 학교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선인은 학제와 졸업 이후 진로 등 다방면에서 차별을 받아야 했다. 교육기본법규가 폐지되고 개별 학교령에 입각하여 유지되던 본국 일본과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교육령〉을 별도로 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1차 〈조선교육령〉 체제가 조선인의 교육과 일본인의 교육으로 구성된 이중구조二重構造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조선교육령〉이 칙령이라는 점에서 조선총독은 오로지 천황의 칙령만 따름으로써 일본 내각과 제국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그만큼 조선총독의 자율성과 함께 자의성이 강화된 것이다. 이른바 '교육령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러한 〈조선교육령〉의 영향을 받아 타이완에서도 1919년 〈타이완교육령〉이 공포되었다.

〈조선교육령〉에서 정의하는 교육은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누고, 학교제도는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실업학교·전문학교로 구성되었다. 〈조선교육령〉 제정에 이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관해서는 〈조선공립보통학교관제〉 〈보통학교규칙〉 〈사립학교규칙〉 〈고등보통학교규칙〉 등이 공포되었다.[49] 그 결과 학제의 정비가 1차적으로 마감되고, 이들 학제에 입각하여 각급의 개별학교가 개편 정비되었다.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과 자격 인정이 가능한 정규 학제 속의 학교로 인정됨에 따라 학제 운영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개별 학교 사이에서 위계화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단축되었고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각각 4년과 3년이었다. 반면에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이고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의 수업연한은 각각 5년과 4년이었다. 조선인이 다니는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은 더욱 짧아서 대개 2년이었다. 이것은 조선인이 다니는 중등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에 중점을 두지 않았음을 의

49 칙령 제256호 〈조선공립보통학교관제〉,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10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110호 〈보통학교규칙〉,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10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14호 〈사립학교규칙〉,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10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고등보통학교규칙〉,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10월 20일.

미하며 민족차별교육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전문교육은 여타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실업교육과 달리 후속 규칙이 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문에 불과했다.[50] 여기에는 전문학교 발전 구상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시기상조를 이유로 기존의 전문학교를 무력화시키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고등교육의 소멸을 의미했다.

이러한 민족차별교육은 191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 고등교육에서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제의 고등교육 억제정책이 조선인의 지적 성장과 체제 도전을 억제하는 데 유효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조선 일본인 학생의 진학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여 일본인의 이주·정착을 장려하는 방침과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전문학교규칙〉과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를 공포하여 위상이 모호한 기존의 관립 전문교육기관을 전문학교로 승격시킴으로써 전문학교 설립을 둘러싼 개신교 선교사 계열과의 헤게모니 경합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가운데 재조선 일본인의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였다.[51] 아울러 실제로는 이른바 '사상운동'을 우려하면서도 명목상으로는 고등 학력 실업자의 증가를 방지한다는 핑계로 일본 유학을 본격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하였다.[52]

2)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1918년 쌀 소동을 계기로 일본 내각의 수상이 데라우치 마사타케에서 하라 다카시[原敬]로 바뀌었다. 그는 일본이 타이완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부터 타이완 통치는 일본 본국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수상에 취임하자 조선 통치 방향을 전환하기로 하고 관제 개혁을 시도하였다.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자, 하라 수상은 1919년 8월 조선 총독으로 임명된

50 김태웅·장세윤, 앞의 글, 112~113쪽.

51 조선총독부령 제26호 〈전문학교규칙〉,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3월 24일; 칙령 제80호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4월 1일.

52 김태웅·장세윤, 앞의 글, 112~113쪽.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에게 〈조선통치사견朝鮮統治私見〉이라는 문건을 하달하였다.[53] 즉 현재의 상태에서 일본 본국과 동일한 통치법을 실시해야 한다는 이른바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 피아동일彼我同一의 방침이다. 사이토 조선 총독도 하라 수상의 방침에 따라 이른바 무단통치에서 문치교화文治敎化를 뜻하는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하고 일본 본국과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즉 일제는 조선인들을 무력이 아닌 문文, 즉 교육과 선전을 통해 머릿속을 바꿔 동화를 시키려는 방침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내무부 산하의 학무국을 내무부에서 분리시켜 조선총독부 직속으로 승격시켰다.[54] 학무국의 이러한 지위 격상은 학무국이 3·1 운동을 통해 드러난 조선인의 향학열과 기존 학제의 문제점에 대처하면서 학예, 종교는 물론 교육 담당의 핵심 기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곧이어 일제의 이러한 방침은 1922년 2월 〈조선교육령〉의 개정으로 나타났는데,[55]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인의 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교육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일본 본국과 동일한 교육제도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제2차 〈조선교육령〉을 기획할 때부터 일본 본국 정부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이에 표명되었던 방침이었다.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일본 본국 학교제도와의 연결을 요구하고 있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둘째,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교육목적에 관한 언급이 없다. 교육칙어에 기초하여 충량한 신민을 양성한다는 제1차 〈조선교육령〉의 조항이 삭제되었던 것이다. 제1차 〈조선교육령〉을 제정할 때 교육칙어의 조선 적용 여부 및 일본 국민 인정 여부 등이 핵심 논란이 되었던 것에 비하면 중대한 변화이다. 아울러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들에 의해 삽입된 제3조 "시세와 민도에 따른다."라는 구절 역시 삭제되었다. 이 구절이 "종종 조선인의 반감을 사고, 통

53 水野錬太郎, 《朝鮮統治秘話》, 帝國地方行政學會, 1937, 156~161쪽.

54 이명화,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기구변천과 기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1992.

55 칙령 제19호 〈조선교육령〉, 《조선총독부관보》, 1922년 2월 6일. 이와 관련해서는 강명숙,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 연구〉, 《교육사상연구》 23(3), 2009 참조.

치에 불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56] 그렇다고 〈조선학제개정안요령朝鮮學制改正案要領〉에서 천명했던 "조선인을 점차 완전한 일본 국민답게 한다."라는 교육 대방침이 변경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57]

셋째,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학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각각 별도의 학교 계통에서 각각의 학교에 다니도록 하였다. 제2조에서 일본인의 교육을 "국어를 사용하는 자의 교육"이라 하여 "국어를 사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 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3조에서 조선인에 대한 교육은 "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의 학교"라고 하여 학교의 종류를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내지준거주의, 피아동일의 방침에 의해 교육제도를 개편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별도의 법적 기반에 근거하여 교육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민족별학주의를 취한 셈이다. 다만 실업교육·전문교육·대학교육에서는 모두 민족공학주의民族共學主義를 채택하고, 일본 본국의 제도 즉 〈실업학교령〉 〈전문학교령〉 〈대학령〉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지준거의 교육'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어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보통학교규정〉을 개정하여 종래 보통학교의 연한을 변경하여 6년을 본위로 하고 현지의 정황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등학교에 대해서는 〈고등보통학교규정〉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 〈실업학교규정〉 〈사범학교규정〉 등을 제정하였다.[58] 고등보통학교의 경우, 2개년 이내의 보습과를 두게 하고 그 교과과정을 일본 본국의 중학교와 거의 동등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고등교육에 관해서는 〈공립사립전문학교규정〉과 〈경성제국

56 樞密院, 〈朝鮮教育令及台湾教育令〉, 《樞密院審査報告》, 1922년 1월 15일.

57 조선총독부, 〈朝鮮學制改正案要領〉, 1919, 1~2쪽. 度部學·阿部洋 편,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 16, 龍溪書舍, 1987, 211~212쪽.

58 조선총독부령 제8호 〈보통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22년 2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16호 〈고등보통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22년 2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4호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22년 2월 17일; 조선총독부령 제9호 〈실업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22년 2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17호 〈사범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22년 2월 23일.

대학 예과규정〉〈경성제국대학 학부에 관한 건〉이 공포되었다. 그 결과 사범교육과 대학교육을 새롭게 교육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초등-중등-고등의 학교 급으로 이루어지는 학제를 구비한 셈이다. 하지만 학교 수 자체가 워낙 적어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학제는 제한적인 역할에 그쳤다. 이런 점에서 당시 조선인에게 학교제도의 체계화는 적극적 의미를 지니기 어려웠다.

3)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

일제는 1929년 대공황의 충격으로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지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만주사변)은 본격적인 대륙 침략의 신호탄이었다. 이어서 중일전쟁을 도발하면서 식민지 조선을 병참기지로 삼았다. 이에 1938년 2월 22일 칙령 제95호로 육군지원병제도를 확립하였고 바로 다음 달인 3월 4일 '국체명징國體明徵', '내선일체內鮮一體', '인고단련忍苦鍛鍊'을 식민지 조선의 교육 3대 강령으로 내세우며 칙령 제103호로 제3차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였다.[59] '내선일체의 교육'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3차 〈조선교육령〉은 식민지 조선을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서 군사와 경제상의 임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국과 동일한 교육제도와 방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일본과 조선의 학교 명칭을 통일하고 종래 조선인 학교의 교육내용을 개편함으로써 조선인이 일본 국민이라는 자각을 철저하게 갖도록 하는 이른바 황국신민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초·중등학교의 민족별학제도가 폐지되고 민족공학제도로 변경되었다. 예컨대 새로이 개정된 〈소학교규정〉 〈중학교규정〉 〈고등여학교규정〉 및 〈사범학교규정〉이 발표되었고, 그 부칙으로 종래의 〈보통학교규정〉 〈고등보통학교규정〉 및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은 각각 폐지하게 되었다.[60]

59 칙령 제103호 〈조선교육령〉, 《조선총독부관보》, 1938년 3월 4일.

60 조선총독부령 제24호 〈소학교규정 개정〉, 《조선총독부관보》, 1938년 3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25호 〈중학교규정 개정〉, 《조선총독부관보》, 1938년 3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26호 〈고등여학교규정 개정〉, 《조선총독부관보》, 1938년 3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27호 〈사범학교규정 개정〉, 《조선총독부관보》, 1938년

하지만 일본인 학교와 한국인 학교를 제1부 학교와 제2부 학교로 여전히 구별하였고 한국인 보통학교에 일본인 학생이 통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61] 1941년 중등학교의 공학共學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인 대상의 학교에 한국인 교원은 없었으며, 1% 이내의 한국인 학생이 일본인 대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조선인 대상의 학교, 특히 사립학교에 일본인이 재학하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제3차 〈조선교육령〉 제정 이후에 신설된 학교에서 겨우 부분적으로 공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62] 동일한 학교제도와 교육방침은 실제로는 공간적 분리라는 칸막이벽에 부딪힌 의미 없는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일한 교육방침의 적용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어 교육과 학교에서의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학생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제하였다.

이어서 일본 본국에서 1941년 3월 〈국민학교령國民學校令〉을 제정하여 학제 반포 이후 유지되었던 '소학교'라는 학교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꾸자 식민지 조선에서도 〈국민학교규정〉이 제정되어 '국민학교'로 변경되었다.[63]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것은 "동아 및 세계에서의 일본의 역사적 사명을 감안하여 국민의 기초적 연성鍊成을 완수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으로, 바로 일제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해 내는 교육이 그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64] 한편 국민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종래 선택과목으로나마 존속하고 있었던 조선어 과목을 완전히 폐지시켜 조선어의 완전한 말살이라는 목적을 함께 관철하려 하였다. 이때 국민학교는 '황국의 도'를 수련하는 기관으로 설정되었다.[65] 특히 일본의 〈국민학교령 시행규칙〉과 달리 조선의 〈국민학교규정〉에서는 '국민'이 아닌 '황국신민'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학교 명칭의 변화가 아니

3월 15일.

61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17~225쪽.

62 백동훈, 〈일제 시기 '내선공학제'의 운용 양상-초·중등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24~42쪽.

63 조선총독부령 제90호 〈국민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41년 3월 31일.

64 김보림, 《국민과의 창설과 '국사'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21~33쪽.

65 文部省 편, 《學制 70年史》, 帝國地方行政學會, 1942, 165쪽.

라, 일본 제국 아래 이등국민으로서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1941년부터 일본은 전시戰時에 호응하여 전문학교 이상의 수업연한을 단축하였다.[66]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첫해인 1941년에 3개월(12월 졸업), 1942년부터는 6개월(9월 졸업)을 단축시켰다. 중학교도 1942년에 입학하는 학생은 4년제로 졸업하게 되었다.

4)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

조선총독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1943년 3월 8일 기존의 〈조선교육령〉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4월 1일에 제4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하였다. 조선 총독 고이소 구니아키[少磯國昭] 유고諭告를 통해 제4차 〈조선교육령〉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교육에 관한 칙어를 존중하며 새로운 구상 아래 황국신민 될 자질을 연성함으로써 국체의 본의에 투철케 하고, 반도 서민으로 하여금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국어 생활에 익숙하게 하여 이치를 알고 사정을 다하게 함으로써 도의道義 조선을 확립하고 조선 통치의 확고부동한 철칙인 완전한 일시동인一視同仁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한다. …… 아울러 생산의 증강增强에도 응분應分의 기여를 하도록 할 것이다.[67]

'황국신민화의 교육'에 중점을 두되 부가적으로 생산의 증강에 대한 기여를 강조함으로써 이후 군수산업과 식량 증산에 학생들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가 제4차 〈조선교육령〉에는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채 학제 개정에 반영되었다. 즉 일본 내각과 조선총독부가 각각 1943년 10월 13일과 10월 14일에 공포한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과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 방침〉에 입각하여 학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6 강명숙, 〈일제 말기 학생 근로 동원의 실태와 그 특징〉, 《한국교육사학》 30(2), 2008, 14쪽.

67 少磯國昭, 〈朝鮮 總督 諭告〉, 《諭告》, 1943.

국민학교는 대륙 침략에 이용하는 병사의 준비와 관련해서 의무교육제의 준비를 실시한다.

중학교는 일본에 준해서 조처한다.

제국대학 예과는 문과의 정원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 이공과의 정원을 증원시킨다.

이과계통의 전문학교는 학생 수를 증가해서 실시한다.

문과계통의 사립 전문학교를 이과 계통의 학교로 바꾸는 동시에 잔여 문과 계통의 전문학교는 통합한다.

문과계통의 여자전문학교는 여자실무자나 여자지방보도원의 양성으로 전환한다.[68]

특히 제4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이제까지 형식상 선택과목으로나마 존속하고 있었던 조선어 교과를 초등학교에 이어 중등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해 버렸다. 이에 반해 일본어·일본도덕·일본지리 등의 교과는 '국민과國民科'라는 종합적인 교과로 통일시켜 종전보다 더욱 중시하였다.[69]

이어서 각급학교의 교육목표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었다. 우선 중등학교의 교육목적은 '황국의 도'에 입각하여 국민의 연성을 주안으로 삼았다. 다음 전문학교의 교육목적 역시 고등한 학술·기예技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되, '국가 유용의 인물'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경성제대 예과, 전문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 사범학교 등으로 구성된 학제를 개편하였다. 이어서 각 학교의 규정을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 등은 〈중등학교령〉에 따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었다. 사범학교는 새로이 수업연한 2·4년 두 가지 종류의 예과와 더불어 갑·을의 본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은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 방침〉에 따라 개편을 추진했다. 이 방책은 각급학교에 대한 비상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특히 대학 및 전문학교에 관해서는 전시하의 노동력 구성에 알맞게 문과계를 축소하고 이공계를 확대한 것이었다. 또한 1943년 5월 조선총독부령 제138

68 강명숙 외, 《교육정책(1)-교육칙어와 조선교육령》, 동북아역사재단, 2021, 566~579쪽.

69 김보림, 앞의 책, 2023, 125~151쪽.

호 〈경성제국대학 예과규정〉을 전부 개정한 데 이어 1944년 10월 조선총독부령 제597호 〈경성제국대학 강좌령 개정〉을 공포함으로써 전시동원체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이상의 개편 방침에 따라 이공계 교육기관과 사범계 교육기관이 1944년에 확충되었고, 문과계 전문학교는 개편·통합되거나 폐쇄당했다.

한편 1944년 11월 일제는 조선총독부 기구를 개편하면서 교육행정을 전담했던 학무과를 전문교육과와 국민교육과로 분리시켰다.[70] 전문교육과가 대학, 전문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그리고 교원양성기관 등을 관리하였고, 국민교육과는 사범학교, 초중등학교,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을 관리하였다. 또한 1945년 7월 총독부 명령으로 각급학교는 학도대를 결성하고, 정규교육보다 근로봉사 내지 방공호 작업·군사훈련에 골몰하였다.

이어서 〈중등학교령〉이 개정되면서 〈중학교규정〉 〈고등여학교규정〉 〈실업학교규정〉이 개정되었고, 〈학도근로령〉이 제정됨으로써 학교교육의 기능을 정지시켰다.[71] 이때의 학교교육은 위의 제시책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듯이 '학교의 연성교육체제화'와 '학도동원 체제화' 등의 두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이공계학교 학생은 각기 전공부문의 공장에서, 문과계학교 및 사범학교 학생은 식량증산과 국방시설의 건설에, 여자중등학교 학생은 방직공장 등 군수공장에서 각각 근로동원이라는 이름 아래 육체노동을 하게 했다. 그리하여 이때의 학교에서는 이른바 "근로 즉 교육이 되도록 힘쓴다."라고 하여 학생들을 인격적 가치보다는 노동력 및 군사적 능력의 배양과 그 이용이 더욱 중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학교에서마저도 강제되었다.

또한 1945년 5월 일제는 학부의 결전태세決戰態勢 확립을 위하여 〈전시교육령戰

70 朝鮮總督府訓令 제96호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 中 改正〉, 《조선총독부관보》, 1944년 11월 22일.

71 칙령 제36호 〈중등학교령〉, 《조선총독부관보》, 1943월 3월 27일; 조선총독부령 제58호 〈중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43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령 제59호 〈고등여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43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령 제60호 〈실업학교규정〉, 《조선총독부관보》, 1943년 3월 27일; 칙령 제518호 〈학도근로령〉, 《조선총독부관보》, 1944년 10월 30일.

時教育令〉을 공포하였다.[72] 여기서 "학도는 충성을 다함으로써 국운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전시의 긴급하고도 절실한 요무要務에 정신挺身하고"라고 규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결전에 대비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 의한 '학도대學徒隊'를 조직하도록 했으며, 학교교육에서 교과목 및 수업시수 그리고 졸업에 관한 특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의 학교교육은 거의 공백 상태에 놓인 채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72 칙령 제320호 〈전시교육령〉, 《조선총독부관보》, 1945년 7월 1일.

제2절 근대교육 도입과 근대학교의 등장

1. 개항 이후 신교육의 시작과 근대적 학교 설립

1) 개항기 조선 정부의 신교육 제도 모색

1876년 조선은 일본과 맺은 병자수호조약, 이른바 〈강화도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서 중세적 중화 지배 질서를 넘어서서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사회는 중국(청)·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서구 열강의 정치·군사적 압력,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변화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73] 당시 세계 자본주의 질서는 제국주의 열강이 주도하고 있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약소국을 무력으로 침략하거나 문호 개방 압력을 넣어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후발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이 조선을 압박하여 맺은 〈강화도조약〉은 중국과 조선 사이의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부인하고 조선을 일본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불평등조약이었다. 이후 조선 정부는 비슷한 내용의 외교관계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조선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와 만나게 되었다. 이전에는 별개로 존재했던 바깥세상의 일들

73 김태웅, 〈불평등조약 체제와 경제정책의 추이〉, 《국사교육의 편제와 한국근대사 탐구》, 선인, 2014, 189쪽.

이 직접적으로 일상 공간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조선이 위치하게 되면서 기존 체제의 내적 위기가 외적 위기와 결합하여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심화되었다.[74]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

국교 확대를 계기로 조선 정부와 지식층들은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체제를 개혁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880년대부터 조선 정부는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나섰다.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서양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1880년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군사기술과 산업기술 수용에 관심을 가졌다. 근대적 인쇄 기계와 기술을 도입하여 1883년에는 《한성순보》 등 신문과 간행물을 인쇄하여 개화사상 보급과 지식의 대중화를 추구하였다.[75] 그리고 국가 개혁의 기반으로서 근대적 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상해갔다.

먼저 일본의 정책과 교육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신사修信使,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파견하였다. 〈강화도조약〉 직후인 1876년 파견된 수신사 김기수는 일본의 정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보고했는데, 일본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 속에 서술하였다. 그는 일본의 교육이 그 대상이 넓고 실용에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했으나 결론적으로 '공리功利의 학學'에 지나지 않으며 중국 진나라의 법가 사상을 실천한 '상앙의 유법遺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76]

이어서 1880년 파견된 2차 수신사 김홍집은 다양한 교육 현장을 시찰하고 일본의 교육이 국민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정부가 교육 확대를 주도하여 의무교육이 제도화되기 시작했으며 교육이 산업 발달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를 받은 고종은 일본의 교육이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을 인식했으며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가르쳐 각자의 업을 가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부강과 대민 통치의 주요한 방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77] 이때 김

74 김동노, 《근대와 식민의 서곡》, 창비, 2009, 31~32쪽.

75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비, 2007, 358쪽.

76 김태웅, 《신식 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서해문집, 2017, 28쪽.

홍집은 일본에서 주일청국 공사관의 황준헌黃遵憲이 저술한 《조선책략朝鮮策略》과 경세가 정관응鄭觀應이 쓴 《이언易言》을 입수하여 국내에 들여왔다. 《조선책략》은 러시아의 남하 및 간섭을 저지하기 위하여 중국·일본·미국과 연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들 나라에 인재를 보내 특히 기술을 배울 것을 주장하여 유학생 파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78] 한편 《이언》은 유학생 파견보다는 국내의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실업과 시무를 담당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방안을 주장하여 국내 지식층에게 영향을 주었다.[79]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국내의 교육제도 개혁과 유학생 파견이라는 두 가지 길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신지식을 수용하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김홍집의 휘호(대한민국역사박물관)

1881년 파견된 조사시찰단은 일본의 교육제도를 시찰함과 동시에 최초의 관비 일본 유학생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사시찰단은 고종이 1·2차 수신사 보고 이후 일본의 실정을 더 자세히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파견되었으며, 총 12명의 조사와 27명의 수행원 및 통역관, 하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들은 종실이나 벌족閥族에 속하는 양반 명문가 출신들로 대부분 청요직을 역임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민씨파 세력으로 분류되었으며

77 구희진, 〈한국 근대개혁기의 교육론과 교육개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41~42쪽

78 이광린, 〈개화 초기 한국인의 일본 유학〉, 《한국 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김기주, 〈개항기 조선정부의 대일유학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9, 2004, 118쪽.

79 민현식, 《한글본 이언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131쪽; 구희진, 앞의 글, 44쪽.



유길준의 저서 《서유견문》

특히 어윤중, 홍영식 등은 조사시찰단 파견을 후원한 민영익과 가까웠다.[80] 또한 이들을 수행한 수행원들은 신분, 경력, 나이 등을 볼 때 비교적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었다. 수행원 중 22명은 양반 신분이고 나머지 5명은 중인 신분이었다. 이들은 대개 조사들의 친인척이거나 또는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발탁되었다.[81]

조사시찰단 가운데 일부는 시찰 일정이 끝난 후 일본 정부의 협조하에 유학을 위해 일본에 머물렀다. 기술 실무를 익히기 위해 오사카 조폐국에 왕제응·송헌빈·심의영·김용원·손붕구가, 그리고 요코스카 조선소에 김양한이 유학하였다. 또한 비교적 연령이 낮은 편이었던 어윤중의 수행원 중 유정수와 유길준이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 윤치호가 도진샤[同人社]에 입학하였다.[82] 특히 윤치호를 비롯한 수행원들이 사실상 유학을 목적으로

80 허동현, 《근대한일관계사연구》, 국학자료원, 2000, 53~55쪽.

81 예를 들어 박정양의 수행원 중 하나였던 이상재는 박정양의 모친 한산 이씨와 먼 친족관계로 박정양의 개인비서 역할을 13년 동안 수행한 이력이 있다. 어윤중의 수행원 유길준은 조사시찰단의 후원자인 민영익과 京華士族 유만주 문하에서 동학하며 인연을 맺었고 어윤중과는 개화파 학자 강위 문하에서 함께 지도를 받은 친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류정수는 유길준의 매부였으며, 윤치호는 어윤중의 제자이자 그의 부친 윤웅렬이 전년도의 제2차 수신사를 수행했던 사실이 발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전택부, 《월남 이상재의 생애와 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21~23쪽;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 한국》, 문학과지성사, 2004, 62~67쪽).

82 차배근, 〈大朝鮮人일본유학생 '親睦會會報'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 35, 1998, 4쪽. 이광린과 김기주는 위의 세 명 외에 金亮漢이 2주 늦게 일본에 도착하여 요코스카[橫須賀] 조선소에서 실무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이광린, 《한국사강좌 V: 근대편》, 일조각, 1993; 김기주, 앞의 글, 2004, 125쪽). 한편 게이오의숙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가 세운 학교이며, 도진샤는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가 세운 학교였다. 두 학교 모두 당시 일본의 유명 사학으로 이름이 높았다.

조사시찰단에 포함되었음은 출발 전인 1881년 2월 28일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초대 조선 주재 일본공사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외무경에게 보낸 보고 중, "작년 수신사를 수행했던 윤웅렬의 아들이 올해 17세인데 이 소년들은 유학하도록 하고 기타는 오로지 일시 유람"이라고 한 데서도 드러난다.[83] 이처럼 조사시찰단은 일본 시찰 외에도 유학생 파견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목적은 이듬해 이어진 수신사 파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윤치호 외 3명의 교육을 일본 외무경에게 부탁하였다.[84] 그 후 일본 관비 유학생이 계속 파견되었다.

일본 외에 청에도 영선사領選使와 유학생이 파견되었다. 청에 대한 유학생 파견은 조선 정부가 견지한 동도서기론에 입각하여 우선적으로 서양의 군사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고종은 서양 무기제조술 도입을 위해 1880년 4월부터 유학생 파견 교섭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학도學徒 20명과 기술직인 공장工匠이 선발되었다. 이들은 1882년 영선사 김윤식 일행과 함께 천진에 도착한 후 각 학당이나 창廠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학습이 시작된 지 약 5개월 후에 임오군란의 소식을 듣고 귀국하게 되면서 1년 미만의 짧은 유학 생활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한편 청 유학은 서양의 무기제조술에 더하여 서양 언어를 익히게 하려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었다. 김윤식 일행은 이홍장과의 회담에서 각국 어학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는 미국과의 조약을 앞두고 중국에서 서양 언어를 익히게 하려는 것이었다. 학도 중 일부가 어학을 배웠으나 결국 이들도 함께 귀국하게 되면서 별 성과를 얻지 못하고 말았다.[85]

한편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드문 사례도 있었다. 1883년 보빙사報聘使 파견시 동행했던 유길준은 일본 유학 당시 인연을 맺은 미국인 모스의 소개로 미국에서 유학

83 《日本外交文書》 14, 〈朝鮮政府密ニ視察員ヲ派出セシコト並ニ起債及砲艦購求ノ企アル事ニ付概略内報ノ件〉(1881. 2. 28.) (mofa. go. jp/mofaj/annai/honsho/shiryo/archives).

84 윤치호(18세)는 어학교, 박유굉(16세)은 육군사관학교, 박명화(12세)는 영어학교, 김화원(18세)은 製皮所에서 유학하였다(〈使和記略〉, 《修信使記錄》, 고종 19년 壬午 9월 22일).

85 김경미, 《한국 근대교육의 형성》, 혜안, 2009, 33~47쪽.

하였다. 1884년 매사추세츠주의 덤머 아카데미Dummer Academy에 입학했으나 갑신정변 발발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였다.[86]

1880년대 초반 개화파는 집권세력과 이해를 같이 하면서 개화정책 수행에 참여하였다. 일본에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청국에 영선사를 파견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세력화 된 개화파는 임오군란 이후 내부에서 개화의 방략을 두고 다양한 입장으로 분열되어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뉘었다. 특히 급진 개화파의 주도로 유학생 파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김옥균과 박영효에 의해 도일 관비 유학생 파견이 추진되면서 유학 대상국에서 청이 배제되고 일본이 중심이 되었다. 1883년에 가장 많은 50여 명이 파견된 것을 비롯하여 1880년대 전반기에 행적이 확실한 경우만 해도 70여 명의 관비 유학생이 유학하였다. 그 대부분은 게이오의숙에서 일본어 등 기초교육을 받고 군사 및 행정 등 실무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인해 급진 개화파가 실각하면서 도일 유학은 중단되어 유학생 다수가 소환 조치되고 일부만 남아 사비로 유학을 이어갔다.[87]

2) 정부와 민간의 신식학교 설립 노력

외국 교육제도 모색의 결과로 새로운 교육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조선 정부와 지식층 사이에 널리 자리 잡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해외유학 외에도 국내에 신식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유학儒學 중심 교육 대신에 모든 인민에 대한 실업교육의 실시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고 시무 교육기관의 설치를 통해 교육개혁을 모색한 것이다.[88] 그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동문학同文學이었다. 조선이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1882)을 비롯하여 서양 국가들과 조약을 맺게 되면서 영어를 할 줄 아는 통역관이 필요해졌다. 이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협판 겸 총세무사로 부임한 독일인 묄렌도르프Paul Georg von

86 양진아, 〈유길준의 군주입헌제 구상과 지방자치제 도입 시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39~40쪽.

87 김기주, 앞의 글, 2004, 133쪽.

88 구희진, 앞의 글, 2004, 47쪽.

Möllendorff는 북경의 동문관同文館을 참고하여 1883년 통상사무아문의 부속기관인 동문학을 설치하였다. 동문학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통역관 양성이었으나 더 나아가 외무와 상무를 고루 다룰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동문학에서는 만 15세 이상의 총명한 자녀를 선발하여 외국말을 가르치고, 나아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정치와 이재理財도 가르쳐 전문 관료로서 역량을 닦도록 교육하였다. 교사로는 중국인 오중현吳仲賢, 당소위唐紹威, 영국인 핼리팩스Thomas Edward Hallifax를 고빙하였다. 4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오전·오후반을 운영하고 시험을 치러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식비 등 동문학의 수학에 필요한 일체를 지급하였다. 동문학에서는 걸출한 인재들이 여럿 배출되었다. 후일 독립협회를 이끈 언론인이자 교육자인 남궁억이 그 대표적 인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친청 온건개혁파가 배제되면서 동문학은 폐지되고 그 자리를 육영공원에게 내주었다.[89]

조선 정부는 미국 등 서구의 교육제도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1883년 보빙사로 미국을 방문한 민영익은 미국의 내무부 교육국을 방문하여 미국 교육에 대해 탐색하였다.[90] 한국에서 근대식 학교를 세우도록 미국인 교사를 파견해달라는 민영익의 요청에 미국 정부는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푸트Lucius H. Foote 초대 미국 공사도 미국인 교사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갑신정변으로 조선의 국내 상황이 혼란해지면서 미국 정부가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마침내 1886년 헐버트Homer B. Hulbert를 비롯한 미국인 교사 3명의 파견을 계기로 육영공원의 개교가 이루어졌다.[91]

육영공원育英公院은 조선 정부가 국교 확대를 맞아 외국과의 통교를 위한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에서 설립했다는 점에서는 역관 양성을 위해 설립된 동문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동문학의 경우 외국어 능력에 더하여 정치경제 지식을 갖춘 실무관리 양성을 목표로 하면서 종래 역관 업무를 담당했던 중인층이 적극적

89 김태웅, 앞의 책, 2017, 32~34쪽.

90 《舊韓國外交文書》 10, 美案 1, 고종 20년 9월 8일, 문서번호 34.

91 손정숙, 〈한국 최초 미국외교사절 보빙사의 견문과 그 영향〉, 《한국사상사학》 29, 2007, 263~271쪽.



서울시립미술관 부근에 세워져 있는 육영공원 터 표석

으로 입학했다. 반면에 육영공원은 단순히 어학 능력 함양을 넘어서 국가 지도자가 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서구 지식을 직접 가르치려 하였다. 따라서 육영공원의 학생인 '학원學員'은 대체로 양반 고관의 자제가 많았다.[92]

1880년대 청과 일본 세력이 각축을 벌이던 시점에서 미국을 신지식 수용의 통로로 삼았다는 사실은 육영공원을 통해 어떤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는지 가늠하게 해준다. 이는 육영공원의 교육과정과 수업 내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헐버트는 육영공원을 영어 교과 중심의 초학初學과 그 졸업 후 심화 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했는데, 이는 곧 고등교육 단계로서 예과와 본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운영도 봄·가을 학기제, 일요일을 쉬는 6일제 등 미국식 학제를 적용하였다. 형식상 '미국 학교'였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내용도 근대 지식을 담고 있었다.[93] 초학 졸업 후 배워야 할 내용으로는 대산법大算法, 각국 언어, 격치만물格致萬物, 각국 역대各國歷代, 정치 등을 규정하였다.[94] 이를 볼 때 단순히 어학 교육 외에 수학과 이학

92 김경미, 《한국 근대교육의 형성》, 혜안, 2009, 88쪽.

93 서명일, 〈육영공원의 교과서와 근대 지식의 전파〉, 《한국사학보》 56, 2014, 185~200쪽.

등 자연과학, 역사·정치경제·조약법 등 실용학과 인문학을 아울러 교육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육영공원을 통해 길러내고자 했던 인재는 국제질서 감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가 운영에 참여할 신지식층이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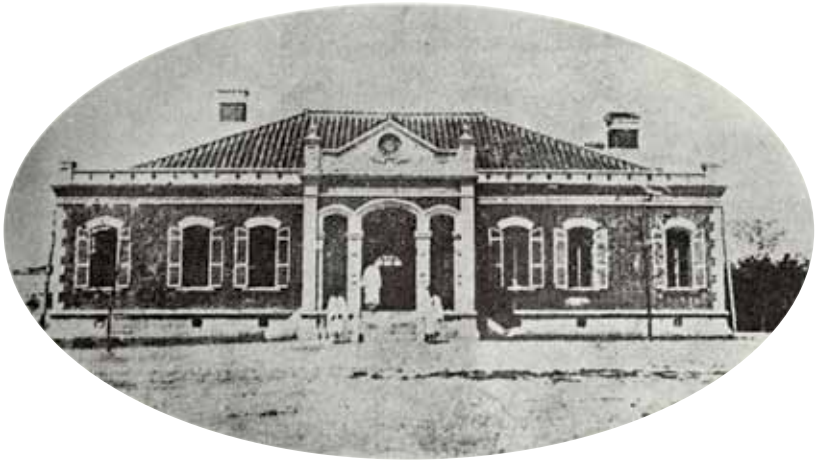
동도서기론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교육의 대상을 확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근대국가 체제로서 전제군주 국체를 정비하고 국가적 교육제도를 마련하려는 시도 가운데 나타났다. 조선 정부는 육영공원과 같이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시무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민간이 참여하여 더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식 학교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였다. 정부 관리와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설립된 원산학사元山學舍와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미션계 학교들이 대표적이다.

1883년 설립된 원산학사는 민관이 협력하여 설립한 학교라는 점에서 독특한 위상을 가진다. 조선 정부는 지방 민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1883년 1월 조사시찰단 출신의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함경도 원산에 파견하여 신식학교 설립을 지원하였다. 당시 원산항 상인들은 원산항 개항으로 외국어 등의 서양 지식을 습득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신식학교 설립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에 어윤중은 지역 주민의 협력 속에 덕원부사 겸 원산감리 정현석과 함께 원산학사를 설립하였다. 원산학사에는 문예반과 무예반이 설치되어 각각 경전과 병서를 가르친 후, 시무에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였다.[95] 즉 먼저 유교 경전을 익힌 뒤 시무학으로서 기존의 교육에 포함되지 않았던 산수·격치, 서양의 기계와 농업·광업 기술 등을 가르치도록 구성한 것이다.

다만 학사에 기계류와 농업 실습지 등의 시설이 구비되었다는 기록은 없는 것을 볼 때 직접 서양기술을 실습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재로는《영환지략》《연방지》《기기도설》《만국공법》《농정신편》 등 중국과 일본에서 들여온 신지식을 다룬 서적들을 비치하였다. 시무학 학습은 이러한 서적을 강독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원산학사의 교육은 온건 개화파 관료들이 유생과 무사들에게

94 〈育英公院謄錄〉, 고종 23년(1886), 奎 3374.

95 김태웅, 앞의 책, 2017, 36쪽.



초기의 배재학당

외국 및 국제정세에 관련된 지식과 농업·군사기술 등의 신지식을 가르쳐 국내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무비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인재로 길러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러한 신교육에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다는 점은 시무학으로서 신지식을 배워야 할 필요성에 민인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96]

한편 이 무렵부터 정부의 허가를 받은 선교사들이 미션계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미국과 수교한 조선 정부는 미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를 수용하면서 의료와 교육사업을 허가하였다. 교육사업을 위해 1885년 4월 내한한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는 8월부터 사숙私塾의 형태로 영어교습을 시작하였다. 그는 영어학교를 세우려는 뜻을 고종에게 내비치고 찬성을 얻었다. 아펜젤러의 영어학교는 1886년 외국어 교습소였던 동문학이 문을 닫으면서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정부가 설립한 육영공원은 주로 양반 고관의 자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밖의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려면 아펜젤러의 학교에 다녀야 하였다. 아펜젤러의 영어학교는 외아문과의 교섭 끝에 '배재학당'이라는 이

96 김경미, 앞의 책, 2009, 77~78쪽.

름을 하사받았다. 배재학당은 동문학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계승하여 정부에서 필요한 통역관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제로 배재학당의 학생들은 졸업 후 관리로 임명되기도 하였다.[97] 그 밖에도 선교사들은 경신학교(1886), 이화학당(1886), 정신여학교(1895), 숭실학교(1897), 배화학당(1899) 등 미션계 학교를 계속 설립하여 신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2. 갑오개혁과 근대적 신학제 실시

1) 갑오개혁기 학무아문의 신학제 구상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민씨 정권은 진압을 위해 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화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군의 파병을 빌미 삼은 일본은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였다.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은 흥선대원군을 복권하여 신정부를 세우도록 하였다.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고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여 이른바 '갑오개혁'이라고 불리는 내정개혁이 단행되었다. 갑오개혁은 비록 일본의 영향력 아래 시작되었으나 초기에는 일본이 동학군 진압과 청일전쟁으로 인해 간섭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조선 관료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 교육개혁의 특징은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국가가 교육을 관장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갑오개혁 전 정부는 국가교육제도를 강학 중심으로 체계화하려는 유교 지식층의 주장에 따라 중등교육 이상을 관장하고 지방이 자치적으로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체제를 구상하였다. 하지만 갑오개혁기 들어 초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체제 구상이 변화하였다.[98] 과거제를 폐지하고 신지식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특히 국문 사용을 규정하고 인민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과거제의 폐지는

97 류방란, 〈개화기 배재학당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사학연구》 8, 1998, 171~174쪽.

98 구희진, 앞의 글, 2004, 83쪽.

관리 등용 방법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요구도 바꾼다는 의미였다. 이때 중요한 관리의 자질은 국문이나 시무학과 같이 신지식을 갖추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학교교육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다.[99] 이에 따라 정부는 신학제를 구상하고 국가가 주도하여 초등교육부터 근대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갑오개혁 초창기에 군국기무처가 교육을 총괄하고자 신설한 기구는 학무아문學務衙門이었다. 1894년 7월 신설된 학무아문에는 총무국, 성균관 및 상교庠校 서원 사무국, 전문학무국, 보통학무국, 편집국, 회계국이 구성되었다. 그 조직은 외견상 1887년 일본 문부성 조직과 유사하나, 성균관 및 상교 서원 사무국을 별도로 두어 전통교육을 중요하게 취급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의 보통학무국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관장한 것과 달리, 조선 학무아문에서는 전문학무국이 중등교육을, 보통학무국이 초등교육을 관장하도록 한 점도 달랐다. 고등교육은 외국 유학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학무아문에서는 보통학무국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에 주력하도록 하였다.[100] 즉 갑오 정부는 교육의 우선순위를 초등교육에 두고 소학교를 국가가 직접 설립·운영하고자 하였다.

이때 '입덕지문入德之門'으로 규정된 소학교는 그 설립 목적이, 인재를 장차 시국의 변화에 대처해 실무를 알아 시세를 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안으로는 수양하고 밖으로는 교류할 수 있는 영재로 길러 관리로 등용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볼 때 당시 소학교는 국민을 양성하는 보통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다.

이 점은 학무아문이 통리기무아문에 발송한 학생 모집을 위한 공문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교육기회를 개방하여 신분 제한 없이 7세 이상의 남자에게 소학교 입학을 허용하였다. "위로 공경대부의 자식부터 아래로 평범한 민"까지 소학 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101] 그런데 실제로 소학교 학생 선발은 개별 자

99 김경미, 앞의 책, 2009, 107~108쪽.

100 구희진, 앞의 글, 2004, 84~86쪽.

101 〈고시문〉, 《박정양전집》 권4, 갑오 9월 초3일, 학무대신시.

녀가 자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아문당 6명의 추천을 받았으며, 부모·추천인·보증인의 이름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소학교 설립 목적을 '널리 인재를 구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선발에서 각 아문의 추천을 받은 것은 사실상 명문가의 자녀를 위한 신교육기관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개혁 관료들은 교육에서 신분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특정 신분을 대상으로 하여 뜻을 같이 하는 개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102]

1894년 9월 18일 육영공원 자리에 소학교 그리고 소학교 학생을 가르칠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학교가 개교하였다. 소학교는 3년의 수학 기간 동안 운영할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소학교에서는 오륜행실, 진문眞文(한문), 수신, 문자, 우리나라와 만국의 지지地誌·역사 등을 가르쳐 유교적 인륜 교육을 중시하면서도 시세에 맞추어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사범학교는 입학 자격을 15세 이상 20세 이하 남자 중에서 한문을 배운 자로 한정하여 유학적 소양을 기본 전제로 하였다. 교육과정은 국문과 한문의 철자법과 문장을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며, 시무時務 학문으로 우리나라와 만국의 역사·지리를 가르쳤다. 그 밖에 경제, 법률, 박물, 산술 등을 가르쳤다는 점을 볼 때 교원 양성뿐 아니라 실무 관리 양성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여겨진다.[103]

이처럼 갑오개혁 초기 소학교와 사범학교는 유학적 소양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근대적 지식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 학교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권에 변화가 생기면서 소학교와 사범학교 체제도 재정비를 맞게 되었다.

2) 국민교육 이념과 근대적 학교의 정비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 정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894년 12월(음력 11월) 제2차 김홍집 내각이 조직되어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였다. 이 시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은 1895년

102 김태웅, 앞의 책, 2017, 50~52쪽.

103 김태웅, 앞의 책, 2017, 55쪽.

1월(음력 1894년 12월)에 공포된 〈홍범 14조〉와 1895년 2월(음력 1월)에 공포된 〈교육에 관한 조칙詔勅〉이다. 〈홍범 14조〉는 개혁의 취지와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중 교육에 관해서는 제11조에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를 익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외국 유학을 통해 신지식을 습득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에 관한 조칙〉은 국가 운영의 주체인 국왕의 입장에서 신민臣民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고종은 스스로를 '군사君師'라고 칭하여 신민 전체, 즉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포괄하는 전 인민에 대한 교육의 주체임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의 지향점을 "허명을 멀리하고 실용을 숭상"한다고 하여 실용교육을 강조하였다.[104] '실용'은 신지식을 통해 시세를 읽고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였다. 실용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교육을 실시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교육의 내용은 덕·체·지를 기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덕양·체양·지양을 통해 '충군애국'을 기를 수 있으며 이는 결국은 왕실의 안전과 국가의 부강으로 연결된다는 취지였다. 덕·체·지', 즉 삼육三育의 이념은 전통교육에서 인륜에 기초한 교육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통합적 개념으로 내재하기는 했으나,[105] 이 용어의 본격적 채용은 스펜서의 이론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 소개된 정황과 관련이 있다.[106] 그런데 〈교육에 관한 조칙〉에서는 서구의 삼육론이 '지·덕·체'의 순서로 설명하는 것과 달리 '덕·체·지' 순으로 제시되고, 그 내용에서도 유교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104 〈교육에 관한 조칙〉, 《관보》 1895년 2월 2일(음력).

105 구희진, 앞의 글, 2004, 112쪽.

106 본디 페스탈로치에 의해 제기된 삼육 사상은 카펜터가 《교육의 원리(Pricipal of education: Intellectual, moral and Physical)》(1820)라는 저서에서 인간교육의 영역으로 지육·덕육·체육을 내세우면서 영미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으로 삼육 사상을 저술한 스펜서의 《교육론》(1860)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김자중·한용진, 〈19세기 영국에서의 '삼육' 개념의 형성과 전개〉, 《교육철학연구》 36(1), 2014, 5~15쪽). 일본에는 세키 신바치[尺振八]가 《사씨교육론(斯氏教育論)》이라는 제목으로 1880년에 번역하여 일본 교육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에 유학했던 유길준, 박영효 등 개화파 지식층을 중심으로 삼육 개념을 조선에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전민호, 〈근대 삼육론의 전개와 한국적 수용〉, 《한국학연구》 48, 2014, 205~208쪽).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덕양의 내용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오륜의 덕목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107] 갑오개혁기 정부는 신분제 폐지를 전제로 한 교육개혁을 통해서 모든 신민을 국민으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근대적 국민으로서 각 인민이 자발적으로 충군애국의 정신을 내면화하는 데에 있었다. 이는 국가의 목표로 부국강병을 전제하고 그 기반으로서 국민교육을 강조한 것이었다.

실용적 국민교육을 교육방침으로 정하고 난 뒤 조선 정부는 본격적으로 교육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고 학교를 설립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1895년 4월(음력 3월) 학무아문을 학부로 변경하는 관제개혁을 시행하고 기존의 보통학무국과 전문학무국을 학무국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면서 대학교 규정을 없애고 그 대신 해외유학생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당분간은 국내에 대학을 세우지 않고 고등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해외유학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고등교육기관을 일본 유학으로 대체하기로 한 데에는 이노우에 공사를 거친 일본 측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었다.[108] 실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법관양성소와 외국어학교 등을 세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소학교와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여 국민 양성을 위한 기본적 교육을 추진하였다.

소학 교육을 국민교육 차원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할 교원 양성이 급선무였다. 이에 따라 1895년 5월(음력 4월) 칙령 제79호로 〈한성사범학교관제〉를 공포하고 한성사범학교를 세워 교원 양성 체제를 법제적으로 갖추었다. 〈한성사범학교관제〉에서는 한성사범학교에 본과와 속성과를 두는 한편 부속 소학교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109] 부속 소학교인 교동소학교는 한성사범학교가 폐지된 후에도 명맥을 이어갔다. 같은 해 학부령 제1호로 공포된 〈한성사범학교규칙〉에서는 한성사범학교의 교육 목적, 학과 과정, 입학 자격, 시험, 정원 등을 규정하였다.[110]

107 〈교육에 관한 조칙〉, 《관보》 1895년 2월 2일(음력).

108 구희진, 앞의 글, 2004, 92쪽.

109 〈한성사범학교관제〉, 《관보》 제17호, 1895년 4월 19일(음력).

110 〈한성사범학교규칙〉 제1조 가운데 "順良恭儉하며 信愛威重한 기질"을 갖추도록 주의한다는 내용은 일본의 사범교육 관련 법령을 상당히 참조한 표현으로서, 문부성이 일본 교원에게 요구한 덕목과 연결된



1921년 신축된 교동보통학교 모습

한성사범학교 부속 소학교는 일제강점기 들어 한성사범학교가 폐지된 후 교동보통학교로 이어졌다. 현재 종로구 경운동 교동초등학교 자리에 한성사범학교와 교동보통학교가 위치하고 있었다.

출처: 서울교동국민학교 백년사 편찬위원회, 《교동백년사》, 1994

그런데 한성사범학교 설립은 학교를 신설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사범학교에 관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재정비한 것이다. 소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범학교는 이미 1894년 9월 18일에 개교하여 운영되고 있었다.[111] 사범학교의 교장이었던 학부 학무국장 겸 참서관 이응익李應翼이 한성사범학교장에 다시 임명된 것도 사범학교와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한성사범학교는 1895년 4월 19일(음력)부터 학원學員 모집 광고를 《관보》에 내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광고에 따르면 본과(2년) 학생 100명과 속성과(6개월) 학생 60명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본과 지원 자격은 20~25세인 자이며 시험과목은 국문, 한문이었다. 속성과 지원 자격은 22~35세

다, '순량'은 문부성과 교장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이고, '신애'는 교원 간의 우정을 중요하게 여겨 협업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검'은 일본의 〈교육칙어〉(1890)에 나오는 용어였다. 이 무렵 이완용이 학부대신에 임명되고 일본인 학부 보좌관들이 고용되었다. 학부는 비교적 일본의 간섭을 적게 받기는 했지만, 근대적 학교 법제를 정비하는 데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김경미, 앞의 책, 2009, 39~144쪽).

111 김광규, 〈대한제국기 초등교원의 양성과 임용〉, 《역사교육》 119, 2011, 94쪽.

인 자이며 시험과목은 국문, 한문, 조선지리, 조선역사였다.[112] 1895년 8월에는 본과 학생 40명, 속성과 학생 60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는 기존의 관립사범학교 학생도 있었다.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1회 졸업생은 1895년 10월에 배출되었다.[113]

정부는 사범학교를 재정비하면서 국민교육의 근간이 될 소학교 제도도 재정비하였다. 1895년 칙령 제145호로 〈소학교령〉을 공포하여 소학교의 목적, 종류, 경비, 학령, 교원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표 1] 〈소학교령〉의 조문 일부

구성	내용
제1장 소학교의 본지와 종류 및 경비 (제1조~제5조)	• 제1조 소학교는 아동 신체의 발달에 비추어 국민교육의 기초와 생활상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능을 교수함을 본지로 함 • 제2조 소학교를 나누어 관립소학교, 공립소학교, 사립소학교의 세 종류로 함. 관립소학교는 정부 설립, 공립소학교는 부(府)·군(郡)의 설립, 사립소학교는 사인(私人)의 설립을 말함
제2장 소학교의 편제 및 남녀 아동의 취학 (제6조~제16조)	• 제6조 소학교를 나누어 심상, 고등 2과로 함 • 제7조 수업연한은 심상과 3개년, 고등과 3개년으로 함 • 제8조 심상과 교과목은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로 함. 시의에 따라 체조를 빼고 또 본국지리, 본국역사, 도화, 외국어의 한 과 혹은 여러 과를 추가하고, 여아를 위하여 재봉을 추가할 수 있음 • 제9조 고등과의 교과목은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본국지리, 본국역사, 외국지리, 외국역사, 이과, 도화, 체조로 하고, 여아를 위하여 재봉을 추가함. 시의에 따라 외국어 한 과를 추가하며 또 외국지리, 외국역사, 도화 한 과 혹은 여러 과를 뺄 수 있음 • 제12조 소학교 단급(單級) 다급(多級)의 제도와 남녀를 구별하거나 혼성하여 교수할 경우와 한 교관이 교수할 아동 수효에 관해서는 학부대신이 정함 • 제16조 아동의 만 7세부터 만 15세까지 8개년으로 학령을 정함
제3장 소학교의 설치 및 감독 (제17조~제20조)	• 제17조 각 부·군에는 관내에 학령아동이 취학할 공립소학교를 설치함 • 제20조 관립소학교는 학부의 직할, 공립소학교는 각 부의 관할에 속하며, 사립소학교는 각 관찰사의 감독을 받음
제4장 소학교장 및 교원 (제21조~제26조)	• 제21조 소학교 교원은 소학교 교원의 면허장[許狀]이 있는 자로 함 • 제23조 관립소학교 교원은 학부대신, 공립소학교원은 각 관찰사가 임용함 • 제25조 관립소학교 장은 학부대신, 공립소학교 장은 각 관찰사가 학교의 교원 중에 겸임케 하되, 단 관찰사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은 후에 행함
부칙 (제27조~제29조)	• 제27조 본령은 1895년 8월 1일부터 각 지방의 상황에 따라 점차로 시행함 • 제28조 공립소학교 경비는 당분간 국고에서 지급함

출처: 〈小學校令〉, 《관보》 제119호, 1895년 7월 22일(음력).

112 〈師範學員勸赴廣告〉, 《관보》 제17호, 1895년 4월 19일.

113 김태웅, 앞의 책, 2017, 62쪽.

〈소학교령〉에서는 소학교의 본지를 "아동 신체의 발달에 비추어 국민교육의 기초와 그 생활상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능을 가르침"이라고 하고, 만 7세부터 만 15세까지 8년을 학령으로 정하여 남녀 아동을 취학하게 하는 등 국민교육의 취지를 표방하였다. 〈소학교령〉은 일본인 고문관의 감독을 거쳐 만들어졌으므로 〈소학교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조선의 소학교 고등과는 외국역사를 가르치도록 한 데 비해서 일본에는 외국역사가 없었다. 또한 일본 소학교 과목에는 창가와 수공이 있었지만 조선에는 없었다. 조선의 '실용' 교육이 현실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일본은 생활에 필요한 실용 기능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114]

학부는 〈소학교령〉 공포 후 1895년 8월에 서울 안에 장동壯洞 소학교, 정동貞洞 소학교, 계동桂洞 소학교, 묘동廟洞 소학교 등 관립소학교 4곳을 설립하였다.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이 학교들은 개인 가옥을 개조하거나 관청 또는 전통교육기관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을미사변 후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교육 개편 방향을 조정하게 되었다. 소학교 교육의 방침에 대하여 학부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 교육은 개화의 근본이라 애국의 마음과 부강의 기술이 모두 학문으로부터 나오니 무릇 나라의 문명은 학교의 성쇠와 관련한지라 지금 23부에 학교를 아직 다 설치하지 못하였거니와 우선 경성 내에 소학교를 장동과 정동과 묘동과 계동 4곳에 설립하여 아동을 교육하는데 정동 외 3곳에 있는 학교 건물이 협소하기로 장동은 매동梅洞 전 관상감觀象監으로, 묘동은 혜동惠洞 혜민서로, 계동은 재동齋洞으로 이설하고 학도를 8세 이상으로 15세까지 증집增集하여 그 과정은 오륜행실로부터 소학과 본국역사와 지지地志와 국문과 산술과 기타 외국역사와 지지 등 시의에 적당한 서책을 일체 교수하여 허문을 멀리하고 실용을 숭상하여 교육을 무진務盡하게 하니 무릇 외국학교에 규정을 생각컨대 아동이 학교에 입학치 아니하는 자는 그 부형을 벌하는 예도 있는지라 본국에는 이러한 규정을 아직 두지 못

114 김태웅, 앞의 책, 2017, 66쪽.

하였으나 아동의 부형되는 자는 그 자제를 데리고 본부本部에 와서 입학 허가장을 받은 후 학교로 가서 학업을 힘써 닦도록 하는 데 혹 게을리하여 끊어지는 폐단이 없게 하기를 바란다.[115]

위의 고시는 교육개혁에 관하여 크게 세 가지 내용과 방침을 보여준다. 첫째는 소학교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관립 소학교의 위치를 이동한다는 것이다. 장동 소학교는 매동의 전 관상감 자리로, 묘동 소학교는 혜민서 자리로, 계동 소학교는 재동으로 이동하면서 명칭도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사부학당의 하나인 동학의 자리에 양사동 관립소학교가 설립되었다. 둘째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에 관한 조칙〉에 근간을 두면서도 문명개화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허명을 멀리하고 실용을 숭상'하는 실용 교육은 〈교육에 관한 조칙〉에서도 내세웠던 바이다. 이러한 취지를 이어가면서 '애국의 마음'과 '부강의 기술'을 가르쳐 '개화'와 '문명'을 이루기 위해 오륜행실, 소학, 본국역사·지지, 국문, 산술, 기타 외국역사·지지 등을 가르친다고 밝혔다. 소학교 교육은 인륜도덕을 기초로 하면서 국문, 본국역사, 본국지지를 통해 주체성을 기르고, 산술과 외국역사, 외국지지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 교육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소학교령〉과는 달리 일본어는 가르치지 않았다.[116] 셋째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의무교육을 아직 시행하지는 않으나 학부모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 교육시킬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 여건상 아직 시행할 수는 없지만 의무교육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도 학부는 한성에 관공립학교를 지속적으로 증설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897년 현재 한성의 관립소학교 8개교, 공립소학교 1개교에 학생은 685명이 재학하기에 이르렀다.

115 〈학부고시 제4호〉, 《관보》 제175호, 1895년 9월 30일(음력).

116 김태웅, 앞의 책, 2017, 67쪽.

[표 2] 1897년 한성의 관공립소학교 학생

학교명	학생수 (명)
한성사범학교 부속 소학교	99
수하동관립소학교	93
공동관립소학교	99
재동관립소학교	90
매동관립소학교	87
양사동관립소학교	40
양현동관립소학교	46
안동관립소학교	57
한성부공립소학교	74
총계	685

출처: 《협성회회보》 2, 1898년 1월 8일(김태웅, 앞의 책, 2017, 86쪽의 표를 전재함).

소학교 교육의 확산을 위해 〈소학교령〉 제17조에서는 각 부·군에 공립소학교를 설치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96년 1월부터 각 지방에 공립소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갑오개혁 시기에 지방제도가 8도에서 23부제로 바뀌었다가 1896년 8월에 다시 13도로 개정되었는데, 같은 해 9월 21일 공포된 학부령 제5호로 지방 공립소학교의 위치를 정했다. 지방 공립소학교는 한성부, 경기(수원), 충청북도(충주), 충청남도(공주), 전라북도(전주), 전라남도(광주), 경상북도(대구), 경상남도(진주), 황해도(해주), 평안남도(평양), 평양북도(정주), 강원도(춘천), 함경남도(함흥), 함경북도 관찰부(경성鏡城), 개성, 강화부, 인천, 부산, 원산, 경흥항, 제주목, 양주, 파주, 청주, 홍주, 임천, 남원, 순천, 영광, 경주, 안동, 안악, 의주, 강계, 성천, 원주, 강릉, 북청군 등 38곳에 설립하도록 하고 교사를 배치하였다.[117]

3) 외국어학교 설립과 관비 유학생 파견

정부는 사범학교 및 소학교를 설치하여 국민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117 김경미, 앞의 책, 2009, 168쪽.



영어학교 수업시간
출처: 카를로 로제티 지음, 서울학연구소 옮김, 《꼬레아 꼬레아니》, 숲과나무, 1996.

것과 동시에 전문교육 기관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중 어학교는 세계 각국과 교류하면서 외교와 통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어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중시하였다. 갑오개혁 직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외국어는 일본어였으나 영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시되었다. 육영공원 설립 후 영어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1894년 초에는 육영공원의 명칭을 '영어학교'로 변경하였다. 1895년 칙령 제88호로 〈외국어학교관제〉가 반포되어 외국어학교를 하나로 통합했는데, 이 무렵 외국어학교는 영어학교와 일어학교 두 개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별로 재정을 따로 운용했고 수업도 독자적으로 실시하였다. 〈외국어학교관제〉 제1조에서는 외국어학교를 "생도를 널리 모집하여 여러 외국의 어학을 교수하는 곳"이라고 규정하였다. 제2조에서는 외국어학교에서 가르칠 외국어의 종류를 시의에 따라 학부대신이 정한다고 하였다.[118] 이에 따라 기존의 영어학교와 일어학교에 더

118 〈外國語學校官制〉, 《관보》 제36호, 1895. 5. 12.

하여 법어학교法語學校(프랑스어), 아어학교俄語學校(러시아어), 한어학교漢語學校(중국어), 덕어학교德語學校(독일어)를 설립하였다. 외국어학교별 학생 수는 각국 세력의 영향력에 따라 달랐으나, 1911년에 폐지될 때까지 영어학교의 학생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어학교가 많았다. 외국어학교에서는 외국어 교사를 초빙하여 어학 중심으로 실용적인 전문교육을 진행하였다.[119]

한편 고등교육은 관비 유학생을 파견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당장 국내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할 여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유학을 통해 우선 인재를 양성하고 점차 고등교육을 정비할 계획이었다. 〈홍범 14조〉 제11조에 "나라의 총명한 자제를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전습한다."라고 하여, 유학생 파견이 교육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비 유학생 파견은 지식층의 재편을 위한 엘리트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갑오개혁기 정권을 잡은 개화파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근대 부르주아 법이념을 수용하여 사회체제를 개혁하려 하였다. 이들은 개혁을 지속할 인재를 양성하고 민에 대한 국민교육의 실시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속에서 먼저 일본으로의 유학생 파견이 재개되었다.[120]

일본 유학 재개가 결정되고 1895년 4월 '학부아문 유학생學部衙門留學生'이라는 명칭으로 정부 파견 유학생 113명이 게이오의숙으로 파견되었고,[121] 6월에도 26명이 추가 파견되었다. 이 시기의 유학생 파견은 정부 주도로 국비 유학생을 대규모로 파견한 시도였다. 유학생들은 스스로 친목회를 결성하고 회보를 발간하며 세력을 형성하였다.[122] 1895년 관비 유학생 선발 과 유학 과정에 관하여 유학생 중 한 명이

119 김태웅, 앞의 책, 2017, 63~145쪽.

120 유동훈, 〈韓末 渡日 留學生의 文明開化論과 法思想 硏究〉, 《學林》 22, 2001.

121 〈俞致衡日記〉에서는 123명이 선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의 〈親睦會會報〉에는 113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들이 정확하다면, 원래 선발된 인원 중 몇 명은 어떤 까닭에서인지 실제로 유학을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22 마스타니 유이치, 〈갑오개혁기 도일유학생 파견 정책의 전개와 중단 과정〉, 《한국사학보》 56, 2014, 216쪽.

었던 유치형俞致衡은 상세한 일기 기록을 남겼다.[123]

그에 따르면 1894년 겨울부터 일본 유학생 선발에 관한 소문이 돌았으며 이듬해 음력 3월 16일에 유학생 선발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유길준의 집을 거쳐 내무부로 향했다고 한다. 선발 시험으로는 일본 의사의 신체검사를 포함하여 글짓기와 책 읽기 등을 이틀간 실시하였으며 3월 18일 200여 명 중에 "기품의 청탁淸濁과 기골의 준수"를 가려 123명이 발탁되었다. 유학생 선발은 대개 명문 양반가의 자제 또는 친척을 위주로 하였으며 시험을 거쳐 적극적 유학 의사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였다. 실제로 게이오의숙 관비유학생의 출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성 및 경기도 출신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대개 개화파의 친인척이었다.[124]

이들은 인천에서 영국 상선을 타고 고베에 도착한 후 고베에서 기차로 도쿄에 도착하였다. 유학생들의 도착 광경을 보도한 당시 일본 신문 기사에 따르면, 신바시역에 게이오의숙 학생 등 200여 명이 환영하러 나와서 조선국 국기와 '대조선국제생동창학회'라는 깃발을 들고 게이오의숙까지 행진했다고 한다.[125] 게이오의숙은 조선 정부와 유학생 위탁 계약을 맺고 유학생을 받았는데, 1년 반 동안 일본어 등의 보통과 교육을 마친 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게이오의숙 고등과 또는 기타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거나 또는 관청·기업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그런데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개화파 정권이 무너지자 유학생들은 귀국 지시를 받았다. 일부는 미국으로 피신하고, 또 일부는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동맹휴업에 돌입하는 등 유학생들의 반발이 있었다. 신정부는 재정상의 문제로 유학생 파

123 유치형은 제헌헌법을 기초한 것으로 유명한 법학자이자 문학가 유진오의 부친이다. 그는 1895년 4월 관비유학생에 선발되어 일본 게이오의숙에서 보통과 신식교육을 이듬해 7월까지 받은 후, 주오대학[中央大學]에 입학하여 법률학을 공부하고 1899년 귀국하였다. 귀국 후 사립 철도학교 교사, 궁내부 회계과장, 제실제도 정리국 비서 등을 역임하고 대동전문학교 및 보성전문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1913년부터는 관료 생활을 청산하고 한성은행 서무과장으로 전업하였다. 유치형이 남긴 이 일기는 한문으로 작성된 것을 훗날 그의 아들 유진오가 번역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공개한 것이다. 법학연구소 간행부, 〈俞致衡日記〉, 《서울대학교 法學》 24(4), 1983 참조.

124 박찬승, 〈1890년대 후반 관비유학생의 도일유학〉, 《한일공동연구총서》 2, 2000, 89~90쪽.

125 《時事新報》 1895년 5월 2일(西沢直子·王賢鍾, 〈明治期慶應義塾への朝鮮留学生(一)〉, 《近代日本研究》 31, 2014, 270쪽에서 재인용).

견을 중지하여 유학비 송금에 차질을 빚었다. 게이오의숙과의 유학생 위탁 교육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이전에 파견했던 관비유학생 중에서 성적과 품행이 방정한 50명 정도만 재선정해서 학업을 잇도록 하겠다고 알려온 것이다. 이에 일부 유학생들이 귀국하고 나머지 약 64명만이 남게 되었다.[126] 이후 1899년 새로운 관비 유학생이 파견되기도 했으나 학비 송금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면서 정부가 유학생 파견에 더 이상 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해져갔다. 그러던 중 1903년 2월 정부는 학비와 관련해서 일본 제일은행으로부터 빌린 차관을 모두 청산하고 유학생을 모두 송환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업을 마치지 않은 이들은 사비나 고학으로 학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127] 유학생 파견은 유길준, 박영효 등이 정계에서 활약했던 시기인 1895년에서 1896년 초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점차 침체되어 갔다.

갑오개혁기 이후 지식층 재편 과정에서 관비 일본 유학생은 새로운 지식층으로서 부상하게 되었다. 일본 유학생은 파견 당시부터 귀국 후 관료로 채용할 것을 전제로 했으므로 엘리트로서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유학생을 관료로 채용하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었다. 오히려 유학생들은 유길준, 박영효와의 연결을 의심받으면서 경계의 대상이 되어 관직에 나아가기 어려워졌다.[128] 이러한 상황에서 귀국한 관비 유학생들은 독립협회 등 정치운동과 연결되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였다.

126 박찬승, 앞의 글, 2000, 104쪽; 차배근, 《開化期 日本留學生들의 言論出版活動 硏究(I)》,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201쪽; 마스타니 유이치, 앞의 글, 2014, 242쪽.

127 박찬승, 앞의 글, 2000, 108쪽.

128 1894년과 1895년 5~6월, 11월에 게이오의숙에 입학한 관비유학생 159명만 살펴볼 때 귀국 후 관직에 나간 자는 총 60명으로 37.7%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도 각종 학교의 교관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도일 유학생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 것은 1904년 이후였다. 1904년 이후 파견된 황실 유학생들은 관료로 진출한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때 1890년대의 관비유학생들도 통감부 하에서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관비유학생 출신으로 관료가 된 이들은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의 관직에도 대체로 진출하고 있다(박찬승, 앞의 글, 2000, 109~125쪽).

3. 광무개혁기 교육개혁과 신식학교의 신설

1) 광무 정권의 교육개혁 방향

청일전쟁 후 요동반도 반환을 둘러싸고 삼국간섭이 일어나자 조선 왕실은 러시아 측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주도한 세력은 특히 민씨 세력이었으며, 친러시아 세력이 정권의 전면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본은 조선에서 형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1895년 10월에 을미사변을 일으켜 왕비를 시해하고 고종을 감금하다시피하였다. 제3차 김홍집 내각이 집권하여 태양력 사용, 단발령 등 을미개혁을 실시했으나, 을미사변으로 민심이 동요된 가운데 단발령 등의 급진적 개혁에 반발하는 양반 유생층을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났다. 의병 진압을 위해 친위대가 지방으로 빠지고 궁궐 경비가 느슨해진 사이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일어났다. 아관파천으로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고 친러시아·친미국 성향의 정동파를 중심으로 새 내각이 들어섰다. 국정의 혼란을 틈타 외세의 이권 침탈이 극심해졌다.[129]

아관파천 후 고종은 직접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서 구본신참舊本新參을 근간으로 한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고종은 갑오개혁에 대해서 '국가가 문명 진보하는 이름만 있고 그 실이 없다.'라고 진단하고, 앞으로는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할 방도를 강구하여 백성과 함께 문명한 경지에 오르겠다.'라고 하여 지속적인 개혁 방침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개편도 이러한 방침에서 추진되었다. 고종은 아관파천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의병항쟁을 무마하고 유림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자주적 교육개혁을 위하여 유학 교육을 중시하는 동도서기적 견해를 가지고 있던 신기선을 학부대신에 임명하고 전반적인 교육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교육 개편을 위해 성균관 경학과 제도를 개정하고 지방의 유학교육기관 정비를 시작하고, 신식학교인 사범학교와 관립소학교에

129 강만길, 앞의 책, 창비, 2007, 247쪽.

서도 유교문화 전통에 근간을 두어 교육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후 재정 문제와 함께 신기선이 실각하게 되면서 전통적 유교교육은 난항에 처하였다.[130]

신교육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교육개혁은 고종이 1897년 2월 경운궁으로 환궁한 후 자주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이루어졌다. 같은 해 10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벗어나 만국공법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 독립국으로 진출하려는 의지를 담아 '대한제국'이라는 국명을 정하고 연호를 '광무光武'로 선포하였다.[131] 이 시기 교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되었는데 이를 광무개혁이라고 한다. 광무개혁기 대한제국 정부는 구본신참에 입각한 흥학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통 교육의 개편과 신교육 확장을 모색하였다.

2) 한성사범학교 교육 개편과 소학교 증설

정부는 소학교 중심의 국민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사범학교 교육 개편을 추진하였다. 한성사범학교는 개교한 이듬해부터 학생 모집 시기와 교육 기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본과와 속성과를 별도로 뽑지 않는 등 학사 운영에 시행착오를 보였다. 하지만 교과 내용 운영에서는 내실을 다지고자 노력하였다. 정부는 1897년부터 사범교육을 개편하여, 일본의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의 현실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하였다. 이를 위하여 1897년 6월 헐버트를 한성사범학교에서 교편을 잡도록 초빙하였다. 헐버트는 이미 육영공원에서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사민필지》라는 세계지리 및 역사 교과서를 편찬한 경력도 있었다. 학부는 한성사범학교 교육내용에 산수와 지리 등 새로운 과목을 추가하면서 헐버트에게 교과서의 편찬과 교수를 맡겼다. 한성사범학교 외국인 교관으로 임명된 헐버트는 《사민필지》를 교과서로 채택하여 교수하였다. 그는 사범학교 외에 영어학교 등에서도 근무하였다.

또한 정부는 사범학교의 중심 역할을 할 교관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데 힘을 쏟

130 구희진, 앞의 글, 2004, 145~150쪽.

131 서영희, 《근대 한국의 탄생 대한제국》, 사회평론 아카데미, 2025, 61쪽.

았다. 한성사범학교 교관 중 잘 알려진 인물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박은식이 있다. 그는《학규신론學規新論》을 집필하여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는데, 흥학興學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학교예산을 편성하며 개명한 나라의 것을 배우게 하되 비교·참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주장한 흥학의 구체적 방법은 유교를 교화의 수단으로 강화하되 서양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사범을 양성하며 의무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사범학교를 군학의 근기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소학교-중학교-대학교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학제를 구상하였다.

이처럼 한성사범학교에서는 박은식으로 대표되는 전통 유학에 바탕을 둔 구본신참의 교육 지향과 헐버트로 대표되는 서구의 신지식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교육 지향이 어우러지며, 자주적으로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성사범학교는 학사 관리가 엄격하지 않았으며 중도 퇴학자도 많아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근대교육제도와 시설이 완비되지 못한 과도기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132]

대한제국 정부는 사범학교 학사운영을 정비한 후 갑오개혁기 정부의 소학교 증설 시책을 계승하여 공립소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갑오개혁 시기 학부는 교육정책의 중점을 소학교 확장에 두었다. 우선 1895년 한성에 관립소학교들을 설립했으며, 지방행정 구역 중심지에 한 곳씩 공립소학교를 설립하였다. 지방의 공립소학교는 1896년 1월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한성사범학교 제1회 졸업생들이 배치되었다.[133]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신설 공립소학교비 예산이 원래 계획대로 전액 지출되지 못하면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광무개혁 시기인 1898년 정부는 갑오개혁 이전의 교육정책을 계승하여 국민교육기관으로서 소학교 확장에 역점을 두었다. 학부에서는 지방에 공립소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1898년 예산에 20개의 신설 공립소학교 보조금을 책정하였다. 신설되는 공립소학교 소재지는 13도 관찰부와 6항구 및 개성부였다. 13도 관찰부에 먼저

132 김태웅, 앞의 책, 2017, 83쪽.

133 김경미, 앞의 책, 2009, 168쪽.



박은식의 저서 《학규신론》의 〈서문〉(국립중앙도서관)



박은식의 초상화(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박은식은 1900년부터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역임하였다.

공립소학교를 설치하여 소학교 교육의 모범이 되도록 하고, 외국과 교통하는 항구의 특성상 신교육의 필요성이 더 컸으며, 또한 개성부는 조선왕조가 건국된 곳으로서 역대 교육에서 항상 우대받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립소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정부의 보조금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향교 재산이나 양사養士 전답 또는 역둔토를 활용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설된 20개 공립소학교에 교원을 파견했는데, 정교원뿐 아니라 지방 유생 중에서 부교원을 선정하는 제도를 두어 신교육을 지역사회로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학부는 1898년 말부터 관리들을 보내 소학교육을 시찰하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쇄신을 도모하였다. 이처럼 공립소학교가 설립되고 교육이 확장되는 가운데 점차 사립소학교도 설립되어 갔다.[134] 비록 재정적으로 열악했지만 정부의 공립소학교 증설 정책은 민간에도 영향을 주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설립하는 공공적 성격의 민립소학교라 할 사립소학교도 점차 늘어났다.[135]

134 구희진, 앞의 글, 2004, 176~183쪽.

3) 중등학교 및 실업 전문학교 관련 법제의 정비와 학교 설립

갑오개혁기 이래로 한국의 중등교육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교사들이 설립한 미션계 학교를 비롯하여 민간에서 설립한 사립학교들은 중등 정도의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하기도 하였다.[136] 사립학교의 확산과 중등교육 과정 운영은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한제국 정부는 소학교에 연계되는 상급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학교를 설립하였다. 1899년 칙령 제11호 〈중학교관제〉를 공포하여 중등교육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3] 〈중학교관제〉의 조문 일부

제1조	중학교는 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인민에게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하는 중등교육을 보통으로 교수하는 곳으로 정함
제2조	중학교에 심상과와 고등과를 나누어 설치함
제3조	수업연한은 7년으로 정하여 초 4년은 심상과에 졸업하고, 후 3년은 고등과에 졸업함
제4조	학과 및 정도와 기타 규칙은 학부대신이 정함
제5조	중학교에 다음 교원을 설치함 • 학교장 1인 주임(奏任) • 교관 7인 이하 주임 혹은 판임(判任) • 서기 1인 판임
제12조	지방 정황에 따라 중학교를 지방에도 설립할 때는 심상과만 우선 설치함
제13조	지방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때에는 장소를 해당 군 향교로 함
제14조	지방 중학교를 설립하는 때는 학교마다 교장, 교관, 서기를 설치하되 인원수는 적절히 헤아려 정함
제16조	지방에 공립중학교와 사립중학교 설치도 허함.

출처: 〈中學校官制〉, 《관보》 제1228호, 1899년 4월 6일.

〈중학교관제〉는 본문 총 17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연한을 7년으로 하고 심상과와 고등과를 두는 등 학사 운영에 관한 내용과 함께 교직원 조직, 지방의 중학교 설치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다. 제1조에서 중학교 교육의 대상으로 '실업에 종사

135 김태웅, 앞의 책, 2017, 95쪽.

136 1910년 이전까지 전국에서 많은 사립학교들이 설립되었다. 그중에서 서울에 설립된 학교만 살펴보면, 미션계 학교로는 배재학당(1885), 이화학당(1886), 경신학교(1886), 정신여학교(1895), 배화학당(1898), 약현학교(1907)가 있었고, 한국인 설립 학교로는 홍화학교(1898), 양정학교(1905), 보성학교(1905), 휘문의숙(1906), 진명여학교(1906), 숙명여학교(1906), 중동학교(1906), 협성학교(1907), 동덕여자의숙(1908) 등이 있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 기초자료집 2: 개화기의 교육》, 탐구당, 2011, 13쪽).

하려는 인민'이라는 표현을 볼 때 고등교육 진학보다는 실용적 교육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대한제국 정부의 실용적 실업교육 강조와 연관이 있다.

또한 1900년에는 학부령 제12호로 〈중학교규칙〉을 제정하였다.

[표 4] 〈중학교규칙〉의 조문 일부

구성	내용
제1관 총칙 (제1조~제12조)	• 제1조 중학교는 1899년 칙령 제11호 〈중학교관제〉 제1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중등교육을 교수함 • 제3조 중학교 고등과 졸업생은 판임관과 專門學에 입학할 자격을 가짐 • 제6조 중학교는 관립중학교,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의 세 종류로 정함 관립중학교는 정부의 설립, 공립중학교는 관민이 경비를 공동하여 설립, 사립중학교는 私人이 경비를 지불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함 • 제8조 공·사립중학교의 정황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금 일부를 적절히 헤아려 지급함 • 제9조 공·사립중학교에는 심상과만 설치함 • 제10조 공·사립중학교도 그 지방에 소학 교육이 발달함을 검정한 후에 인가함
제2관 학과 및 정도 (제1조~제4조)	• 제1조 심상과의 학과는 윤리, 독서, 작문, 역사, 地誌, 산술, 경제, 박물, 물리, 화학, 도화, 외국어, 체조로 정함 • 제2조 중학교 고등과의 학과는 독서, 산술, 경제, 박물, 물리, 화학, 외국어, 법률, 정치, 공업, 농업, 상업, 의학, 측량, 체조로 정함
제3관 학급, 학기, 학년 (제1조~제3조)	• 제1조 학급은 생도의 인원수와 학력에 따라 편제하며, 교장이 교관과 상의하여 정함 • 제2조 학기는 봄학기와 가을학기로 정함 • 제3조 학년은 가을 초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여름 말까지로 정함
제4관 입학, 휴학 (제1조~제8조)	• 제1조 입학은 매년 봄·가을 초로 정하여 허가함 • 제2조 입학을 원하는 자는 고등소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다음 자격을 갖춘 자로 입학 허가함 – 연령 만 17세 이상으로 25세 이하인 자 – 신체가 건강한 자 – 때에 따라 신체검사도 함 단, 당분간 각 외어학교 졸업생과 文算이 뛰어나고 才智가 총명한 자를 특별히 허가 입학할 수 있음 • 제3조 입학을 원하는 자는 제1호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교장에게 제출하면, 교장이 교관을 회동하여 입학시험을 친 후 입학을 허가함 입학시험 과목 : 한문, 국문, 산술, 역사, 지지 • 제5조 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호 양식에 따라 보증서를 교장에게 제출함
제5관 재학, 퇴학, 黜學, 처벌 (제1조~제3조)	• 제2조 다음 각 항에 저촉한 자는 교장이 출학을 명하고 관보에 광고함 – 졸업 전에 타 학교로 전학하는 자 – 품행이 불량하여 누차 훈계했으나 뉘우치지 않는 자 – 규칙을 위배해는 자 – 학업이 부진하여 연속 3학기에 진급하지 못한 자 – 학업에 정성이 없고 부당한 사항에 함부로 논의하는 자 – 무단결석이 1주일 이상인 자
제6관 시험, 졸업 (제1조~제8조)	제1조 시험은 매월 말, 한 학기, 한 학년의 세 종류로 정하여, 월말시험은 1달 학력을 검정하고 학기시험은 한 학기 학력을 검정하고 학년시험은 1년 학력을 검정함

출처: 〈中學校規則〉, 《관보》 제1673호, 1900년 9월 7일.

〈중학교규칙〉에서는 중학교 고등과 졸업생이 판임관과 전문학에 들어갈 자격을 갖는다고 하여 고등교육과의 연계성도 설정했다는 특징이 있다.[137] 또한 중학교의 종류는 관립, 공립, 사립으로 나누고 공·사립 중학교에는 심상과만 두도록 하였다. 입학 자격으로 고등소학교 졸업의 학력이 필요했고, 연령은 만 17세 이상 25세 이하로 규정하였다. 한시적으로 외국어학교 졸업생이나 총명한 자에게 특별 입학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입학시험 과목은 국문, 산술, 한문, 역사, 지지였다. 학과목은 심상과와 고등과에 따라 구별되어 있었다. 고등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실업에 관련된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까지 망라하고 있다. 유일하게 고등과 설치가 가능한 관립 중학교는 국가 각 분야에서 활약할 고급 인재 양성을 지향하였다. 이상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는 1900년 10월 4일 관립중학교를 개교하였다. 위치는 화동 일대의 김옥균 집터였다.

관립중학교의 수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듯하다. 학과목의 수준이 들쭉날쭉하고 교관의 근무 상황이나 수업의 지속성도 부실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학생들에게도 반영되어 입학 당시 80여 명이던 학생 수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20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고등과 설치는 학교 설립 직후부터 현실적 여건상 제외되었다. 학부는 교장과 교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중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138] 이후 관립중학교는 1906년 통감부 체제 아래 한성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한편 대한제국 정부는 전문교육을 위한 법제 정비와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1899년 칙령 제7호 〈의학교관제〉와 학부령 제9호 〈의학교규칙〉을 제정하여 전문학교로서 의학교를 설립하였다. 의학교 입학 자격으로 중학교 졸업을 명시하고, 수업연한 3개년을 마친 후에도 연장하여 전공지식을 심화하도록 했는데, 훗날 의과대학 승격을 염두에 두고 의학교를 육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학

137 한용진·조문숙, 〈근대 '학교' 개념의 수용에 대한 개념사적 고찰 - 대한제국기 중학교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9(2), 2017, 165쪽.

138 김홍수, 〈한국 근대의 관립중학교〉, 《역사와 실학》 13, 1999, 149~152쪽.

전문교육의 필요성에서 1903년 〈법관양성소규정〉을 개정하여 속성 연수기관이었던 법관양성소를 3년 과정의 전문학교로 승격시켰다.[139]

한편 상공업의 진흥을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실업 전문교육을 실시할 상공학교 설립을 계획하였다. 1899년 칙령 제28호 〈상공학교관제〉를 공포하여 법제를 마련하였다. 상공학교는 상업과 공업에 필요한 실학을 교육하는 곳으로 규정되었다. 상업과와 공업과의 수업연한은 4개년으로 하고 첫 1년은 예과, 나중의 3년은 본과로 하였다. 기타 교직원 구성 및 지방에 공사립 상공학교 설치에 관한 내용도 정하였다.[140] 그러나 상공학교는 곧바로 개교하지는 못했으며, 1904년에 가서야 칙령 제16호 〈농상공학교관제〉를 제정하여 기존의 상공학교에 농업을 더하여 농상공학교가 설립되었다. 교사는 중구 명동에 위치했고 농업과만 따로 훈동에 있었으나 나중에 모두 종로구 수송동으로 이전하였다.[141] 그밖에 대한제국 정부와 민간은 다양한 과학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관립학교인 광무학교, 우무학당, 전무학당을 비롯하여, 민립학교인 한서직조학교, 철도학교 등을 설립하였다.[142]

4. 여성교육의 시작과 전개

1) 근대교육으로서 여성교육의 위치

개항기 이후 근대교육이 추진되면서 여성교육에 대한 논의도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성순보》 1884년 3월 19일(양력) 기사에서는 서양 각국의 교육제도를 소개하면서 소학교의 경우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 모두가 5세에서 13세까지 취학을 허용"한다고 하여 여성교육을 소개하였다.[143] 박영효는 〈개화상

139 김태웅·장세윤, 《일제강점기 고등교육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2, 55~56쪽.

140 〈商工學校官制〉, 《조선·대한제국 관보》 제1299호, 1899년 6월 28일.

141 국립서울대학교 개학반세기역사편찬위원회, 《국립서울대학교 개학반세기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758쪽.

142 김태웅·장세윤, 앞의 책, 2022, 58쪽.

소〉(1884)에서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여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유길준은 《서유견문》(1895)에서 서양 여성의 개화를 소개하면서 여성교육을 통해 개화를 이룰 수 있으며 결국 여성교육을 통해 국민교육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144] 이처럼 간헐적이고 단편적으로 등장하던 여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론장은 《독립신문》이었다. 《독립신문》에서는 여러 차례 남녀 동등 주장과 축첩 비판, 과부 개가 허용 등을 문명개화의 방편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여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5] 1896년 5월 12일자 논설은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정부에서 학교 몇을 지금 시작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나 계집아이 가르치는 학교는 없으니 정부에서 백성의 자식들을 교육할 때 어찌 남녀가 차이가 있게 하리오. 계집아이들은 조선 아이가 아닌가, 조선 인민의 자식 되기는 일반이거늘 오라비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권한이 있으나 불쌍한 계집아이는 집에 가두어 놓고 가르치는 것은 다만 사나이에게 종노릇을 할 직무만 가르치니 우리는 그 계집아이들을 위하여 분히 여기노라. 정부에서 사내아이들을 위하여 학교 하나를 짓거든 계집아이들을 위해 또 하나를 짓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 원컨대 정부에서 먼저 조선 인민 생각하기를 공평 두 자만 가지고 하고 남녀노소 상하 빈부 분간 없이 한 법률로만 다스리기를 바라노라. 사내아이들은 자라면 관인과 학사와 상고와 농민이 될 터이요 계집아이는 자라면 이 사람들의 아내가 될 터이니 그 아내가 남편만큼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집안일이 잘 될 터이요, 또 그 부인네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기르는 법과 가르치는 방책을 알 터이니 그 자식들이 충실할 터이요, 학교에 가기 전에 어미의 손에 교육을 많이 받을 터이라. 그런즉 여인네 직무가 사나이 직무보다 소중하기가 덜 하지 아니하고 나라 후생을 배양하는 권한이 모두 여인네에게 있은즉 어찌 그 여인네들을 사나이보다 천대하며 교육하는데도 등분이 있게 하리오.[146]

143 〈學校〉, 《한성순보》 1884년 3월 19일.

144 이송희, 〈한말, 일제하의 여성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16, 2005, 189~190쪽.

145 김영민, 〈한국 근대 초기 여성담론의 생산과 변모〉, 《대동문화연구》 95, 2016, 230~232쪽.

146 〈논설〉, 《독립신문》 1896년 5월 12일.

이 논설에서는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조선 인민의 자식'으로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보편적 교육권이라는 측면에서 여성교육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 개인의 권리 신장이라기보다는 근대국가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여성교육을 의미하였다.

주로 개화파 지식층이 주도한 여성교육 논의는 조선이 근대국가로 재정립하기 위한 방편에서 근대교육의 일부로 제기된 것이었다. 근대교육은 구국을 위한 방략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여성교육의 가치가 부상하였다. 전근대 가정에서 여성은 교육의 담당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성이 가정을 전담하게 됨에 따라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가내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을 벗어나 신지식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공간으로서 여학교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여성교육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추구되었다. 앞에서 인용한《독립신문》논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성교육이 '관인, 학자, 상인, 농민'과 같은 직업을 예비하는 데 중점이 있다면 여성교육은 장래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역할을 준비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여성교육의 필요는 개인적 측면의 인간 성장보다는 국가·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던 역할과 관련하여 강조된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여성을 위한 학교 설립이 공론화된 것은 여성교육에 있어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2) 미션계 사립 여학교의 등장

개항 이후 여성교육의 중요한 특징은 제도적으로 학교교육이 여성에게 허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근대적 여성교육은 가내에서 주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던 여성들에게 제도적 교육을 받게 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교육 형태와 구별되며, 삶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획기적인 변화였다.[147] 조선에서 제도교육으로

147 이윤미, 〈근대 여성교육과 '교육받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화 담론〉,《한국교육》28(2), 2001, 5~7쪽.



초창기 모습대로 복원된 이화학당

서 여학교의 설립은 선교사들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다. 개항과 문호개방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항 이전부터 천주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밀입국하여 탄압 속에서 선교활동을 이어왔으며, 개항 후에는 조선 정부가 외국인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묵인하면서 천주교뿐 아니라 개신교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왔다. 개신교는 당초 서북지방의 자립적 중산층을 중심으로 수용되어 갔는데, 알렌Horace N. Allen,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아펜젤러 등의 선교사가 왕실 및 개화파와 교류하며 활동 범위를 넓혔다. 이들은 1880년대 후반부터 근대적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 민중에 대한 선교를 시작하였다. 조선 정부가 선교의 자유를 용인할 전망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선교 원칙으로서 조선인의 자립 선교, 조선인 교회의 자립 운영과 보급 등을 규정하였고, 선교 대상을 상류층보다 일반 서민 대중과 부녀자층에 집중할 것을 결정하였다.[148] 이에 따라 개신교 선교사들은

148 강만길, 앞의 책, 2007, 371쪽.

교육 선교의 방편으로 학교 설립에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여학교 설립도 추진하였다.

최초의 근대적 여성교육은 1886년 이화학당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튼Mary F. Scranton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서 1885년 부임하여 정동에 대지를 구입하고 여학교용 교사와 기숙사 건축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학생 수가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1887년에 고종으로부터 '이화학당'이라는 명칭을 하사받았다. 초창기 이화학당의 수업은 성경과 영어 말하기 위주로 진행되다가 1890년에 영어(읽기, 쓰기, 작문), 한문, 한글, 지리, 산수, 체조 과목으로 늘어났다. 이후 음악, 과학, 역사, 가정학 등의 과목도 추가되었다. 1904년에는 정부로부터 중학과 인가를 받았고 1908년에는 고등과와 보통과 그리고 1910년에는 대학과를 설치하였다. 이화학당에 이어서 정신여학교, 영화학교, 배화학당, 숭의학교, 호수돈학교 등 선교사들이 설립한 여학교가 늘어나 1908년에는 전국에 미션계 여학교가 20여 개에 달하였다.[149]

이화학당의 스크랜튼 여사는 이화학당을 세우며 여성교육의 목표를 단순히 아내와 어머니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 이런 취지에서 미션계 학교의 여성교육은 남녀평등과 천부인권에 근거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 여성들에게 기숙사 생활과 서양 문화 습득을 통해 근대적 지식과 생활방식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졸업생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교사로 채용되어 사회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서구적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내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150] 미션계 여학교는 근대 초기 여성교육의 포문을 열었으며 이후 한국에서 여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149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17쪽.

150 김현숙, 〈근대 초기 기독교 여성과 기독교적 여성교육〉, 《기독교교육논총》 59, 2019, 36~39쪽.

3) 정부의 여성교육 정책과 관립 여학교 설립

개항기 이래 정부는 여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점차 인식해갔으며 갑오개혁 시기 근대 여성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895년 〈소학교령〉에서는 소학교의 설립 목적을 "아동 신체의 발달에 비추어 국민교육의 기초와 생활상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능을 교수함"(제1조)이라고 명시하고, 제2장의 제목을 '소학교의 편제 및 남녀아동의 취학'이라고 설정하여 국민교육의 대상을 남녀를 아우르는 '아동'으로 규정하였다. 〈소학교령〉 중에서 여아 교육을 언급한 조문은 여아를 위한 과목으로 재봉을 설정하거나 또는 학급 구성에서 남녀 공학·별학을 언급한 정도에 그치고 있기는 하나, 소학교 교육의 대상으로 여아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소학교 교육에 그치고 그 이상의 교육에 관해서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여아에 대한 소학교 교육도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1905년까지 여성교육을 담당한 학교들은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미션계 학교들이었다.

한편 1898년에 서울 숭동의 부인들이 조직한 찬양회贊襄會에서는 관립여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고종에게 청원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문에서 "여자라도 또한 충애지심과 문명지학을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세워 총명한 여자아이를 가르치게 해달라고 호소하였다.[151] 이에 호응하여 정부가 1899년 예산에 여학교 설치 경비를 포함하면서 관립여학교 설립 전망이 밝아졌다. 찬양회는 관립여학교 설립 전까지 일단 50여 명의 여학생을 모집하여 《천자문》《동몽선습》 등과 함께 서양 부인을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이 여성 교원들을 장차 설립될 여학교의 교원으로 삼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였다.[152] 이 학교가 한국 여성들이 세운 최초의 사립여학교인 순성여학교順成女學校였다. 그러나 관립여학교 설립은 1900년 1월 의정부 회의에서 재정 곤란으로 인해 부결되었다. 순성여학교도 재정난으로 1903년 이

151 〈부인 상소〉, 《독립신문》 1898년 10월 13일.

152 〈여자 교육〉, 《독립신문》 1899년 3월 1일; 〈남녀유별〉, 《독립신문》 1899년 3월 4일.

후 폐교된 것으로 보인다.[153] 이후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된 1905년을 전후하여 교육구국운동의 차원에서 전국에 사립학교가 활발하게 설립되었으며, 황실의 지원으로 1906년에 숙명여학교와 진명여학교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관립여학교 설립은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 하에서 1908년에 관립한성고등여학교가 창설되면서 비로소 실현되었다. 1908년 칙령 제22호로 제정된 〈고등여학교령〉은 고등여학교의 목적을 "여자에게 필요한 고등 보통교육과 기예를 가르친다."라고 규정하였다. 관립·공립·사립의 3년제 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 국고로 설립하는 것을 관립으로 하였다. 그리고 학부령 제9호 〈고등여학교령 시행규칙〉을 통해 고등여학교 학급 구성, 학과목 및 요지, 학년 및 학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다. 관립한성여학교의 운영에 관해서는 1909년 학부고시 제17호 〈관립한성고등여학교학칙〉을 제정하였다. 관립한성여학교는 〈고등여학교령〉과 〈고등여학교령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본과는 3개년, 예과는 2개년, 기예전수과는 2개년 이내로 수업연한을 정하였다. 건원절(순종 탄생 기념일, 2월 28일)이나 개국기원절(조선 개국 기념일, 7월 16일) 등 기념일과 일요일 등은 휴업일로 하고, 봄방학(4월 1일~4월 10일), 여름방학(7월 21일~8월 31일), 겨울방학(12월 29일~1월 7일)을 두었다. 교과목은 수신, 국어 및 한문, 일어, 역사, 지리, 산술, 이과, 가사, 도화, 재봉, 음악, 체조, 수예, 교육 등이었다. 학생 정원은 본과, 예과, 기예전수과를 합하여 400명으로 하였다. 입학을 위해서는 입학청원서,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고로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았다.[154] 입학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당분간은 연령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교육받기를 원하는 여성은 누구나 입학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여성교육의 확산과 전파를 위한 조치였다. 관립한성고등여학교의 입학식은 1908년 7월 4일에 거행되었으며, 학교장 어윤적魚允迪과 학부대신, 차관 등 정부 인사가 참여하였다. 입학 당시 학생 수는 80명 내외였으나 이듬해 162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가 갈수록 학생 수가 늘어났다. 이 학교는 일

153 이송희, 앞의 글, 2005, 193쪽.

154 〈官立漢城高等女學校學則〉, 《관보》 제4514호, 1909년 10월 26일.

제강점기 들어 관립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로 변경되었으며 광복 후 경기여자고등학교로 이어졌다.

제3절

통감부의 교육 침투와 교육구국운동 전개

1. 통감부 주도의 학제 개편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 각 부서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임용하도록 강제하였다. 학부에도 당시 관립중학교의 외국인 교사로 와 있던 시데하라 타이라[幣原坦]가 1905년 2월 1일 학정참여관으로 취임했다. 당시 시데하라와 학부대신 사이에 맺은 계약에 의하면, 시데하라는 대한제국의 교육정책을 심의·기안하고, 각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데하라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었다.[155]

시데하라는 학정참여관으로 재직 중 여러 차례 일본 외무대신 앞으로 보고서를 보냈는데, 한국교육에 대한 그의 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초의 보고서인 《한국교육개량안》(1905.4.11.)이다. 《한국교육개량안》은 〈방침〉과 〈방법〉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침〉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한의정서〉가 양국의 관계를 결정한 이래 한국은 당연한 결과로 일본 제국의 보호국으로서의 운

155 日本外務省記錄, 《韓國於學部顧問雇聘並學政改革一件》, 1905년 2월 17일.

명에 놓이게 되었다. 적어도 제국 정부가 이 방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한국교육 개량의 방침도 마땅히 이에 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장차 한국에서의 제반 사업은 일본 제국의 관민을 주동자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한인으로 하여금 조폭험악噪暴險惡의 폐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을 기하고, 또는 상호 간에 언어와 풍속을 이해하여 감정의 충돌을 피하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한다. 고래로 반도의 경영에 가장 마음을 경주한 명나라는 유교를 펴서 인심을 얻어 간직해 왔던 바, 이제 갑자기 그것을 멸절시켜 이에 대신하는 충군애국, 의용봉공義勇奉公의 일본적인 도덕으로 변화시킴은 재래의 기운에 일치하지 않으며, 더욱이 장래의 국교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없지 않다. 다만 국민의 상식을 배양할 신지식에 이르러서는 고금동서의 문명을 동화하여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된 일본의 개화를 수입함을 가장 좋은 방편으로 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하여 제사諸事에 간이와 이용利用을 필요로 하는 한국에서 국민의 교육적 향상심을 조장하려 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속성의 행로를 취함을 방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금 한국교육 개정의 방침을 열기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 정부의 대한 정책에 따라 장차 한국이 제국의 보호국으로서 만반의 시설개량을 하는 데 적당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우선으로 한다.
2. 한국민으로 하여금 선량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성품을 함양하도록 할 것을 기대한다.
3. 일본어를 보급한다.
4. 종래 한국의 형식적 국교인 유교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 위에 일반인에게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게 한다.
5. 학제는 번욕繁縟을 피하고, 과정은 비근卑近하게 한다.

이와 같이 시데하라의 구상은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될 것을 전제로 하고, 교육이 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개편해야 하는 것이다. 그 기조는 점진적 동화주의였고, 핵심은 일본어 보급에 있었다. 점진적 동화주의는 "유교를 일본적인 도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장래 국교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니 조선 고유의 유교 도덕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국민의 상식을 배양할 신지식", "일본의 개화를 수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화는 한국인이 "조폭험악의 폐에 빠지지" 않고 "선량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성품을 함양토록" 하는 것, 즉 일본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일

제강점기 교육방침에 "덕성의 함양"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덕성이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리키는 것이다. 점진적 동화주의의 기반은 일본어 보급이다.

〈방침〉에 이어 나오는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한국교육개량안》 〈방법〉의 주요 내용

1기	1. 보통학교 도입	• 종래 유명무실한 심상소학교(약 50개교)와 고등소학교(1개교)를 근저에서부터 개량, 합병하여 보통학교로 할 것 • 각 부군에 점차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것 • 기존에 서당에 다녀서 어느 정도 학습을 이룬 자제부터 취학시킬 것 • 초학년부터 반드시 일본어를 배우도록 할 것
	2. 입학의 장려	• 법안을 만들어서 보통문관은 학교 졸업생에서 뽑는 방법을 개설
	3. 시학기관의 설치	• 학부에 시학관을 설치하여 각 학교를 시찰
	4. 교과서의 편찬	• 보통학교 교과서 편찬을 서두를 것
	5. 사범학교의 개혁	• 커리큘럼의 쇄신 • 입학생은 보통학교 졸업생으로부터 선발 • 상급생은 일본어로 교수해도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외국어학교의 통일	• 현 상태는 통역의 공급 이외에는 취할 만한 것이 없음 • 일어, 한어, 영어, 불어, 덕어 등 각 학교가 독립되어 있는 것을 1개교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점차 축소 방향으로
	7. 중학교의 개혁	• 수업연한을 3년으로 축소 • 명칭을 보통학교에 대하여 고등학교로 개칭 • 커리큘럼과 교과서 정비 필요
	8. 농상공학교의 정돈	•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식 수업을 시작해야 함
	9. 사립 일어학당 처치	• 각지에 산재한 일어학당은 보통학교로 병합 • 관계자는 교사로 채용
2기	1. 여학교 창설	• 중류계급 이하의 여성을 위해 여학교 설립 • 정도는 보통학교 이상을 바라서는 안 될 것임
	2. 농상공학교의 분리	• 수요에 따라 농림학교와 상공학교를 분리 • 농림학교는 현재의 교사에서 이전하여 농림 및 식림의 방법을 교수
	3. 고등학교 및 제전문학교의 증설	• 경성 및 각도 관찰부 소재지에 지방의 정황에 맞게 설립
	4. 성균관의 개혁	• 장래 조선에서 실제상의 대학으로 •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사범학교 졸업자를 수용함
3기	1. 고등전문학교의 설립	• 이상의 사업이 성공하여 교육 확장이 필요할 경우, 시기를 보아 전문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생을 수용할 시설로서 설립
	2. 보통학교 보습과의 설치	• 보통학교의 교육 증보를 목적 • 수업연한 2년

[표 5]에서 보듯이 〈방법〉의 내용은 일본어 보급, 학교 명칭 변경, 수업연한 축소, 실업교육 강화, 여성교육과 고등교육 경시로 요약할 수 있다. 〈방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시데하라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소학, 중학, 대학으로 점점 올라가야 하는 내지(일본) 풍은 당장 조선에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래 대학 교육을 실시할 여지도 없었다. 그 때문에 일로개전(러일전쟁) 후 교육 개선을 실시할 때도 학교 그 자체로 완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이에 소학을 보통학교로, 중학을 고등학교로 고치고 수업연한을 모두 4개년으로 했으며, 대학은 일단은 두지 않고 다만 성균관의 개선에 그치는 것으로 했다.[156]

소학교, 중학교라는 명칭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 각 학교가 연결 교육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 교육을 해야 함을 강조하려 했다는 것이다. 근대교육은 초등-중등-고등교육이 단계적·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교육체제를 전제로 한다. 시데하라의 구상은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전문학교로 이어지는 학교 제도의 완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시데하라는 1906년 2월 통감부 설치 직후 해임되었지만 그가 《한국교육개량안》에서 제시한 한국교육에 대한 구상, 즉 [표 5]의 내용은 1906년 통감부 주도로 만들어져 공포된 교육 관련 법령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1906년 8월 27일, 학교에 관한 칙령으로 〈농상공부 소관 농림학교 관제〉 〈학부 직할학교 및 공립학교 관제〉 〈사범학교령〉 〈고등학교령〉 〈외국어학교령〉 〈보통학교령〉을 비롯하여, 각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 일정, 학생의 입퇴학 조건과 교원 자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사범학교령 시행규칙〉 〈고등학교령 시행규칙〉 〈외국어학교령 시행규칙〉 〈보통학교령 시행규칙〉 등 교육에 관한 여러 법령이 공포되었다.

156 시데하라 타이라, 《조선교육론》, 육맹관, 1918, 194쪽.

통감부가 주도한 이 법령들은 대한제국의 교육을 식민교육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6]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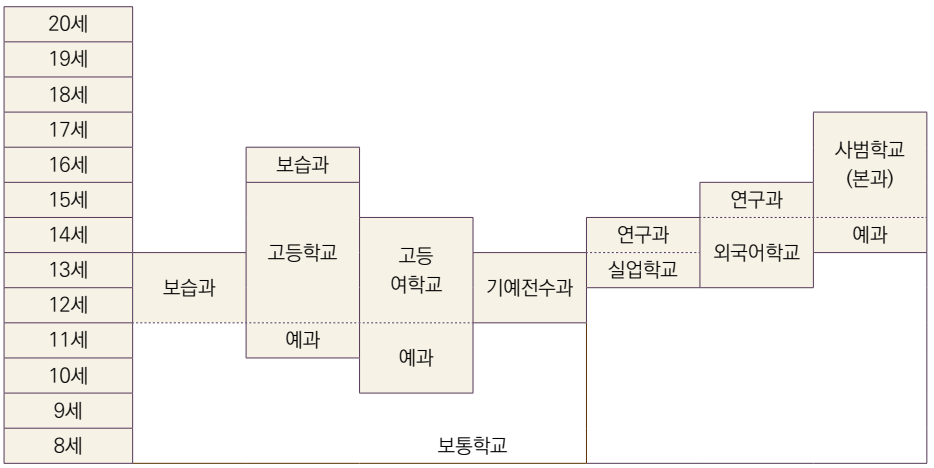
[표 6] 통감부 주도 각급학교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

법령	주요 내용
〈보통학교령〉 〈보통학교령 시행규칙〉	• 학교 명칭이 소학교에서 보통학교로 바뀜 • 심상·고등 두 단계 구분을 폐지하고 수업연한 6년에서 4년으로 단축 • 일본어가 정식 과목으로 포함됨 • 지리, 역사 과목을 '지리·역사'로 하고, 따로 수업시수를 배정하지 않고 국어, 일어 교과서의 내용으로 교수하도록 함 • 외국어, 외국지리, 외국역사 과목 삭제 • 실업 과목(농업, 상업, 수공)이 교과목에 포함됨 • 교과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 학부의 인가를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함 • 학교에 대한 학부의 감독·통제 강화 – 공사립 모두 학교의 설치·폐지는 모두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지방관의 공사립학교 감독권 부정, 교원에 대한 학부의 감독·통제 강화 – 교원 자격을 상세하게 규정(무자격자도 임용 가능) – 학부의 교원징계권 규정
〈고등학교령〉 〈보통학교령 시행규칙〉	• 학교 명칭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바뀜 • 심상·고등 두 단계 구분을 폐지하고 수업연한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 입학 자격으로 '품행 방정한 자' 규정 • 일본어가 정식 과목으로 포함됨 • 외국어 과목 삭제(1909년 선택과목으로 개정) • 교과서는 학부의 인가를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함 • 학교에 대한 학부의 감독·통제 강화 – 공사립 모두 학교의 설치·폐지는 모두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지방관의 공사립학교 감독권 부정
〈사범학교령〉 〈사범학교령 시행규칙〉	• 사범학교는 관공립으로 함 – 사립 사범학교 설립·운영 금지 • 수업연한 3년 – 수업연한 1년의 속성과, 강습과 설치 가능 • 입학 자격으로 '품행 방정한 자' 규정 • 정신 단련, 덕행 연마, 충군애국, 규율·질서 준수와 명령·훈회(訓誨) 복종 등을 사범교육의 요지로 제시 • 교과서는 학부의 인가를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함 • 일본어가 정식 과목으로 포함됨 • 실업 과목(농업, 상업, 수공)이 교과목에 포함됨 • 학자(식비, 잡비, 의복) 지급, 기숙사 입소, 의무 복무 규정
〈외국어학교령〉 〈외국어학교령 시행규칙〉	• 수업연한 3년 • 입학 자격으로 '품행 방정한 자' 규정

[표 6]에서 보듯이 통감부의 대한제국 학제 개편은 《한국교육개량안》의 구상대로 학교 명칭을 바꾸고 수업연한 축소, 일본어 교육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06년 당시 고등교육기관에는 성균관을 비롯하여 1895년 문을 연 법관양성소와 외국어학교, 대한제국기에 설립된 의학교, 농상공학교, 광무학교, 우무학당郵務學堂, 전무학당電務學堂 등이 있었다. 이들 관립학교 외에 서울에는 한성직조학교, 직조단포주식회사 교습소, 홍화학교 양지속성과量地速成科 등 고등 수준의 교육을 하는 민립학교도 있었다. 이용익李容翊이 1905년 4월 세운 보성전문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이라는 명칭을 붙인 최초의 학교였다.

그러나 [그림 1]과 같이 통감부 설치 후부터 국권 피탈 전까지 학교 제도는 보통학교와 보통학교 졸업자가 진학하는 학교, 즉 초등과 중등 두 단계로만 구성되었다.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중등교육기관인 중학교가 고등교육기관으로 연결되는 학교여선 안 되며, 그 자체로 종결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일반계 고등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도의 반영이기도 하다. 또한 보통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예과를 통해 고등여학교에 입학이 가능하고, 보통학교 졸업 후 이수할 수 있는 보통학교 보습과, 고등여학교 기예전수과는 중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 외국어학교, 사범학교에서 동일한 수준의 중등교육을 보장하는 장치도



[그림 1] 1906년 당시의 학교 제도

마련되지 않았고, 각각의 학교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즉 초등-중등-고등의 단계성과 동일 수준 교육기관 간의 횡적 연결성도 부족한 학교 제도였다.

[표 6]의 각급학교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의 학교들은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폐합되었다. 예를 들면 관립한성중학교는 관립한성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고, 평양의 관립일어학교는 관립평양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외국어학교는 1907년 통폐합되어 일어부, 영어부, 한어부(중국어, 법어부(프랑스어), 덕어부(독일어)로 구성된 관립한성외국어학교로 개편되었다. 농상공학교는 수원농림학교와 공업전습소로 분리되었다. 기존에 없던 고등여학교는 1908년 관립한성고등여학교가 신설되었다.



관립한성고등여학교 후신인 경기여자고등학교 입구

이와 같이 기존의 학교들이 변경 또는 신설된 결과 1906년부터 1910년 국권 피탈 전까지 서울에 소재한 주요 관공립학교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7] 1906~1910년 국권 피탈 이전 서울 소재 관공립학교

구분	주요 내용
관립학교	• 보통학교(8): 교동, 재동, 어의동, 인현, 수하동, 정동, 매동, 미동 보통학교 • 학부 소관(5): 한성고등학교, 한성고등여학교, 한성사범학교, 한성외국어학교, 성균관 • 학부 소관 외(3): 법관양성소(1909년 경성법학교(법부 소관)), 대한의원 부속 경성의학교(내부), 경성공업전습소(농상공부 소관)
공립학교	• 보통학교(2): 경성, 마포 보통학교

[표 7]의 학교 중 다수가 그 명칭은 바뀌었지만 현재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존속하고 있다. 보통학교는 일제 말 국민학교로, 1996년 이후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어의동보통학교는 현 효재초등학교, 수하동보통학교는 현 청계초등학교이다. 한성고등학교와 한성고등여학교는 일제강점기에 각각 경성고등보통학교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로, 다시 1938년에 경기중학교, 경기여자중학교로 바뀌었고, 경기라는 학교 명칭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성사범학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경성법학교(1911년 경성전수학교-1922년 이후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경성의학교(1916년 이후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각각 학교 역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사립학교의 폭발적 증가와 교육자치 추구

1) 교육구국운동과 사립학교 설립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 직후부터 민족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박은식이 "한국 인사가 장차 노예나 우마牛馬가 되는 것을 피하고 자유 독립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지금 곧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진흥해보자."[157]라고 하였듯이, 교육이 국권 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의 방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교육

157 《대한매일신보》 1906년 1월 6일.

구국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만규李晩奎는 해방 직후 《조선교육사》를 저술하면서 교육구국운동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썼다.

> 을사년 보호조약은 망국의 싹을 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 격분된 인심은 무엇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교육으로 민지民智를 각성시키는 것이 오직 하나인 길이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일본인의 종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벼슬을 내던진 자 중에 교육을 사업으로 택한 자가 많았고, 자강회나 대한협회 같은 정치단체로 국정을 고치려던 인사 중에도 교육사업으로 돌아선 자가 많았으며, 열렬한 애국자들은 각처로 다니며 비분강개한 연설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주먹을 치며 교육을 부르짖었다. 이리하여 반도에 가득한 기운은 교육열이었다. …… 조금이라도 새 지식을 가진 이는 돈벌이나 벼슬 질을 하지 않고 시골로 가서 조그마한 학교라도 만들거나 한 곳의 청년을 모아 가르치는 것을 국가에 대한 의무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만해 있었다. 그리하여 해방 당시 우리 교육계의 원로 최규동과 지도급 인사 여운형 같은 이들도 그때에 평양 혹은 강릉 같은 먼 곳에 가서 교편을 잡고 학교를 만들었다. 이 밖에도 지금 나이 60, 70세 안팎 된 벗들 중에서 그때 시골에서 교육사업을 하던 이를 더러 찾아낼 수가 있다. 그때 그네들은 오직 황무지를 다듬는 개척자의 정신과 적진을 향하는 군인의 기백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다.[158]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구국운동은 '설학設學' 즉 학교를 세우는 데 집중되었다. 아래의 화동학교華東學校 취지서를 보자.

> 교육은 어린 묘목을 가꾸어 훗날 대들보와 큰 배의 재목으로 만드는 것과 같아 세상에 필요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깊이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진흥하고 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정치가의 급선무로 여깁니다. 하물며 지금 세계열강들 사이에서 오직 우리 대한만이 세력이 미약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며 타인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이유가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

158 이만규, 《조선교육사》 2, 거름, 1947, 104쪽.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명 군주께서 크게 뜻을 일으키고 내탕고에서 자금을 내려 수도에서부터 시골까지 학교를 널리 세우게 하셨습니다. 모든 신민들이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서서西署 평동 전前 찬정 이용직 씨는 사비로 학교를 설립하여 교사를 초빙하고 어린이들을 모집하여 학문을 가르치고 있으며, 낮과 밤으로 나누어 새로운 학문과 옛 학문을 모두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책 읽기, 글쓰기, 국어, 체조 등을 가르치며, 밤에는 외국어, 산술, 지리, 역사 등을 가르쳐 '화동'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학교의 위치가 금화산 동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영웅호걸들은 교육을 받기 전에 이미 스스로 일어나는데, 하물며 학교의 설립이 이와 같을지니라. 위아래 할 것 없이 사람의 재능을 이루는 것은 항상 지도와 유도가 있었습니다. 만일 전국에서 집집마다 서당이 있고 마을마다 학교가 있다면, 옛것을 좋아하되 구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것을 좋아하되 유행에 휩쓸리지 않으며, 새로운 학문과 옛 학문을 함께 배워 좋은 지식과 능력을 쌓아 국가를 형제자매처럼 지키는 존재로 만든다면 외침을 막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교육에 뜻이 있는 군자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잘 유지하여 이 학교가 영구히 지속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발기인: 김중환, 이순하, 김우현[159]

위 취지서에서 보듯이 화동학교는 서울 서서西署 평동의 유지라 할 수 있는 이용직 개인이 사재를 내어 설립한 학교이다. "낮과 밤으로 나누어" 교육한다고 하였으니 주학晝學과 야학을 함께 운영하였고, 각각의 교육과정을 볼 때 주학은 소학교, 야학은 낮에 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중등 수준의 교육을 했을 것이다. "지금 세계열강들 사이에서 오직 우리 대한만이 세력이 미약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며 타인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이유가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며, "좋은 지식과 능력을 쌓아 국가를 형제자매처럼 지키는 존재로 만든다면 외침을 막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구절은 국권 피탈의 위기에 직면하여 교육으로 실력을 양성하여야만 독립을 보전할

159 《황성신문》 1906년 10월 27일.

수 있다는 교육구국운동의 지향을 잘 보여준다.

오천석吳天錫은 1935년 1월《동아일보》에 〈조선 신교육과 파란 많은 그 행로〉라는 제목으로 조선 신교육사를 8회에 걸쳐 연재했는데, "1910년 학부의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수효만 하더라도 일반 학교 1,402교, 종교학교 823교 합 2,125교였다. 거기에 학부 인가 없는 학교를 가산하면 1908년의 학교 총수는 실로 3천을 초과하였으리라고 측정할 수 있으니, 이로써 당시의 맹렬하였던 교육열을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며, 1904~1910년을 "사립학교의 황금시대"라고 지칭했다.

> 이 기간(1904~1910)에 있어 특기할 만한 사실은 본 시기가 사립학교의 황금시대였다 함이다. 반도의 정치적 풍운이 급격적으로 험악하여 가고, 국운이 점차로 위기에 직면하게 된 때에 조선에는 일종의 교육적 혁명이 돌발된 감이 있었다. …… 도처에 학교가 우후죽순 격으로 속출하게 되고, 청년자제는 학교 문에 쇄도하여 마력을 가진 듯한 '신학문'을 구해 마지않았다. …… 1904년을 출발점으로 하여 발흥하기 시작한 교육열은 사립 교육기관에 대한 간섭령이 발포되던 1908년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하였으니, 1910년 학부의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수효만 하더라도 일반 학교 1,402교, 종교학교 823교 합 2,125교였다. 거기에 학부 인가 없는 학교를 가산하면 1908년의 학교 총수는 실로 3천을 초과하였으리라고 측정할 수 있으니, 이로써 당시의 맹렬하였던 교육열을 알 수 있는 것이다.[160]

오천석의 설명과 같이 을사늑약 후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때 서울에 설립된 학교 중에는 양정의숙(현 양정중고등학교), 휘문의숙(현 휘문중고등학교), 진명여학교(현 진명여자고등학교), 보성중학교(현 보성중고등학교),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숙명여학교(현 숙명여자중고등학교), 보인학교(현 보인중고등학교), 중동학교(현 중동중고등학교), 기호학교·융희학교(1910년 양교 통합 후 중앙학교로 개칭, 현 중앙중고등학교), 동덕여자의숙(현 동덕여자중고등학교), 소의학교(현 동성중고등학교) 등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남아 있는 학교도 적지 않다.

160 《동아일보》 1935년 1월 4일.

이 시기에 설립된 사립학교에는 선교사들이 주도하여 설립한 종교계 학교도 있고, 한 개인이 사재를 털어 설립하거나 뜻을 같이하는 여러 명이 의연금을 모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도 있었으며, 학회나 계몽운동 단체에서 설립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방관이나 지역 유지의 주도로 지역민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설립·운영한, 일종의 민간 주도형 공립학교 또는 공립형 민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학교도 적지 않았다. 다음 기사의 한양학교漢陽學校는 민립학교가 설립·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남문 밖 자암紫岩에서 금년 5월 몇몇 청년이 한양학교를 설립하고 만국 역사 및 만국 지리, 일어, 산술 등을 야학으로 교수하더니, 일전에 하기夏期 시험을 치렀는데, 우등은 반석환潘錫煥, 박수경朴受瓊, 김관식金寬植 등 제씨라. 교사 제씨와 일반 학원이 열심 면강勉强하므로 해교該校 흥왕의 전망이 있다더라.[161]

남문 밖 자암 한양학교를 청년 유지有志들이 열심으로 보통학과를 교수하므로, 해동該洞의 유지 신사들이 이 학교를 확장하기로 발기하였다 하며, 이번 달 말 시험을 행하였는데, 갑甲 반은 양재용梁在溶, 한수만韓秀晩, 김석환金錫煥, 을乙 반은 유제영柳濟瑛, 이창교李昌敎, 추영창秋永昌 등이 우등이라 하니, 해교 확장함과 학도의 열심을 칭찬해 마지않노라.[162]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는 박용희朴容喜 씨가 남문 밖 자암 한양학교가 날로 성한다 함을 듣고, 종제從弟 박인희朴寅喜 씨와 더불어 해교에 찬조금 3원을 기부하였다니, 유학생의 넉넉치 않은 학자로 이렇게 찬조함은 양씨가 애국하는 정신으로 교육 열심에 동정을 표함이라더라.[163]

서서西署 남문 밖 자암 사립 한양학교의 창설한 원인을 들은 즉, 해동에 사는 전 첨지 김의현 씨가 가

161 《황성신문》 1906년 8월 7일.
162 《황성신문》 1906년 12월 10일.
163 《황성신문》 1907년 1월 30일.

옥을 빌려주어 유지들의 열심으로 조직하였는데, 최근 교육제도가 정익구정精益求精하므로 해동 몽양蒙養이 무불입학無不入學이라더라.[164]

위 기사의 한양학교 사례에서 지역 유지들의 협력으로 학교가 창설·확장되고, 학교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사람도 "애국하는 정신"으로 찬조금을 내어 기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양학교는 1907년 교사를 제공했던 김의현이 마음을 바꾸어 학생들을 축출하자 이후 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문을 닫게 되었는데,[165] 1년여 만에 다시 복교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학교의 폐지를 개탄히 여겨" 자신의 건물을 빌려주고 지원한 개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166] 이와 같이 교육구국운동을 지도하거나 학교 설립을 위해 사재를 투입한 애국계몽 운동가와 일부 자산가, 지역 유지, 이를 지지하고 모금에 동참한 일반 대중 모두가 사립학교 설립·운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계몽운동 단체가 설립한 학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민교육회의 보광학교, 한남학교, 국민사범학교 설립을 들 수 있다. 국민교육회는 1904년 8월 24일 이준李儁, 이원긍李源兢, 유성준兪星濬, 전덕기全德基, 김정식金貞植, 박정동朴晶東, 유치형兪致衡 등이 서울에서 창립했다. 국민교육회의 사무소는 창덕궁 돈화문 앞에 있었다. 국민교육회는 단체의 목적이 "일반 국민의 교육을 면려하여 지식을 발달케 하되 완고의 폐습을 혁거하고 유신의 규모를 확립"(국민교육회 규칙대요 제2조)하는 것이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① 학교를 광설廣設할 것, ② 문명적 학문에 응용할 서적을 편집하며 혹 번역하여 발간할 것, ③ 본국사기本國史記와 지지와 고금 명인전을 취집聚集하고 광포廣布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고동鼓動하고 원기를 배양할 것, ④ 본회 회보를 매월 혹은 매 주일에 발간할 것"(국민교육회 규칙대요 제3조) 등 4가지 사항에 종사한다고 밝혔다. 즉 학교 설립과 서적 편찬을 주 활동으로 하였다.

164 《대한매일신보(국한문)》 1907년 2월 24일.

165 《대한매일신보(국한문)》 1907년 6월 13일.

166 《대한매일신보(국한문)》 1908년 8월 19일.

보광학교는 정부와 부지를 교섭하여 돈화문 밖 운니동에서 야학으로 1905년 9월 1일 개교했고, 1년 뒤인 1906년 9월 주학晝學으로 확장했다. 당시 학생 모집 광고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보통학교 학과목인 수신, 국어, 역사, 지지, 산술, 일어, 체조, 도화, 이과 외에 교육학, 작문, 법학, 경제학도 포함되었다. 수업기한은 3학기, 입학 가능 연령은 18~35세였다. 학과목과 입학 가능 연령으로 볼 때, 보광학교에서는 중등 이상 수준의 교육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1907년 1년 과정의 일어전문과를 특설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하였다. 이는 현재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1909년에도 학생 모집 광고가 확인된다.

보광학교에서는 학생 교육 외에도 매주 토요일마다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사립학교에서 토론회, 연설회 등을 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1902~1903년 한성사범학교를 다녔던 김창제金昶濟는 한성사범학교 재학 중 토요일마다 흥화학교興和學校의 토론회에 참석하였던 경험을 "책상을 치며 노후怒吼하고 고언장담高言壯談과 정치의 부패를 매도하고 정치변혁을 고취하여, 어떤 때는 토론회 중에 너무 과격하여 이른바 정치개혁의 불온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몇 사람이 징역을 받은 일도 있었다."라고 회고한 바 있다. 보광학교 토론회에서도 참가자들이 시국과 정세를 이야기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국민사범학교는 민간에서 설립한 최초의 사범학교였다. 1905년 11월 독서, 산술, 작문 등의 입학시험을 통해 70명의 청년을 모집하였으며, 학과목은 성경, 내외국지지, 역사, 물리, 산술, 문전, 국가학, 교육학, 도화, 작문, 체조 등이었다.

국민교육회의 사업을 인계받아 1907년 11월 29일 흥사단도 교육활동에 주력하였다. 흥사단은 교육을 담당할 교사 양성을 시급한 과제로 삼고, 사범학교 설립을 우선 추진하였다. 흥사단 회관은 현재의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역에 있던 수진궁을 빌려 사용했는데, 흥사단은 1908년 8월 회관을 교사로 삼아 융희학교를 설립했다. 1908년 8월 6일자 《황성신문》에 게재된 학생 모집 광고를 보면, 작문과 내국역사지지, 산술로 입학시험을 치르며, 입학 자격은 20~40세, 수업연한은 2년, 학과목은 수신, 국어, 내외지지역사, 물리, 화학, 심리학, 소학교수법, 토론이었다. 국권 피탈 직후인 1910년 9월 융희학교는 기호흥학회가 1908년 경복궁 건춘문 밖의 회관에 설립

한 기호학교와 통합하여 중앙학교가 되었는데, 이 중앙학교가 현재 서울 계동의 중앙중고등학교이다.

이 시기에 설립된 사립학교에는 소학교뿐만 아니라, 중등·고등 수준 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었다. 앞에서 사례로 제시한 한양학교도 1908년 복교 후에는 입학생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본과와 6개월 속성과정인 측량과 2과로 구성하여 본과는 부기, 산술, 일어를, 측량과는 측량, 산술을 교육했다는 점에서 중등 수준의 학교라고 할 수 있다. 고등 수준의 학교로는 '전문'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붙여진 보성전문학교 외에 전문학교라는 명칭은 아니더라도 특정 학과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노백린盧伯麟, 장지연張志淵, 정인호鄭寅琥, 이상익李相益, 정호면鄭鎬冕, 김대집金大集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공수학교工數學校, 이상설李相卨의 동생 이상익李相益이 일본의 도쿄물리학교(현 도쿄 이과대학)를 모델로 설립한 산술전문학교를 들 수 있다. 이들 학교는 자강을 위해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면 수학과 과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전문학교 설립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의 산물이었다. 고종의 계비 엄귀비嚴貴妃의 형제인 엄주익嚴柱益이 창설한 양정의숙은 보성전문학교, 관립 법관양성소와 함께 대표적인 법률가 양성기관으로 성장했다. 이들 세 법률 관련 전문학교 학생들은 자주 회합하여 토론회를 열고 각종 법률문제를 토론하며 법률가로서 역량을 향상하고 시국 문제에 공동 대처했다. 1906년 11월 설립된 돈명의숙도 중등과 이상 졸업을 입학 자격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문학교라고 할 수 있다. 돈명의숙은 정치학, 경제학, 법률학 등을 교육했는데, 1909년 재정난으로 폐교되자 보성전문학교에서 재학생들을 수용했다.

다음 박은식의 글에서 보듯이, 이 시기에는 학교 설립만큼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 금일 교육방침에 대하여 가장 급무는 사범 양성이라. 대저 학생은 국가의 기초요, 몽학蒙學은 학생의 기초라. 몽학이 없으면 완전한 학생이 없을 것이요, 완전한 학생이 없으면 어찌 완전한 국가가 있으리오. 오직 이 완전한 몽학을 건립하고자 할진대, 반드시 우선 완전한 사범을 배양할지라. 세계 각국의 교육사를 보건대, 모두 그 사범학교로써 군학群學의 근기根基를 삼았고 …… 소학교의 교사는 즉



숙명고등여학교 제1회 졸업식(1910년 4월 5일) 기념 촬영(《숙명70년사》)

사범학교의 생도라. 수년 이후에는 소학의 생도가 올라가 중학·대학의 생도가 되고, 소학의 교사가 올라가 중학·대학의 교사가 되었으니 따라서 사범학교는 군학의 근기라. 금일 우리 대한 학계는 과거의 부허부실浮虛不實하고 고루 미개한 풍기 속에 있으니, 소위 몽학 숙사塾師의 학문은 천자문과 동몽선습과 사략·통감 등에 불과하고, 낫다는 자 역시 소학과 맹자 수 종류의 글뿐이라. 세계 각국의 역사도 모르고, 산술도 이해하지 못하며, 5주洲의 명칭도 알지 못하고 8성星의 위치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 …… 우리 대한의 현 상황은 비록 전국 인사가 일제히 흥기하여 학교를 세우지 않은 곳이 없고 배우기 바라지 않는 자가 없으나 사범의 결핍으로 인하여 인재의 작성과 문화의 발달하는 실효는 거둘 수 없으니 금일 교육의 급무가 이보다 급한 것이 무엇이겠는가.[167]

신학문을 알지 못하는 교사가 신교육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학 지식만으로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전국 각지의 지방관과 지역민이 협력하여 또는 계몽운동 단체들이 사범학교를 설립

167 박은식, 〈사범양성의 급무〉, 《서우》 5, 1907년 4월.

하거나 기존의 학교에 사범과, 사범속성과 등을 부설하여 교원 양성교육을 실행하였다. 서울에 있던 사립 사범학교로는 앞에서 제시한 국민교육회와 흥사단이 각각 설립한 국민사범학교와 융희학교, 개신교계 미션스쿨인 경신학교에서 운영한 경신학교 사범강습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엄귀비嚴貴妃가 1906년 설립한 진명여학교와 명신여학교(1909년 숙명고등여학교로 개칭), 조동식이 1908년 설립한 동원여자의숙(동덕여자의숙과 통합하여 동덕여학교로 변경) 등의 여학교도 설립되었다.

2) 사립학교의 교육 실천

학교를 세우고, 교사가 되어 가르치고, 학생이 되어 배우는 것을 교육구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만규의 표현과 같이 "황무지를 다듬는 개척자의 정신과 적진을 향하는 군인의 기백" 즉 민족적·애국적 열의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표 6]에서 보듯이 통감부는 고등학교, 사범학교는 학부의 인가를 받은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보통학교용으로 《수신서》《국어독본》《일어독본》《한문독본》《이과서》《도화임본》《습자첩》《산술서》 등의 교과서를 직접 편찬하였다. 《국어독본》과 《일어독본》《수신서》에는 한국사, 한국지리 관련 내용도 서술되었는데, 한국에 대하여 문약하고 독립심이 없는 작고 약한 나라,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 목욕을 적게 한다, 청결하지 않다, 근대에 들어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 일본 덕분에 중국의 속국 취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등의 부정적인 기술과 삽화, 통감부가 설치된 후 한국의 정치·교육·농상공업이 점차 개진開進하고 있다고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기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서가 교재로 활용되면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본에 대해서는 긍정적·순응적 인식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1909년 통감부는 보통학교에서는 학부 편찬 및 인가를 받은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했던 규정을 학부 편찬 교과서가 없는 경우에만 인가를 받아 다른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과서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다음과 같은 한국인 식자층의 비판은 통감부의 교과서 편찬의 의도와 예상되는 폐해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었다.

> 독립 자존하는 기상을 잠자게 해 마침내 국민에게 국민적 정신을 감멸滅滅하고 그 대신에 일본에 복종하는 일본적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각 소학교에서 일어와 일어독본을 교수케 함은 우리나라 아동들을 일본 정신으로 기화케 함이로다. 결국 이렇게 되니 학교는 노예 제조장에 지나지 않고 학도는 일본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168]

통감부의 교과서 편찬을 비판하는 한편으로, 민간에서 많은 교과서가 편찬·발행되었고 사립학교에서 이 교과서들을 사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채玄采가 저술·출판한 《유년필독》(1907), 휘문의숙 발행 《고등소학독본》(1906), 정인호가 편찬한 《최신초등소학》(1908)을 들 수 있다. 세 교과서 모두 국권 피탈 직후인 1910년 10월 26일 발행 금지 처분을 받았다.

소학교용 교과서 《유년필독》은 4권 총 132개 단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단원이 41개, 21명의 인물을 다루고 있다. 등장하는 인물은 을지문덕, 양만춘, 계백, 김유신, 서희, 강감찬, 정몽주, 이순신, 김덕령, 임경업 등 구국의 영웅이나 명장, 충신이 대부분이다. 〈독립가〉라는 제목의 단원을 3과로 구성하여 "독립하세 독립하세 우리 청춘소년 독립하세"를 반복하며 애국심·독립심을 고취하는 창가를 수록했고, 〈유태인과 폴란드 국민〉 단원은 유태인과 폴란드의 망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동포는 마음을 합쳐 협력해 국가를 보존하고 지킵시다."라고 국권 수호 의지를 고취하였다.



《유년필독》을 풀이한
현채의 《유년필독석의》(국립중앙도서관)

《고등소학독본》은 2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아세아주〉 단원에서 아시아에 대해 최근 서구의 침략으로 인도 등 나라는 모두 없어지고 한국과 지나,

168 김대희, 《이십세기 조선론》, 1907, 65쪽.

일본만이 남아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한국도 현금 간위艱危에 극極하니 노력할지어다 청년아"라는 기술, 그 외 〈국가〉 〈인민〉 〈대한〉 〈애국심〉 〈애국의 실實〉 〈충의〉 〈독립〉 등의 단원 제목에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최신초등소학》도 애국적 색채가 분명한 교과서이다. 예를 들면 《최신초등소학》에는 운동회를 다룬 단원이 있다. 당시 사립학교 운동회는 신체활동과 놀이, 학습이 융합되는 장이자 군사훈련의 기회였고, 여러 학교가 함께 개최하는 연합운동회로 확대되어 계몽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자리가 되었다. 통감부 주도로 편찬된 《국어독본》의 〈운동회〉 단원에는 "운동장이나 운동회에서는 체조를 해야 한다."라든가, "운동회는 남자의 활발한 행위로 할 것이오, 결코 망사妄邪한 행동은 하지 못할 것" 등 사립학교의 운동회를 경계하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최신초등소학》의 〈운동〉 〈줄다리기〉 〈학도의 체조〉 등 운동회를 다룬 3개의 단원은 "서서 애국가를 부르니 과연 대한국의 문명기상이올시다."라는 서술, 애국적인 가사의 운동가, 학생이 대열을 맞추어 행진하는 삽화를 수록하고 있다.

《최신초등소학》은 운동회 외에도 〈걸음[步]〉의 칼과 태극기를 든 학도 대열 삽화와 "동자군도 한번 싸운다 하니, 참 용하다."라는 기술, 〈문명한 기상〉의 "학도의 정신을 저대로만 배양하면 애국사상 거기 있고, 부국강병 거기 있어 저 학도의 어깨마다 대한 강토를 담부擔負하였으니 그것이 문명기상이올시다."라는 기술과 군대 삽화, 〈아동의 의무〉의 "애국사상 잊지 않고 부국강병 힘을 써서 동서양에 제일 됨이 우리 의무 아닌가."라는 기술 등 학생의 애국심과 저항의지를 고취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인호가 편찬한 《최신초등소학》의 줄다리기 그림과 설명글(국립중앙도서관)

당시 많은 사립학교가 이러한 교과서를 활용하며 구국운동으로서의 교육을 실천했다. 통감부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근일 교과서 중에 정치의 의미를 포함한 것이 많음은 한번 보고 쉽게 알 바인 즉, 우리나라 사람이 정치와 교육의 구별을 분명히 알지 못함을 가히 증거하겠고 …… 특히 수신과 국어와 한문과 역사 등 교과서에서 이러한 것을 발견하겠은 즉, 이런 교과서에 드러난 정치 사항을 들어 말할진대, 대략 다음 아홉 가지로 구별된다.

1.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을 절통하게 의론하는 것
2. 과격한 문자를 쓰고 독립을 말하여 나라의 시세 형편을 파괴하려 하는 정신을 고취하는 것
3. 외국 일과 전례를 이용하여 본국의 시국 형편을 비평하는 것
4. 말을 공교하게 하여 국가의 시국 쟁형爭衡을 비평하는 것
5. 국가의 의론과 의무의 의론을 게재하여 불온한 언사를 쓰는 것
6. 편협한 애국심을 말하는 것
7. 일본과 다른 외국과 관계가 있는 역사나 사실 중에 장렬한 인물을 과장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은연중에 일본과 다른 외국에 대하여 대적하는 마음을 고취하는 것
8. 본국에 있는 언어와 풍속과 습관을 유지하자고, 외국을 본받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하여 외국을 배척하는 사상을 고취하는 것

이상 여러 가지 정치의 사항도 예를 들어 말한즉,

1. 자주독립을 말하여 국가의 시국 정형을 파괴하기로 주장을 삼은 것
2. 안과 밖으로 일본을 배척하는 사상을 고동하여 한일 양국의 친한 교정을 해롭게 하는 것
3. 편협한 애국심을 토로해서 자제를 그르칠 염려가 있는 것[169]

수신, 국어, 한문, 역사 교과서가 정치와 교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데, 저들이 제시한 9가지 "정치 사항"을 통해 오히려 당시 사립학교의 애국적·민족적 교육내용과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169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14일.

3) 학교 설립에서 교육자치와 의무교육으로

앞에서 인용한 〈화동학교 취지서〉에는 "다행히도 명 군주께서 크게 뜻을 일으키고 내탕고에서 자금을 내려 수도에서부터 시골까지 학교를 널리 세우게" 했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고종의 〈흥학 조칙〉과 정부의 흥학 정책을 가리킨다. 1906년 3월 26일 발표된 〈흥학 조칙〉은 지방관의 흥학 책임을 강조하고 부형의 자제 교육을 의무로 강제하는, 즉 의무교육을 제시하였다.

> 삼대三代 이후로 인재를 교육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지 않은 적이 없으니, 상庠과 서序와 학學과 교校를 설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대체로 학교가 설립돼야 인재가 양성되고, 인재가 양성돼야 다스림과 교화가 흥기하는 만큼, 나라에 사람을 가르치는 법이 크게 갖추어져 여항閭巷의 백성들도 배우지 않는 자가 없으면 삼대처럼 문채文彩가 날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침체되고 해이해져서 정사의 방도가 밝지 못하고 나라가 진흥하지 못하고 있다. 돌아보건대 오늘날의 급선무는 오직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양성하는 길만이 밭을 일구고 재물을 불리는 도구가 될 것이다. 유학을 닦은 백성들을 몰아다가 그들로 하여금 책을 끼고 학교에 들어가게 한다면 일 년도 되기 전에 그 공효가 반드시 열국列國보다 배로 나타날 것이다. 학부에서 학교를 널리 설치하는 한편 지방의 각 부와 각 군에서도 학교의 설립에 대해 특별히 신칙하고 마음을 다해 가르치는 방도를 강구하게 하도록 하라. 학업이 성취되기를 기다려 조정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아서 등용할 것이다. 자제가 있는데도 가르치지 않는 집안에 대해서는 그 부형들에게 죄를 논할 것이며, 혹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는 자제들에 대해서도 일체 죄를 논할 것이다.[170]

1906년 3월 24일자 《대한매일신보(국한문)》에도 "학부에서 장차 강제교육을 실시한다 하니, 강제교육이란 것은 전국의 남녀·귀천을 물론하고 입학 연령이 되었는데 입학하지 아니하는 아동이 있으면 그 부형을 처벌함이니, 금일 한국교육이 강제규모强制規模가 아니면 전국 아동으로 하여금 일률 입학하게 하기 불가능하니, 무릇

170 《고종실록》 권47, 고종 43년 3월 26일.

강제 두 자는 천하의 악정이지만 교육에서는 아무쪼록 강제로 실시하여 학업이 진흥하기를 바라노라."[171]라는 〈흥학 조칙〉을 지지하는 기사가 실렸다. 당시 의무교육 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1906년 고종 황제가 내린 〈흥학 조칙〉

일찍이 1896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학교의 설립을 주도하며 교육운동에 앞장선 이강호李康浩는 1904년 다음과 같이 서울과 지방의 소학교 설립·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172]

이강호의 제안은 교육 구역을 획정하여 사립 심상소학교를 설립하고, 학교 설립·운영비를 지역민들이 호별 등급에 따라 분담하며 학교 설립 구역에서 공천한 학무원 등이 학교 운영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점 등 실질적인 교육자치 방안이었다. 여기서 '사립'이란 곧 교육자치에 기반한 지역 단위의 공립 또는 민립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이강호의 제안은 이후 교육구국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교육자치·의무교육안의 기반이 되었다.[173]

1906년 8월, 대한자강회는 정부에 〈의무교육 조례 대요〉를 건의했다. 대한자강회 의무교육안은 정부 주도로 의무교육을 전국에 일제히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지역부터 민간에서 자치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령을 공포해 달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의무교육령의 주요 내용은 남녀 만 7~15세를 학령으로 정하고, 처음 5년을 의무교육 연한으로 하며, 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학교 설립·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71 《대한매일신보(국한문)》 1906년 3월 24일.

172 《황성신문》 1904년 5월 11·12일.

173 구희진, 〈한말 교원 이강호와 근대교육의 험로〉, 《전북사학》 47, 2015, 167쪽.

[표 8] 이강호가 제안한 소학교 설립·운영 방안

설립	• 심상소학교는 관립을 폐지하고, 기존 심상소학교는 관립고등소학교로 함 • 빈부에 따라 200~300호당 사립 심상소학교 1교 설립 • 학교 설치 구역은 학부, 한성부, 경무청에서 협의하여 정함
운영	• 학무원, 장재원(掌財員), 사무원 각 1명을 동중(洞中) 명예로 공천하여 재정 운영 등 일체의 서무를 담당케 함 • 일체 학비는 동의(洞議)로 빈부에 따라 5등으로 나누어 각호가 부담함 • 학비는 교사(校舍), 서책, 기구에 우선 사용하고, 교사와 사환 월급, 지필묵비, 연료비, 서적비, 비품비 등에 충당
취학	• 학령은 8세 이상 • 부호가에서 자제를 취학시키지 않으면 벌금(1등 학비 10배) 징수 • 10세 이상 20세 이하인 인민이 실업이 없고 취학하지 않는 경우, 학자비를 매월 2배 징수
교육과정	관립심상소학교 과정을 따름
교사	• 보·학부 규제를 따라 학부 시험을 거쳐 임용 • 사범학교, 외국학교 졸업생은 무시험 임용

1. 적당한 행정구역을 일 학구로 하고 구립소학교를 설치함.
2. 구립소학교의 설비와 유지할 경용經用은 구내 주민의 부담으로 함. 단 경용의 부담은 자녀의 취학·불취학을 가리지 않음.
3. 구내 주민은 구마다 20인 이내의 학무위원을 선거해 소학교에 관한 교과서 선정과 기타 일체 사무를 위임함.
4. 학무위원은 구내 주민의 빈부 등급을 정해 학교 경용의 부과징수를 사장司掌함.

적당한 행정구역을 하나의 학구로 설정하고 구 단위로 소학교를 설립하며, 구립소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구내 주민들의 갹출로 마련하고, 구에서 선출되는 20명 이내의 학무위원이 중심이 되어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구국운동은 학교 설립 차원을 넘어 교육자치와 의무교육을 지향하였다.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의무교육 방안이 제시되었고,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구역 내 학령아동을 의무적으로 취학시키며,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이 학교 설립·운영 경비를 분담하고 구에서 선출한 대표들이 학교 운영을 맡는다는 교육자치 구상은 대체로 동일하였다. 이러한 교육자치에 기반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는 재원의 지역적 공공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관·공

립학교, 교단의 자금에 의존하는 종교계 학교, 개인이 사재를 내어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 등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학교를 '공립형 민립학교' 또는 '민립형 공립학교'라고 하는 이유이다.

학교를 개설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개교 후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에서 사례로 제시한 한양학교도 교사를 제공한 자산가가 지원을 중단하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보성전문학교는 고종이 보성이란 교명을 내리고 많은 내탕금을 내어 설립을 지원한 학교였는데, 통감부가 황실 재정을 장악하여 더 이상 황실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며 위기를 겪었다. 공립형 민립학교는 황실의 특별 하사금이나 정부의 보조금, 자산가의 기부 등에 의지하지 않고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서 교육비를 충당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다.

그러나 통감부가 한국 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교육자치에 기반한 의무교육이 법제화되기는 어려웠고, 민간에서 교육운동의 차원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의 경우 1908~1909년 서울의 각 지역에 조직된 자치단체가 관내 주민의 의무적 갹출을 통해 사립학교를 원조하거나 운영하였다. 예를 들면 한성부 중부의 정선방, 경행방 인사들이 조직한 정경민단은 1908년 11월 폐지 위기에 처한 보광학교를 인계받았다.[174] 또한 광통방회는 홍성학교를, 관진방회는 중교의숙을, 북삼방민단은 청풍학교를, 장통방회는 파성학교를, 훈도방회는 진명여학교를, 인평방회는 인평학교를 담당하였다. 서대문 밖 팔동, 동막동, 광희문동, 앵각동, 가회동, 안국동 등의 주민들도 의무교육회를 조직하고 사립학교 경영에 참여하였다.[175]

174 《황성신문》 1908년 11월 3일; 《황성신문》 1908년 11월 21일.

175 《기호흥학회월보》 1, 2, 4, 6호, 1908년 8, 9, 11월, 1909년 1월.

3. 통감부의 사립학교 통제와 교육의 부침

통감부 설치 이후 사립학교 설립 운동이 의무교육·교육자치라는 국민교육방안의 실천이자 교육구국운동으로 전개되자, 통감부는 [표 9]와 같은 각종 법령을 제정·적용하여 사립학교를 억압하는 한편 한국의 교육을 관·공립학교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였다.

[표 9] 통감부 설치 후 사립학교 통제 관련 법령(1908~1910)

법령	주요 내용
〈학무위원규정준칙〉 (1908.7.2. 학부 훈령 제66호)	• 관공립보통학교 1교당 7인 이하 • 임기 2년, 명예직 • 관찰사 및 한성부윤 촉탁 • 관공립보통학교에 대해 입학 권유, 출석 독촉, 설비, 기타 보통교육 장려에 관한 사항 자문
〈사립학교령〉 (1908.8.26. 칙령 제62호)	• 사립학교 설립 시 학부대신의 인가 필요 – 학교의 목적·명칭·위치, 학칙, 校地·校舍의 평면도, 1개년 수지 예산, 유지 방법, 설립자·학교장·교원 이력서, 교과용 도서명을 갖추어 인가 신청 • 사립학교 교명 앞에 '사립' 병기 • 교과용 도서는 학부 편찬 또는 학부 검정 도서 사용. 이외의 도서 사용 시 학부대신의 인가 필요 •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 자 규정 – 금고 이상 형에 처해졌던 자, 징계면관 후 2개년이 지나지 않은 자, 교원허장 환수의 처분 후 2개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행 불량으로 인정된 자 • 학부대신이 설비·수업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학부대신이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법령 규정에 위배될 때, 안녕질서를 교란하거나 또는 풍속을 壞亂할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상 규정의 수업을 하지 않을 때, 학부대신의 변경 명령에 위배될 때
〈학회령〉 (1908.8.26. 칙령 제63호)	• 명칭과 관계없이 "교육 학예의 보급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적용 • 학회 설립 시 학부대신의 인가 필요 – 목적, 명칭, 사업, 사무소 위치, 회원 자격, 입·퇴회에 관한 사항, 임원 선정에 관한 사항, 경비수지·자산에 관한 사항, 지회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인가 신청 • 회칙 변경 시 학부대신의 인가 필요 • 학회는 管利사업을 하거나 정사에 간섭할 수 없음. • 학부대신이 학회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학회령·설립인가 조건에 위배될 때, 기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사립학교보조규정〉 (1908.8.28. 학부령 제14호)	• 학부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사립학교에 대해 경비 보조(1년 이내) – 보통학교령의 설립·교과과정 규정을 준수한 학교, 상당한 교원과 설비를 갖춘 학교, 설립 후 2개년이 지난 학교에 한함 – 학교 연혁, 학생 정원 및 학년별 재적생·출석생 수, 졸업생 수 및 졸업 후 상황, 1개년 수지 예산, 유지 방법, 교육용 설비 등을 갖추어 보조 신청

법령	주요 내용
	– 보통학교 정도가 아닌 학교도 학부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 가능 • 학부대신이 보조를 폐지할 수 있음 – 사립학교보조규정 및 학부대신의 명령에 위배될 때, 학교의 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등
〈교과용도서검정규정〉 (1908.8.28. 학부령 제16호)	• 교원용 도서에도 적용 • 학부대신이 도서의 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규정에 위배한 때, 학부대신의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 검정을 받은 도서로 학부에 납부한 도서보다 지질 인쇄·제책이 조악한 때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 (1909.3.1. 각령 제2호)	• 금품 모집 시 내부대신의 허가 필요 – 목적, 방법, 모집할 구역·기한, 모집금품의 종류, 수량, 보관 방법, 사업 계획, 수지 예산, 사무소 소재지, 모집자·모집단체의 주소·직업·성명·연령을 갖추어 허가 신청 • 모집 폐지·중지·종료·변경 등은 내부대신에게 신고 • 내부대신이 모집 정지·제한·금지·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 – 내부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경찰관이 모집에 관한 장부·서류를 검열할 수 있음
〈출판법〉 (1909.3.2. 법률 제6호)	• 모든 문서, 도화 출판 시 내부대신의 허가 필요 • 허가를 받지 않고 출판한 저작자, 발행자 처벌 규정 • 내부대신이 출판법 위반 출판물의 발매·반포 금지, 압수 가능
〈지방비법〉 (1909.4.1. 법률 제12호)	• 한성부와 각도에 지방비 설치 • 지방비 지변 비목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 포함 • 부령 또는 도령으로 지방비 부과 규정을 정함 • 지방비에 충당할 부과금의 종류는 종래 지방에서 징수하던 諸稅 중에서 정함
〈향교재산관리규정〉 (1910.4.23. 학부령 제2호)	• 향교 재산은 관찰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부윤, 군수가 관리. 관찰사는 학부대신에게 보고 • 향교 재산은 방매·양도·교환·전당·낭비할 수 없음 • 향교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향교 소재 군 내의 공립학교나 관찰사가 지정한 학교의 경비에 사용함. 관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향교·문묘의 수리비 및 향사비에 사용 가능

첫째, 〈학무위원규정준칙〉은 관·공립보통학교별로 무보수 명예직 학무위원을 두도록 한 것으로, 교육구국운동의 교육자치에 대한 지향을 침해·차단하는 것이었다. 〈의무교육 조례 대요〉에서 학무위원은 학구 내 주민이 학교의 사무를 맡기기 위해 선거로 뽑는, 교육자치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자리였지만, 〈학무위원규정준칙〉에서는 아무 결정권 없이 자문에만 응하는, 지방관 촉탁의 명예직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학무위원의 역할에 관·공립보통학교 입학을 권유하고 출석을 독촉하는 일을 포함시켜서 학무위원의 개별적인 사립학교 관련 활동을 저해하려 하였다.

1908년 11월 〈학무위원규정준칙〉에 의해 처음 임명된 학무위원 중에는 각 지역에서 계몽운동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인물도 있었고, 발기인, 설립위원 등으로 사립학교 설립을 주도하거나 교장을 맡는 등 교육운동에 헌신한 인물도 있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관립재동보통학교 학무위원으로 임명된 원영의元泳義는 1894년 갑오 정부가 설립한 사범학교 출신의 명망이 높은 교육가였다. 원영의는 사범학교 졸업 후 서울의 관립소학교, 한성사범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다 1905년 10월 사직했다. 이후에는 휘문의숙 강사 겸 숙장, 보성중학교 교사, 《기호흥학회월보》 저술원, 《소년한반도》 찬술원 등으로 활동했고 대동교 운동에도 참여했다. 또한 《국조사》《소학한문독본》《고등소학독본》《신정동국역사》《국문과본》《세계식민사》《동가수신서》《초등작문법》 등의 교과서를 직접 저술하거나 편찬에 참여했다. 원영의는 사립학교교사친목회를 조직하여 회장을 맡을 정도로 명망이 높았다. 통감부는 학무위원 제도를 통해 그간 사립학교 설립·운영에 앞장서 온 명망 높은 교육운동가들을 관·공립보통학교에 협력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사립학교와 분리시키고 체제 내로 흡수하려 한 것이다.

둘째, 〈사립학교령〉은 사립학교에 대해 설립, 교과용 도서 사용, 교원, 설비, 수업,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가한 것이다. 〈사립학교령〉은 사립학교 설립을 허가제로 하고, 교명 앞에 '사립' 두 자를 병기하게 하여 관·공립학교와 구별짓고,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학부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기설 사립학교는 그 설립인가를 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본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령 규정에 준하여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는다."(17조)라는 부칙까지 두어, 모든 사립학교를 통제 대상으로 삼았다. 게다가 인가 신청은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관을 경유하도록 했는데(14조), 수천 원 이상의 기본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유지 방법이 견고하지 않다거나, 군내에 이미 학교가 많으니 또 설립할 필요가 없다거나, 학교의 내용이 불완전하니 다시 개선하여 완전히 된 후에 신청하라든가 등의 이유로 지방관청에서 인가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인가를 받지 못한 사립학교들은 〈사립학교령〉 규정에 따라 폐쇄되거나, 정식 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당, 야학, 강습소 등으

로 형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셋째, 〈학회령〉도 〈사립학교령〉과 마찬가지로 학회 설립을 허가제로 하고, "이미 설치한 학회는 그 설립인가와 관계없이 모두 본령을 시행하는 날부터 2개월 안에 본령 규정대로 학부대신에게 인가를 받을 것"(13조)이라는 부칙을 두어 모든 학회를 학부의 통제하에 두고자 한 것이다. 또한 학회를 "명칭과 관계없이 교육 학예의 보급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1조)라고 규정하고, "학회는 영리사업을 하거나 정사에 간섭할 수 없다."(5조), "본령이나 혹 설립인가의 조건에 위배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행위가 있을 때는 학부대신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8조)라는 규정을 두어 모든 계몽운동 단체와 학회의 교육운동을 철저히 봉쇄하려 하였다.

넷째, 〈사립학교보조규정〉은 일부 사립학교에 대해 1년 이내에 한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통감부는 보통학교를 관립보통학교, 갑종 공립보통학교, 보조지정보통학교, 을종 공립보통학교, 사립보통학교의 5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앞의 세 학교는 〈보통학교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교사와 설비, 일본인 교원, 학부 편찬 교과서 등을 갖춘 학교, 나머지 두 학교는 그렇지 못한 학교였다. 〈보통학교령〉에 따라 교육과정 등을 변경하고 보조를 받게 된 사립학교는 보조지정보통학교에 해당한다. 즉 사립학교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보통학교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니, 보조금을 명목으로 사립학교를 통제하려 한 것이다. 게다가 실제 보조는 규정과 달리 경비 보조가 아니라 학부에서 한국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 각각 1명씩을 파견하고 그들의 봉급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통감부는 1907년 〈보통학교령〉을 개정하여 보통학교 직원에 교감을 추가하고, 일본의 교원면허장을 가진 일본인 교원도 한국에서 정식 교원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08년부터 관·공립보통학교에 일본인 교감이 임명되었는데, 사립학교에 파견된 일본인 교원도 교감을 겸직하였다. 사립보조지정학교는 교장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인 교감이 학교를 주도하게 되었다.

다섯째, 〈교과용도서검정규정〉 제정은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교육내용에 대한 통제를 위한 것이다. 학부는 교과용 도서 심사 방침을 정치, 사회, 교육 세

방면으로 나누어 정했는데, 각 방면의 심사 방침은 다음과 같다.

[정치 방면]

(1) 한일관계 및 양국의 친교를 조해阻害 또는 비방하는 일이 없는가.

(2) 한국의 국시에 위려違戾하여 질서와 안녕을 해치거나 국리민복을 무시하는 듯한 언설이 없는가.

(3) 한국의 고유한 국정과 달리하는 듯한 기사가 없는가.

(4) 기교하고 편협한 애국심을 고취하는 일이 없는가.

(5) 배일사상을 고취하거나 특히 한국인에게 일본인 및 기타 외국인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하는 듯한 기사 또는 어조가 없는가.

(6) 기타 언론이 시사평론에 관계한 일이 없는가.

[사회 방면]

(1) 음란 혹은 풍속을 어지럽히는 듯한 언사나 기사가 없는가.

(2) 사회주의와 기타 사회평화를 해하는 듯한 기사가 없는가.

(3) 황당무계한 미신에 속한 듯한 기사가 없는가.

[교육 방면]

(1) 기재 사항에 오류가 없는가.

(2) 정도, 분량 및 재료의 선택은 교과서의 목적한 사건에 적당한가.

(3) 편술 방법이 이치에 맞는가.[176]

이 중 핵심은 정치 방면이었다. 통감부의 교과용 도서 심사에서 핵심은 교육에서 애국심, 민족의식을 제거하려는 데 있었다. 통감부는 정치 방면의 심사 결과에 대해 한국인이 발행한 교과서 특히 수신, 국어, 한문, 역사 교과서는 정치와 교육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사용해 온 많은 도서들을 '불온한

176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13일.

도서'라 하여 아예 검정 자체를 하지 않거나 통과시키지 않았다.

〈출판법〉도 교과용 도서에 대한 통제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출판법〉은 모든 문서·도화 출판 시 내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출판물의 발매·반포 금지와 압수는 물론 저작자, 발행자, 인쇄자 모두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출판법〉 시행 전 출판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발매·반포를 금지하고 압수할 수 있었다. 〈출판법〉 시행 직후인 1909년 5월 5일, 윤치호의 《우순소리》,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현채의 《중등교과 동국사략》 상·하, 《유년필독 석의釋義》 상·하, 《유년필독》 권1·2, 《월남망국사》, 김대희의 《20세기 조선론》, 리상익 역술·현공렴 발행 《월남망국》 등 11권이 "치안을 방해한다."라는 이유로 발매·반포 금지 처분을 당했는데,[177] 《중등교과 동국사략》《유년필독》은 사립학교에서 사용해 온 대표적인 교과용 도서였다.

여섯째,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 〈지방비법〉 〈향교재산관리규정〉 등은 사립학교의 재원 조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재정을 압박했다.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은 기부금품 모집 시 내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언제든 모집의 정지·제한·금지·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관련 장부나 서류를 검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부금품 모집을 사실상 경찰의 통제하에 두고 가능한 모집 허가를 내어주지 않거나, 허가해 주는 경우도 그 행정 처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모금을 통제하니, 학교 재정을 주로 지역민의 의연금에 의존해 온 사립학교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기부금품 모집 통제는 많은 사립학교들이 폐교된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국권 피탈 후에도 사립학교를 탄압하는 주요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지방비법〉은 한국의 지방 재원과 공공재산을 지방비에 편입시킴으로써 일제가 한국의 지방재정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제정된 것이다. 종래 국고에서 지급하

177 《구한국관보》 1909년 5월 5일.

던 지방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출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비의 징수는 일본인이 대부분 재임하고 있는 재무서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관찰사의 감독을 배제시켰으며, 한성부윤과 관찰사는 지방비의 세입세출결산을 내부대신에게 보고하고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178] 문제는 〈지방비법〉과 각 도의 〈지방비부과금규칙〉에 의해 종래 사립학교 재원으로 충당되어 온 시장세, 도축세, 포구의 구전 등 각종 명목의 잡세가 지방비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학교 설립을 주도하거나 사립학교 설립·운영에 적극 협력해 온 지방관들이 재량으로 각종 잡세를 사립학교 재정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향교재산관리규정〉은 향교재산의 양도, 교환, 사용을 금지하고, 군수는 향교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출납 장부를 작성하여 관찰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찰사는 학부대신에게 향교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로써 향교 자체의 토지가 사립학교 건물로 사용되거나 향교에서 나오는 수입을 사립학교의 재정으로 조달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통감부는 기부금, 지방의 잡세, 향교재산 등 사립학교의 재정 기반을 박탈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존립 자체를 붕괴시키고 한국인의 교육구국운동을 저지하려 하였다.

결국 많은 사립학교들은 통감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을 것인지, 공식적인 학교 제도 밖의 학교로 남을 것인지, 사라질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되었다.

178 김태웅, 《한국근대지방재정연구》, 아카넷, 2012, 371~385쪽.

제5장

일제강점기 경성의 교육

1895 사범학교, 관립한성사범학교로 개칭

1903 용산거류민단, 경성용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설립

1911 제1차 〈조선교육령〉 공포

1895 1900 1905 1910 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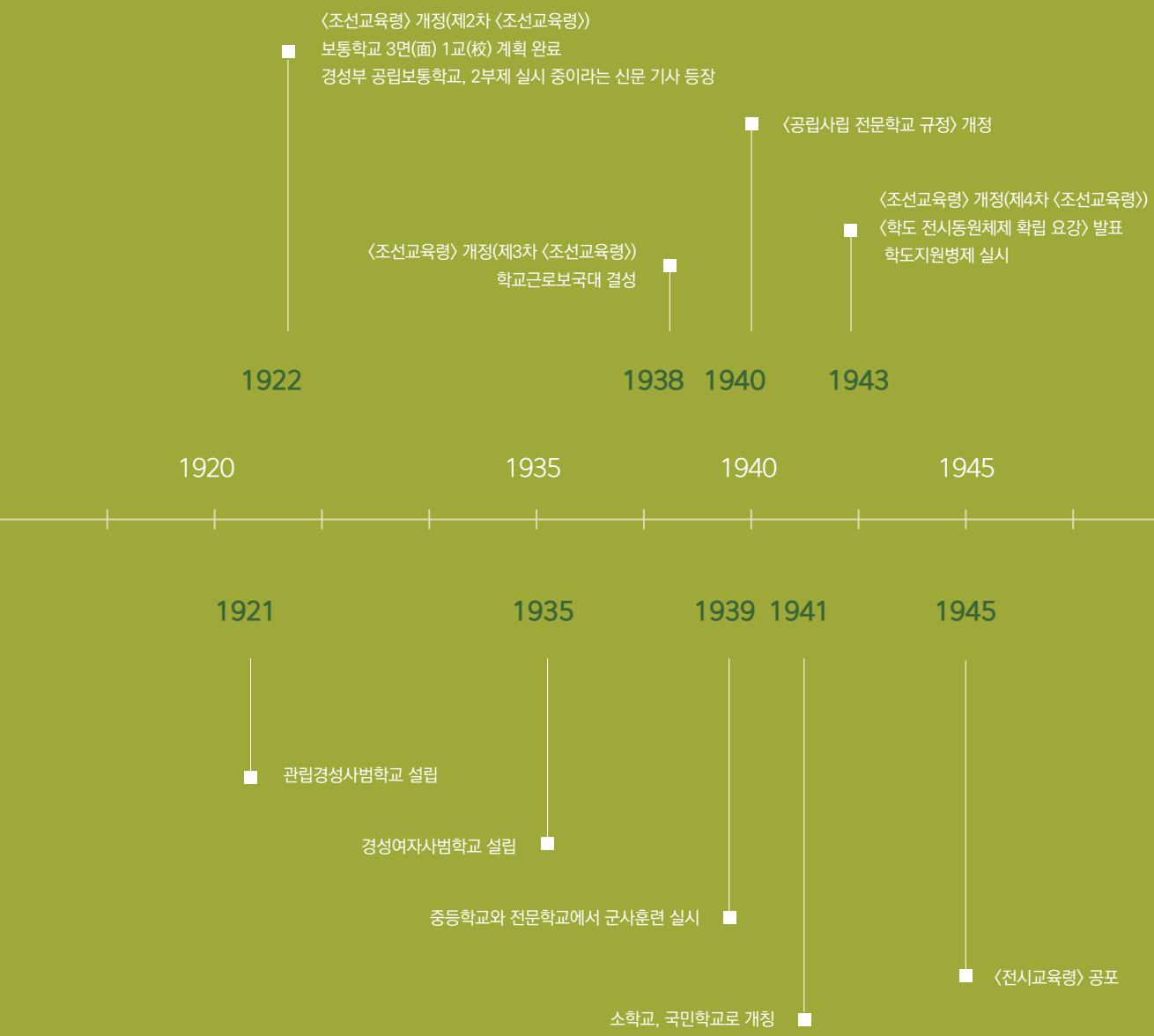
1889 일본 거류민단체, 경성일출공립심상소학교 설립

1909 경희궁 자리에 통감부중학교 설립
〈학교조합령〉 제정

제1절 1910년대 교육 차별 정책과 사립학교 통제

제2절 1920~1930년대 대학 설립과 식민지 교육체제의 형성

제3절 전시체제기 황국신민화 교육



제 1 절

1910년대 교육 차별 정책과 사립학교 통제

1. 제1차 〈조선교육령〉 반포와 내용

조선총독부는 1911년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 법령인 〈조선교육령〉을 제정·실시하였다. 이후 〈조선교육령〉은 1922년, 1938년, 1943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들을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제4차 〈조선교육령〉(이하, '〈교육령〉')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다. 제4차 〈교육령〉 이후에도 일제는 새로운 〈교육령〉을 실시했는데 1945년 5월의 〈전시교육령〉이 그것이었다.

한국인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하는 것도 일제의 한국 지배정책 중 중요한 부분이었다. 당시 일제의 교육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조선인'을 충량한 국민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일본인과 같은 도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조선인'은 반드시 일본어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선인' 교육제도는 일본인 교육제도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와 관련하여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이 제시한 해결책은 첫째, 한국인에게도 교육칙어敎育勅語의 취지를 기본으로 한 덕육德育 교육을 시행한다. 둘째,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배우도록 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 용어도 일본어로 한다. 셋째, 한국인 교육제도는 일본인 교육제도와 구별하고, '조선의 시세와 민도'에 따라서 점진주의적 교육을 시행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한 바탕 위에 제1차 〈교육령〉이 제정

되었는데[1]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2]

제1장 강령

제1조 조선에서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에 기초해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중략)……

제4조 교육은 크게 나누어서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5조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며 특히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실업교육은 농업·상업·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전문교육은 고등의 학술과 기예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교

제8조 보통학교는 아동에게 국민교육의 기초인 보통교육을 실행하는 곳으로서,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며 국어를 가르치고 도덕교육을 시행하며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여 그 생활에 필수적인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중략)……

제11조 고등보통학교는 남자에게 고등의 보통교육을 실행하는 곳으로서 상식을 기르고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도야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가르친다.

……(중략)……

제14조 관립 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 또는 교원속성과를 설치하여 보통학교의 교원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중략)……

제15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고등의 보통교육을 실행하는 곳으로서 부녀자의 덕행을 기르

1 교육사편찬회 편, 《(明治以降)教育制度發達史》 10, 문부성, 1938~1939, 60쪽.

2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9월 1일.

고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도야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가르친다.

……(중략)……

제19조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를 설치하여 보통학교의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중략)……

제20조 실업학교는 농업, 상업, 공업 등의 실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행하는 곳으로 한다.

……(중략)……

제25조 전문학교는 고등의 학술과 기예를 가르치는 곳으로 한다.

……(중략)……

제28조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설치 또는 폐지는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과목 및 그 과정, 직원, 교과서, 수업료에 관한 규정은 조선 총독이 정한다.

제30조 본 장에 게재된 이외의 학교에 관해서는 조선 총독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략)……

제1차 〈교육령〉 내용에서 교육 대상, 교육목적, 학제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차별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대상, 목적, 학제 부분에 관하여 서술하고,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차별 사항은 이 글 '2.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별적 교육 실시'에서 서술하였다.

먼저 제1차 〈교육령〉 적용 대상은 제1조에서 '조선의 조선인 교육은 본령에 의거한다.'라고 한 바와 같이 한국인이었다. 한국인과 재조선 일본인(이하, '일본인') 교육제도를 구분한다는 일제의 방침에 따라서 일본인 교육은 제1차 〈교육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3]

3 染川覺太郎, 《全南事情誌》 상, 전라남도 사정지 간행회, 1930, 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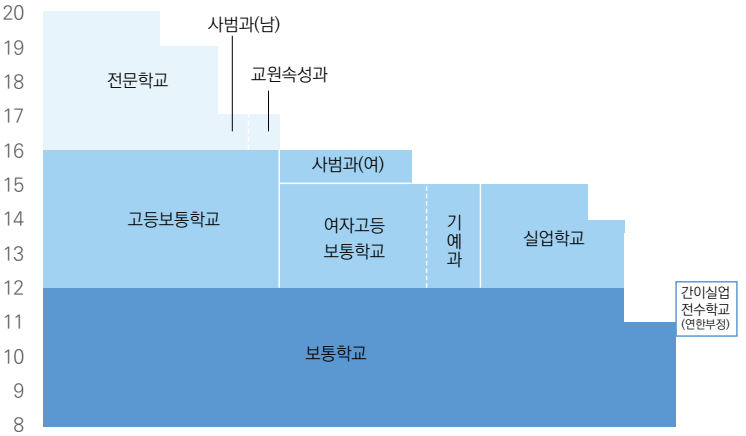
제1차 〈교육령〉 목적은 제2조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더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한국인 교육의 가장 기본적 목적이 '일본에 충실하는 국민'으로 만드는 데 있었다. 나아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통학교 또는 보통교육에서 '국어(일본어-필자 주)'를 보급하거나 가르칠 것을 규정하였다(제5조, 제8조). 실제로 보통학교 과정의 한국인 학생에게 일상에서 일본어를 사용하게 했는데, 이는 한국인 학생에게 일본의 정신 구조와 문화를 주입하는 기본적인 단계였다.

제1차 〈교육령〉에 따른 한국인 학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제도 즉 학제를 보면, 교육의 종류는 보통교육·실업교육·전문교육이었다. 교육기관 즉 학교 종류는 보통교육기관으로서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 등 3개 학교와 실업학교, 전문학교를 두도록 하였다. 실업학교는 농업학교·상업학교·공업학교·간이실업학교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문학교와 관련해서는 제1차 〈교육령〉을 공포한 날에 훈시 제86호 〈조선〈교육령〉 시행에 관한 유고〉를 발표하였다. 한국인 전문학교 교육에 관하여 "아직 보통교육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칙은 훗날로 넘긴다."[4]라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한국인의 보통교육 수준이 부족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고등 정도 수준의 교육 시행을 훗날로 미루었다. 조선총독부가 전문학교 설립을 허용한 것은 1915년 3월 〈전문교육에 관한 방침〉을 발표하고서였다.

학제상 수업연한을 보면 보통학교는 4년으로 정하되 지방별 실정에 맞추어 1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며, 입학 나이는 8세 이상이었다. 고등보통학교 수업연한은 4년이고, 입학 자격은 12세 이상의 남자였다. 입학 자격은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정하였다. 사범과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입학 자격은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였다. 교원속성과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이며 입학 자격은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 제2학년 과정을 수료한

4 정준영, 〈경성제국대학과 고등교육〉, 《서울2천년사》 29(일제강점기 서울의 교육과 문화), 서울역사편찬원, 2015, 126쪽.



[그림 1] 제1차 〈교육령〉 시기의 학제
출처: 김태웅, 《신식 소학교의 발생과 학생의 삶》, 서해문집, 2017, 308쪽.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정하였다.

일제는 제1차 〈교육령〉으로 대한제국 시기 학제보다 수업연한을 단축하였는데, 교육 수준을 낮추어 원칙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즉 한국인 학생들은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함으로써 전문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4년제 보통학교를 거쳐 2~3년제의 간이실업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 있었다. 식민지적 직업교육을 통하여 값싼 노동력을 양성하는 체계였다. 또한 사범학교를 고등보통학교에 부속시켜 교원과 같은 고급 인력양성을 제한하였다.

제1차 〈교육령〉에 따른 학제에서 교과목과 수업시간 구성을 보면, 기존에 외국어였던 일본어를 '국어'로 하고, 한국어를 '조선어'로 한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또한 조선어는 보통학교 교육 단계에서부터 독립된 과목이 아니었다. 기존의 《국어급한문國語及漢文》 과목을 《조선어급한문》으로 바꾸어 한국의 국어 지위를 잃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어급한문》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에서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였다. 제1차 〈교육령〉 시행기 보통학교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은 [표 1]과 같다.

수업시간에서도 《조선어급한문》의 보통학교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을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다. 반면에 '국어(일본어)' 시간은 학년별로 주당 6시간에서 10시간으로 크게 늘렸다. 《조선어급한문》 수업에서도 한문에 비중을 두어 한국어 지위를

[표 1] 보통학교 학년별·과목별 매주 수업시간(1911~1922)

교과목 / 학년	수신	조선어급 한문	일본어	산술	이과	체조	총 시간 수
1	1	6	10	6	–	3	26
2	1	6	10	6	–	3	26
3	1	5	10	6	2	3	27
4	1	5	10	6	2	3	27
계	4	22	40	24	4	12	106

출처: 김태완, 〈식민지 교육 정책의 변화〉, 《한국문화사》 2, 국사편찬위원회, 2005, 309쪽.

더 약화했다. 고등보통학교에서 《조선어급한문》의 주당 수업시간은 학년당 6시간씩에서 1~2학년은 4시간씩, 3~4학년은 3시간씩으로 크게 줄었다. '국어(일본어)' 시간은 그동안의 학년당 주당 6시간씩에서 1~2학년은 8시간씩, 3~4학년은 7시간씩으로 증가했다.

역사 과목에서 한국 부분을 모두 배제하였다. 한국어와 더불어 한국인의 국가·민족·역사 관련 의식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대신에 역사와 지리 과목에 일본 역사와 일본 지리를 본방역사本邦歷史와 본방지리本邦地理로 구성하여, 일본의 국체國體와 역사를 알리는 데 치중하였다. 일제가 한국인의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 과정에서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어 보급과 일본적 국민성'을 기르는 데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교육령〉 이후 〈보통학교규칙〉 〈고등보통학교규칙〉 등이 제정되었다. 〈보통학교규칙〉에 따라 경성부에 있던 8개의 관립보통학교가 경성부 담당의 공립으로 바뀌었다. 고등보통학교는 1924년 관립학교의 공립 전환 방침에 따라 경성부 담당 공립이 되었다.[5]

5 정준영, 앞의 글, 2015, 78쪽. 이 글에서는 문맥상 필요한 때에만 경성부 또는 경성으로 나머지는 서울로 표기하였다.

2.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별적 교육 실시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 학부學部와 일제 통감부에서 각각 운영하던 한국인과 일본인 교육을 통합하여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이라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통합은 행정적 체제에 지나지 않았으며 두 민족 간의 교육제도는 분리함으로써 차별적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 배경에 관하여 일제는 "'조선인'과 일본인은 사상·민도民度·언어·풍습 등 상황이 서로 적지 않게 다르다.'라거나 "'조선인'과 거류 일본인과의 다른 민도를 고려한다."라는 등으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의상' 또는 '각자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두 민족 간의 학제를 달리하는 분리교육정책을 실시하였다.[6]

1) 한국인과 일본인 학제 상의 차별적 교육 양상

제1차 〈교육령〉 제3조에서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 한다."라고 하여 일제는 한국교육정책 본질부터 차별교육을 규정하였다. 한국인에 대한 무시 또는 두 민족 교육에 관한 차별성은 1912년 4월 30일 신임 조선 총독이 일본인 교원을 훈시하였을 때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같은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 하고, 당시의 한국인이 "고상한 학문을 받을 정도로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수준이 다르며 특히 한국인의 수준이 낮아서 일본인과 교육제도 또는 정책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 한국인을 일본인보다 열등한 교육제도 내에 가두는 차별적 교육정책에 관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학제상의 차별 양상은 학교 명칭, 수업연한, 고등교육기관 진학, 전문학교, 교원양성기관 등 전반적인 교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

먼저 학교 명칭과 관련하여 제1차 〈교육령〉에서는 한국인의 보통교육을 실시

6 《조선총독부시정연보》 1910년, 1912년.

하는 학교 이름을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로 정하여, 일본인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인 소학교·중학교·고등여학교와 구분하였다.[7] 소학교는 1895년 조선 정부의 〈소학교령〉에 의하여, 중학교는 1899년 대한제국의 〈중학교관제〉에 따라 이미 사용하던 학교 명칭이었다. 고등여학교도 1908년의 〈고등여학교령〉에 따라 한국인 여성에게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명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통감부가 1906년 8월 〈보통학교령〉 〈고등학교령〉 등을 반포하면서 한국인의 소학교와 중학교를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로 변경하였다.

제1차 〈교육령〉에 따라서 한국인의 고등여학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로 바뀌었다. 일본의 교육기관 명칭들과 같다는 이유로 한국인 학교 이름이 그렇게 변경되었다.[8] 제1차 〈교육령〉에서 한국인 보통교육기관 이름에 '보통'을 붙이도록 한 것은 단순히 일본인 보통교육기관과의 구분을 위해서가 아닌, 한국인 학교 이름에서부터 차별정책을 반영한 결과였다.

[표 2] 일제강점기 한국인과 일본인 학교 이름

구분		제3차 〈교육령〉 시행 이전		제3차 〈교육령〉 시행 이후		
				제도	실제	
					한국인	일본인
초등		한국인	보통학교	소학교	원보통학교, 소학교 2부, 제2소학교, 국민학교 2부	소학교, 소학교 1부, 제1소학교, 국민학교 1부
		일본인	소학교			
중등	남	한국인	고등보통학교	중학교	원고등보통학교	중학교
		일본인	중학교			
	여	한국인	여자고등보통학교	고등여학교	원여자고등보통학교	고등여학교
		일본인	고등여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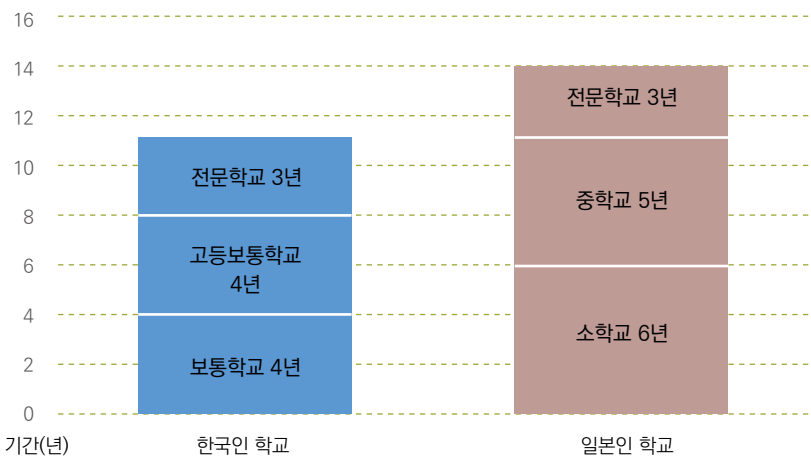
출처: 조미은, 《재조선 일본인의 학교와 학생: 개항기부터 일제시기까지》, 서해문집, 2018, 246쪽.

7 교육사편찬회 편, 앞의 책, 1938~1939, 9쪽; 善生永助, 《朝鮮の人口研究》, 1926(민속원, 1999년 영인), 158~159쪽.

8 조미은, 《재조선 일본인의 학교와 학생: 개항기부터 일제시기까지》, 서해문집, 2018, 76~77쪽.

1938년 제3차 〈교육령〉으로 두 민족의 학교급별 교육기관 이름은 제도적으로 소학교·중학교·고등여학교로 통일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제 말까지 관공서 자료나 《부산일보》 등 언론에서 두 민족의 학교 이름을 계속 구분해서 서술 또는 기록하였다. 한국인 소학교는 '소학교 2부' 또는 '제2소학교'로, 일본인 소학교는 '소학교 1부' 또는 '제1소학교'라고 하는 등과 같다. 원元고등보통학교 또는 원元여자고등보통학교는 원래 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라는 의미로서 원래 한국인 학교임을 드러내는 용어였다. 이처럼 두 민족 간의 학교 차별화 또는 서열화를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은 일제 말까지 계속되었다.

수업연한과 관련한 차별적 양상을 보면 한국인의 수업연한이 일본인보다 짧았다. 입학 나이에서부터 한국인 아이들은 8세가 되어서야 보통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일본인 아이들은 그보다 두 살 아래인 6세부터 소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수업연한에서는 한국인 보통학교는 4년제이고 일본인 소학교는 6년제였다. 중등 과정에서도 한국인 고등보통학교는 4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으로 하고, 일본인 중학교는 5년으로 규정하였다. 초등 및 중등을 합친 총 수업연한에서 한국인은 8년, 일본인은 11년으로 차별하였다.



[그림 2] 1910년대 한국인 재조선 일본인 학교급별 수업연한

출처: 조은진, 〈1910~1920년대 조선의 관립전문학교 학제 형성과 운영〉,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5, 28쪽.

수업연한의 차이는 한국인 자녀들의 교육 분량이 그만큼 열악했으며, 나아가 교육의 양적 질적 차이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수업연한의 부족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자격상 장애가 되어 결국 한국인 학생들에게 진학의 폭을 좁히는, 즉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이었다. 반면에 일본인들에게는 일본 본토와의 동등한 수업연한과 그에 따른 자격을 부여해주었다.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제공해준 것이다.

고등교육기관 진학 그리고 전문학교와 관련한 차별적 양상을 보면, 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이 진학할 수 있는 한국인 고등교육기관은 거의 부족했다. 일본인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고등보통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이 그러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한국인 학생이 중등 과정을 졸업하고 일본 본토에 있는 전문학교에 유학하려면 다시 일본인 중학교 과정에 편입하거나, 예비 과정인 전문학교 예과豫科에 진학하거나. 별도로 전문학교 입학자격검정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획득해야 했다.[9] 당시 한국 유학생들의 나이나 유학비용을 고려하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10년대 일본 유학 한국 학생 중 상당수는 비정규 과정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가 한국인 인문계 중등학교를 고등보통학교라고 한 것도 중등학교를 보통학교의 완결로 본 것[10]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1차 〈교육령〉 시행기에 고등보통학교는 실업교육 중심의 종결 교육기관으로서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실무자 양성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는 일제의 한국인에 관한 차별적 교육정책을 극명하게 보여준 예이다.[11]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제1차 〈교육령〉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하나로 전문학교를 규정했다. 하지만 그 규정에는 1903년 3월 26일 일본 본토에서 제정한 〈전문학교령專門學校令〉이 적용되지 않았다. 1915년 3월 24일에서야 〈전문학교규칙專門學校規則〉

9 조은진, 〈1910~1920년대 조선의 관립전문학교 학제 형성과 운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9쪽.

10 정준영, 앞의 글, 2015, 126쪽.

11 김태완, 앞의 글, 2005, 310쪽.

을 제정하였다. 한국에만 적용하는 별도의 전문학교 관련 법규로서 "조선인을 교육하는 전문학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령에 의한다."라고 하였다.[12]

즉 1910년대 한국의 전문학교와 일본 본토의 전문학교는 명칭만 같을 뿐 법규는 달랐다. 데라우치 총독도 1916년 4월 10일 〈전문학교 설치에 있어 학교장과 교관에 대한 훈시요령〉을 공포하여 한국의 전문학교는 "〈조선교육령〉에 규정된 것과 같이 조선인에 대해 전문의 학술·기예를 가르치며 …… 이를 전문학교라고 하지만, 바로 내지(일본 본토-필자 주)의 전문학교와 동일시 해서는 안 되며 …… 조선의 현상에 적절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한다."라고 훈시했다.[13]

당시 전문학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학하였지만, 입학지원자는 매년 감소하였다. 1916년부터 1918년까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한국인 입학지원자는 261명, 241명, 227명으로, 일본인 입학지원자는 65명, 58명, 42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일본인 입학지원자 중 입학시험의 불참·지원취소자도 34명, 20명, 10명이나 됐다.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관련하여 특히 일본인 불참·지원취소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인 학생들이 졸업 후 내지 개업 자격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었다. 이에 일제는 1918년 8월 13일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朝鮮總督府專門學校官制〉를 개정하여 "경성의학전문학교에 내지인 생도를 위해 특별의학과를 설치"하고, 이를 "내지의 〈전문학교령〉에 의한다."라고 했다.[14] 이에 따라 특별의학과 졸업자 즉 일본인은 일본 본토의 관립전문학교 졸업자와 같이 일본 내무성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었다.[15] 이는 한편으로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과정을 졸업한 한국인에게는 차별적인 결과를 부여하였다.

12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3월 24일.

13 김자중, 〈일제 식민지기 조선의 고등교육체제의 성격〉, 《한국교육사학》 38(3), 2016, 63쪽.

14 《조선총독부관보》 1918년 8월 19일.

15 김자중, 앞의 글, 2016, 64~65쪽.

2) 교육의 기회·여건 또는 교육 환경상의 차별적 교육 양상

교육의 기회·여건 또는 교육 환경상 차별 양상은 두 민족의 취학률, 1만 명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당 학생 수를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취학률에서 드러나는 차별적 양상을 보면 교육의 가장 초기 단계인 초등교육기관에서부터 취학률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한국인의 보통학교와 일본인의 소학교 취학률이다.

[표 3] 한국인 보통학교와 일본인 소학교 취학률(1912~1920)

(단위: %)

	보통학교			소학교		
	남 자 취학률	여 자 취학률	전 체 취학률	남 자 취학률	여 자 취학률	전 체 취학률
1912	3.7	0.4	2.1	95.2	95.3	95.4
1913	4.1	0.5	2.4	97.5	96.8	97.2
1914	4.6	0.5	2.6	96.3	95.9	96.2
1915	4.9	0.6	2.8	96.1	95.8	96.0
1916	5.5	0.7	3.1	97.0	96.3	96.6
1917	6.1	0.8	3.5	98.0	97.6	97.8
1918	6.4	1	3.8	97.7	97.9	97.8
1919	6.2	1	3.7	98.3	98.4	98.3
1920	7.4	1.2	4.4	98.9	91.0	98.8

출처: 1.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133쪽(보통학교 부분).
2.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2년.

비고: 1. 보통학교 취학률은 연도별로 한국인 전체 인구의 14.4%에 달하는 보통교육 대상 연령 인구 중에서 관립보통학교, 공립보통학교, 사립보통학교에 재학하는 한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백분율 수치.
2. 소학교 통계는 통계연보에 정리된 '내지인 학령아동' 통계 중에서 '취학 시기에 달한 자'의 취학률을 인용함. 통계연보에는 일본인 학령아동에 대한 취학률 관련 통계만 작성되어 있고 한국인 학령아동에 대한 취학률은 없음. 보통학교 취학률과 소학교 취학률 통계는 추산 방법상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한국인과 일본인 취학률 추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인용함.

한국인 보통학교 남녀 전체 취학률은 1912년 2.1%, 1920년 4.4%이다. 일본인 소학교 전체 취학률은 1912년도에 95.4%에서 출발하여 같은 해 한국인보다 45배나 높다. 1920년에는 약 99%로 일본인 학령아동들이 거의 취학하였다. 남녀별 취학률에서는 1912년 보통학교는 남자 3.7%, 여자 0.4%로 비율이 9:1이었으며, 1920년에

는 남자 7.4%, 여자 1.2%로 약 6:1로 양자 간의 차이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컸다. 그에 비해 소학교는 1912년부터 남자는 95.2% 여자는 95.4%로 거의 같았다 1920년에는 98.9% : 91.0%로 남자 취학률이 조금 높았으나 모두 계속 90%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일제가 한국에서는 일본 본토에서와 달리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조합 운영 등으로 일본인 소학교 취학률이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두 민족 간의 교육적 차별은 인구 대비 학생 수 양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취학률과 마찬가지로 교육 기회에서도 그만큼 차별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표 4]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총인구 대비 취학률과 두 민족의 인구 1만 명당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학교별 학생 수 비율이다.

[표 4] 학교급별 인구 1만 명당 학생 수 및 민족별 총인구 대비 학생 수 비율(1912~1920)

(단위: 명, %)

연도	학교급별 인구 1만 명당 학생 수						민족별 총학생 수/민족별 총인구 비율	
	초등교육 학교		중등교육 학교		고등교육 학교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1912	28.5	897.8	1.8	64.5	0.0	0.6	0.3	9.6
1913	31.3	917.4	2.1	70.6	0.1	1.0	0.3	9.9
1914	33.9	967.4	2.4	75.4	0.1	1.2	0.4	10.4
1915	38.0	1029.3	2.8	88.2	0.1	0.4	0.4	11.2
1916	41.5	1062.5	3.3	101.9	0.3	2.3	0.4	11.7
1917	45.5	1088.4	3.7	115.3	0.3	3.8	0.5	12.1
1918	48.0	1141.3	3.9	127.3	0.3	5.6	0.5	12.7
1919	48.0	1195.8	3.0	141.9	0.2	7.4	0.5	13.5
1920	63.5	1265.1	3.8	168.5	0.3	7.2	0.7	14.4

출처: 1. 표에서 '학교급별 인구 1만 명 당 학생 수'는 오성철의 앞의 책, 2000, 125쪽의 '[표 4-6] 학교급별 한국인/재조선 일본인 취학자: 1912~1942'에서 재편집함.
2.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2년.

비고: 1. 초등교육 학생 수는 관립보통학교·공립보통학교·사립보통학교 또는 각각에 해당하는 일본인 소학교 학생 수. 증등교육 학생 수는 공립 및 사립 남녀 고등보통학교 또는 각각에 해당하는 일본인 중학교, 관립·공립·사립의 실업학교, 공립 및 사립 실업보습학교, 관립 및 공립 사범학교, 임시교원양상소 등에 재학하는 학생 수. 고등교육 학생 수는 관립·공립·사립의 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 학생 수.
2. 일본인 학교에 재학하는 한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교에 재학하는 일본인 학생도 포함.
3. 민족별 총인구 대비 학생 총수 비율은 한국 인구수와 일본 인구수에 대한 초등교육기관·중등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의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 총수의 비율을 계산함.

인구 1만 명당 학교급별 학생 수에서 1912년 초등교육 학교를 보면 한국인은 약 28.5명이며 일본인은 약 897.8명으로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32배나 많았다. 1920년에는 한국인이 약 63.5명으로 1912년보다는 증가하지만, 여전히 일본인이 약 20배나 컸다. 일제 말인 1942년에도 두 민족 간의 차이는 크게 줄었지만 일본인이 2배 정도로 여전히 많았다.

중등교육 학교 인구 1만 명당 학교급별 학생 수를 보면 1912년 한국인은 약 1.8명인데 비해 일본인이 약 64.5명으로 약 36배였다. 1920년 한국인은 약 63.5명으로 1912년보다 증가하지만, 여전히 일본인이 약 20배 많았다. 1942년에는 초등교육 학교와 마찬가지로 양자 간의 차이는 좁아졌지만 일본인이 약 15배 많았다. 고등교육 학교는 1912년 한국인은 인구 1만 명당 한 명도 없고 일본인은 약 0.6명으로, 양자 간의 차이는 수치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바로 다음 해인 1913년에야 한국인은 0.1명이었으나 일본인은 그보다 10배나 많았다. 1920년에는 일본인이 약 7.2명으로 한국인 약 0.3명보다 약 24배였다. 그리고 1942년에는 일본인 학생은 약 33.7명으로 한국인 학생 약 1.8명보다 약 26배가 많았다.

이처럼 학교급별 1만 명당 학생 통계를 보면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적다. 특히 그러한 차이는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등의 상급학교로 갈수록 더 현격히 벌어진다. 시기적으로도 일제강점기 후반으로 갈수록 두 민족 간의 초등교육 학교 학생 수 차이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중등교육 학교와 고등교육 학교에서는 더 커졌다. 한국인을 위한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기관이 조금씩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초등교육과 비교해 볼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한국에서 일본인의 교육 기회는 적극적으로 확충하였지만, 한국인의 중등 및 고등교육 기회는 철저히 봉쇄한[16]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한국인 공립보통학교는 1912년도 한국인 공립보통학교는 37.4명이며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20년에는 41.9명이며, 1936년부터는 70명 이상

16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126~129쪽.

이나 된다. 그러나 일본인 공립소학교는 1912년에 37.5명으로 공립보통학교 상황과 거의 비슷했으며, 1920년에도 37.1명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공립소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았을 때인 1932~1935년에도 42명 정도였다. 1912년보다 5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서 공립보통학교에서 거의 2배 정도로 증가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다.

교사당 학생 수는 공립보통학교는 1912년 27.9명이며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20년에는 32.4명, 1938년부터는 70명 이상이 되고 1942년이 되면 74.8명에 이르렀다. 공립소학교는 1912년 31.7명으로 공립보통학교의 교사당 학생 수보다 4명 정도 많았다. 하지만 1920년에는 30.3명으로 오히려 조금 감소했으며, 교사당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때에도 37명을 넘지 않았다. 1942년 공립소학교의 교사당 학생 수는 36명으로 공립보통학교의 약 48%에 지나지 않았다.

3. 경성부 내 학교와 사립학교 통제

1) 1910년대 경성부 내 한국인 학교

일제강점기 한국에 있는 학교는 설립 또는 소속, 운영자에 따라 크게 관립·공립·사립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에서 새로이 설립한 관립 한국인 학교는 없다. 다만 관립한성고등학교, 관립한성고등여학교, 관립한성사범학교 부속보통학교 등과 같이 1910년 국권피탈 이전에 조선 또는 대한제국 정부에서 설립하거나 그 소속이던 학교가 조선총독부 소속으로 변경된 정도였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1911년 10월 〈공립보통학교 비용령〉을 제정하고 11월부터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학교를 설립하는 구역 내에 사는 한국인에게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서 공립보통학교 운영 경비를 국고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부府군郡·도島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공립보통학교 비용령〉에 따라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의 주요 재원은 보조금이나 '은사금', 향교 재산 수입 등이었다. 이 규칙은 당연히 서울에 소재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한국인 공립보통학교의 설립과 운영에도 적용되었다. 학교비와 관련된 한국인 학교 대부분은 오늘날 초등학교였으며,[17] 서울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1910~1920년 경성부 내 즉 서울에 존재하고 있던 한국인 학교는 언제, 누가, 어디에 설립하였으며, 어떠한 양상이었을까. 1910년대 서울에 있었던 학교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1910년대 서울에 있었던 학교에는 1910년 국권피탈 이전부터 운영되었거나, 그 이후에 설립되었거나, 폐지 등으로 1910년대에 운영이 중단된 학교 등을 포함하였다. 설립 지역과 관련해서는 1914년 4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학교 중 같은 해 경기도령 제3호로 학교 소재지가 경기도 고양군 등으로 바뀌더라도 경성부 내 학교로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뚝섬에 있는 뚝도공립보통학교纛島公立普通學校, 상왕십리에 있는 사립왕십리여학교 등이 그에 해당한다.

[표 5] 1910~1920년 경성부 내 운영·설립 한국인 학교

연번	학교급(級)	유치원·학교 이름	설립·개교·인허가 시기	소재지 (2025.현재)	설립자	관·공·사립 구분	비고
1	유치원	사립경성유치원	1913.4.7.	관인방 원동(園洞, 종로구 낙원동)	백인기(白寅基) 등	사립	1913. 처음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설 사용. 1914. 원동(園洞) 신축 유치원으로 옮김
2		사립이화유치원 (정동유치원)	1914.1.	정동 (貞洞, 중구 정동)	프라이(Frey, Lulu E, 富羅伊)	사립	손탁호텔 내에서 개원
3		동대문유치원	1916. 전후	동대문(종로구)	스크랜턴(W. B. Scranton, 선교사)	사립	1918. 흥인배재학교에서 동대문유치원 분립
4		중앙유치원	1916	인사동 246 (종로구 인사동)	박희도, 장낙도, 유양호 등	사립	인사동 중앙교회 부속 영신학교(永信學校) 내에 정동유치원 분교로 설립
5		덕수궁유치원	1917	덕수궁 (중구 세종로 99)	한국 왕실	–	경성유치원의 별원으로서 성격을 지난다고 함
6		배화유치원	1917.4.	경성부 누하정 (종로구 누하동)	조세핀 필 캠벨 (Josephine P. Campbell)	사립	배화여학교 부설

17 조미은, 앞의 글, 2018, 250~251쪽.

연번	학교급(級)	유치원·학교 이름	설립·개교·인허가 시기	소재지 (2025.현재)	설립자	관·공·사립 구분	비고
7		아현유치원	1918.12.	아현리 아현교회 (마포구 아현동)	아현교회	사립	
1	보통학교 등 초등과정	이화학당/사립이화여자보통학교	1886.5.31. 수업개시	정동 (貞洞, 중구 정동)	메리 F.스크랜튼 (Mary Scranton)	사립	1886.5.31. 스크랜튼이 집에서 수업 개시. 1887.2. 고종황제가 이화학당 명칭 하사. 1918.10.10. 이화학당 보통과를 사립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로 인가
2		관립한성사범학교 부속보통학교	1894.9.18.	안동(安洞, 종로구 안국동)		관립	1894.9.18. 한성사범학교 부속으로 설립. 1906.9. 관립교동보통학교를 관립한성사범학교부속소학교로 대용(代用). 1907.9.1.부터 관립 안동보통학교를 관립한성사범학교부속보통학교로 대용. 1908.1.1. 관립안동보통학교를 관립한성사범학교부속보통학교로 개칭. 1911년 폐지, 경성고등보통학교에 부속
3		교동공립보통학교	1894.9.18. 개교	교동 (종로구 경운동)		관립→공립	1894.9.18. 한성사범학교와 함께 설립되었으며, 사범학교 부속 소학교로 출범. 1910.4.1. 공립보통학교으로 변경
4		사립왕신학교 (旺新學校)	1894.10.18. 설립. 1909.8.12. 허가	왕십리 (성동구 행당동)	홍태윤(洪泰潤)	사립	
5		사립한남학교 (漢南學校)	1895.2.23. 설립. 1909.8.12. 허가	한강 (漢江, 고양군 한지면) (용산구 한남동)	임명수(林明洙)	사립	
6		정동공립보통학교	1895.8.9.개학	서소문정 (중구 서소문동)		관립→공립	1910.4.1. 관립에서 공립으로 변경
7		매동공립보통학교 (梅洞公立普通學校)	1895	매동(梅洞) (종로구 통의동)		관립→공립	1910.4.1. 관립에서 공립으로 변경
8		재동공립보통학교 (齋洞公立普通學校)	1895	종로구 가회동		관립→공립	1910.4.1. 관립에서 공립으로 변경
9		미동공립보통학교 (渼洞公立普通學校)	1896.5.	미근동 (서대문구 미근동)		관립→공립	1896.5. 공립한성보통학교 설립. 1907.1.1. 관립경교보통학교 (京橋普通學校)로 개정. 1908.4.7. 관립미동보통학교로 개칭 고시. 1910.4.1. 관립에서 공립으로 변경

연번	학교급(級)	유치원·학교 이름	설립·개교·인허가 시기	소재지 (2025.현재)	설립자	관·공·사립 구분	비고
10	보통학교 등 초등과정	사립창신학교 (仁昌學校)	1899.1.설립. 1909.4.10. 허가	장위리(長位里) (성북구 장위동)	박준채(朴準彩)	사립	장위리는 1914.4.1. 고양군 소속이 됨
11		사립정경학교 (貞慶學校)	1899.11.15. 설립. 1909.3.15. 허가	돈화문전(敦化門前, 종로구)	서병길(徐丙吉)	사립	
12		사립우산학교 (牛山學校)	1900.3.설립. 1909.7.21. 허가	서강(西江) (마포구 상수동)	양재새(梁在賽)	사립	
13		사립광성학교 (廣成學校)	1900.8.설립. 1909.3.29. 허가	공덕리분장(孔德里粉場, 노원구 공릉동)	오봉환(吳鳳煥)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14		사립계동보통학교	1901.3.15. 설립. 1909.3.9. 인가	계동(桂洞, 종로구 계동)	유성준(兪星濬), 유정수(柳正秀) 등	사립	1901. 사립보흥학교(普興學校) 설립. 한국사립학교이 효시라고 함. 사립계동학교의 전신
15		사립호동학교 (壺洞學校)	1903.3. 설립. 1909.4.26. 허가	호동(壺洞, 종로구 이화동)	김영욱(金永昱)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16		사립보성소학교 (普成小學校)	1905.설립 1906.2.23. 개학. 1909.6.14. 허가	서문 내/수송동/북촌 (종로구 신문로 2가/수송동/북촌로)	이용익	사립	1910년 천도교가 관여하면서 수송동으로 옮겼고, 불교와 계동유지 등이 관여하면서 북촌으로 옮김. 엄밀히 고등소학은 아니지만 심상과, 고등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정을 고등소학 정도라고 할 수 있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등
17		사립진명여학교/사립진명여자보통학교	1906.4.21. 설립 1912.3.27. 인가	창성동(昌城洞, 종로구 창성동)	엄준원(嚴俊源)	사립	1906.4.21. 진명여학교 설립. 1912.3.27. 사립진명여자보통학교 인가
18		사립청풍학교 (淸風學校)	1906.4.설립. 1909.5.8.허가	북부 청풍동(淸風洞, 종로구 청운동)	이병(李炳)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19		사립양규의숙 (養閨義塾)	1906.6.설립. 1909.4.10. 허가	경교(京橋) (종로구 평동)	김중규(金重規)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20		사립균명학교 (均明學校)	1906.9.	봉래정4정목 (중구 만리동2가)	홍종억(洪鍾檍) 등	사립	
21		수하동공립보통학교	1906.9.	수하정(중구 수하동)		관립→공립	1910.4.1. 관립에서 공립으로 변경
22		인현공립보통학교	1906.9.1.	앵정정2정목 (중구 인현동2가)		관립→공립	1910.4.1. 관립에서 공립으로 변경
23		사립흥영학교 (興英學校)	1906.10.19.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마포구 대흥동)	한병욱(韓秉昱)	사립	

연번	학교급(級)	유치원·학교 이름	설립·개교·인허가 시기	소재지 (2025.현재)	설립자	관·공·사립 구분	비고
24	보통학교 등 초등과정	사립현성학교 (玄成學校)	1906.11.설립. 1909.2.17. 허가	현석리(西江 玄石里, 마포구 현석동)	이두병(李斗秉)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25		사립광남학교 (光南學校)	1906.12.설립. 1909.4.21. 허가	필동(중구 필동)	조성근(趙性根)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26		사립승동기독학교 (勝洞基督學校)	1906	종로구 인사동	중앙교회(승동교회)	사립 (종교)	1908.5.31.《대한매일신보》에 동 학교소식 보도
27		사립성□□□□학교 (成□□□□學校)	1907.1.22. 설립. 1909.8.12. 허가	서부	이종호(李鍾浩)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28		사립장훈학교 (長薰學校)	1907.3.4. 설립. 1909.3.16. 허가	장교(長橋, 중구 장교동)	김득련(金得鍊)	사립	
29		사립여자선학교 (女子善學校)	1907.3.설립. 1909.4.22. 허가	방교(芳橋, 종로구 신문로1가)	임청하(任淸河)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30		사립흥인학교 (興仁學校)/숭신학교	1907.7.21. 설립. 1909.8.11. 허가	동부 동문외(東門外)/ 종로 6가 65번지 (종로구 창신동/종로 6가 65번지)	이인기(李仁基)	사립	인창면과 숭신면에서 합동, 유지하게 한 결과 숭신학교로 개명(〈흥인학교의 개명〉, 《매일신보 1912.4.17). 1912년 현재 종로 6가 65번지 (동부학당 터) 소재
31		어의동공립보통학교	1907.7.22.	어의동/효제동 (종로구 효제동)		관립→공립	1907.6.22. 관립양사동(養士洞) 보통학교와 관립양현동(養賢洞) 보통학교 합병, 관립어의동보통학교라고 함. 1910.4.1. 관립에서 공립 변경. 1916.3.1. 사립 신흥학교가 폐교하자, 모두 수용
32		사립신흥학교 (新興學校)	1907.8.15.	연화방 이현(梨峴, 종로구 인의동)	–	사립	1916.3.1. 폐교. 학생들은 어의동 공립보통학교에 수용
33		사립서강여학교 (西江女學校)	1907	고양군 용강면 창전리 (마포구 창전동)	에이다 베어 홀 (Ada Bear Hall, 선교사)	사립 (종교)	이화학당 부속학교
34		사립신명학교 (新明學校)	1908	누상동(종로구 누상동)	엄준원(嚴俊源) 등	사립	
35		사립정일여숙 (貞一女塾)	1908.2.설립. 1909.6.13. 허가	농원동(農園洞) (종로구 원서동)	이응종(李膺種)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연번	학교급(級)	유치원·학교 이름	설립·개교·인허가 시기	소재지 (2025.현재)	설립자	관·공·사립 구분	비고
36	보통학교 등 초등과정	사립국민야학교 (國民夜學校)	1908.3.10. 설립. 1909.8.31. 허가	니동(泥洞, 종로구 운니동)	최재학(崔在學)	사립	야학교.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37		사립용산협성학교 (龍山協成學校)	1908.4.설립. 1909.4.28. 허가	용산(龍山, 용산구 용산동)	이지용(李址鎔)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38		사립창신학교 (昌新學校)	1908.5.설립. 1909.4.15. 허가	신수철리(新水鐵里, 마포구 신수동)	장석홍(張錫泓)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39		사립보인학교 (輔仁學校)	1908.6.설립. 1909.4.6. 허가	내수동(수창동 145) (종로구 내수동)	보인학회	사립	오늘날 보인고등학교(〈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등)
40		사립경성고아학교 (京城孤兒學校)	1908.8.6. 설립. 1909.6.14. 허가.	수진동(壽進洞, 종로구 수송동)	이우준(李愚濬)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41		사립지산학교 (芝山學校)	1908.8.15. 설립. 1909.10.5. 허가	고양군 서빙고 (용산구 서빙고동)	김준풍(金濬豐)	사립	1926. 허가. 12.1.개교식 (《조선신문》 1926.12.5)
42		사립다동보통학교/ 다동공립보통학교	1908.9.3.	다옥정(중구 다동)	류신혁(劉臣赫)	사립→ 공립	1908.9.3. 설립 사립공성학교 (다동)를 기반으로 1914. 사립다동보통학교로 인가. 1916. 공립으로 전환
43		사립동창학교 (東彰學校)	1908.9.4. 설립. 1909.7.29. 허가	동학동(東學洞, 종로구 종로6가)	권보상(權輔相)	사립	1908.9.15. 개교식(〈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등)
44		사립필운학교 (弼雲學校)	1908.9.21. 설립. 1909.8.22. 허가	장교(長橋) (중구 장교동)	정창모(鄭暢模)	사립	
45		사립태극학교 (太極學校)	1908.10.1. 개교식. 1909.1.27. 허가	아현(마포구 아현동)	김구□(金求□)	사립	자료: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황성신문》 1908.10.4.
46		사립소의학교 (昭義學校)	1908.12.14. 허가	합동/봉래정3정목(중구 중림동/만리동1가)	경현(全景鉉), 박민호(朴敏浩), 장지영(張志暎), 나원덕(羅元德)	사립	합동에 설립.1918.10.19. 신축 교사 낙성식 거행(봉래정3정목)(《매일신보》 1918.10.22),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 10.말 현재〉 등. 오늘날 동성중고등학교 전신
47		사립숭교학교 (崇敎義塾)	1908.설립. 1909.8.26. 허가	사현동(四賢洞, 종로구 명륜동2가)	김태훈(金泰薰)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등

연번	학교급(級)	유치원·학교 이름	설립·개교·인허가 시기	소재지 (2025.현재)	설립자	관·공·사립 구분	비고
48	보통학교 등 초등과정	사립공덕리여학교 (孔德里女學校)	1908	고양군 용강면 공덕리 (마포구 공덕동)	에이다 베어 홀 (Ada Bear Hall, 선교사)	사립 (종교)	이화학당 부속학교
49		삼산의숙(三山義塾)	1908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 (성북구 성북동 55-1)	김수영(金洙瑩)	사립	
50		사립삼흥학교 사립삼흥보통학교 (三興普通學校)	1908.설립	청진동(종로구 청진동)	한성부민회 (漢城府民會)	사립	1908. 한성부민회가 설립한 삼흥학교를 바탕으로 1914. 사립보통학교로 인가
51		사립양영학교 (養英學校)	1908	원정4정목 이촌동 (용산구 이촌동)	연병선(延秉宣)	사립	
52		사립연화봉여학교 (蓮花峰女學校)	1908	청엽정1정목 (용산구 청파동1가)	양우로덕 (梁雨露德) 등	사립 (종교)	1908. 설립. 해방 후 신광여자중고등학교로 발전
53		사립훈도학교 (薰陶學校)	1908.설립. 1909.10.21. 허가	구남부동(舊南部洞, 중구 을지로3가로 추정)	홍필주(洪弼周)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훈도학교는 詩洞에 위치하며, 이는 수표동 입정동 을지로3가 일대
54		사립문창학교 (文昌學校)	1909.2.4.허가	청파동(용산구 청파동)	청파 하마비동 유지들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55		사립관진학교 (觀鎭學校)	1909.5.1.허가	중학동(종로구 중학동)	김교헌(金敎獻)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56		사립성의학교 (聖義學校)	1909.6.2.허가	뚝섬(성동구 성수동)	유해성(柳海晟)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등
57		사립장통학교 (長通學校)	1909.6.설립. 1909.8.6.허가	비파동(琵琶洞, 종로구 관수동)	이근홍(李根洪)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58		사립의법학교 (懿法學校)	1909.7.9.	고양군 용강면 창전리 (마포구 창전동)	에 엘 베시가르(エ, エル, ベシガ-ル)	사립 (종교)	
59		사립흥인배재학교 (興仁培材學校)	1900.개설. 1909.7.26. 가?	종로6정목 (동대문 옆) (종로구 종로6가)	스크랜턴(W. B. Scranton, 선교사)	사립 (종교)	
60		사립영신학교 (永信學校)	1909.7.29.	옥천동(玉川洞, 서대문구 옥천동)	이글레-(イ-グレ-) 외 2명	사립 (종교)	중앙교회 부속학교. 1917. 현재 예수교남북감리교와 장로교 연합 운영
61		사립공옥학교 (攻玉學校)	1898	남미창정1번지 (중구 남창동)	상동교회 (尙洞敎會)	사립 (종교)	
62		사립용두리여학교 (龍頭里女學校)	1909.인가	고양군 숭인면 용두리 (동대문구 용두동)	에이다 베어 홀 (Ada Bear Hall, 선교사)	사립 (종교)	이화학당 부속학교. 요머리여학교라고도 함. 1914.3.31.까지 경성부 소속
63		마포공립보통학교	1910.7.	마포동(마포구 마포동)		공립	
64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부속보통학교	1911.8.	중부 교동(校洞, 종로구 경운동)		관립	
65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속보통학교	1911.11.1.	중부 수진동(壽進洞)/ 가회동(종로구 수송동/ 가회동)		관립	

연번	학교급(級)	유치원·학교 이름	설립·개교·인허가 시기	소재지 (2025.현재)	설립자	관·공·사립 구분	비고
66	보통학교 등 초등과정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	1912.2.29.	서대문정1정목 (종로구 신문로1가)		공립	1914.4.1. 죽첨정1정목 90번지에 분교실 설치, 미동공립보통학교 여자부를 합병 수용
67		능인보통학교	1912.8.30. 개설. 1915. 9.21. 개교	동대문외(外) (종로구 창신동)	이회광(李晦光)	사립	1916.3.1.경영난으로 폐교 신청, 4.1.인가. 창신공립보통학교 전신. 현 창신초등학교
68		사립용인보통학교	1912.8.	창신동(종로구 창신동)	_	사립	
69		사립왕십리여학교	1912	고양군 한지면 상왕십리 (성동구 마장로 164)	왕십리감리교회 (꽃재교회)	사립 (종교)	이화학당 부설학교. 교회 내에 설립
70		뚝도공립보통학교 (纛島普通學校)	1913	고양군 뚝도면 동독도리(纛島: 성동구 성수동)		공립	
71		용산공립보통학교	1915.8.28. 인가. 1915.9.1. 개교	원정4정목 71번지/ 금정(錦町) 126번지 (용산구 원효로4가 71/ 용산구 효창동)		공립	1915. 원정4정목 71번지 사립협성학교 인수, 개교. 1918.3.18.부터 금정(錦町) 126번지로 이전. 사립협성학교는 1908.4. 용산에 설립된 사립용산협성학교(1908.4.설립)로 추정. 현 금양초등학교
72		왕십리공립보통학교	1915.9.1.	고양군 한지면 상왕십리 (성동구 상왕십리)		공립	
73		창신공립보통학교	1916.4.18. 인가	창신동(종로구 창신동)		공립	폐교된 능인보통학교를 매수, 새로 설립
74		용강공립보통학교	1916.4.26.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 (마포구 대흥동)		공립	
75		아현공립보통학교	1917.4.1.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마포구 아현동)		공립	
76		은평공립보통학교	1917	고양군 은평면 녹번리 (은평구 녹번동)		공립	녹번리는 1914.3.31.까지 경성부 소속
77		사립협성보통학교	1918.9.12. 인가	수창동 170번지 (종로구 내수동)	베커(E.J. Becker, 白雅德)	사립	
1		배재고등학당/사립배재고등보통학교	1885.설립	정동(貞洞, 중구 정동)	아펜젤러(H. G. Appenzeller)	사립 (종교)	1885. 배재학당 설립. 1909.4. 배재고등학당으로 인가. 1916.2. 사립배재고등보통학교 인가. 배재고등학당도 병행 운영
2		이화학당/사립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1886.수업 개시. 1918.10.10. 인가	정동(貞洞, 중구 정동)	메리 F.스크랜튼 (Mary Scranton)	사립	1886.5.31. 스크랜튼이 정동 자택에서 수업 개시. 1887.2. 고종황제로부터 이화학당 명칭 하사. 1918.10.10. 이화학당 고등과를 사립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받음

연번	학교급(級)	유치원·학교 이름	설립·개교·인허가 시기	소재지(2025.현재)	설립자	관·공·사립 구분	비고
3	중등 이상 과정	사립정신여학교 (貞信女學校)	1887	연지동(종로구 연지동)	애니 엘러스(Annie J. Ellers, 미국 북장로교)	사립 (종교)	1887.10.20. 정동에 정동여학당 설립 (조선중앙일보 1935.5.18). 1895. 연동여학교로(蓮洞女學校) 개칭, 연지동으로 이전. 1903. 연동여중학교로 개칭. 1909.정신여학교로 개칭, 사립학교 인가. 1912. 사범과와 보수과를 설치했다가 1916. 폐지. 1933.9.6.정식 학교 신청, 1935.5.9. 인가
4		사립청년학원 (靑年學院)	1894.10. 설립. 1909.4.27. 허가	상동(尙洞, 중구 남대문로3가)	전덕기(全德基)	사립	설립 시기가 1904.로 된 자료도 있음. 고등과정
5		사립광성학교 (光成學校)	1898.1.25. 설립. 1909.2.20. 허가	양동(陽洞, 중구 남창동)	박기양(朴箕陽)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6		배화학당/배화여학교 (사립배화여학당)	1898.4.2.	고간동/누하동 (종로구 내자동/누하동)	조세핀 필 캠벨 (Josephine P. Campbell)	사립 (종교)	1898.4. 캐롤라이나학당 개설. 1910. 배화학당으로 개칭. 1916. 누하동으로 이전. 배화여학교, 사립배화여학당이라고도 함. 초·중등과정
7		사립흥화학교 (興化學校)	1898.12.25. 설립. 1909.7.10. 허가	수진동(壽進洞 26통 6호)(종로구 수송동)	민영환 등	사립	고등과정
8		사립해동신숙 (海東新塾)	1903.3.설립. 1909.4.26. 허가	호동(壺洞, 종로구 이화동)	신봉죽(申鳳竹)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9		휘문의숙/사립휘문고등보통학교	1904.9.12.	원동(苑洞, 종로구 원서동)	민영휘(閔泳徽)	사립	1904.9.12. 광성의숙(廣成義塾)에서 출발. 1906년 휘문의숙으로 변경. 1918. 휘문고등보통학교로 인가
10		사립경신학교 (儆新學校)	1905.초	연지동(蓮池洞, 종로구 연지동)	언더우드 등	사립 (종교)	민노아학당의 맥을 이은 예수교중학교(1901.11)를 1905년 초 경신학교로 교명 결정. 1905.10.부터 2년여 동안 배재학당과 통합, 합성중학교(合成中學校) 체제로 운영. 1909. 경신학교로 인가. 1915. 경신학교 대학부 설립(연희전문학교 모체)

연번	학교급(級)	유치원·학교 이름	설립·개교·인허가 시기	소재지 (2025.현재)	설립자	관·공·사립 구분	비고
11	중등 이상 과정	사립양정고등보통학교	1905. 설립. 1913.9.11. 인가	도렴동/봉래정4정목 (종로구 도렴동/중구 만리동2가)	엄주익(嚴柱益) 등	사립	1905. 양정의숙 설립. 1913.9.11. 양정고등보통학교로 인가. 1918. 도렴동에서 만리동으로 이전
12		중동야학(교)/중동학교(中東學校)	1906.4. 설립. 1909.5.10. 인가	전동(典洞)/수송동 85 (종로구 견지동/수송동)	유정열(柳廷□)	사립	1906.4. 중동야학교로 출발. 1919. 중동학교로 인가(주야간)
13		사립진명여학교/사립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1906.4.21. 설립 1912.3.27. 인가	창성동(昌城洞, 종로구 창성동)	엄준원(嚴俊源)	사립	1906.4.21. 진명여학교 설립. 1912.3.27. 사립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인가
14		사립보성학교/사립보성고등보통학교	1906.9.5.설립	박동 10통 1호 (종로구 수송동 44)	이용익(李容翊)	사립	1906. 보성중학교 설립. 1910.12.천도교에서 인수. 1913. 사립보성학교로 개칭. 1917.6.30. 사립보성고등보통학교 인가, 개칭
15		관립한성고등학교/경성고등보통학교	1906.9.	화동(花洞, 종로구 화동)		관립	1911. 관립한성고등학교를 경성고등보통학교로 개칭, 한성외국어학교도 병합
16		광신상업학교 (廣信商業學校)	1906.11.18. 설립. 1910.11.인가	남대문 내(중구 남대문로4가)	광신사(廣信社)	사립	객주도가(客主都家) 광신사에서 설립
17		사립숙명고등여학교/사립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재단법인사립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1906	수진방 박동 11통 2호 (종로구 수송동)	대한제국 황실	사립	1906.5.22. 사립명신여학교 설립. 1909.5. 사립숙명고등여학교로 개칭. 1911.11. 숙명고등여학교를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개칭. 1912.1.13. 사립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재단법인사립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로 허가. 《매일신보》에서 '조선여학교의 효시'로 보도(〈재단법인숙명여자〉, 《매일신보》 1918.2.21.
18		중앙학림(中央學林)	1906.설립 1915.인가	숭일동(崇一洞) 북묘 터 (종로구 명륜동1가)	삼십본산연합사무소(三十本山聯合事務所)	사립(종교)	1906. 명진학교. 1910. 불교사범학교. 1914. 불교고등강숙. 1915. 중앙학림 순으로 개칭. 승려양성교육기관
19		황성기독교청년회학관	1906	종로2정목 (종로구 종로2가 YMCA 자리)	황성기독교청년회	사립(종교)	1906. 황성기독교청년학관 설립. 1912. 조선중앙기독교청년학관으로 개편(현 성동고등학교). 1913.4. 황성기독교청년회가 조선 중앙기독교 청년회로 개칭. 서울기독교청년회(YMCA) 전신

연번	학교급(級)	유치원·학교 이름	설립·개교·인허가 시기	소재지(2025.현재)	설립자	관·공·사립 구분	비고
20	중등 이상 과정	사립오성학교 (五星學校)	1907.1.15. 설립	낙원동 282	서우학회	사립	1907.1.15. 서우학회가 서우사범학교(야학) 설립. 1908.11.2. 경성부 낙원동 282번지에 교사 신축개교, 1908.11.3. 서우사범학교와 한북의숙을 통합 서북협성학교로 개명. 1910.10.1. 서북학회 해체. 교명을 오성학교로 개명. 1918.3.23.폐지(《경성부사》 3, 577쪽). 고등과정
21		사립봉명학교 (鳳鳴學校)	1907. 또는 1908.설립. 1909.4.7.허가	미동(美洞, 서대문구 미근동)	이봉래(李鳳來)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등. 고등과정
22		재단법인사립선린 상업학교	1907.봄	명동 2가 75/청엽정 3정목(명동2가 75/ 용산구 청파동3가 313번지)	대창희팔랑 (大倉喜八郎)	사립	1907.봄 대창희팔랑이 기부, 한국 재단법인으로 하는 선린상업학교 인가, 4월 개교. 폐지되는 명동 소재 관립농상공학교 교사와 교구를 모두 기부받음. 1913. 명동에서 청파동으로 이전
23		동덕여자의숙/ 동덕여학교	1908.4.	대사동(大寺洞) 19통 8호(종로구 인사동)	조동식(趙東植), 손병희	사립	1908.3. 동원여자의숙(東媛女子義塾) 설립. 1909.4. 동덕여자의숙(同德女子義塾)과 병합, 동덕여자의숙으로 개칭. 1911.3. 동덕여학교로 변경.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양심여학교(養心女學校, 1908. 설립)도 동덕여학교에 병합. 초등 및 고등
24		관립한성고등여학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1908.4.1.	재동(齋洞)/경운동 (종로구 재동/경운동)		관립→ 공립	1908. 관립한성고등여학교 설립. 1911.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개편, 경운동으로 이전
25		사립양원여학교 (養源女學校)	1908.5.14. 설립	중부 교동(종로구 경운동)	강윤희(姜玧熙) 등	사립	1916.7.31. 사립동덕여학교에 합병. 보통 및 고등
26		중앙학교	1908	화동정(花洞町, 종로구 화동)	기호흥학회	사립	1908. 사립기호학교 개교. 1910.11. 융희학교와 합동, 중앙학교로 개칭. 1921. 중앙고등보통학교로 인가. 오늘날 중앙고등학교
27		관립한성외국어학교	1908	교동(종로구 경운동)		관립	1911년 폐지, 경성고등보통학교로 병합. 고등 정도
28		공립미동보통학교부설 미동실업보습학교/ 미동공립간이농업학교	1910.3.28. 인가	미근동(서대문구 미근동)		공립	1913.7.26. 미동공립간이학교로 개칭. 1918.6.1. 폐교

연번	학교급(級)	유치원·학교 이름	설립·개교·인허가 시기	소재지 (2025.현재)	설립자	관·공·사립 구분	비고
29	중등 이상 과정	공립수하동보통학교부설수하동실업보습학교/수하동공립간이상업학교	1910.3.28. 인가	수하정(중구 수하동)		공립	상업학교
30		공립어의동보통학교부설어의동실업보습학교/어의동공립간이공업학교	1910.3.28. 인가	종로5정목 (종로구 종로5가)		공립	공업학교
31		사립한성중학교 (漢城中學校)	1909.설립. 1909.7.31. 허가	모화관(慕華館, 서대문구 영천동)	송병□(宋秉□)	사립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말 현재〉
32		사립양정여학교 (養貞女學校)	1910.4.18. 설립. 1911.8.인가	입동(笠洞, 중구 입정동)	최성경(崔誠卿)	사립	입동은 갓전골이라고도 함. 첩실들이 설립. 1911.8.16(또는 8.31).인가
33		사립숭공학교 (崇工學校)	1910.9.	백동(栢洞, 동소문내 東便山腹)(종로구 혜화동)	베네딕도수도회	사립	4년제 실업학교
34		매동공립간이상업학교	1913.6.4.인가	통의동(종로구 통의동)		공립	매동공립보통학교에 병치. 간이상업
35		매동공립상업실습학교	1913.6.	통의동(종로구 통의동)		공립	
36		용산공립간이공업학교	1916.3.15. 인가, 同. 4.1.개교	원정4정목 71번지/금정(錦町) 126번지 (용산구 원효로4가 71/용산구 효창동)		공립	용산공립보통학교 내에 설치
37		경성일출공립상업실습학교	1916.5.	경성부 일출정 (중구 남학동)		공립	상업학교
38		경성공립농업학교	1918.2.28. 인가	고양군 숭인면 청량리 (동대문구 청량리동)		공립	설립 당시 경기도 숭인면 소재 경기도 종묘장을 교사로 사용. 1918.7. 청량리 신축 교사로 이전
1		법학교/경성전수학교	1895	광화문통(종로구 세종로)		관립	1895. 법관양성소 설립. 1909.2. 법학교로 변경. 1911.11. 경성전수학교로 개칭. 광화문통 옛 호조건물 인수, 교사 설립. 1915.12. 전문학교로 인정. 1916.4.1. 조선총독부전문학교로 지정
2		사립세브란스연합의학교/사립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1899.4.	남대문통5정목 (중구 남대문로5가)	1894. 미 북장로교파 선교회(에비슨 등)으로 제중원 운영권이관	사립	1899. 제중원의학교 설립. 1909년 사립세브란스의학교로 개칭. 1913. 세브란스연합의학교로 개칭. 1917.5.14. 재단법인사립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인가

연번	학교급(級)	유치원·학교 이름	설립·개교·인허가 시기	소재지 (2025.현재)	설립자	관·공·사립 구분	비고
3	전문학교	조선총독부의원부속의학강습소/경성의학전문학교	1899.10.2.	연건동/이화동 (종로구 연건동/이화동)		관립	1899.10.2. 경성의학교 개교. 1907.3. 대한의원 교육부. 1908.1.1. 대한의원 의육부 (醫育部). 1909. 대한의원 부속학교. 1910. 조선총독부의원부속의학강습소 순으로 변경. 1916.4.1. 조선총독부전문학교로 지정, 경성의학전문학교가 됨. 同 4.20. 경성의학전문학교 개교식
4		보성전문학교/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	1905.4.	박동/낙원동 (종로구 수송동/낙원동)	이용익	사립	1905. 보성전문학교 설립. 1910.12. 천도교에서 인수. 1915.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로 개칭. 1918.9. 수송동에서 낙원동(前 오성학교)으로 교사 이전
5		경성공업전문학교	1899.설립	종로구 동숭동		관립	1899.5. 관립상공학교 설립. 1906. 공업전습소. 중앙시험소 내에 교사 건립. 1916.4.1. 조선총독부전문학교로 지정. 1922. 3.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칭
6		사립정리사(精理舍)	1906.11. 또는 1907. 설립. 1909.8.5.허가	수진동(壽進洞, 종로구 수송동)	유일선(柳一宣)	사립	수리(數理) 전문 야학교. 창동에서 학생을 모집하였으나 수진동 흥사단 내에서 개교함
7		조선총독부공업전습소/중앙시험소부설공업연습소/경성공업전문학교부속공업전습소	1907.4.개교	이화동/동숭동 (종로구 이화동/동숭동)		관립	1907. 관립공업전습소 개교. 1910.조선총독부공업전습소. 1912. 조선총독부중앙시험소부설공업전습소. 1916. 경성공업전문학교 부속공업전습소
8		대동전문학교	1908	서부 서학현(西學峴, 중구 태평로 1가)	대동학회 (공자교회)	사립	대동학회회관 내에 설립. 1910.4.경부터 대동법률전문학교라고도 불림. 1915. 시천교총부(侍天敎總部)에서 인수. 야학. 법률학교.
9		한국기독대학/조선기독대학/사립연희전문학교	1915.4.12. 한국(Korea) 기독대학 개교식. 1917.4.7.사립연희전문학교기독연합재단법인 허가	종로구 종로2가/고양군 연희면 창천리 (서대문구 창천동)	언더우드(元杜尤), 베커(Arthur Lynn Becker, 白雅悳) 등	사립	1915.4.12. 종로 YMCA에서 한국기독대학 개교식. 그해 4.21. 조선(Chosen)기독대학으로 개명. 1917.4.7. 사립연희전문학교기독연합재단법인 허가. 1918. 연희면 창천리 신축 교사로 이전

연번	학교급(級)	유치원·학교 이름	설립·개교·인허가 시기	소재지 (2025.현재)	설립자	관·공·사립 구분	비고
10	전문학교	조선약학강습소/조선약학교	1915.6.	강습소:장교통(長橋通) 장훈학교(長薰學校) 내 설립(중구 장교동). 약학교:종로5정목/황금정6정목(종로구 종로5가/중구 을지로6가)	이석모(李碩謨), 정겸차랑(井兼次郎), 신정호태랑(新井虎太郎) 등 발기	사립	1918.6.1. 조선약학교 인가, 6.21.개교. 종로5정목 옛 동대문 분서 교사에서 1919.5.26. 황금정6정목 훈련원 자리 신축 교사로 이전
1	교원양성 관련	관립한성사범학교	1894.9.18.	수진동(壽進洞, 종로구 수송동)		관립	1894.9.18. 광무국 자리에 사범학교 설립. 1895.5.1. 〈한성사범학교 관제〉로 관립한성사범학교가 됨. 1911년 폐지. 본과는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로, 속성과는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교원속성과로 각각 개편 이관
2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	1911.10.20.	화동(花洞, 종로구 화동)		관립	1911. 관립한성사범학교 교원속성과를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로 변경. 1914.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설치에 따라 폐지.
3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 임시교원양성소	1911.11.1.	화동(花洞, 종로구 화동)		관립	1911. 한성사범학교 본과를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로 변경
4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 임시교원양성소 제1부	1913.4.	화동(花洞, 종로구 화동)		관립	한국인 교원 양성. 1914.부터 신입생 뽑지 않음. 사범과에서 교원양성이 가능해지자 1916부터 완전 사라짐
5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 임시교원양성소 제2부	1913.4.	화동(花洞, 종로구 화동)		관립	일본인 교원 양성
6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	1914.4.	화동(花洞, 종로구 화동)		관립	한국인 교원 양성
7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임시교원양성소	1911	종로구 경운동		관립	1914.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설치로 폐지
8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1914.4.	종로구 경운동		관립	
9		사립숭신학교 (崇信學校)	1911.9.16.	백동(栢洞, 종로구 혜화동)	베네딕도수도회	사립	사범교육기관. 1913.9.경 폐교

출처: 관립한성외국어학교,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일람》, 1909; 〈明治四十三年十月末日現在 京城府內私立學校現狀一斑〉(내무부 학무국 학무과 조사, 渡部學·阿部洋 편, 《일본식민교육정책사료집성(조선편)》 제67권(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료DB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3.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종교학교 제외, 1910년 10월 말 현재)); 조선총독부 편, 《학사통계》, 1911; 경기도, 《조선총독부 경기도 통계연보》 1912~1914년;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 《조선제학교일람》, 1932; 경기도 편, 《京畿道ノ教育ト宗教》, 1934; 경기도, 〈조선인경성부각급학교일람〉, 《경기도교육과 종교요람》, 1941; 서울시시사편찬위원회, 《국역 경성부사》 3, 2014;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김형목, 〈1910년대 유치원 현황과 설립 주체〉, 《실학사상연구》 21, 2001;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29(일제강점기 서울의 교육과 문화), 2015; 전민호·최승현, 〈개화기 관립소학교(보통학교)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2(3), 2016; 서울공업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등 각 학교 누리집;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 등[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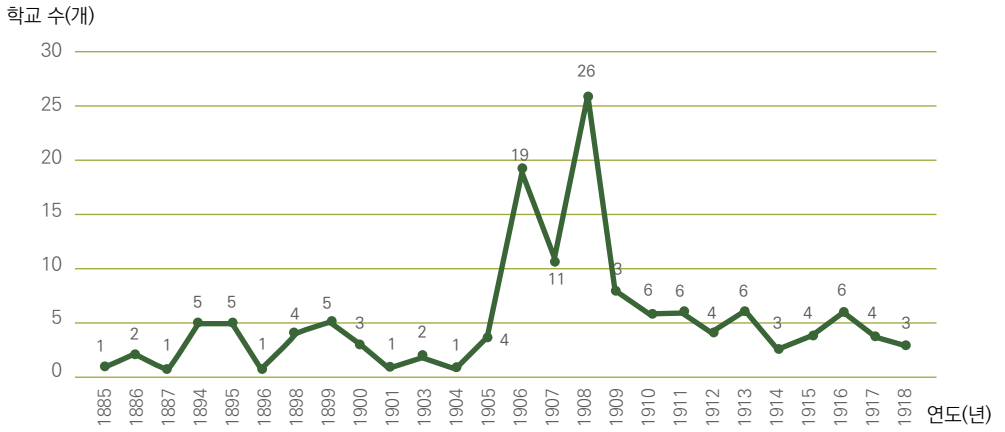
비고: 1. 자료상에서 1910~1920년 현재 서울에 있었던 교명을 정리.
– 공덕리 동막하리·뚝섬·상왕십리·서빙고·성북리·아현리·창천리·청량리·한강 등은 1914.4.1.~1936.3.31. 기간에 고양군 소속이나, 표로 정리한 학교는 그 이전에 설립됨.
2. '유치원·학교' 칸에는 1910년대 현재 이름이며, 1910~1920년에 학교 이름 변경, 소재지 변경, 관·공·사립 상태 변경이 있을 때는 '/'를 이용하여 시기순으로 정리함(예: 사립진명여학교/사립진명여자보통학교). 1910년대 이전에 사용되었거나 1920년 이후에 이름이 변경된 때는 비고란에 정리하기도 함.
3. 학교급별은 크게 유치원, 초등, 중등 이상 과정(전문학교와 교사양성기관 제외), 전문학교, 교사양성 관련 등 5개로 분류.
4. 같은 학교급 내에서는 시기, 교명 순으로 배열함. 시기는 자료에 따라서 다양한데 《관보》를 가장 우선시함. 학교명을 개칭하거나 계승 관계가 분명한 학교를 제외하고 개별 학교로 따로 정리함.
5. '설립·개교· 인허가 시기' 칸: 자료에서 관련 정보가 있는 때에만 설립·개교·인가·허가 등을 표기.
6. 소재지는 자료상 당시 위치이며, () 안은 오늘날 지명. 필요할 때는 한자 표기 병기. 설립자 () 안에 한문은 한국 이름.
7. 학교 정보를 자료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종교학교 제외, 1910년 10월 말 현재)〉에서만 파악한 것은 비고란에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1919.10. 말 현재〉' 표기.

[표 5]를 바탕으로 1910년대 서울에 있었던 한국인 학교와 관련하여 설립 시기별, 학교급별, 설립자별, 소재지별 순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설립 시기별로 통계와 그래프를 정리하면 [표 6] 및 [그림 3]과 같다.

[표 6] 1910년대 서울 내 한국인 학교 설립 시기별 통계

설립·개교·인허가 연도(년)	유치원·학교 수(개)	설립·개교·인허가 연도(년)	유치원·학교 수(개)	설립·개교·인허가 연도(년)	유치원·학교 수(개)
1885	1	1901	1	1911	6
1886	2	1903	2	1912	4
1887	1	1904	1	1913	6
1894	5	1905	4	1914	3
1895	5	1906	19	1915	4
1896	1	1907	11	1916	6
1898	4	1908	26	1917	4
1899	5	1909	8	1918	3
1900	3	1910	6	총계	141

18 [표 5] 작성에 활용한 통계 자료 중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작성된 것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발간한 〈明治四十三年十月末日現在 京城府內私立學校現狀一斑〉이다. 오늘날 종로구 수송동 소재 私立京城孤兒學校등 66개의 학교 정보가 실려있다. 이들 가운데 필자가 다른 자료에서 추가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학교는 현재까지 20여 개이다. 하지만 1910년 10월 말 현재 서울 내 사립학교 상황과 관련한 주요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여 개도 통계에 포함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한 [표 5]는 그동안 각종 자료에서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정리한 서울 관련 학교 통계보다 훨씬 포괄적이어서 당연히 학교 수도 많다. 1910년대 서울에 존재하였거나 운영 또는 설립된 전반적인 학교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3] 1910년대 서울 내 시기별 학교 설립 양상

1910년대 서울에 있었던 학교 가운데 가장 빨리 설립된 학교가 1885년이며, 가장 늦게 설립된 학교가 1918년이다. 1885년에 설립된 것은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정동에 설립한 배재고등학당이다. 1909년 4월에야 배재고등학당으로 인가받았으며, 1916년 2월 사립배재고등보통학교로 인가받고 배재고등학당도 함께 운영하였다. 1886년에는 메리 스크랜튼Mary F. Scranton이 정동 자택에서 수업을 개시했는데, 1887년 고종이 이화학당이라는 명칭을 하사하였다. 1918년에 설립된 학교는 경성공립농업학교·사립협성보통학교·아현유치원 등 3개인데, 협성학교는 베커E. J. Becker(한국명 白雅德)가, 아현유치원은 아현교회가 각각 설립한 사립이었다.

1910년대 서울에 있었던 유치원·학교(이하, '학교') 가운데 1910년 이전에 설립된 것은 105개이며 전체의 약 74%로 2/3가 훨씬 넘는다. 그중에서도 1906~1909년에 설립된 학교는 매년 9~25개씩 총 66개로 1910년대 서울에 있던 전체 학교의 약 47%를 차지한다. 1910년 이후에 설립된 학교는 36개이며 전체의 약 26%로 즉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와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임시교원양성소는 1894년에 설립된 관립한성사범학교의 교원속성과와 본과를 1911년에 각각 변경해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1910년 이후 설립된 학교는 사실상 26% 이하라고 볼 수 있다. 1910년 이후 서울에 설립된 학교는 매년 3~6개씩 설립되는 정도였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에 고등보통학교 설립에 소극적이었다가, 3·1 운동 이후에야 1

도道 1 고등보통학교제를 실시하면서[19] 공립고등보통학교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1910년대 서울 내 학교의 학교급별 상황을 보면 유치원 7개, 초등교육기관 77개, 중등 이상 또는 각종학교 등 38개, 전문학교 10개, 교원양성교육기관 9개이다. 자료에 보통학교, '초등 정도'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초등교육기관으로, 고등보통학교, 중등, '초등 및 중등', 각종 학교, 실업학교 등은 '중등 이상 및 각종학교 등'으로 분류하였다. 비율로 보면 유치원 약 5%, 초등교육기관 약 55%, 중등 이상 또는 각종학교 등 약 30%, 전문학교 7%, 교원양성교육기관 약 6% 순으로 초등교육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초등교육기관에는 다양한 부속학교가 있었는데 관립한성사범학교 부속보통학교,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속보통학교 등 사범학교나 고등보통학교의 부속학교였다. 사립서강여학교西江女學校(1909), 사립공덕리여학교孔德里女學校(1908), 사립용두리여학교龍頭里女學校(1909), 사립왕십리여학교(1912) 등은 이화학당 부속학교였다. 1909년에 설립된 사립영신학교永信學校는 중앙교회 부속학교였다.

중등 이상 및 각종학교 등에는 경성고등보통학교나 사립계동보통학교 등의 '보통학교'라는 이름과 달리 교명에서부터 학교 성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었다. 배화학당·이화학당 등의 학당, 사립해동신숙海東新塾·휘문의숙 등의 숙塾을 비롯해 사립청년학원, 중앙학림, 황성기독교청년회학관, 사립한성중학교 등이 그에 해당한다. 휘문의숙은 사립휘문고등보통학교로, 진명여학교는 사립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개칭하듯이 학교명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중등 이상 및 각종학교 등에는 일반교육을 하는 보통학교 이외에 공업·농업·상업이나 실업보습 등 직업 관련 다양한 학교도 있었다. 광신상업학교廣信商業學校, 재단법인사립선린상업학교, 공립미동보통학교부설미동실업보습학교 또는 미동공립간이농업학교, 어의동공립간이공업학교, 매동공립간이상업학교, 매동공립상업실

19 박철희, 〈식민지기 한국 중등교육 연구~1920~30년대 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31쪽; 김자중, 〈일제 식민지기 예비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시론-고등교육기관 입학시험 준비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3(1), 2020, 6쪽.

습학교 등이 그에 해당한다.

전문학교에는 공업·법(법률)·약학·의학과 같이 전문 분야나 사립연희전문학교와 같이 다양한 분야를 같이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다. 대동전문학교는 대동학회회관 내에 설립된 법률 야학교로 1910년 4월경부터 대동법률전문학교라고도 불렸다. 1915년 시천교총부侍天敎總部에서 인수하였다. 사립정리사精理舍는 수리數理 전문 야학교였는데 창동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수진동壽進洞(오늘날 종로구 수송동) 홍사단 내에서 개교하였다.

일제는 1915년 〈사립학교규칙〉 개정과 〈전문학교규칙〉 제정으로 전문학교 설립과 운영을 통제하며 전문교육을 관립체제로 독점해나갔다.[20] 1916년 4월 1일에는 첫 전문학교 관련 법인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칙령 제80호)를 공포하였다.[21] 그리고 같은 날 〈경성공업전문학교규정〉(조선총독부령 제27호)을 반포하여[22] 서울에 있는 경성의학전문학교·경성전수학교·경성공업전문학교 등 3개를 조선총독부 전문학교로 지정하였다. 이들 학교는 모두 조선 말이나 대한제국 때 정부에서 설립한 관립학교였다.[23]

〈전문학교규칙〉으로 일제강점기 신학제에 의한 전문학교가 처음 설립되었으며, 그 후 설립되는 전문학교의 기준이 되었다. 조선총독부가 1917년 재단법인 사립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와 사립연희전문학교 기독연합 재단법인을 인가하기 이전에 먼저 관립전문학교를 정비한 것이다.

법학교를 폐지하고 설립된 경성전수학교는 근대적 재판소에서 근무하는 전문적 사법관 양성이 아닌, 판검사와 변호사 양성 기관에서 근무할 사람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24] 의학교인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는 1899년 경

20 정준영, 앞의 글, 2015, 133쪽.

21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4월 1일(호외).

22 정인경, 〈일제하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설립과 운영〉, 《한국과학사학회지》 16(1), 1994, 44쪽; 조은진, 앞의 글, 293쪽.

23 정준영, 앞의 글, 2015, 129쪽.

24 장신, 〈일제하 조선에서 법학의 교육과 연구〉, 《서울과 역사》 85, 2013, 179~181쪽, 183쪽.

성의학교에서부터 출발하였으나 1909년 대한의원 부속학교 등으로 변경하고 교원도 일본인 교관으로 교체하며, 1910년 이전부터 일본인 의사들을 위한 의학교육기관으로 전락하였다.[25]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는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로 개칭하였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관립전문학교에는 일본 본토의 〈전문학교령〉이 적용되지 않아 한국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해도 일본에서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가령 경성의학전문학교 의사자격증으로 일본에서는 개업할 수 없었다. 다만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1918년 경성의학전문학교 내에 〈전문학교령〉에 따른 특별의학과를 만들어 일본인 학생을 중점 교육하는 예외적인 정책을 폈다.[26]

한편 전문학교에서는 전문학교 제도가 실시되기 전인 1910년대 초반에는 공학이 시행되지 않아 입학자의 90% 이상이 한국인 학생이었다.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는 1916년부터, 경성공업전문학교는 1917년부터 공학을 각각 시행하였다. [표 7]에서와 같이 1916년부터 일본인 입학자 수는 증가했지만, 한국인 입학자 수는 많이 감소하였다.

제2차 〈교육령〉에 따라 공학이 시행되기 시작하는 1922년 경성법학전문학교에는 일본인 학생이 소수 입학하고, 일본인 학교인 경성고등상업학교에는 일본인 학생만 입학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관립전문학교에 일본인 입학자 수는 계속 증가하지만, 한국인 입학자 수는 감소하였다. 제도적으로 한국 내의 관립전문학교와 일본 본토의 전문학교가 동등한 정도로 인정되자,[27] 그러한 양상이 초래되었다. 처음 공학을 시행할 때 학무국에서는 '전문학교는 조선인 자제의 편익'을 위한 곳이며, '편의상 일본인 학생을 수용하기는 하나 배정되는 입학정원은 조선인 학생의 1/3 이내에서 결정할 것'[28]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인 입학생이 일본인 입학생의

25 한규원, 〈개화기 의학교육의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1, 1999, 389쪽.

26 신주백, 〈식민지 조선의 고등교육체계와 문·사·철의 제도화, 그리고 식민지 공공성〉, 《한국교육사학》 34(4), 2012, 63쪽.

27 조은진, 앞의 글, 2015, 58~59쪽.

28 《매일신보》 1916년 4월 9일(조은진, 앞의 글, 2015. 59쪽에서 재인용).

[표 7] 서울지역 관립전문학교별 한국인/일본인 학생 입학자 수(1911~1922)

연도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3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동양협회경성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합계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1911	26		43		168			43	237	43
1912	56		86		137			15	279	15
1913	86		75		128			30	289	30
1914	53		75		152			37	280	37
1915	42		96		107			14	245	14
1916	57		49	25	23	19		24	129	68
1917	51		26	26	31	31		18	108	75
1918	53		58	25	32	18		67	143	110
1919	48		69	25	40	21		43	157	89
1920	52		34	65	25	19		76	111	160
1921	54		65	37	25	22		79	144	138
1922	54	4	47	53	14	34		78	115	169

출처: 1. 조은진, 앞의 글, 2015, 51쪽. '[표 7] 1911~1930년 관립전문학교별 조선인/일본인 학생 입학자 수'를 부분 편집하고, 학교 이름은 1910~1922년 당시 이름을 모두 표기함. ()는 변경된 교명. [표 5] 참조. 경성고등상업학교는 처음에 관립으로 설립, 1920년 사립, 1922년 다시 관립으로 각각 변경.[29]

2. 관·공립 기준은 1922년을 기준으로 함. 합계는 필자 계산.

1/3 정도에 그치는 수준으로 귀결되었다. 서울에서 한국인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가 그만큼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사양성기관과 관련하여 1910년대 서울에 있었던 관립 교사양성기관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교사 또는 교원 양성 관련 학교 중에서는 관립한성사범학교가 가장 오래되었는데, 1894년 사범학교로 설립되고 1895년 관립한성사범학교가 되었다. 그러나 1911년에 폐지되어 본과는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임시교원양성소로, 속성과는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교원속성과로 각각 개편되었다.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임시교원

29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일람》, 1926, 4~5쪽.

[표 8] 1910년대 서울 소재 교사양성기관

	설립 시기	교원·교사양성기관 이름	관립/사립	주요 내용
1	1894.9.	사범학교	사립	1895년 관립한성사범학교가 됨. 1911년 폐지
2	1911.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임시교원양성소		1914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설치로 폐지
3	1911.10.20.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		1911년 관립한성사범학교 교원속성과를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로 변경. 1914년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설치에 따라 폐지
4	1911.11.1.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 임시교원양성소		1911년 한성사범학교 본과를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임시교원양성소로 변경
5	1913.4.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 임시교원양성소 제1부		한국인 교원 양성. 1914년부터 신입생 뽑지 않음. 사범과에서 교원 양성이 가능해지자 1916부터 완전히 사라짐
6	1913.4.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 임시교원양성소 제2부		일본인 교원 양성
7	1914.4.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	관립	한국인 교원 양성
8	1914.4.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9	1911.	사립숭신학교	사립	사범교육기관. 1913년 폐교

출처: [표 5]를 바탕으로 작성.

양성소는 1913년 4월부터 한국인 교원을 양성하는 제1부와 일본인 교원을 양성하는 제2부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제1부는 1914년 4월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가 생기면서 더는 신입생을 뽑지 않고 있다가 1916년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1911년 설립되었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임시교원양성소는 1914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베네딕토수도회에서 1911년 종로구 혜화동에 사범교육기관으로 설립한 사립숭신학교崇信學校는 1913년 폐교된다.

설립자 또는 운영자별 양상을 보면, 총 141개의 학교에서 1917년 한국 왕실에서 운영한 덕수궁유치원을 제외한 140개 학교 중 관립은 26개, 공립은 17개, 사립은 97개이다. 사립학교가 전체 학교 중 약 70%로 2/3 이상이었다. 1910년대 사립학교와 관련한 자료가 크게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관립과 공립학교 수를 학교급별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당시 관공립학교 수는 총 43개로 전체 학교 중에서 약 30%를 차지한다.

[표 9] 1910년대 서울 내 한국인 학교급별 관·공립 양상

(단위: 개)

관리, 공립 구분 \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교육기관	중등이상 교육기관	전문학교	교원양성 교육기관	총 계
관립	설립 당시	-	11	3	4	8	26
	설립이후 1910년대 관립→공립으로 변경된 학교	-	8	1	_	_	9
	변경 후 관립학교 총계		3	2	4	8	17
공립	설립 당시	-	9	8	_	_	17
	설립이후 1910년대 관립→공립으로 추가된 학교	-	8	1	_	_	9
	변경 후 공립학교 총계	-	17	10			27
	관공립 합계	0	20	11	4	8	43

출처: [표 5]를 바탕으로 작성.

1910년대 서울 내 관·공립 학교와 관련하여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관립은 26개로 60%, 공립은 18개 약 40%로 관립이 많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관립학교 중 9개가 공립으로 변경되면서 관립은 17개로 약 40%, 공립은 27개로 약 63%로 공립 비중이 더 높아졌다. 관립에서 공립으로 바뀐 학교는 초등교육기관이 8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보통학교규칙〉에 따라서 경성부에 있던 8개의 관립보통학교를 경성부 소속 공립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초등교육기관 중 관립으로 계속 유지된 학교는 관립한성사범학교 부속보통학교,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속보통학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부속보통학교 등 3개였다. 관립한성사범학교 부속보통학교는 1911년 관립한성사범학교가 폐지되면서 함께 폐지되고, 학생들은 경성고등보통학교 소속이 되었다.

중등 이상 학교 중 관립에서 공립으로 바뀐 학교도 관립한성고등여학교이다. 이 학교도 1911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개편되었으며, 종로구 경운동으로 교사도 옮겼다. 중등 이상 학교 중에서 관립은 관립한성고등학교와 관립한성외국어학교 2개였지만, 전자는 1911년 경성고등보통학교로 개칭되고 한성외국어학교도 병합하였다. 한성외국어학교도 그렇게 폐지되었다. 즉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새로 설립한 관립 한국인 학교는 없었으며 1910년 이전에 설립·운영되던 관립학교가 조선

총독부 소속 관립으로 변경되는 정도였다.

1910년대 교육의 중점은 초등교육에 있었으며, 경성부도 보통학교 운영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국권피탈 직후 한국인들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를 선호했다. 1913년 재학생 수를 보더라도 공립보통학교는 2,232명, 사립학교는 5,224명으로 사립학교 재학생이 2.3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점차 일어와 신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시설 면에서도 앞선 공립학교 지원 학생 수가 늘어났다. 경성부도 공립학교의 경쟁력을 고양하기 위해 보통학교에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했다. 1915년도 경성부 내 보통학교 예산서를 보면 수업료 수입 4,477원, 지방비 보조금 2만 5,185원으로 재정 지원 비중이 절대적이었다.[30]

사립학교는 총 96개 가운데 94개의 설립자는 개인·단체·기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나머지 2개는 파악할 수 없다. 개인은 79개로 84%, 단체는 15개로 약 16%를 각각 차지하였다. 기타는 사립숙명고등여학교인데, 1906년 5월 경선궁慶善宮으로부터 교사 터와 경비보조를 받아 사립명신여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1909년 사립숙명고등여학교, 1911년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31]로 개칭되었다.

개인이 설립한 사립학교 79개 중에서 한국인 설립학교는 59개로 약 75%, 외국인 설립학교는 18개로 약 23%,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설립한 학교는 1개였다. 엄준원과 이용익은 2개 이상의 학교를 설립하였다. 엄준원은 1906년 사립진명여학교, 1907년 사립신명학교를 각각 설립했다. 진명여학교는 1912년 진명여자보통학교와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로 인가받았다. 그는 1901년 한성부 판윤 등 대한제국의 주요 직을 역임했으며, 진명여학교 설립 후 1938년 사망할 때까지 교장으로 지냈다. 하지만 1905년경부터 일제 침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중추원 참의까지 하는 등으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다.[32]

3·1 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인쇄한 보성사普成社 등을 설치하여 민족계몽에 이바

30 김정인,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교육행정과 교육실태〉, 《서울학연구》 10, 1998, 168~169쪽.

31 《매일신보》 1918년 2월 21일; 숙명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32 민족문제연구소, 〈엄준원〉, 《친일인명사전》, 2009.

지한 이용익은 1905년에 사립보성소학교와 사립보성전문학교를, 1906년에 사립보성중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들 학교는 모두 1910년 천도교에서 인수하였다. 보성전문학교는 1915년 보성법률상업학교로 개칭하였으며, 보성중학교는 1913년 사립보성학교로 개칭한 후 1917년에 인가받고 사립보성고등보통학교로 다시 개칭하였다.

외국인이 설립한 18개 학교의 설립자는 공동 설립자를 포함하면 13명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13명의 국적이나 관련 종교, 설립학교를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1910년대 서울 내 외국인 학교 설립자

	이름	국적 또는 관련 종교	설립 학교	비고
1	에이다 베어 홀 (Ada Bear Hall)	미국 감리교 선교사, 지도자	사립서강여학교, 사립공덕리여학교, 사립용두리여학교	
2	스크랜튼		동대문유치원, 사립흥인배재학교	
3	아펜젤러		배재고등학당	
4	조세핀 필 캠벨		배화학당, 배화유치원	
5	메리 F. 스크랜튼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목사	이화학당	
6	베커(한국명 白雅德)		사립협성보통학교	
7	프라이(한국명 富羅伊)		사립이화유치원	
8	언더우드	미국 장로교	한국기독대학	
9	베커			
10	애니 엘러스	미국 북장로교	사립정신여학교	
11	イ-グレ- 외 2명		사립영신학교	1917년 현재 감리교와 장로교 연합 운영
12	エ, エル, ベシガ-ル		사립의법학교	미국 장로교
13	大倉喜八郎	일본	재단법인사립선린상업학교	

출처: [표 5]를 토대로 정리함.
비고: 밑줄 친 부분은 향후 계속적인 추가 자료 발굴 등을 통하여 재학인 또는 보완이 필요함.

13명 가운데 관련 종교를 파악할 수 있는 10명은 미국 감리교나 장로교의 목사 선교사 또는 지도자로서 모두 미국 관련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글레イ-グレ-'와 에엘 베시가르エ, エル, ベシガ-ル도 그들이 설립한 학교가 종교계 학교인 점으로 보아 종교계 인물로 짐작된다. 2개 이상의 학교를 설립한 외국인은 에이다 베어 홀, 스크랜

튼, 조세핀 필 캠벨이며 특히 에이다 베어 홀은 여학교만 3개 설립하였다.

일본인 대창희팔랑大倉喜八郎은 1907년 봄 한국재단법인으로 하는 선린상업학교를 인가받았다. 그는 철포상을 운영하는 일본 재벌가로 1897년 경인철도인수조합을 결성하고[33] 러일전쟁 때 무기상 등으로 큰돈을 벌었으며, 전라북도 옥구에 있는 대창농장 소유주였다.[34] 이천오층석탑利川五層石塔 등 수많은 한국 문화재를 약탈한 대표적인 인물[35]이기도 하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설립한 사립학교도 있는데 1915년 약학연구기관으로 설립한 조선약학강습소가 그곳이다. 한국인 조중응趙重應·이석모李碩謨 등과 일본인 신정호태랑新井虎太郎·산안우태랑山岸祐太郎 등이 약학연구기관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학교 설립을 발기하였다.[36] 이들 중에는 매약업買藥業, 의료기판매업 종사자들이 있으며, 이 학교는 한국인과 일본인 공학교로 1918년 조선약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37]

1910년대 학교 중 단체가 설립한 것은 15개인데, 비종교 단체에서 설립한 5개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10개로 구분할 수 있다. 비종교 단체는 1907년 한성부에서 국가 경축행사 보조나 지방자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한 한성부민회, 애국계몽단체인 기호흥학회·보인학회·서우학회, 객주조합인 광신사廣信社 등이다. 종교단체는 유교의 대동학회(공자교회), 불교의 삼십본산연합사무소三十本山聯合事務所, 가톨릭교의 베네딕도수도회, 감리교의 상동교회·아현교회·왕십리감리교회(꽃재교회), 미국 북장로교파선교회, 황성기독교청년회 등이다. 베네딕도수도회는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사립숭공학교崇工學校(1910)와 사립숭신학교崇信學校(1911) 등 2개를 설립하였다.

1910년대 서울에서 유치원을 비롯하여 학교가 있었던 지역을 학교급별, 동·구별로 2025년 현재 지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이 시기에 학교 위치를 이전한 곳까지 포함하였기 때문에 [표 5]에 정리된 유치원·학교 총수보다 많다.

33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34 정제정, 〈철도 부설〉, 《한국사》 44(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국사편찬위원회, 2000, 60~62쪽.

35 《법보신문》 2024년 11월 14일.

36 〈(잡보) 조선약학강습소의 설립〉, 《약학월보》 2(5), 1915, 97쪽.

37 《매일신보》 1918년 6월 5일.

[표 11] 1910년대 서울 내 한국인 학교 지역별·학교급별 분포 양상(현재 지명 기준)

	소재지(2025.현재)		학교급별 수					동·구별 학교 총수
	구(구	구 이하 지명	유치원	초등	중등 이상	전문	교원 양성	
1	노원구	공릉동		1				1
		노원구 합						**1**
2	동대문구	용두동		1				1
3		청량리동			1			1
		동대문구 합						**2**
4	마포구	공덕동		1				1
5		대흥동		2				2
6		마포동		1				1
7		상수동		1				1
8		신수동		1				1
9		아현동	1	2				3
10		창전동		2				2
11		현석동		1				1
		마포구 합						**12**
12	서대문구	미근동		1	2			3
13		영천동			1			1
14		옥천동		1				1
15		창천동				1		1
		서대문구 합						**6**
16	성동구	마장동		1				1
17		상왕십리		1				1
18		성수동		2				2
19		행당동		1				1
		성동구 합						**5**
20	성북구	성북동		1				1
21		장위동		1				1
		성북구 합						**2**
22	용산구	서빙고동		1				1
23		용산동		1				1
24		원효로4가 71		1	1			2
25		이촌동		1				1

	소재지(2025.현재)		학교급별 수					동·구별 학교 총수
	구(구	구 이하 지명	유치원	초등	중등 이상	전문	교원 양성	
26	용산구	청파동		1				1
27		청파동 1가		1				1
28		청파동 3가 313번지			1			1
29		한남동		1				1
30		효창동		1	1			2
		용산구 합						**11**
31	은평구	녹번동		1				1
		은평구 합						**1**
32		가회동		2				2
33		견지동			1			1
34		경운동		2	2		2	6
35		계동		1				1
36		관수동		1				1
37		교동			1			1
38		낙원동	1		1	1		3
39		내수동		2				2
40		내자동			1			1
41		누상동		1				1
42		누하동	1		1			2
43		도렴동			1			1
44		동숭동				2		2
45		명륜동1가			1			1
46		명륜동2가		1				1
47		북촌로		1				1
48		세종로				1		1
49		수송동		3	4	2	1	10
50		신문로1가		2				2
51		신문로2가		1				1
52		안국동		1				1
53		연건동				1		1
54		연지동			2			2
55		운니동		1				1

	소재지(2025.현재)		학교급별 수					동·구별 학교 총수
	구(구	구 이하 지명	유치원	초등	중등 이상	전문	교원 양성	
56		원서동		1	1			2
57		이화동		1	1	2		4
58		인사동	1	1	1			3
59		인의동		1				1
60		재동			1			1
61		종로2가			1	1		2
62		종로5가			1	1		2
63		종로6가		2				2
64		중학동		1				1
65		창성동		1	1			2
66		창신동		4				4
67		청운동		1				1
68		청진동		1				1
69		통의동		1	2			3
70		평동		1				1
71		혜화동			1		1	2
72		화동			2		5	7
73		효제동		1				1
74		종로구 (동을 알 수 없는 곳)	1	1				2
		종로구 합						**88**
75		남대문로3가			1			1
76		남대문로4가			1			1
77		남대문로5가				1		1
78		남창동		1	1			2
79		남학동			1			1
80	중구	다동		1				1
81		만리동1가		1				1
82		만리동2가		1	1			2
83		명동2가 75			1			1
84		서소문동		1				1
85		수하동		1	1			2

	소재지(2025.현재)		학교급별 수					동·구별 학교 총수
	구(구	구 이하 지명	유치원	초등	중등 이상	전문	교원 양성	
86	중구	을지로3가(추정)		1				1
87		을지로6가				1		1
88		인현동2가		1				1
89		입정동			1			1
90		장교동		2		1		3
91		정동	2	1	2			5
92		중림동		1				1
93		태평로1가				1		1
94		필동		1				1
		중구 합						**29**
		총계	7	81	44	16	9	157

출처: [표 5]의 소재지(2025년 현재) 부분에서 2025년 현재 소재지를 정리함.

비고: 1. 소재지 중 西部로만 되어 있는 사립成□□□學校는 오늘날 해당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통계에 포함하지 않음.

2. 한국기독대학(조선기독대학/사립연희전문학교), 재단법인 사립선린상업학교, 용산공립간이공업학교, 용산공립보통학교 등과 같이 학교 이전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곳도 모두 포함함.

먼저 구별로 보면 종로구에는 88개의 학교가 있었는데 전체 157개 중에 56% 정도로서, 서울에 있는 전체 학교 수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다음이 중구 29개, 마포구 12개, 용산구 11개 순이었다. 동별로 보면 수송동이 10개로 가장 많은 학교가 있었는데 역시 종로구에 속한다. 그다음이 종로구 화동 7개, 경운동 6개, 중구 정동 5개 순이었다. 전문학교와 교원양성기관도 서대문구에 있던 전문학교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종로구와 중구에 있었다. 수송동은 유치원을 제외하고 초등, 중등 이상, 전문학교, 교원양성기관까지를 모두 갖춘 유일한 지역이었으며, 중등 이상 교육기관도 4개로 가장 많았다. 초등교육기관도 창신동 4개, 수송동 3개 순으로 많았는데 이 또한 종로구에 속한다.

1910년대 서울 내에 해당하는 곳이 아니어서 [표 11]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서울 내에 해당하는 곳에 있었던 한국인 학교도 있다. 사립창동학교彰東學校, 양천공립보통학교, 영등포공립보통학교 등이다. 창동학교 당시 소재지는 양주군 양동

으로 오늘날 도봉구 창동이다. 이달회李達會가 1895년 2월 15일 설립해서 1909년 8월 31일 허가받았다.[38] 1912년 4월에 설립된 양천공립포통학교 소재지는 당시 김포군 양동면으로 오늘날 강서구 가양동이다. 1915년 4월에 설립된 영등포공립보통학교 당시 소재지는 시흥군 영등포면으로 오늘날 영등포구 영등포동이다.

일제강점기에도 서울의 학생 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중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서울 거주자보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학생들의 비중이 작지 않았다. 서울의 거주 한국인 인구 대비 한국인 학생 인구는 1911년 1.5%, 1921년 9.9%, 1931년 14.6%, 1941년 13.2%였다. 같은 시기 서울 거주 일본인 인구 대비 일본인 학생 인구는 10.6%, 20.6%, 19.1%, 18.9%였다. 서울의 한국인 학교와 학생 수의 증가는 학교급을 불문하고 기하급수적이어서, 학생들은 만성적인 입학난에 시달렸다.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는 지원자 4명 중에서 1명만이 입학 가능한 수준이었다. 경성부는 해결책으로 〈공립보통학교 학습회 규정〉을 마련하여 2부제 수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3개 공립보통학교에서 18개 학급의 학습회를 설치한 후 1,000여 명의 아동을 교육하기도[39] 하였다.

2) 1920년대 경성부 내 일본인 학교

일제가 1910년대 교육행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일본인의 이민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인 이민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일본인 교육시설 확보와 그를 위한 재정마련이었다.[40] 일제가 국권피탈이 되기도 전인 1909년 12월에 〈학교조합령〉을 제정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실시한 것도 그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학교조합령〉을 통해 법인으로 인정된[41] 공공조합

38 〈明治四十三年十月末日現在 京城府內私立學校現狀一斑〉(내무부 학무국 학무과 조사, 渡部學·阿部洋 편, 《일본 식민교육정책 사료집성(조선편)》 제67권(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료DB〉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3.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황(종교학교 제외, 1910년 10월 말 현재)).

39 정준영, 앞의 글, 2015, 89~90쪽. 각주.

40 김정인, 앞의 글, 1998, 162쪽.

41 〈학교조합령〉, 《공보》 1909년 12월 27일.

인 학교조합을 한국에 설치하고 일본인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학교조합에는 학교조합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대부 또는 양여하는 등의 형태로 자산을 확보해 주었다.

재조선 일본인 교육기관이 한국에 들어선 것은 1877년 부산에서부터였으며, 그 후 1882년 원산, 1885년 인천, 1889년 서울 순으로 설립되었다. 서울에서는 거류민총대역장總代役場 내 공간에서 시작한 소학 과정 정도의 교육이었다. 1890년 10월 일본인 소학 교육시설은 본정2정목(오늘날 중구 충무로2가) 45번지에 새로 건축한 대곡파본원사 포교소 건물 내로 이전하였다. 그때 이름을 '재경성거류공립학사共立學舍'라고 지었다. '공립共立'이라고 한 것은 소학 교육에 거류민회와 동본원사가 함께 관여했기 때문이었다. 1892년 6월 학교 경영에서 종교계와의 촉탁 관계를 해제하고 거류민회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교명도 재경성공립일본소학교로 바꾸고 8월 22일 개교식을 개최하였다.

1893년 8월에는 그 학교에 고등소학교가 설치되었다. 청일전쟁 때 교사가 징발되어 휴교했다가 1895년 1월 다시 개교했다. 학생 수가 증가하자 같은 해 7월 남산정2정목(오늘날 중구 남산동2가)[42]에 교사 건물을 기공하고 11월에 완공하여 이전했다. 이름도 대일본공립경성심상고등소학교로 바꾸었다.

초기 일본인 소학교에서는 일본인 학생들의 한국어 숙달과 한국인과의 융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인 희망자에게 특별히 입학을 허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입학생이 증가하고, 관립일어학교가 설립되면서 1898년 4월부터 한국인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다. 1906년에는 일출정日出町(오늘날 중구 필동)에 새로 크게 지은 교사로 이전하였다. 이 교사는 거류민단 1년 예산의 약 70%에 달하는 거액이 들어갔으며, 당시 일반적이었던 목조건물 대신 빨간 벽돌로 지었다. 이후에도 교명은 1908년 3월 17일 제1심상고등소학교, 1910년 4월 1일 일출심상고등소학교, 1911년 12월 28일 일출심상소학교, 1912년 일출공립심상소학교 순으로 바뀌었다.

42 뒤에 이곳에는 남산공립소학교가 자리 잡았다.



[그림 4] 1895년 '대일본공립경성심상고등소학교' 완공식 기념사진
출처: 北川吉昭 편, 《山口太兵衛翁》, 山口太兵衛翁表彰會, 1934, 27쪽.

일출공립심상소학교(이하 '일출소학교')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본토의 국외에 있는 일본인 소학교 중에서도 으뜸으로 알려졌다. 일출정은 통감부와 초기 조선총독부 등 일본 관청과 관사가 위치한 곳이었다. 일본인 상점가의 중심인 본정本町(오늘날 중구 충무로) 등도 일출공립심상소학교의 교구校區에 포함됐다. 이런 배경으로 정부 기관의 고관이나 부잣집 자녀가 많이 다녀 "조선의 학습원學習院[43]"이라고 하는 등 일본 본토에서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에 비유되었다. 일제강점기에 경성중학교를 거쳐 일본 본토에 있는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최고의 엘리트 코스라고 여겼다. 경성중학교 진학률에 따라서 소학교 서열이 정해졌는데 일출소학교가 진학률이 높아 엘리트 학교라는 인식이 많았다.

일본인 학교에는 몇몇 소수의 한국인 고위층 자제에게 입학을 허락했는데, 일출소학교에는 덕혜옹주를 비롯해 송병준의 외손자인 구용서, 윤치호의 조카 윤일선 등이 다녔다. 이들 가운데 남학생은 경성중학교와 일본 본토의 고등학교 진학을 계획하기도 하였다.[44]

43 학습원은 근대에 일본 귀족 자제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었다.

44 정준영, 앞의 글, 2015, 102쪽.

1910년대 서울에 있었던 일본인 학교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1910년 8월 29일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이 공포되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 설립되어 1920년까지의 기간에 존재했던 학교이다. 물론 1910년부터 1920년까지의 기간에 폐지된 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결과 [표 5]에 정리한 학교 수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나 《경성부사》 등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학교보다 수가 많다.

서울은 1910년대 또는 제1차 〈교육령〉 실시 기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설립된 지역이었으며, 학교 종류도 여전히 고르게 갖추고 있었다. 중학교의 학교 수와 학급 수는 전국에서 경기가 가장 많았는데 모두 오늘날의 서울에 있는 경성중학교와 용산중학교였다. 학급 수는 경성중학교 15개, 용산중학교 13개 등 총 28개로 전국의 45%를 차지했다. 고등여학교도 경성공립고등여학교의 학급 수가 2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45]

[표 12] 1910년대 서울에 있었던 일본인 유치원·학교

연번	구분	유치원·학교 이름	설립·개교·인가 시기	소재지 (2025.현재)	"설립자/관리자"	관·공·사립 구분	비고
1	유치원	경자기념경성유치원	1900. 5.	남산정3정목 (중구 남산동3가)	경성거류민단 /경성학교조합	공립	
2		남대문심상고등 소학교 부속유치원	1908. 4.	태평정 (중구 태평로)		공립	1911년 경자기념경성 유치원에 편입
3		문외유치원 (門外幼稚園)	1914. 2.	강기정(岡崎町, 용산구 갈월동)	잡하원승 (雜賀元勝)	사립	
4		용산유치원	1915.5.10. 개원	1924.7.28. 원정2정목(용산구 원효로2가, 원정소학교 후문 앞)으로 이전	석원기차랑 (石原磯次郎, 경성부협의회원 등, 창덕여학교 설립)	사립	1924.7.28. 원정소학교 후문 앞으로 이전 (조선신문 1924.7.30)
5	소학교	경성일출공립 심상소학교	1889. 8.	일출정 (중구 필동)	거류민단체 /경성학교조합	공립	
6		경성용산공립심상 고등소학교/경성용산 공립심상소학교	1903. 2.	한강통	용산거류민단 /경성학교조합	공립	1913.11.1. 경성용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를 경성용산공립 심상소학교로 변경 (관보 1913.11.22.)

45 조미은,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81쪽.

연번	구분	유치원·학교 이름	설립·개교·인가 시기	소재지 (2025.현재)	"설립자/관리자"	관·공·사립 구분	비고
7	소학교	경성남대문공립심상소학교	1908. 3.	남대문통4정목 (중구 남대문로4가)	경성거류민단/경성학교조합	공립	
8		경성앵정공립심상소학교	1910. 4.	앵정정2정목 (중구 인현동2가)		공립	
9		경성종로공립심상소학교	1911.12.	수송동 (종로구 수송동)		공립	
10		경성원정공립심상소학교/경성원정공립심상고등소학교	1911.12.	원정2정목 (용산구 원효로2가)		공립	1913.11.1. 원정공립심상소학교를 원정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변경 (관보 1913.11.22.)
11		뚝도공립심상소학교	1912. 2.	두모면 뚝도(纛島, 성동구 성수동)	뚝도학교조합	공립	
12		경성서대문공립심상고등소학교	1913. 8.	정동(중구 정동)	경성거류민단/경성학교조합	공립	
13		경성동대문공립심상소학교	1916.11.	황금정6정목 18 (옛 훈련원 광장) (중구 을지로6가)	경성학교조합	공립	
14		삼판공립심상소학교	1918.10. 2. 인가	삼판통 (용산구 후암동)		공립	
15	중등이상	경성고등여학교	1908. 4.	남산정2정목 (중구 남산동2가)	경성거류민단/경성학교조합	공립	
16		통감부중학교/조선총독부중학교/경성중학교	1909. 3.	경희궁 (종로구 신문로 2가)	경성거류민단/조선총독부	관립	
17		용산중학교	1918. 4.	한강통	조선총독부	관립	조선총독부 제1청사(정동)에서 임시 개교. 1919. 한강통 신축 교사로 이전
18		사립경성야학교	1910. 4	욱정(중구 회현동)/남미창정 (중구 남창동)	호기희삼랑(湖崎喜三郎)	사립	폐지된 사립경성야학교를 1915.12.27.인가. 1916.1.7.개교.
19		사립경성중등야학교	1915.12. 27. 인가	남미창정 (중구 남창동)	정상요이(井上要二)/길전퇴영(吉田槌榮)	사립	
20		사립경성중학교	1907. 3.	명치정 (중구 명동)	정상요이(井上要二)	사립	

연번	구분	유치원·학교 이름	설립·개교·인가 시기	소재지 (2025.현재)	"설립자/관리자"	관·공·사립 구분	비고
21	중등 이상	동양협회식민전문학교경성분교/동양협회경성전문학교	1907. 4.	대화정1정목 24번지/숭2동(중구 필동1가/종로구 명륜동2가)	동양협회/계태랑(桂太郎, 동양협회 회두)	관립→사립	1907. 재동경동양협회전문학교 설치. 1915.8. 동양협회식민전문학교경성분교로 개칭. 1918.4. 동양협회경성전문학교로 개칭. 1919.5. 崇二洞 신축교사로 이전. 이때까지 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라고도 하였음. 1920.5.1. 사립경성고등상업학교로 개칭
22		사립경성학원(京城學院)	1909. 5.	장통방(長通坊) 비파동(琵琶洞)(종로구 관수동, 종로3가동 일대)	도변철현(度邊哲玄)	사립	
23		사립경성여자기예학교	1910. 4.	남미창정/태평통 서소문정 58(1918.7.15.이전)(중구 남창동/태평로2가)	호기희삼랑(湖崎熹三郎)/정상요이(井上要二)	관립→사립	설립 때 관립학교. 1912. 각종학교의 사립여자중등실업학교로 발전. 설립자 호기희삼랑 1915.7.31. 일시 폐교, 정상요이가 다시 같은 해 9월 1일 개교
24		경성중학교부속임시소학교교원양성소	1911	경희궁(종로구 신문로2가)	조선총독부	관립	
25		사립경성실업학관(京城實業學館)	1911. 4.	욱정(중구 회현동)	하정수차랑(河井秀次郎)	사립	
26		사립경성재봉여학교	1912. 5.	수정(壽町, 중구 주자동)	명석매(明石梅)/평처우메(平川ウメ)	사립	
27		사립실수재봉여학교	–	–	수야이치(水野いち)	사립	1914. 3월 말 자료에서 처음 파악됨
28		경성공립간이상업전수학교	1916. 5.	일출정 11의 12번지(중구 필동)	경성학교조합	공립	
29		경성공립간이실업전수학교				공립	1917~1921년도 통계연보에 있음
30		사립경성철도학교	1919	한강통	야림용태랑(野林龍太郎)/남만주철도주식회사	반관반민	

출처: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0~1914, 1918, 1921년도판; 경성부, 《경성부사》 3, 1941, 94쪽, 218쪽, 362~367쪽, 469~477쪽; 이동훈, 〈'경성'의 일본인 사회와 자녀교육-통감부 시기와 191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45, 2011; 조미은, 〈개항·일제강점 초기 경성의 재조선 일본인 교육기관 설립과 경성학교조합 설립〉, 《향토서울》 79, 2011.

비고: 1. 기본적인 정리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이글 [표 5] 참조.
2. 유치원·학교급별에서 설립·개교·인가 시기순으로 정리. 경성고등여학교·경성중학교·용산중학교는 일반교육 중등 과정 학교로서 한데 묶어서 맨 앞에 정리.

[표 12]에 정리한 1910년대 서울에 있었던 일본인 유치원·학교 전체 30개 가운데 설립·개교 또는 인가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은 28개이다. 그중 국권피탈 이전에 설립된 것은 13개로 약 46%, 그 이후에 설립된 것은 15개로 약 54%에 해당한다. 1910년대 일본인 유치원이나 학교 설립자나 운영자는 크게 조선총독부, 경성거류민단이나 거류민단체, 학교조합, 개인, 재단법인 등 단체나 회사 등이다.

조선총독부 소속 학교는 관립이며, 거류민단 또는 경성학교조합 소속 학교는 공립, 개인이나 회사 등이 설립한 학교는 사립이다. 이 시기 관립 : 공립 : 사립의 비율은 5 : 15 : 9이며, 크게 관·공립과 사립의 비율로 보면 20 : 9로 관·공립이 사립의 2배 이상이었다. 사립경성철도학교는 반관반민 학교이기 때문에 관·공·사립 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일본인 관립학교 중에서 경성중학교와 용산중학교는 1922년 제2차 〈교육령〉 실시와 더불어 모두 공립으로 바뀌었다. 조선총독부중학교 부속임시소학교 교원양성소는 1911년 4월 1일부터 실시한 〈조선총독부중학교관제〉 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46] 그전까지 일본인 소학교 교사 대부분은 일본 본토의 소학교 교사 중에서 선발·채용하였다.[47] 부산에도 조선총독부 소속 관립부산중학교가 설립되면서 1913년 〈조선총독부중학교관제〉를 다시 개정하였다. 서울에 있는 조선총독부중학교를 경성중학교로 개칭하면서[48] 조선총독부중학교 부속임시소학교 교원양성소의 이름도 경성중학교 부속임시소학교 교원양성소로 개칭하였다.[49]

경성중학교 부속임시소학교 교원양성소는 한국 내 일본인 중학교 졸업자나 일본 본토에 있는 중학교·실업학교·사범학교 출신자가 한국 내 소학교 교원이 되기 위해 거치는 교육기관이었다. 이 양성소 학생은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1921년 설립하는 경성사범학교 연습과의 모태가 되었다.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임시교원양성

46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4월 5일.

47 조미은, 앞의 글, 2010, 30~31쪽, 35쪽.

48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4월 1일.

49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3월 31일.

소를 폐지하고 그 소속 학생들을 경성사범학교에 편입할 당시에도 일본인뿐이었다.[50] 경성사범학교는 일제강점기 최초의 관립사범학교였다. 동양협회 식민전문학교 경성분교(동양협회경성전문학교)와 경성여자기예학교는 설립 당시에는 관립학교였으나 사립으로 변경되었다.[51]

일본인 공립 교육기관을 보면 경자기념경성유치원과 경성일출공립심상소학교 등은 경성거류민단을 비롯한 거류민단체 등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밖에 공립학교 대부분은 학교조합에 의해 설립되었다. 일제강점기 서울에 있는 학교조합은 경성학교조합과 뚝도학교조합 2개였다. 뚝도학교조합은 1911년 5월 30일 설치되었으며, 경성부 두모면豆毛面 뚝도[纛島, 뚝섬] 일대를 담당하였다.[52] 경성학교조합은 1914년 4월 1일 인가되었으며, 경성부 일대를 담당하였다. 같은 해 거류민단이 폐지되자 경성학교조합에서 거류민단 등 일본인 단체 소속 학교를 승계받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학교도 설립·운영하였다.

경성학교조합이 설립된 이후 서울에 설립된 공립학교는 모두 경성학교조합 소속이었으며, 뚝도학교조합 소속 학교는 1912년 설립된 뚝도공립심상소학교뿐이었다. [표 12]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특히 소학교는 모두 공립이었다. 소학교 관련 그러한 양상은 전국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였으며, 일제 말기까지도 계속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소학교와는 달리 중등 이상이나 각종학교[53]는 전체 19개 학교 중에서 관·공립 7개, 사립 11개, 반관반민 1개로 사립학교가 훨씬 많다.

1910년대 서울에 있었던 일본인 사립학교 설립자 관련 주요 경력이나 정보를 정

50 차은정, 〈재조 귀환자의 후루사토故郷와 기억의 정치학: 패전 후 귀국 일본인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84쪽.

51 조규태,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 경성여자기예학교의 운영과 학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9, 2024, 9쪽. 사립경성여자기예학교는 1915년 7월 31일 일시 폐교되었다가 정상요이(井上要二)가 같은 해 9월 1일 다시 개교하였다(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국역 경성부사》 3, 2014, 230~231쪽).

52 조선총독부고시 제161호,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6월 1일.

53 일제강점기 각종학교는 1879년 9월 29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교육령〉 제2조를 근거로 한다. 각종학교는 일본 의류와 서양 의류 재봉[和洋裁], 부기, 주산, 자동차 정비, 조리, 영양, 간호사, 보건사, 理容, 미용, 타이프, 영어 회화, 공업 등을 가르치는 학교였다(조규태, 앞의 글, 2024, 8쪽).

[표 13] 1910년대 서울에 있었던 일본인 사립학교 설립자 활동 등

이름	비고
계태랑(桂太郎)	후작(侯爵), 일본의 육군대장, 내각총리대신, 1905년의 '가쓰라·테프트 밀약' 체결, 동양협회 회장
석원기차랑(石原磯次郎)	용산에 정착, 관선 경기도회 의원, 경성부협의 회원, 용산신용조합 설립, 창덕가정여학교(彰德家庭女學校)와 창덕여학교 설립, 창덕여학교장
잡하원승(雜賀元勝)	용산과 서울에서 술, 간장 판매업, 건구상(建具商)
정상요이(井上要二)	송병준으로부터 한성중학교(漢城中學校) 주임교사로서 초빙되어 한국에 옴. 경성여자기예학교 경영과 교장 담당
남만주철도주식회사	1906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에 존재했던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특수 일본회사
동양협회	1898년 대만 통치를 위한 대만사정 연구단체로 동경에서 대만협회 창립. 1907년 동양협회로 변경.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고 만주를 영위하기 위한 조직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누리집 한국현대사료DB〉 근현대인물자료; 최혜주, 〈일본 東洋協會의 식민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2007; 그 외 이글 [표 12] 출처 참조.
비고: [표 12]에서 활동이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설립자를 정리함.

리하면 [표 13]과 같다.

계태랑桂太郎(1848~1913)은 1905년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일본의 척식 단체인 동양협회의 회장 등을 지낸 자로서 일제가 식민정책을 확산하는 데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밖의 사립학교 설립자로는 경기도 의원 등과 같은 지방 공공단체 임원, 약재상 등 사업 운영자, 교사나 교유 등이 있었다. 정상요이井上要二도 그중 한 명으로 친일파 송병준의 초빙으로 한국에 와서 사립한성중학교 주임 교사, 경성중학교와 고등여학교 교유 등을 지냈다. 또한 사립경성여자기예학교의 경영과 교장을 맡았으며, 폐지되었던 사립경성야학교를 인가받아 사립경성중등야학교로 개교하는 등 일본인 학교 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10년대 서울에 있었던 일본인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들이 있던 곳은 어디였을까. [표 12]에 있는 소재지를 오늘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1910년대 서울의 일본인 교육기관 소재지

소재지 연번	1910년대 등 당시 소재지명	오늘날 위치		소재지별 교육기관 수
		구(區)	구 이하 지명 또는 위치	
1	뚝도	성동구	성수동, 뚝섬	1
	성동구 소계			**1**
2	강기정(岡崎町)	용산구	갈월동	1
3	한강통	용산구	"용산동1·2·3가, 한강로1·2·3가, 남영동 일대"	3
4	원정2정목	용산구	원효로2가	1
5	삼판통	용산구	후암동	1
	용산구 소계			**6**
6	장통방(長通坊) 비파동(琵琶洞)	종로구	관수동, 종로3가동 일대	1
7	수송동	종로구	수송동	1
8	경희궁 터	종로구	신문로2가	2
	종로구 소계			**4**
9	남대문통4정목	중구	남대문로4가	1
10	남산정2정목	중구	남산동2가	1
11	남산정3정목	중구	남산동3가	1
12	남미창정	중구	남창동	2
13	명치정	중구	명동	1
14	숭2동	중구	명륜동2가	1
15	황금정6정목 18(옛 훈련원 광장)	중구	을지로6가	1
16	앵정정2정목	중구	인현동2가	1
17	정동(貞洞)	중구	정동(貞洞)	1
18	수정(壽町)	중구	주자동	1
19	태평정	중구	태평로	2
20	대화정, 일출정	중구	필동	3
21	욱정	중구	회현동	2
	중구 소계			**18**
	총 계			**29**

출처: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지명사전 홈페이지(history.seoul.go.kr).

비고: 1.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사립실수재봉여학교와 경성공립간이실업전수학교, 1924년 이후 소재지만 알 수 있는 용산유치원 등 3개 학교는 통계에 포함하지 않음.

2. 사립경성야학교, '동양협회식민전문학교 경성분교/ 동양협회경성전문학교', 사립경성여자기예학교 등 교사 이전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곳도 모두 포함함.

[표 14]에 정리된 바와 같이 1910년대 일본인 학교 등 교육기관들은 성동구를 비롯한 4개의 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구는 18곳으로 약 62%, 용산구는 6곳으로 약 21%, 종로구는 4곳으로 약 14% 순이었다. 구 이하 단위 지역별로 가장 많은 학교가 있던 곳은 오늘날 용산구 용산동1·2·3가 일대와 중구 필동으로 3개씩의 일본인 학교가 있었다. 그다음이 종로구 신문로2가(경희궁 터), 중구 남창동·태평로·회현동으로 2개씩의 학교가 있었다. 경성여자기예학교는 중구 남창동(남미창정)에 있다가 1918년 7월 15일 중구 남대문로1길(태평통 서소문정 58번지) 교사로 이전하였다.[54]

마지막으로 교육기관별 주요 사항을 보면 남대문심상고등소학교 부속유치원은 1910년 소속이 경성고등여학교에서 남대문심상소등소학교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소학교와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같은 해 바로 폐원되고 말았다. 그곳에 다니던 원생은 1911년 경자기념경성유치원으로 편입되었다. 1913년 11월 용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는 용산공립심상소학교로 학교급이 하향 변경되었으며, 반대로 원정공립심상소학교는 원정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상향 변경되었다.[55]

서울의 일본인 상업계와 교육계에서는 서울 거주 일본인 자녀 중에 낮에 상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에 상업보습교육을 실시할 만한 기관이 필요함을 계속 강조했었다. 이에 경성학교조합은 1915년 경성일출공립소학교 내에 설치된 경성보습야간학교에 학사장려비 등을 지출하였다. 종로공립소학교에서도 재봉전수소를 설치하고 소학교 여자 졸업생을 위해 재봉을 가르치다가, 1916년부터는 고등과와 보습과로 개칭하고 수업연한을 2년으로 했다. 사립경성중등야학교는 폐지되었던 사립경성야학교를 1915년 12월에 인가받아 1916년 1월 개교하였다. 수업연한은 3년 과정으로 하고 적절하게 중등 정도의 보통학교 교육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주간에 시간이 없는 일본인 자녀에게 유일한 학교였다고[56] 한다.

54 조규태, 앞의 글, 2024, 11~12쪽.

55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11월 22일.

56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4, 365쪽.

경성여자기예학교는 여자에게 필요한 의류패션 관련 중등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부덕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삼았다.[57] 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는 매년 일본 본토에 있는 본교 상급생 중에서 지원자를 파견하여, 한국에서 공사公私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1918년에는 본교로부터 독립한 전문학교로 운영하며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를 수용하였으며,[58] 1920년 5월 재단법인 사립경성고등상업학교로 변경하였다.[59] 사립경성철도학교는 만철경성관리국에서 1918년에 철도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하여[60] 1919년에 설립하였다. 1920년 12월 18일에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도움으로 신축한 용산 교사 낙성식을 개최하였다.[61]

[표 12]의 '1910년대 서울에 있었던 일본인 학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서울지역 내에 해당하는 영등포에도 영등포공립심상소학교가 있었다. 1905년 영등포거류민회와 영등포일본인회가 설립·관리하다가 1910년 영등포학교조합 소속이 되었다.

3) 사립학교 통제

서울에 근대적 시설의 사립학교가 들어선 것은 구한말부터였다. 지주·자본가 계열에서는 학교 설립과 교육을 독립운동과 근대국가 수립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며 학교 설립에 적극적이었다. 기독교계 학교는 선교의 한 방안으로 설립되어 교단 본부의 전적인 재정지원에 의존하였으며, 일제의 협조 혹은 묵인하에

57 조규태, 앞의 글, 2024, 33쪽.

58 조은진, 앞의 글, 2015, 12·19쪽.

59 〈법인등기〉, 《조선총독부관보》 1920년 6월 12일. 《경성부사》에 따르면 1915년 8월 27일 동양협회 전문학교가 동양협회 식민전문학교로 개명함에 따라 분교 역시 동양협회 식민전문학교 경성분교로 개명했다고 하였다.

60 《부산일보》 1918년 9월 4일; 〈철도학교진척〉, 《부산일보》 1918년 10월 25일.

61 《매일신보》 1920년 12월 19일. 이하 서울 소재 학교 관련 상세한 내용은 이동훈, 〈'경성'의 일본인 사회와 자녀교육-통감부 시기와 191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45, 2011; 조미은, 앞의 글, 2011; 조미은, 앞의 글, 2018 참조.

운영되었다.[62]

일제가 제도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를 시작한 것은 1908년 8월 〈사립학교령〉을 반포하면서부터였다. 같은 시기 〈서당에 관한 훈령〉도 반포하여 서당을 비롯한 민족교육에 대한 통제도 시행하였다. 1908년 당시 사립학교는 총 약 5,000개였으나, 1910년 8월에는 30% 정도인 1,900여 개로 줄었다.[63] 1911년에는 제1차 〈교육령〉과 함께 〈사립학교규칙〉을 제정·공포하여 사립학교를 탄압하는 한편 교육내용도 강제로 개편시켜 갔다. 경기도에서는 1911년 내부 규칙을 만들어 사립학교에 군수를 설립자로 포함할 것을 강요하였다.

사립학교는 제도 준수 여부에 따라서 정규학교가 되거나 비정규학교가 되었다. 정규학교는 수업연한 조정, 교과과정 개편 등을 수행함으로써 보통학교 혹은 고등보통학교로 인가받는 학교였다. 사례로 1908년 한성부민회가 관여하여 서울 중부에 설립한 사립삼흥학교三興學校는 1913년 4월 사립삼흥보통학교로 허가를 받기 위해 설립자 4명과 주민 31명이 출자하는 증서를 첨부하여 인가원을 제출했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9월 이후 일본인 교원을 채용하였으며, 설립자와 서린瑞麟 외 2방坊의 유지들이 상당히 출자하여 장래 학교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며 1914년 사립보통학교로 인가해주었다.

비정규 사립학교는 운영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일본인 교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거나, 〈교육령〉과 〈보통학교규칙〉에 정한 교과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인가를 못 받는 학교였다. 이들 학교는 지방비 보조를 받지 못했으며,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각종학교各種學校로 남거나 폐지되었다.[64] 3·1 운동 직전 사립학교는 742개로 줄어들고 학생 수도 반으로 감소하였다.[65]

62 김정인, 앞의 글, 1998, 172~173쪽.

63 강영심, 〈1910년대 국내민족운동의 배경과 경향〉, 《신편한국사》 47(일제의 무단통치와 3·1 운동), 국사편찬위원회, 2002.

64 정준영, 앞의 글, 2015, 79~80쪽, 94쪽.

65 강영심, 앞의 글, 2002.

사립고등보통학교의 경우 대한제국 황실과 관련 있던 학교들이 옛 황실에서 기부한 재산 수익을 기반으로 우선하여 설립인가를 받았다. 가장 먼저 고등보통학교로 개편 인가를 받은 학교는 숙명고등여학교로 1911년 11월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로 인가받았다. 이후 1912년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1913년 양정고등보통학교 순으로 인가를 받았다. 이화학당은 1908년 대한제국에서 인가를 받았으나 1918년에야 다시 고등보통학교로 인가받았다.

사립정신여학교는 1909년 사립학교로 인가받았으나 조선총독부에서 여자고등보통학교로 인가해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1912년 사범과와 보수과를 설치했다가 1916년에 폐지하는[66] 등 적극적인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한참 후인 1933년 9월 6일 정식학교 신청을 해서 1935년 5월 9일에야 인가받았다.[67]

사립학교는 일제로부터 인가받는 과정에서 고등보통학교로 특화되거나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로 분화되었다. 새로 인가받은 고등보통학교라는 정규과정과 인가받기 전의 과정인 비정규과정의 두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형태로 복선화되기도 하였다. 숙명과 휘문은 중등 과정으로 특화되었다. 진명은 4년제 진명여자보통학교와 3년제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로 인가받아 초등과 중등으로 나뉘었다. 배재는 수업연한 4년의 배재고등보통학교로 인가받았다. 그러나 〈교육령〉에 의해 인가받지 않은 비정규과정의 배재고등학당도 1925년까지 함께 운영하였다. 양정은 전문학교를 목표로 했으나 양정고등보통학교로 인가받았다.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도 바뀌는 학교도 있었다. 다동공립보통학교는 1908년 9월 오늘날 중구 다동에 사립공성학교로 설립되어 1914년 사립다동보통학교로 인가받았으나, 1916년에 공립으로 전환되었다.

일제강점기 외국인 선교사들은 치외법권적인 존재였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 사립학교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학교는 교육선교 차원에서 중등교육 이상의 과정으로 개설·운영되었으며, 식민교육체제 내에서 소외되었던 한국인들의

66 정신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67 《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18일.

교육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구실을 하였다.[68]

1915년 조선총독부는 〈전문학교규칙〉과 〈사립학교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으로 전문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제어·통제하려는 조치였다. 〈사립학교규칙〉은 특히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도구 역할을 했다. 그러한 제도적·정치적 제약뿐 아니라 공립학교에 대한 선호도 증가, 사립학교의 고질적인 재정 악화 등으로 사립학교는 계속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1919년에 사립학교 929개가 폐교했으며 1920년 현재 명맥을 유지한 것은 742개였는데, 그중 종교계통이 298개였다.[69] [표 5]를 통해서 볼 때 1920년까지 서울에서 일시적으로라도 운영하거나 유지되었던 사립학교 총 98개 중 종교계 학교는 사립연화봉여학교蓮花峰女學校, 사립영신학교永信學校 등 16개 정도였다.

조선총독부가 종교와 교육에 관한 분리정책을 시행한 뒤 종교계 학교 중에서 가장 먼저 인가받은 학교는 1916년 2월 사립배재고등보통학교였으며, 그다음이 1918년 사립휘문고등보통학교였다. 경신학교는 1901년 11월 예수중학교로 설립, 1905년 초 경신학교로 교명을 결정, 1908년의 〈사립학교령〉에 따라 1909년 대한제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제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 조선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로 운영하였다. 그러한 기독교 등 종교계 사립학교들은 '각종학교'로 분류되었고 자체적으로 초등과 중등 수준의 교육을 하였다.[70]

기독교연합대학 설립을 추진하던 자들은 조선총독부에 제출하는 '재단법인' 정관에서 종교와 '천황제' 국가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에서 작성한 정관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71] 사립연희전문학교 기독연합 재단법인은 그런 과정을 거쳐 1917년 4월 7일 설립 허가받았다.[72]

사립전문학교는 관립전문학교보다 차별도 많이 겪어야 했다. 전문학교는 본래

68 정준영, 앞의 글, 2015, 78~79쪽. 94·127쪽.

69 김정인, 앞의 글, 1998, 172쪽.

70 정준영, 앞의 글, 2015, 78·79쪽, 95~96쪽. 98쪽.

71 신주백, 앞의 글, 2012, 61~62쪽.

72 《조선총독부관보》 1917년 4월 10일.

특정한 과科를 교육하고, 졸업생들에게는 그와 관련한 자격을 부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도 관립전문학교 졸업자에만 〈문관 임용령〉에 따라 판임문관에 임용되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들만이 사립보통학교·사립고등보통학교·사립여자고등보통학교·사립실업학교 등의 교원이 될 수 있었다. 교원 채용에서도 같은 급의 전문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사립 출신은 관립 출신과 비교해 급료가 1/2 또는 1/3 정도였다. 은행 취업에서도 초임부터 관립전문학교 출신이 우대를 받았다.

그러한 유형·무형의 자격 또는 우대를 획득하기 위하여 한국인들은 관립전문학교 진학을 향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의사 자격에서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따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의사면허를 받았으나, 사립이었던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73]

사립전문학교 관계자들은 일제의 그와 같은 정책을 비판하였다. 사례로 1919년 9월에 서울에서 열린 재조선 신교 복음전도 연합회의在朝鮮新教福音傳道聯合會議에서 일제의 억압정책에 대한 개혁 요구를 결의하였다. 이어 회장 밀러H. Miller와 간사 빌링스B. W. Billings의 이름으로 사이토 총독에게 의견서를[74] 전달하였다.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이 총독부의 시험을 통해 의사면허장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조선총독부 허가를 받은 사립학교 졸업생도 관립학교 졸업생과 같은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75] 1910년대에는 대학 설립까지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 대학 설립 운동도 일제의 '종교교육 금지'와 '사립전문학교 설립유도' 등으로 대학 승격까지는 이루지 못하였으며, 사립전문학교로 식민지 교육체제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귀착되고 말았다.[76]

73 조은진, 앞의 글, 2015, 43~45쪽.

74 자료에는 建白書라고 하였는데, 이는 관청이나 윗사람에게 전하는 의견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75 김자중, 앞의 글, 2016, 73~74쪽.

76 정준영, 앞의 글, 2015, 132·150쪽.

제2절

1920~1930년대 대학 설립과 식민지 교육체제의 형성

1. 제2차 〈조선교육령〉 반포와 식민지 교육체제의 형성

1) 제2차 〈조선교육령〉 반포

일본이 대한제국에 식민지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1904년 8월 이른바 제1차 한일협약韓日協約을 강요한 뒤 그 협정서에 따라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실시하면서부터였다. 즉 일본 정부는 1905년 2월부터 대한제국 학부學部에 참여관參與官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를 파견하여 한국의 교육을 간섭·침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77] 이로부터 조선총독부는 1945년 8월 패망할 때까지 40여 년간 교육을 식민지 착취와 지배의 주요한 수단으로 악용하며 민족교육을 말살하는 등 한국인들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였다.

일제의 식민주의 교육은 교육관계 법령의 시행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체로 세 시기로 구분되고 있다. ① 학부의 일본인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에 의한 교육간섭기(1905.2.~1906.8.), ② 한국통감부에 의한 〈학교령〉 시행기(1906.8.~1911.8.), ③ 조선총독부에 의한 4차의 〈조선교육령〉 시행기(1911.8.~1945.8.)가 바로 그것이다.[78] 이 시기를

77 조선총독부 학무국, 《朝鮮教育要覽》, 1926, 10쪽;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4, 47쪽.

통틀어 일제는 한민족에 대한 우민화愚民化와 동화주의同化主義 교육방침을 기본으로 하여 식민지 교육을 실시했였다고 할 수 있다. 우민화 교육의 단적인 예는 '충량한 국민', '황국신민皇國臣民'을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인에게 일본어 습득과 실업교육 위주의 초등교육을 실시하고, 고등교육에 대해서 극도의 억제정책을 취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일본에는 이미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등 다수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1922년 2월의 제2차 〈조선교육령〉 전까지는 대학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79] 이리하여 그들은 이 법령을 핑계로 1907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대학의 인가를 얻어 병설한 숭실학교 대학과와 1910년 9월에 이화학당에서 개설한 대학과의 인가를 모두 취소하였다.[80] 또 1911년에는 조선 왕조의 개창 이후부터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던 성균관의 교육기능도 박탈하여 경학원經學院으로 격하시켰다.[81] 조선총독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같은 해 11월 〈사립학교 규칙〉 및 1915년 3월 〈전문학교 규칙〉을 발표하여 우리 민족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사립학교에 일대 탄압을 가했다. 그 결과 보성전문학교를 비롯한 기독교계의 세브란스, 숭실, 이화 등도 모두 '각종 학교'로 격하당하게 되었다(이중 세브란스는 1917년 의학전문학교로 다시 인가). 대신 총독부는 기존의 각종 관립학교를 전문학교로 개편하였다. 즉 1916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를 그리고 1918년에 수원농림전문학교 등을 발족시켜 일본인 학생을 대거 입학시켰던 것이다.[82] 이러한 조치는 민족교육을 크게 위축시키는 반면에 식민통치에 필요한 하급 관리나 의료·기술인력 양성소 격인 이들 관립 전문학교를

78 정재철, 《일제의 對韓國 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1985, 193쪽.

79 1차 〈교육령〉의 제2조는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본의로 규정되었고 제3조는 '時勢와 民度'에 적합하게 해야한다고 명시되었다. 제4조는 "교육은 이를 대별하여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함"이라고 되어있어 대학에 관한 언급이 아예 없다(조선총독부 학무국, 《現行朝鮮教育令竝關係法規》, 1920, 1쪽).

80 손인수, 앞의 책, 1984, 105쪽.

81 성균관대학교사 편찬위원회, 《성균관대학교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8, 139쪽.

82 고려대학교 70년지 편찬실, 《고려대학교 70年誌》,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5, 67쪽; 정재철, 앞의 책, 1985, 336쪽; 《경성법학전문학교일람》 1931년, 1쪽; 《경성의학전문학교일람》, 1930년, 4쪽; 《경성고등공업학교일람》 1935년, 1쪽; 《수원고등농림학교일람》 1932년, 1쪽.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여기에는 대학의 설립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조선총독부 당국이 여러 번 있었던 대학 설립의 요구를 불허하였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즉 1910년 3월 보성전문을 '보성대학'으로 승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83] 같은 해 8월 대한제국의 강제병합 직후에는 국채보상운동으로 모집된 기금을 바탕으로 민립대학 설립 신청이 있었으나 모두 거절당했던 것이다.[84] 또 1917년 발족한 연희전문학교도 애초에는 대학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총독부가 초기에는 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하나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불허해서 대학으로 설립될 수 없었다.[85]

조선총독부는 종래 대한제국의 학제는 계통이 복잡하고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학제를 통일하고 소위 시세와 민도民度에 맞게 한다는 이유로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실용적이고 간편함을 특징으로 한다는 학교 제도를 새롭게 재편성하고, 교육의 종류를 보통교육, 전문교육, 실업교육으로 정했다. 중등교육기관은 1905년 이래 통감부 시기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다시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고등보통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인들의 완결(최종)교육 성격을 지닌 보통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되었다.[86]

특히 이 〈조선교육령〉에 따라 관립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학교를 포함하는 사립학교조차 법으로 규정된 학교 제도상의 학교로 인가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사립 및 종교계 학교는 학제상의 학교급級의 위치를 분명히 하여 일제 당국의 교육 통제 권한을 인정하고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 체제로 포섭되거나, 아니면 인가받지 않은 방계傍系학교로 남아 식민지 교육체제에서 부차적이며 주변적 지위로 밀려나게 되었다.[87]

83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9일.

84 고려대학교 70년지 편찬실, 앞의 책, 1975, 37쪽; 이인, 〈식민교육에 맞선 「민립대학」 운동〉, 《신동아》 1969년 10월호, 297~298쪽.

85 김도형, 〈연희전문학교의 대학 지향〉, 《민족문화와 대학》, 혜안, 2018, 95~96쪽.

86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 《한국교육사학》 31(1), 2008, 7쪽.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식민지 조선의 교육을 통제했으며, 교육 침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4차에 걸친 각 교육령의 주요 목적은 식민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정책 수행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교육령에 나타난 식민지 교육의 기본방침은 "충량한 일본 신민의 양성과 시세, 민도에 맞는 교육" 그리고 일본어 보급을 통한 동화주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화주의 교육방침은 사실상 민족 차별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었다. 1910년대 '무단통치'로 표현되는 조선총독부의 통치방침은 '조선특별통치주의'에 기초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한국인 교육은 일본과 별개로 이루어졌다. 제1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인 교육'에 대한 법령으로서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이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시기 한국인 교육방침은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위주로 하여 간이簡易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조선인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고등교육이 최대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학교만 존재했으며, 대학 설립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88]

그러나 이러한 일제, 즉 조선총독부의 고등교육 억제책은 1919년 3·1 운동이 거족적으로 전개되는 등 우리 민족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총체적 저항이 일어나자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약간 바뀌게 되었다. 특히 1920년대 초반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자 일제 당국은 이를 저지하고 그러한 움직임을 호도하기 위해 관립의 '제국대학'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89]

1920년대에 일제 당국은 강압적 무단통치를 대신하여 유화적인 '문화통치'를 통해 동화 정책을 추진했다. 교육제도 면에서는 '내지연장주의' 원칙하에 학제를 일본과 동일하게 개정한 제2차 〈조선교육령〉이 제정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고등교육으로서 대학 교육을 규정한 내용이었다. 〈조선교육령〉에 의한 공사립 대학 설립이

87 위와 같음.

88 김은영, 〈1910-20년대 식민지 조선의 교육 법제: 고등교육의 '부재'와 '지연'〉, 《법이론실무연구》 11(2), 2023, 79~80쪽.

89 연세대학교 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1,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144쪽.

허용되었고, 마침내 1924년 관립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설치되면서 대학 교육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결국 경성제국대학 외의 대학은 광복될 때까지 식민지 조선에 설립되지 못했다.[90]

조선총독부는 1922년 2월 4일 칙령 제42호로 공포한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 고등교육 정책과 전문학교 방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제1조 조선에서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거함.
>
> 제2조 국어(일본어-필자)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과 〈고등여학교령〉에 의거함. 단 이들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 총독이 이를 시행함. 전항의 경우에 조선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특례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 총독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제3조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로 정함.
>
> 제12조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과 그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의거함. 단 이들 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 총독이 이를 시행함.
>
> 전문학교의 설립과 대학예과의 교원 자격에 관해서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거함.
>
> 제13조 사범교육을 행하는 학교는 사범학교로 함. 사범학교는 특히 덕성의 함양에 힘써서 소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와 보통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
> 제26조 본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립학교,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에 관하여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름(밑줄은 필자).[91]

제2차 〈조선교육령〉의 특징은 조선의 '학제연장'學制延長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총독부는 제1차 〈조선교육령〉의 제1조였던 '조선에서의 조선인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라는 조항을 '조선에서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라는 조항으로 바

90 김은영, 앞의 글, 2023, 80쪽.

91 〈조선교육령〉, 《조선총독부관보》, 1922년 2월 6일(김태웅·장세윤,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2, 179~181쪽에서 재인용).

꾸었다. 즉 제2차 〈조선교육령〉이 적용되는 범위가 '조선인'이라는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 내에서 조선인(한국인)과 일본인의 학제 간 차이를 없애고, 일본 본토와 동일한 학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동화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조선 일본인의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다.[92] 그러나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다시 '국어(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로 나누어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겉으로는 일본 학제의 연장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초등교육 단계와 중등교육 단계에서 별도로 학제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조선에서의 학제는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은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 일본인은 소학교-중학교로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다만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고등보통학교에 두었던 보습과補習科를 폐지하고 수업연한을 중학교와 동일하게 5년(여자고등보통학교 4년)으로 변경하여, 형식상으로는 일본의 상급교육기관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93]

조선총독부 당국은 의도적으로 한국인 교육에서 고등교육을 배제하거나 가능한 한 늦게 도입하려 했다. 일제의 고등교육 정책 및 법령 변화의 계기는 주로 한국인, 조선 사회로부터 제기되었다. 한국인 지식층 및 기독교 계열 학교 관계자들은 사립 전문학교 증설이나 사립 대학 설립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한국인 사회의 교육운동에 대응하여 총독부는 비로소 고등교육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고등교육 정책을 운용하게 되었던 것이다.[94]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교육 요구, 일본 정부의 식민지 통치 정책, 조선총독부 학무 관료들의 생각과 정책 시행은 일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대립하면서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 〈조선교육령〉이 비로소 개정되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교육 요구는 실질적으로 반영되

92 김태웅·장세윤, 앞의 책, 2022, 181쪽.

93 김태웅·장세윤, 앞의 책, 2022, 181~182쪽..

94 김은영, 앞의 글, 2023, 80~813쪽.

지는 못했지만 일본 천황의 '교육칙어敎育勅語' 조항 폐지, 교육목적 조항 누락, 이른바 '일선공학日鮮共學'의 소극적 도입 등에 영향을 미쳤다. 일제 당국의 식민지 통치의 이상과 원칙이라는 입장과 식민지 교육 현실과 특례라는 입장의 차이로 인해 일본인과 한국인을 동일한 교육제도로 같이 교육한다는 일본 본국 정부의 소위 '내지연장주의' 방침은 이름뿐인 원칙에 머물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교육령 개정을 통해 조선에는 일본인 학교와 조선인 학교가 별도의 계통으로 존재하는 교육제도가 도입, 정착되었다.[95]

2) 식민지 교육체제의 형성과 '내선공학'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교육방침은 '실용과 간이'에 입각한 실업중심주의였다. 이에 따라 경성에 있는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경성제일고보)는 농업, 상업, 수공手工 교과에 대해 실습 위주의 실업교육을 주로 실시했다. 학생들의 졸업 후에는 진학보다는 취업을 장려했는데, 그 주안점은 하급 관리와 교원양성에 있었다. 그러나 3·1 운동을 계기로 제2차 〈조선교육령〉이 전면 개정되자 고등보통학교의 4년제 학제가 일본의 중학교와 동일한 5년제로 개정되었고, 한국인 학생들의 일본 진학이 가능해졌다.[96]

하지만 그것은 제도상의 개정이었고, 실제로 한국인 학생들이 진학에 전면으로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대체로 조선의 고등보통학교에서 '진학'을 교육내용과 수업에서 체계적으로 수용한 것은 경성제국대학 예과 창설이 계기가 되었다. 경성제대 예과 입시에서 경성제일고보는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함으로써, 제국대학 진학에 강한 면모를 보이며 다른 고보에 비해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1920년대 분위기상 경성제일고보의 우위를 낙관할 수만은 없었다. 3·1 운동의 여파와 사회주의의 확산, 6·10 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1920년대는 여전히 불안정한 시기

95 강명숙,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 연구〉, 《교육사상연구》 23(3), 2009, 25~53쪽.

96 임아랑, 〈일제시기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학생의 진학과 진로〉, 《역사문제연구》 26(2), 2022, 207~208쪽.

였고,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지 못한 채 중도 이탈했다. 경성제일고보의 고등교육기관 진학은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장되었다. 그 배경에는 와다 히데마사[和田英正]와 이와무라 도시오[岩村俊雄] 두 교장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두 일본인 교장의 진학 장려책은 조선총독부의 정책 방향과 적극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이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체제에 적극적으로 포섭되는 것이었다.[97]

한편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고등교육기관(전문학교, 대학) 입학시험의 실태를 일본 내 고등교육기관 입학시험과의 비교, 조선 내 관학官學과 사학私學 간의 입학시험 비교를 통해 분석한 연구성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내 고등교육기관 입학시험에 반영된 의도와 그 결과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조선에서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관학·사학을 막론하고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국어(일본어)시험을 부과했다. 둘째, 조선 내에서도 관학은 사학보다 국어시험의 배점 비율을 비교적 높게 책정했다. 셋째, 영어시험에서 관학은 '영문화역英文和[日]譯'과 '화문영역和文英譯'을 출제했지만, 일부 사학은 '영문선역英文鮮[韓]譯'과 '선문영역鮮文英譯'을 출제했다. 넷째, 연희전문학교 문과는 조선어시험을 부과했다. 이와 같은 관학과 사학의 입학시험 간의 차이는 대체로 관학의 입학시험에는 지원자의 동화同化 정도를 평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비교적 강하게 반영된 반면, 사학의 입학시험에는 그 의도가 비교적 약하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문과의 경우에는 민족주의적 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관학의 입학시험은 유난히 일본어 실력을 강조한 탓에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다수 선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98]

1937년 이후 전쟁 장기화로 물자·병력·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었던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서 이를 보충하고자 하였다. 그중 학생들은 유사시에 조직적 훈련

97 임아랑, 앞의 글, 2022, 208쪽.

98 김자중, 〈제2차 조선교육령기 조선의 고등교육기관 입학시험의 성격: 조선과 일본, 관학과 사학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7(3), 2021, 41쪽.

과 사상 무장을 갖추기에 보다 수월한 대상이었고, 그로 인해 많은 수의 학생이 전쟁 예비 인력으로 동원되었다.[99]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의 명칭을 동일하게 하여 명목상 같은 교육을 받게 하였고, 일본어와 일본사, 체육 등 교과를 강화하는 한편 조선어를 금지시켰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인 학교와 조선인 학교가 분리 운영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후 전황이 악화되자 조선총독부는 학교 교육체제를 전쟁 동원을 위한 수단으로 개편하기 시작했다. 1941년 제4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였고, 수업시수와 연한을 단축함과 동시에〈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에 따라 철저한 전시교육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동원체제정비에 관한 훈령〉 〈학도동원본부의 설치〉 〈학도근로령〉 〈결전교육조치요강〉 등의 각종 법령을 공포하여 학교 교육을 전쟁 수행의 도구로 만들었다.[100]

교육 개편을 통해 학교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고, 일본 전쟁 수행에 필요한 병력과 노무동원 예비인력으로 키우고자 하였다. 특히 군사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련과목 변화가 있었다. 1925년부터 〈육군현역장교 학교 배속령〉을 준용하여 남학생의 교련 과정을 관장하기 위해 육군 현역 장교를 학교에 배속했지만, 1942년 이후 교련 시간이 증가하면서 실제 입영한 병사들과 가까운 훈련을 받았던 것이다.[101]

학생들은 군사훈련 외에도 노무 동원에 투입되기도 하였다. 초반 실습 위주였던 작업에서 1930년대 후반 학교마다 제방 건설과 도로공사 등에 투입되었다. 노무동원은 건전한 신체를 단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책 이론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학생들을 중노동에 투입시켰다. 그리고 보다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군대식으로 조직하여 근로보국대를 결성하였다. 보통 7~10일간 현장에 투입되었고, 하루 일정이 쉴 틈이 없었다. 여름방학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동원

99 박민찬, 〈전시체제하의 중등교육과 학생동원〉,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쪽.

100 위와 같음.

101 위와 같음.

되었다.[102]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이른바 '내선공학內鮮共學'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일시동인一視同仁'을 표방하며 내선공학을 내세운 것과는 달리, 실제 내선공학은 조선 내 일부 학교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그중에서 관립전문학교는 총독부 직할로 운영되던 식민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내선공학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식민지 학교라는 공간에서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에 학교라는 한 공간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새로운 경험이었다. 내선공학은 이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103]

특히 1920년대 관립전문학교(경성전수학교, 경성의전, 경성공업전문) 학생들의 대학 승격운동 등과 같은 집단행동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의도를 벗어난 것이었다.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민족 구분을 넘어서 학교와 관련된 공통의 사안에 공감하고 집단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내선공학'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식민지 조선의 거주민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즉 학교를 매개로 하여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협력 혹은 연대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104]

이러한 학생들 간 협력 혹은 연대는 총독부 당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총독부가 관립전문학교에서 내선공학을 시행한 목적은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인력을 현지에서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건너온 고위 관료나 경제인뿐만 아니라 현지 사정에 밝은 중간급 인력이 필요했고, 관립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이들 인력이 양성되었다. 특히 조선의 관립전문학교에 진학하는 일본인 학생의 경우, 조선에 거주하는 재조일본인 자녀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진학하는 학생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관립전문학교가 제도적으로 일본과 연결되면서 재조일본인 자녀의 진학처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의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로도 기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졸업 이후 대부분 조선에서 생활을 이어나

102 박민찬, 앞의 글, 2019, 2쪽.

103 조은진, 〈식민지 조선의 관립전문학교와 '內鮮共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1쪽.

104 조은진, 앞의 글, 2025, 1~2쪽..

가며 식민통치를 뒷받침하였다.[105]

관립전문학교에서 배출한 졸업생은 식민지 조선에서 다방면으로 진출하였다.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생은 주로 조선총독부 관리가 되었고, 특히 한국인은 일반 행정관리뿐만 아니라 법원으로 진출한 비율도 높았다. 경성고등상업학교 졸업생은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하는 관리를 비롯하여 금융계, 일반 회사 등 사무직에 해당하는 분야로 다수 진출하였다. 이들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소수나마 일종의 엘리트 직업군을 형성하였다.[106]

그러나 관립전문학교 학생들의 내선공학 양상과는 달리 교원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며, 경성제국대학이나 다른 전문학교 겸임 교원이나 관리 등 현직에 근무하는 강사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조선에서 관립전문학교가 경성제국대학을 제외하면 최고학부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식민지에서도 일본의 전문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교육을 제공했던 관립전문학교는 높은 입학경쟁률을 보였고, 매년 관립전문학교 입학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그러나 조선 사회의 증설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에서는 전시체제기 이전까지 관립전문학교 규모를 늘리지 않았다. 이는 조선 내 취업난 문제와도 연관이 있었다. 특히 식민지 내에서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과도 경쟁을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조선총독부는 정책적으로 조선 내 관립전문학교 규모를 통제하고, 조선 내 전문학교 이상 학교 졸업생에게 채용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107]

105 조은진, 앞의 글, 2025, 2쪽.

106 위와 같음.

107 조은진, 앞의 글, 2025, 1~3쪽.

2.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전개와 경성제국대학 설립 및 운영

1) 한국인의 민립대학 설립 운동

(1) 민립대학기성준비회 조직과 활동

1920년대 초 식민지 조선에서는 한국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한국인을 위한 대학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였다. 식민지 조선인을 위한 대학 설립 운동은 3·1 운동 이후 폭발적으로 고양된 한국인들의 교육열을 반영하여 2년가량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조선 전 지역에 걸쳐 많은 한국인 사회단체와 민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1920년대 전반기 문화운동을 대표하는 민족운동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라고 한다

1920년대 초에 전개된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그 무렵 국내 지역에서 확산되던 문화운동의 한 분야인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이었다.[108] 1919년 3·1 운동 당시 만세 시위 운동의 전국적 확산은 민족의식이나 민중의식을 드높였다. 이러한 흐름이 한국인들의 교육열 고조와 식민지 동화교육同化教育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조선인 본위 교육' 요구로 이어졌다. 대학 등 고급 전문인력 양성이 없는 민족교육은 있을 수 없다는 인식도 고조되었다. 1920년대 전반기의 물산장려운동과 함께 문화운동론의 논리 속에서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발의되고 진전되었다.

민립대학 설립에 대한 논의는 1920년 6월 20일 한규설·이상재·윤치소 등 91명의 발기로 조선교육회(1922년 1월 조선교육협회) 발기회가 개최되면서 시작되었다.[109] 조선교육협회는 발기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립대학을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108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기원을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좀 더 검증될 필요가 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되어 이후 서울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907년 5월 말까지 27만 3,000여 원이 모금되었다(김태웅, 2016,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6(근대), 가람기획, 293~295쪽). 1908년 말 국채보상운동은 결국 실패했는데, 이때 모금된 금액을 1910년 8월 국망 이후 민립대학을 세우는 데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이현희, 2009, 《인촌 김성수 연구》, 나남, 184~185쪽 및 고려대학교 70년지 편찬실, 《고려대학교 70년지》,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6, 37쪽).

109 《동아일보》 1920년 6월 23일.

그러나 조선교육협회는 실제적인 교육운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가 대한제국 시기에 제정된 〈학회령〉을 내세우면서 1922년 1월 24일까지 1년 6개월간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독부가 인가하지 않고 시간을 끈 배경에는 당시 〈조선교육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고 조선교육협회가 인가되자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민립대학 설립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정치적·경제적 독립과 자유는 학문이 뒷받침되어야 이뤄질 수 있고, 특히 관립대학의 설립과 무관하게 민립대학이 설립되어야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110] 1922년 말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차츰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조선청년회연합회가 처음으로 이를 발의하였다. 이 단체는 의무교육과 민립대학의 조속한 설립을 결의하였다. 또한 민중을 위한 '평민대학'을 개설하여 각종 강좌를 강의하는 등 결의사항을 실천에 옮겼다. 특히 지방 강연단을 조직하여 멀리 중국 동북(만주) 지방까지 실시한 순회 강연은 교육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했다.[111]

《동아일보》와 조선청년회연합회는 민족주의 세력과 일부 사회주의 그룹으로 구성된 단체였다.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청년회연합회에는 장덕수張德秀 등 상해파 공산주의 그룹의 견해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상해파 공산주의 그룹의 일부는 일찍부터 동아일보사 안에 거점을 두고 문화운동론을 수립, 확산시켰다.[112] 특히 《동아일보》의 장덕수 등 지식인들은 민립대학 설립을 주장하면서 '학學의 독립', 즉 일본의 대학이나 대학자치와 구별되는 학문적 자율성과 지식, 학문의 독립, 사상적·정신적 독립 등을 강조하였다.[113]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조선교육협회와 《동아일보》, 조선청년회연합회의 노력으로 1922년 11월 23일 발기인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립대학기성준비회 조직을

110 《동아일보》 1922년 2월 3일.

111 김형목, 《교육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5), 독립기념관, 2009, 206쪽.

112 우윤중,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주체와 성격〉, 《史林》 58, 2016, 26쪽.

113 《동아일보》 1922년 2월 3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114] 민립대학기성준비회에는 조선교육협회 회원 이상재李商在·이승훈李昇薰·김성수金性洙·송진우宋鎭禹 등 주요 인물이 참석하였다. 민립대학기성준비회는 "발기인은 각 군郡에 2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정하며, 단 해당 군의 각 단체와 협의로 선정한다."라는[115] 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해 12월부터 각 지방에서는 발기인을 선정하고, 이를 중앙에 통보하는 등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신속히 전개되었다. 민립대학기성준비회는 사무실을 서울 시내 수표정水標町 42번지에 있는 조선교육협회 안에 두었다.[116]

창립총회는 1923년 3월 29일부터 3일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0여 군에서 1,000여 명에 이르는 발기인을 선정한 가운데 열렸다. 전국에서 창립총회에 참석한 발기인은 462명이었다. 발기총회는 집행위원 30인, 감사위원 7인, 회금會金 보관위원 7인, 지방순회 선전위원 13인 등을 각각 선임하였다. 이들은 일본 유학 등을 통해 전문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신지식층이나 교육계·언론계·실업계 종사자였다.[117]

이때 〈조선민립대학설립기성회의 발기 취지서〉가 발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심원한 지식과 온오蘊奧한 학리學理 연구에 중점을 둔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것이었다.[118] 이러한 설립 목표는 학술·기예技藝·교습敎習에 중점을 둔 기존의 전문학교 설립 목표와 달랐다. 이 무렵 《동아일보》는 한 사설에서 장차 세워질 민립대학이 '사상계 동요의 시대에 그 추세를 바른길로 인도할 사상지도'를 통해 '민중 문화'의 중추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는 주장을 펼쳤다.[119] 이는 향후 민립대학에서 이뤄질 교육·연구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사상계와 각 민족운동 단체의 분열상을 끝낼 사상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 것이었다.[120]

114 우윤중, 앞의 글, 2016, 26쪽.
115 《동아일보》 1922년 12월 9일.
116 김형목, 앞의 책, 2009, 209쪽.
117 김형목, 앞의 책, 2009, 210~211쪽.
118 이연복·윤종일 편, 《사료 한국사》, 신서원, 1994, 386~387쪽.
119 《동아일보》 1923년 3월 29일.
120 우윤중, 앞의 글, 2016, 11쪽.

같은 해 4월 2일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이상재, 상무위원 이승훈·유성준·한용운·유진태·강인택·한인봉 등을 선출하여 본부(중앙부)의 간부 선출을 마무리하였다. 중앙부는 이들이 주도하게 되었다. 중앙부 간부들은 곧 각 지방에 순회위원을 파견하여 민립대학 설립에 관한 본격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방 순회위원은 평안북도 이승훈·강인택·조만식, 평안남도 조만식·이시완·홍성설, 황해도 김탁·강인택·이갑성·이달원·이충건, 강원도 이시완, 전라도 김형옥·백남진·이갑성, 경상도 유인식·이현식, 충남 강인택, 충북 유성준 등이었다.[121] 중앙부 임원은 민립대학의 당위성과 취지 등에 대한 선전과 홍보활동에만 주력하고, 직접 지방부 조직에 관계하지는 않았다.

민립대학기성준비회가 결성되자 민립대학기성준비회와 《동아일보》는 민립대학기성회를 정식으로 창립하기 위해서 바로 지방부 발기인 모집활동에 착수했다. 민립대학기성준비회는 겉으로는 식민지 조선에 대학이 없는 현실에서 '사회의 진화'를 위한 교육운동의 일환으로 민립대학을 세우려는 것을 내세웠다. 조선총독부 당국은 이를 우려했지만, 민립대학기성준비회에 참여한 이상재·송진우·허헌·현상윤 등 민족주의계 인사들과 홍덕유·이시완·장덕수·정노식 등 사회주의계 인사들은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거족적 민족운동으로 이끌고자 하였다.[122]

그런데 당시 한국인 사회 저변의 분위기가 이러한 방향으로 고조되자 조선총독부 나카라이 기요시[半井清] 학무과장은 민립대학 설립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 민립대학을 설립코자 유지 간에 차此를 운동 중이라 한 즉 이는 실로 환영할 일로 당국에서는 가급적 편의와 원조를 여與코자 하는 바이라.[123]

121 《매일신보》 1922년 12월 26일.

122 우윤중, 앞의 글, 2016, 15쪽.

123 《동아일보》 1922년 12월 3일.

총독부 학무과장의 이 발언은 총독부 측도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 측이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항일 민족운동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체제 내의 한 합법적인 문화운동으로 포섭하려 한 방침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한국인 유력자 집단이 참여함으로써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민립대학기성회 지방부는 창립총회 이후인 5월 10일 경성 지방부 발기회를 시작으로 조직되었다. 위원은 집행위원·보관위원·감사위원 등으로 구성되었다.[124] 만주나 하와이 등지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부를 조직하는 한편 설립기금을 모집하였다.[125] 지방부는 각 군에 설치하고, 군 지방부는 각 면에 지회를 두었다. 각 군 발기인은 교육단체·실업단체·언론기관·종교단체·여성단체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는 계획이었다.[126]

민립대학기성회 주요 구성원은 재산가·지방유지·군수·면장 등과 청년단체 임원진 등이었다. 지방관리 가운데 여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원과 자문 역할을 맡기도 했다. 지방 유지는 군민대회나 면민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교육운동을 포함한 문화운동 전반을 주도하는 계층이었다. 모금을 위해 유력자들이 많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상 식민체제 내에 포섭된 인물이었다. 심지어 민립대학 봉천奉天(현재 瀋陽) 후원회는 친일단체인 조선인회나 봉천거류조선인협회에서 활동하는 친일세력이 맡기도 했다.[127]

그러나 중앙부는 선전 활동에만 치중할 뿐 치밀한 조직 관리를 위한 계획을 갖추지 못했다. 이는 각지 한국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민립대학 설립 운동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임원도 지방부 자체 내에서 선정했다. 그런데 면세面勢 등을 감안한 갑·을·병·정 4등급에 의한 회금 모금방안이 부결되어

124 《동아일보》 1923년 5월 19일.

125 《신한민보》 1923년 11월 1일.

126 김형목, 앞의 책, 2009, 212쪽.

127 김형목, 앞의 책, 2009, 213~214쪽.

각 지방부의 자발적 모금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조선 민족 1천만이 한 사람 일 원씩"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모금 운동을 전개했지만 목표액을 달성할 수 없었다. 문서상으로 약속된 금액이 많고, 실제 모금액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128]

민립대학기성준비회의 발기인 모집 운동에는 전국 각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방의 도평의원, 면장, 부면장, 면협의원 등 유력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는 민립대학 설립 운동 자체에 민족운동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점을 시사한다.[129] 한편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부르주아 문화운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점차 확산되었다.[130] 대학이 민중 또는 노동자의 문화가 될 수 없다고 하며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계급적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화요회의 김경재金璟載도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일반 무산자들에게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131] 사회주의계 인사들의 이러한 인식은 추후 일제가 세운 경성제국대학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132]

⑵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한계와 조선총독부의 탄압

조선총독부는 1920년경부터 민립대학 설립이 거론되자 처음에는 일본 도쿄[東京]에 있는 사립대학인 동양대학東洋大學의 분교 설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133] 그러나 조선교육협회 임원들은 이를 반대하였다. 또 조선 총독은 관립 경성의과전문학교를 '조선의과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조선교육회 임원들에게 밝히기도 했다.[134] 그러나 결국 1923년 11월 조선총독부는 대학창설준비위원회를 조직했는데,

128 김형목, 앞의 책, 2009, 214쪽.

129 우윤중, 앞의 글, 2016, 26쪽.

130 김은영, 〈일제하 지식인의 조선인교육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50쪽

131 김은영, 앞의 글, 2021, 150쪽.

132 정백, 〈지식계급의 미망〉, 《신생활》 3, 1922, 20~21쪽; 김은영, 앞의 글, 2021, 150~151쪽에서 재인용.

133 《동아일보》 1920년 8월 4일.

이 조직은 1924년 5월 〈경성제국대학 관제〉를 마련하여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조선총독부 당국은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탄압과 회유를 병행한 방해 공작을 벌였다. 지방 순회단이 도착하면 경찰이 선전내용이 불온하다거나 유언비어로 대중을 선동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구실로 집회를 중단시켰다. 심지어 설립기금 출연자나 기부자를 직접 호출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또 친일적 인사를 동원한 대학 무용론을 확산시키기도 했다.[135]

이처럼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지도층의 지도력 부재와 지방조직 구성원들의 한계, 직간접적 일제 당국의 탄압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인적 구성이나 조직 체계상 일부 명망가에 의한 지도력은 처음부터 한계를 드러냈다. 많은 지방부 임원들이 식민통치체제에 부응하는 인물들이었다. 일제 당국은 구성원 상호간 불신감을 조장시킴으로써 내부적 역량 결집을 와해시켰다. 심각한 입학난의 방치와 '대학 무용론' 등은 한층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보통학교 기성운동으로 관심을 끄는 요인이 되었다.[136]

결국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관변 유력자 집단의 참여로 인한 민족운동적 성격의 퇴색, 운동 참여세력의 이탈, 불투명한 회계로 인한 운동진영 내부의 불신, 한국인의 경제적 빈곤, 일본의 관동關東 대지진 발생, 1923년 여름의 수재水災, 1924년 남부 지방의 가뭄과 7월의 전국적 수해 발생으로 인한 모금액 전용, 조선총독부의 방해와 경성제국대학 설립으로 인한 필요성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 되어 1925년경(일부 학자는 1924년 6월경으로 인식)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137]

당시 민립대학 상무위원이었던 강인택姜仁澤은 스스로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부진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일제 당국의 탄압 요인도 컸음을 "우리에게 터럭 끝만치라도 권리가 있다 하면 벌써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그간 각 지방에서 활동도 좀 하여

134 《동아일보》 1920년 9월 21일.

135 김형목, 앞의 책, 2009, 216쪽.

136 김형목, 앞의 책, 2009, 216~217쪽.

137 우윤중, 앞의 글, 2016, 26~27쪽; 김호일, 〈일제하 민립대학설립운동에 대한 일고찰〉, 《중앙사론》 1, 1972, 55쪽.

보았습니다마는, 천 가지 만 가지에 저해 받은 일도 실로 한두 번이 아닙니다."라고[138] 밝히기도 했다.

또 상임위원장이었던 이상재는 경성제국대학 개교식 청첩장을 받고 "금일이 우리 민립대학의 개교식 날이니 제군도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전 간부가 침통해 있는 것을 보고 "저놈들의 관립 경성제국대학은 곧 우리 민립대학의 발족물이요, 우리 대학의 후신"이라면서 "경성제국대학도 장차 우리 대학이 될 것이다."라고 위로하기도 했다.[139]

1920년대 초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본위 교육'을 합법적으로 제기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일제 당국의 '노예화 교육', '우민화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 저항은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후 각 지역에서 입학난 해결을 위한 보통학교나 고등보통학교 설립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특유의 교육열과 함께 조선총독부 당국의 식민지교육에 저항하는 교육운동의 한 흐름이었다.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사실상 조선총독부의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조선총독부의 경성제국대학 설립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은 조선총독부의 교육·문화정책은 물론 식민지 통치정책 전반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1924년 5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설치·운영되었다. 따라서 경성제대는 일제 침략사, 즉 일본 식민주의 교육의 이식과 확장이라는 입장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학교는 식민지 조선에 있었던 유일한 대학으로 대표적 고등교육기관이자 최고 학부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이 학교는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에 충실했다기보다는 '제국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여러 부문에서 일제의 침략 및 수탈정책을 학문

138 《동아일보》 1925년 9월 1일.

139 김을한 편, 《월남 선생 일화집》, 대한민주여론협회, 1956, 69~70쪽; 김호일, 앞의 글, 1972, 56쪽.

적으로 뒷받침했다. 또 일제의 그러한 정책을 수행할 '유능한'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간혹 일부 일본인들은 이러한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대학이 조선인들을 위해 설립되었고, 식민지 조선 사회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오해하기도 한다.

일제 패망 이후 미군정에 의해 경성제대가 사실상 국립 서울대학교로 통합·발전된 이후 이 식민지 대학의 침략적 본질과 역할이 간과되는 경향도 일부 있다.[140] 그러나 경성제대는 일제 식민지 통치 및 문화침략의 한 기구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 설립 배경

경성제대 설립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마쓰무라 마쓰모루[松村松盛]는 뒷날 이 학교의 설립과정을 아래와 같이 회고했다.

> 일찍이 경성제대의 설립 시에 내가 설립에 관한 용무로 도쿄에 갔을 때 구보다[久保田] 추밀원 고문관에게 호출되어 동대학同大學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바, 그는 조선에는 법과대학의 필요가 없지 않은가? 오히려 그보다는 농과대학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는 민립대학 설치 운동이 꽤 맹렬하여 기부금의 모집을 시작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선교사들도 사립대학 설립의 계획이 있었으며, 이들 대학은 주로 법률·정치·경제 등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상 이때 만약 관립의 법과대학을 세우지 않으면 조선에서 법률·정치·경제 등의 최고 교육은 이들 사학私學에 맡기지 않으면 안되는데, 당시 (조선인들의) 민족운동을 볼 때 이는 심히 위험시되는 일이라고 답변하여 이해를 얻었던 일도 있다.[141]

140 이성규 교수(인하대, 전 서울대 동양사학과)는 "경성제국대학의 이공학부 수준은 매우 높았다."며 "경성제국대학이 3회에 걸쳐 배출한 졸업생 중 조선인 이공학부 졸업생은 37명으로 이들은 해방 후 신생 독립국의 엘리트로서 대학 교육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 조선반도의 유일한 대학으로 군림한 경성제대 이공학부에 관한 국내 사학계의 서술 비중과 평가에 의도적인 왜곡이 가미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식민지 과학기술의 전당이자, 해방 후에 신생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 경성제대 졸업생들이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며 경성제대 이공학부를 "제국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이루어놓은 성과 중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규정했다(이성규, 〈이공학부를 중심으로 본 경성제국대학의 식민사적 의미〉, 《한국사론》 42, 국사편찬위원회; 이성규, 《교수신문》 2005년 5월 7일).

141 松村松盛, 〈變り行く朝鮮の姿〉, 《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 朝鮮新聞社, 1936, 200쪽.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 당국이 민립대학을 용인하지 않으려 하는 대신 제국대학을 세운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1915년 경신학교 대학부(조선기독교대학, 연희전문학교 전신)을 설립한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1859~1916)가 별세하기 1년 전 쓴 편지를 보면 이미 1910년대에 미국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조선에 종합대학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한국인들은 충분히 고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돼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142] 그는 1915년 다음과 같은 편지를 미국 뉴욕대 브라운 총장에게 보냈던 것이다.

> 이 머나먼 동쪽에서 대학교육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 한국의 산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미 한국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143]

이러한 상황에서 경성제대의 설립 배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의 고등교육 요구(전문학교의 대학 승격과 민립대학 신설의 움직임)와 조선총독부의 제국대학 설치 필요성이 바로 그것이다. 경성제대의 설립은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144] 그러나 한국병탄의 정당성과 식민통치의 필연성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해줄 수 있는 어용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일제의 대륙침략 기도를 보조하던 어용 일본인 학자들의 식민지대학 설립 요구 및 식민통치 정책의 변화,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로 상징되는 일본 국내 상황의 변동, 또한 재조在朝 일본인 자제의 교육과 한국인 친일 인맥 양성의 필요성, 대학의 설립이 갖는 선전효과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2 《조선일보》 2025년 4월 5일.

143 위와 같음.

144 이에 대해서는 박찬승, 〈일제하 '실력양성운동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및 이명화,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배경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1991 등 참조.

특히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 총독은 부임 직후부터 청년 학생들을 친일 인물로 키우려고 하였다. 그는 "…… 수재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이들을 (친일 인물로) 양성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믿는다."라고 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145]

이밖에 일본 등 각지로 유학하는 조선인 학생들을 감시하는 번거로움을 더는 대신 국내에서 교육함으로써 독립운동 및 사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146] 그리고 식민지에 대학을 세워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내외에 선전하려는 의도 등도 지적될 수 있다.[147] 아울러 일본인 중등학교 교원의 양성과 함께 1923년 말 이미 20개교의 고등보통학교에 8,000여 명의 학생 수 그리고 7개교의 여자고등보통학교에 1,370명의 학생 수에 달했던 조선인 중등학교의 교원 양성이라는 설립목적도 있었다.[148]

(2) 설립 경위

일제 당국은 여러 가지 동기로 식민지 조선에 대학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인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학교의 설립목적을 한층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 12월 23일 훈령 제68호로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독의 자문 및 교육의 조사심의를 전담케 하였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시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水野練太郎]였고 23명의 위원 중 한국인은 친일 거두 이완용 등 3명에 지나지 않았다.[149] 여기에서 대학 설립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었고 1921년 중반경에는 이미 대학 설립은 기정 사실화하여 국내 일간지에도 보도되었다.[150]

145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5, 198쪽.

146 일제의 유학생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대해서는 阿部洋, 〈解放前日本留學の史的展開過程とその特質〉, 《韓》 59, 1976 참조.

147 실제로 선교사를 비롯한 외국인들은 "일본은 조선을 통치하면서 何等의 문화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다. 대학 하나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아도 그 성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었다(京城帝國大學 創立 五十周年 記念誌 編輯委員會, 《紺碧遙かに》, 京城帝國大學 同窓會, 1974, 4쪽).

148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23년판, 42쪽 및 〈교육〉 면.

149 조선총독부 문서과, 1923.3 문서 및 《조선》 1922년 3월호, 329~331쪽.

이해 6월 10일 이 위원회(도중에 조선교육제도조사위원회로 개칭)의 위원인 사와야나기[澤柳政太郎]가 조선 총독 사이토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서 당초에 구상한 대학의 명칭은 '조선(제국)대학'이었다. 그리고 이때 이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보면 학부의 종류를 법·문·이理·공工·농農·의학부醫學部로 구상하였고, 경우에 따라 법문法文이나 이공학부理工學部를 통합하는 종합대학 설립안이었다. 다만 이 6학부를 동시에 설립하기보다는 몇 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설치해가는 방안이었다.[151] 임시교육조사위원회의 이러한 종합대학 구상안은 후일 총독부 등 당국에 의해 법문학부와 의학부로 한정되는 학부 구성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총독부는 위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1922년 2월 소위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했다. 이때 대학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이제 제도적으로 '조선'에도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152] 이때 중요한 사실은 조선 총독이 일본 내각 문부대신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된 점이다. 이를 근거로 조선총독부에서는 한국인들의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며 제국대학을 세우게 되었다. 이제 제도적으로는 조선에도 사립대학이 세워질 수 있었지만, 인가 권한을 갖고 있는 조선 총독의 불허로 식민지 통치 전 기간을 통해 사립대학은 세워질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는 1924년 5월 2일 〈경성제국대학 관제〉를 공포하고, 칙령 제104호로 이 대학에 법문학부와 의학부를 두어 19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법률을 공포하였다. 또 같은 날 칙령 제105호로 경성제대는 〈제국대학령〉에 의한다는 내용을 공포하였으며, 조선총독부령 21호로 〈경성제국대학 예과 규정〉이 발포되었다. 1924년 5월 6일에는 청량리에 예과豫科 신축 교사校舍가 준공되었고, 5월 9일에는 총독부 정무총감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가 총장 사무 취급을 명받았다. 마침내 5월 10일에는 예과 시업식始業式을 거행함으로써 예과가 정식으로 개설되었다. 이해 8월 29일에는 일본 천황 및 황후의 사진을 구내에 설치하여 '제국대학'의 모양을 갖추었다.[153]

150 《동아일보》 1921년 5월 10일; 《동아일보》 1921년 8월 10일.

151 《齋藤實文書》 14, 고려서림 영인본, 1990, 161~164쪽.

152 《京城帝國大學一覽》 1933년판, 15쪽.

3) 경성제국대학의 학사 운영과 대학의 자치

(1) 예과의 설치와 운영

조선총독부는 1924년 5월 예과를 개설하여 예비교육을 실시하였고, 1926년 4월에는 법문학부와 의학부로 구성된 학부를 개설하였다.

조선총독부 학무당국과 경성제대 당국은 입학지원자들에 대해 철저한 신분 및 사상 경향성 조사를 실시하여 반일적 경향을 가진 지원자들을 입학대상에서 배제시켰다. 이들은 형사와 순사를 동원하여 지원자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학교 성적과 품행, 가정형편, 이력(사상경향 등) 특히 1919년 3·1 운동 등 독립운동과의 관련 여부 등을 엄밀하게 조사하였다.[154] 그래서 그런지 입학 지원 서류를 접수하고도 시험을 보지 않은 조선인 학생이 32명이나 되었다.[155]

1924년 예과 1회 입학생의 경우 한국인 학생은 전체 168명 중 44명으로 1/3도 되지 않는 비율이었다.[156] 이러한 악조건을 무릅쓰고 합격한 한국인 학생들은 그만큼 뛰어난 인재들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만큼 일본어에 능통하고 일본문화와 그 사상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부일적附日的 분위기에 차츰 젖게 되며, 부일(친일)적 태도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당국의 일방적 대학 설립과 운영방침에 대해 처음부터 우려를 표명해오던《동아일보》는 이러한 시험방침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 개정을 촉구했으나,[157]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158] 192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인들의 교육열이

153 《京城帝國大學一覽》 1933년판, 4~5쪽.

154 《동아일보》 1924년 3월 13일.

155 조선총독부 문서과, 1924. 4, 〈大學豫科選拔試驗の結果〉, 《조선》 108, 181쪽.

156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3년판 533쪽.

157 《동아일보》 1923년 12월 6일자는 〈조선대학의 창설에 대하야〉라는 사설에서 "조선인 측의 의견을 聞하라."라고 주문하며 이 대학에 대한 기대-학생 대부분이 조선인일 것이며 조선문화 연구의 최고학부가 될것이라는-를 피력하는 한편, 설립과정에서 조선인을 일체 배제한 총독부를 비판하였다.

158 《동아일보》 1924년 1월 19일자는 〈조선대학 豫科의 입학시험에 대하야-교육가의 奮起를 促함〉이라는 사설에서 시험과목이 조선인 학생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일본인 학생을 다수 입학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또 이 사설은 조선에 세워진 대학인 이상 모집공고를 낸 160명의 정원에서

고조되어 각종 학교의 입학난이 가중되고,[159] 경성제대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 대학 예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했다. 특히 한국인 학생들의 입학 경쟁률이 더 심한 편이었다.

경성제대 예과의 입학생 수는 [표 15]와 같다.

[표 15] 경성제대 예과 입학생 수

(단위: 명, %)

연도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비율	연도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비율
1924	44	124	26.2	1934	54	92	40
1925	47	115	29	1935	55	97	36.2
1926	49	94	34.3	1936	52	94	35.6
1927	44	104	29.7	1937	57	103	35.6
1928	65	86	43	1938	71	122	36.8
1929	45	96	31.9	1939	74	108	40.7
1930	38	110	25.6	1940	66	124	34.7
1931	60	101	37.3	1941	77	147	34.4
1932	45	104	30.2	1942	51	164	23.7
1933	48	98	32.9	합계	1,042	2,083	33.3

출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3년판 533쪽, 1942년판 224쪽.

18년간 예과 입학생 가운데 조선인 학생의 입학 비율은 정확히 전체의 1/3 비율로 파악된다. 물론 연도별로 증감이 있으나 전체를 평균한 비율은 학부 졸업생의 비율과 비슷한 것이었다. [표 15]를 보면 1927년과 1930년 그리고 1942년의 조선인 입학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1926년에는 6·10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1929년 11월에는 광주학생운동이 국내외에서 널리 전개되었다. 많은 한국인 학생들은 이 운동에 가담함으로써 학교 당국에 의해 퇴교당하거나 무기정학을 당하는 등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민족

조선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보다 더 많이 입학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59 김정인, 〈일제 강점기 경성부의 교육행정과 교육실태〉, 《서울학연구》 10, 1998, 69쪽.

의식이 있는 학생이라면 의식적으로 경성제대 입학 지원을 기피했고 총독부 당국도 민족운동 관련자 배제 방침에 따라 한국인 학생 지원자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엄격히 하여 입학 비율을 크게 낮추었다.

실제로 《동아일보》는 1927년 4월 17일자에서 경성제대 예과는 학력보다 '사상思想 입학시험고사'라고 비꼬면서 6·10 만세운동에 관련된 사립 중등학교 출신자들이 대부분 불합격되었던 사실을 보도했다. 비슷한 예로 1929년 광주학생운동의 발상 학교인 광주고보光州高普(현 광주제일고의 전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학교는 1927년부터 1929년 초까지 7명의 합격자를 냈으나, 운동 발발 직후 불온 학교로 낙인찍혀 1930년부터 1933년까지 4년간은 한 사람의 합격자도 배출할 수 없었다.[160]

초창기에 어느 정도 학과시험을 중시했던 경성제대 예과는 1930년대 말기부터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적으로 자행됨에 따라 입학 제도도 바뀌었다. 즉 학과 성적보다는 일제의 정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입학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특히 1942년 초부터 예과 진학에서 추천제가 실시되기 시작했고,[161] 제4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1943년 이후에 전시체제가 확대되면서 학병동원과 근로동원이 실시됨에 따라 입시에서 학과 성적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설립 초기 경성제대 예과의 교육목표는 〈경성제국대학 예과 규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도덕의 충실에 힘쓰는 것"이었다. 그리고 1940년대의 교육목표는 1940년 4월에 바뀐 대학 규정의 제1조와 예과 규정 총칙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충량유위忠良有爲의 황국신민皇國臣民을 연성鍊成"하는 것이었다.[162]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일본 국내보다 무려 3년 전에 경성제대 예과 교육에서, 또한 일본의 대학보다 5개월 전에 벌써 경성제대 학부 교육에서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었다.[163]

160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0, 270~281쪽.

161 《매일신보》 1941년 10월 29일.

162 《경성제국대학일람》 1941년판, 25·145쪽.

163 경성제국대학 창립 오십주년 기념지 편집위원회, 앞의 책, 1974, 99~100쪽.

특히 제4차 〈조선교육령〉 공포에 따라 예과의 교육목표도 한층 더 경직된 내용으로 다시 바뀌었다.[164] 총독부는 1942년 9월 총독부령 제220호로서 〈경성제국대학 예과 규정의 임시조치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초기 학과목 대신 전쟁 수행에 필요한 과목으로 변경했던 것이다.[165] 그 후 이 교과과정은 1943년 5월 초 총독부령 제138호로 예과 규정이 개편되면서 다시 바뀌었다. 교련이 한 학년에 100시간이나 강요되었던 것이다.[166]

(2) 경성제국대학 각 학부의 운영과 실태

① 법문학부

가. 설치학과와 강좌

경성제대 예과가 개설된 지 2년 뒤인 1926년 4월 관계 법령에 따라 학부가 정식으로 개설되었다. 이때 도쿄제대 문학부장으로 있던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가 초대 총장 겸임 근무를 명받았다. 하지만 학부의 실제 수업은 5월부터 시작되었다. 핫토리가 오기 전에는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인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 시모오카 주지[下岡忠治], 유아사 구라헤이[湯淺倉平] 등이 총장 사무 취급의 직책으로 예과의 운영을 총괄하고 학부의 개설을 준비하였다.[167] 따라서 실제로는 경성제대의 출범이 1926년 5월이라 해도 될 것이다.

초기 경성제대의 학부는 법문학부와 의학부의 2개 학부로 구성되었다. 이공학부가 개설된 것은 1941년이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무런 외형적 발전 없이 영세한 규모로 최소한의 종합대학 체제를 유지한 것이었다.[168] 이때 일본 식민지였던 타

164 《조선총독부관보》 1943년 5월 7일.

165 《경성제국대학일람》 1942년판, 158~159쪽.

166 《조선총독부관보》 1943년 5월 7일.

167 《경성제국대학일람》 1933년판, 4~6쪽.

168 일본 도쿄대학의 전신인 帝國大學이 1886년 개설될 때 설치한 학부와 학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법학부-법률학 제1과와 제2과, 정치학과; 의학부-의학과, 약학과; 공학부-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조선학과, 전기공학과, 造家學科(이후 건축학과로 개칭), 응용화학과, 採鑛 및 冶金學科; 문학부-철학과, 화문(和文, 일본문)학과, 漢文學科, 博言學科; 이학부-수학과, 星學科, 물리학과, 화학과, 동물학과, 식물학과, 지

이완의 다이후쿠제국대학[臺北帝國大學]이 1928년 문정학부文政學部와 이농학부理農學部로 출발한 뒤 1935년 의학부가 신설되고, 1941년 이학부와 농학부가 분리되었으며 공학부가 신설되었던 것과[169]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1926년 5월 1일에 있었던 시업식에서 초대 총장 핫토리는 경성제대의 사명과 대학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 …… 조선의 연구를 행하고 동양문화 연구의 권성權成이 되는 것이 본 대학의 사명이라 믿고, 능히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는 일본 정신을 원동력으로 하고 일신日新의 학술을 이기利器로 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 오늘날은 국제주의의 시대요, 국가주의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심히 잘못된 생각이며 …… 제자諸子는 대학의 자유에 대해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직접 제자(諸子)에게 관계있는 자유는 연구의 자유와 학수學修의 자유인데, 첫째로 연구의 자유라고 해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 본 대학과 같이 국가가 설립 유지하고 관리하는 대학에서는 적어도 국가의 기초를 동요시키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과 같은 연구는 허용될 만한 것이 아니다. 또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연구로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근시近時에 사회과학 연구를 표방하고 가끔 연구범위를 초월하여 실행實行의 영역을 밟는 자가 있는 것은 학생의 본분을 그르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 학수學修의 자유는 과목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170]

조선총독부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연구의 자유가 있었다는 일본인 교수의 회고도 있다.[171] 그러나 경성제대는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출발부터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핫토리의 위의 식사式辭에서 경성제대의 교육방침이 국수적國粹的 일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식민주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질학과(《東京大學百年史》 資料 三編, 840~841쪽). 따라서 이보다 40여 년이나 늦게 설립된 경성제대가 법·문·사·철학과와 의학부의 5학과를 두는 데 그쳤다는 사실은 일제 당국이 조선인들의 고등교육을 억제하려 한 방침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69 정재철, 《일제의 對韓國 식민지교육정책사》, 1985, 일지사, 141쪽.

170 大野謙一, 《朝鮮教育問題管見》, 朝鮮教育會, 1936, 144~147쪽.

171 법문학부 교수였던 戶澤鐵彦은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にあたって〉, 《紺碧遙かに》, 경성제국대학 창립 오십주년 기념지 편집위원회, 1974, 109~110쪽에서 이렇게 회고하였다.

조선인들의 사회·민족운동에 대한 강한 경계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학과의 개설과목 및 세부 제목, 이수단위 수를 보면 과목(강좌) 담당 교수는 전원 일본인이었다. 당시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은 이즈미[泉哲]가 유일했고, 후일 오다카[尾高朝雄]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법문학부의 수업연한은 3년이었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학과별로 차이가 있지만 30단위 내외였다. 법학과는 학부 1학년에 들어갈 때부터 전공이 정해져 있었으나, 철학과와 사학과, 문학과는 세부 전공을 1학년 말에 다시 정했다. 학부 진입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1주에 4시간(간혹 2시간도 있었음) 강의를 1년간 듣고 나서 학년말 시험에 합격하면 한 단위를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다. 한 단위는 요즈음 대학의 학점으로 하면 4 내지 8학점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3년 안에 그만한 학점을 취득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172]

일본 당국은 법문학부에 조선사학 및 조선어문학 강좌와 전공을 개설하고 조선문화를 연구하고 있다고 크게 선전하였다. 그러나 조선사학을 가르친 경성제대의 교수들이 한국사 왜곡 날조의 중추기관인 조선사편수회의 핵심 멤버였다는 사실은 그 진면목을 시사하는 것이다. 법학과의 교과과정과 철哲·사史·문학과文學科의 과정과 비교해보면 전자가 상당히 세분되고 전문화된 과정 편성을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후자는 개설이나 개론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많다. 때문에 그런 강좌가 심오한 학술적 내용을 강의하고 교육했다고는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설강좌와 교과과정은 1940년대 초에는 변하게 된다. 법학과의 경우 개설강좌가 제1·2·3류類로 세분되어 약간 전공을 달리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었다. 이들 전공자는 필수과목 19단위, 선택과목 8단위, 합계 27단위를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법문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에 따르면, 제1류는 사법私法, 제2류는 공법公法(정치학), 제3류는 경제학 전공으로 분

172 《동아일보》 1974년 3월 23일. 유진오는 이 글에서 법학과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21단위라고 했는데, 이는 착오인 듯하다. 왜냐하면 철학과, 사학과, 문학과의 2·3학년 이수 단위가 18에서 20단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경성제국대학일람》 1933년판, 60~68쪽).

류할 수 있다고 한다.[173] 이러한 전공 분류는 일제 및 학교 당국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1930년대에 이 학교 법학과 출신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의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는 사례가 늘어가자 이러한 경향을 더욱 고무하기 위해 전공을 세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고등문과시험은 사법, 행정, 외무 등으로 분류되었고 요즘과 달리 행정과에 합격하는 것을 사법과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명예롭게 아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이다.[174]

1937년 7월 일제의 중일전쟁 도발과 중국 대륙 전선의 확대,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도발이후 경성제대에서는 학문적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총력경성제대연맹'이 결성되어 연구동원체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맹은 총무사업 및 문화사업, 단련사업으로 구분하여 교수와 학생을 여러 가지 사업에 동원하였다. 특히 수양부는 "국체의 본의本義를 깊이 연구하고 황국의 도에 입각하여 건전한 종교를 연구함"이라고 규정되었다.[175]

실정이 이러했기에 이 학교에 다니던 상당수의 조선인 학생은 물론 일부 일본인 학생까지도 1930년대 초에 벌써 이 대학을 '지배계급의 원병援兵 양성소', '식민지적 노예교육기관', '반동적 본질을 가진 학교'로 규정하고 비판하였다.[176]

나. 법문학부 졸업생들의 진로

한국인 학생들이 선호했던 법문학부 졸업생들의 진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표 16]을 통해 학부 졸업생의 숫자를 살펴보자.

[표 16]을 통해 1942년 9월까지 선과생選科生[177]을 포함하여 모두 642명의 한국인

173 이상은《경성제국대학일람》1941년판, 68~73쪽 및 앞의《紺碧遙かに》714쪽 참조.

174 《중앙일보》1971년 5월 12일.

175 《경성제국대학일람》1941년판, 400~401쪽.

176 '城大反帝同盟사건'때 기관지〈赤い角帽〉3호,《1930年代朝鮮革命運動論》朴慶植 編, 1982, アシア問題研究所 게재(국학자료원,《朝鮮問題資料叢書》1992년 영인본).

177 選科生이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학부 입학을 허용하고 수료한 뒤 학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학부 졸업증서(學士 자격)를 수여하는 학생을 말한다(《京城帝大法文學部 敎務例規集》6, 45쪽;《동아일보》1974년 3월 27일;《중앙일보》1971년 5월 6일.

[표 16] 경성제대 학부 한국인 졸업생 수(1929~1942)

(단위: 명, %)

졸업연도	법학과	철학과	사학과	문학과	계	선과생(選科生)	의학부	한국인 비율
1929	100 (30)	6	2 (3)	7 (9)	25 (43)	1 (1)		
1930	11 (29)	7 (9)	2 (2)	5 (9)	25 (44)	1 (1)	12 (43)	29.8
1931	12 (25)	9 (2)	2 (5)	8 (7)	31 (39)	(6)	14 (57)	31.9
1932	11 (21)	2 (7)	4 (3)	3 (14)	20 (45)	1 (5)	21 (44)	31.5
1933	16 (22)	6 (2)	1 (5)	4 (9)	27 (38)	(3)	18 (43)	35.7
1934	20 (20)	(4)	3 (3)	7 (9)	30 (36)	(1)	29 (42)	43.1
1935	19 (15)	(2)	4 (6)	2 (9)	25 (32)	(2)	15 (50)	32.8
1936	19 (19)	5 (4)	1 (6)	13 (12)	38 (41)	(6)	12 (54)	35.5
1937	17 (25)	2	5 (5)	4 (18)	28 (48)	2 (6)	22 (54)	32.9
1938	17 (17)	3 (5)	1 (6)	8 (10)	29 (38)	1 (1)	12 (58)	29.9
1939	8 (8)	2		2 (5)	12 (13)		16 (50)	30.8
1940	19 (21)	3 (2)	1 (2)	2 (5)	25 (30)	1	4 (22)	36.6
1941.3	177 (31)	2 (1)	1 (4)	(5)	20 (41)	(2)	20 (50)	30.5
1941.1	18 (31)	1 (2)	2 (3)	(7)	21 (43)	(1)	18 (44)	31
1942.9	25 (36)	4 (1)	(3)	2 (1)	31 (41)		24 (36)	41.7
합계	249(350)	52(37)	30(56)	67(129)	398(572)	7(35)	237(607)	
한국인 비율	41.6	58.4	34.9	34.2	41	16.7	28	

출처: 《경성제국대학일람》 1941년판, 392~393쪽 및 《경성제대 50주년 기념지》 768쪽을 참고로 작성함.
비고: 1. 괄호 안은 일본인 수.
2. 1940년 의학부 졸업생에는 대만인 3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졸업생이 배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까지 전체 졸업생의 34.6% 비율이다. 선과생을 제외하고 예과부터 입학하여 정통코스로 학부를 졸업한 한국인 학생은 635명으로 전체의 34.2%가 된다. 1942년까지 예과 졸업생의 한국인 비율이 33.3%가 나왔는데, 학부는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법문학부 졸업생은 이 학부의 41%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의학부는 28%에 그쳐 학부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1945년 초까지 학부를 졸업한 사람은 2,300여 명으로 집계되고 그 가운데 한국인은 800 내지 810명으로 추정된다.[178] 해방 전까지 이 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비율은 34.8% 내지 35.2%의 비율이 된다. 결국 졸업생

의 1/3을 약간 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인 졸업생의 학과별 전공을 보면 법학과가 39.2%, 의학부가 37.3%, 철·사·문학과가 23.5%이다. 졸업생의 대부분이 법학과 의학을 전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학교를 나온 한국인들의 지위획득 지향·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법문학부 졸업생들의 진로는 [표 17]과 같다.

[표 17] 법문학부 졸업생들의 진로(1929~1941)

(단위: 명)

졸업연도	졸업 수	관공서	학교	은행 회사	금융 조합	신문 잡지	기타 취직	사망	기타
1929	25 (43)	5 (13)	6 (12)	3 (10)	(1)	(1)	10 (2)	1 (4)	
1930	25 (44)	9 (9)	5 (14)	2 (13)	(2)		6 (2)	3 (4)	
1931	31 (39)	14 (10)	10 (12)	(5)	(2)	(2)	4 (1)	3 (4)	(3)
1932	19 (45)	5 (13)	4 (17)	2 (6)		1 (1)	2 (6)	(2)	5
1933	27 (38)	9 (14)	6 (14)	4 (7)		2			6(1)
1934	28 (35)	13 (14)	5 (9)	2 (7)	3 (1)	1		(3)	4(1)
1935	24 (32)	12 (7)	6 (13)	1 (8)				(3)	5(1)
1936	36 (40)	9 (10)	15 (16)	4 (8)	1	1	1 (1)		5(5)
1937	27 (48)	13 (9)	3 (13)	3 (16)			1 (3)	(5)	7(2)
1938	28 (36)	9 (7)	3 (13)	6 (14)			2		8(2)
1939	8 (11)	1 (2)	3 (3)	1 (4)			(1)		3(1)
1940	25 (30)	6 (5)	3 (7)	7 (15)	1		1 (1)	(1)	7(1)
1941	20 (40)	3 (7)	2 (7)	9 (23)	20 (41)		(1)		6(2)
계	323 (481)	108 (120)	71 (150)	44 (136)	5(6)	5(4)	27(18)	7(28)	56 (19)
합계	804	228	221	180	11	9	45	35	75

출처: 《경성제국대학일람》 1941년판, 393~394쪽.
비고: 선과(選科) 수료자를 포함한 것임.

178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錄》 資料編 2, 巖南堂書店, 1980, 179쪽에는 1945년까지 모두 약 2,300명이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충우, 앞의 책, 56쪽에는 810명의 조선인 학생이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성제국대학일람》 1941년판에 의해 당시 재학생 숫자를 토대로 추정하면 800여 명으로 집계된다.

법문학부 졸업생들의 진로는 졸업 후의 취업처를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민족별 취업 분야를 볼 때 한국인 졸업자가 일본인 졸업자보다 관공서에 취직하는 비율이 오히려 더 높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즉 323명 가운데 108명이 관공서에 취직하여 33.4%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인 481명의 졸업자 가운데 120명이 취직한 25%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에 반해 일본인 졸업자는 학교나 은행·회사에 더 높은 비율로 취업하고 있다.

이는 법문학부 한국인 졸업생의 다수가 일제의 식민통치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반민족적 행태를 드러내고 있음을 뜻한다. 당시 관공서라면 조선총독부, 각 지방 도청 및 시군청, 경찰서, 법원 등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일제 당국의 의도가 졸업생을 통해 그대로 관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식민통치에 필요한 식민관료(친일분자)의 양성이라는 목적이 별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인은 물론 조선인 졸업생들의 대다수가 관공서, 학교, 은행이나 회사, 금융조합 등과 같은 관변 관련 직업을 취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직간접으로 일제 당국과 연계되고 있던 식민지 통치기관의 일종이었다. 당시의 취직처를 보면 학교는 공립 고등보통학교나 중학교, 사범학교가 대부분이었고 은행은 조선은행·한성은행·식산은행·조선식산은행·조선상업은행 등이었으며, 회사로는 남만주철도회사(약칭 만철)와 동양척식주식회사(약칭 동척) 등을 꼽을 수 있었다.[179] 공립학교는 거의 식민주의 교육의 온상이었으며, 은행은 고리대자본을 통해 식민지 민중을 수탈하였고, 특히 조선은행·만철이나 동척은 당시에 악명높은 수탈기관이었다.

특히 1930년대 이후 법학과 졸업자 가운데는 고등문관시험을 거쳐 식민지 관료로 충원되는 자가 많았는데, 이들은 일제의 지배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며 일제의 중견 관리나 하수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179 京城帝國大學學友會, 《會報》부록, 1930, 16~17쪽을 보면 제1회 졸업생들의 취직처를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② 의학부

1942년까지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한 사람 가운데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8%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법문학부보다 훨씬 비율이 낮은 것이다. 의학부를 졸업한 한국인은 311명으로 3개 학부 810여 명의 38.3%를 차지한다.[180] 일제 당국은 전체 의학부 졸업자의 1/4을 약간 넘는 소수의 한국인을 교육한 반면, 압도적 다수의 일본인 학생을 교육함으로써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총독부 관리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의 진료, 총독부 시혜의 선전 그리고 전시체제하 군의軍醫 양성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경성제대 의학부는 단순히 진료와 교육, 연구만의 기능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 서양의학이 권력의 비호로 크게 각광을 받는 가운데 한의학東醫學이 큰 탄압을 받아 결정적으로 쇠퇴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른다. 전통 한의사韓醫師를 총독부는 '의생醫生'으로 격하하고 각종 규제를 강요했다.[181] 직간접적으로 의학부 부속의원과 교수들은 총독부의 시책과 연계되어 그 정책에 협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성제대 의학부가 1926년 개설되고 조선총독부 의원이 1928년 이 학교 부속 병원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의학부는 부속병원을 중심으로 진료와 교육, 연구 세 분야의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의학부는 수업연한이 4년이었으므로 예과의 2~3년을 거칠 경우 6~7년의 학습 과정을 거쳐야 했다. 당시에는 의학부 과정을 이수하면서 일정한 시험을 거친 뒤 의학사醫學士 자격을 취득하면 곧바로 의사 자격증이 수여되었고, 현재와 같은 의사 자격시험은 없었다. 따라서 경성제대 의학부는 일제강점기에는 현재의 제도와 거의 유사한 유일의 정규 의과대학이었다.

그런데 경성제대 의학부가 개설되면서 기존의 경성의학전문학교(약칭 경성의전)과 마찰이 한때 심화되기도 했다. 이때 경성의전은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상의사의 양성, 경성제대 의학부는 의학 연구에 주력하는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특화

180 이충우·최종고,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2013, 377쪽.

181 상세한 내용은 이종형, 〈한국동의학사〉, 《한국현대문화사대계》 3,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78, 참조.

부문이 타협되었다.[182] 1926년 개설 초에는 해부학, 생리학生理學, 의화학醫化學, 약물학, 병리학病理學, 미생물학 등 기초의학과 관련한 강좌가 개설되었으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개설강좌도 다양해졌고 세분되었다.

진료 및 임상강의는 전공별로 구분된 과科를 통해 그리고 교육(실습)과 연구에서는 전공별로 설치된 교실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의학부에는 이와이 세이시로[岩正誠四郎], 도쿠미쓰 요시토미[德光美福], 시가 기요시[志賀潔], 사토 고죠[佐藤剛藏], 고바야시 하루지로[小林晴次郎], 오자와 마사루[大澤勝] 등 상당히 권위 있는 교수들이 있어 의료인력 양성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183] 그러나 의학부 교수들은 법문학부 교수들과 같이 많은 학술연구보조비를 일본 정부 및 관변기관으로부터 받으며 조선에만 있는 특유한 질병의 연구 등 일본인의 대륙침략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며 나름대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공헌하기도 했다.[184]

의학부 교수들은 부속병원에서의 의료활동을 통해 총독부의 '시혜'를 선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즉 이 병원에서는 약간의 한국인들에게 무료 치료를 해주고 있었는데, 총독부는 이것을 '선정'으로 크게 생색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경성제대 부속병원 치료환자의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교해보면 그 선전의 허구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실제로 1931년 1월부터 11월까지 치료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숫자는 일본인이 13만 5,000여 명, 한국인이 11만 9,000여 명으로 오히려 일본인이 많았다.[185] 당시 한국인 2,000여만 명과 재조선 일본인 50여만 명을 대조해보면 의료혜택이 과연 누구를 위해 베풀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의학부 교수와 학생들도 1930년대 중반과 1940년대 전반기에는 일제의 침략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1930년대에 의학부 교수실에서는

18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60쪽. 이 책에 따르면 310명의 한국인 학생이 1945년 초까지 의학부를 졸업했다(80쪽).

183 《중앙일보》 1978년 8월 19·21일. 佐藤剛藏에 따르면 城大 의학부도 일본 내 의대와 동등한 시설과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미생물학과 약리학 강좌는 특수한 것으로 이는 기생충과 漢藥 연구를 위해 개설되었다(佐藤剛藏, 〈朝鮮醫育史(後編)〉, 《朝鮮學報》 3, 1952, 170쪽).

184 《경성제국대학일람》 1941년판, 237~240쪽.

185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학보》 57, 1931.12.

총독부 식민정책의 영향으로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한국인들을 향해 "솔 껍질이 상당한 영양가가 있다."라고 발표하여 굶주린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권장하기까지 했다.[186] 그리고 1941년 국민총력경성제대연맹이 결성되자 의학부는 사회조사부 및 위생조사부에 소속되어 각종 사업에 동원되었다. 1940년대 전시체제의 강화에 따라 만주와 몽고, 북중국 등에까지 위생조사 및 진료, 정책성 연구범위가 확대되었다.

한편 의학부 졸업생의 진로는 어떠했는가? [표 18]은 1930년부터 1941년까지 의학부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8] 의학부 졸업생들의 진로(1930~1941)

(단위: 명)

졸업자 수	관공서	학 교	관공립 병원	사립 병원	군의 (軍醫)	개업	회사	사망	기타
194 (571)	10(32)	85(173)	15(71)	13(29)	(123)	49(42)	10(66)	10(16)	2(19)
합계 756	42	258	86	42	123	91	76	26	

출처: 《경성제국대학일람》 1941년판, 394~395쪽.
비고: 1. 괄호 안은 일본인 수.
2. 1940년 일본인 졸업자중 대만인(臺灣人) 3명이 포함됨.

의학부 졸업자 가운데는 뜻밖에 학교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인 졸업생은 43.8%가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교의校醫 내지 양호 교원으로 진출하는 듯하다. 두 번째 많은 분야가 군의軍醫이다. 일본인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졸업생들은 군의로 진출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병역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군의가 아예 없다. 의학부 설립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군의의 양성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한인 졸업생 가운데 관공립 병원에 진출하는 비율은 일본인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개업의 비중이 큰 것은 역시 취업에서 은연중에 차별이 있었거나, 아니면 한국

186 최성원, 〈실록 광주학생운동〉, 《신동아》, 1979.11, 245쪽.

인 졸업생들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관공립 병원에 한국인 졸업생의 10%도 취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역시 보이지 않는 차별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187]

결국 의학부도 법문학부와 마찬가지로 교수와 학생의 구성비(한국인 교수는 거의 없었음), 부속의원의 진료 시혜대상, 교육·연구활동, 졸업생들의 진로 등을 종합해볼 때 일본인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직간접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연계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88]

③ 이공학부理工學部 설치와 운영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1937년 설립이 최종 결정되고 예비작업으로 1938년 수업연한 3년의 예과 과정이 만들어졌다. 분야는 기초와 응용으로 나누어 기초에는 물리학과 화학을 중심으로 하고 응용은 전기, 광산, 응용화학 외 몇 개의 학과를 두기로 하였다. 1938년 5월 이공학부창설위원회가 조직되어 학과의 운영방식, 교과과정, 교수진 충원 등을 논의했다. 논의과정에서 이공학부 운영방침은 교수들의 과학연구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에 고등기술자의 양성이 부가되는 형태로 정해졌다.[189]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관제는 1938년 공포되었으나, 실제로 학부가 개설된 것은 1941년이었다. 이때 물리학과·화학과·토목공학과·기계공학과·전기공학과·응용화학과·광산야금학과 등이 설치되었다.[190] 이 무렵 도쿄제대가 이학부理學部에 수학과 등 10개 학과, 공학부에 토목공학과 등 10개 학과를 설치하고 있던 것에 비교하면 영세한 규모였다.[191]

187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해방 이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했던 朱槿源은 후일《含春苑의 회상》이란 회고록(효문사, 1983)에서 은연중에 한국인 학생들은 차별받았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1940년대 학교 분위기는 일본인 학생들의 한국인 학생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함께 어울리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고 한다. 또 경성제대 부속병원은 한국인과 일본인을 같은 병실에 수용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같은 책, 15~23쪽).

188 斎昌德, 1992,〈경성제국대학 의학부〉,《醫史學》1(1) 참조.

189 《경성제국대학일람》1943년판; 이병례,〈일제하 전시 기술인력 양성정책과 한국인의 대응〉,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128쪽.

190 《경성제국대학일람》1941년판, 98~99쪽.

191 동경대학 백년사 편집위원회,《동경대학 백년사》자료3, 동경대학 출판회, 1986, 485쪽. 이학부에는 수

이공학부가 설립된 배경에는 이 무렵 일본 자본의 대거 유입에 따른 부분적 공업화 그리고 일제의 중국 대륙 침략 감행에 따른 한반도의 '대륙병참기지화'로서의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이공계 고급인력이 수요되었다. 그러나 이공학부는 3회에 걸쳐 소수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졸업생을 고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성제대의 마지막 총장이 이공학부장을 역임했던 야마가 노부지[山家信次]라는 점은 이 대학의 말기 사명이 무엇이었던가를 암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공학부 학생의 동원, 젊은 교수의 군軍 차출, 교수들의 레이다 설치와 같은 군위탁 연구과제 수행 등은[192] 이공학부의 '실용성實用性'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공학부 재학생이나 졸업생도 대다수가 일본인들이고 한국인은 소수였으며, 교육·연구시설도 미비한 상태였고 교수들의 연구 수준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는 분석을 고려하면[193] 이 문제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공학부 입학생은 1942년 40명, 1943년에는 80명으로 증가했다. 입학생 중 한국인은 1/4 정도였는데, 1942년 말 재학생 131명 중 한국인은 35명이었다. 1943년 9월부터 1945년까지 3회에 걸쳐 총 123명이 배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은 37명이었다.[194] 물리학과 5명, 토목공학과 1명, 기계공학과 9명, 전기공학과 11명, 응용화학과 7명, 광산야금학과 3명으로 파악된다. 한국인 재학생은 1941년 전체 재학생 37명 중 14명으로 37.8%, 1942년도에 44명 중 12명으로 27.3%에 불과했다.[195] 교수와 기사技士(실험을 돕는 직원) 가운데 한국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경성제대에 한국인 교

학, 천문, 물리, 지구물리, 동물, 식물, 지질, 광물, 지리, 人類, 地震學科가 있었고 공학부에는 토목, 기계, 선박, 항공, 造兵, 전기, 건축, 응용화학, 화약, 광산야금학과 등이 있었다.

192 경성제국대학 창립 오십주년 기념지 편집위원회, 앞의 책, 1974, 129쪽.

193 김정흠, 〈한국과학교육사〉 및 〈한국물리학사〉, 《한국현대문화사대계》 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8 참조. 그러나 근래 이공학부 교수와 설비의 수준이 매우 뛰어나고, 한국인 졸업생이 37명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이들이 해방 이후 크게 활약했기 때문에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이성규, 앞의 글, 2005 참조.

194 이병례, 앞의 글, 2012, 128쪽.

195 김정흠, 앞의 책, 45·51쪽; 《경성제국대학일람》 1941년판, 382~383쪽.

수가 거의 없었던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 방침 때문이었다. 혹시 채용된다고 해도 차별대우로 견디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다.[196]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1941년 설치되었지만, 인력 양성은 부차적이고 중심은 공업기술에 관한 연구, 실험 즉 일제의 침략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기관 역할을 하도록 신설되었다. 경성제대에 이공학부가 개설된 것은 조선 특유의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군수산업이 확충되면서 조선의 자원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197] 따라서 경성제대 이공학부에서 기술자 양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고급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대학에서의 공업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198]

4) 경성제국대학의 식민지 통치상의 의미

역대 경성제대 총장들은 나름대로 대학자치를 구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 당국의 개입으로 이러한 입장은 관철될 수 없었다. 제6대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와 제7대 야마가 노부지[山家信次] 총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총장들은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의 대학 간섭이나 인사 개입에 대해 저항하는 등 나름대로 학자적 양심이나 대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31년 9월 일본의 만주사변 도발, 1937년 7월 중일전쟁과 1939년 조선총독부의 소위 '성대정벌城大征伐'까지 이루어지면서 경성제대만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떨어져 '상아탑'으로 존재할 수는 없었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의 도발로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결국 대학과 대학생들도 전시총동원체제에 동원됨으로써 대학의 이상인 대학자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경성제대는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있었으면서도 한국인을 위한 대학이 아

196 《중앙일보》 1971년 5월 13일; 《경성제국대학일람》 1941년판, 290·293쪽.

197 김근배, 〈일제시기 조선인 과학기술인력의 성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377쪽. 이성규는 경성제대 이공학부에서 비밀리에 원자탄 개발 관련 연구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이성규, 앞의 글, 2005).

198 이병례, 앞의 글, 2012, 128쪽.

니었다. 매년 운영경비를 보면 조선에 있던 10여 개 전문학교 경상비를 다 합친 금액보다 많았다. 1938년의 경우 4개 관립 전문학교와 8개 사립 전문학교 도합 12개 전문학교의 운영경비는 210만 원가량이었는데, 경성제대 1개 대학의 운영경비가 무려 197만 5,000원이나 되었으니 1개 전문학교 운영비의 10배가 넘는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199] 이처럼 막대한 운영비는 거의 식민지 조선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한국인 교수는 한 사람도 없었고, 역대 한국인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의 1/3 정도에 불과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성제대는 조선총독부에 의한 설립 배경이나 목적, 교육과 연구 내용, 총장과 교수들의 교육방침, 교직원과 학생의 구성 비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과 일본인을 위해 세워진 대학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학교에 다니던 상당수의 한국인 학생은 물론 일본인 학생까지도 이 대학을 '식민지적 노예 교육기관', '반동적 본질을 가진 학교'로 규정하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으로 야마가 총장은 그해 10월 7일 미군정이 미국인 총장을 임명하자 정식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경성제대가 경성대학으로 바뀔 무렵인 1945년 10월 8일 미군 대위 알프레드 크로프츠Alfred Crofts 박사가 경성대학 총장President of Seoul University으로 부임하여 1946년 8월까지 총장으로 재직하며 과도기 경성대학을 이끌었다.

3. 보통학교 설립 및 운영

1) 1920년대 공립보통학교 중심 초등교육제도의 확립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제정한 각종 시책과 제도에 변화가 일어

199 김정인, 앞의 글, 1998, 171쪽.

난 계기는 3·1 운동이다. 다음의 신문 기사에서 보듯이, 3·1 운동 발발 직후부터 조선총독부와 일본 수상은 종래의 통치 방침에 대한 변화를 계획하고 있었다.

> 일본 수상과 3·1 독립운동에 관하여 협의를 끝낸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은 오늘 동경발 귀임하게 되었는데, 협의 내용인즉 처음 조선총독부가 취한 방침은 무력적 위압을 버리고 온화하에 진무鎭撫하려 하였으나 사건이 금일과 같이 악화한 데 이르러서는 도저히 완만한 수단으로는 진무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급속히 고압적 수단으로 진정하고 연후에 서서히 조선 통치의 대방침을 공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건 진정 후 총독 정치의 개정 여하는 아직 구체적으로 하등 결정되어 있지 않으나 종래의 위압 방침을 버리고 일시동인주의一視同仁主義 하에 일대 개혁을 단행하리라 한다.[200]

위 기사의 '일시동인'이라는 말이 3·1 운동 이후 새로 제안된 것은 아니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초 교육칙어 등본을 전국 각 학교에 하부하였는데, 이때 조선 총독의 훈시 중에 "교육에 관한 칙어는 제국 교육의 본의를 밝히고 일시동인 민중을 자애하는 성지에 불외不外하므로"라는[201] 구절이 있다. 따라서 3·1 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조선 통치 방침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시동인이 재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19년 8월 조선총독부 관제 개정에 맞추어 발표된 일본 천황의 조서에 다시 일시동인이 들어갔고,[202] 이후 일시동인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조선 통치의 근본이 되었고 교육 방면에서는 특히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1919년 8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후, 조선총독부는 먼저 교육제도 면에서 전과는 달리 일본과 동일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취하였다.

1919년 8월 이후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 중 보통학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은 '보통학교 증설계획', 이른바 '3면 1교 계획'의 시행 기간 단축이다. 본래 3면 1교 계획

200 《동경조일신문》 1919년 4월 12일.
201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월 6일.
202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8월 20일.

은 3·1 운동 직전인 1918년 말에 수립된 것이다. 그 내용은 1919년부터 8년 동안 매년 각 도에 보통학교 50개교를 신설하여 당시 6면 1교인 보통학교 비율을 8년 동안 3면에 대하여 1교의 비율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3·1 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 증설을 서둘러 1926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3면 1교 계획을 수업연한 연장과 함께 192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조선인의 공립보통학교 취학 욕구가 점차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점 이후 공립보통학교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도 거부에서 수용으로 점차 전환되었다.[203] 3·1 운동 이전 1910년대에도 중반 이후에는 공립보통학교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을 초과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16년 서울의 어의동보통학교 입학생 모집 상황을 보면, 응모자는 남자 약 160~170명, 여자 약 70명이었고 사립학교에서 전학을 신청해 온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서는 "아동의 심신 발육 정도와 부형의 자산 유무 등을 기준으로 입학을 허가했다."라는 점, 1918년 5월 말 당시 1학년 학생 수가 남자 127명, 여자 70명이었다는 점을 볼 때,[204] 남학생은 입학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1918년 말 3면 1교 정책을 결정·실시한 것은 조선인의 보통학교 취학 욕구에 대응하려는 것이었다.

[표 1]는 1910~1920년대 보통학교 취학률을 보여준다. 여기서 보통학교는 관립, 공립, 사립 보통학교를 모두 포괄한 것이다.

1910년대 내내 남·여·전체 모두 보통학교 취학률은 정체 상태에 있었다. 1912년부터 1919년까지 남자의 취학률은 겨우 2.2% 증가했다. 전체 취학률의 증가 정도가 그 절반 수준인 1.3%에 불과한 것은 여자의 취학률이 1919년까지 채 1%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10년대 내내 남자의 경우도 10%에 미치지 못하던

203 조선인이 공립보통학교 취학을 희망한 것에 대해 교육구국운동의 맥이 단절되었다든가, 식민 통치 정책에 종속·동화되었다든가, 민족의식을 버린 순응적 행동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인의 교육 욕구와 함께 강점 초기만 하더라도 공립보통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이 화이트칼라 직종에 취직, 즉 사회적 상향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점 이전부터 식민권력은 학력을 진학 자격과 문관 임용 자격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관·공립학교 졸업생에게는 시험 면제 등의 특혜를 주어 조선인을 관·공립학교로 유도하고 사립학교를 주변화시키는 정책을 실행해 왔다.

204 《조선제학교일람》 1919년 도판.

[표 19] 1910~1920년대 보통학교 취학률

(단위: %)

연도	전체	남	여	연도	전체	남	여
1912	2.0	3.5	0.3	1922	9.6	16.0	2.8
1913	2.2	3.9	0.4	1923	12.2	20.4	3.4
1914	2.4	4.2	0.4	1924	13.6	22.7	4
1915	2.6	4.7	0.5	1925	14.4	23.9	4.4
1916	2.9	5.1	0.6	1926	15.2	25.1	4.8
1917	3.2	5.5	0.7	1927	15.7	25.9	5
1918	3.3	5.7	0.8	1928	16	26.3	5.3
1919	3.3	5.7	0.8	1929	16.3	26.7	5.5
1920	4.4	7.6	1.1	1930	16.2	26.3	5.7
1921	6.5	11.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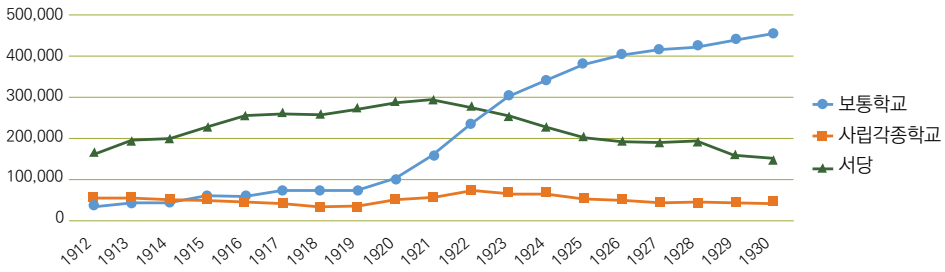
보통학교 취학률이 1920년부터 1923년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리고 1924년부터 다시 상승률은 둔화되고, 취학률은 정체기에 들어간다. 1923년 취학률을 1920년 취학률과 비교해 보면, 남·여·전체 모두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여자의 취학률은 1920~1923년 남자와 마찬가지로 증가하긴 하지만, 그 절대적인 수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취학률이 상승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보통학교 취학률 추이에서 성별에 따라 취학률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1920~1923년 남자의 취학률이 6% 상승하는 동안 여자의 취학률은 2.3% 상승했고, 1930년에야 겨우 1919년 당시의 남자 취학률에 도달했다.

[표 20]은 1910~1920년대 관·공·사립보통학교와 사립각종학교, 서당 등 조선인 대상의 초등교육기관 수를 제시한 것이다. 191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보통학교는 증가, 사립각종학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1910년대에는 보통학교 수가 사립각종학교의 수보다 적었다. 그러나 1920년부터는 보통학교가 사립각종학교보다 많아진다. [그림 4]에 의하면, 취학자 수는 이미 1910년대 중반 보통학교가 사립각종학교를 추월했다. 보통학교 취학률이 급증한 1920년대 초반 이후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점점 벌어지는데, 이는 보통학교 취학률은 상승하는 반면 사립각종학교 취학률은 거의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20] 1910~1920년대 조선인 대상 초등교육기관 수

(단위: 개)

연도	보통학교		사립각종학교		서당	
	기관 수	증감	기관 수	증감	기관 수	증감
1912	367		1,323		18,238	
1913	388	21	1,285	-38	20,268	2,030
1914	404	16	1,214	-71	21,358	1,090
1915	429	25	1,090	-124	23,441	2,083
1916	447	18	973	-117	25,486	2,045
1917	461	14	827	-146	24,294	-1,192
1918	507	46	780	-47	23,369	-925
1919	570	63	698	-82	24,030	661
1920	681	111	661	-37	25,482	1,452
1921	794	113	625	-36	24,193	-1,289
1922	947	153	653	-28	21,057	-3,136
1923	1,099	152	637	-16	19,613	-1,444
1924	1,218	119	628	-9	18,510	-1,103
1925	1,322	104	583	-45	16,873	-1,637
1926	1,392	70	573	-10	16,809	-64
1927	1,478	86	560	-13	15,069	-1,740
1928	1,546	68	533	-27	14,957	-112
1929	1,700	154	508	-25	11,469	-3,488
1930	1,831	131	489	-19	10,036	-1,433



[그림 4] 초등교육기관별 취학자 수 추이(1912~1930)

[표 20]에서 서당은 기관 수는 보통학교나 사립각종학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림 4]에서 보듯이, 보통학교 취학률이 급증한 1920~1922년에도 서당의 취학자 수가 보통학교보다 많지만, 1923년을 기점으로 보통학교 취학자 수가 서당 취학자 수를 넘어섰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표 19]와 [표 20]의 수치, [그림 4]의 추이를 종합해보면 교육기관 수, 취학자 수 모두 보통학교가 사립각종학교, 서당에 앞서기 시작한 1923년을 분기점으로 보통학교가 조선인 초등교육의 중심적 위치를 확고히 했다고 볼 수 있다. 통감부 설치 이래, 식민권력은 사립학교와 경쟁하며 조선의 초등교육을 보통학교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였고, 1920년대 들어서 관철된 것이다.

2) 보통학교 입학난

3·1 운동을 계기로 당장의 독립이 어려우니 우선 교육으로 실력을 양성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에 학력을 통해 상향적 사회이동을 꾀하는 욕구도 작용하여 보통학교 취학 욕구가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1920년 이후부터 보통학교 취학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립보통학교는 급증하는 취학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보통학교 입학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3면 1교 계획은 1922년 완료되었으나, 조선총독부는 일단 3면당 1교에 도달하면 그 이상의 증설에는 소극적이었다. 입학 희망자가 취학할 학교가 없어도 3면 1교 완성을 이유로 학교 증설을 억제했던 것이다. 경성부에서는 1922년 이미 공립보통학교는 2부제를 실시하고 있었다.[205] 1923년 경성부의 상황을 보면, 공립보통학교는 16개 교, 입학 희망 아동은 약 1만 명이었는데, 학교의 수용 능력은 겨우 3,000명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7,000여 명의 아동은 사립보통학교에 다니거나 그마저도 들어가지 못하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각종학교, 사설 강습회, 서당 등에 다니거나 가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206] 보통학교 취학률 상승이 둔화된 1924년 이후에도 입학 지원자 수

205 《동아일보》 1922년 8월 26일.

206 《동아일보》 1923년 3월 3·4일.

는 모집 정원보다 많았다.

모집 정원보다 몇 배 많은 입학 지원자가 쇄도하니, 학교에서는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학과시험, 구술시험, 신체검사, 가정환경조사, 제비뽑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다음은 1922년 경성 교동공립보통학교의 입학시험을 보도한 기사이다.

> 교동보통학교에는 9시가 되기도 전에 지원 아동과 그 부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정각 9시 반에는 수천여 군중이 답지하여 큰 혼잡을 이루었다. 이 학교에서는 입학을 시킬 정원이 150명인데, 지원자가 685명에 달하여 그중에서 535명은 그대로 비참히 돌아갈 것은 모르고 시험장으로 설치한 강당으로 모아놓고 시험을 보이게 되었다. 시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배우러 오는 어린 아해들에게 한다는 것이 당초부터 당치 못한 일이지마는, 지원자가 정원보다 몇 배나 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어찌할 수 없이 시험을 보이는데, 교동공보에서는 세 반으로 나누어 지원서를 동리로 구별해가지고, 시험을 보이는 교사가 네 군데에 책상을 놓고 그 앞에는 동리의 구별로 아해들을 나누어 세우고 차례로 조사를 하는데, 큰 강당 안에는 아해들이 빽빽하게 차고 교사는 먼저 입학지원서를 표준으로 하여 아해들의 신장과 건강을 조사한 후 간단한 가정의 말이라든지 부형의 이름 같은 것을 물어보아 아해의 지력을 시험하는데, 대저 시험의 절차로는 제일은 입학원서와 아동과의 조사, 제이는 체격 건강, 제삼은 능력, 판단력 등의 순서로 시험을 보이는 모양이며 그중 금년에 가장 중요한 표준으로는 연령이 대단, 6세 이상부터 만 10세 이내로 선발하고 10세 이상 아해들은 설혹 체격과 지혜가 완전히 구비하여도 선발치 아니하는 모양이다.[207]

앞 기사에서 보듯이 교동공립보통학교는 입학생 선발에 구술시험, 신체검사,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나이를 고려할 경우, 학령이어도 자리가 없어서 취학을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자리가 있어도 나이가 많다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아예 입학을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게 되니 이 또한 심각한 문제였다.

207 《동아일보》 1922년 3월 27일.

대도시인 경성의 입학난은 특히 심각했다. 경성부에서는 1925년 유지들과 경성부학교비평의회원 일부가 모여 '초등학교 입학난 구제방법 연구회'를 발기하기도 했고,[208] 1926년에는 10년 계획으로 54개 학급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209] 실현되지는 못했다. 1929년에도 경성부내 18개 공립보통학교에서 모집하는 1학년 학생 수는 남자 1,670명, 여자 982명 합 2,652명인데, 입학 지원 아동은 남자 2,926명, 여자 1,761명 합 4,608명이었다. 즉 입학 지원 아동 중 2,029명이 입학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경성 각 공립보통학교의 입학생 선발 방법은 구술시험이었다.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일제히 시작했는데, 각 아동에게 가정 형편을 묻고, 간단한 암산과 한글 등을 물었다고 한다.[210] 1920년 4월 10일《동아일보》에는 학교 부족으로 인해 아동에게 강제되는 보통학교 입학시험은 "세계에 없음은 물론이요, 또 인도에 심히 위반되는 일"이라고 개탄하는 논설이 실렸는데,[211]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상황은 거의 나아지지 못한 것이다.

한편 1922년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보통학교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자격도 '6년제 보통학교 졸업'으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이때 4년제 보통학교도 병존할 수 있도록 했는데, 3면 1교 정책에 따라 신설된 보통학교는 거의 4년제였다.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6년제 보통학교로 전학하여 5학년으로 편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 4년제 보통학교를 6년제로 연장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6년제로 학년을 연장하는 것보다 4년제라도 보통학교를 증설하는 쪽을 우선했기 때문에 1920년대 신설 학교는 대다수가 4년제였고, 1930년대 말까지도 전체 공립보통학교의 30% 이상이 4년제였다.[212]

학교 부족으로 인한 입학난이 극심해지자 조선인은 초등교육 확충을 적극적으

208 《동아일보》 1925년 2월 9일.
209 《매일신보》 1926년 8월 23일.
210 《조선일보》 1929년 3월 24일.
211 《동아일보》 1920년 4월 10일.
212 《조선제학교일람》 각 연도 판.

로 요구하였다. 1면 1교에 상당하는 학교 증설, 교원 증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뿐 아니라 의무교육론까지 주장하였고, '학교 설립 기성회'를 세워 부족한 보통학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조선총독부로서도 보통학교 입학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조선인의 학교 증설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는 1928년 4월 7일 〈교육보급진흥 제1차 계획안〉을 발표하였다.[213] 이 계획안에는 4년제 보통학교 증설, 간이국민학교 설립, 사범교육 개선과 우량교원 양성, 실업교육 개선, 청년훈련소제 실시, 청년수양단체 시설 진흥, 시학 증원 등의 7개 항목에 대한 개선 및 추진 방안이 들어 있었다. 이 중 4년제 보통학교 증설에 대한 것이 이른바 '1면 1교 계획'이다. 1면 1교 계획의 내용은 1936년을 기한으로 하여 전 조선에서 보통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면에 2학급 이상,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1교씩 신설한다는 것이었다. 학교 신설에 필요한 비용은 임시비 중 연年 약 75만 원은 도지방비의 보조비로, 경상비는 일본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것으로 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본의 의무교육비 국고 부담의 예에 준하여 별도로 국고에서 지출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면 1교 계획의 실행이 완료되더라도 학령 아동의 절반도 취학시키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나마도 시행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의 보조금이 삭감되고, 1929년 경제 공황과 농촌 경제 피폐로 인하여 1932년까지 1면 1교 계획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간이국민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은 1면 1교 계획으로도 부족한 보통학교를 대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실제로 1934년부터 농·산·어촌에 간이학교라는 명칭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본래 간이학교를 1군 2교로 둔다고 하였으나, 1934년 7월 1면 1교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공포하였고, 1936년에는 제2차 확충계획을 공포하여 1937년 이후 매년 220교(1군당 1교)씩 총 2,200교를 증설하도록 하였다. 1936년에는 그간 농촌에만 설립되었던 간이학교를 도시에도 설립하기로

213 《매일신보》 1928년 4월 8일.

하였다. 간이학교는 수업연한 2개년, 수용 정원 80명, 2개 학년 1학급의 단급 편성, 교원 1명, 교과목은 수신, 국어(일본어), 조선어, 산술, 직업의 5개 과목으로 보통학교에 비하여 교육 기간, 규모, 교과목 등 모든 면에서 학교의 명칭과 같이 '간이'한 수준의 유사 초등교육시설이었다. 당연히 보통학교 졸업 학력도 인정되지 않았다. 즉 간이학교가 조선인의 보통학교 입학난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초등교육을 위해 보통학교 확충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1930년대 후반 이후였다. 조선총독부는 1936년 1월 제2차 〈조선인 초등교육 보급 확충계획〉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1936년 1면 1교 계획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보통학교 취학률이 25%에 불과하므로, 1937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입학 지원자의 전부를 취학시킴으로써, 계획 완성 연도에는 추정 학령 아동 수의 6할(168만 명)을 수용하여 의무교육제도를 실현한다."라는[214] 것이었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기존의 4년제 2학급 보통학교에 학급을 증설하고, 간이학교를 증설한다는 것이었다.[215] 결국 정규 6년제 보통학교는 일제 말까지도 충분하지 못했다.

3) 보통학교 운영과 조선인의 학교비 부담

조선총독부는 공립보통학교의 설립·유지를 위해 1911년 〈공립보통학교비용령〉(1911. 10. 28. 칙령 제12호)과 그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두 규정의 내용은 학교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학교의 설립·유지에 드는 비용은 학교 소재지 조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 학교의 설립·유지는 부윤 또는 군사郡司가 관장한다는 것 등이다. 종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해야 했던 비용을 학교 구역 내 조선인에게 강제로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14 《동아일보》 1936년 1월 9일.

215 1937년 말에는 이 계획의 시행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일본의 전쟁 준비와 관련이 있다. 1937년은 7월 7일 노구교 사건 발발을 계기로 일제가 총동원 체제로 전환한 해이다. 조선인을 동원 체제에 호응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교육하고, 이른바 '황국신민'으로서 필요한 정신 훈련 등을 실시할 초등교육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의무교육제 시행도 이러한 측면에서 계획되었으며, 간이학교제와 제2차 〈조선인 초등교육 보급확충 계획〉도 의무교육제 시행의 전 단계로서 수립·실시된 것이었다.

1920년에는 이를 폐지하고 새로 〈조선학교비령〉(1920. 7. 29. 조선총독부령 제14호)과 〈조선학교비령 시행규칙〉(1920. 7. 29. 조선총독부령 제104호)을 공포·시행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부·군 또는 도島 단위로 조선인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학교비'를 설치하고, 학교의 설립과 유지, 예산 편성과 지출 등을 모두 부윤·군수 또는 도사가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의 자문기관으로 '학교비 평의회'를 두게 하였다. 〈조선학교비령〉은 학교비가 설치된 지역에서 필요한 보통학교 경비를 자체 조달하도록 하는 것, 즉 보통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전적으로 조선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학교비의 세입은 호세·지세·가옥세 부과금과 호별할戶別割, 기부금 등인데, 도시와 농촌에 따라 학교비 부가금의 세원稅源, 기부금의 비중 등에 차이가 있었다. 호세는 호戶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농촌지역에서 거두었고, 가옥세는 가옥의 크기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도시지역에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 가옥세를 걷는 지역에는 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호별할은 호별로 부과된 특별부과금으로, 호세 등에 비해 과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호별할은 부府를 비롯한 도시지역에 제한적으로 부과되었는데, 조선총독부는 경성부와 같은 도시지역은 풍부한 초등교육을 누리기 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이른바 '민도'와 재력이 충분하다는 명목으로 호별할 부과를 합리화하였다. 호별할을 최초로 부과한 지역이 바로 경성이었다.

경성에서는 1921년부터 호별할을 부과 징수하였다. 지주는 토지 수입을, 월급생활자는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연 수입 400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담세력에 따라 모두 38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했다. 1922년 50등급으로 개정했는데, 최고 1등급 6,192원, 최저 50등급 1원 60전이었다.[216] 1927년에는 다시 70등급으로 세분화했는데, 최고 1등급에게는 5,983원, 최하 70등급에게는 60전이 부과되었다. 개정 전과 비교해 보면, 최상등급의부담금은 크게 인상되었고, 최하 등급은 절반으로 감액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비 호별할 부과는 빈부의 차를 고려하여, 상위 등급자의 부담

216 《동아일보》 1922년 8월 3일.

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상위 등급 배정자들이 반발하고 호별할 납부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일례로, 이완용李完用은 1924년 경성부 호별할 부과 등급이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자 납부를 거부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경성부에서는 1922년 호별할 부과 등급을 50등급으로 세분화했는데, 이완용 같은 대부호들이 6등에 배정되었고 최상위 1~5등은 해당 가호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24년 경제불황으로 체납자가 늘어나자 경성부는 최하 48~50등을 없애고 부족액을 고소득층에 더 부과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1924년 등급 사정 결과, 5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자 이완용은 다음 해 상반기까지 버티다가 결국 10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받고 납부했다고 한다.[217]

중요한 것은 학교비를 통해 보통학교 재정을 조선인이 전담한다고 해서, 학교비 단위로 교육자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학교비 평의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에 그쳤고, 의원은 부에서는 선거로 선출하지만 군·도에서는 조선인 면협의회원이 선거한 후보자 중에서 군수·도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후보자는 해당 군·도에서 학교비 부과금 연액 5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로 한정되었다. 게다가 학교비 평의회의 의장인 부윤·군수·도사는 학교비 평의회의 소집과 개폐, 회의 진행 등을 관할하고 의원의 발언을 금지·취소시키거나 퇴거를 명할 수도 있었다. 즉 학교비는 교육재정을 지역민에게 부담시키는 기능에만 한정되어 있었을 뿐,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었다.

1930년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학교비는 일본인의 학교조합과 함께 부의 일반 행정기관과 통합되었다. 그러나 학교비 평의회와 학교조합 평의회는 부의회로 통합되지 않았다. 학교비 평의회는 조선인 의원으로 구성되는 제2교육부회로, 학교조합 평의회는 일본인 의원으로 구성되는 제1교육부회로 재편되었고, 부회·읍회·면협의회 의원 중 조선인은 제2교육부회 의원, 일본인은 제1교육부회 의원이 되었다.

217 《동아일보》 1925년 7월 2일. 경성부 학교비평의회는 이에 항의하여 평의원들이 총사퇴하였고, 학교비 호별할 부과 등급 9등급인 李鍾健이란 인물이 "그렇게 불공평한 경성부에서는 살지 않는다."라고 시외로 이사를 해버린 일도 있었다(《동아일보》 1925년 11월 22일).

4) 공립보통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1922년 공포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보통학교의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도 새로 규정되었다(〈보통학교 규정〉(1922. 2. 15. 조선총독부령 제8호)).

[표 21]은 6년제 보통학교의 교육과정이다. 1910년대 보통학교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첫째, 조선어 및 한문 과목이 조선어로 바뀌었고, 일본역사와 지리 두 과목이 신설된 것이다. 제2차 〈조선교육령〉은 이른바 '내지연장주의'에 따라 각 학교의 수업연한을 일본의 학교와 동일하게 연장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소학교 교과목인 역사, 지리를 보통학교 교과목에 포함시킨 것이다.

물론 이는 일본역사, 일본지리였다. 둘째, 학교 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는 과목이었던 도화, 체조, 재봉도 필수과목이 되었다. 셋째, 조선어 수업시수는 감소하고, 일본어 시수는 증가했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일본어 시수는 2학년부터 매 학년 주당 2시간씩이나 증가했다.

[표 22]는 4년제, 5년제 보통학교의 교육과정이다. 4년제 보통학교의 교육과정은 1910년대에 비해 체조와 도화가 필수과목이 되었을 뿐 일본어 시수는 추가된 반면 조선어 시간은 6시간에서 3~4시간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산술, 이과 과목 수업시수도 줄었다.

보통학교 교과서는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가 없을 경우에는 일본 문부성 편찬 소학교 교과서를 사용해야 했다. 신설된 과목인 역사는 일본의 소학교 역사교과서에 조선사 내용을 일부 추가한 책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1922년 12월 25일 조선총독부에서 역사교과서 《보통학교국사》 상·하 2권을 발간하였다. [표 23]에서 보듯이 《보통학교국사》도 일본 역사에 조선사 내용을 극히 소략하게 일부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한국 근대사를 다루고 있는 하권 51과의 〈조선의 국정〉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운요호사건과 강화도조약 체결, 임오군란을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이 조선에 호의를 갖고 수교를 권유하였으나 조선이 거절하였고, 운요호사건은 조선이 먼저 도발하여 일어났으며, 조선의 개국은 일본이 운요호사건을 승리로 이끈 결과라고 설명한다.

우선 정한론이 중단되자마자 우리나라는 애써 조선과 수교하고 공사관을 경성에 설치하였다. 후에 호위병을 두었으나 조선에서는 당파의 싸움이 있어 1884년(명치 17) 청국에 의지하고자 한 자는 경성에 주둔하고 있는 청국군대의 힘을 빌려 우리나라에 의지하고자 한 자를 해치고 드디어 우리 공사관을 불태워 많은 관인을 살상하였다. 우리 정부는 조선 정부에 보상금을 내어 그 죄를 사죄하도록 하였고 다시 이토 히로부미를 청국에 파견하여 그 사신 이홍장과 천진에서 회합하여 양국 모두 조선에 군대를 머무르게 하는 것을 그치고, 만약 필요하다면 서로 통지 후 출병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천진조약이라 한다.

갑신정변은 위와 같이 친청파와 친일파의 권력투쟁, 일본은 피해를 입었다는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가 보호하에 있는 지가 수년에 이르러 정치가 점차 개혁되었으나 그 나라는 다년의 폐정은 완전히 없애기 어려워 민심은 안정되지 않아 국리민복을 진전시키기에는 일한 양국을 합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고, 한국민 중에도 이를 희망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서 한국 황제는 통치권을 천황에게 양여하여 제국의 신정에 따라 점차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을 희망하였다. 천황 또한 그 필요를 인정하여 1910년(명치 43) 8월 드디어 한국의 병합을 보기에 이르렀다. 천황은 즉 전의 한국 황제를 왕으로 삼고 황족의 예로써 왕가를 대우하고 한국을 조선이라 칭하였다. 새로이 총독을 두어 여러 정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반도민은 실로 제국의 신민이 되어 동양 평화의 기초는 점점 견고하게 되었다.

하권 51과의 소단원 〈한국 병합〉에서는 위와 같이 '동양 평화' 운운하며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1932년 《보통학교국사》 개정판을 발간했는데, 일본사 중심의 구성과 기술은 초판과 거의 동일하였다. 한국사를 독립된 소단원으로 편성했지만, 일선동조론에 기반한 서술, 이른바 '내선융화'를 위한 서술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역사교과서 외에도 《조선어독본》《신편창가집》《수신서》 등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국정교과서'로서 조선총독부의 통치 방침과 교육목표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표 21] 1922년 〈보통학교 규정〉에 따른 6년제 보통학교 교과과정

학년 /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수신	1	도덕의 요지	1	좌동	1	좌동
국어	10	발음, 가나, 일상 필수의 문자, 근이한 보통문의 독법, 쓰기, 작문, 화법	12	좌동	12	일상필수의 문자, 근이한 보통문의 독법, 쓰기, 작문, 화법
조선어	4	발음, 일상 필수의 문자, 근이한 보통문 독법, 쓰기, 작문, 화법	4	언문, 일상 필수의 문자, 근이한 보통문 독법, 쓰기, 작문, 화법	3	일상 필수의 문자, 근이한 보통문 독법, 쓰기, 작문, 화법
산술	5	100 이하 수 세기, 쓰기, 20 이하 수 범위 내 가감승제	5	1000 이하 수 세기, 쓰기, 100 이하 수 범위 내 가감승제	6	통상의 가감승제
일본역사						
지리						
이과						
도화		단형, 간단한 형체		좌동	1	좌동
창가	3	평이한 단음창가	3	좌동	1	좌동
체조		체조, 교련, 유희		좌동	3	좌동
재봉						
수공		간이한 세공		좌동		좌동
계	23		25		27	

비고: 도화는 1, 2학년에서 매주 1시간 과할 수 있음.
수공은 1~3학년에서 1시간, 4~6학년 2시간 과할 수 있음.

[표 22] 1922년 〈보통학교 규정〉에 따른 4년제, 5년제 보통학교 교과과정

	4년제 보통학교				5년제 보통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수신	1	1	1	1	1	1	1	1	1
국어	10	12	12	12	10	12	12	12	9
조선어	4	4	3	3	4	4	3	3	3
산술	5	5	6	6	5	5	6	6	4
일본역사									5
지리									
이과				3				2	2
도화			1	1			1	1	남2/여1
창가	3	3	1	1	3	3	1	1	1
체조			남3/여2	남3/여2			3	남3/여2	남3/여2
재봉			여2	여2				여2	여3
수공									
계	23	25	남27 여28	남30 여3	23	25	27	남29 여30	남30 여31

비고: 빈칸은 수업시수가 배당되지 않은 경우임.

[표 23] 《보통학교국사》 상권, 하권 목차

상권	하권
1.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御神]	33.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이퇴계와 이율곡
2. 진무 천황[神武天皇]	34, 35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
3.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日本武尊] *박혁거세왕	
4. 진구 황후[神功皇后]	36, 37.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5. 닌토쿠 천황[仁德天皇]	
6. 쇼토쿠 태자[聖德太子]	38.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7, 8. 덴지 천황[天智天皇]과 후지와라 가마타리[藤原鎌足] *신라 통일	39. 고코우묘 천황[後光明天皇]
	40. 도쿠가와 미쓰쿠니[德川光圀]
9. 쇼무 천황[聖武天皇]	41. 오이시 요시오[大石良雄]
10. 와케노 기요마로[和氣淸麻呂]	42.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1. 간무 천황[桓武天皇]과 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로[坂上田村麻呂]	43.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12. 홍법대사(弘法大師]	44. 마츠다이라 사다노부[宋平定信] *영조와 정조

상권	하권
13. 스기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真] *왕건	45.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4. 후지와라씨[藤原氏]의 전횡	46. 다카야마 히코쿠로[高山彦丘郎]과 가모 군페이[蒲生君平]
15. 고산조 천황[後三條天皇]	47, 48 양이와 개항
16. 미나모토노 요시이에[源義家] *대각국사	
17. 다이라씨[平氏]의 발흥	49. 고메이 천황[孝明天皇]
18. 타이라노 시게모리[平重盛]	50. 무가 정치의 끝[終]
19. 무가 정치의 시작[起]	51.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20. 고토바 천황[後鳥羽天皇]	1) 메이지유신[明治維新]
21. 호조 도키무네[北條時宗]	2) 세이난 전쟁[西南の役]
22. 고다이고 천황[後醍醐天皇]	3) 헌법 발표 *조선의 국정
23.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4) 청일전쟁(명치 27·8년 전역)
24. 닛타 요시사다[新田義貞]	5) 조약 개정
25. 기타바타케 지카후사[北畠親房]와 구스노키 마사츠라[楠木正行]	6) 한국 병합
26. 기쿠치 다케미츠[菊池武光]	7) 천황의 붕어
27. 아시카가씨[足利氏]의 참상 *조선의 태조	52. 다이쇼 천황[今上天皇]
28. 아시카가씨[足利氏]의 쇠미[衰微]	1) 천황의 즉위
29. 호조 우지야스[北条氏康]	2) 구주의 대전과 우리나라
30. 우에스기 겐신[上杉謙信]과 다케다 신겐[武田信玄]	
31. 모리 모토나리[毛利元就]	
32. 고나라 천황[後奈良天皇]	

4. 중·고등교육기관의 확대와 운영

1) 일반계 중등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나 실업계 중등학교에 비해 일반계 중등학교인 고등보통학교(이하, '고보')·여자고등보통학교(이하, '여고보')의 보급·확충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제2차 〈조선교육령〉 공포를 앞두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차차 1도에 고보 1교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218] [표 24]에서 보듯이 실제로 공립고보는 경상남도와 평안남도를 제외한 모든 도에서 1교에 그쳤다.

[표 24] 공립고등보통학교 분포 상황

지역	설립 구분	학교명	개교 또는 인가 연월
경기도	공립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1911년 11월
	공립	경성제이고등보통학교	1921년 5월
	사립	양정고등보통학교	1913년 10월
		배재고등보통학교	1916년 4월
		송도고등보통학교	1917년 4월
		보성고등보통학교	1917년 7월
		휘문고등보통학교	1918년 4월
		중앙고등보통학교	1921년 4월
충청북도	공립	청주고등보통학교	1924년 5월
충청남도	공립	공주고등보통학교	1922년 4월
전라북도	공립	전주고등보통학교	1919년 6월
	사립	고창고등보통학교	1920년 4월
전라남도	공립	광주고등보통학교	1920년 5월
경상북도	공립	대구고등보통학교	1916년 5월
	사립	김천고등보통학교	1931년 5월
경상남도	공립	동래고등보통학교	1922년 4월
		진주고등보통학교	1925년 4월
황해도	공립	해주고등보통학교	1922년 4월
평안북도	공립	신의주고등보통학교	1921년 5월
	사립	오산고등보통학교	1926년 4월
평안남도	공립	평양고등보통학교	1911년 11월
	공립	안주고등보통학교	1936년 4월
	사립	광성고등보통학교	1918년 4월
강원도	공립	춘천고등보통학교	1924년 4월
함경북도	공립	경성고등보통학교	1922년 4월
함경남도	공립	함흥고등보통학교	1918년 4월
	사립	영생고등보통학교	1917년 4월
계	27개 교(공립 16개 교, 사립 11개 교)		

비고: 고등보통학교는 1925년 관립에서 공립으로 일괄 전환되었음.

218 《동아일보》 1921년 10월 21일.

[표 25]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분포 상황

지역	설립 구분	학교명	개교 또는 인가 연월
경기도	공립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1908년 4월
	사립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1908년 12월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1912년 4월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1918년 4월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1918년 11월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1925년 4월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1926년 4월
충청남도	공립	대전여자고등보통학교	1936년 5월
전라북도	공립	전주여자고등보통학교	1926년 5월
전라남도	공립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1927년 5월
경상북도	공립	대구여자고등보통학교	1926년 4월
경상남도	공립	부산여자고등보통학교	1927년 5월
	사립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	1925년 4월
황해도	공립	해주여자고등보통학교	1932년 4월
평안북도	공립	신의주여자고등보통학교	1936년 4월
평안남도	공립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	1914년 5월
	사립	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	1920년 5월
함경북도	공립	나남여자고등보통학교	1935년 4월
함경남도	공립	함흥여자고등보통학교	1935년 5월
	사립	누씨여자고등보통학교	1925년 6월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1929년 10월
계	21개 교(공립 11개 교, 사립 10개 교)		

비고: 여자고등보통학교는 1925년 관립에서 공립으로 일괄 전환되었음.

공립여고보의 경우는 [표 25]에서 보듯이 경성여고보와 평양여고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립고보에 비해 늦게 1920년대 중반 이후에 개교했다. 대전, 신의주, 나남, 함흥 4개 여고보는 1930년대 중반에야 개교했고, 강원도와 충청북도에는 설립되지도 않았다.

사립고보·여고보는 대개 구한말 교육구국운동기에 설립된 사립 또는 민립학교가 고보·여고보로 인가를 받은 경우가 많고, 배재고보, 이화여고보, 배화여고보 등

개신교계 미션스쿨도 있었다. 특히 사립여고보는 10개 교 중 숙명, 진명, 동덕을 제외한 7개 교가 미션스쿨이다.

공립고보·여고보는 기본적으로 도청 소재지에 위치했다. 공사립 모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교가 설치되었다. 사립학교의 경우 고보는 11개 교, 여고보는 10개 교 중 각각 6개 교가 경기도에 있는데, 고보·여고보 모두 경기도의 6개 교 중 5개 교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고보·여고보에 진학하려는 학생 대다수는 고향을 떠나 도시로, 특히 서울로 이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연히 교통비, 하숙비 또는 기숙사비를 학비에 추가하여 부담해야 했다. 입학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력이 없으면, 진학이 불가능하거나 진학하더라도 중도 퇴학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여성의 유학에 부정적인 젠더 규범의 영향을 받게 되니 진학에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즉 고보·여고보의 부족과 도시 집중은 조선인 학생의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20년대 취학열이 고조되면서 중등교육에 대해서도 고보·여고보 설립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가 각지에서 조직되었지만, 거의 실제 학교 설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조선총독부는 고보 설립 운동을 실업학교 설립으로 유도하거나, 지역민들이 모은 재원을 흡수하여 공립학교로 전환을 종용하는 등 고보·여고보 설립 운동에 억압하였다.

고보·여고보 입학은 6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가능했다. 입학시험 과목은 국어(일본어), 조선어, 산술, 일본역사, 지리, 이과 등 보통학교 교과목이었다. 다음은 1926년 경성부내 공사립여고보의 입학생 모집 상황이다.[219]

〈경성여고보〉

1. 모집인원: 1학년생 약 100인

2. 입학자격 및 시험: 자격은 품행이 방정하고 신체가 건전하며 재학 중에 학비 곤란을 당치 아니할

219 《조선일보》 1926년 1월 30·31일, 2월 1·5·6일.

사람으로,

⑴ 수업연한 6년 보통학교 졸업자, 금년 3월 졸업할 희망이 있는 자

⑵ 심상소학교 졸업자, 금년 3월 졸업할 희망이 있는 자

⑶ 연령 12세 이상(1914년 4월 2일 이전에 난 자) 조선어, 일어, 산술, 일본역사, 지리, 이과에 대하여 수업연한 5년의 보통학교 졸업생과 같은 정도의 학력을 갖고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

⑷ 선발시험은 학과시험(산술, 일어), 구두시험, 신체검사

〈배화여고보〉

1. 모집인원: 1학년생 약 50명과 2, 3학년 보결생 약간 명

2. 입학자격

⑴ 수업연한 6년 보통학교 졸업자, 금년 3월 졸업할 희망이 있는 자

⑵ 심상소학교 졸업자, 금년 3월 졸업할 희망이 있는 자

⑶ 수업연한 6년 보통학교 졸업생과 동 정도의 학력이 있는 자로, 조선어, 산술, 일어, 일본역사지리, 이과 시험에 합격하는 자. 일어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조선어시험을 면제함.

⑷ 만12세 이상, 성적이 우량하고 신체가 건강한 자

선발시험은 조선어, 산술, 일어를 6년제 보통학교 졸업 정도로 함.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구두시험과 체격검사를 행함.

〈숙명여고보〉

1. 모집인원: 1학년생 약 100인

2. 입학자격 및 시험: 품행이 방정하고 신체가 건전하며 재학 중의 학자를 넉넉히 지출할 만한 자로,

⑴ 수업연한 6년 보통학교 졸업자, 금년 3월 졸업할 희망이 있는 자

⑵ 심상소학교 졸업자, 금년 3월 졸업할 희망이 있는 자

⑶ 1, 2의 자격이 없을지라도 연령 만12세 이상으로 조선어, 일어, 산술, 일본역사지리, 이과에 대하여 동교에서 시행하는 검정시험을 받고 입학하려는 자

⑷ 시험은 6년 졸업자는 구두시험과 신체 검정, 6년 졸업을 못한 자는 검정시험(일본역사, 지리, 이과)

3. 선발시험 과목은 산술, 조선어, 일어

〈진명여고보〉

1. 모집인원: 1학년생 약 100인

2. 입학자격 및 시험: 연령 만 12세 이상, 성적이 우량하고 신체가 건전한 자로,

⑴ 수업연한 6년 보통학교 졸업자, 금년 3월 졸업할 희망이 있는 자

⑵ 심상소학교 졸업자, 금년 3월 졸업할 희망이 있는 자

⑶ 같은 정도의 학력이 있는 자로 입학시험에 합격되는 자

⑷ 시험은 6년 졸업자는 산술과 일어, 졸업증서를 받지 못한 자는 산술, 조선어 및 한문, 일어, 지리, 역사, 이과에 대한 자격을 시험

〈이화여고보〉

1. 입학 자격: 만12세 이상, 수업연한 6년 보통학교 졸업자와 그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

2. 시험: 산술, 조선어, 일어, 일본지리, 일본역사, 이과

보통학교 6학년 졸업생은 조선어, 산술, 일어만

앞의 사례와 같이 여고보의 입학시험 과목은 대체로 조선어와 일어, 산술이었다. 6년제 보통학교 졸업을 입학자격으로 하면서도, 이를 갖추지 못한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따로 준비한 검정시험에 통과하면 6년제 보통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보통학교가 부족하기도 하고, 가정 형편으로 중도 퇴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

입학시험은 지금과 같은 일제고사 방식이 아니라 학교별로 치렀다. 이 때문에 과목은 물론 난이도와 일정이 학교에 따라 또는 같은 학교라도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공통적인 것은 공립학교의 경우, 조선어 과목을 제외하면 시험 문항은 모두 서술형, 일본어로 출제되었고, 답안도 일본어로 작성해야 했다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1920년대 경성제이고보, 배재고보, 경성여고보의 역사 입학시험 문항이다. 모두 일본어로 출제되었고, 다루는 내용도 일본사이다. 즉 원어민에 가까운 일본어 해독·구사 능력이 없으면 수험 준비도 어려웠을 것이다.

〈경성제이고보〉

1. 포츠머스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다음 인물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쇼토쿠태자 (2) 대각국사[220]

〈배재고보〉

1. 다음 인물을 시기 순서대로 열거하시오.

① 北條時宗 ② 豊臣秀吉 ③ 왕인(王仁) ④ 楠木正成 ⑤ 源義家 ⑥ 菅原道眞

2. 다음 장소에서 전쟁을 했던 양군의 대장의 이름을 쓰시오.

- 가와나카지마 전투, 세키가하라 전투

3. 일본의 국체가 외국과 다른 점을 쓰시오.[221]

〈경성여고보〉

1. 인덕천황은 무슨 일을 했는가?

2. 메이지유신이란?[222]

[표 26]은 파악이 가능한 연도의 일반계 중등학교 입학률을 제시한 것이다.

고보의 입학률은 1931년도에 37.2%를 기점으로 뒤로 갈수록 계속 하락하여 1936년에는 17.4%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는 고보의 입학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입학하기가 어려워진 현실을 보여준다. 여고보의 입학률은 고보보다 높은데, 이는 오히려 식민지 여성교육이 얼마나 부족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고보의 경우, 지원자가 고보에 비해 훨씬 적었다. 즉 여자 아동의 보통학교 취학률이 낮으니, 여고보에 진학할 학력 조건을 갖춘 여학생 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

220 이문당 편집부, 《(조선관공사립고등보통학교 사범학교 실업학교) 입학시험문제 모범해답》, 이문당, 1924.

221 일한서방 편집부, 《조선 각중등학교 입학시험문제집》 1~4, 일한서방, 1923~1929.

222 위와 같음.

[표 26] 일반계 중등학교 입학률

(단위: %)

연도	고보	여고보	중학교	고등여학교
1918	32.2	89.8	62.4	84.1
1919	29.3	90.6	70.6	85.4
1923	30.9	43.5	52.8	66.6
1926	35.0	38.9	56.6	74.1
1927	34.8	41.4	55.5	75.1
1928	28.5	46.1	57.4	82.9
1929	27.6	42.6	59.4	80.5
1930	30.7	54.4	64.4	82.5
1931	37.2	60.5	64.6	79.7
1932	36.6	54.4	66.9	80.4
1933	31.9	60.4	60.9	76.6
1934	27.0	53.3	54.4	65.5
1935	21.5	42.7	47.0	69.3
1936	17.4	39.0	49.4	68.6
1937	17.4	35.5	54.1	63.1
계	27.3	46.6	56.9	73.3

출처: 박철희, 〈일제강점기 한국중등교육〉, 《교육사학연구》 14, 2004. 8. 141쪽.

일본인 학교인 중학교의 입학률은 고보보다 2배 정도 높고, 고등여학교는 총 입학률이 73.3%로, 지원자 4명 중 3명이 입학할 수 있는 수치이다. 즉 조선인은 일반계 중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일본인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했다.

1922년 공포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고보의 수업연한이 5년으로 연장되고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도 새로 규정되었다(〈고등보통학교 규정〉(1922. 2. 15. 조선총독부령 제16호)).

[표 27]의 교과목 편제와 수업시수 배당은 조선어 및 한문 과목을 제외하면 일본인 학교인 〈중학교 규정〉의 교과과정과 동일했다. 1910년대에 비해 외국어 과목(영어, 독어, 불어 중 선택)이 필수과목이 되고, 수업시수도 큰 비중으로 배정된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기존의 습자, 수공 과목이 폐지되고, 실업 과목은 필수과목에서 수의

[표 27] 1922년 〈고등보통학교 규정〉에 따른 고등보통학교 교과과정 및 수업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과정
수신	1	1	1	1	1	아국[일본] 도덕의 특질
국어 및 한문	8	8	6	5	5	현재의 국문, 평이한 한문, 문법대요, 습자
조선어 및 한문	3	3	2	2	2	보통의 조선문, 평이한 한문, 조선어문법의 대요
외국어	6	7	7	5	5	발음, 철자, 읽기, 해석, 말하기, 작문, 書取
역사	3	3	3	3	3	일본역사 및 외국역사, 조선에 관한 사항
지리						일본지리 및 아국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외국지리의 대요, 조선에 관한 사항
수학	4	4	5	4	4	산술, 대수, 기하, 삼각법
박물	2	2	2	2	–	중요한 식물, 동물, 광물, 인체의 구조, 생리 및 위생
물리 및 화학	–	–	2	4	4	중요한 물리상 및 화학의 현상 및 정률, 기계의 구조 및 작용, 원소 및 화합물
법제경제	–	–	–	–	2	제국헌법의 대요, 법제, 경제재정상의 사항
실업	–	–	–	2	2	농업, 공업, 상업
도화	1	1	1	1	1	자재화, 용기화
창가	1	–	–	–	–	단음창가
체조	3	3	3	3	3	교련 및 체조, 검도 및 유도를 가할 수 있음
계	32	32	32	32	32	

과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업시수도 4, 5학년 때 2시간씩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고보에서는 대학·전문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전보다 유리하게 되었다.

[표 28]에서 보듯이 여고보에도 외국어 과목이 새로 배정되었다.

그러나 고보에 비해 외국어 수업시수의 비중은 매우 낮고, 필수과목이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라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수의과목이었다. 또한 역사, 지리, 수학, 이과 과목의 과정에서 보듯이, 실제 교육내용의 수준도 고보보다 낮았다. 수업연한이 고보보다 1년 짧고 가사와 재봉 과목의 비중이 높은 것도 1910년대와 마찬가지다. 한편 음악 과목은 고보의 창가보다 수업시수가 많다. 고보의 경우와 달리,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결혼을, 취직하더라도 초등교원으로 진로를 상정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8] 1922년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에 따른 고등보통학교 교과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정
수신	1	1	1	1	도덕의 요령, 작법
국어	6	6	5	5	현재의 문장, 근고(近古)의 문장, 실용간이한 글, 문법의 대요, 습자
조선어	3	3	2	2	강독, 실용간이한 문장, 문법의 대요
외국어	3	3	3	3	발음, 철자, 읽기, 해석, 서취(書取), 작문, 회화 및 습자
역사	3	3	2	2	아국의 국초부터 현재까지의 중요한 사력, 조선에 관한 사항, 외국역사의 대요
지리					일본지리 및 아국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제외국의 지리의 대요, 조선에 관한 사항
수학	2	2	3	3	산술, 필요에 따라 대수 및 기하의 초보
이과	2	2	3	3	중요한 식물, 동물, 광물에 관한 일반의 지식, 인체의 구조, 생리 및 위생, 중요한 물리상 및 화학상의 현상 및 정률, 기계의 구조 및 작용, 원소 및 화합물에 관한 지식
도화	1	1	1	–	자재화
가사	–	–	2	4	의식주, 간병, 육아, 가계부기 및 기타 일가의 정리, 경제
재봉	4	4	4	4	꿰매기, 재단, 바느질
음악	2	2	1	–	단음창가
체조	3	3	3	3	체조, 교련 및 유희
계	30	30	30	30	

한편 정식 고보·여고보로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보통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자, 학령이 지나 학교 입학이 어려운 자 등을 위해 속성으로 중등 수준 교육을 실시하는 사립 각종학교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경성부 수송동에 있던 중동학교, 근화여학교, 태화여학교 등을 들 수 있다. 중동학교는 1928년 말 고등보통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지정학교로 '승격'했다. 근화여학교는 여성운동가 차미리사가 1924년 설립한 수업연한 2년의 학교로, 여고보 교육과정을 속성으로 교육했다. 아래의 기사에서 보듯이, 근화여학교는 작은 규모나마 기숙사도 같이 운영했고 여고보가 결혼하면 퇴학시켰던 것과 달리 기혼 여성도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태화여학교 자리에 들어선 태화빌딩
건물 앞쪽에 '충정공 민영환 어른께서 자결하신 옛터'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 근화의 기숙은 …… 한없이 자유롭게 재미있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 사생들은 경험 있는 웃사람들의 주의와 단속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철부지 처녀들과는 전연 성질이 다릅니다. 십중팔구는 나이 차고 세상 경험을 상당히 가졌으며 세상 물정도 대강 알아차릴 수 있는 기혼자들 중에도 특별한 환경과 사정을 지고 있는 자, 남편이 유학할 동안 혹은 큰 사회적 일꾼으로 먼 타향에 서로 떠나있게 될 동안에 "나도 배워두어야 하겠다." 하는 굳은 결심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뿐인 까닭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도 정식으로 여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강습회 같은 것이나마 완전한 곳이 없어서 서울에 와서도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허송세월만 하고 말던 시절에 김미리사(후에 차미리사로 개명) 씨가 큰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223]

223 《동아일보》 1928년 10월 20일.

태화여학교는 학령이 지난 여성들을 대상으로 보통학교 정도의 학과를 속성으로 가르치고, 가정위생, 세탁법, 재봉, 간단한 양복, 편물, 자수, 조선요리, 서양요리, 아기 양육 등도 교육했다. 또한 특별과(성경과)도 운영했다.[224]

이러한 학교들은 가정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학교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자들에게 만학의 기회와 함께,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 실업계 중등학교

실업학교는 졸업 후 취직 또는 독립 자영인이 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다. 전공과목별로 농업학교, 공업학교, 상업학교, 수산학교, 직업학교 등이 있었다. 실습 중심의 단기 속성학교인 실업보습학교도 있었는데, 학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일반계 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남녀 교육을 분리하여 여자실업학교는 따로 두었지만, 공립학교는 조선인·일본인 공학이 원칙이었다. 다만 일본인이 많은 경성에는 조선인·일본인 공학인 경기상업학교 외에 일본인 학생만 수용하는 경성상업학교가 추가로 개설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강점 초부터 실업교육을 강조했다. 또한 조선인 사회에서도 자립적인 경제발전과 개인의 생활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실업교육·직업교육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중등교육에서는 실업계 학교 보급률이 일반계 학교보다 훨씬 높았다. 1910년 이미 각 도에 관공립실업학교가 설립되었고, 1920년에는 전국에 25개 실업학교가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1922년 〈조선교육령〉과 함께 〈실업학교 규정〉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학교도 수업연한이 2년에서 3년 또는 5년으로 연장되었고, 5년제 실업학교 졸업은 고보 졸업과 동등하게 전문학교나 대학 진학을 위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교육과정에서 보통 과목의 비중도 많이 증가했다.

224 《조선일보》 1926년 3월 13일.

[표 29] 일제강점기 실업학교 설립 현황

연도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직업학교	수산학교	여학교
1910	예산, 전주, 정읍, 광주, 대구, 진주, 평양, 춘천, 함흥, 북청	부산제일, 부산제이, 선린(사)				
1911	청주, 안주, 의주, 영변, 사리원					
1912		인천				
1913						삼도여실(사)
1914						
1915						
1916		진남포				
1917						
1918	**경성**, 함북 경성					
1919						
1920	제주	함북 경성, 강경, 목포, 함흥, 회령				
1921	상주	신의주			여수	
1922	이리	마산, 원산, 동성(사)	**경성**		용암포(3)	
1923		경기, 대구			통영	
1924	길주, 밀양(3)					
1925						**경성여상(사)**
1926						**경성여실**
1927	김해					
1928	강릉					
1929						
1930	충주	사리원, 숭인(사)				
1931		평양		**경성**		
1932						
1933	공주, 안동	개성		부산		
1934	연안	대동(사)		북청		
1935	순천, 강계	청주(사)		신의주		**덕성여실(사)**
1936	수원	한성(사)				**향상여실(사)**
1937	강진(3), 울산, 갑산(3)	청진		대구		

연도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직업학교	수산학교	여학교
1938	남원(3), 장연, 신천(사)	강릉			청진	
1939	안성	덕수(3)	평양제일	해주, 삼척		
1940	영동(3), 천안, 덕원(3)	광신(사)	이리, 부산, 흥남, 조선전기(사)	인천		
1941	시흥(3), 원주	군산, 보인(사, 3)	신의주, 청진, 평안(사)	대전, 송정		
1942	문산, 순창, 성천, 구성, 평강, 영흥	김천		전주		청진여실
1943	의정부, 제천, 서산, 영주, 안악, 초산	단천	겸이포, 평양제이			
계	55개 교 (사립 1개 교)	31개 교 (사립 8개 교)	11개 교 (사립 2개 교)	11개 교	4개 교	6개 교 (사립 4개 교)
	118개 교(공립 103개 교, 사립 15개 교)					

출처: 《조선제학교일람》 각 연도판.
비고: 1. (사)는 사립학교를, (3)은 3년제 학교를 의미함.
2. 강조 표시는 경성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함.

[표 29]에서 보듯이, 실업학교는 대한제국기에 이미 설립되었거나 신설이 예정되어 강점 직후 인가를 받은 후에는 거의 신설되지 않다가, 1920년대 들어서부터 꾸준히 증설이 이루어졌다. 실업학교 중에는 농업학교가 가장 많고, 1920년대 이후 상업학교가 많이 설립되었다. 1920년대에는 〈회사령〉이 폐지되고 조선인의 회사 설립이 활발해졌을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금융조합이 조직되면서 상업학교 졸업자의 취직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실업학교는 대부분이 경성의 상업학교들이었다.

[표 30]은 실업계 학교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 학교의 재학생 중 조선인 학생의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표 30]에서 조선인 학생의 비율이 전공별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는 농업학교와 수산학교이다. 조선인 재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곧 일본인 재학생 비율이 낮은 것이니, 일본인 학생은 농업학교, 수산학교

[표 30] 1922년 〈고등보통학교 규정〉에 따른 고등보통학교 교과과정 및 수업시수

(단위: %)

연도	실업학교					실업보습학교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직업학교	수산학교	
1922	95	51	30		100	89
1927	88	45	15		95	91
1932	89	47	25	86	99	89
1937	89	50	31	82	97	84
1942	92	54	50	94	84	90
평균	91	49	30	88	95	89

출처: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연도판.

입학을 선호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성, 대구, 부산 등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에 경성농업학교 외에는 농업학교나 수산학교가 개설되지 않았고, 재조선 일본인 중 농업이나 수산업 종사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학교에 비해 일본인은 상대적으로 상업학교, 공업학교 입학을 선호했다. 상업학교에서는 조선인 학생의 비율이 평균 50% 전후이고, 공업학교는 상업학교보다 훨씬 낮아서 1930년대까지 30% 이하에 머물고 있다. 공업학교는 전국에 1922년 설립된 경성공업학교가 유일했다. [표 30]에서 1937년까지 공업학교 수치는 경성공업학교 통계만 보여주는 것이다. 경성공업학교는 입학 시 학력 조건이 2년 과정의 보통학교 고등과 또는 고등소학교 졸업이었다. 그러나 보통학교에 고등과가 설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 학생은 일본인 학생에 비해 입학 자격을 갖추는 것부터 불리했다. [표 30]에서 1942년 공업학교의 조선인 재학생 비율이 50%로 높아진 것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1939년 평양, 1940년 이리·부산·흥남, 1941년 신의주와 청진 등 북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공업학교가 개설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여자실업학교는 공립은 단 1개 교뿐이고, 절대다수가 사립학교였다. 조선총독부는 여성을 위한 실업교육·직업교육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1925년 경성부 견지동에 설립된 사립경성여자상업학교의 교장 신시철申時徹은 3

년 뒤 제1회 졸업을 맞아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다.

> 조선에 역사가 있은 후 첫 시험인 여자상업학교의 졸업생을 세상에 내보내게 되매,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 우리 학교는 오로지 직업 여자만을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좀 더 사회의 근본 문제를 여자의 머릿속에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졸업하고 나가는 학생들에게도 역시 그러한 말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월급 생활에만 찾아가는 것은 타락이다, 경제문제가 사회에 어떠한 작용을 하며 여자의 생활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확실한 경제적 자각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라는 말입니다. …… 우리 학교의 자랑을 말씀하라고요. 우리 학교는 특수한 학교인 만큼 그것이 자랑이 될 것이며 겸하여 대개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정신적 방면에 퍽 탁월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동산에 숨어 앉아 시나 짓고 음악이나 즐기는 아씨들과는 다릅니다. 얼마나 조선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들이겠습니까.[225]

여성의 집 밖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했던 시기, 이른바 '현모양처'가 아니라 '커리어우먼' 양성을 목표로 한 여자상업학교 교육자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범학교

3·1 운동 후 조선총독부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학교를 재설립하였다. 1921년 서울에 조선총독부가 관할하는 관립경성사범(이하, '경성사범')을 개설하고,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 관립 또는 공립으로 사범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각 도에 1교씩 공립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경기도공립사범학교는 서울에 있었다.

[그림 5]는 1922년 〈조선교육령〉과 〈사범학교 규정〉에 따른 1920년대 사범학교 교육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225 《중외일보》 1928년 3월 7일.

<table>
<tr><th>초등교육</th><th colspan="3">고등보통학교 및 교원 양성 교육 (총 교육 기간 최장 6년)</th></tr>
<tr><td rowspan="6">보통학교
6년 졸업</td><td colspan="2">사범학교 보통과
(교육 기간 5년)</td><td>사범학교 연습과
(교육 기간 1년)</td></tr>
<tr><td colspan="2">고등보통학교 졸업
(교육 기간 5년)</td><td>사범학교 연습과
(교육 기간 1년)</td></tr>
<tr><td>보통학교 고등과
2년 졸업</td><td colspan="2">사범학교 특과
(교육 기간 2~3년)</td></tr>
<tr><td>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
2년 수료</td><td colspan="2">사범학교 특과
(교육 기간 2~3년)</td></tr>
<tr><td>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
2년 수료</td><td>사범학교
강습과</td><td></td></tr>
<tr><td></td><td colspan="3"></td></tr>
</table>

[그림 5] 1922~1928년 사범학교 교육과정

사범학교 교육과정은 보통학교·소학교 6년 졸업을 입학 자격으로 하는 보통과 5년-연습과 1년 과정과 고등보통학교·중학교 5년 졸업 후 바로 연습과에 입학하는 2가지 코스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코스는 서울의 경성사범에만 있었고, 각 도의 공립사범학교는 교육 기간이 짧은 특과, 강습과만 운영했다. 조선총독부는 1929년 각 도의 공립사범학교 졸업생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공립사범학교 제도를 폐지하고 경상북도·평안남도사범학교만 관립의 대구·평양사범학교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개편된 후에도 대구·평양사범학교의 교육과정은 특과란 명칭이 심상과로 바뀌고 교육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을 뿐, 경성사범과 같은 보통과-연습과 과정은 설치되지 않았다. 심상과의 입학 조건과 교육 기간은 경성사범 보통과와 동일했지만, 심상과는 연습과로 연결되지 않는 종결 과정이었다. 따라서 경성사범 졸업생과 다른 사범학교 졸업생은 교원 자격과 초임 봉급에 차등이 있었고, 경성사범이 아닌 다른 사범학교 졸업은 중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초임 봉급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경성사범 남자 연습과 졸업생의 초임 봉급은 52원, 공립사범학교 졸업생은 40원이었다. 경성사범 졸업생의 초임 봉급에 대해서 전문학교 졸업생이나 일본 사범학교 졸업생의 봉급과 비교해도 너무 많고, 조선 내 보통학교·소학교 교원의 평균 봉급 63원과 매우 가까워 승급 기한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으니 봉급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26] 그리하여 경성사범

남자 연습과 졸업생의 초임 봉급은 1928년에 50원으로, 1931년에는 다시 47원으로 삭감되었지만, 1929년 이후 다른 사범학교 졸업생의 초임 봉급은 42원이었기 때문에 전보다 그 정도는 줄었지만 차이는 여전했다.

사범학교는 실업학교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일본인 공학이었다. [표 31]은 1920년대 경성사범 졸업생 현황이다.

[표 31] 1922~1929년 경성사범 졸업생 현황

(단위: 명)

연도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소계
	연습과	연습과	연습과	연습과	연습과	강습과	보통과 연습과	연습과	보통과 연습과	연습과	보통과 연습과	연습	
조선인	·	1	1	3	10	123	6 (2)	14	10	10 (2)	17	12 (3)	207 (7)
일본인	91 (14)	129 (9)	136 (5)	137 (2)	123 (3)		58 (28)	111 (3)	76 (16)	78 (5)	75 (8)	68 (9)	1,082 (102)
총계	91 (14)	130 (9)	137 (5)	140 (2)	133 (3)	123	64 (28)	125 (3)	86 (16)	88 (7)	92 (8)	80 (12)	1,289 (109)

출처: 경성사범학교 편, 《경성사범학교총람》, 1929; 《조선총독부직원록》에 의거하여 작성.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졸업생 수와 입학생 수의 차이를 의미함.

[표 31]에서 조선인 졸업생 수는 졸업생 총수의 16.1% 불과하다. 1926년 조선인 12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강습과 과정은 1910년대 개설되었던 경성고보·평양고보 사범과가 1925년 3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강습과를 두어 1925년 입학생들을 수용한 것이다. 이 강습과 졸업생 123명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7.2%로 더욱 낮아진다. 즉 1920년대 조선인·일본인 공학의 사범학교 체제가 성립되었으나 각 도의 공립사범학교는 조선인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로, 경성사범은 소학교, 보통학교에서 모두 근무할 수 있는 일본인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로 사실상 이분화되어 운영되었다.

사범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매우 높았다. 경성사범학교에는 1924년 신입생 100

226 《동아일보》 1927년 4월 8일.

명 모집에 4,000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40 : 1에 달하였고,[227] 1926년에도 연습과 130명을 모집하는데 1,100명이 지원하였다.[228] 1930년 이후에도 경성사범학교는 물론 대구·평양사범학교도 입학 지원자가 계속 증가 추세였다.[229] 이는 사범학교가 급비제와 전원 무료 기숙사 생활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고보, 실업학교와 달리 학비 부담이 덜했고, 졸업과 동시에 판임관 교원이라는 안정된 취직처와 적지 않은 봉급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경성사범학교에서는 매년 여름·겨울 양복, 구두, 외투, 모자 등 새 옷 일습과 개교 이래 3년간 매달 4엔 50전씩 용돈까지 지급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이로움은 중등 이상의 교육 기회, 취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인보다 불리했던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강력한 유인 요건이 되었다. 1939년 경성사범학교에 입학했던 정범모鄭範謨는 사범학교 지원 동기에 대하여 "담임 선생님의 권유가 결정적이었고, 내 부모님도 사범학교는 '풀 스칼라십'이어서 학비도 덜 들었고 또 당시 일제시대엔 초등학교 교사가 조선인에게 허락된 그래도 반반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라고 회고했다. 또한 본인이 지망했을 때, 100명을 뽑는데 80명은 일본인 학생으로, 조선인 학생은 20명만 배정되어 조선인 학생 경쟁률이 52:1이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하였다.[230]

여자 초등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1920년대 각 도의 공립사범학교에 여자강습과, 1925년 경성사범학교에 여자연습과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공립사범학교 중 여자강습과를 상설기관으로 두고 매년 졸업생을 배출한 곳은 경기도사범학교뿐이었다. 1929년 이후 관립사범학교 체제하에서는 경성사범학교 여자연습과가 유지되었을 뿐, 다른 사범학교에는 여교원 양성과정이 전혀 설치된 바 없다. 경성사범학교 여자연습과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입학 자격은 여고보 졸업, 조선인·일본인 공학이었다. 여자연습과 졸업생의 출신 학교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경성과 평양 두 여고보가 가

227 《매일신보》 1924년 2월 21일.

228 《매일신보》 1926년 3월 18일.

229 朴永奎, 〈植民地朝鮮における教員養成に關する硏究〉, 九州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107쪽.

230 정범모, 《회상과 수상 - 그래, 이름은 뭔고?》, 나남출판, 2007, 182쪽.

장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출신 학교와 지역이 다양해지고 있었다. 이는 여자 중등교육이 꾸준히 확대되어 온 결과이자 동시에 그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성사범학교 여자연습과는 1935년 경성여자사범학교 개교에 따라 1935년 4월 1일자로 폐지되었고, 재학생은 경성여자사범학교 연습과로 편입되었다.

4) 전문학교

1924년 경성제국대학 개설 후 조선총독부는 그 이상의 대학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조선인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던 대학 설립 시도들은 무산되거나 대학이 아닌 전문학교로 실현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고등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립전문학교였다.

[표 32]는 일제강점기 조선에 설립·운영된 관·공·사립 전문학교를 설립 또는 인가 연도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표 32] 일제강점기 조선에 설립된 전문학교 현황

관립 / 공립	사립
경성의학전문학교(1916)	동양협회경성전문학교(1918)→ 1919년 관립
경성법학전문학교(1916)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1917)
경성고등공업학교(1916)	연희전문학교(1917)
수원고등농림학교(1918)	보성전문학교(1922)
경성고등상업학교(1922)	숭실전문학교(1925→1938)
경성광산전문학교(1939)	이화여자전문학교(1925→1943)
부산고등수산학교(1941)	경성약학전문학교(1929)
평양공업전문학교(1944)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1930)
대구농업전문학교(1944)	중앙불교전문학교(1930)→ 1940년 혜화전문학교(1944)
대구의학전문학교(공립, 1933)	명륜전문학교(1942→1943)
평양의학전문학교(공립, 1933)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1933)
함흥의학전문학교(공립, 1944)	숙명여자전문학교(1939→1943)
광주의학전문학교(공립, 1944)	대동공업전문학교(1938→1944)
관립 9개 교, 공립 4개 교	13개 교

비고: 사립 칸 괄호 안의 화살표 다음의 연도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교된 연도임.

[표 32]의 학교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 전문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관립은 대학제국기의 고등교육기관을 모체로 개편된 의학·법학·공업·상업전문학교, 사립은 숭실전문학교와 대동공업전문학교 외에는 모두 서울에 있었다.

또 다른 특징은 관공립전문학교와 사립전문학교 재학생의 민족 구성의 차이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이후 전문학교도 실업학교, 사범학교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일본인 공학이 되었다. 그러나 [표 33]에서 보듯이 관립전문학교에서 조선인 학생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 〈조선총독부 전문학교 관제〉(1916. 4. 1. 조선총독부령 제15호) 제10조에 "조선 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전문학교 또는 부속 공업전습소에 내지인을 수용하여 전문교육 또는 실업교육을 교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선의 전문학교에 재조선 일본인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1909년 설립된 경성법학교가 강점 이후 1911년 경성전수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22년 경성법학전문학교로 학교 명칭이 바뀐 것이다. 1911년 공포된 〈경성전수학교 관제〉에는 입학 대상을 조선인 남자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1916년 이를 폐지해 버리고,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공업전문학교는 일본인이 학생 총수의 1/3 이내로 입학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표 33]에서 이후 조선인 입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수도 거의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반면 사립전문학교는 재학생의 절대다수가 조선인이었다. 특히 보성전문학교,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중앙불교전문학교 등 5개 교 재학생은 전원 조선인이었다. 교수도 관립전문학교와 달리 조선인이 주축을 이루었다. 예를 들면 보성전문학교의 경우 1932년 김성수金性洙가 학교를 인수했을 당시의 교수는 상과에 김영주金泳柱·다카하시 유타카[高橋豊]·홍성하洪性夏·백상규白象圭, 법과에 옥선진玉璿珍·최태영崔泰永·와타나베 카츠미[渡邊勝美] 등 7명이 있었다. 김성수는 학교를 인수한 후 1934년까지 유진오(경성제대 법문학부 졸업), 오천석(컬럼비아대 박사), 김광진(도쿄상과대학 졸업), 최용달(경성제대 법문학부 졸업), 안호상(예나대학 박사), 박극채(교토제대 졸업), 윤행중(교토제대 졸업), 현상윤(와세대대 졸업) 등을 교수·강사로 임용했다.

[표 33] 일제강점기 연도별 관립전문학교 조선인 입학생 비율

(단위: %)

연도	경성법학전문	경성의학전문	경성고등공업	수원고등농림	경성고등상업
1916	100	66.2	54.8	–	–
1917	100	49.0	50.0	–	–
1918	100	69.9	64.0	73.7	–
1919	100	73.4	65.6	90.0	–
1920	100	35.4	56.8	42.1	–
1921	100	63.7	53.2	28.1	–
1922	93.1	47.0	29.2	31.3	–
1923	96.1	45.6	30.9	27.8	17.0
1924	70.7	31.7	44.7	47.5	14.6
1925	66.0	25.0	37.5	44.4	10.0
1926	75.0	21.7	30.3	44.6	13.9
1927	58.0	19.8	20.0	41.3	17.5
1928	72.1	28.9	18.5	32.3	19.0
1929	69.2	33.3	19.4	24.6	16.3
1930	62.3	25.9	11.7	32.0	13.4
1931	74.6	18.5	18.5	23.4	18.9
1932	69.8	23.8	21.7	26.3	19.3
1933	78.7	15.0	18.3	22.7	20.2
1934	73.4	26.3	27.0	29.2	20.2
1935	76.5	26.3	24.3	36.8	21.2
1936	76.1	26.6	39.4	26.2	21.4
1937	74.2	27.2	25.3	24.4	21.0
1938	85.1	22.8	29.2	23.5	25.0
1939	76.8	19.1	24.6	27.7	37.1
1940	53.1	23.8	21.9	21.9	28.0
1941	51.6	19.2	14.2	23.4	33.3
1942	48.9	22.2	9.8	31.1	25.0
평균	75.9 70.6	34.0	28.1		20.3 21.2

비고: 경성법학전문학교의 평균 2행은 일본인이 입학한 1922년 이후, 경성고등상업학교의 평균 2행은 조선인이 입학한 1923년 이후의 수치임.

사립전문학교들은 경성제대, 관립전문학교에 비해 재정 면에서도 교육 조건 등에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많은 조선인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조선인 지식인들의 주요 취직처이자 독립적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기능하였다.

5. 상경 유학과 해외 유학의 증대

1) 경성과 그 부근에 몰려있는 주요 중등·고등교육기관

일제강점기 경성은 조선총독부가 상징하듯이 정치권력의 중심부였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었다. 특히 이 시기 대부분의 주요한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은 경성에 몰려 있었다. 식민지 조선 유일의 대학인 경성제대는 물론 대부분의 전문학교가 경기도, 즉 경성과 그 부근에 몰려 있었던 것이다. 1925년 이전까지 전문학교는 모두 경기도(경성 포함)에 세워져 있었으며, 1925년에는 전체 10개교 중 9교, 1935년에는 전체 15교 중 12교, 1945년에는 전체 20교 중 13교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다.[231]

1944년에는 조선총독부의 이른바 〈교육에 관한 전시 비상조치 방책〉에 따라 경성의 혜화전문학교와 명륜전문학교가 폐교되고, 대구농업전문학교, 광주의학전문학교, 함흥의학전문학교가 신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4년 이전까지 전문학교의 80~90%는 경성과 그 부근에 세워져 있었다. 반면에 충청도·전북·강원·황해·평북·함북에는 전문학교가 단 하나도 없었다. 이는 총독부의 관립 전문학교 억제정책의 결과 그리고 경성의 유리한 입지조건 때문이었다.[232] 이러한 교육기회의 경성 집중은 일부 지방 주민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경성으로 유학보내거나 학생 자신이경성 소재 학교 진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233]

231 김자중, 《한국 대학의 뿌리, 전문학교》, 지식의 날개, 2022, 254쪽.

232 김자중, 앞의 책, 2022, 254~255쪽.

233 김태웅, 〈총론〉 《일제강점기 상경자의 경성 체험과 생활공간》, 서울역사편찬원, 2025, 9쪽.

[표 34] 1921년 5월 말 현재 한국인 각종 학교 현황

(단위: 개소)

학교 종류		전 국	경성
보통학교	관립	3	2
	공립	675	13
	사립	37	3
고등보통학교	관립	7	2
	사립	10	5
여자 고등보통학교	관립	2	1
	사립	5	3
전문학교	관립	4	3
	사립	2	2
실업학교		농업(공립) 19, 상업(사립) 2, 상공(공립) 1, 수산(공립) 1 총 23	농업(공립)1, 상업(공립) 2 (*이상 경기도)
간이실업학교		농업(공립) 15, 상업(공립) 5, 공업(공립) 2, 수산(공립) 1 총 30	농업(공립) 4, 상업(공립) 3, 공업(공립) 1 (*이상 경기도)
각종 학교 (사립)	일반	356	34 (*경기도)
	종교	279	37 (*경기도)
계		1,439	

출처: 조선총독부 학무국, 《大正十年五月末現在 朝鮮諸學校一覽》, 《京城彙報》 46, 1925년 8월; 김은영, 〈1920년대 고학생의 상경과 서울 생활: 이태준의 소설 《사상의 월야》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상경자의 경성 체험과 생활공간》, 서울역사편찬원, 2025, 35~36쪽.

비고: * 표시는 경기도 소재 학교임.

[표 34]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학교와 실업학교·간이학교·간이실업학교는 지방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지만, 중등 이상의 학교는 경성을 포함한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더욱이 사립 고보와 여고보는 절반 이상이 경성에 있었으며, 전문학교는 관·사립을 합쳐서 수원고등농림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성에 소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의 향학열에 불타는 학생이나 일부 유지들은 경성이나 그 부근의 경기도 지방에 위치한 중등학교와 고등교육 기관으로 '상경유학上京留學'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경성에 개설되고, 1926년 학부도 개설되자 고등보통학교 등 전국의 주요 중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은 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했고, 합격자 중의 절반 이상이 경성 소재 고보 졸업자들이었다. 하지만 지방 출신도 40% 이상 합격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경유학'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경성에는 많은 고보가 세워져 있었고 졸업자도 많았다. 고보는 1925년에 전체 23교(공립 15, 사립 8) 중 7교(공립 2, 사립 5) 30.4%, 1937년에는 전체 27교(공립 16, 사립 11) 중 7교(공립 2, 사립 5) 25.9%가 경성에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고보 졸업자는 1925년에 전체 989명 중 554명(56%), 1937년에는 전체 2,306명 중 778명(33.7%)이 경성 소재 고보를 나왔다.[234] 따라서 졸업자 숫자를 보면 경성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등교육기관과 전문학교·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경성 집중은 각 지역 간 교육기회의 차별적 분배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특히 경성(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경유학 등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조선 유일의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에는 각 지방에서 상경유학생이 쇄도하였다. 다음의 [표 35]는 각 중등교육기관의 경성제대 예과 합격생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5] 가운데 출신 학교를 알 수 없는 '기타'를 제외하면 경성제대 예과 입학 한국인 입학생은 모두 734명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경성제1고보와 경성제2고보 등 경성의 관립 고등보통학교 출신이 무려 311명이나 되어 한국인 입학생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또 경성을 제외한 전국의 각 지방 학교 출신의 숫자는 312명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식민지 조선의 최고학부인 경성제대 예과 입학 한국인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지방에서 경성으로 상경유학을 감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성제대 예과는 자택이나 적당한 숙소가 아니면 기숙사(기숙사 이름은 진수료進修寮) 입사를 권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하숙을 했다고 한다.[235] 따라서 상경 유학의 비용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234 김자중, 앞의 책, 2022, 256쪽.

235 이충우·최종고,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2013, 76쪽.

[표 35] 조선 내 중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경성제국대학 예과 합격 현황

학교명	1924~1939년 합계
경성제1고보	216
경성제2고보	95
경성중학	25
공주고보	9
대구고보	46
대전중학	9
동래고보	9
보성고보	22
신의주고보	25
신의주중학	9
양정고보	17
오산고보	6
원산중	11
중앙고보	19
청주고보	37
춘천고보	10
평양고보	62
평양중	13
함흥고보	25
해주고보	15
휘문고보	18
배재고보	16
전주고보	8
광주고보	18
기타	121
계	855

출처: 《京城帝國大學 豫科一覽》각년도;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2002, 97~99쪽 참고해 작성

2) '상경유학'의 어려움

교육을 위한 상경은 '학력'이 계층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근대사회, 특히 일제강점기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 당국의 민족차별적 교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중등 이상의 교육기관과 일자리가 집중된 기회의 도시였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하며 공부하는 고학생苦學生은 경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계층 상승을 꿈꾸며 서울로 향한 열성적 학생들이었다. 경성이라는 대도시의 무산계급인 고학생들은 경성에서 점차 '제국의 수도'인 도쿄[東京] 유학이라는 또 다른 '상경 경로'를 따라 움직이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고학생의 현실인식은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고학생에 대한 일제 당국의 경계와 억압으로 이어졌다.[236]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기 위해 상경한 학생들은 주로 '하숙'과 '기숙사'에 거처했다. 대체로 남학생은 하숙, 여학생은 기숙사를 선택했으며, 남녀 중등학교가 집중된 북촌에는 하숙촌이 형성되기도 했다. 규율이 강조된 여학교 기숙사는 당시 여성의 집 밖 생활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기숙사는 다른 한편에서는 강제적인 통제, 감시와 처벌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자취제와 당번제 등 상경 학생이 학업을 다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돌보는 거주시설, 후생시설로서 역할도 컸다.[237] 일제강점기 지방민, 특히 학생들의 상경은 '학업형 상경'과 '생계형 상경'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대부분 학업을 위해 온 서울은 상급학교가 밀집한 '출세와 욕망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치열한 입시 경쟁, 학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해야하는 고통과 절망의 공간이었다. 한편 '생계형 상경'은 일제의 수탈적 토지제도와 공업화를 배경으로 단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성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했지만, 현실은 고단한 노동의 공간이자 범죄 소굴로 빠질 수 있는 환멸의 장소이기도 했다. 상경 유학은 성공과 기회의 땅으로 여겨진 서울이 사실은 일제의 제도적 차별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숨기고 있는 생활공간이기도 했던 현실을 깨우치기도 했던 것이다.[238]

236 김은영, 〈1920년대 고학생의 상경과 서울 생활: 이태준의 소설 《사상의 월야》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상경자의 경성 체험과 생활공간》, 서울역사편찬원, 2025, 21~68쪽 참조.

237 김광규, 〈상경 학생의 거처〉, 《일제강점기 상경자의 경성 체험과 생활공간》, 서울역사편찬원, 2025, 208~209쪽.

238 손동호, 〈소년 상경의 문학적 재현 양상〉, 《일제강점기 상경자의 경성 체험과 생활공간》, 서울역사편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몰락한 농민들 역시 구직을 위해 경성으로 상경했다. 이들은 지게꾼, 날품팔이, 인력거꾼 등 신체를 노동수단으로 삼아 생활하고, 불완전한 움집, 토굴, 토막에 사는 도시 빈민인 '토막민土幕民'이 되었다. 특히 동대문 밖 창신동의 '토막촌'은 경성부 내에서 상경한 빈민들의 거주지가 밀집된 곳이었다. 또한 한양도성의 동쪽 경계로 도성 안팎의 길목이자,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외 전차선의 환승지가 있어 일자리를 구하기도 유리했다. 더욱이 대부분 돌산에다 경사진 지형은 개발의 우선순위에 멀어 토막촌이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239] 이 같은 여건은 상경 유학생들의 주거 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동대문 밖에 여러 학교가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41년 경성 동부에 위치한 중·고등교육기관, 즉 동대문 밖 숭인면과 한지면 일원의 중·고등교육기관은 모두 14개나 되었다. 처음부터 이곳에 설립된 교육 관은 경성제대 예과, 소화공과학교, 경성원예학교, 경성무학공립고등여학교 등의 4개였다. 나머지는 주로 193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경성 시내로부터 옮겨진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보성전문학교는 숭인면 안암리에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후에 미국 대학을 본떠 건축한 고딕 양식의 교사로 이전했고, 경성법학전문학교는 경성공립농업학교가 전농·휘경정徽慶町으로 떠나면서 비게 된 경성공립농업학교의 옛 교지로 이사했다.[240]

이에 숭인면과 한지면으로 이전한 학교의 규모는 2배 이상 커졌다. 신설 당시 2,930명이었던 14개 교육기관의 재학생은 1941년 6,712명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동부 지역을 오고가는 통학생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또 동대문 안쪽에도 다양한 교육기관과 사회시설이 들어섰다. 대표적 교육기관으로는 식민지 조선의 유일한 약학 관련 고등교육 기관인 경성약학전문학교, 초등교원 양성체계의 정상부에 위치한 경성사범학교가 있었다.[241] 이처럼 여러 학교는 겉으로는 커졌지만, 상경 유학생들의

원, 2025, 268~270쪽.

239 유슬기, 〈1920~1930년대 상경 도시 빈민층과 창신동 토막촌 양상〉, 《일제강점기 상경자의 경성 체험과 생활공간》, 서울역사편찬원, 2025, 155~158쪽.

240 《조선중앙일보》 1934년 9월 29일; 《조선중앙일보》 1936년 7월 2일; 《매일신보》 1937년 1월 28일.

241 이명학, 〈일제시기 동대문 일대의 사회·경제적 개발과 특징〉, 《서울과 역사》 118, 2024, 236·256·257쪽.

기숙사나 하숙집 등 생활공간의 여건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일제강점기 자본과 인구가 집중되는 경성은 주거 문제라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있었다. 1910년대 후반부터 불거진 주택 수급의 불균형은 점점 악화가 되었다. 경성의 교외화郊外化 현상이 진행되었다. 식민지 지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성으로 이주한 이들과 몰락한 원주민은 소득 수준에 맞는 주거 공간을 구할 수 없었다. 결국 과도한 주거비는 가난한 계층을 경성 교외로 내몰았던 것이다.[242] 이에 따라 상경 유학생들의 주거 여건도 악화되었다.

주거 문제는 단지 빈민들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경성의 임대 주택은 효용성이 낮았다. "경성의 주택은 대부분 불량 주택이다."라는 평가가 상징하듯이,[243] 낡고 오래된 임대 주택은 제값을 하지 못했다. 이에 임차인은 차가借家 생활을 포기하고 자기 집 확보에 나섰다. 그들은 주택 금융을 활용하여 교외에 단독 주택을 건축하거나, 부동산업자가 조성한 주택지를 구입했다. 내 집 마련의 열망은 관공리, 회사원, 소상인 사이에 급속도로 퍼졌다. 특히 지형적으로 거주하기에 적합하고 문화 주택 단지가 밀집한 동부 지역은 새로운 터전으로 주목을 받았다.[244] 도심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주소지를 외곽으로 옮긴 결과 교외 인구는 급증했다. 경성의 생활권은 한성부 시절의 성저십리까지 넓어졌다.[245]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은 지배에 순종적인 하급 인력을 양성하고 고등인력을 억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기조 아래 경성은 다수의 중·고등교육기관이 모인 교육의 중심지로 변했다. 그러나 도심에 위치한 학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는 한국인의 열기 속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낙후된 교사, 협소한 운동장, 큰길가의 잡음 등으로 학습에 지장이 많다는 경성법학전문학교 재학생의 불만이

242 이명학,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주택정책과 공영주택의 관사 전용〉, 《한국사학보》 83, 2021, 268~273쪽.

243 早田伊三, 〈不良住宅問題 - 家主の反省を求む〉, 《朝鮮社會事業》 6(8), 1928, 42쪽.

244 이경아, 〈경성 동부 문화주택지 개발의 성격과 의미〉, 《서울학연구》 37, 2009, 67~77쪽; 이명학,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중반 조선총독부의 주택 공급 조성과 자가 확대의 이면 - 경성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48, 2022, 302~308쪽, 325~332쪽; 이명학,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주택금융 도입과 도시금융조합의 자금 운용〉, 《한국사연구》 198, 2022, 303~336쪽.

245 이명학, 앞의 글, 2024, 232쪽.

나타내듯이,[246] 계속해서 늘어나는 재적생에 비해 교육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이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시가지에 소재한 기존 교지를 확대하는 방식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졌다. 부지 확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외곽에 교사를 신축하는 편이 합리적이었다. 192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와 함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개인과 단체는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시내에 있는 학교를 교외로 옮기기 시작했다. 비교적 넓은 평야와 저습지가 존재하고 그리 높지 않은 구릉지를 끼고 있는 경성 동부의 숭인면과 한지면은 교육기관의 이주지로 각광을 받았다.[247] 이에 따라 동대문 밖 일대가 시내의 북촌北村 일대와 함께 상경 유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이 되었다.

3) 도일 유학생의 추이와 동향

19세기 말 동아시아는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직면하여 서둘러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서구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신문명을 배워오거나, 근대적 개혁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서양 문명을 수용코자 했다. 조선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늦게 비록 일본에 국한되었지만, 개항 이후부터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선의 유학 정책은 계획적이지 못하고 국내의 정치적 부침에 따라 그리고 재정 부족으로 파견과 중단을 반복하며 파행적으로 이뤄졌다. 결국 1903년 이후 유학생 파견은 중단되고 말았다.[248]

그러나 1904년 10월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제의 한국 침략이 가속화되자, 고종은 관비로 일본 유학생 50명을 선발, 파견하였다.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을 전후하여 7·8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마친 관비 유학생이 귀국했다. 이들 중 일부는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식민지 권력의 하층 실무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처럼 대한제국 정부는 관비유학생을 통한 부국강병을 모색했지만, 식민지로

246 《매일신보》 1927년 7월 14일.

2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지》, 1994, 534~535쪽.

248 이계형, 〈1904~1910년 대한제국 관비 일본유학생의 성격 변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1, 2008, 223쪽.

전락하면서 본래의 부국강병을 통한 스스로의 근대화에 실패하고 말았다.[249]

여기서는 일제강점기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학생의 추이와 동향을 간단히 서술코자 한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비 유학생과 사비 도일度日 유학생 현황은 [표 36]과 같다.

[표 36] 1910년대 관비 및 사비 도일유학생 수

(단위: 명)

연도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관비 유학생	50	47	47	26	29	17	30	47
사비 유학생	485	635	535	581	545	641	739	631
계	535	682	582	607	574	658	769	678

출처: 조선총독부 학무국, 《在日本朝鮮學生狀況》, 1920, 17~18쪽; 박찬승, 〈식민지시기 渡日留學과 유학생의 민족운동〉, 《아시아의 근대화와 대학의 역할》,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0, 165쪽.

관비 유학생의 숫자가 매우 제한적인데 반해 1910년대 후반에 완만하게 사비 유학생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총독부의 유학생 억제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1910년대 일본 유학생들은 어떤 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는지 알아보자.

[표 3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문학교나 대학 예과 재학생이 37%에 달하고, 기타 학교, 즉 예비학교 재학생 비율이 약 45%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비학교는 주로 도쿄의 세이쇼쿠[正則] 영어예비학교와 일진영어학교 연수학관 등에 다니는 학생들이었다. 예비학교 재학생이 많은 이유는 이들이 정규입학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이 부족했기 때문이다.[250]

249 이계형, 앞의 글, 2008, 223~224쪽.

250 박찬승, 〈식민지 시기 渡日留學과 유학생의 민족운동〉, 《아시아의 근대화와 대학의 역할》,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0, 167쪽.

[표 37] 1910년대 일본 유학생 학교별 재학생 수

(단위: 명, %)

학교 유형별	학생 수	비율
대학 본과	29	2.5
전문학교(대학 예과 포함)	424	37.2
실업학교	72	6.3
중학교(여학교 포함)	99	8.7
기 타(예비학교 등)	517	45.3
계	1,141	100

출처: [표 22]와 같음.

1910년대 일본에 유학한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을 받고자 했다. 그러나 이 무렵 대학 본과에 재학한 학생들은 2.5%, 29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일본어 공부가 더 필요했는데, 조선의 학제와 일본의 학제가 달라 당시 일본의 고등중학교(3년제)를 졸업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일본에서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모자라는 학력을 보충하기 위해 예비학교를 다녀야 했다.[251]

한편 이 시기 유학생들의 전공 분야는 어땠을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법정, 경제, 사회과 전공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공계나 농림, 예술계통 전공자는 극히 드물었다. 이공계 가운데서는 그나마 의학(의과) 전공이 7.3% 비율로 제일 많았다. 이들의 전공 상황은 [표 38]과 같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이공 계통의 기술인력은 주로 일본 등에 관비 유학생을 파견함으로써 어느 정도 충족시켜왔다. 한국인에게는 저급한 보통교육만을 실시하고 굳이 체계적 과학기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총독부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 관비官費로 369명의 학생을 유학시켰는데, 이 가운데 농림 및 수산 분야가 102명으로 27.6%, 공학 분야가 72명으로 19.5%, 의학 분야가

251 박찬승, 앞의 글, 2000, 166~167쪽.

[표 38] 도일 유학생들의 전공 상황

(단위: 명, %)

전공[履習] 학과별	학생 수	비율
법정, 경제, 사회과	308	68.0
상과	31	6.8
문과	39	8.6
사범과	14	3.2
예술과	6	1.3
이공과	15	3.3
농림과	7	1.5
의과	33	7.3
계	453	100

출처: 조선총독부 학무국, 《在日本朝鮮學生狀況》, 1920, 16~17쪽; 박찬승, 앞의 책, 2000, 168쪽 참고해 작성.

88명으로 23.8% 도합 262명 71%나 되었다.[252] 이 통계를 보면 일제 측의 선전과는달리 한국인 학생들도 기회가 주어지면 이공계통 학습에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1920년대 도일 유학생 수와 전공 분야, 학교 종류별 재학생 수는 어떠했는가? 1920년대에 이르러 도일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전공 분야 분포도 1910년대보다 훨씬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고등보통학교가 증설되고, 전문학교나 대학(경성제대)이 승격되거나 창립되어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이 한층 고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39] 11920년대 도일 유학생 수

(단위: 명)

연도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유학생 수	678	1,230	2,235	3,222	992	1,530	1,694	3,275	3,239	3,753	3,769

출처: 조선총독부 학무국, 《조선교육요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자료집》 13(학생독립운동 자료집), 고려서림, 1984, 1,118쪽에서 재인용.

252 阿部洋, 〈「解放」前日本留學の史的展開とその特質〉, 《韓》 59, 1976, 36쪽.

[표 39]에서 1929년 유학생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이해 9월 초 있었던 관동대지진의 여파로 많은 유학생들이 조선으로 귀환했거나 일부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1924년 유학생 숫자도 소폭 증가에 그친 사실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에 이르러 도일 유학생은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1931년 4,762명, 1932년 4,664명, 1933년 5,369명, 1934년 6,093명, 1935년 7,292명에 달했던 것이다.[253] 또 1930년대에 들어 대학이나 전문학교 재학생은 늘고, 각종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감소하는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층의 증가, 교육열의 고조와 조선인 학생들의 학력 향상 등 다각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45년까지 일본 주요 제국대학의 조선인 졸업생 숫자를 보면 도쿄제대 163명, 교토제대 236명, 도호쿠제대 106명, 큐슈제대 162명, 홋카이도제대 62명 등 모두 729명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 관서지방의 대표적 명문대학 교토제대 졸업생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254] 또 도쿄제대 졸업생의 전공별 숫자를 보면 법학부 60명, 의학부 6명, 공학부 15명, 문학부 35명, 이학부 7명, 농학부 20명, 경제학부 20명의 분포로 대부분(약 2/3)이 인문사회 계통임을 알 수 있다. 교토제대는 법학부 103명, 의학과 13명, 공학부 22명, 문학부 16명, 이학부 8명, 농학부 31명, 경제학부 44명으로 역시 다수(163명, 2/3)가 인문사회 계통인데 법학부 졸업자가 압도적이다.[255] 이는 일본 유학생의 특성을 잘 드러낸 것으로, 이들의 입신 출세지향적 경향을 알 수 있다.

1940년대에 이르러 조선인 도일 유학생이 폭증하자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 당국은 중일전쟁의 확대와 태평양전쟁 등의 발발 등으로 인한 위기의식의 고조, 전시

253 박찬승, 앞의 글, 2000, 184쪽.

254 鄭鍾賢, 〈日本の帝國大學における朝鮮人留學生の狀況と帝國知識の連續/非連續〉, 《植民地帝國日本における知と權力》, 思文閣出版, 2019, 836쪽. 한편 정종현은 최근 저서에서 설립 이래 1943년까지 일본 내 7개 제국대학에 입학한 한국인 유학생 수를 합산할 경우 모두 784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제국대학의 조센징》, 휴머니스트, 2019, 59~60쪽). .

255 鄭鍾賢, 앞의 글, 2019, 837쪽.

통제정책의 강화에 발맞추어 재일 유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한국인 유학생의 해외 유학과 조선총독부·일본 당국의 통제와 감시

조선총독부 당국은 1900년대 초부터 대한제국 정부에서 취해온 유학생 보호·감독 체계를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한국 병합 직후부터 도쿄에 유학생 감독관을 두어 재일 유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맡게 하였다. 즉 일본인 및 조선인 감독 1명씩을 두어 상근케 하였고, 매년 2회 이상 유학생의 학업성적과 품행을 조사·보고하게 했던 것이다. 또 '도쿄유학생 감독부' 안에 기숙사를 부설하여 가능한 한 많은 유학생을 수용하고, 감독과 지도, 통제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또 1911년에 〈조선총독부 유학생 규정〉을 마련하여 신체 건강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를 선발하여 관비로 파견, 유학시켰다. 사비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각도의 도장관(도지사)을 경유하여 조선 총독에게 신청하도록 하여 통제하였다.[256]

1916년경 총독부 관비 유학생은 38명, 사비 유학생은 총 536명으로 파악되는데, 사비 유학생 가운데 457명이 도쿄 유학생이었다. 총독부 당국은 학업을 마치고 조선으로 귀환한 학생들은 가능한 한 취업을 알선하여 친일세력권으로 포섭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그런데 1910년대 후반에 조선에도 전문교육 시설이 점차 갖추어지게 되어 꼭 일본으로 유학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 당국은 "학업을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불확실한 유학 계획"은 각 지방장관이 제지하는 방침을 취하여 일본 유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257] 그러나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에 들어 일본 유학은 폭증하였다.

한국인의 1920년대 국외 유학은 엄청난 증가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3·1운동 이후 국내의 향학열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한반도 내에서 일본의 제도교육이 전면적으로 한국인의 향학열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외국

256 조선총독부, 박찬승 외 역주,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상, 민속원, 2018, 172쪽.

257 앞의 책, 173쪽.

유학은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결국 식민지 본국인 일본에 다수의 한국인이 유학하게 되었다.[258]

1926년 6월 말에는 유학생의 70%가 도쿄에 거주했고 나머지 15%는 교토, 오사카에 그리고 기타 야마구치[山口], 오카야마[岡山]에 주로 거주했다.[259] '제국의 수도' 도쿄야말로 실질적 서울, 중심지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도쿄 유학이야말로 또 다른 '상경유학'이었던 것이다. 1930년대 전반기는 1920년대와 달리 변화가 있었다. 1929~1930년 광주학생운동에서 비롯되어 전국적 항일학생운동이 전개된 결과 일본 당국의 탄압으로 일부 제명된 학생들이 일본 유학을 선택했는데, 이로 인해 유학생 수가 증가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한국인 유학생의 해외 유학과 일본 유학을 통제하는 한편, 일본 정부 당국과 협조하여 일본 유학생들을 통제하고 감시했다. 조선인 일본 유학생은 조선총독부의 민족차별 정책과 고등교육의 열악한 여건에서 벗어나 일본 고등교육기관 등으로 유학한 학생으로서 3·1 운동 이래 점차 늘어나 1930년대부터 폭증하였다. 그 결과 1930년부터 대학과 전문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이 전체 일본 유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기 시작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한국병합 직후부터 유학생의 동태를 파악한 이래 1920년대에는 '조선교육회 장학부', 1940년대에는 '조선장학회'를 일본 도쿄에 설치하여 일본 유학생을 통제하고 감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대학과 전문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상당수의 조선인 학생들은 이러한 총독부와 일본 당국의 통제에 반발하여 각종 비밀결사나 유학생회 등 단체를 통해 일제의 교육 및 지배정책에 일탈,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5) 미주지역의 한인 유학생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미국 유학생들은 미션스쿨 학생, 고학생, 왕자, 의사, 은행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은 각자의 배경을

258 박찬승, 앞의 글, 2000, 174~176쪽.

259 朴慶植 編, 〈內地に於ける朝鮮人と其犯罪に就いて〉, 《在日朝鮮人資料集成》(1), 三一書房, 1975, 274쪽,

가지고 도미했다. 미국 유학생들은 1919년 이전까지는 주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도미했고, 그 이후에는 미션스쿨 출신들이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와 미주한인사회의 도움으로 도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32년 재정 위기가 닥치자 유학생이 급감했다.[260]

1910년에 30여 명이던 미국 유학생은 1919년에 77명(대학 및 전문학교 재학)으로 늘어났고, 1925년에는 300여 명의 대학생이 미국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었다.[261] 이처럼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1918년 말 웨슬리안대학의 이춘호와 오하이오주립대학의 임병직·김현구 등이 '미주한인학생단The Korean Student's League of America'을 발기하고, 영문 월보를 발행하기도 결의했다. 이후 이들은《Freedom and Peace》《Young Korea》《Korea Review》를 발행하였고, 북미대한인유학생회는《우라키THE ROCKY》라는 제목의 잡지를 1925년 9월 창간하여 1936년 9월 제7호까지 발간하였다.[262]

1910년대 대부분의 미국 유학생들은 오하이오 웨슬리안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이 학교를 거치거나 졸업하고 미국 동부의 유명 사립 대학교에 입학했다. 오하이오 웨슬리안대학은 주도州都 콜럼버스에서 북쪽으로 48km 떨어져 있는 델러웨어Delaware라는 작은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감리교 계통의 학교이다. 이 대학은 1842년에 설립되어 많은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여 교육하는 학교였다. 웨슬리안대학은 한인 학생들이 주로 유학했는데, 특히 미주의 감리교와 연관되어 유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연에는 웨슬리안대학 총장 웰치Herbert Welch의 역할이 컸다. 웨슬리안대학의 총장인 웰치는 1862년 뉴욕에서 태어나 1909년 감리교 목사가 되었다. 1905년부터 1916년까지 웨슬리안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고, 그후 바로 한국과 일본의 감리교 감독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이다.[263]

최초의 외국 유학 여성 문학사인 하란사도 하워드대학을 다니다가 웨슬리안대

260 장경호, 〈19세기 말 20세기 초중반 미국유학생의 유학 배경과 졸업 후 활동 - 미주 내 학교와 지역을 중심으로〉,《한국민족운동사연구》105, 2020, 29쪽.

261 김도형,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와 장세운〉,《민족문화와 대학》, 혜안, 2016, 205~206쪽.

262 김도형, 앞의 책, 2016, 206~214쪽.

263 김도형, 〈미국 '토종' 오하이오주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호소하다〉.《월간 순국》2025년 6월호, 94쪽.

학을 다녔고, 그녀가 수학할 당시 웰치가 총장이었다. 하란사는 이를 바탕으로 유대관계를 맺어 그에게 한국감리교 감독을 요청하여 그가 한국감리교 감독으로 활동하는 데 기여하였다. 김도연과 김활란의 경우도 웰치 총장에게서 입학추천서를 받아 유학할 수 있었다. 1919년 2·8 독립선언의 당시 〈결의안〉을 낭독한 김도연도 웨슬리언대학을 다녔다. 그의 《나의 인생고백》에는 "우리나라 유학생이 모두 네 사람이었다. 유형기·김기후 두 형과 김활란 양 그리고 나까지 네 사람이었다."라고 한다. 웨슬리언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은 대부분 뉴욕의 콜롬비아대학이나 인근의 오하이오주립대학 등으로 진학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밖에도 웨슬리안대학에는 의친왕 이강을 비롯하여, 박에스터, 신흥우 등도 이 대학에서 수학하였다.[264]

오하이오주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많았다. 한인 유학생들은 대개 미국인 선교사나 미국에 인연이 깊은 사람의 주선으로 유학을 갔다. 1929년 당시 미국 유학생은 총 292명이 있었다. 유학생들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54명으로 가장 많고, 일리노이주가 46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리고 뉴욕이 41명, 오하이오주가 21명이었다. 이처럼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대학과 노스웨스턴대학 등에 많이 다녔고, 오하이오주립대학University of Ohio과 오하이오 웨슬리안대학Ohio Wesleyan University, 오벌린대학Oberlin College 등에 한인 학생들이 있었다.[265]

오하이주 애크론Acron의 한인들은 1919년 3월 13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로부터 국내에서 독립을 선언했다는 전보를 받아보게 되었다. 이에 오하이오주 한인 등 미국 동부의 한인들과 오하이오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의 옛 수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인회의에 참석하였다. 제1차 한인회의 폐회 이후 서재필이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친우회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를 결성하였다. 서재필은 1919년 5월 2일 필라델피아 성삼위교회The Church of The Holy Trinity의 톰킨스Floyd W. Tomkins 목사의 지지와 협력으로 각 분야 저

264 위와 같음.

265 김도형, 앞의 책, 2016, 93~94쪽.

명인사 22명을 초청하여 한국친우회를 발기하고 독립운동을 지속하였다.[266]

미국 유학생 전체 통계를 보면 노스웨스턴대학, 미시건대학, 시카고대학 등 중부지역에 가장 많이 유학생이 거쳐 갔다. 중부지역 소재 학교를 거친 이들은 의학 전공자, 미션스쿨 교수 등이 다수를 차지했고, 동부지역을 거친 이들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요직에 진출한 이들이 많았다. 특히 동부 지역의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그렇다. 남부 지역은 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부지역과 하와이에서는 그 지역의 학교를 나오고 다른 지역의 학교로 진출하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 정계에 진출한 이들이 거의 없었다.[267]

6. 학생들의 생활과 학교 풍경

1) 교사와 학교생활

초중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는 교사일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장시간, 같은 공간에서 밀착된 생활을 하는 곳이 학교이니만큼 교사의 학문적·교육적 역량은 물론 교사와 학생의 관계, 즉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학생의 학습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제강점기 서울의 중등학교를 다닌 두 인물의 회고를 통해 당시 중등학생의 학교생활을 살펴보자.

다음은 1919~1923년 경성고보를 다닌 유진오兪鎭午의 학창 시절에 대한 회고이다.

> 경성고보(그때는 제이고보가 생기지 않아 제일고보가 아니라 그냥 경성고보였다)의 입학시험은 3월 하순에 있었으니까 3·1 운동이 터진 지 불과 몇 주일 후였고, 서울서 터진 운동의 여파가 아직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년 묵은 까닭에 무시험입학의 자격이 없어졌

266 김도형, 앞의 책, 2016, 94~95쪽.

267 장경호, 앞의 글, 2020, 30쪽.

다 하여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 1학년 교실은 그때 경성고보 동쪽 끝에 있는 단층 벽돌 건물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수업을 파하고 운동장 옆에 있는 수공 교실 앞을 지나노라니, 교실 속의 3학년 학생들이 전원 무릎을 꿇고 단좌하여 입을 꽉 다물고 앉아있는 광경이 보였다. 수공을 거부하는 동맹휴학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 경성고보의 교과 내용은 일본인 중학교의 그것과 크게 달랐다. 우선 영어를 전 학생에게 가르치지 않고 성적 좋은 학생들만 선발해서 가르쳤으며, 수학, 물리, 화학, 국어(일본어) 같은 과목들도 일본인 중학교보다 정도가 떨어지는 교과서를 썼으며, 무엇보다도 큰 조선 학생들의 불평이 대상이 된 것은 수공이라 하여 학생들에게 손으로 간단한 물건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 전교 학생을 농과와 상과로 나누어 농과 학생에게는 농업실습을 시키고 (그 때문에 계동 우리 집 뒷동산 너머 재동보통학교 옆에는 수천 평 되는 경성고보의 농장이 있었다), 상과 학생에게는 주산과 부기를 가르치는 것의 두 가지였다. 간단히 말한다면 경성고보의 교과 내용은 전문학교나 대학으로 진학할 것을 목표로 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라 그곳을 졸업하면 곧 군서기나 보통학교 교사 또는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할 사람을 양성하는 내용의 것이었다. 요새 말로 한다면 정상적인 중등교육이 아니라 '식민지교육'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3·1 운동 직후의 학생들로서 그러한 교육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날의 수공 수업 거부는 그러한 요구 조건을 내건 동맹휴학의 발단이었던 것이다. 그 이튿날로 학교는 다시 휴교가 되어 9월이 되도록 다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1학년 1학기를 송두리째 허탕친 셈이나, 2학기에 학교에 나가보니 학생들의 요구 조건은 전부 관철되어 있었다. …… 경성고보 2, 3학년 시절은 대체로 큰일 없이 지냈으나 그런 중에도 이런저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일은 우선 4학년 봄에 나의 음모(?)로 선생 두 명을 갈아낸 사건인데 그 첫째 희생자는 사다나가[定永]라는 젊은 영어 선생이었다. 그해 나가사키 고상을 갓 졸업한 사람을 4학년 영작문 선생으로 앉혀놓았으니 가르치기 힘에 겨웠을 것도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배우는 학생으로서는 그대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한 반에 있는 강원복姜源福 군과 공모하여 우선 "당신은 실력이 부치니 사임하라."는 뜻의 정중한 투서를 내놓고 수일 후 4학년 급장으로서 학생을 대표하여(일반 학생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교무주임 다케다[竹田] 선생을 만나 학생들의 사다나가 선생에 대한 불평이 대단하니 일이 거칠어지기 전에 갈아달라 하여 그대로 성공한 것이었다. 사다나가 선생은 교직을 아주 사임한 것이 아니라 하급 학년 영어를 맡고, 4학년 영작문은 다메미쓰[爲光]라는 실력 있는 노인 선생이 맡았다. …… 사다나가 선생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 나는 이번에는 실력 부족으로 학생들 간에 불평이 자자한 화학 선생 요시다를 갈아치우는 일

을 시작하였다. 요시다 선생 앞으로 정중한 편지를 낸 것은 사다나가 선생의 경우와 같았으나 이번에는 전번과는 달리 며칠 동안 가만히 학교 측 동태를 보고 있었는데, 며칠 뒤 화학 시간이 되어 화학 교실로 들어갔더니 그 선생은 풀이 죽어 손에 든 백묵을 몇 번씩이나 떨어뜨리고 해서 보기에 딱하였다. 그러자 시간이 다 되어 교실을 나오려는데 선생이 유군 하고 나를 불렀다. "발각이 난 것이로구나."하고 가슴을 설레며 교실 옆에 붙은 실험 기재실로 따라 들어갔더니 요시다 선생은 뜻밖에 나에게 의자까지 권하면서 "유군, 내년에 내지 고등학교 시험을 치르지 않느냐(그때는 경성제대 예과가 생기려면 아직 2년이나 더 있어야 했다)" 하면서 만일 그럴 생각이라면 좋은 참고서 등속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럴 예정이 없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요시다 선생은 나에게 통사정을 하였다. 며칠 전에 내가 보낸 편지(물론 하급생에게 대필시킨 것)를 내놓으면서 이런 편지를 보낸 학생이 있는데 짐작 가는 데가 없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나는 짐작 가는 데 없다 하였지만 그러나 "선생님께 대하여 불평을 가진 학생은 많다. 내 생각 같아서는 선생님이 잘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대답하고 가슴을 내리쓸면서 그 방을 나왔다. 요시다 선생은 그 후 몇 주일 안 가서 역시 하급 학년 담당으로 갈리었다. …… 수십 명의 일본인 교원 틈바구니에 조선인 선생은 전부 다섯 분 있었는데, 이분들은 중요한 자리에는 물론 있지 못하였지만 학생들이 특별히 따랐음은 물론이다.[268]

유진오의 회고에서 3·1 운동 전후 공립고보 교육 변화의 실제를 살펴볼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폈듯이 1922년 〈고등보통학교 규정〉에 따라 외국어는 필수과목으로, 실업 과목은 수의과목으로 바뀌었고 습자와 수공은 폐지되었다. 유진오의 회고에 의하면, 경성고보는 일반계 학교인데도 농과와 상과로 운영해 오던 것을 1919년도 1학기 학생들의 수공 수업 거부, 동맹휴학 후 폐지하였다고 하니, 경성고보의 변화는 규정보다 빨랐던 것이다. "수십 명의 일본인 교원 틈바구니에 조선인 선생은 전부 다섯 분"이라고 하였듯이, 공립학교 교사는 절대다수가 일본인이었다. 유진오가 재학했던 시기뿐 아니라, 경성고보에서 재직한 조선인 교사는 일제 말까지 매년 5명이 상한선이었다. 교장은 당연히 일본인이고 일본인 교사가 주류인 학교에서 일

268 유진오, 〈편편야화 (8), (12)〉, 《동아일보》 1974년 3월 9일, 14일.

본어로 쓰인 교과서로 수업을 받아야 했지만, 조선인 학생들이 그에 주눅들어 지냈다고만은 할 수 없다. 유진오의 회고에 교사가 실력이 부족하니 바꿔 달라고 투서하고 학교는 이를 수용하여 상급·하급 담당 교사를 교체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이런 일은 조선의 초중등학교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다. 보통학교에서도 같은 이유로 학생들이 해당 교사를 배척하는 동맹휴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269]

다음은 1928~1931년 경성여고보를 다닌 이철경李喆卿의 회고이다.

> 대개 한 학년에 100명씩 400명 정도의 학생이 한 학교의 정원이었다. 내가 다니던 경성여고보에는 상급생 중에 결혼한 사람도 몇이 있었는데 머리를 틀어 올린 데다 치마저고리가 우리들이 입는 것과는 다른 비단옷이었다. 여름에는 날아갈 듯한 모시옷 차림에다 하얀 굽 높은 구두도 신고 다녔다. 여자교육이 보급되는 초기였기 때문에 그런 만학의 부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 또 그 학교에는 서울의 모모한 한말 고관집 딸들이 모였기도 했는데 평소에도 자가용, 인력거로 등하교하는 귀족이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인력거의 행렬이 교문 앞에 줄을 짓기도 하는 것이었다. …… 교장과 교사 대부분이 일본인이었고, 한국인으로는 수학을 가르치시는 장응진張膺震 선생님, 조선어과의 손정규孫貞圭 선생님, 체육 담당 임순분林順分 선생님 그리고 재봉을 맡으신 홍근식 선생님 모두 네 분뿐이었다. 집에서 바느질을 일찍 배운 나는 재봉 시간은 별로 새로운 것이 없는 시간이었고 수학 시간을 좋아하였다. 곤란했던 시간은 2학년 때의 수신 시간이었다. 노노무라[野野村]라는 일본 선생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철저한 불교 신자였다. 수신 시간에 교과서는 제쳐놓고 포교를 하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명상하라고 하여 눈을 감겨놓고는 부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임하시니 모두 경건한 맘으로 부처님을 모실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나는 처음부터 저항감이 치밀어서 명상은커녕 불쾌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감기는 했으나 맘속에는 불평뿐이었다. 시간이 끝난 후 학생들은 야단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며 최면술에 걸리는 게 아니냐고 떠들어대는 학생도 있었다. 번번이 그렇게 하는 수신

269 실제 사례로 1921년 경기도 부천공립보통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산술시간에 교원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자 "선생이 실력이 없어 잘못 가르친다."라고 따져 물었고, 교원은 흥분하여 학생들에게 "같다."라고 폭언을 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선생이 되어서 산술 3권도 잘 가르치지 못하는 위인이 그래도 학생을 모욕한다."라고 하며 바로 귀가해 버렸다. 그리고 "선생을 갈아주지 않으면 결단코 그 선생에게는 공부를 안하겠다."라고 버티며 동맹휴학을 일으켰다(《조선일보》 1921년 9월 18일).

>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었다. …… 이시카와[石川]라는 지리 선생님은 학기 말이면 노트 검사를 하여 성적에 가산했는데, 글씨를 깨끗하게 잘 쓰면 무조건 점수를 잘 주어서 글씨를 잘 못 쓰는 아이들에게는 호감을 주지 못한 분이다. …… 습자 시간만 되면 나는 신이 났었다. 한자 글씨는 물론 일본 글씨를 내가 선생님보다도 멋들어지게 잘 썼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들었다.[270]

이철경의 회고에도 유진오의 회고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교사가 적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다른 점은 경성여고보의 손정규, 임순분, 홍근식은 여성이었다는 것이다. 여고보 교사에는 남녀 모두 임용되었지만, 고보에 여성 교사는 당시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여보고의 교육과정은 남성 교사가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즉, 가사, 재봉 등 여학생 전용 과목의 비중이 높았다.

학생 중에 "자가용, 인력거로 등하교하는 한말 고관집 딸들과 귀족"이 있어, 비오는 날이면 인력거가 교문 앞에 줄을 지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고보와 달리 여고보 학생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상류층 출신이 많았다. 초등학교조차 무상교육이 아니었던 일제강점기에 중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남녀학생이 동일했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 성차별주의가 엄연한 사회에서 한정된 교육 기회는 집안의 아들에게 우선 돌아가기 마련이었으니, 상대적으로 여성에게는 더욱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남학생은 고학을 할 수도 있었지만, 여학생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데다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라 고학은 시도조차 어려웠다. 이러한 점에서 고보와 달리 여고보 학생들은 딸도 아들과 같은 수준까지 공부시킬 수 있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중상류층 출신이 많았다.

한편 조선인·일본인 공학인 실업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일본인 교사·학생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270 《동아일보》 1981년 3월 16일.

경성농업학교 2학년 학생 일동(조선 학생 80명, 일본 학생 16명)이 지난 8일 소원小原, 우갑비雨甲斐 두 선생의 인솔로 개성에 수학여행을 했을 때, 만월대에서 점심을 먹다가 조선인 학생들이 먹을 물이 부족하여 먹을 물이 넉넉한 일본인 학생들에게 나누어 먹기를 청하게 되었다. 이때 일본인 학생들은 이것을 거절하였으므로 조선인 학생들은 평소에 가졌던 불평까지 겸하여 약간의 언쟁이 있었으나, 마침 기차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거장으로 나와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차 중에서 양측 학생들이 서로 모래와 사과껍질을 던지다가 조선 학생이 던지던 모래가 인솔한 우갑비 선생에게 맞았다. 동 선생은 귀교해서 같이 갔던 김영칠이라는 학생을 무기정학 처분을 하였는데, 이것이 조선 학생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하는 것이라 하여, 서로 모래를 던지었으되, 조선인 학생만 정학을 시키는 것은 더욱 차별적 대우이니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이러한 사람에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9개조의 이유서를 학교 당국에 제출하는 동시에, 동 학년 생도 14명이 동맹 퇴학원을 제출, 나머지 학생들도 그저 있을 수 없다 하여 전부 동요될 조짐이 보인다고 하였더라.[271]

경성농업학교는 서울에 위치한 데다 지방 농업학교에 비해 1인당 교육비나 시설 등이 훨씬 양호했고, 또한 일본인 학생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신문에 보도된 1930년 동맹휴학은 동대문경찰서에서까지 나서 조선인 학생들을 불러 조사하고, 학교 측은 조선인 학생에 대해 전혀 관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조선인 학생 12명이 출학되고, 38명이 무기정학을 받고 끝났다.

1936년에는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 다툼 끝에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학생을 난자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26일 오전 시내 청량리정에 있는 경성공립농업학교에서 …… 5학년 생도 시야직희矢野直喜(19)가 날카로운 주머니칼로 같은 학년 생도 성태용成泰龍(20)의 머리, 얼굴 등 여러 곳을 몹시 찔러서 현장에 혼도시키는 불상사가 탄생하였다. 원인은 지난 23일 그 학교 실습장에서 병아리 치는데 당번 문제로 네가 할 차례니, 내가 할 차례가 아니니 하고 서로 격렬한 시비가 있었는데, 그날 9시에 이번 사건의

271 《신한민보》 1930년 11월 20일.

장본인이 되는 시야, 전구차랑田口次郎 외 한 일본 내지인 등 세 사람이 피해자 성태용을 찾아가서 한바탕 싸움을 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다 한다. 오늘과 같은 칼질 싸움은 즉 전날에 품었던 원한의 발로로서 피해자는 욱정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서 응급구호를 받는 중이나 생명이 위험하다 한다. …… 이 학교의 생도 총수는 450명으로 그중 350명이 조선사람에 그 나머지는 일본 내지인 생도이니만큼, 서로들 대치가 되어 어떤 불상사를 일으키지나 않을지 주목되어 그 서署에서는 전교생들을 경계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272]

가해자 일본인 학생은 퇴학 처분되었다.[273] 조선인·일본인 공학이 아니더라도 모든 초중등학교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일본인 교사가 있었다. 학교는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교사, 조선인 교사와 일본인 교사 간 치열한 민족 대립의 현장이었다.

2) 기숙사 생활

중고등 교육기관이 경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에서 일반계 중등학교나 대학, 전문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 대다수는 상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도 북촌에는 경성제일고보, 경성여고보, 근화여학교, 대동상업학교, 동덕여고보, 숙명여고보, 중동학교, 중앙고보, 협성실업학교, 휘문고보 등 여러 공사립 중등학교가 모여 있었다. 상경한 학생들은 서울에 일가친척이나 지인의 집에 머물 수 없으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하숙을 해야 했다.

1920~1930년대 하숙비는 18원 내외, 기숙사비는 여학교의 경우 11~13원 정도가 일반적이었다.[274] 1939년 한 신문 기사는 상경한 남녀 중등학교 학생의 한 달 학비에 대하여 대체로 여학생은 20원, 남학생은 30원 정도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했다.[275]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식비 17원, 세탁비 50전,

272 《조선일보》 1936년 5월 27일.
273 《조선일보》 1936년 5월 28일.
274 《동아일보》 1928년 2월 22일.

서류대 1원 50전, 과자 3원, 이발·목욕비 기타 1원 50전, 통신대 36전, 양말 50전, 내의 1원, ◯◯◯ 20전, 약값 50전, 영화 2원, 호떡 50전, 기타 합계 28원 56전"이었다. 식비, 세탁비, 이발·목욕비, 양말, 내의 등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비용 외의 내역을 보면, 과자나 호떡 등 간식을 사 먹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영화를 보는 것이 당시 중등학생의 일상생활 속 오락거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숙사는 학생을 위한 주거 복지 차원이라기보다 학생의 일상생활을 관리·통제하고 시간 규율을 몸에 갖추게 하는 훈련이라는 의도에서 권장되었다. 사범학교가 전 재학생의 기숙사 수용을 원칙으로 한 것은 그 전형에 해당한다. 경성사범학교와 경성농업학교는 서울에 사는 학생이라도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조선인·일본인 공학인 두 학교는 기숙사에서도 여러 학년의 조선인·일본인 학생이 한 방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군대의 내무반과 유사하게 운용하였다. 그러나 남학교는 두 학교 외에는 대부분 기숙사를 갖춘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학생은 주로 하숙을 했다. 반면 여학교는 대개 기숙사를 운영하였고, 사립학교 중에는 아예 통학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기숙사는 학교와 별도의 건물·시설이 있어야 하고,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등을 위해 고용인도 두어야 하니 설립·유지 비용이 든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여학교가 기숙사를 둔 데는 여학생의 생활은 남학생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통제되어야 한다는 성차별적 편견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학교에 따라 외출이나 편지, 면회 등 학생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여 감옥 같다는 비판, 동맹휴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지만,[276] 점차 여학교 기숙사는 여학생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 서울서 여자기숙사로 제일 자유롭고 가장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은 아마 정동 이화여고보 기숙사일 것입니다. …… 전부가 양식에 -문화적 살림- 그들의 지내는 폼이 큰 부잣집 혹은 귀한 댁 아가씨들 같습니다. …… 기숙생들은 70명인데, 여섯간 방에 둘씩 침대와 책상을 각각 차리어 놓고 있

275 《조선일보》 1939년 3월 15일.

276 《동아일보》 1922년 10월 19일; 《동아일보》 1922년 11월 16, 18일.

습니다. 그들은 아침 5시 40분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와 소제를 하는데, 당번을 12명씩 5반으로 나누어 1-4층 소제와 그날의 식당 일을 맡아본답니다. 조반은 7시이며 등교는 8시인데, 그 사이는 각각 자유롭게 콧노래도 부르고 소리를 합하여 찬미도 부르게 됩니다. 점심은 12시 15분인데, 1시 반까지는 운동시간으로 유쾌하게 지냅니다. 대개 학교는 4시쯤 끝나고 저녁밥은 5시이며, 자습 시간은 7시부터이므로 그동안은 매우 재미스럽고도 분주합니다. 즉 어디까지든지 자유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켈」 혹은 ○○○○ 외에 다듬이질, 다림질, 바느질 같은 것을 다 각각 하게 됩니다. 7시부터 두 시간 동안은 묵학 시간으로 온 세상이 자는 듯하다가 다시 요란해지며 9시 45분이면 일제히 취침하게 됩니다. 목욕은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하게 되고, 면회는 화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또 외출은 한 달에 두 번씩 허락합니다. …… 식비는 어느 날이든지 일정하게 10원이고, 사비가 2원, 도합 13원 속에서 겨우 시탄값과 김장값, 세탁값 다 빼게 됩니다. 음식값이나 필요 물품을 사감이 다 주문할 뿐이고 지불하는 것과 장부 처리하는 것은 다 학교 회계계에서 맡아보아 줍니다.[277]

위의 이화여고보 기숙사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이 직접 청소, 빨래, 취사를 하는 자취제는 여학교 기숙사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공립학교인 경성여고보도 마찬가지다.

서울 재동 한구석에 서 있는 일본식 가옥 한 채. 매우 후락한 집으로 건물은 크지 않으나 넓은 터에 테니스코트가 배치되어 있으며 군데군데 빨랫줄에 널린 빨래 모양의 여러 가지를 보든지, 앞뒤로 꽃동산을 이룬 빛을 바라보든지, 어디로 보든지 여자기숙사로 보입니다. 거기가 바로 경성여고보 기숙사입니다. 20년 전 한성고등여학교 시대부터 있던 옛 기숙사를 내어주고 3년 전부터 그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생은 50명(그 가운데는 소수나마 기혼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전부 사생들의 거처하는 방만이 10방, 그 외에 사감실, 식당, 도서실이 있습니다. 그 사의 잔일은 사생들의 손으로 거지반 됩니다. 실장이 있어서 한방 한방의 정돈을 해나가며 또 주번이 있어서 전체 기숙의 일을 돌아봅니다. 즉 사생들의 면회하는 것을 맡아보며, 그 외 외출에 대한 간섭도 합니다. 또 식당 당번이 따로 있어서 학교 가

277 《동아일보》 1928년 10월 18일.

사 선생님과 사감 선생님들이 꾸며주는 대로 찬거리를 주문한다든지 또 식사 준비를 한다든지(만들기는 전부 식모들이 하나) 일기와 회계장부 같은 것을 전혀 맡아봅니다. 그들의 매일 행사로 말하면 일정한 시간의 규칙적 생활하는 점이 즉 요사이 같으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에 자게 되며, 그동안에 자습 시간 이행, 혹은 틈틈이 자기들의 빨래와 옷 꾸며 입는 것들이 다른 기숙사생들보다 그리 다른 점이 없습니다.[278]

이와 같이 기숙사는 상경 학생의 의식주를 돌보는 거주시설·후생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278 《동아일보》 1928년 10월 21일.

제3절

전시체제기 황국신민화 교육

1. 제3·4차 〈조선교육령〉 개정과 황국신민화 교육

국체명징國體明徵, 내선일체內鮮一體, 인고단련忍苦鍛鍊을 조선의 교육 3대 강령으로 내세우며 1938년 3월 제3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다.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 총독이 부임하여 1937년 7월 학무국장으로 시오바라 도키자부로[鹽原時三郎]를 임명하였는데, 시오바라는 전적으로 본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조선교육령〉 개정을 추진하여 1938년 3월 4일 제3차 〈조선교육령〉을 개정 공포하였다.

우선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을 통해 '충량유위忠良有爲한 황국신민의 육성' 즉 황민화를 조선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을 준비하며 1937년 12월 이전에 이미 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정해져 있었다.

> 조선에서 교육의 본지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취지에 기초한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를 준봉함에 따라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능히 시세와 민도를 성찰하고 그에 즉응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작금의 조선에서 이후의 교육의 실제에서 강행해야 할 요점을 열거하자면 1) 황도주의 2) 내선일체 즉 동화 3) 인고단련이라는 세 가지에 있다. 또한 황국신민서사를 제정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 낭송해야 하며 또한 황국신민체조를 창정하여 항상 실시

한다면 반드시 위의 세 가지 형식으로부터 정신에 침투시킬 방책이 될 것이다.[279]

이제 '충량한 국민'이 아니라 충성스럽고 순량하되 쓸모있는 천황의 신하인 백성을 기른다는 이른바 '충량유위한 황국신민' 양성이 새롭게 식민지 조선의 교육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황국신민'이라는 용어는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의 정책 용어로서 부상한 것은 시오바라에 의해서이다. 황국신민이라는 용어가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에 대해 당시 일본인 지식인, 관료들조차 제국헌법의 '일본 신민'이라는 용어 대신 굳이 '황국'이라고 하는 이유를 물을 정도 였다. 시오바라가 교육목적으로 설정한 '황국신민의 육성'이라는 조항은 일본의 〈교육령〉에도 없었던 것으로, 제3차 〈조선교육령〉이 일본 법령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국어를 상용하는 자'와 '상용하지 않는 자'에 따라 구별하던 보통교육을 모두 일본 내지의 해당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에서 내선 동일의 학교 제도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학교 제도를 일본과 조선이 같도록 형식적이나마 통일하였다. 학교 제도는 재조 일본인을 위한 학교 제도와 동일하게 6년제 소학교, 5년제 중학교 및 4년제 고등여학교, 3~5년제 실업학교를 기본 학제로 하였다. 일본인 학교와 조선인 학교는 비로소 동일한 법적 기반을 갖고 동일한 명칭의 학교 제도로 되었으며 보통교육 단계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지향하였다.

보통학교는 소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전의 조선인 학교는 일본인 학교와 교명이 겹치는 것을 피해 학교명을 일괄 변경하였다. 하지만 일본인 학교와 조선인 학교는 제1부 학교, 제2부 학

279 강명숙 외 편역, 〈朝鮮に於ける教育ニ對スル方策〉, 《교육정책(1)-교육칙어와 조선교육령》, 동북아역사재단, 2021, 403~406쪽. 기밀문서로 분류되어 있는 이 문서는 작성자와 작성 일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3차 〈조선교육령〉 개정의 방향이나 향후 조선 교육의 방침에 대하여 미나미 총독과 조선군, 학무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 조선어 금지, 교원의 재교육 강화, 조선인 수용의 청년훈련소 확대 보급, 종교계 학교에 대한 조치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교 등으로 여전히 구별하였고, 조선인 소학교에 일본인 학생이 통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1941년 전 조선의 중등학교의 공학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인 대상의 학교에 조선인 교원은 없었으며, 1% 이내의 조선인 학생이 일본인 대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조선인 대상의 학교 특히 사립학교에 일본인이 재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 이후에 신설된 학교에서만 겨우 부분적으로 공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동일한 학교 제도와 교육방침의 실제는 공간적 분리라는 칸막이 벽에 부딪혀 의미 없는 정책에 불과했다.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안에 대한 추밀원의 심사보고 자료에 의하면 "〈조선교육령〉 전부 개정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은 현행 규정 중에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의 보통교육에 관한 부분과 이와 연계되어 있는 사범교육에 관한 부분에 개정을 가하는 것뿐이며, 내지인에 대한 것과 조선인에 대한 보통 교육기관에서의 구별은 이 개정으로 명의名義상으로는 완전히 해소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곧바로 내선 공학을 시행하는 것은 아님"[280]을 당국자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제3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을 대륙 진출의 병참기지로서 군사 및 경제상의 임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민지 본국과 동일한 교육제도와 방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일본과 조선의 학교 명칭을 통일하고 종래의 조선인 학교의 교육내용을 쇄신함으로써 조선인이 일본 국민이라는 자각을 철저하게 갖도록 하는 이른바 황국신민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였다. 황국신민화 교육은 결국 조선인을 병력으로 동원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이었다.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황국신민 양성 방안으로 황국신민서사를 제정하여 때마다 반복 낭송하도록 하고, 황국신민체조를 정하여 보급하였다. 또 황국신민 교육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39년 4월 교학연수소를 설립하였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을 소장으로 하고, 국민과·사도과·수련과의 세 과정을 개설하여 시학관과 각급학교 교원 특히 1942년부터는 전문학교 교직원까지 입소시

280 〈추밀원 심사보고〉, 강명숙 외 편역, 앞의 책, 2021, 399~400쪽.

켰다.[281]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 약 2년 뒤인 1940년 3월 〈공립사립전문학교규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 이후 전문학교 제도와 운영의 법적 근거는 1940년 개정 〈공립사립전문학교규정〉과 1943년 개정 〈전문학교령〉과 〈공립사립전문학교규정〉에 따랐다.

1940년 〈공립사립전문학교규정〉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전문학교의 교육목적으로 충량유위한 황국신민 육성을 명시한 것이다. 〈공립사립전문학교규정〉 개정은 제1조를 추가 삽입하는 것뿐이었는데, "전문학교는 그 목적에 따라 고등 학술기예를 교수하고 특히 황국의 도에 따라 국체 관념 함양 및 인격도야에 유의함으로써 국가에 필요한 인재로서 부족함이 없는 충량유위한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것에 힘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국체 관념으로서의 황국의 도, 국가에 필요한 인재, 충량유위한 황국신민 육성을 명문화하여 전문학교를 황국신민 교육기관으로 천명한 것이다. 전문학교는 고등의 학술기예를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라는 이른바 대학과 전문학교의 위계적 고등교육 구조는 여전히 유지하면서, 이제 전문학교도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황국의 도라는 국체 관념을 함양하여 국가 유용의 인물을 연성하는 이른바 충량유위한 황국신민 양성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립사립전문학교규정〉 개정에서 특히 '황국의 도'를 강조한 배경에는 우선 전문학교가 황국 신민 교육기관으로서 불충분하다는 인식과 특히 조선의 전문학교는 대륙전진문화기지로서 첨병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근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강조하게 된 것은 학문과 교육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국가주의 교육이념의 표현을 넘어선 것이었다. 자유로운 학문의 교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1941년에는 〈국민학교규정〉을 제정하여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명칭을 바꾸었다. 조선인이 주로 다니던 수업연한 4년과 6년의 심상소학교는 각각 수업연한 4년과

281 강명숙, 〈일제 말기(1938~1945) 전문학교 정책의 변화〉, 《한국교육사학》 43(4), 2021, 31~32쪽.

6년의 국민학교로, 일본인이 주로 다니던 심상고등소학교는 초등과 및 고등과를 둔 국민학교로, 고등소학교는 고등과만 둔 국민학교로 하여 모두 국민학교로 동일하게 칭하는 것으로 했다.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국민학교로 바꾸는 것에 대해 "지금의 국제 정세는 잠시의 안락함도 허용하지 않고, 대동아공영권의 확립과 세계의 신질서 건설은 더욱 더 능력있고 쓸모있는 인재를 요구한다. 이 중요한 때에 신민의 도를 실천하기 위한 기초를 배양해야 할 교육에서도 역시 국가 신체제에 대응하여, 참으로 팔굉일우八紘一宇라는 건국 정신을 드높이고, 황국신민이 될 자질 연성의 필요가 한층 더 절박하고 긴요하다."라며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교육방침과 내용을 확립하고 겉과 속 모두 국민교육의 본질을 철저히 하는 것"[282]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전시 동원을 위해 철저하게 황국신민의식을 주입하여 일본 국민다운 기본 소양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전시 동원의 예비 조치로서 이루어진 제3차 〈조선교육령〉은 5년 만인 1943년 3월 다시 개정되었다. 제4차 〈조선교육령〉 개정은 종전과 달리 1942년 11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내외지 행정일원화 방침에 따라 일본의 〈교육령〉 개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종전의 개정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일본의 척식성과 법제국의 검토를 거쳐 추밀원에서 심의, 의결하여 칙령으로 공포하는 절차를 취했다. 그러나 제4차 〈조선교육령〉은 일본 문부대신이 초안을 작성하여 각의 결정으로 〈조선교육령〉 개정 요강을 결정하고 추밀원 심의를 거쳐 공포되었다. 조선 총독은 내각의 감독을 받으며 문부대신이 정한 정책을 조선에 적용하되, 조선의 사정을 고려한 방침을 추가할 뿐이었다.[283]

제4차 〈조선교육령〉 개정에 관여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오오노 겐이치[大野謙一]가 "내지에서 우리나라 교학의 본의에 기초하고, 대동아전쟁 완수와 대동아 건설의 필성의 요청과 황국의 도에 따라 국민연성의 일관적인 체제를 완정하고, 교육내용

282 南次郎, 〈國民學校制度實施につき〉, 강명숙 외 편역, 《교육정책(3) -일제강점기 학교교육》, 동북아역사재단, 2023. 2853~286쪽.

283 강명숙, 앞의 글, 2021, 43~44쪽.

의 쇄신 충실 및 수업연한의 단축을 실시하여 교육의 국방체제를 정비하는 학제 개혁을 단행하게 됨에 따라 조선에서도 결전하 반도의 중대사명과 교육에 대한 국가 부단의 요청을 깊이 성찰하여 내지와 보조를 같이하여 학제의 광범위한 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다."[284]라고 공공연히 밝혔듯이 국방체제로서의 학제 정비로 수업연한 단축과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동원의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 즉 교육제도 변경과 운영의 목적이 전쟁 승리를 위한 황민 연성의 일관적 체제를 갖추는 것임을 밝혔다.

교과목 체제 변경, 수업연한 축소, 학생동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황이 급박하자 일제는 다시 1945년 5월 22일 〈전시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조선총독부에서도 1945년 7월 1일 〈조선교육령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의 〈전시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이제 법령이 아니라 방책이라는 정책 조치에 의해 학교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2. 황국신민화 교육과 근로동원, 군사훈련과 학병동원

1)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학생 근로동원[285]

조선에서 학생을 노동 현장에 동원하는 것은 중일전쟁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직업과'라는 교과목의 실습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일제는 학교교육이 지적 교육에 치중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29년에 '직업과'를 필수교과로 정하여, 보통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에게 주당 3~4시간의 수업시수를 배정하였다. 그리고 "실습에 관해서는 규정된 수업시간 외에 배당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과외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실습은

284 大野謙一, 〈朝鮮教育令の改正とその實施に就て〉, 《文教の朝鮮》 210, 1943년 4월, 4쪽.

285 1938년 이후의 학생 근로동원에 대해서는 강명숙, 〈일제말기 학생 근로동원의 실태와 그 특징〉, 《한국교육사학》 30(2), 2008을 참조하였다.

주로 학교실습과 가정실습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학교실습은 그 지방의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 중에서 각 도의 산업 방침에 입각하여 선택된 실습지에서 토지정리, 시비작업부터 수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습하는 것으로, 작물 재배 외에도 가축 기르기, 가마니 짜기, 새끼 꼬기, 짚신 삼기 등의 부업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가정실습은 농번기에 학교를 휴교하여 학생들에게 가정의 농사일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286]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실습을 수업일수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습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192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실습은 주로 농업노동에 학생들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습을 수업의 일부분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1930년대 후반 식량 증산을 위한 노동력 동원과 근로보국대 활동 등의 학생동원이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정책적으로 조직적이며 본격적인 학생 근로동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 대상의 근로보국대가 조직되고 학교에도 학교근로보국대가 결성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287]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중일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1937년 10월 일본 국내에서 시작된 관제 운동인데, 조선총독부가 1938년 7월 7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발족시켜 핵심적인 활동으로 근로보국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조선에서도 실행되었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근로보국운동은 1938년 6월 11일 조선총독부가 정무통감 통첩으로 〈학생생도의 근로봉사 작업 실시에 관한 건〉을 하달함으로써 민간부문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이 통첩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근로보국대를 조직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학무국에서는 〈학교근로보국대 요항〉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각급학교에서는 1938년 7월 학교근로보국대가 결성되어 '근로봉사' 작

286 宮田節子 지음, 이형랑 옮김, 《조선 민중과 황민화 정책》, 일조각, 1997, 208쪽.

287 일본에서의 학생동원(student mobilization)은 보통 중일전쟁 이후 학교 재적자를 총력전으로 참가 협력시키기 위해 통상의 학업을 희생하고 행해진 동원을 말한다. 그리고 주로 학생 근로동원은 1938년 4월에 공포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학생 대상으로 이루어진 각종의 노동 동원을 일컫는다(久保義三 外, 《現代教育事典》, 東京書籍, 2001, 356쪽).



1925년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교육회에서 일본어로 발행한 교육 잡지 《文教の朝鮮》의 표지와 판권지(국립중앙도서관)

업을 전개하였다.

학교근로보국대를 조직하도록 요강을 발표하면서 시오바라 도키자부로[鹽原時三郎] 학무국장은 학교근로보국대의 목적 및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학생 생도로 하여금 엄격한 규율 통제하에서 공익에 관한 집단노동을 함으로써 근육노동에 대한 존중의 념念을 함양함과 동시에 인고지구忍苦持久의 체력을 연마하여 애국봉사의 정신을 실천으로 체득시킴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함과 동시에 강건한 황국신민을 육성하고자 한다. …… 대개 여름방학의 휴가를 이용하여 학생 생도가 일정 기간 농산어촌에서 규율적인 단체생활로, 적당한 근육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노동운동은 국민의 자각운동, 교화 내지 교육활동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288]

1938년 학교근로보국대 조직 당시에는 학무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88 鹽原時三郎 학무국장 談, 〈學生生徒の愛國勞動奉仕作業實施〉, 《文教の朝鮮》 1938년 7월호, 89~94쪽.

1939년부터는 일반 근로보국대와 같이 명령계통을 통일하여 내무국 사회과에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다.[289]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학교근로보국대의 활동에 대해서 교육잡지인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에서는 1939년 이후부터 그 기록이나 자료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학교근로보국대에 의한 근로동원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실시계획 및 지도 방법인 〈학교근로보국대 요항〉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학교근로보국대를 통한 학생 근로동원의 실태와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요항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근로보국대 요항〉은 1938년 6월 13일 학무국장이 발표[290]하였는데,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목적, 방법, 사업의 예정, 노동의 기간 및 생활 일반, 지휘기관의 조직 및 임무와 학도근로보국대의 편성, 실시 학교 및 학생의 범위, 실시의 주의사항, 경비, 본 운동 실시에 대한 협력, 실시 순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을 근로동원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사실상 망라되어 있다.

〈학교근로보국대 요항〉을 토대로 학생 근로동원의 방침 및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근로보국대 활동의 목적이 '국가 경제 기여와 황국신민 육성'임을 밝히고 있어 학생의 근로봉사 작업이 바로 노동력을 동원하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학생 근로봉사이지만 사실상 노동력 동원임은 8항의 경비 규정에서 '그 작업에 상당하는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노동력 동원이 학교의 활동으로 전개되는 이상 교육적 수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서 인용된 바와 같이 학무국장은 "집단적 노동운동은 국민의 자각운동, 교화 내지 교육활동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라며 교육활동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교육활동으로 의미 부여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목적이나 사업의 종류나 방법, 노동기간 중의 생활지도 방

289 김윤미, 〈총동원체제와 근로보국대를 통한 '국민계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4, 2008, 136쪽.

290 학교근로보국대 운영 및 학생 근로동원의 실태는 〈학교근로보국대 요항〉에 근거하여 서술하였다. 〈학교근로보국대 요항〉은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 1938년 7월호에 실려 있다.

법에서도 나타난다. 학생 근로봉사가 '엄격한 규율 통제하의 단체생활'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해야 할 노동의 성격을 '공익에 관한 집단노동'으로 한정하고,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지방의 사업은 피'하도록 하였다. 또 노동시간은 하루 여섯 시간 정도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학과, 자습, 좌선, 오락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의 종류와 성격은 ① 사업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단순한 노동을 주로 하는 것을 선택한다. ② 일반 노동자들이 용이하게 모이기 쉬운 지방의 사업은 피한다. ③ 사업의 종류로 임도 혹은 농도의 신설과 개수 등의 도로공사, 개간공사와 같은 사방공사, 황무지나 연못 등의 개간, 매립공사, 수로공사 등으로, 근육노동의 신성함을 체험시킬 필요에 비추어 기계류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291]고 정했다. 각 지방에서 일꾼을 구하기 어렵고 또 기계적 작업이 어려운 것 중에서 학생들의 단순 단체 노동으로 가능한 일들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교육적 목적보다는 근로봉사라는 미명하에 노동력 보충의 일환으로 학생을 동원한 것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단순 단체 육체노동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노동조직을 군대식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었다. 근로보국대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마치 군대처럼 상명하복의 획일적인 조직으로 조직하고 엄격한 규율로 통제하려고 하였다. 조직 구성은 우선 조선총독부에 학교근로보국대 지도 총본부를 두고, 그 산하에 각 도 지도 본부 및 직할 학교근로보국대를 두었다. 각 도에는 각도 지도 본부 산하에 각 학교근로보국대를 두었다. 학교근로보국대의 작업에 적당한 사업 및 노동력 조사와 사업 배당 등은 기본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지도 총본부에서 통제하였다. 각 학교근로보국대의 조직은 본대를 두고 그 밑에 학년별로 조직된 반, 학급별로 조직된 조, 1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작업 분대를 두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각각 학교장, 학년주임, 담임, 학생대표 등을 장으로 임명하여 작업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학교근로보국대 활동은 원칙적으로 1회 10일 정도의 단체 합숙생활로 하고, 재학 중 총 2회

291 《文教の朝鮮》 1938년 7월호, 89~94쪽.

이상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근로활동 전에 반드시 학생 건강진료를 실시하고, 그것을 기록하여 향후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활동 중에 학교의學校醫를 동반시키거나 그 지역 공의公醫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학교근로보국대 요항〉이 발표되자 1938년 6월 21일 경기도내 공사립 중학교장 35명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학교근로보국대 결성 및 작업 구체안을 협의하였는데, 작업의 내용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간 중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동원하여 남자는 토목공사에, 여자는 신사 청소와 군용품 봉제 작업에 동원하고, 3학년생 이하는 학교 부근의 여러 가지 작업에 종사시키기로 결정하였다.[292] 이때 결정된 경기도 지역의 학교근로보국대의 집단 근로봉사 활동 즉 학생 근로동원 실시계획은 다음의 [표 40]과 같은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동원의 규모와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표 40] 1938년도 경기도 학교근로보국대 실시계획

구분	학교명	학년	인원	반수	사업	일수	비고
남자 중등 학교	경기중	4·5학년	409	20	조선신궁 옥석 씻기 용산 육군병원 운동장 조성	10	
	경복중	4·5학년	300	15	용산 육군병원 운동장 조성	10	
	선린상	4·5학년	200	10	용산 육군병원 운동장 조성	10	
	용산중	4·5학년	260	13	조선신궁 옥석 씻기 용산 연병장 배수로 파기	10	
	경기상	4·5학년	187	9	조선신궁 옥석 씻기 용산 연병장 배수로 파기	10	
	양정중	4·5학년	205	10	조선신궁 옥석 씻기 용산 연병장 배수로 파기	10	
	배재중	4·5학년	340	17	조선신궁 옥석 씻기 용산 연병장 배수로 파기	10	
	경기중	4·5학년	370	18	돈암정 도로 개수 공사	10	본 공사에 필요한 여러 용구는 일을 맡긴 사람이 준비한다.

292 《동아일보》 1938년 6월 23일; 임현진, 〈일제 전시체제하 조선인 노무동원에 대한 고찰〉,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5쪽 재인용.

구분	학교명	학년	인원	반수	사업	일수	비고
남자 중등 학교	경기상	4·5학년	190	9	돈암정 도로 개수 공사	10	
	보성중	4·5학년	250	12	돈암정 도로 개수 공사	10	
	휘문중	4·5학년	270	13	돈암정 도로 개수 공사	10	
	중앙중	4·5학년	267	13	돈암정 도로 개수 공사	10	
	동성상	4·5학년	121	6	돈암정 도로 개수 공사	10	
	대동상	4·5학년	200	10	돈암정 도로 개수 공사	10	
	중동학교	4·5학년	180	9	돈암정 도로 개수 공사	10	
	경신학교	4·5학년	125	6	돈암정 도로 개수 공사	10	
	개성상	4·5학년	110	5	송악산 항공등호 도로 개수 공사	10	공정 약 3경*
	송도중	4·5학년	260	13	개성부내 도로 및 하천 수리공사	10	연장 약 7.5경 병교~좌대교 구간(도로 및 하천 4.5경) 당교~공설운동장 구간(도로 3경)
	인천상	4·5학년	185	9	주안 염전 제방 수리 및 청태 제거 및 체취작업	10	
	인천중	4학년	20	1		10	
소계	20교		4449	218			
여자 중등 학교	제1고녀	4·5학년	400	20	남산일대 신사 청소작업 군용 겨울옷 재봉	10	조선신궁 경내 청소 25·26일 재봉 1,300매
	제2고녀	4·5학년	400	20	남산일대 신사 청소작업 군용 겨울옷 재봉	10	조선신궁 경내 청소 25·26일 재봉 1,300매
	경기고녀	4학년	155	7	남산일대 신사 청소작업 군용 겨울옷 재봉	10	경성신사 경내 청소 25·26일 재봉 500매
	용곡고녀	4학년	155	7	남산일대 신사 청소작업 군용 겨울옷 재봉	10	경성신사 경내 청소 25·26일 재봉 500매
	숙명고녀	4학년	145	7	남산일대 신사 청소작업 군용 겨울옷 재봉	10	경성신사 경내 청소 25·26일 재봉 500매
	진명고녀	4학년	85	4	남산일대 신사 청소작업 군용 겨울옷 재봉	10	조선신궁 경내 청소 25·26일 재봉 350매
	이화고녀	4학년	100	5	남산일대 신사 청소작업 군용 겨울옷 재봉	10	경성신사 경내 청소 25·26일 재봉 250매
	배화고녀	4학년	114	4	남산일대 신사 청소작업 군용 겨울옷 재봉	10	경성신사 경내 청소 25·26일 재봉 200매
	동덕고녀	4학년	114	5	남산일대 신사 청소작업 군용 겨울옷 재봉	10	경성신사 경내 청소 25·26일 재봉 400매
	정신고녀	4학년	38	2	남산 일대 신사 청소작업 군용 겨울옷 재봉	10	경성신사 경내 청소 25·26일 재봉 100매
	인천고녀	4학년	105	5	인천 신사 청소작업 군용 겨울옷 재봉	10	인천신사 경내 청소 25·26일 재봉 350매
	호수돈고녀	4학년	100	5	남산 일대 신전 청소작업 군용 겨울옷 재봉	10	개성신사 경내 청소 25·26일 재봉 300매

구분	학교명	학년	인원	반수	사업	일수	비고
소계	12교		1882	91			
합계	22교		6331	309	※연간 동원 규모: 22학교×10일×6,331명=1,392,820일		

출전: 〈學生生徒勤勞報國隊實施狀況〉, 《文教の朝鮮》 1938년 9월호, 96~102쪽.
비고: 경은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1경은 약 사방 110m 정도의 크기이다.

경기도 지역의 중등학교의 경우 도내의 모든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309학급 총 6,231명의 학생을 10일간 동원할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에 따라 동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동원 규모는 한사람이 1년 365일 내내 일할 경우 약 3,816년 동안 일해야 하는 정도의 분량이지만, 이는 경기도내의 사범학교와 전문대학, 대학의 학생동원을 제외한 규모이므로 실제로 학생동원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 동원 작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 소재지의 특성이 반영되기는 하였지만 도로 개수 공사, 운동장 조성이나 배수로 공사, 신궁 청소, 군복 제조 등으로 단순 노동력 제공 이상의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러한 성격의 학교근로보국대 근로동원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에도 1938년 7월 16일 대구의학전문학교를 선두로, 사범학교, 경북중학교 등의 순서로 각각 10일씩 김천, 칠곡, 경산, 성주 등 대구 인근 지방의 사방공사, 도로공사, 신사 조영 공사 등의 각종 공사에 동원되었다.[293]

각 학교 차원의 학생 근로동원의 실시의 구체적 과정 및 절차는,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전국적 수준에서 학무국이 〈학교근로보국대 요항〉을 발표하면 각도 수준에서 〈학교근로보국대 실시계획〉을 세워 근로동원을 독려했고, 이에 각 학교에서는 〈○○학교근로보국대 실시요항〉을 작성하여 집단 근로동원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사범학교, 전문학교, 대학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학교근로보국대를 결성하고 근로동원을 실시했는데, 경성사범학교의 근로보국대 실시요항[294]을 보면 학교 단위 수준에서 근로동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293 권영배, 〈일제말 전시체제하 중등학교의 동원과 저항-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40, 2008. 365~367쪽.

알 수 있다.

경성사범학교 근로보국대 역시 반을 나누어 구성하고, 반에는 조를, 조에는 분대를 두어 군대식 체계로 조직하였고, 구성원 각자에게 역할 및 사무를 분담시켜 단위별 통제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다. 근로보국대 활동은 "○○년도 근로보국대 결성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근로 작업이 모두 끝난 뒤에 해대식을 반드시 거행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작업은 작업지에 집결하여 매일 복장 검사, 출석 점검, 황거요배와 신궁요배, 황국신민서사 제창, 공구 점검, 주의사항 전달, 대가隊歌 합창이라는 순서의 조례로 시작하였다. 작업은 반기班旗를 앞세우고, 작업복과 전투모 혹은 제복과 실습모를 쓰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루어졌다. 동원 작업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감상록을 작성하여 조주임(보통은 담임)을 거쳐 대장(보통은 학교장 혹은 교무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이를 토대로 근로 작업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수료 증서를 부여하였다.

경성사범학교의 1938년도 근로작업 실시계획은 [표 41]과 같은데, 이 계획에 의거하여 보통과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동원이 이루어졌다.

[표 41] 1938년도 경성사범학교 학생 근로동원 실태

분반	학년	인원	기간	지구	작업
제1반	보4년 1·2조	90	21~27일	창경원	연못 파는 작업
제2반	보5년 1·2조	80	21~25일	신궁	모래 바꾸어 메우기
제3반	강습과 1조	40	21~25일	교정	프로츠크 작업
제4반	강습과 2·3조	100	21~27일	농장	경작
제5반	연을 1년 1·2·3·4조	200	21~30일	연병장	정비 공작
제6반	연갑 1년 1·2조	80	21~30일	사꾸라 언덕	도로 개설
제7반	연을 2년 1·2·3·4조	200	21~25일	연병장	정비 공작
제8반	연을 2년 5·조	100	21~25일	안산신사	참배길 개설
비고	근로기간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연을 2 보5 강1은 군사연습에 이어 5일간 실시				

출전: 《朝鮮の教育研究》 119, 1938, 135~139쪽 참조.
비고: '보'는 '보통과', '강'은 '강습과', '연'은 '연습과', '갑'과 '을'은 '연습과의 반(班)'을 뜻함.

294 〈1938년도 경성사범학교 근로보국대 실시요항〉, 《朝鮮の教育研究》 119, 1938, 135~139쪽.

경성사범학교를 비롯하여 근로동원 시행에서 1938년 경기도 지역의 경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숙박 훈련을 하지 않고, 하루 6시간씩 도시락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작업 도중 낮잠을 잔다거나 일일 작업종료 후에 학과 공부, 자습, 좌선, 오락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도보 행군, 취사 분담은 없었다. 즉 경기도 지역의 경우는 노동력 동원 이외에 교육활동이라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별도의 활동이 없었다.

근로보국대 활동은 '집단 근로봉사'의 명분으로, 근육노동에 대한 존중 의식과 인고지구의 체력 연마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일반 노동자들을 용이하게 모으기 어려운 지방에서의 단순한 집단노동에 노동력을 지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작업에 상당하는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1938년 경기도 지역의 학교근로보국대 경우 학생 1인당 약 1전의 임금을 받았다.[295] 그러나 "근로보국대는 봉사를 하는 것으로 작업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받는 경우에는 공사公事헌금, 애국저금, 대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절대로 개인적인 용무에는 소비하지 못하도록 한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임금의 액수를 따져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296]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근로보국대의 수익금을 국방헌금으로 헌납하게 했다[297]는 사례도 있어, 일정 정도의 보수는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1939년 이후에는 근로동원이 더욱 강화되어 실시되었다. 1939년 7월 21일 학무국에서는 〈집단근로 작업 실시에 관한 건〉을 통첩하여, 하계 휴업일 등의 휴가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수시로 작업을 부과하고, 출·결석 점검을 하여 근면·태만을 평가하는 등 정규 교과목에 준하여 성적처리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수시로 학생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근로보국대로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정규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분으로 인정하였다.[298] 그리고 집단근로 작업의 실시기간 중에는 운

295 임현진, 앞의 글, 2006, 26쪽.

296 김윤미, 앞의 글, 2008, 146~147쪽.

297 손종현, 〈일제 제3차 조선교육령기하 학교교육의 식민지배 관행〉,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36쪽.

동부 혹은 운동선수도 시합에 참가시키지 말고 동원하도록 함[299]으로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근로동원에 응하도록 하였다. 또 학생들이 동원된 작업장에 도 학무과 시학관 심지어 학무국장이 시찰하여 학생들의 집단근로를 독려했다.

2)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학생 근로동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대상으로 국민총력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1941년 11월 〈근로보국협력령〉을 칙령으로 반포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일제는 국민개동체제國民皆働體制를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근로봉사를 통합 정비하였다.[300] 그리고 정무총감이나 학무국장의 통첩의 형태로 이루어지던 학생 근로동원은 법적 기반을 갖고 실시되게 되었다.

〈근로보국협력령〉 반포를 전후하여 이미 학생 대상의 근로작업은 일시적인 단순한 노동력 동원 이상의 차원으로 그 성격이 점차 변하고 있었다. 상시적인 노동력 동원이 절박해지자, 학무국장은 1941년 6월 〈학생 생도의 집단근로 작업 실시에 관한 건〉을 하달하여 농번기를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근로동원을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동원 기간을 확대하였다. 동시에 동원으로 인한 수업일수 부족을 해결하고 나아가 부족한 인력을 시급히 보완하기 위해 대학, 전문학교·중등학교 등의 재학 연한을 3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업연한 단축과 상시적인 근로동원은 1943년 3월 8일 제4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면서부터이다. 일제는 제4차 〈조선교육령〉 개정을 통하여 각급학교의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사범교육과 이공계 계통의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수업연한을 6개월~1년간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수업연한만큼 학생동원이 앞

298 김윤미, 앞의 글, 2008, 144쪽. 1938년에는 근로이력사항을 기재하고 수료증을 배부하였으나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299 손종현, 앞의 글, 1994, 136쪽.

300 福間敏矩, 《學徒動員·學徒出陣:制度と背景》, 第一法規出版, 1980, 24쪽.

당겨졌다. 의무교육제도 시행을 통해 징병 요원을 시급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양성이 중요해졌고, 전쟁 수행의 필요에 따른 군수산업 계통의 중견 노동력 확충을 위해 이공계 계통의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43년 7월 22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의 〈학도 전시동원체제 확립 요강〉 하달을 계기로, 근로동원은 동원 기간이 연간 30일에서 60일 사이로 늘어났고, 동원 내용도 단순 근육노동으로의 동원뿐만 아니라 군수공장으로도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학생 근로동원은 노동 동원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적 수식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기 어려웠고, 근로동원을 교육적으로 수식할 필요성도 없었다.

한편 1944년 8월 학생동원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한 〈학도근로령〉이 칙령으로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1944년 10월 〈학도근로령 시행세칙〉이 만들어짐에 따라 학생 전시동원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3월 18일에는 학교마다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되는 학도대를 조직하도록 하고, 국민학교 초등과 이외의 학교 수업을 1년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전비상조치요강에 기초한 학도동원실시요강〉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학도동원실시요강에서는 초등학교 고등과 학생도 근로동원 가능함을 언급하여 근로동원 대상 학생의 범위를 넓혔으며, 여학생 동원의 경우 가능한 한 학교의 공장화에 의해 노동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여학교의 공장화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근로동원으로 인하여 부족한 수업일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1945년 5월 6일에는 〈학교 휴업일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일요일에도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휴업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제 말기로 갈수록 전시체제 수립을 위한 인력 동원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는 실제 학생동원 실태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상시 동원이 시작된 1940년 이후의 학생 근로동원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우선 동원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2]와 같다.

1944년 전반기에만 전국 350개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약 15만 8,000명의 학생을 동원하였다. 당시의 개별 학교의 분위기와 근로동원 상황은 1942년 경성공립

[표 42] 학도 근로동원 실시 상황(1944년 전반기)

학교급별	학교종별	학교수	출동인원	출근처 또는 작업	출근기간
대학 전문학교	광공업계	5	1,412	항공창, 교통국 공장, 광산	통년 또는 임시
	농수산계	3	698	농축산지도, 어로수산 가공장	
	의약계	10	3,214	도립병원, 교통국 병원 등	
	문과계	7	1,938	조병창, 항공창, 사업장 등	
	소계	25	7,262		
사범학교	교육동원	16	1,278	전 조선 각 국민학교	2개월~6개월
	일반동원		10,820	식량증산, 국방시설, 토건공사, ○○가공작업, 군피복 보수	임시
	소계	16	12,098		
중등학교	중학교	81	44,639	식량증산, 국방시설, 토건 공사	통년 또는 임시
	공업학교	37	18,559	공장, 사업장	
	농수산학교	70	21,779	식량증산, 토건공사, 토지개량	
	상업학교	30	15,217	식량증산, 국방시설, 토건공사	
	여자중등학교	97	38,398	식량증산, 군피복 보수 등	
	소계	309	138,592		
합계		350	157,952		

출처: 민족문제연구소,〈學徒動員ノ狀況及將來ノ方針如何〉,《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22, 한국학술정보, 2005, 164~165쪽.

공업학교에 입학하여 1945년 해방까지 다녔던 이영희의 회고 기록에서도 잘 드러난다.

> 3학년 2학기에 학교 수업이 반으로 줄었다. 오전만 수업을 하고 각 학과마다 해당하는 분야의 군수품 생산을 하는 것이다. 전기과인 나와 우리 학급은 육군용 건전지와 건전지용 야전등을 생산했다. 이제는 칙임관교장학교나 고등관교장학교의 차별도 없고, 조선인학교, 일본인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막론하고 학생들은 모두 군수생산○○을 위한 반근로자가 되었다. …… 1944년 1학기에 〈학도군사동원령〉이 발표되어 고등학교·전문학교 학생은 학도병이 아니면 근로동원으로 나가버리고 학교는 사실상 문을 닫은 거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 4학년이 되자 개학한 첫날의 조회에서 4학년 전원에 대한 〈학도보국근로령〉의 적용을 시달받았다. 교장의 훈시와 '령'의 이름으로 비장하고 굉장해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하다. 앞으로 일 년간 학교에는 나올 필요 없

이 각기 지정된 현장에서 노동을 한다는 말이다. 이날부터 나는 학생이 아니었다. 전국의 4학년생이 모두 그랬다. ……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인문계 중학생들은 비행장 닦기, 도로공사, 군수화물 나르기, 방공호 파기, 소개할 건물·주택 부수기, 군복세탁 등에 동원되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전공에 따라 총포탄 생산, 비행기 제조, 토목설계, 군수 주물공장, 화학공장 등으로 흩어졌다.[301]

모든 학생이 수업을 폐하거나 줄이고 근로 동원되는 것은 경성제국대학[302]도 시골의 국민학교[303]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경성공립공업학교는 이공계열의 학교여서 1944년에도 오전수업을 하고 동원되었으며, 동원지도 전공을 고려하여 배정되었던 것이다.

일제 말기에는 근로 작업이 바로 학교 수업이었으며, '근로봉사'는 전시 인력 동원 수단이었다. 성적은 교과 성적과 근로보국사업 및 사상 등을 토대로 산출되었고,[304] 1945년부터는 진학 시험도 필기고사 대신 근로 성적을 반영하도록 조치[305]되었다.

3) 군사교육 강화와 학도지원병 동원

1937년 이후 각급학교에서 군사교육이 전면적 확대 강화되었다. 군사

301 이영희, 《역정-나의 청년시대》, 창작과비평사, 1988, 79~81쪽.

302 경성제국대학의 경우도 "의학부 학생들은 44년 3월부터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4학년 전원을 군위생간부로 만들기 위해 육군병원에 입대시키고, 3학년은 경찰관과 경방대의 혈액검사에, 1·2학년은 육군창고의 정지작업과 도로보수 작업 등에 투입되었다. …… 징집 면제 대상인 이공학부는 단축수업을 한 뒤 소총 깍기, 조병창, 해군공창 등으로 근로동원을 나갔다."라고 회고하고 있다(이충우, 《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0, 260~261쪽).

303 일제 말기 함경도 지방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던 김남식은 "동네에서 노무자로 징용으로 나가거나 또는 군대에 징병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집집마다 모두 일손이 모자라고 …… 따라서 공부하는 1교시, 2교시 수업시간인데도 관계없이 그냥 가서 10리쯤 돼도 김매주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런 요청이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김매고 …… 아, 그리고 저 송탄유, 비행기에 특별히 쓰는 윤활유가 부족하니까 솔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것으로 대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로 산촌에선 낫이나 적당한 기구를 갖고 가서 그걸 캐다 바치기도 했어요. …… 시간이 있어서 가르치기도 했겠지만, 주로 그런 노력동원에 나갔지요."라고 기억하고 있다(이치석, 《전쟁과 학교》, 삼인, 2005, 100쪽).

304 손종현, 앞의 글, 1994, 150~151쪽.

305 권영배, 앞의 글, 2008, 375쪽.

교육의 목적을 국방 능력의 증진으로 재설정하고 전시동원체제 구축에 앞장섰다. 군사교육은 교련 수업의 진행, 현역 장교 배속에 의한 군사훈련, 군무 동원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조선에서는 1926년 현역 장교를 학교에 배속하여 군사교련 수업을 하기 시작하여, 1939년 5월 전체 사립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에서 군사교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39년 2학기부터 사립학교인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중앙불교전문학교에도 장교를 배치하여 군사교련을 실시했다. 다만 연희전문학교와 보성전문학교에는 현역이 아닌 예비역이 배치되었다.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사립의 전문학교 8개교와 중등학교 26개교에 현역 장교가 배속되었다. 그리고 관공사립을 합하면 1944년 전반기까지 총 87개교에 현역 장교가 배치되었다. 중등 이상의 학교 가운데 약 73%에 해당하는 비율이었다.[306]

배속 장교에 의한 군사교련 실시의 결과에 대해 "학생 생도의 규율 훈련, 행동거지, 태도에서 종래의 소위 훈육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효과를 나타내었고, 그 후 해마다 강화에 힘을 기울이게 되어 현역 장교 배속학교의 증가와 교련 과정의 쇄신 강화를 더해왔다."라고 평가하면서도 "교련은 배속 장교의 임무이고 교수 및 일반훈육은 학교 직원의 담당이라고 하여 양자 사이의 통합, 일관성이 부족한 정황"이라고 상황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 결과 1942년 5월 〈교련교수요목〉을 개정하여 학교교련의 목적은 "학도에게 군사적 기초훈련을 실시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충성을 다하는[至誠盡忠] 정신의 배양을 근본으로 하여 심신 일체의 실천 단련을 행함으로써 그 자질을 향상하고 국방 능력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심신 훈련이 아니라 군사적 기초훈련이 교련 교과의 목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제4차 〈조선교육령〉 이후에는 학생군사교육이 본격화되었다. 1943년 3월 제4차 〈조선교육령〉에서 중등학교 교과목으로 체련과(교련, 체조, 무도)를 설치하고 그 요

306 김성학, 〈일제시기 학생 군사교육 정책의 성립과 전개 과정에 대한 연구: 육군 현역장교 배속에 의한 군사교련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5(3), 2023, 67·69쪽.

지에 '국방능력의 향상'을 명기함으로써 이제 학교체육은 군사교육이 되었다. 그리고 〈학도 전시동원체제 확립 요강〉에 따라 국가총력전을 위해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병제 형태로 군동원을 실시함을 천명하였다.

> 학교교련을 더욱 강화하여 학도가 장래 군무에 대비하여 국방 능력을 증강하도록 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국토방위에 전면적으로 협력하도록 하였다. 특히 전쟁 기법훈련의 철저, 항공 해양마차 통신 등의 특기훈련特技訓練의 실시, 방공훈련의 철저에 힘을 기울이도록 했다. 물론 그 명칭이 가리키는 것처럼 학도 전시동원체제이고 전쟁 시국의 요청에 따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점차 교육으로 병학일체兵學一體, 군교일치軍敎一致의 황국교학皇國敎學이라는 참된 모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
> 결전決戰의 양상은 점점 가열되고 처참해짐에 따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징집유예 제도가 정지되어, 법문과 계통의 학도는 곧바로 총을 쥐고 제1선에 봉공奉公했으며, 이공과 계통의 학도는 잠깐 입영을 연기토록 하여 후일 군軍 요원이 될 날의 자질 향상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중등학교 생도도 역시 육군 소속의 육해공군 관계 제 학교에 지원하는 상황을 보여, 학원은 확실히 예비사관학교, 군무예비훈련소로서의 성격을 발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307]

군사능력 강화를 위해 교련 시수를 늘리고 내용에서 국민학교부터 대학까지 일관된 군사교육체계를 정비 확충하고, 특히 항공, 기갑의 특별훈련을 강화했다. 또 대학 전문학교의 학도에게 군사학, 병기학兵器學, 군대 의학 등의 군사 교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군사훈련을 통해 학교를 '문화인 육성의 장소가 아니라 강건한 발전을 멈추지 않는 일본문화 창조의 산실, 참된 일본인을 만드는 도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학도 전시동원체제 확립 요강〉에서 학교교련을 더욱 더 철저히 강화하여 장래 군사 사무에 대비하고 국방능력의 증강을 도모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307 近藤英男, 〈朝鮮に於ける學園非常事態について(1944)〉, 앞의 책, 2023, 522~523쪽.

국토방위에 전면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도를 강구하였다.

⑴ 학교총력대學校總力隊의 조직을 즉시 국토방위에 유효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강화할 것.

⑵ 학도 일반에 걸쳐 〈전시학도체육훈련실시요강(1943년 4월 학무국장 통첩)〉에 따라 체육 훈련을 강화한다. 특히 대학, 고등, 전문학교, 중등학교 제3학년 수준 이상의 남자 학도에게는 전술훈련戰技訓練을 철저히 할 것.

⑶ 전항 후반 단락(대학, 고등, 전문학교, 중등학교 제3학년 수준 이상의 남자) 학도에게 항공, 해양, 기갑, 마차, 통신 등의 특기훈련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도의 적성 등록 제도를 확립하여 본인의 적성에 따라 특기훈련을 실시할 것.

⑷ 기본훈련 종목, 전술훈련 종목 및 특기훈련 종목에 관해 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훈련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각 학교의 단계에 적합하도록 제정하여 훈련의 적정함과 철저함을 도모할 것.

⑸ 학도 전원에 대해 방공훈련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학도총력대 방공경비보조원 근무요강(1942년 5월)〉에 따라 방공경비보조원으로서의 훈련을 강화할 것.

⑹ 중등학교 이상의 여자 학도에 대해 간호 기타 보건위생에 관한 훈련을 강화하고, 필요할 때 전시 구호에 종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정비한다. 이에 관한 과정은 교과교수요목 등에 규정한 것에 따르고 그 외에 〈여자중등학교구호법 지도요항(1942년 8월 학무국장 통첩)〉에 따를 것.[308]

유사시에 대응하는 학생군사조직으로 학교총력대를 결성하고, 모든 학생을 방공경비보조원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전황이 급하게 불리하게 되고 패전으로 연결되어 뜻대로 실현되지는 못했다.[309]

1943년 10월 20일에는 〈육군 특별지원병 임시채용 규칙〉이 제정되어 문과계 학

308 近藤英男, 앞의 글, 2023, 525~526쪽.

309 신주백, 〈일제 말기 조선인 군사교육:1942. 12~1945〉, 《한일민족문제연구》 9, 2005, 163쪽.

생들의 징집유예가 정지되어, 문과와 상과 재학생들은 학도병으로 지원해서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20세 또는 21세 이상의 조선 및 대만의 법문계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재학생들은 훈련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역으로 편입한다는 이른바 학도지원병제가 실시된 것이다. 1943년 학도병 지원 일정은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징병검사를 받은 후 1944년 1월 20일에 입영하는 것이었다. 경성의 학도지원병 신체검사는 경성의 제1검사장과 제2검사장에서 이루어졌는데, 명륜전문학교 학생을 제외한 전문학교 학생들은 모두 용산의 제2검사장에서 받았다.

학도병으로 입대하는 과정을 보성전문학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성전문학교에서는 11월 3일에야 겨우 3명의 지원자가 나왔다.[310] 이런 저조한 지원은 연희전문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943년 11월 연희전문학교 학생 3명이 특별지원병에 지원하였다.[311] 그러자 연희전문학교 부형들을 앞세워 평양에서 궐기하여 특별 지원을 독려하였다.[312] 보성전문학교의 경우 수 차례 교수회를 열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을 권유 강제하기 시작했다. 보성전문학교《교수회록》을 분석한 연구[313]에 의하면, 보성전문학교 교수회에서는 수 차례 특별지원병 권고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협의하고 실행하였다. 11월 3일 교수회의에서는 ① 명치절 당일 의식이 끝난 후 교장과 배속 장교가 학생들에게 학도지원병 지원을 권고할 것, ② 13명의 교원이 적격자 261명에 대해 각각 20명씩 담당하여 지원 의사를 청취하고 복무원서를 배부하여 제출하게 할 것, ③ 부모와 상담하기 위해 귀향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11월 10일까지 복명하게 하도록 하였다. 다시 11월 11일 교수회에서는 12일과 13일에 각 교원이 다시 한번 학생들을 호별방문하여 학도지원병제도는 '단순한 자유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국민적 의무인 취지'를 철저하게 알릴 것, 귀향 학생에 대해서

310 《매일신보》 1943년 11월 5일.

311 《매일신보》 1943년 11월 3일.

312 《매일신보》 1943년 11월 13일.

313 김자중, 〈《교수회록》을 통해 본 전시체제기 말기(1942-1945) 고등교육기관의 수난과 대응〉, 《교육사학연구》 32(2), 2022, 49~53쪽. 보성전문학교의 사례는 이 논문에서 밝힌 바를 요약하였다.

는 전보를 보내 지원을 권고할 것, 출석 중인 비적격 학생들에게 결석 중인 적격 학생들에게 지원 연락을 권고하게 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지원자 수는 급증했다. 11월 12일에 보성전문학교 지원자 수는 76명으로 늘어났다.[314] 11월 15일 교수회에서는 각 지역별 담당 선생들이 마지막까지 권고할 것, 중요 도시에는 교원을 출장하게 하여 귀향 중인 생도에게 면접·권고할 것이 결정되었고, 보성전문학교 지원자 수는 11월 16일에 126명, 17일에 165명, 19일에 189명까지 늘어났다.[315]

마감일인 11월 20일까지 적격자 약 1,000명 중 90% 이상이 학도지원병에 지원했다.[316] 보성전문학교 학생들도 다른 전문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그 대다수가 지원했다. 미지원자는 23명에 불과했다. 이에 11월 22일 교수회에서는 미지원자 23명에 대해 각 교원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고할 것, 지원자 중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2학기 시험을 면제하고 1학기 시험성적을 학년 성적으로 할 것, 비적격자와 불합격자에 대한 2학기 시험은 1월 말에 실시할 것, 지원자에 대해서는 11월 24일~12월 10일까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오전에는 학과, 오후에는 교련에 충당할 것을 결정했다.

보성전문학교의 지원자들은 12월 14~16일의 3일간 전형검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조선총독부는 지원자들이 전형검사에 불출석할 것을 우려하여 대학·전문학교교장 회의를 열어 지원자를 격려하고 우대하는 방법, 신체검사 합격자에 대한 연성방법, 잔류 학생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했다.[317] 또한 12월 7일 오노[大野] 학무국장은 전형검사 미출두자에게는 즉일로 징용령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겁박했다.[318] 입영일에는 입영 학생의 배웅을 위해 각 학교에서는 휴강을 하고 직원과 학생들이 경성역에 모여 평양 방면과 부산 방면으로 출발하는 사람을 배웅하였다.

314 《매일신보》 1943년 11월 14일.
315 《매일신보》 1943년 11월 17~20일.
316 《매일신보》 1943년 11월 22일.
317 《매일신보》 1943년 11월 26일.
318 《매일신보》 1943년 12월 8일.

학도병으로 입영하지 않고 남은 학생 즉 신체 상황 등으로 입영할 수 없는 학생, 징병 적령에 달하지 않은 학생, 이공과계 학도로서 입영 연기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수업을 해도 1943년 10월에 발표된 〈교육에 관한 전시 비상조치 방책〉에 따라 강의는 가급적 오전 중으로 마치고 오후는 오직 군무 예비 훈련으로 채우게 되었다.[319]

〈교육에 관한 전시 비상조치 방책〉에 따라 1944년 3월 18일과 19일 〈학도 군사교육 강화요강〉 〈학도동원 실시요강〉이 발표되었고, 1944년 4월 28일에는 〈학도 동원체제 정비에 관한 건〉이 발표되었다. 전문학교 학생들의 전쟁동원 및 근로동원을 위해 전담부서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전문교육과가 생겼다.[320] 학생들은 '생산 요원으로 직접 군무에 복무'하거나 근로동원과 군무 예비훈련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321]

또 일제 말기 지원병제가 시행되고 징병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적령기에 보통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청년훈련소가 운영되었다. 청년훈련소에서는 공립보통학교에 부설되어 주로 일본어와 간단한 실용지식 중심으로 보통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가르쳤다. 1928년 처음으로 운영된 경성청년훈련소 및 용산청년훈련소를 시작으로, 1939년과 1940년에 집중적으로 개설되었다. 1941년 9개의 공립청년훈련소와 철도, 방직, 연초 공장 등에 부설된 12개의 사립청년훈련소가 있어 약 2,300여 명의 청년을 가르치고 있었다.[322]

319 《매일신보》 1943년 10월 14일.

320 강명숙, 앞의 글, 2021, 53쪽.

321 강명숙, 〈전시기 기독교계 사립 전문학교의 변화: 연희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4(2), 2022, 16쪽.

322 京畿道 편, 〈朝鮮人京城府各級學校一覽〉, 《京畿道教育と宗教要覽》, 1941.

찾아보기

ㄱ

간이국민학교 366
갑오개혁 168
강인택 333, 336
강화도조약 187
게이오의숙 190
겸교수兼教授 104
경국대전 164
경성고등보통학교 290
경성공업전문학교 395
경성대학 358
경성법학교 395
경성법학전문학교 395
경성사범 390
경성사범학교 436
경성여고보 378
경성여자사범학교 394
경성의과전문학교 335
경성의학전문학교 352, 395
경성전수학교 395
경성전수학교 관제 395
경성제국대학 330, 337
경성제국대학 관제 336, 341
경성제국대학 예과 규정 341, 344
경성제대 337
경성제이고보 381
경성청년훈련소 447
경성학교조합 310
경신학교 197
경학박사經學博士 081
경학원 167
고교평준화 014
고등보통학교 375
고등학교 013
고바야시 하루지로[小林晴次郎] 353
공립보통학교 358
공립보통학교 비용령 274, 367
공립사립전문학교규정 426
공업학교 386
과거법科擧法 064
과시課試 023, 098
과장科場 133
관립경성사범 390
관립한성고등여학교 232, 295
관립한성사범학교 290
관립한성외국어학교 232
관상감 120
관시館試 024, 092

관학원 167
광무光武 212
광무학교鑛務學校 172
광주고보 344
광주학생운동 343
교과용도서검정규정 253
교동공립보통학교 364
교련교수요목 442
교육구국운동 233, 248, 250
교육법 030
교육부 018
구본신참 211
국민교육헌장 031
국민교육회 238
국민사범학교 239
국민정신총동원운동 429
국민총력경성제대연맹 348
국민학교규정 029, 426
국민학교령 182
국자감 073, 117
국자감國子監 021
국자감시國子監試 065
국학 050
군국기무처 169
군사교련 442
권학절목勸學節目 165
근로동원 428
근로보국대 429
근로보국협력령 438
근화여학교 384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 255
기재생寄齋生 101
김경재 335
김광진 395
김성수金性洙 332, 395
김영주金泳柱 395
김탁 333
김형옥 333

ㄴ

나카라이 기요시[半井清] 333
내훈內訓 025, 152
농업학교 386

ㄷ

다카하시 유타카[高橋豊] 395
대사성大司成 091
대성전大成殿 078, 089
대학 무용론 336
대학창설준비위원회 335
대한자강회 247
대한제국 212
도당유학생 055
도쿠미쓰 요시토미[德光美福] 353
독립신문 219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 021, 054
동도서기론 195
동문관同文館 193
동학농민운동 197

ㅁ

마쓰무라 마쓰모루[松村松盛] 338
명경업明經業 021, 062
명륜당明倫堂 089
묄렌도르프 192
무경습독관武經習讀官 109

무경칠서 128
무학당武學堂 114
무학武學 088
무학별설론武學別設論 023, 111
문과 126
미나미 지로[南次郎] 423
미즈노 렌타로[水野練太郎] 340
민립대학 설립 운동 330
민립대학기성준비 331
민립대학기성준비회 330
민본이념 164

ㅂ

박극채 395
박은식 213
배재고보 381
배화여고보 379
배화학당 197
백남진 333
백상규白象圭 395
보광학교 249
보빙사 191
보성전문학교 297, 395
보통학교 증설계획 359
보통학교국사 370
보통학교규칙 315
보통학교령 026, 175
복업卜業 021, 062

ㅅ

사도부司徒部 045
사립경성여자상업학교 389
사립숭신학교崇信學校 294
사립학교규칙 291, 317
사립학교령 252, 315
사립학교보조규정 253
사민필지 212
사범학교 390
사부학당四部學堂 023, 101
사역원司譯院 117
사와야나기[澤柳政太郎] 341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340
사토 고죠[佐藤剛藏] 353
사학四學 022, 088
3면 1교 계획 359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025, 151
상업학교 386
생원·진사 024
생원시 124
서당에 관한 훈령 315
서유견문 219
선교육령 344
섬학전贍學錢 077
성균관관제成均館官制 172
성균관成均館 022, 088
성리학性理學 069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395
소학교령 173, 206
송진우 332, 333
수산학교 386
수신서 371
숙명고등여학교 316
숙명여고보 379
순성여학교 223
숭실학교 197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347

스크랜튼 222
승보陞補 107
시가 기요시[志賀潔] 353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357
시데하라 타이라[幣原坦] 226
시오바라 도키자부로[鹽原時三郎] 423, 430
신유학新儒學 068
신편창가집 371
실력양성운동 330
실업보습학교 386
실업학교 386

ㅇ

아관파천 211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 341
아펜젤러 196
안호상 395
알렌 221
알프레드 크로프츠Alfred Crofts 358
야마가 노부지[山家信次] 356, 357
양현고養賢庫 078
언더우드 221
언문 139
여사서女四書 025, 153
여의女醫 146
여자고등보통학교 375
역과 131
연희전문학교 395
영선사 191
영학원 167
5부학당五部學堂 077
오경박사 044
오오노 겐이치[大野謙一] 427
오자와 마사루[大澤勝] 353
오천석吳天錫 236, 395
옥선진玉璿珍 395
와타나베 카츠미[渡邊勝美] 395
용산청년훈련소 447
원산학사 195
유년필독 243
유성준 333
유월도회六月都會 106
유인식 333
유진오兪鎭午 395, 413
유진태 333
유학儒學 088
6·10 만세운동 343
육영공원育英公院 193
윤치소 330
윤행중 395
율과 132
음서蔭敍 021, 066
음양과 132
의과 132
의녀 146
의무교육 012
의업醫業 021, 062
의학박사醫學博士 081
이갑성 333
이달원 333
이상재 330, 332, 333, 337
이승훈 332, 333
이시완 333
이언 189
이와이 세이시로[岩正誠四郎] 353
이완용 340, 369

이용익 297
이철경李喆卿 416
이충건 333
이현식 333
이화여고보 380
이화학당 197, 289
일출소학교 305

ㅈ

잡학雜學 088, 116
장덕수 333
장악원掌樂院 148
재회齋會 096
전강殿講 100
전례강典禮講 127
전문학교 394
전문학교규칙 291, 317
전문학교령 426
전시교육령 185, 260, 428
절일제節日製 099
정노식 333
정신여학교 197, 316
제1차 〈교육령〉 262
제1차 〈조선교육령〉 175
제2차 〈교육령〉 292
제2차 〈조선교육령〉 370
제3차 〈교육령〉 268
제3차 〈조선교육령〉 181, 423, 428
제4차 〈조선교육령〉 183
제국대학령 341
제술업製述業 021, 061
조만식 333
조미수호통상조약 166
조선교육령 026, 176, 260, 331, 365, 423
조선교육사 234
조선교육제도조사위원회 341
조선교육협 330
조선교육회 330
조선사편수회의 347
조선어독본 371
조선의과대학 335
조선책략 189
조선청년회연합회 331
조선총독부중학교관제 309
조선통치사견朝鮮統治私見 179
조선학교비령 368
조흘강照訖講 125
중동학교 384
중앙불교전문학교 395
중학교 012
중학교관제 215
중학교규칙 174
지방비법 255
직부전시直赴殿試 100
직부회시直赴會試 100
직업학교 386
진명여고보 380
진사시 124

ㅊ

천거제薦擧制 046
청년훈련소 447
초등학생 012
최신초등소학 244
최용달 395
최태영崔泰永 395

7재七齋 074

ㅌ

태학太學 038
태화여학교 384
통독通讀 100

ㅎ

학교 설립 기성회 366
학교근로보국대 429, 432
학교모범學校模範 096
학교사목學校事目 096
학교조합령 303
학규신론 213
학도 전시동원체제 확립 요강 439, 443
학도근로령 439
학도대學徒隊 186
학도동원 실시요강 447
학도지원병 441
학도지원병제 445
학령學令 093
학무국 266
학무위원규정준칙 251
학병동원 428
학부學部 266
학회령 253
한국교육개량안 226
한규설 330
한성사범학교 212
한성순보 188, 218
한성시漢城試 024
한용운 333
한인봉 333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 345
향교 082
향교재산관리규정 255
허헌 333
현상윤 333, 395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339
홍덕유 333
홍범 14조 170
홍성설 333
홍성하洪性 395
황감제黃柑製 100
황국신민화 교육 428
훈련관訓鍊觀 023, 109
훈련원訓鍊院 023, 109
훈민정음 140
흥선대원군 168

| 감수 |

우용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 집필 |

오성철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총설
박현숙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제1장
김우택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제2장
박종배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3장
김태웅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제4장 제1절
김은영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연구원	제4장 제2절
김광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제4장 제3절, 제5장 제2절 3항, 4항, 6항
조미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제5장 제1절
장세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제5장 제2절 1항, 2항, 5항
강명숙	배재대학교 교직부 교수	제5장 제3절

| 사진 협조 |

고려대학교 박물관,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국가유산청,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총서 14

서울교육사

제1권 광복 이전의 서울교육

발 행 인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발 행 처	서울역사편찬원(history.seoul.go.kr)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02-413-9622)
기획·편집	박명호(시사편찬과장), 김웅호
발 행 일	2025년 10월 31일
판 매 가	총4권 40,000원
편집·인쇄	경인문화사(031-955-9300)
사진촬영	스튜디오 수포토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3302-01
ISBN	979-11-6071-222-3 94910
	978-89-94033-21-1 (세트)